

유럽은 단일 경제공동체인 EU의 국가들과 더불어 튀르키예, 러시아 등 우리나라 무역·투자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EU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진국들이 있으며, 또한 EU의 법과 제도는 세계 규범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가별 보고서 유럽 편에서는 EU 전반에 대한 통상 환경과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덴마크, 라트비아, 핀란드 29개국의 통상환경을 다룬다.

EU는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EU 전체가 통합된 단일 시장으로 기능하면서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EU는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유럽의회와 집행위의 출범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역내 산업의 보호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WTO 기능 약화에 따른 다자주의 약화 및 보호무역 확산, 미국과의 갈등 지속,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미래관계 등이 주요 통상 현안이다.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개방형 강소국으로, 최근 세계 주요국의 무역갈등 및 브렉시트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네덜란드 경제 하방요인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로테르담 항, 스키폴 공항 등의 물류인프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통관 시스템, 투자환경,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다.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 3위의 무역대국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방형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의 무역 관련 규제는 EU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무역장벽이 없는 편이다. 또한 독일의 금융시장은 영국, 프랑스에 이어 유럽 3위 규모로 평가된다.

스페인인 최근 경제위기를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생산모델 현대화의 계기로 극복하기 위해 EU의 경제회복기금을 활용한 친환경·디지털 경제 중심의 국가경제재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단, 경제회복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연금·재정 등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원만한 합의안 도출 여부가 향후 스페인의 경제회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을 포함해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제약, 항공우주, 디자인 등 첨단 제조업 및 창조문화산업의 경우 여전히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로 EU를 탈퇴하면서 EU와 다른 별도의 규제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EU와의 교역에는 없었던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생기게 되었으며, 변경된 제도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탈리아는 거대한 소비시장과 더불어 중소기업 중심의 강소선진국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유럽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물류, 투자진출, 금융시장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교역은 수출과

서문

INTRO

수입 품목의 특징이 뚜렷한데, 수출은 자동차와 원자재 및 부품류 등 위주로, 수입은 가방과 신발 등 소비재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점 국가로, 젊은 연령층의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 한-튀르키예 FTA 발효(2013년) 이후 한-튀르키예 간 교역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튀르키예 내 자동차, 철강,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는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2022년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조치 13건, 세이프가드조치 7건이다.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의 핵심 국가이자 체제전환국의 대표적 성공모델이다. 특히 폴란드는 우리나라 기업의 유럽 투자진출 거점으로 전기차 배터리,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유수의 대기업들을 포함 26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와 더불어 폴란드 정부 역시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 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 혁신,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경쟁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최근 제조업 분야의 수출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가들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제재에 참여한 48개 국가들을 비우호적인 국가로 지정하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상응 조치 및 러시아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12월



유 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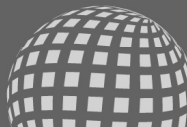
www.motie.go.kr

유럽연합(EU)	003
그리스	068
네덜란드	100
독 일	127
루마니아	154
불가리아	168
스웨덴	180
스페인	203
영 국	247
오스트리아	292
이탈리아	311
크로아티아	328
튀르키예	352
포르투갈	362
폴란드	380
프랑스	396
헝가리	419
노르웨이	435
러시아	449
벨라루스	542
세르비아	564
스위스	587
슬로바키아	613
벨기에	646
체 코	661
아일랜드	678
덴마크	701
라트비아	717
핀란드	7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V Part



유 럽

유럽연합(EU)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 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영 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 코
이탈리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덴마크
튀르키예	라트비아
포르투갈	핀란드
폴란드	



유럽연합(EU)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EU 통상 관계 현황

EU의 통상정책 기본 방향

현재 EU는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유럽의회와 집행위의 출범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역내 산업의 보호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WTO 기능 약화에 따른 다자주의 약화 및 보호무역 확산, 미국과의 갈등 지속,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미래관계 협상 등이 주요 통상 현안이다.

2019년 12월 新집행위가 출범함에 따라 EU의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전임 집행위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모멘텀은 이어나가되 수석통상감찰관 신설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챕터 이행점검, 탄소조정메커니즘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노동, 환경과 같은 EU의 가치를 통상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EU집행위는 2021.2.18.일 글로벌 불확실성과 일방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을 반영한 신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를 발표하였다.

[참고] EU의 신통상정책('21.2.18일 발표)

- ① 경제 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 시대의 EU 무역정책(2030년 세계를 위한 준비)
 - 정치 및 지리적 경제(geo-economic) 긴장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 대신 일방주의(growing unilateralism)가 확산

- 주된 이유로는 ①세계화, 기술발전 및 글로벌 가치사슬이 미친 부정적 영향, ②중국의 급부상, ③기후변화 가속화, ④디지털 전환, ⑤COVID19 등

② EU의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지원하는 무역정책

-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복원력과 경쟁력, 지속가능성 및 공정성, 적극적이고 규칙 기반의 협력), △개방성과 참여(단일시장 장점 활용, 기후 및 환경문제를 위한 참여·협력), △사치사슬의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향상, △EU의 지정학적 이익을 지원 (미국, 오타와 그룹, 아프리카, 인도, 중국과의 대화 강화)

③ 중기(Medium term) 통상정책 방향

○ 세 가지 핵심목표(Three core objectives)

- ① Green/Digital 전환에 따른 EU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원,
- ②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계화를 위해 글로벌 규칙을 수립,
- ③ EU의 이익을 추구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증진

○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6개 분야(16개 액션 플랜)

- ① (WTO 개혁) 집행위는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다자간 투자법과 같은 다자간 개혁 방향도 추진.
- ②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촉진) 다자간 프레임워크(WTO 무역과 기후 이니셔티브), 양자무역협정(야심찬 TSD챕터, TSD뿐만 아니라 모든 양자 협정의 이행을 강화), 자율적 조치*(탄소조정메커니즘, 공급망 실사의무 제언)등 모든 수준에서 조치가 필요
- ③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교역 지원) WTO가 디지털 통상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EU가 디지털 표준(AI 등)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
- ④ (EU의 규제 영향 강화) 세계적으로 중요한 규제 및 표준 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EU는 이 분야의 리더였으나 새로운 국가와 기술발전으로 EU의 비중이 줄고 있음.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 규제 협력에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할 필요.(EU는 아시아 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like-minded 국가와 규제 대화를 강화할 것)
- ⑤ (인접국가 및 아프리카와 EU파트너십 강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들과의 관계가 중요. 서부 발칸반도와 DCFTA파트너(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와 같은 동부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지원, 남부지역과의 경제통합 등은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전략적 필수 요소.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프리카 잠재력을 발휘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
- ⑥ (무역협정 이행 및 집행강화, 공정경쟁환경 보장) 협정의 적극적인 이행과 집행 (TSD챕터 등) 추진, 제3국의 강압적(coercive) 행동에 대한 대응수단 제언, 외국 보조금 왜곡에 대한 대응수단 제언, 이중용도(dual-use) 규정 현대화, 기업들을 위한 수출 신용(export credits) 검토,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등

한-EU 교역관계 개관

EU는 전 세계 GDP의 약 18%를 차지하는 세계 2위 규모의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상대국이다.¹⁾ 한국의 대EU 상품 무역은 2002~08년 동안 크게 증가(연평균 16.8% 증가)했으나, 2009년 이후에는 EU 재정위기, 유로화 약세, 우리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에 따라 수출은 정체, 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가 하락 및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2015년(1,053억 달러), 2016년(985억 달러) 연이어 감소한 바 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0년 1,034억 달러를 기록(수출 479억 달러, 수입 555억 달러)하고 있다. 2021년 1~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상품 수출은 523억 달러, 수입은 542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1~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51억 달러), 승용차(44억 달러), 자동차부품(33억 달러), 합성수지(28억 달러), 의약품(27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승용차(60억 달러), 반도체제조용장비(51억 달러), 의약품(41억 달러), 가방(21억 달러), 자동차부품(15억 달러) 등이다.

1962~2020년 EU의 대한민국 투자 누적금액(신고금액 기준)은 972.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66%, 제조업 31% 비중이다. 반대로 1968~2020년 우리나라의 대EU 투자 누적금액(신고금액 기준)은 840억 달러로 EU는 미국에 이은 한국의 3위 투자 대상국으로서 총 對세계 투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되었으며, 이후 EU측의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2015년 12월 13일부터 전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산권 행사집행 일부 조항(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도 발효되었다. 또한 2016년 7월 1일부터는 3단계에 걸쳐 이뤄진 법률시장 개방이 완료되어, EU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법률법인 설립 등이 가능해졌다. 한-EU FTA는 현재도 양측의 무역과 투자 증진의 훌륭한 플랫폼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2021년이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1) EU는 국가가 아닌 경제통합체이지만 편의상 국가로 명시함.

관세현황

EU에 관한 WTO의 2019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9,533개 세번)의 단순평균 적용관세율은 5.1%이다. 이중 농산물의 관세는 11.4%, 비농산물의 경우는 4.2%이다. 전체 품목 중 27.0%가 무관세 품목이며, 이들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8.7%이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 잠정발효에 따라 EU측은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용차(관세10%)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철폐하기로 하여 2013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소형(1,500CC 이하)의 경우 발효 후 5년이 지난 2015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전기 전자 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 관세도 발효 후 5년 후인 2015년 7월 1일부로 철폐되었으며, 전기·전자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류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다.

원산지 규정

EU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이 반덤핑조치, 수량제한 등 통상정책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되는데 반해,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등 특혜 무역협정,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는 제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한편,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EU는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아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섬유·의류 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중국산 제품들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급증한 데 대해 SAARC(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7개국으로 구성) 등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됐으나, 신제도에서는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Euro-Mediterranean)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최근 발효된 EU-베트남 FTA에 의해 한국과 베트남간의 교차 누적도 인정하고 있다. 인정되는 국가와 시기는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통관절차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통관에 관한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제정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업무의 처리는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맡고 있어 세관당국에 따라 원산지, 품목분류 등의 판단이나 업무처리 절차, 신속도, 민원인 응대 등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04년 5월 1일, 신규로

EU에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과 2007년 1월 1일, 신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2013년 7월 1일 신규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세관 규정의 해석·적용, 통관업무의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EU 기구를 창설하지는 않고 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관세 관련 규정·지침을 집행위가 제정하고 실제 집행업무는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따라서 세관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1968년 이후 채택된 각종 관세관련 규정 30여개를 통합한 공동체관세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기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8년 개정(Regulation (EC) No 45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되어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 시스템의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EU 집행위에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상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상기 공동체관세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년 2월 새롭게 UCC(Union Customs Code)를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 및 경제 운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동 UCC는 EU 집행위에 세관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행 규정의 제정을 위임하고, 수출입 물품의 물류흐름에 부합하도록 세관 규정을 정비하였고, 세관 절차 간소화 등 경제 운영인(economic operator)의 권리 확대와 세관 업무의 전산화 전면 시행 및 회원국 세관 당국의 감시 강화 등 의무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유럽 의회는 2013년 9월 11일, 동 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EU 이사회에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 1일, UCC가 발효되었다. 다만, UCC의 대부분의 조항은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EU 세관에서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 8월 네덜란드 세관당국이 우리 업체의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를 화학연료로 분류하는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를 발급하고 6%의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2009년 11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이 2008년 4월 우리 기업이 EU 회원국에 수출한 DMB폰을 TV로 분류하여 14%의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9년 8월 EU가 다기능휴대폰 규정 및 해설서를 채택함으로써 해결된 바 있다. 또한 2010년 5월 폴란드 세관당국이 우리 업체의 LCD 모듈에 대해 일방적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관세유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일단 품목분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초 제품 수출시 품목분류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20년 5월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규 구축된 EU 품목분류 정보시스템(CLASS) 활용할 수 있다.

EU는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장하는 공인경제운영인(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AEO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나, 다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1988년 통관서류 양식 통일하여 2003년 전산처리시스템 도입(NCTS: 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판정(원산지, 품목 분류 등)이 여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 세관당국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세관 당국간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집행위 내에 통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별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U는 관세행정의 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테러 및 조직범죄 대처 등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COM(2003) 452)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공동체 안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 사전신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는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역내 회원국 세관당국간 전산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통관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2008년 1월부터는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 추진한바 있다. 여기서는 회원국 세관당국 간 일체성 제고, 역내의 통관 안전(security and safety)의 강화, 통관사기 방지노력 강화, 통관절차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1월 ‘전자통관결정(Electronics Customs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통관”에 대한 결정(70/2008/EC)과 2008년 4월 ‘신통관규정(Mo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이 채택되었으며, 2008년 4월, EU 집행위는 심화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조치(COM(2008)169)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결과 향후 EU 회원국의 세관당국 간 전자통관이 더욱 효율화되어 위조상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 등 통관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범 EU 차원의 대처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 조치

(1) 수입규제 동향

EU는 2020년 12월 기준 총 143건(반덤핑조치 120건, 상계관세 22건, 세이프가드 1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이며, 그 중 반덤핑조치 6건은 우리나라

라 제품에 대한 것이다. 2021년 2월 조사가 개시된 고흡수성 수지(SAP)의 경우 지난 10월 덤핑관세 미부와 예비판정이 나왔고 내년 4월경 최종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EU의 주요 반덤핑 부과 품목은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다. 2021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는 총 6건이며 이중 3건이 철강제품(철강 로프 및 케이블, 방향성 전기강판, 철강제 관연결구류)이다. 우리나라는 EU의 상계관세조치에 적용받고 있지 않다.

(2) 무역구제제도 개정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에 따른 전면적 개정 이후, 그간 부분적인 기술적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EU내부적으로 EU의 무역구제제도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EU 집행위가 2006년 12월 무역구제조치 개편을 위한 보고서(Green Paper)를 발표하면서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U는 두 차례에 걸쳐 무역구제제도를 개편하였다. '17.12월 발효한 개정 반덤핑 규정의 주요 이슈는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을 시장경제국과 비시장 경제국으로 구분하던 반덤핑관세 부과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중대한 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반덤핑 부과 기준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왜곡은 국영기업의 시장 장악, 가격/비용에서의 국가 개입,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파산 법 등의 부적절성, 낮은 급여, 값싼 금융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의 제3국 생산가 및 판매가, 국제가격을 정상가 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 한편, '18.6월 발효한 무역구제제도 현대화 방안은 무역구제조사 기간 단축(9개월→7개월), 잠정조치 시행시 조기통보, 최소부관원칙의 제한적 적용, 조치수준 결정시 조사 대상국의 사회 및 환경, 노동 기준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은 시장경제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WTO회원국을

2) 강민지(2018),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P.24 참고.

대상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특정 분야 (sector)에 대해서도 중대한 왜곡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2017년 12월 EU는 중국을 대상으로 첫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동 내용을 토대로 중국산 유기코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재심 검토 시, 중국 시장 내 중대한 왜곡여부에 대한 판단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치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0년 10월에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국가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금번 러시아 보고서 이후의 향후 계획에 대한 EU측의 언급이 없는 바, 한-EU FTA 등 양자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EU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이 중대한 왜곡 보고서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준 및 여타 기술적 장벽과 위생 검역 조치

기술적 장벽

EU의 규제관행과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그리고 적합성 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EU 시장접근에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고 있는데, 때로는 교역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관련 장애가 되는 사항에 대해 EU 집행위와 협의 중에 있는데, EU의 타이어 관련 E 마크 및 인증번호 표기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EU는 타이어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마크를 타이어에 직접 인쇄물 형태로 부착하거나 매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2019년 3월 EU는 타이어 라벨링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성능 정보 추가, 대형 트럭 타이어에 적용 대상 확대, 상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개 및 라벨에 QR코드를 도입하는 내용을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는 이러한 조치가 수출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국내 타이어 안전인증 시험기관이 지정되었으며 KC 인증과 E마크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타이어 수출 장애 요소 해소 및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U는 소비전력이 많은 전자디스플레이 제품(TV, 모니터 등)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디스플레이 제품 에너지효율’ 규제를 마련하여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전자디스플레이 제품 에너지효율 규제는 저화질(HD 이하), 고화질(HD 초과, UHD 이하), 초고화질(UHD 초과 및 MicroLED) 디스플레이 제품을 대상으로 표면적당 소비전력을 지수화한 에너지효율지수를 규정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에너지소비를 낮추도록 하는 규제이다. 1단계 규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단계 규제가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전자디스플레이 제품 에너지효율지수

단계 / 시행일		에너지효율지수		
		저화질	고화질	초고화질
1단계	2021년 3월 1일	0.90	1.10	-
2단계	2023년 3월 1일	0.75	0.90	0.90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개별 회원국과 EU차원에서 채택되고 있다. EU의 완전 조화 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회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며, 조화입법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따라 채택된다.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No. 764/2008)에 따라 공동체의 조화 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의 목록을 발간하며, 관련 규정(Directive 98/34/ EC)에 따라 회원국들은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정 초안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다.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는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규정에 상호 인정 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WTO TBT 협정의 이행은 EU 집행위가 담당하고 있으며, TBT inquiry point는 집행위 기업·산업총국(Enterprise and Industry Directorate-General)이 담당하고 있다.

EU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38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통상 최소 6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EU FTA의 TBT 챕터에서는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 규정안을 WTO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기간 EU는 미국(3,738개), 브라질(1,926개), 우간다(1,787개) 등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를 WTO에 통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U 차원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거나, 집행위가 해당 법규의 위임을 받아 채택한다. EU 집행위는 기술규정 관련 정책이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ec.europa.eu/yourvoice/index_en.htm)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따라서 EU의 규범 제·재정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범 제·개정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행위가 실시하는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범의 공포와 실제 적용 사이의 기간은 다양하며 회원국 입법 조화의 경우에는 최소 18~24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EU 집행위의 지침에 의하면 교역 및 투자정책의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EU는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는 영향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SME test)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들은 집행위의 Export Helpdesk (<http://exporthelp.europa.eu>)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2년 6월 우리 정부는 EU 집행위와 무역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하였고, 2013년부터는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이트(www.tradenavi.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별, 업종별로 분류한 TBT 통보문과 규제 동향 정보, 인증정보 등의 무역기술장벽의 전반적인 정보를 TBT 정보포털 사이트(<http://knowtbt.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EU는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EU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performance에 기반을 둔 지표(indicator)나 목표만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전기·전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예외로써,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정한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자동차의 경우 EU는 CARS 21(EU의 고위자동차위원회: EU 자문기관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C)을 채택, UN ECE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결과, 우리 주요 안전기준 중 32개의 조항은 해당 UN 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29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UN ECE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안전 기준과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 개발에 따른 안전기준 제·개정 및 대상 부품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수 제품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이 일반 제품 안전 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역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이 적용되고 있다.

특별히, 전기·전자 제품의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 도입에 대하여 한국과 EU는 기술전문가 회의인 ‘한-EU 전기·전자 규제대화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기술규제 현안, 무역 기술 장벽 완화 및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하여 FTA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상호 인증 확대 등 TBT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독립 인증기관 목록은 집행위 홈페이지(<http://ec.europa.eu/enterprise/newapproach/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mai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안전

1990년대에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food scares)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EU 식품안전당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를 계기로 EU는 식품·사료의 가공 및 유통단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생산에서부터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운송, 소매에 이르기까지 식품망(food chain)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2000년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인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이하 백서)’를 발표하였는데, △EU의 각종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현대화하고,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농장에서 밥상까지(farm to table)”라는 구호아래 식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통합적 방법(integrated approach)을 운용하며,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행정조직 구성의 기본이념을 종전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지향으로 변경하였다.

EU는 2002년 백서의 내용을 반영하는 EU차원의 식품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Regulation(EC) No 178/2002)하고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인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경보시스템’과 식품망과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고 제공하는 ‘유럽식품안전청’을 설립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03년 초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EU의 정책 및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왔다. EFSA는 과학적 평가(scientific assessments)와 함께 새로운 정보의 전파, EU회원국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식품안전 사안에 대응하고, 식품안전 이슈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식료품망의 글로벌화에 따라 식품안전의 위해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EU 집행위와 EFSA는 모든 잠재적 위해요인을 사정, 관리,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였다. EFSA는 위해요소평가(risk assessment)를, 집행위는 위해요소관리(risk management) 및 통제조치 제반 사항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RASFF는 EU28개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Information Exchange Tool)인데 회원국의 식품 및 사료의 안전담당 기관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위해요소 발생시 상호 정보교환을 긴밀히 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ASFF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법령(Regulation 16/2011)이 마련되어 있으며, RASFF 회원국은 비상연락망(contact points)을 가동, 24시간/7일 상시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RASFF는 위해수준의 정도에 따라 경보통지(alert notification), 정보통지(information notification), 통관 거부(border rejection)의 3가지 유형의 통지를 발령한다. Regulation 178/1772 제50조 및 53조에는 통지발령을 위한 기준과 긴급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table)” 일환으로 2004년 4월 새로운 식품위생규정(New Hygiene Package)을 채택하여 소비용 식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를 통한 자기규제(self-regulating)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 후 2017년 그리포 사이트 및 독성 농약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크게 증가하면서 EU 집행위는

식품기본법과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 향료 등 8개 세부규정 전반 대한 법률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에 EFSA의 위험평가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개선하고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식품분야의 종합계획인 ‘A Farm to Fork Strategy’를 통해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반적인 식품사슬(food chain)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제공,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식품분야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보상 및 유기농업 증진을 목표로 정하고 식품전면영양표시 개선, 농약 및 항생제 기준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식품 오염(food contamination)과 관련하여 재배 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산염, 중금속 등의 최대잔여수준을 설정하고, 식품 포장 및 주방식기와 같은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FSA 과학적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기준을 계속 개정 중인데, 2019년에도 식품 용기 플라스틱 물질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식품접촉물질 번호 1059(이하 PHBH)로 제작된 식품용기의 용도, 사용조건 및 화학 물질 검출량 허용기준 등을 추가한 바 있다.

또한 EU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식품표기(labeling)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콩, 글루텐과 같은 알러지 유발물질은 반드시 포장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 2016년 12월부터는 포장되지 않는 식품 내 알러지 물질 포함여부까지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그 외에도 1997년5월 이전에 EU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은 97년부터 시행중인 신식품(novel food)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 후 허가 후 판매가 가능한데, 2015년 규정을 개정, 각 회원국이 아닌 EFSA가 허가 신청 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관리체계를 중앙 집중화하여 허가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종전 35개월→18~24개월)

EU 집행위는 식품업체 등록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새로운

규정(Regulation 854/2004)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EU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당국(competent authority)이 EU에 수출가능한 제3국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 정부기관에서 확인하고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하고, 수입 통관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EU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 집행위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내 보건식품검사분석국(Health and Food Audits and Analysis Directorate)에서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오고 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한 EU 규정(Regulation 1005/2008)이 2008년에 제정,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즉, EU 수출 수산물에는 전술한 위생증명서와 함께 적법한 어획행위를 증명하는 어획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3년 11월 26일, EU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하여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2014년 3월 20일) 및 조업감시 센터 설립(2014년 3월 28일), IUU어업 처벌강화(5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개정 :

3년 이하 징역 등 → 2차 개정 : 5년 이하 징역 등),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해 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개선조치에 힘입어, EU는 2015년 4월 21일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2018년 10월 18일 한국과 EU 양측은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한-EU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한-EU 공동선언은 한국과 EU간 전 세계 IUU어업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상호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한국과 EU가 IUU어업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성과물로서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채택되었다. 동 선언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EU 상호 간에 기술적,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21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는 IUU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관련 국제규범인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즉시 시행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IUU어업 근절을 위한 경험과 기술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전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관련 규제 (무역규제 효과를 수반하는 주요 환경정책)

탄소국경조정제도

최근 EU집행위는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탄소누출³⁾ 방지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EU의 CBAM 제도는 적용 대상품목에 대하여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EU ETS에 상응하는 가격을 부과(CBAM 인증서(배출권) 구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역시 2021년 7월 EU집행위위원회가 발표한 ‘Fit for 55 Package’ 중 하나로서 2022년 12월 ETS와 함께 EU 입법기관들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당초 집행위가 제안한 5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외에 수소, 간접배출 및 전구물질(precursors)

3) EU보다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 생산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함.

과 나사·너트 등 철을 재료로 한 소비재(downstream) 등이 CBAM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아울러, 유기화학물질, 고분자물질(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추가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CBAM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EU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수입품의 탄소함유량과 관련된 정보를 EU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수입품의 탄소함유량, EU 및 수출국의 탄소가격 정보 등에 기반하여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도 ETS 무상할당 폐지와 같은 일정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CBAM에 품목에 대한 비용 부과는 2026년 시작해서 2034년 전액 부담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WTO 규정예의 부합성, 탄소함량의 측정 방법 등 고려사항이 많은데, EU집행위는 역내외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결과는 우리나라의 시행령과 유사한 위임법령(delegate act) 또는 이행법령(implementing act)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 CBAM이 도입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EU측의 도입 준비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순환경제패키지 채택, 이행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 차원에서 에코라벨(Eco-Label)을 부여하는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Regulation (EC) No 66/2010」이다. 2015년 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운할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장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개 제품 및 서비스군에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고 있다. EU는 부여대상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와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 획득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서비스선택에 주

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U집행위는 2022년 3월 그린딜 및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의 표준화 전략과 함께, 섬유 및 건축관련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 제품의 표준화 전략 (making sustainable products the norm)은 EU 시장의 물리적 상품에 대하여 수명주기⁴⁾(life cycle) 전체에 걸쳐 환경, 순환 및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규칙을 개정하고, 일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디자인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신뢰성, 재사용·활용성, 수리 및 유지보수 용이성,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존 에코디자인 기준보다 △보다 광범위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제품별로도 준수해야 할 기준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EU집행위는 섬유,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세제, 페인트와 철·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제품들이 1차 작업계획의 대상으로 잠정 분류해 두었다.

또한, 규제 대상 제품에 디지털 패스पोर्ट를 부착하여 제품의 수리나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supply-chain)을 따라서 문제가 되는 물질을 용이하게 추적할 계획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수량, 재사용·재제조·재활용 계획을 관리·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폐기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패키징에 대한 기존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하면서⁵⁾, 규제 자체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4) 설계 단계부터 일상적인 사용, 용도 변경 및 수명 종료 시까지를 포함

5) 지침은 회원국별 입법(자율성)이 수반되나, 규정은 회원국별 입법 없이 EU전체에 일괄 적용

절차적인 측면도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동 규정안은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1인당 포장재 폐기물을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①불필요한 포장을 제한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포장 방법을 장려함으로써 포장재 폐기물 생산 자체를 억제하고, ②EU시장에서 모든 포장재의 품질을 향상하여 보다 완벽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③플라스틱이나 종이와 같은 원자재(virgin materials)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써 secondary raw materials의 사용을 촉진하고, 외부로부터의 원자재 의존도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안에는 제품별 포장재의 재사용 비율 설정, 특정 일회용 포장재 금지, 재활용·재사용이 용이한 포장재 설계 의무 등이 포함되었다. 사업자는 제품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주요 제품별 의무 제시), 배달용 음료수 포장, 온라인쇼핑 배송품 포장 등도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당·카페 안에서 소비되는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일회용 포장, △과일·야채에 대한 일회용 포장, △호텔 등에서 사용되는 샴푸병 등에 대한 포장 등 특정한 포장 방식들을 금지하였다.

향후, EU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각각 규정안을 검토(필요시 수정의견 의결)하는 절차로 이어지며, EU이사회나 유럽의회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EU의 3개 입법기관 간 3자협의(trialogue)를 거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3자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다시 EU이사회 및 유럽의회(상임위 및 본회의) 각각의 검토를 거치고 관보게재를 통해 법으로 발효된다.

2018년 1월 EU집행위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과 재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Circular Economy)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EU 시장내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사용 가능하거나 비용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유럽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⁶⁾

6) EU집행위(2018), "Plastic Waste: a European strategy to protect the planet, defend our citizens

2018년 5월 EU집행위는 해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10가지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접시, 빨대, 음료교반기, 풍선막대, 과자·사탕 봉투 등)과 어구용품(fishing gear)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해 시장 출시 금지, 시장출시 제한, 회원국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동 제품의 소비를 저감시키는 목표의 설정, 판매 시 대체품 제공, 생산자의 책임 제고 등의 규제를 부과하는 지침(Directive) 제정안을 제안하였다⁷⁾.

그 후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는 동 지침의 제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8년 12월에 10가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사용 금지(플라스틱 식기류·접시·빨대·면봉용 막대, 발포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 음식물 용기·음료 용기·음료용 컵,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회원국의 상당수준의 소비저감 조치(플라스틱 음식물 용기·음료 컵), △생산자책임강화⁸⁾(플라스틱 함유 담배필터 제조업자), △표시 의무⁹⁾(물티슈, 담배, 플라스틱이 함유된 필터가 있는 담배제품)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¹⁰⁾ 동 지침(Directive 2019/904)은 2019년 5월에 확정되었고¹¹⁾, 2021년부터 발효되었다.

2021년 발효된 플라스틱 관련 지침에 따르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또한 플라스틱의 일부로 간주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없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환경에 무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물질(polymer)들의 특성, 연구개발 필요성, 상용화 가능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nd empower our industries”(2018. 1. 16. 보도자료) 참고.

7) EU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New EU rules to reduce marine litter” (2018. 5. 28. 보도자료) 참고.

8) 제품이 수명을 다하여 폐기물이 된 경우, 동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공공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동 제품의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임.

9) 해당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고, 이 제품을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릴 경우 환경에 위해를 준다는 내용을 표시할 의무임.

10) EU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Commission welcomes ambitious agreement on new rules to reduce marine litter”(2018. 12. 19. 보도자료) 및 EU 각료이사회(2018) “Single-use plastics: Presidency reaches provisional agreement with Parliament”(2018. 12. 19. 보도자료) 참고.

11) EU 각료이사회(2019), Council adopts ban on single-use plastics”(2019. 5. 21. 보도자료) 참고.

야 한다는 의견이 EU 내에서 대두되었다. 이에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바이오기반 플라스틱 등에 대한 정책방향(Framework on biobased, compostable and biodegradable plastics)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방향은 특정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물질에 대한 사용 여부보다는 바이오기반플라스틱의 3가지 분야에 대해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기반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재료(biomass)는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바이오재료를 주목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유기성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이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정 제품에 포함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비중(양)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생분해성(자연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지,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추가 검토 예정이다.

퇴비화(자연상태에서 유기물질로 분해) 가능한(compostable) 플라스틱 역시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재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유기물과 하나의 제품을 이루는) 티백, 커피관련 용품(커피캡슐), 과일과 야채에 붙이는 스티커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동 정책방향은 시장에 신호를 주고, 민간의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아직 본격적인 입법단계가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EU집행위원회의 EU환경청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관리

EU는 생산자 책임원칙(No Data, No Market) 하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해성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유럽신화학물질등록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속서 14에 등재된 SVHC는 유예기간 이후 허가가 필요하며,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된다.

EU는 2008년 REACH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1차(2010년 11월), 2차(2013년 5월), 3차(2018년 5월)에 걸쳐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다.¹²⁾ 2018년 6월 기준으로 13,620개 기업이 21,551개 물질에 대해 88,319건의 화학물질을 등록하였다. REACH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 기준으로 대기업이 82%, 중소기업이 18%를 차지하며, 등록자들은 제3국 업체를 위한 유일대리인이 23%, 수입업체가 38%, EU소재 제조업체가 39%이었으며, 국가별 등록 건 수/화학물질 수는 독일이 8,463건/4,792개, 프랑스가 3,455건/2,124개, 이탈리아가 2,926건/2,049개, 네덜란드가 2,751건/1,653개 등이다.¹³⁾

한편, EU집행위는 2022년 4월 지속가능 화학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규제 로드맵(Restriction Roadmap)을 발표하였다. 이는 EU집행위가 화학물질 규제를 위해 작성한 업무지침을

12) 1차 등록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0년 11월 30일까지

2차 등록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3년 5월 31일까지

3차 등록 (연간 1~1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8년 5월 31일까지

13) 영국의 경우, 2018년 8월말 기준 등록 건수 4,396건에 화학물질 수가 2,298개였는데,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영국 기업은 EU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없다. EU/EEA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영국 기업은 대리인(representative)을 통해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국내 제도로는 UK REACH가 있으며 이는 EU REACH의 주요 원칙을 계승한다.

(<https://www.hse.gov.uk/brexit/reach-guidance.htm>)

공개한 것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일종의 규제 예고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동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향후 집행위가 제안할 화학물질 관련 법안의 근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집행위는 2027년까지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전면 개정 등을 준비중이고, 2023~2024년 초안 발표가 전망된다.

동 로드맵은 투명성과 시의성을 위해 3가지 목적(objectives) 설정하였는데, 우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여건에 따라 목록 변경(rolling list)도 가능하다. 목록은 발암, 호르몬장애유발, 생식장애유발 등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난연제, 비스페놀, PVC 플라스틱, 1회용 기저귀에 포함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PFAS) 등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목록은 개별 물질(substance) 단위가 아니라 구조나 특성이 비슷한 물질군(group)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집행위가 강조해 온 화학물질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유럽환경청은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군)에 대해서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등 현행 규제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규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EU집행위는 자신들이 준비중인 화학물질관리정책 전면 개정 이전에 유해 화학물질 대부분이 제품이나 공정에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용차와 경상용(Van)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EU 집행위는 자동차업계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획기적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제를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EU는 2009년과 2011년 관련 규정들(Regulation EC 443/2009, Regulation EU 510/2011))을 제정하여 승용차 및 경상용차(밴, 적재중량 3.5톤 미만, 공차 중량 2610kg 미만)에 대해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였다.

승용차와 경상용차(밴)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 목표

목표 연도	승용차	경상용차
2015년-	130 g-CO ₂ /km	
2017년-		175 g-CO ₂ /km
2020년-	95 g-CO ₂ /km	147 g-CO ₂ /km

한편, EU집행위는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5%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2021년 7월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발표하였고, 2022년 11월 EU이사회, 유럽의회, EU집행위 3개 입법기관이 개정안 수정에 합의하였고, 2023년 중 발효될 전망이다.

강화된 법안의 핵심은 2035년부터 등록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야 하며(2021년 대비 100% 감축), 2030년에는 승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55% 감축하고, 경상용차의 경우 50%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2035년부터는 전기차, 수소차 등만 등록 가능하다.

아울러,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7) (안)을 발표했는데,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차 등록이 금지되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2035년 이후에는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따라서 이번 Euro7이 마지막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및 경상용차(최대중량 3.5톤 이하 차량)의 경우 2025년부터, 트럭과 버스는 2027년부터 기존 Euro6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휘발유·디젤 등 기존 Euro6의 연료별 분리 배출규칙을 단순화하여 승용차와 경상용차에 연료 구분 없이 단일 배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휘발유 승용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Euro6와 같은 60mg/km으로 유지되며, 디젤 승용차의 경우 기존 80mg/km에서 휘발유와 같은 60mg/km으로 강화된다.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시내주행 등을 고려하여 10km 이하 주행에 대한 별도의 완화된 기준(질소산화물의 경우 600mg/km)을 함께 마련한 점도 돋보인다.

신규 승용차와 경상용차(Van)에 대해서 Euro7의 배출기준을 사용 10년 및 주행거리 20만km까지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존 Euro6보다 내구성 요건 2배 강화했으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환경영향까지 고려하여 신규 승용차 및 Van의 타이어 및 브레이크에서 배출되는 미세입자(PM 10)와 배터리 성능도 규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연소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은 없지만, 타이어 및 브레이크 관련 배출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형차량(HDV)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또한 EU집행위는 2014년 5월에 대형차량의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관한 대화문을 채택하였으며, 2018년 5월에 대형 트럭 등 중량자동차(havy-duty vehicle)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 규정안(Regulation setting CO₂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heavy-duty vehicles)을 제안하였다¹⁴⁾. 동 규정안은 대형트럭(소형 트럭, 버스, 트레일러 등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데, EU 전체적으로 신규 등록 대형 트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19년 배출수준 대비 15%를 감축해야 하고(의무목표), 2030년까지 최소 30%를 감축하여야 한다(잠정 목표). 동 규정에 대한 중간 평가를 2022년에 실시하여,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확정하고, 소형 트럭, 버스, 트레일러 등 다른 중량 자동차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를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차량제조사들에게 업체별 차량 구성, 특징 등을 감안하여 목표량을 gCO₂/km로 환산하여 할당하고, 제조사들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EU 시장에 출시하는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연료 소비량을 EU 집행위가 개발한 톨(VECTO)을 이용하게 측정하게 된다.

동 사안에 대해 2019년 2월 유럽의회와 EU각료이사회는 신규등록 중량자동차(대형트럭)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을 2025년까지 15% 감축(2019

14) EU 집행위 보도자료 (2018년 5월 17일): Europe on the Move: Commission completes its agenda for safe, clean and connected mobility

년 배출수준 대비)하고, 2030년까지는 30% 감축(2019년 배출수준 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EU는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ETS) 지침을 개정하여 항공부문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4년 4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까지는 유럽 역내 간 운항편(intra-EU flight)에 대해서만 ETS를 적용하고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해외 항공사의 EU 역내 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도의 도입은 2016년 말까지 유보(stop-the-clock) 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EU 의회와 EU 이사회는 EU 역내와 EU 역외 지역간의 항공 운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재차 유보하는 내용으로 EU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다¹⁵⁾. 이에 따라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는 2023년까지 EU 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2019년 12월 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면서,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1990년 대비 40% 감축→55% 감축)하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을 제정 발표시켰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기후법의 후속조치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 'Fit for 55 Package'를 2021년 7월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해양 부문을 ETS에 포함시키고 수송, 건물 등의 분야에 별도의 ETS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역외 항공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항공 부문 무상할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해양·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ReFuelEU Aviation Initiative 및 FuelEU Maritime Initiative 제안하였다. 우선, 항공사들은 EU 공항에서 출발할 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15) EU 의회는 2017년 12월 12일 동 지침개정안을 표결로 채택하였고, EU 이사회는 2017년 12월 13일 동 지침 개정안에 서명하였음.

(SAF)를 섞은 항공연료(SAF-blended aviation fuel)의 사용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연료 공급자들은 연료 공급자들은 2050년까지 항공연료에 지속가능연료(SAF)를 혼합하는 비율을 늘리는 방안¹⁶⁾이다. 해양 부문에서는 EU항구 선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집약도를 제한¹⁷⁾하는 규정을 제안하였다.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Directive 70/220/EEC이다. 승용차(Category M) 및 2.5톤 이하 소형화물차(Category N1)에 대한 배출가스 지침(Directive 98/69/EC)에 따라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PM)에 대하여 2000년부터 Euro 3 기준, 2005년부터는 Euro 4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2007년 채택된 Regulation(EC) No 715/ 2007을 통해 신규차종 승인은 2009년 9월부터, 신규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2011년 1월부터 Euro 5 기준이 적용되었다. 디젤 차량의 분진(PM) 배출량은 80%(기준 25mg→5mg/km) 감소시키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180mg/km에서 80mg/km로 강화한 Euro 6 기준이 신규 차종의 승인에는 2014년 9월부터, 신규차종의 등록에 대해서는 2015년 9월부터 적용되었다.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HDV)의 배출가스 관련, Regulation(EC) 715/ 2007에서는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의 내구성 확보 및 자가진단시스템(OBD) 장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부터 적용된 Euro 5 기준에 이어 2013년말부터 Euro 6기준(Regulation(EC) No 595/2009)이 적용되고 있다. Euro 6은 Euro 5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 감소시키고 분진은 66%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2015년 독일 Volkswagen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EU는 역내 자동차 형식승인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실험실

16) 2%(2025년) ⇒ 5%(2030년) ⇒ 20%(2035년) ⇒ 32%(2040년) ⇒ 38%(2045년) ⇒ 63%(2050년)

17) - 2%(2025년) ⇒ - 6%(2030년) ⇒ - 13%(2035년) ⇒ - 26%(2040년) ⇒ - 59%(2045년) ⇒ - 75% (2050년)

검사에 추가하여 실도로조건(RDE)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신규등록 자동차는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실험실 배출허용기준의 2.1배 이내,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실제 도로 주행조건을 더욱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1일부터 신규등록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검사방법을 WLTP(Wolr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순환경제패키지 채택·이행 및 플라스틱 규제

EU 집행위는 2015년 12월에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하고,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 집행위는 순환경제패키지 이행을 위한 후속입법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따른 제품규제 강화 및 변화 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상세내용은 1권 및 2권 참조)

정부조달

EU 집행위에 따르면 '18년 기준 GDP의 약 14%(연간 2조 유로)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며, 이중 3,520억 유로 PA 서명국(예: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게 개방하였다.

EU는 단일시장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보다 효율적인 공공조달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공공조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연 2조 유로에 달하는 EU 공공조달시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는 2016년 4월부터 적용중인데, EU는 2014년 4월, 3가지 형태의 공공 조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인 공공계약(Public Contracts), 공공시설(Utilities), 공공사업실시협약(Concession contracts)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EU지침의 실제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의 이행입법이 필요한 바, 당시 이행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다. 동 조달지침은 공공조달 절차의 간편화와 유연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으로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의 단순화는 자국상품구매(buy national) 정책을 막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조달당국이 비용대비 최적의 가치를 보유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각종 필요 자격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self-declaration 만으로 충분하고, 낙찰자만 실제 자격 증명을 위해 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행정적인 편의를 증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조달(e-procurement) 역시 201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우선적으로 전자공고(e-notification) 및 조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후 조달기관에 대한 전자서류 제출(e-submission)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18.4.18일까지는 종이 버전 인정)되었다. 특히, 전자조달 관련 주목할 만한 것이 E-Certis라는 무료 온라인 정보시스템인데, 동 서비스는 각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정보, 자주 요구되는 증명서 및 증명서간 상호 동등성 인정 등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신규 지침은 낙찰기준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 기준이 아니라, 가격 외에도 비용(특히 비용-효율 접근 및 제품생애주기비용 등 고려) 및 생산과정/사회·환경적 기준/혁신적 성격 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조달 자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EU에서는 조달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EU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있는 경제를 만들고, 디지털·그린 전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2018년도에 ‘혁신조달 가이드’를 발표한 바 조달절차를 혁신친화적(경쟁적 대화, 혁신파트너십)으로 운용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중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과 관련하여서는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 파트너 선정 계약의 낙찰단계 (2) 낙찰 이후 계약이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단계 (3) 연구개발로 인한 결과물과 실제 구매 단계로 구분된다.

EU는 세계 조달시장의 절반이 외국 입찰자들에게 폐쇄되어 있지만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EU 조달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EU가 상대적으로 개방된 공공조달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3국에 대해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IPI(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IPI를 통해 EU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의 기업에 대한 EU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낮은 제3국의 조달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개요

EU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회원국간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이며, 또 하나는 EU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는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을 통해 단일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정책과 관련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도 지식재산권 통일화 정책의 일환이다.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정책은 주로 저작권이나 위조품 단속과 관련된다. 위조품이나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 시스템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지재권 정책의 통일을 통해 엄격한 위조품 방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가로의 위조품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EU 집행위와 EU 회원국들은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와 집행 등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U의 지식재산권이 EU 이외의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허

EU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각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이 특허를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가들에 등록(validation)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세계지식 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의해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유럽국가들은 1973년 유럽특허에 관한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체결을 통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를 창설하고 그 업무 실행기관으로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을 설치하였다. EPC의 회원국은 27개국인 EU회원국보다 범위가 넓은데, 2023년 1월 현재 튀르키예,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 세르비아 등 39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EPC에 의한 유럽특허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개별 국가마다 특허취득 절차를 별개로 거칠 필요없이 유럽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개별 EPC 회원국들을 대신하여 유럽특허청이 특허여부를 통합하여 판단한다. 즉 EPC에 의한 유럽특허는 출원 및 심사단계까지는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특허는 출원과 심사단계까지만 통합

된 제도일 뿐 정작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의 등록 및 분쟁은 여전히 개별 국가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유럽특허를 이용하더라도 출원인은 여전히 유럽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여야만 해당 국가내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개별 국가별로 각각의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회원국마다 별도의 중복된 제도 운영은 많은 특허획득 비용을 초래하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의 유럽특허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특허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단일특허제도〉

가. 개관

EU회원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타 국가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EU가 많은 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가 20개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거기마다 각각의 회원국들이 별도의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번역비용, 대리인 비용과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3개 EU 회원국을 지정하여 유럽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균 20,000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 중 14,000유로가 오직 번역에만 소요되는데,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약 1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유럽특허의 취득은 평균 5개국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허 소송의 경우에도 개별 사건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고비용, 복잡한 제도, 국가간 상이한 판결의 가능성 등으로 비효율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0년 8월 EU 집행위는 공동체특허에 관한 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EU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여, 발명자 및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자는 것이었다.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에는 공동체 차원의 통일된 지재권 제도 설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공동체특허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한편으로 논의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사용언어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단서 규정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논의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었다.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공동체특허는 EU단일특허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나. 단일특허규정안의 내용 및 추진 상황

단일특허 규정안의 목적은 기존의 특허제도(개별 국가의 특허제도 및 유럽 특허제도)와 병용되는 EU회원국에 적용할 새로운 단일의 특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참여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EU특허의 논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특허 절차 중 사용언어, 회원국 특허청의 역할 및 EU특허의 재판관할 등 3가지 사항이었다.

사용언어의 경우, 번역비의 절감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EU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언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적 정서나 자국민들의 EU특허 이용시의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자국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유럽지식재산청(EUIPO, 구 OHIM)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이탈리아어 등 5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결국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의 유럽특허청과 같이 공식 언어를 영어, 불어 및 독일어 등 3개 언어로 하거나, 아예 영어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2009년 결정문의 채택과 2010년 7월 번역요건에 대한 절충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EU 통합특허에 대한 진전이 없자 스웨덴, 네덜란드를 비롯한 10개 EU 회원국들은 언어문제에 대한 만장일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소진되어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함을 주장하면서 집행위가 “강화된 협력절차(Enhanced cooperation)”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2010년 12월 8일자 집행위에 제출하였다. Michel Barnier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에서 높은 특허획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평균적으로 회원국 중 단지 5개국만 등록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록 일부 회원국을 대상

으로 하더라도 통합특허를 지체 없이 도입하는 방안을 집행위가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절차를 앞당겨서 2010년 12월 14일자 “강화된 협력” 제안서를 이사회와 의회에 곧바로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동 절차의 사용이 언어적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단일시장의 붕괴를 조장할 것이므로 합의도출 노력을 더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이들 두 회원국을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동 절차의 사용에 찬성하였고, 2011년 2월 15일 유럽의회도 EU통합특허의 도입을 위하여 이사회가 동 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압도적 표차¹⁸⁾로 동의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년 3월 10일 통합 EU 특허의 발족을 위하여 25개 EU회원국간 강화된 협력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동 승인에 기초하여 2011년 4월 EU 집행위는 기존 EU특허안에서 “EU특허”라는 용어를 “단일 효과를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라고 교체하고 단일 효과 유럽특허에 대한 법안과 그 번역 요건에 대한 법안 등 2개 법안을 다시 이사회와 의회에 상정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년 6월 27일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강화된 협력절차를 사용¹⁹⁾하여 EU 통합 관련 상기 2개 법안에 합의하였다. EU 집행위-이사회-의회간의 2011년 12월 합의에 따라 급진전되었던 통합 EU 특허 관련 논의는 대부분의 안전에 대해 25개 회원국(언어문제를 이유로 불참한 스페인, 이태리 제외)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EU 단일특허의 무효사건 전담 1심법원인 중앙법원(Central division)의 유치를 놓고 독일, 영국, 프랑스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2012년 6월 29일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중앙법원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을 파리에 설치하되, 특정기술 분야의 사건(런던: 화학 및 의약품), (뮌헨: 기계 및 법원행정)을 분리하는 3원 체제 운영에 합의하였다.

18) 유럽의회는 강화된 협력절차의 사용이 장기간의 합의도출 시도 실패 후 제안된 최후의 수단임이 인정되고 절차에 불참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결국 EU 공동체의 가치를 보호 강화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현존하는 EU 조약과 충돌하는 부분도 없음을 검증하였다고 기술하면서 찬성 471표, 반대 160표, 기권 42표로 동 절차의 사용을 승인하였음.

19) 동 절차의 사용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사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음.

EU특허의 재판관할문제는 별도 전속법원을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법원을 이용하는 방안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상기 2009년 12월 4일 EU이사회 결정문은 유럽특허와 단일특허의 침해 및 무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해 배타적 전속 관할권을 갖는 별도 특허법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3년 2월 25개 EU 회원국이 최종 통합특허법원 조약에 서명하였다. 다만 동 조약에는 EU 단일특허제도에 불참하고 있는 이태리는 참여한 반면 스페인은 여전히 불참하였고 자국 산업계의 반대 등을 이유로 폴란드, 크로아티아도 불참하여 2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특허법원은 1심법원, 항고법원 및 등록처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과 회원국법원(local division) 또는 복수회원국 그룹의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으로 구성된다. 소의 원인 자체가 특허무효인 경우 중앙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회원국 또는 지역법원에 제소된 침해소송과정에서 반소로서 특허무효항변이 있는 경우는 직접 그 법원이 무효여부를 심리하거나, 무효판단부분만 중앙법원으로 회부하거나, 당사자 동의하에 사건 일체를 중앙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EU특허의 행정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유럽특허청(EPO)이 EU특허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 출원, 심사 및 특허부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국 특허청은 자국에 직접 제출된 특허에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수행하되 EU특허와 관련된 출원을 안내하고 출원서를 접수하여 유럽특허청에 송부하며, 특허 정보를 전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EU 단일특허 제도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최소 13개국 이상의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발효되며, 일단 13개국 이상에서 비준되면 비준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프랑스의 비준 완료 이후 독일만 비준을 완료하면 되는 상황에서, 2017년 6월 독일의 한 특허변호사가 독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통합 특허법원협정 비준법안이 독일헌법을 위배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독일, 영국 등 주요국 IP관련 전문가단체, 협회 등에서 동 소원에 대한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동 소원이 기각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2020년 3월 독일 현재는 연방의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효를 선고 했다.

더구나, 2020년 7월 영국이 브렉시트 후속조치로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을 철회하면서 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 출범의 전망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COVID-19 비상사태 국면에 따른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규법안을 신속히 마련하였고, 비록 신규법안에 대해서도 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UPCA 이행 법안에 대한 예비적 금지 신청(applications for preliminary injunction)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마침내 2021년 8월 독일에서 UPCA 이행 법안이 발효되었다.

이와 같이 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 시행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독일의 UPCA 이행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UPCA 예비적용에 관한 프로토콜(Protocol on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UPCA)이 2022.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판사 임용·IT 개발·하위 법률 정비(Rules of procedure)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준비가 2023. 6. 1. 출범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다. 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의 장단점 및 대응방안

단일특허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통합특허법원에서는 하나의 판결로 참여하는 국가 전부에서 유효한 침해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다수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반면, 단일특허는 무효 판결의 효력이 모든 참여국에 미치므로 무효의 Risk가 크고, 통합특허법원은 신규 법원이므로 기존 판례가 없으며(no case law) 판결의 경향에 대한 예측 불가 등 불확실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①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수 ②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신뢰도 ③ 사업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 ④ 특허의 유효성 ⑤ 유럽 다수 국가에서의 소송 필요성(multinational enforcement) : 경쟁사들이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경우 ⑥ 비용(validation cost, renewal fees) 등의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유럽에서의 특허권 획득, 보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상표

EU의 상표제도 역시 EU 상표 등록을 통해 전체 회원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개별 회원국 내 상표를 등록하여 개별 국가 내에서만 상표를 보호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EU 상표 등록을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상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초 EU 상표를 출원한 날짜에 기초하여 개별 국가에서 상표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기업이 EU 상표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제3자가 타 회원국에서 기신청 동일 EU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EU 상표의 신청 없이 개별 회원국에만 상표를 출원한 경우, 타 회원국에서 제3자의 동일 상표 획득을 금지할 수는 없다.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서의 상표등록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EUIPO는 EU 전체 회원국에서 유효한 EU 상표를 등록한다. 한편, 신규 회원국의 EU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EU 상표 권리자의 법적 지위는 이미 등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들의 영토에까지 그 효력이 확대된다. 따라서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는 심사나 취소청구가 이루어진 날과 관계없이 가입국의 언어로 성질표시 또는 보통명칭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절대적 등록 거절사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 되거나 등록 후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EU 상표가 가입국의 언어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침해로 피소된 자는 “상표권의 효력을 규정한 EU 상표규정을 원용하여 그 표지가 상표로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EU 상표가 가입국에서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된다.

지리적 표시(GI)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는 특정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 특유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유럽지역은 농업, 낙농 및 농업가공품 등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역사적, 기술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높은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에 관련된 지리적 명칭들 중 많은 수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명칭을 유럽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도록 할 경우 이들 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명성에 피해가 초래되고, 기존에 권리를 누리던 해당 지역의 생산자 등의 경우 영업적 손실을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유럽의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은 와인에 관한 규정(Nos. 1234/2007) 주류에 관한 규정(110/2008) 및 농수산물식품류 관련 규정(510/2006)이 있다. EU는 지리적 표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등록기준을 명확화하고 등록기간을 단축하며, 지리적 표시 관련 절차에 생산자 그룹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2022. 3월 지리적표시(GI)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22.3.31)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등 개정안에서는 ①온라인에서의 보호 강화(정당한 GI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에 등록된 도메인 네임을 취소하거나 GI 권리자에게 이전 가능) ② 생산자 단체 역할 강화(회원국은 자국법에 따라 지

리적표시를 보유한 생산자 단체 중 승인된 생산자 단체(recognised producer group)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GI의 운영·집행·개발에 대한 권한 부여) ③ EU 정책 연계성 강화 ④ 절차 규정 정비(농산품 및 식품·와인·증류주 각 규정의 등록절차를 단일화*하여 ‘농산품 및 식품’ 규정으로 통합, GI 등록 절차에서 EU집행위와 회원국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EUIPO가 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EU 차원의 공예품·공산품에 대한 GI 보호 체계 구축하기 위한 법안('22. 4. 13)도 제출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한-EU FTA에서는 한국은 64개, EU는 162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가 WTO TRIPS 협정 제23조의 포도주 증류주의 보호 수준으로 강화되었으며, 2022년 12월 지리적 표시 품목 추가에 (EU 44개, 한국 41개) 합의하였다.

디자인

EU 디자인제도는 현재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통한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RCD: Community Registered Design)”과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UCD: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의 2종류의 보호체계가 있다. RCD는 출원일로부터 5년간의 디자인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갱신을 통해서 총5회, 출원일로부터 2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UCD는 디자인이 공개된 지 3년간 보호하고 갱신절차가 없다. 보호기간이 짧아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패션업계 등에 유용하다.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과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이 요구되는데, 신규성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에서만 차이가 있다면 동일하다고 보고 있으며, 통상의 정보를 가진 사용자(informed user)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 다르다면 독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현재 EU 디자인 법제(Directive 98/71/EC, Regulation (EC) No 6/2002)는 지난 20여년 동안 개정 없이 유지되어 어온 바, 새로운 디지털 시대

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변화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EU 집행위는 오랜 논의 끝에 2022. 11월 EU 디자인보호 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안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에서는 2009년 이전의 European Community에서 유래했던 등록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에서 등록 유럽 디자인(Registered EU Design, RED)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물품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3D 애니메이션 디자인, 메타버스, 텍스처 애니메이션 시퀀스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품 디자인 보호, 회원국 법제에 디자인권 무효 절차 도입, 참조 사용 및 비평/패러디에 대한 예외적 허용, 회원국의 미등록 디자인 보호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

2016년 9월 EU 집행위의 저작권 개혁법안(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이 유럽의회에 제출된 이후, 회원국간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되어 좌초 우려를 낳았으나, 극적인 합의 끝에 2019년 3월 유럽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은 유럽의 창작자, 공연자, 언론 등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콘텐츠의 사용에 보다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작자와 공연자에 대한 ‘적정하고 비례적인 보상’의 원칙(appropriate and proportionate remuneration)이 EU 저작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고, 언론출판인들의 콘텐츠가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어떻게 재 활용되는 지에 대한 협상을 촉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시민들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익 향상을 위한 규정들이 도입되었는데, 신설된 라이선스 규정을 통해 Youtube 등의 플랫폼에 저작권보호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연구기관, 대학 등은 빅데이터에 대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수행에 필요한 저작권 예외를 인정받음으로써, 연구 등의 목적으로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출판물 및 데이터를 최대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집행

위조품 및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수년간 집중적인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EU는 강력한 지식재산권보호 시스템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분야로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거래와 불법 다운로드의 방지를 거론하고 있다.

위조품과 불법 저작물의 실제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고 기존의 대응체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집행 위원회는 단일시장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 저작물 추방에 관한 논의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였으며, 회원국간의 집행수준의 차이가 이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집행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2012년 6월 5일부터 EUIPO는 기존의 EU 집행위에서 수행해 오던 지재권 침해 감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지재권 관련 산업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U 회원국 내 지재권 집행기관 및 사법당국의 집행결과 기록 데이터베이스, 집행관련 베스트 프랙티스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역내지역 내에서는 물론 그 외부 지역(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EU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U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의 침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국가들과 이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WTO를 통한 국제규범의 개정 등을 통해서도 EU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이 위조품의 주요 원산지로 판단되는 국가의 기업들에 의한 유럽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국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제3세계 국가(중국, 동남아시아, 남미)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IP침해에 관련되거나 실질적으로 IP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감시리스트(Watch-list) 등 제3세계에서의 IP침해 실태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경쟁정책

개요

EU의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의 지속 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EU 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EU회원국의 국가보조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적 장벽설정을 견제하고, 시장감시(market monitoring)와 업종분석(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 나아가 성장 및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 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9년 12월 Margrethe Vestager 기존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수석부집행위원장으로 격상(디지털 정책 업무도 총괄)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카르텔

EU 집행위는 카르텔규제를 최우선 업무로 설정하고 있으며, EU 경쟁당국의 연

례보고서(2013년 5월) 서문에도 “No time to relax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라고 강조하면서 법집행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EU 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해 카르텔 합의처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1990~99년의 10년간 카르텔에 대해 총 6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2000~04년 동안 31.6억 유로, 2005~09년 동안에는 총 과징금액이 무려 78.6억 유로에 달했으며,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2010~14년 동안 총 76억 유로, 2015~22년 7월까지 총 10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사건을 보면, 2013년 7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 하네스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1.4억 유로, 2014년 3월 차량용 베어링 카르텔에 대해 9.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6년 7월에는 Volvo 등 5개 트럭 제조사업자간의 가격 카르텔에 대해 EU의 경쟁법 관련사건 사상 최대 금액인 29.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20년 9월에는 Brose 등 자동차 부품 3개사의 가격 카르텔을 적발하여 18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21년 6월에는 Volkswagen 등 자동차 3사의 디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기술 관련 카르텔을 적발하여 87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우리기업관련 사건들을 보면, 2012년 말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 유로(2.2조 원)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014년에도 4월에 고압전선시장 카르텔혐의로 우리기업포함 11개 업체에 3억 유로, 9월에는 스마트칩 카르텔혐의로 3개 업체에 1.4억 유로 과징금 부과 등 카르텔 적발 및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한국 선사들이 관련된 컨테이너 선사 카르텔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받아 사건의 범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동의 의결 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카르텔 사건에서 이례적이다. 동 사건은 2016년 7월 컨테이너 선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카르텔 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IT, 제약, 통신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벌 출판사들이 연루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년 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인 개선약속에 따른 합의 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다. 특히 제약분야에 있어서 역지불합의라는 특정 유형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집행이 활발했는데, 2013년 6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시킨 Lundbeck 등 몇몇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에 이어 13년 Johnson & Johnson사의 반경쟁합의에 대한 제재 및 2014년 7월 프랑스 제약사인 Servier사와 5개 제네릭약품 제조사간 역지불합의 등에 대한 4.3억 유로의 과징금 부과, 2020년 11월 Teva와 Cephalon 간 수면장애 치료제 관련 역지불합의에 대해 60.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EU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EU 경쟁당국은 2017년 6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 24.2억 유로를 부과 하였다. EU 경쟁당국은 소비자가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경우, 자회사의 쇼핑서비스(구글쇼핑)의 결과를 보다 좋은 위치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자사의 서비스에 특혜를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OS 관련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 43.4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이 검색엔진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제조업체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구글 검색과 브라우저 앱을 선택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약을 가했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3월에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14.9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이 검색광고 브로커링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자신과 경쟁하는 다른 온라인 광고 브로커링 사업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2019년 7월 EU 경쟁당국은 미국의 쉘컴사가 3G 관련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킬 의도로 약탈적 가격설정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2.42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또한 같은 달 EU 경쟁당국은 미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유통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9년 10월 EU는 미국의 TV 셋탑

박스 및 모뎀에 들어가는 시스템 온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구매업체들에게 자사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유인하였다고 판단하여 구매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의 관련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interim measure)을 결정하였다. 임시중지명령은 EU 경쟁법 역사상 약 20년만에 사용된 것인데, Margrethe Vestager EU 경쟁집행위원은 디지털 시장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특정 기업으로의 쏠림(tipping) 현상이 심하고 그 결과 혁신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향후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한편, 2020년 12월 EU 집행위는 소위 GAFA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Gatekeeper로 지정하고 18개의 작위,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등 사전규제 법률인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유럽의회, EU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결합 규율

EU 경쟁당국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00~400여건의 기업결합 신고건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활용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IT, 미디어, 통신, 금융 분야에서 기업구조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1년 EU 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 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6년에는 Hutchison의 Telefonica UK 인수건, 2017년에는 Heidelberg Cement와 Schwenk의 Cemex Croatia 인수건, Deutsche Borse와 영국의 런던증권 거래소간 기업결합건 등 2건, 2019년에는 Wieland의 Aurubis Rolled Products 인수건, Siemens의 Alstom 인수건, Tata Steel과 ThyssenKrupp간 조인트 벤처 설립건 등 3건, 2022년에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건 및 Illumina의 Grail 인수건에 대해 경쟁자 수 감소에 따른 가격인상 우려 등

을 이유로 불허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2020년에는 4월 Johnson&Johnson-Tachosil, 5월 Boeing- Embraer, 2021년에는 2월 Fincantieri-CAT, 4월 Air Canada-Transat, 12월 Air Europa-IAG 사건에서 해당 기업들이 EU 집행위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만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못해 기업결합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였다. 2019년 12월 이후 2022년까지 심층조사(Phase 2)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승인된 기업결합 건은 2020년 5월 Aurubis- Metallo 1건에 불과하다. 또한, 경쟁제한성 심사외에 기업결합 미신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중 기업결합 이행금지 의무 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절차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Facebook/Whatsapp, 2019년 GE/LM WIND 기업결합에 대해 EU 집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으나, 추후 절차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각각 110백만 유로, 52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우리기업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으며, 2021년 1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 및 제도개선

EU는 무엇보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 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년 6월 EU 집행위가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제정안을 발의한 후, 2014년 4월 유럽의회는 동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 11월 10일 각료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2018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이 해당지침의 내용을 자국법률에 반영 완료하였다. 정보접근권한 강화, 경쟁당국의 결정의 증거력 강화 등 손해배상소송제기시의 장애물들이 많이 제거되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절대공개불가임을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경쟁당국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에는 그간 집행위의 고시(notic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진신고감면제도에 대해 회원국들을 직접 구속하는 집행위 규정(regulation)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lective redress)와 관련해서는 EU 집행위는 2013년 6월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collective mechanisms)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경쟁법위반행위를 포함 EU법상의 권리침해 모두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에 관한 것이며, 회원국들에 대해 구속력은 없다. 아울러 EU 경쟁당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바, 이미 2011년 EU 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기업결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공정위,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및 국제 포럼(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공정위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 경쟁정책분야 양자협의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고, 2009년에는 ‘한-EU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그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강화해오고 있다. 그 외 2011년 EU 경쟁당국은 미국-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지침을 개정하였고, 러시아 경쟁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스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국가보조금

EU 경쟁당국은 과거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state-aid) 심사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조금 심사부분은 EU 경쟁당국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EU 경쟁당국은 회원국내 조세심판 관행(tax ruling practices)을 조사해 왔으며, 2015년 10월 룩셈부르크와 네덜

란드가 피아트(Fiat)²⁰⁾와 스타벅스(Starbucks)²¹⁾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었다고 결론짓고 세금추납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8월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대해 불법적인 조세특혜를 주었다며 130억 유로를 애플로부터 환수하라고 명령²²⁾한데 이어, 2017년 10월에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아마존에 대한 조세특혜 2.5억 유로를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²³⁾하였다. 현재 나이지키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세제혜택이 불법적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U 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 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의 개별 회원국들은 자국의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의 하나인 국가보조금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U 이사회의 멤버로서 EU 법령을 제정하는 기능도 행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갈등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EU 회원국들은 투자 보조금

20) 피아트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9월 패소함. 그러나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여 2022년 11월 승소하였음

21) 스타벅스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9월 승소함.

22) 애플은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7월 승소하였음. 이후 2020년 9월 EU 집행위는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였음.

23) 아마존은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5월 승소하였음. 이후 2021년 7월 EU 집행위는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였음.

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반면, EU 집행위는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EU 단일시장 내 경쟁이 왜곡되고 회원국 간 보조금 지급경쟁이 펼쳐지게 될 경우 자칫 EU 통합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투자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이 다른 요소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보조금 지급에 엄격한 잣대를 취하고 있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스코어보드(State aid Scoreboard)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철도, 공공서비스 제외)은 3,843억 유로(EU GDP의 2.4%)였다. 이는 19년도 1,351억 유로(EU GDP의 0.81%) 대비 137% 증가한 수치로서, COVID-19 관련 보조금 지급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전체 보조금 중 COVID-19 보조금은 건수기준 총 384건(6%)에 불과하나, 금액기준 총 2,280억 유로(59%)로서 전례없는 수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COVID-19와 무관한 보조금은 총 1,564억 유로로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는데²⁴⁾,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보조금 통제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분야별로는 환경 및 에너지(770억 유로), 지역투자(183억 유로), 연구개발 및 혁신(164억 유로) 순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당해 3개 분야 총액(1,117억 유로)이 전체 COVID-19와 무관한 보조금 총액의 72%를 차지하였다.

새로운 프레임워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이루어져 왔다. 2012년 1월 30일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이 에너지, 교통, 통신, 우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 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 5월에 EU 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화(SAM: State Aid Modernization)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단일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24) 2019년 대비 91.2억 유로 증가했으나, 당해 증가액은 19년도 기준 전년대비 증가액(134.4억 유로)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2013년 6월 'Regional Aid Guidelines', 2014년 1월 'New Risk Finance Guidelines' 등이 채택되었다.

2019년 12월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에는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등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럽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 Interest, 이하 IPCEI)에 대한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1월), 기후·환경보호·에너지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2월), 연구개발혁신 보조금 심사기준(2022년 10월) 등이 개정되었다. 특히, IPCEI는 다수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별 국가를 뛰어넘어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기술 혁신 및 기반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EU는 2022년말까지 초소형전자공학(2018년 12월 17.5억 유로), 배터리공급망(2019년 12월 32억 유로, 2021년 1월 29억 유로), 수소(2022년 7월 54억 유로, 9월 52억 유로) 분야 IPCEI에 대한 보조금을 승인하였다. 한편, EU는 2020~2022년 동안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Temporary Framework for State aid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e current COVID-19 outbreak)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Temporary Crisis Framework for State aid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following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e by Russia)을 채택하여 수차례 개정하기도 하였다.

2021년에는 지역투자 보조금 심사기준(regional aid guidelines)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이 유럽 낙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시 회원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EU 집행위는 2021년 7월 헝가리의 SKBM 지역투자 보조금(90백만 유로), 2022년 3월 폴란드의 LG에너지솔루션 지역투자 보조금(95백만 유로), 헝가리의 SK On Hungary 지역투자 보조금(2.09억 유로) 지급계획 등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1월 기준 헝가리의 삼성SDI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 지급계획(1.08억 유로)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2021년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EU 전체인구의 47%(28개국 기준)에서 48%

(27개국 기준, 영국 탈퇴)로 확대되었으며, 지역별 인구, 1인당 GDP,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²⁵⁾을 재지정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의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을 확대한 반면, c지역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이 강화되어 새로운 혁신 공정 적응을 위한 기존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었다.

한편, EU는 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들이 EU 내 상품·서비스 판매, 기업 인수합병, 공공조달 분야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역외 보조금(foreign subsidy)을 규제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율 법안(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 집행위가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을 발표한 이후, 2022년 6월 집행위,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3자 합의를 통해 동 법안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2022년 11월 10일 유럽의회는 동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²⁶⁾. 동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역외 기업이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참여시 사전에 EU 집행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역외기업이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EU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보조금으로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상당한 자구노력이 없는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 규모·기간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채무보증, 기업결합을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공공조달에서 과도하게 유리한 입찰을 가능케하는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란 일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25) 지역투자 보조금은 생활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실업이 심각한 지역(a지역),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 지역(c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a지역이 c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도 a지역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26) 2022년 11월말경 EU 이사회 승인 이후 관보 게재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일로부터 규정별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 카르텔이나 기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settled law)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EU경쟁당국은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IT, 자동차, 제약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카르텔 및 시장지배력 남용사건들에 대한 제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유럽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개관

서비스 산업이 EU의 국내총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한다. 이처럼 방대한 EU 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시장환경은 대외시장개방과 내부시장 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EU의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첨예한 시장개방 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GATS 2조에 의거 상당한 분야에 걸쳐 최혜국대우 부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 회원국별 제한정도와 대상산업도 상이하다. EU가 개방하고 있지 않은 분야는 공공, 의료, 교육, 시청각서비스 등으로 어느 나라나 민감하게 취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EU는 통합정도가 매우 높은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 시장의 통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서비스분야 단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시장통합을 저해하는 회원국의 규정을 2009년 말까지 철폐하도록 하는 단일시장 서비스지침(Services Directive)을 채택하였다.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으며, EU 집행위는 국별 이행실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 ①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체 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에 대한 제한 폐지
- ②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행정법규의 대폭 간소화
- ③ 회원국 정부간 협력의무 대폭 확대
- ④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종 자격요건(requirements) 폐지
- ⑤ 개별 회원국내 영업허가시 전 회원국에 적용 등

한편, 2010년 10월 서명된 한-EU FTA에서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분야 중 총 139개 분야를 개방키로 하였으며 ① 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② 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③ 자문·조사·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④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⑤ 건설 및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⑥ 환경서비스, ⑦ 금융서비스, ⑧ 내수운송 등 운송서비스, ⑨ 운송보조서비스 등 분야의 양허수준은 WTO/DDA 협상에서 EU가 제시한 수준보다 높다.

EU는 2021년 5월 2020년 기발표한 EU 산업전략(EU Industrial Strategy)을 개편하여 유럽회복을 위한 더 강한 단일시장(towards a stronger Single Market for Europe's recovery)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EU는 팬데믹으로 단일시장의 사람,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되었다면서, 서비스 측면에서는 새로운 잠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통지의무를 포함하여 회원국이 기존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비스 지침(Services Directive)을 완전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서비스 산업 시장 동향

(1) 통신

1980년대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한 EU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1998년에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공공통신망 독점이 종료되어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통신 서비스 규제가 EU 회원국별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범유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EU 통신 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EU 통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하여 2010년 5월 19일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택하고 디지털 경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타 선진국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뒤쳐져있으며, 회원국별로 고립된 국내 시장, 회원국간 통신망 규제의 비일관성 및 주파수 대역 상이, 농촌 지역 투자 부족 등 난제가 산재해 있었다.

EU 집행위는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의 각종 규제 장벽을 헐고, 28개국의 단일 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6일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490~790 MHz 대역 주파수 배정, 온라인 콘텐츠의 국경간 이동성 보장, 역대 휴대폰 로밍비 폐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EU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5G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EU는 주요 도시에 5G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2020년 2월 EU 집행위는 새로운 디지털 정책(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을 발표하며 디지털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단일시장의 연장선 상에서 EU 회원국간 상이한 데이터 규범을 통일하여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비개인정보(non-personal data)의 회원국간 이동촉진, 사이버 보안 분야 표준, 인증 정책,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계약 행위 근절 등의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2) 금융

EU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를

목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FSAP)’은 회원국 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FSAP는 단일 도매금융시장 완성, 개방적이고 안정된 소매금융서비스의 제공,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는 조세제도 폐지 등 42개 항목에 달한다. 또한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2005~2010년)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 구축에 노력하였다.

EU의 소매금융서비스 통합은 현재까지 다른 회원국 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전과 on-line 등 새로운 유통경로가 금융서비스 제공 및 원격지 판매(distance marketing)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매금융시장의 통합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상품별로는 저축이나 UCITS (Understand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와 같은 소수 분야에서 통합이 다소 진전되었으나 가계 대출 분야 등은 여전히 매우 분화되어 있는 등 통합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들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은행이 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은행 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에게는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면허(single passport) 원칙’이 적용된다. 외국은행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공동체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국 은행 지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 및 재보험 분야는 여전히 EU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다. 역외국 보험 사업자가 EU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 면허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 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EU 역외 지역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사업을 할 경우 EU 회원국에서 직접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험과 재보험의 직접적인 국경간 공급은 해당 EU 회원국의 WTO 의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EU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유럽 차원의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2년여에 걸쳐 논의한 끝에 2010년 9월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동 개혁방안을 2011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개혁 방안의 핵심은 전체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 System Risk Board)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권고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분야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3개 부문별 유럽감독청을 신설하여 EU 차원의 단일 감독법규 및 관행 마련 및 회원국들의 일관된 적용 확보,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중재, 위기시 특정 금융거래행위의 일시적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개의 감독청은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및 증권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으로 불리며, EU는 이들 기관을 최초 런던, 프랑크푸르트 및 파리에 각각 설치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6월 영국의 EU탈퇴 결정으로 런던에 소재하였던 유럽은행감독청은 2019년 6월 프랑스 파리로 이전하였다.

한편, EU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감독시스템 개혁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바젤Ⅲ 도입을 위한 은행자본규제법 개정,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개선, 헤지펀드 규제, 예금보장 한도 상향조정, 공매도 및 CDS 규제강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2013년 9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2014년 1월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EU내 금융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부문에 대해서 위기극복의 비용분담 등 조세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실물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금융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을 위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개혁은 EU내 금융부문의 통합 진전으로 회원국간 상호 의존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별 금융기관 문제의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가 확대되어 개별 국가차원의 감독과 규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EU차원의 통합된 규율을 도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년 6월 EU 정상 회의에서는 EU의 금융부문 통합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간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은행동맹의 핵심은 EU차원의 통합된 은행감독과 정리 시스템, 그리고 예금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으며, 회원국간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은행동맹의 큰 골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은행동맹의 첫 출발점으로 2014년 11월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로서 은행인가 및 취소권한부터 은행 및 임직원 제재, 감독대상 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통화정책 기능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어, 실제 감독기능은 동 은행 내에 별도의 은행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를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금융 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소규모 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개별 회원국이 보유하되 필요시 유럽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기로 하였다. 2016년 1월에는 EU 내 부실은행 정리 및 회생을 담당하는 단일정리기구(Single Resolution Mechanism)가 출범함으로써 부실은행 회생 및 정리 체계의 일원화가 구축되었다. 은행에 대한 분담금 부과 방식으로 8년 내 총 예금보장수신의 최소 1% 수준의 은행정리기금을 조성하고 은행 정리시 손실분

담(bail-in) 원칙에 따라 은행이 총 부채의 8%를 부담한 경우에만 해당 기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남은 핵심 구성요소인 단일예금보험기구(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EDIC)의 설립은 진척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EU 집행위가 2015년 11월 설립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독일, 네덜란드 등 중심국들은 위험 공유에 따른 부담 증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우려로 단일예금보험기구 설립 이전에 주변국들의 리스크 축소가 전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EU는 단일예금보험기구의 설립을 위해 2021년 우선과제로 EDIS설립을 선정하는 등 은행동맹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역내 투자부진 해소와 자금조달 창구의 다변화를 통한 고용과 성장촉진을 위해 역내 자본시장을 통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동맹(CMU: Capital Market Union) 액션플랜을 2015년 9월 발표하였다. 동 액션플랜은 중소기업·인프라 분야 등으로의 투자기회 확대, 위기에 강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통합 심화와 경쟁력 제고 등의 원칙하에 스타트업·비상장 기업 지원,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장기·인프라 투자 확대, 국경간 투자 원활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한다.

아울러 2014년 11월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대규모 추가 민간투자를 유발하고자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을 발표하여 2017년까지 총 3,150억 유로의 투자 창출을 목표로 210억 유로의 유럽전략투자펀드(Europe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를 조성하고 인프라 및 혁신 사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7년 9월에는 동 계획의 시행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투자유발목표도 최소 5,000억 유로로 확대하였다.

2019년 출범한 von der Leyen 집행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 하에 유럽투자은행(EIB)은 2019년 11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에너지 대출정책」을 발표하였다. 3대 핵심과제로 ① 2021~2030년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약 1조 유로 규모의 투자 실행, ② 2025년까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 50% 달성,

③ 2020년 말까지 모든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파리기후협정의 원칙 및 목표와의 일관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① 2021년 말부터 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② 투자프로젝트의 온실가스 배출기준(Emission Performance Standard)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한편, ③ EU회원국 중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가 시급한 국가들의 프로젝트(just Transition Fund) 지원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년 9월 EU집행위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분야에 있어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한편, EU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디지털 금융 패키지는 크게 디지털 금융전략, 암호자산 법률안,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률안, 소매결제 전략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디지털 금융전략은 디지털 단일시장의 분절화(fragmentation) 제거를 위해 상호운용가능한 디지털 신원확인체계(digital identity solutions) 구축, 암호자산 법률안 제정 등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EU법률 체계 정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데이터 기반(data-driven) 금융 육성,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resilience) 강화 등 4가지 중점 목표를 설정하였다. 암호자산 법률안은 모든 암호자산(crypto-asset)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는 한편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 및 감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률안은 금융회사들이 사이버 공격 및 여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ICT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EU가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소매결제 전략은 전 유럽에서 활용가능한 소매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즉시결제(instant payments)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EU 카드사(VISA, Master 카드 등)와 대형기술기업(애플, 구글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유로화의 국제적 통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2021년 7월 유럽중앙은행(ECB)는 디지털 유로화 발행의 전단계로서 디지털 유

로화 시제품 설계,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한 「디지털 유로화 프로젝트」를 개시한다고 발표하며, 디지털 유로화 발행을 위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

3) 운송

2020년 EU 집행위는 실무진 백서 평가를 통해²⁷⁾ 백서가 설계한 증장기 타 임라인에 따라 실제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집행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감축을 목표로, 2020년 12월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이동성 전략(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을 발표하고, EU의 운송정책과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및 미래 위기에 대한 회복력 강화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2021년 EU 집행위 운송총국(DG MOVE)의 연간 활동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 EU 집행위가 채택한 ‘Fit for 55’ 패키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운송총국은 (1)해양 운송의 저탄소 배출을 위한 ‘FuelEU Maritime’ 전략, (2)항공 운송 분야에서 화석연료 대비 저탄소 연료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ReFuelEU Aviation’ 전략, 그리고 (3)대체 에너지·원료 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총괄 담당하며 EU의 녹색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운송총국은 EU의 교통 체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각종 법령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회원국 간 연계성을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 지침 및 권고들을 제안하며 운송 산업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운송총국은 2020-24년 전략목표를 발표하여, 유럽 그린딜에 기여하고 보다 디지털화된 교통·운송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세부 목표를 발표했다. 집행위는 EU 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체계 설립을 위해 ‘협력하고, 연결되고 자동화된 모빌리티(Cooperative, connected and automated mobility)’ 개념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2020년 한-EU 화상정상회담 계기 양측은 교통 분야의 고위급 정책협

27)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s executive summary of the evaluation of the white paper (2020.12.10.)

력 회의체를 출범키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출범이 지연되던 중, 마침내 2022년 9월 '제1차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전기·수소차 보급, 항공·해운분야 탄소 감축 전략 등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동 회의의 연례 개최를 통해 한-EU 간 교통 분야 협력 기반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우편

EU의 우편서비스 시장은 연간 1,350억 건, 910억 유로, EU 전체 GDP의 0.72%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그간 EU 회원국 정부 독점 사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왔다.

EU 집행위는 단계적인 우편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서비스 지침을 도입하고 개정해 왔다. 해당 지침의 주요 골자는 정부독점이던 우편서비스 시장의 부분적 개방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규제당국과 우편사업자 분리를 통해 우편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2006년 1월부터 50g 이상 우편물에 대한 민간 사업자를 참여를 허용하고 2006년 10월에는 2009년까지 EU 회원국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50g 미만의 우편물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였다. 일상생활에 보편화된 우편서비스(2kg 이하 우편물, 10kg 이하 소포)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 등을 규제하되, 우편 사업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정부조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EU 집행위의 방안에 대해 프랑스, 이태리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유럽의회는 2008년 1월 우편시장 자유화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고, 신규회원국 및 소규모 회원국에 대해서는 2012년말까지 자유화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15년간의 지나긴 정부독점 개방 및 민영화 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우편면허를 획득한 민간 사업자의 우편시장 참여가 가능해졌다. 다만, Deutsche Post 및 TNT 등 과거 정부 독점사업자에서 민영화된 사업자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2018년 5월 25일 EU는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효하였다. GDPR은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에 더하여, EU 밖에서 EU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역외 기업(단, 간헐적, 소규모의 개인정보처리로써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의 경우 EU 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또한 GDPR에서는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어 IP 주소, 쿠키, 무선인식(RFID) 태그 등이 온라인 식별자에 포함되며, 삭제권(잊힐 권리)과 개인정보 이동권 등이 신규로 도입되었다.

GDPR은 ‘컨트롤러(Controller)’와 ‘프로세서(Processor)’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컨트롤러는 적절한 문서화 의무,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을 충족하는 내부 정책과 조치를 채택할 의무,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 수행 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의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통지 의무,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는 적절한 문서화 의무, 적절한 보안기준 적용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국외전송 기준,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부담한다.

또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 GDPR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여 한다. GDPR은 적법한 역외 이전의 근거로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이전(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 등) 등이 있다. 우리정부는 EU와의 약 5년여 간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한-EU GDPR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공식 채택하였다. 동 결정은 채

택 직후 즉시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한-EU FTA를 보완하고,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R에서는 일반 위반의 경우 1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사업체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심각한 위반의 경우 2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4%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GDPR 시행 후 2022년 10월 기준, EU(회원국)가 부과한 과징금 건수와 금액이 각각 1,352건과 약 21억 6백만 유로에 달한다. GDPR의 다수의 조문이 EU 회원국에게 일종의 자유재량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회원국 감독기관의 동향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그리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있으며, 서양 문명의 발상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2021년 GDP는 2,162억 달러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276달러이다. 그리스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80%), 제조업(16%), 농업(4%)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대표적인 산업은 관광업, 해운업 등이다. 아울러, 그리스는 석유, 가스 유전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보크사이트, 대리석, 철광석, 벤토나이트, 갈탄 등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그리스의 인구는 2021년 말 기준 1,043만명(그리스 통계청)이며, 고등교육을 받고 영어 등 외국어를 구사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리스는 2010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로 2016년 국민소득이 경제위기 이전보다 약 25% 정도 감소하였고, 실업률도 25%를 상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대 후반 들어 세계경제 호황, 관광객 및 수출 증가 등으로 실업률이 10% 후반대로 하락하고, 2018년에 1.5%, 2019년에 1.7% 성장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에 -9.0%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리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위기 극복에 대응했으며, 2021년 2/4분기부터 민간소비 및 관광산업 개선으로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다. 2022년에도 그리스 경제는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압력 등 불확실성은 그리스 경기 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2018년 8월 그리스 정부는 그동안 EU, IMF 등 채권단의 긴축 및 구조

개혁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제금융 지원을 성공리에 종료하였으며, 2022년 4월 IMF 구제금융 잔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상환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리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대규모 민영화 사업, 전자정부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2019년 7월 새로 출범한 신정부는 친기업적(business friendly) 정부를 표방하고 세금인하 및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 확대와 전자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동향

구제금융

그리스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로 EU 집행위,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 구성된 국제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동 구제금융 협정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부문 합리화, 노동고용제도 유연화, 폐쇄직종 전면개방, 연금 합리화 등 새로운 국가발전모델 설정과 정치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규모

(단위 : 억 유로)

	1차 (2010~12)	2차 (2012~15)	3차 (2015~18)	합계
	730	1,538	619	2,887
▲ 유럽 국가	529	-	-	529
▲ IMF	201	120	-	321
▲ EFSF / ESM*	-	1,418	619	2,037

* 2차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F), 3차는 유럽안정화기구(ESM)

2018년 8월 20일 유럽안정화기구(ESM)는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이 종료되었음을 발표함에 따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약 2,887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이 공식 종료되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종료 이후에도 2022년까지 GDP대비 3.5%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하며, 유럽안정화기구(ESM) 등 채권단으로부터 매 분기별로 재정상황, 개혁프로그램 이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아야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EU 집행위는 2022년까지 기초재정수지 3.5% 흑자 달성 의무를 면제시켜 주었다. 구제금융 종료후 그리스 정부는 연금삭감 철회(2019년 1월), 최저임금 인상(2019년 2월) 등 기존에 채권단과 합의내용을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2019년 7월 출범한 신정부는 채권단 의견을 존중하면서 IMF 구제금융 조기 상환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그리스는 2022년 4월에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IMF 구제금융을 조기에 상환하였다. 다만 IMF 구제금융은 전체 구제금융 자금의 11.1%에 불과해 그 효과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1%p 낮추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국가로부터 차입한 529억 유로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2041년까지 20년간 매년 26.4억 유로를 상환해야 하며, EFSF 구제금융은 2023년부터 2056년까지, ESM 구제금융은 2034년부터 206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구제금융 지원과 함께 적용하였던 강화된 감시(Enhanced Surveillance) 프레임워크를 2022년 8월 20일로 종료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리스가 다양한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그리스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2010년 재정위기 이후 12년 만에 정상적인 유럽 국가로 복귀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하면서 재정상황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비쳤다.

거시경제 동향

그리스는 세계경기 회복, 관광객 증가, 수출호조 등으로 2018년 1.5%, 2019년 1.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0년 재정위기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기초재정수지도 GDP 대비 3.5% 이상의 흑자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는 회복흐름을 보이던 그리스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20년 2/4분기부터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020년 2/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5.5%, 3/4분기 -10.8%, 4/4분기 -6.9%, 2021년 1/4분기 -1.8% 등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관광업²⁸⁾, 해운업 등 서비스업이 중심인 경제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리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240억 유로, 2021년 116억 유로 등 총 356억 유로 규모의 경제대책을 추진하였다. 경제대책은 크게 고용유지, 유동성 공급,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3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 1인당 800유로 지원,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 완화(39.66%→36.66%), 일자리 10만개 창출, 매출 감소 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 60% 지원, 대중교통·커피 등 일부 품목의 부가세 한시적 인하(24%→13%), 기업에 대해 유동성 공급 및 부가세 납부 유예,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유예, 실업수당 2개월 추가 연장 및 혜택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경제대책과 함께 2020년 12월말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은 2021년 그리스 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하였다. 2/4분기 15.0%로 큰 폭의 성장을 달성하며 5분기 연속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민간소비, 투자, 수출 등이 고르게 성장했으며, 특히 관광업도 빠르게 회복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스 경제는 2021년 8.3% 성장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2022년 들어서도 소비와 수출이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세를 주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4분기 8.0%, 2/4분기 7.7% 성장하였다. 그리스 경제에 약 25%를 차지하는 관광업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관광부는 2022년 관광수입을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82억 유로를 넘어 약 200억 유로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실업률도 12% 내외 수준을 보이며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22년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그리스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천연가스, 전기, 난방유 등 에너지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0% 이상 상승하였으며, 식료품 가격도 10%

28)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소(IOBE)는 2018년 기준 그리스의 관광업과 연관된 직접적인 산업규모는 GDP의 11.7%인 215억 유로, 간접적인 산업규모 포함시 474억 유로로 GDP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함.

이상 상승함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자리 수대인 10~12% 기록하였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 정부 재정 48억 유로, 에너지 전환기금 58억 유로 등 총 106억 유로²⁹⁾를 지출하였다. 그리스 정부는 전기요금이나 휘발유 가격 등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가격인상으로 인한 부담증가를 정부 재정 등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상승하던 소비자물가는 10월에 전년동월대비 9.1% 기록하며 7개월만에 한 자리대로 둔화되었으며, 전월대비로도 1.2% 하락하였다.

그리스 정부는 상반기 경제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22년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5.6%로 상향 조정했으며, IMF (5.2%)와 EU(6%) 등 기관에서도 그리스의 2022년 성장률을 5~6%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023년에 예정되어 있는 총선과 함께 에너지 위기 영향 등 하방압력은 2023년 그리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간 성장률이 1~2%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스 주요 경제지표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0.7	-0.7	-0.5	1.3	1.5	1.7	-7.8	8.3
GDP (십억 유로)	180.9	176.6	175.2	177.2	179.7	183.4	165.8	180.8
물가상승률 (%)	-1.3	-1.7	-0.8	1.1	0.6	0.3	-1.2	0.6
실업률 (%)	26.5	24.9	23.5	21.5	19.3	17.2	15.8	14.7
재정수지 (% of GDP)	-3.6	-5.9	0.2	0.6	0.9	1.1	-10.2	-7.4
기초재정수지 (% of GDP)	0.4	-2.1	3.8	3.7	4.3	4.1	-6.7	-5.0

29) 그리스 정부는 가계 및 기업의 전기 및 천연가스 보조금 81억 유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60% 환급 3억 유로, 자동차 주유 지원 3억 유로, 농가 비료 및 사료 지원 2억 유로, 취약가구 지원 8억 유로, 에너지 위기대책 이행 및 공공기관 에너지 비용 지원 10억 유로 등 총 106억 유로 지출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부채 (% of GDP)	180.2	177.0	180.8	179.2	186.2	180.5	206.3	193.3
경상수지 (% of GDP)	-0.7	-0.8	-1.7	-1.9	-2.9	-1.5	-6.6	-5.9
무역수지 (% of GDP)	-1.6	-1.0	-1.5	-1.5	-2.1	-1.7	-7.6	-7.9

출처 : 그리스 통계청

그리스 정부는 2020년말 EU의 경제회복기금 지출계획인 국가재건 및 지속 가능 계획(National Plan for Recovery and Sustainability)을 발표하였다. 그리스는 7,500억 유로 규모의 EU 경제회복기금 중 4.3%인 320억 유로를 지원받으며, 이 중 194억 유로는 보조금, 126억 유로는 대출금으로 이는 그리스 GDP의 약 10.3%에 해당한다. 보조금 194억 유로 중 164억 유로는 4대 핵심분야에 지출하고, 30억 유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농업 기금에 사용할 예정이다. 126억 유로의 대출금은 제로금리로 개혁 및 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4대 핵심분야는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고용·기술·사회적 결속, 민간 투자 및 경제 전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가재건 및 지속가능 계획 (National Plan for Recovery and Sustainability)

분 야	주 요 내 용
녹색 전환	크레테(Crete) 섬과 시클라데스(Cyclades) 지역 섬의 전력망을 본토와 연결, 건물 에너지 업그레이드, 도시 및 공간 계획 개혁, 자연재해 및 환경보호 등
디지털 전환	5G 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건물 광섬유 설치, 국가와 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
고용·기술·사회적 결속	노동시장 정책 및 노동법 현대화, 직업교육 및 훈련 현대화, 개인 의료기록 및 의료서비스 디지털 전환, 차별에 대한 투쟁 및 사회적 혜택의 합리적 강화 등
민간 투자 및 경제 전환	세법 체계화, 공공행정 현대화, 자금세탁 및 부패 척결, 사법행정의 가속화, 대학 연구와 생산의 연계 등

그리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다. 피치(Fitch)는 2020년 1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2020년 11월 무디스(Moody's)는 B1에서 Ba3로, 스탠다드 앤amp;푸어스(Standard & Poor's)는 2021년 4월 BB-에서 BB로 올린 후

2022년 4월에도 BB+로 올랐다. 다만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아직 투자등급에는 미치지 못하고 투기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스의 국채 금리(10년 만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 내외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0년 9월에 발행한 국채(10년 만기)는 역사상 가장 낮은 1.23%의 금리로 25억 유로를 조달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간 신용등급이 낮아 적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그리스 국채가 ECB의 채권매입 프로그램(PEPP)에 포함되었다. 2022년 들어서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로 그리스 국채 금리도 빠르게 상승하여 4% 초반대까지 상승하였다.

교역 환경

무역 장벽

EU 회원국인 그리스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통상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공동역외관세, 반덤핑관세, 수입쿼터제 등 무역관련 주요 정책은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하다. 또한 한-EU FTA 발효로 양자간 관세가 철폐되고,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로 우리나라의 교역 장애 요소는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그리스 수출입 동향

한-그리스 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10월
수출	1,628	978	1,674	863	2,030	1,144
수입	446	604	528	796	1,309	699
무역수지	1,182	374	1,146	67	721	445

출처 : 한국무역협회

그간 우리나라는 그리스를 상대로 비교적 큰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왔다. 그리스는 우리 조선업체의 최대 시장 중 하나로 그리스로의 수출금액

중 약 70% 이상이 선박이다. 이로 인해 선박 수출 상황에 따라 수출 규모가 크게 변동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대그리스 수출은 20.3억 달러, 수입은 1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선박 인도 지연 등 선박 수출이 2019년 13.3억 달러에서 2020년 6.0억 달러로 54.7%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도 0.7억달러 크게 줄어들었다. 2019년 한국의 대그리스 수출은 16.7억 달러, 수입은 5.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한국의 대그리스 선박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가 모두 줄어들었다.

2022년 10월 기준 한국의 대그리스 수출(누계)은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3% 감소하였다. 2021년 이후 선박 수주가 호조였으나 수주-건조-인도 간 시차로 인해 수주 호조가 실적에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10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34.9% 감소한 7.0억 달러이다. 이는 대그리스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프타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38.3% 감소한데 기인한다. 나프타 수입 감소는 한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나프타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그리스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 합성수지, 승용차, 기타산업기계, 무선전화기이며, 수입품목으로는 나프타, 의약품, 동조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축전지 등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4월부터 그리스산 키위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2021년 그리스산 키위 수입액은 14.6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84.7만 달러로 6배 가까이 늘어났다.

○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출 현황

(단위: US \$ 천, %)

품목명	2021년		2022년(10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선박	1,643,501	173.3	771,964	-29.6
합성수지	83,627	106.8	64,516	-5.5
승용차	59,457	107.4	50,737	-1.7
기타산업기계	9,267	-41.0	19,613	141.7
무선전화기	5,749	229.9	19,607	389.3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입 현황

(단위: US \$ 천, %)

품목명	2021년		2022년(10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나프타	1,080,334	80.1	547,747	-38.3
의약품	136,634	70.0	81,440	-26.5
동조가공품	6,659	112.6	8,101	41.4
기타농산가공품	7,353	-3.1	6,396	-0.6
축산지	4,701	17.4	4,708	16.9

출처 : 한국무역협회

선박 및 선박기자재 수출 시장

2020년말 기준 그리스 선주의 선박은 4,705척(1천 톤 이상 선박만 집계)이며, 재화증량톤수는 373백만 톤으로 전 세계 선박의 18.2%를 차지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 국가별 선박 점유율

(단위 : %)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순위
그리스	16.7	17.3	17.8	17.8	18.2	1
중 국	9.0	9.6	10.5	11.2	11.9	2
일 본	12.1	11.7	11.5	11.4	11.8	3
독 일	6.1	5.6	4.9	4.4	4.2	6
한 국	4.4	4.0	3.9	3.9	4.2	7

*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 선적 기준이 아닌 선박 소유 기준

2021년 한 해 동안 그리스 선주는 총 143척의 선박을 발주하면서 이 중 54.5%인 78척을 우리나라 조선업체에 발주하였다. 이는 2021년 우리나라가 수주한 406척의 선박 중 19.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21년 수주규모는 물동량 증가 및 해운운임 인상 등 해운업이 호황을 맞으며 2019년 57척, 2020년 44척과 비교해 3백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1위 해운국인 그리스와 조선 1위인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리스 선주사들은 고부가가치인 LNG 선박의 경우 전량을 우리 조선업체에 발주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산업통산자원부와 그리스 해운부간 ‘해양 및 선박기술 협력 MOU’ 체결 이후 선박용 기자재의 양국간 교역 규모(수출+수입)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2.3백만 달러에서 2015년 2.7백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6년 2.5백만 달러, 2017년 3.8백만 달러, 2018년 9.7백만 달러, 2019년 7.7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각각 4.5백만 달러, 2.7백만 달러에 그쳤다. 한편 2019년 10월 한국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에서도 그리스 거점기지를 개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그리스 대사관은 그리스 유력 선주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유지하여 우리 조선업체와 조선기자재 업체의 수주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테네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해운박람회인 포시도니아 박람회³⁰⁾ 기간 중 ‘한-그리스 해양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포시도니아 박람회가 취소되면서 ‘한-그리스 해양협력포럼’도 취소되었다. 4년 만에 개최된 2022년 포럼에서는 한-그리스 양국 전문가들이 선박금융, 온실가스 규제 대응방안, 조선기자재 협력 제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9년 7월에는 국립아테네공과대학교와 우리나라 한국해양대간 학술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 조선해양공학 학생 간 교류 등 양국 미래세대간의 해운·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투자환경

투자 매력도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이들 지역의 관문 국가이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구사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며, EU 국가 중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30) 2022년 포시도니아 박람회에는 84개국에서 1,962개 업체, 18천 여명의 조선 및 해운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한국은 참가국 중 6번째로 많은 87개 조선 및 기자재 업체가 참가하였다.

또한, 2010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실질 임금이 대폭 하락하였으며, 노동 분야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도 과거 보다 유연해진 점도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에 출범한 신정부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전략적인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를 24%에서 22%로 인하하고,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배당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수입 등)에 대한 특별연대기여금을 면제(2022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면제) 하였다. 또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총 39.66%에서 36.66%로 3%p 완화하였다. 고용주는 24.33%에서 22.54%(1.79%p 인하)로, 근로자는 15.33%에서 14.12%(1.21%p)로 각각 인하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도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였다. 월 650유로에서 월 663유로 2% 인상한데 이어 5월부터 월 713유로로 50유로를 추가로 인상하여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스의 해외투자 유치 정책은 2010년에 제정된 성장법(투자촉진법) (Law 3894/2010)과 2011년에 제정된 경제개발투자법(Law 3808/2011)에 기초를 두고 있다. 2016년에는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민간투자 제고를 위해 신규 성장법(Law 4399/2016)을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과 태양광 발전사업 등에 주로 집중되어 고용 창출이 저조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리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국가 및 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녹색 전환, R&D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성장 및 투자유치 법안을 2022년 2월에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이후 개선되어 최상의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증대를 통해 기반설비(ONEX의 그리스 3대 조선소 인수 또는 지분참여), 에너지(천연가스 공급 및 해상·해저 터미널 건설사업), 데이터 관리부문(Microsoft, Digital Reality, Cisco, Amazon), 제약 관련 첨단기술개발(Pfizer)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한편 탈아연정책과 관련해서도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환경부문에서 Tesla와 Volkswagen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 2019.7월 신정부 출범 후 3년간 유치한 전략적 투자는 Microsoft사의 투자(약 10억 유로)를 포함하여 총 77억 유로 규모

이고 그 중 40억 유로가 신재생 에너지, 나머지는 관광, R&D, 항만, 상업 인프라에 해당한다.

◦ 새로운 성장 및 투자유치 법안 주요내용(2022.2월)

- △기존의 농축산업, 제조업, 물류, 관광업과 △기업의 디지털 및 기술 전환, 녹색 전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형성, 혁신투자 및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신기술 도입 지원, 로봇틱스와 인공지능, 전문인력 고용강화, 창업 및 제조업 지원, △공정한 성장 전환계획에 설정된 낙후지역(그리스 북부) 지원, △부가가치가 높은 고수준 지식 부문에 경쟁력 강화 등 부문별로 동기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경제성장을 추구
- 투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절차가속 및 행정개선 추구
- 지역적 성격 사업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독자적인 투자계획 범주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최초로 일반면제규정(Law 651/2014)을 적용하며 R&D, 환경보호, 장애자 전문교육훈련 등 사회부양성격의 사업을 지원
- 이번 성장법안은 그리스 경제의 약점과 장점을 염두에 두고 2022~2027년 지역강화계획을 위한 기업활동*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추구

* 기업활동 : △기업의 디지털 및 기술 전환, △녹색전환(기업의 환경적 개선), △창업, △공정한 성장 전환, △연구 및 혁신, △농식품업(1차 농어업 생산 및 가공), △가공업(물류업), △대외지향 기업활동, △관광투자 강화, △대체관광, △대규모 투자, △유럽 가치 사슬(value chain) 참여 등

그리스 정부는 EU의 재건기금으로부터 310억 유로의 재원을 확보하여 그 중 130억 유로를 저금리로 대출하고, 180억 유로를 지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국가생산모델의 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생산성 개선에 필수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정부는 기업합병과 관련부문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미 미국의 Prodege, Facebook, Celonis, CVC, 일본의 Nidec사 등이 그리스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그리스의 IT 기술 벤처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22년초에는 JP Morgan이 그리스의 테크 기업 인수를 위해 약 10억 유로 투자계획을 발표하여 4차 산업혁명이 그리스에 뒤늦게 시작했으나 고급인력을 통해 빠른 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에 그리스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회사의 성격에 따라 총 15단계에서 16단계에 달하는 설립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그리스는 2010년 회사 설립 간소화법(One-Stop-Shop/Law 3853/2010)을 통과시켰으며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회사 설립 간소화 제도는 기존 회사 설립 시 여러 기관을 방문해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회사 설립 간소화(One-Stop-Shop) 담당 기관에 1차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추가 기관 부서와 협의해 설립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제도는 담당기관을 따로 두고 진행함에 따라 회사 설립 소요 기간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99개의 상공회의소의 본부 및 지부, 100개의 시민서비스 센터, 세무서, 3,200개 공증 사무소들과 네트워크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행정단순화 및 규제완화법(Law 4441/2016)을 제정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One-Stop-Shop 민원 서비스 제공, 자영업자 개인회사와 파트너십 무한회사 설립 절차의 단순화, 주식회사 S.A. Ltd 설립 시 공증인 참석 전제 폐지, 회사명 검색료 10유로, 회사설립 시 세무기록 제출 전제 폐지, 인지료 70% 인하, 회사설립절차 완료와 동시에 신규 세무자번호와 온라인 세무행정 사용자 코드 발급 및 해당 보험연금공단에 자동 등록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제도와 전자정부 행정을 확대하며 경쟁력 확보에 노력 중이다. 코비드19 보건위기를 계기로 그리스 전자정부체제와 인터넷 구매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2.11월 기준 현재 그리스 전자정부 포털(gov.gr)을 통해 11개 범주 약 1,500여 종의 민원이 처리되고 있다.

다만, 서비스에 대한 현지 인식 및 문화적 차이와 여건상 관료주의, 산업 기반 취약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도로, 금융, 행정 서비스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공공조달의 경우 정치적 혹은 예산상의 문제로 입찰조건이 외국업체에게 불리하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참여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예로, 국내기업 A사의 경우 2010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에 참가해 2012

년에 사실상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었지만 재정위기로 인한 잦은 정권 교체, 담당부처 인사 변경, 재정 악화 등으로 2015년에 계약 체결을 진행했으며 2016년부터 프로젝트 시공을 시작했다. 또한 아테네 구 공항 프로젝트(Hellinikon)를 수주한 그리스 기업 Lamda Development는 2011년 12월부터 입찰을 추진하여 2015년에 수주 및 계약을 체결했지만 좌파세력의 반발과 그리스 각 정부 부처의 의견 차이, 소송 등으로 사업의 본격 착수가 지연된 바 있다. 이처럼 프로젝트 계약 및 프로젝트를 시작까지는 최소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비용과 시간 소모가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설립간소화(One-Stop-Shop)제도도 실제로 1차 구비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그리스어 신청서 양식, 서류 공증 및 그리스어로 작성된 서류가 필요함에 따라 외국인이 현지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현지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³¹⁾

2022년 IMD가 발표한 그리스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63개국 중 47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대 중반 30위 중반권이던 그리스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재정위기 기간중 50위권 후반대로 밀렸나기도 했으나 2020년에 4개 전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하며 총평이 49위로 상승한 후 2021년에 46위로 3단계 상승하였다. 2022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장점으로 높은 교육수준(71.8%)과 숙련 노동인력(71.8%)이 높게 평가되는 반면 경영의 효율성(15.5%), 정책적 안정성(15.5%), 세계 경쟁력(14.1%), 법제의 효율성(12.1%)이 매력적이지 않은 경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2022년 경제성과는 52위에서 51위로 한 단계 상승했으나 정부 효율성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에너지 위기 대처, 물가인상에 대한 사회부양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55위로 하락하였다. 과거 대비 가장 두드러진 개선을 보인 경제성과 요소는 국제무역으로서 무려 22위나 상승하였고 국내경제도 6단계의 상승을 보였다. 기업 효율성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인프라 분야는 약간의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과 비슷한 성과를 보였다.

31) 출처 : 코트라 그리스 국가정보

◦ IMD의 2022년 그리스 국가경쟁력 지표 분야별 순위(총 63개국 대상 47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 경제성과	55	52	51	○ 정부효율성	52	52	55
- 국내경제	58	53	47	- 재정	58	59	60
- 국제무역	26	39	17	- 조세정책	60	61	51
- 국제투자	49	48	43	- 제도여건	49	43	46
- 고용	57	55	59	- 기업규제	34	35	40
- 물가	32	25	27	- 사회여건	35	35	42
○ 기업효율성	51	44	46	○ 인프라	39	39	41
- 생산성	42	39	38	- 기본인프라	43	44	39
- 노동시장	55	44	52	- 기술인프라	43	45	50
- 금융시장	50	52	53	- 과학인프라	40	40	39
- 경영활동	53	48	51	- 보건환경	35	35	34
- 행태가치	48	38	41	- 교육	35	37	36

출처 : IMD 홈페이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도 이후 물가, 임금 연동제를 폐지하고 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하였으며,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조치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개선 추세에 있다.

그리스 정부는 2016년에 ‘민간투자 강화 및 국가경제성장 제도’라는 신규 개발법(Law 4399/2016)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23년까지 총 110억 유로 규모의 민간부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혁신과 수출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가인력활용 및 고용증대, 인력유출 방지, 고부가가치의 상품 및 용역 생산,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증대, 효과적인 전문성 고양, 네트워크-공역작용(synergy)-합작 개발을 통한 사회경제 부양, 기업합병 촉진, 건전하고 전문적인 기업활동(중소기업 강조) 장려, 국가의 재산업화, 환경에 영향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 승인을 받은 경우 자금대출, 이자율 감면, 임대료 및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

센티브의 수혜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창출의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 분야이며 다음으로는 관광 등 서비스 업종이다. 이러한 다양한 인센티브는 투자대상 지역, 분야, 고용창출 효과, 투자유형, 기업의 연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인센티브 신청서는 그리스 투자무역진흥공사(Enterprise Greece) 또는 재무부에 투자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한 신청 기간이 없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www.ependyseis.gr)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 법이 국고 보조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관련 EU제도에 위반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651/2014 E.C. (L 187/1 26-6-2014)을 기반으로 마련되어, 투자사업 추진 관련 지원 및 혜택은 일반 설비(32~36조), 일반 기업활동(37~41조), 중소기업일반(42~46조), 혁신 중소기업(47~51조), 시너지 및 네트워크 형성(52~58조), 금융기관 및 기금(59~61조), 지역-직종별 지원(62~64조), 대규모 투자(65~69조)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또한 그리스 정부는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최소 투자 단위를 변경했다.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여부에 따라 5백만 유로와 50만유로의 2단계로 되어 있었으나, 2019년 3월 1천5백만 유로 규모 이상의 투자 시 면세규모를 7백만 유로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중소기업(동업·합작·클러스터)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소기업은 15만 유로 이상, 극소 기업은 10만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투자자는 투자규모 예산 중 25%를 자기 자본으로 확보해야 하며 정부 보조금과 은행 대출로 나머지를 충당할 수 있다.

2014년 그리스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주택 투자자에게 거주비자(골든 비자)를 발급해주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대상 체류 비자 제공 투자 촉진법(Law 4251/2014)을 도입했다. 그리스에 있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 총 25만 유로(부가세 등 세금 제외) 이상의 매입 시 EU 국적인 대상으로 10년, EU 국가 이 외 국적의 투자자들에게는 5년의 체류 비자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주택의 소유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체류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를 포함해 체류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그리스 투자무역진흥청에 의하면 러시아, 중국, 튀르키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매년 골든 비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자본유치를 위해 2020년부터 그리스를 세금신고지로 설정하고 그리스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경우 소득세와 사회연대기여금을 최장 7년간 50% 인하하는 인센티브(Law 4646/2019)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7개국으로부터 80여건의 투자와 함께 약 1,200명(외국인 퇴직자 200명, 그리스인 1천명)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다. 현 정부의 개혁 정책과 함께 이러한 인센티브는 지난 10년간 재정위기 기간중 해외로 떠난 청년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초타키스 총리는 정부의 노력으로 brain drain에서 brain gain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그리스는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 공함에 따라 Microsoft, Tesla, Pfizer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블라(Bourla) Pfizer 회장은 2021년 6월말 개최된 그리스 기업인연합회 총회에서 그리스(테살로니키) 투자에 앞서 자사의 그리스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 정부의 정치적 결의력을 확보했음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그리스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개선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유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리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그리스는 2020년 39개 프로젝트에서 총 28억 유로를 유치했으며, 2021년에는 프로젝트 수는 30개로 줄어들었으나 투자규모는 총 53.5억 유로로 전년보다 90.2%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2022년도 EY Attractiveness Survey Greece의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는 최근 22년간 두 번째로 높은 증가를 보였고, 외국 기업 중역 250명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3년 후 그리스의 국가이미지 개선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 비율은 2019년 50%에서 2020년 71%, 2021년 75%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한국의 대그리스 투자(누적액 기준)는 총 89건, 17백만 달러이며, 대부분의 투자는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그리스의 대한민국 투자는 총 9건, 11백만 달러이다. 2017년 한국의 A사가 그리스의 문서-음성변환(text-to-speech) 기술

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인수하였고, 2018년에는 B사가 그리스 전력공사와 변전소 설치 계약을 수주하는 등 조선, 전자제품 위주의 투자와 교역을 벗어나 첨단 기술 등으로 협력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민영화 사업 추진 현황

2009년 경제위기에 따른 구제금융 이후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과 협의 하에 민영화를 추진하여 왔다.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온 민영화는 치프라스 총리의 좌파연합 정부가 출범한 2015년에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2015년 8월 제3차 구제금융협정 체결 이후 기존 입장을 전환하여 대규모 민영화 사업을 경제 개혁 조치 중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2011년 이후 그리스 정부가 추진해온 민영화 프로젝트는 총 64개이었으나 주요 사업들은 거의 완료되고 5개 사업(아테네 공항, 그리스 석유공사(Hellenic Petroleum), 3개 항만)이 취소되며 현재 3개의 항만과 요트계류장 민영화와 미래 도로확장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다. 2019년 7월 출범한 신정부는 당초 구제금융 종료와 함께 마무리될 계획이었으나 지연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민영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여 2022년중 22억 유로 규모의 재정수입을 확보하였고 고질적으로 부실한 공기업인 광산공사(Larko)와 크레테의 이라클리오 항만, 볼로스 항만의 입찰절차가 추진 중에 있다. 그리스 북부의 알렉산드루폴리-카발라-이구메니차 3개 항만에 대해 2022년 10월까지 입찰 절차를 추진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들 항만들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였으며 입찰을 취소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개발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그리스 중앙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9년간 그리스에 유입된 해외 직접투자의 20%가 민영화 사업과 관계되는 만큼 민영화 사업은 재정위기 기간부터 현재까지 관광부문과 더불어 그리스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스 자산관리기금(HRADF)은 2021년까지 민영화 사업을 통해 총 113억 유로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면서 국가경제에 200억 유로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소(IOBE)는 2011~2019년 동안 민영화의 재정수입 규모가 약 2만 명의 정규직 고용확대 효과에 상응한다고 분석했다. 자산관리기금(HRADF)은 2021년 내 에그나티아 고속도로(14.9억 유로), 가스공사 기반설비 매각(7.3억 유로), 아테네구공항부지 개발

사업 절차(3억 유로), 지방항만, 요트계류장, 소규모 국유부동산 등 추가적으로 20억 유로 이상의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테네 구공항 부지 개발 사업인 엘리니콘(Hellenikon)사업은 2011년 12월 입찰개시 후 2020년 7월이 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개발시행사인 Lamda Development는 자사가 노하우를 갖추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총 20억 유로가 투입될 사업의 첫 단계는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2021년 상반기에 두 개의 쇼핑몰 부지 개발과 함께 Mohegan-Terna 합작사는 구공항 부지 내에 15천㎡ 규모의 카지노, 3,450개 객실의 5성급 호텔,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경기장 건설(Steelman Partners 설계) 등 총 11억 유로 규모 투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발사는 최근 미초타키스 총리와 Latsis 그룹 회장의 참석하에 시공식을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소개하며 유럽 최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테네국제공항(Athens International Airport) 지분의 30% 매각 절차는 25% 이상 지분 매각시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주간 이견으로 2019년 상반기내 매각작업이 지연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2020년 3월에 지분매각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절차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2021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절차가 재개된 바 있다. 정부는 경제산업연구소(IOBE)의 분석을 근거로 2026~2046년 20년간 매각대상(지분 30%) 수익을 10~15억 유로로 평가하고 입찰을 추진해왔으나, 관광지로서 그리스의 인지도가 높아져 2022년 관광수입이 사상 최대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했던 2019년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2년 9월에 결국 입찰을 취소하고 아테네증권거래소에 공항관리사(AIA)를 상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 최대규모의 철광사인 그리스 광산공사(Larko)는 니켈을 필요로 하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낙후된 설비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Euronickel (GSOL), TELF AGELF(스위스) 등 4개 기업이 그리스 정부와 협상을 진행중이고 당초

2021년 11월에 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취소가 반복되며 2022년 11월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다.

그리스 최대기업인 전력공사(PPC)는 장기간 비효율적인 운영과 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대규모 부채(약 28억 유로)로 2018년부터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후 구조조정과 함께 탈아연정책 추진,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부문에 투자 등을 통해 2020년말 기준 7억 유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며 회생했다. 그리스 정부는 구조조정 완료 후 전략적 투자자를 모색하여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동시에 13.5억 유로의 증자절차를 추진한 결과 2021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2022.11월 현재 40억 유로의 유동자본을 확보하였으며 에너지 위기 대처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그리스 가스공사(Public Gas Corporation)는 2019년 4월 가스공사를 상업적인 부분과 시설부분으로 분리하는 에너지 법안(Law 4001/2011) 관련 내용이 확정되어 민영화 작업을 추진중이다. 법안 시행으로 가스분배, 해외 프로젝트는 별도 법인(DEPA Infrastructure)로 분리되어 현 가스공사 전체 지분(그리스 자산관리기금 65%, 가스공사 35%)에 비례적으로 배분되었고, 나머지 가스공사의 도매 및 소매업 등 기타 상업적인 부분은 DEPA Commercial이란 이름으로 가스공사에 남겨 되었다. 그리스자산개발공사는 상업적인 부분의 지분을 50%+1주 매각할 계획이나, 그리스 행정법원의 소송, 러시아 가스공사(Gazprom)와의 계약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기반설비를 관리하는 자회사(Public Gas Corporation Infrastructure S.A)는 7.3억 유로에 해당하는 지분 30%를 Italgas에 매각하는 절차를 완료하였다.

그 이외에 카발라 해저 가스저장소 건설사업, 전국 17개 요트계류장, 전국 10개 지방항만 등의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초에는 아티키 수도권외곽도로(Attiki Odos) 확장사업 입찰을 계획중이다.

조세 제도

그리스의 조세 체계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받

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는 없으나 외국인이라도 그리스의 자원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가 부여된다. 2010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 정부는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사치세, 연대세(solidarity tax) 등 세율 인상, △법인 및 개인의 소득세 사전 징수제도 도입, △탈세 근절 조치 등 강도 높은 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각종 세금 조정 법안(Law 4389/2016)을 개정했다. 2019년 7월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세금인하를 추진되고 있다.

2016년 개인소득세(Income Tax)는 기존 9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세율은 22%~45%로 조정하였다. 2019년 7월 출범한 신정부는 2020년에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연소득 10,000유로 이하 소득 구간을 신설하여 22%에서 9%로 세율인하를 단행하였다. 아울러, 면세점(tax-free ceiling)은 비혼자의 경우 당초 30% 인하하기로 하였던 방침을 폐지하고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자녀당 공제액 규모를 인상하는 등 면세점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였다.

◉ 개인소득세 세율 변동

개혁이전		개혁이후 (2016년~2019년)		2020년~현재	
소득	세율	소득	세율	소득	세율
12,000 이하	0%	20,000 이하	22%	10,000유로 이하	9%
12,001~16,000	18%			10,001~20,000	22%
16,001~22,000	24%	20,001~30,000	29%	20,001~30,000	28%
22,001~26,000	26%				
26,001~32,000	32%	30,001~40,000	37%	30,001~40,000	36%
32,001~40,000	36%				
40,001~60,000	38%	40,000 이상	45%	40,001 이상	44%
60,001~100,000	40%				
100,001 이상	45%				

◦ 면세점(tax-free ceiling)

구 분	현행	개편
비혼자	8,636 유로	현행 유지
기혼자(1자녀)	8,863 유로	9,000 유로
기혼자(2자녀)	9,090 유로	10,000 유로
기혼자(3자녀)	9,545 유로	11,000 유로

유럽 최고 수준의 법인세(Corporate Tax)는 2019년 29%에서 28%로, 2020년 24%, 2021년 22%로 지속 인하하면서 OECD 평균 23.6% 보다 소폭 낮아졌고, 2010년대 재정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였다.

◦ 법인세 세율 변동

2010	2011~2012	2013~2014	2015	2019	2020	2021-현재
24%	20%	26%	29%	28%	24%	22%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기존의 3단계 세율체계 유지하되, 감면세율 품목을 기본세율 품목으로 대폭 조정하여 감면세율 품목 비중이 기존 37%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2016년부터 세율을 23%에서 24%로 1%p 인상하였다. 2021년 예산안에서 부가가치세의 전면적인 인하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신축 건물 및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부가세는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다.

◦ 부가가치세 세율 변동 및 품목비중 변동

종류	세율변동				품목비중 변동	
	2010.3 이전	2010.7~ 2010.12	2011~ 2016.6	2016.6~	개혁 이전	개혁 이후
① 기본세율	19%	23%	23%	24%	33.6%	62.4%
② 감면세율	9.0%	11%	13%	13%	37.2%	10.3%
③ 초감면세율	4.5%	5.5%	6.5%	6.0%	3.6%	1.8%
④ 면세					25.5%	25.5%

EU 집행위는 그리스에서 부가가치세의 25.8%인 약 53.5억 유로가 탈세되고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 중 루마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탈세율이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20년간 총 1,200억 유로 이상의 부가가치세 탈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신용/현금 카드 결제 단말기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낡은 조세행정을 혁신하고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독립적인 징세기구(IAPR, Independent Authority for Public Revenue)를 2017년 1월 출범시켰다. 2019년 출범한 신정부는 세금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세무조사 실시, 과학적 분석 기법 활용, 의무적 카드 사용 비율 인상(10~15%→30%) 등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그리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우선과제로 삼고 외국인 투자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리스인은 이메일, 전화보다는 대면 접촉을 선호하므로 관계기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그리스 A사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물품 조달 계약을 추진했던 우리나라 B사의 경우, A사로부터의 이메일로 견적서(purchase order)수령 후 A사에 계약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사로부터 명확한 계약행위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서둘러 계약이행을 요구하다 A사의 협상중단으로 B사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스 현지 방문 등을 통해 명확한 의사 표시 및 계약상대방과 네트워크를 충실하게 구축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는 손실이었다.

둘째, 그리스내 유력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그리스내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떤 경우는 그리스 입찰시 유사사업에 대한 입찰 실적(references)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만으로 실적이 부족한 경우, 그리스 현지기업과 협력관계가 필

수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그리스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시 우리측 입찰 설명 및 반영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그리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현지 유력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그리스 입찰 참여시 입찰 참여 회사 간 소송이 빈번하므로 신뢰할만한 법률회사 자문이 필수적이다.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을 회피하기 보다는 가급적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기업의 우수한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그리스 입찰에 참여한 우리기업 C사는 유럽내 컨소시엄 D사로부터 우리가 제안한 설계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D사가 제기한 문제는 설계변경을 통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었으나, 소송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우리기업 C사는 소송참여를 포기하였고 그 결과 D사가 낙찰받게 되었다. 소송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했을 경우 우리기업의 수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였다.

정부조달 시장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역내 정부조달 지침에 따라 관련 정부조달 규정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경제개발부에서 연간 통합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해당분야의 정부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및 입찰과 관련 내용은 EU 규정(Directive 2014/24&25)에 따라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Law 4412/016)에 대부분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률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 따라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온 조달 관련 법률을 통합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동 법률은 조달 및 입찰과정에서의 입찰자간의 동등한 대우와 차별금지를 명문화하여 경쟁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은 ‘정부조달중앙전산기록소’(Central Electronic Registry for Public Procurement, 일명 KIMDIS)에 입찰 및 조달 관련 모든 생애주기 절차(조

달 요청-입찰-입찰자선정-계약체결 등) 관련 기록 및 문서를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입찰 전 과정을 온라인형태로 제공하는 ‘국가전자 입찰 시스템(National System of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일명 ESIDIS)을 구축하여 원칙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온라인 절차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조달 및 입찰의 경우 회계감사기구의 사전 법률검토 작업을 통해 조달 절차의 투명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EU는 입찰 조달에 있어 발주 주체 및 사업유형별로 한계 금액(thresholds)을 규정(2년 주기 갱신)하여 동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원칙적으로 하며, 일정 금액 이하는 각 회원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EU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이러한 EU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6만 유로를 기준으로 이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EU의 사업유형별 한계금액(EU thresholds) VAT 제외

- √ 공사사업 및 운영권 계약: 5,548,000유로
- √ 중앙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 계약: 144,000유로
- √ 중앙정부 이외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 계약: 221,000유로
- √ 건강, 교육, 문화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 750,000유로

한계 금액을 기준으로 한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입찰 방식 및 입찰 방식별 공고기간은 아래와 같다.

한계금액에 따른 입찰방식 및 공고기간			
한계금액	종류	입찰 방식	공고기간
한계금액 초과시	일반 입찰 (general procedures)	공개입찰 (open procedure)	원칙: 35일 온라인 공고시: 30일 사전정보 제공시: 15일
		제한입찰 (restrict procedure)	원칙: 30일(1단계), 30일(2단계)
	특별 입찰 (special procedures)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 (competitive procedures with negotiation)	온라인 공고시: 20일 예외: 15일(1단계), 10일(2단계)

한계금액	종류	입찰 방식	공고기간
		경쟁 대화 (competitive dialogue)	30일
		혁신 파트너십 (innovation partnership)	
한계금액 미만시	20,000유로 이하	수의 계약 (direct award)	제한없음
	20,001~ 60,000유로	약식 공개입찰 (brief and informal tender)	12일
	60,001~ 한계금액	공개입찰 (formal tender)	22일

노동 시장

그리스는 약 35% 정도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 결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기관과 은행권이다. 소매점과 관광업 분야의 노조결성은 일부 제한되어 있으며, 노조는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립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통지 후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노동 3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반면, 독일에서와 같은 노조의 경영참여권은 없다.

그리스의 근로자는 법령(Law 3863/2010 제7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일 기준으로 40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있다. 노동법은 주당 40~48시간 근무시 월 급여 기준 시간당 수당의 25%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당 100%를 지급해야 한다.

휴가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과 근무시간 기준 등에 따라 연간 20일~25일이다. 유급휴가는 1년 차에 20일이 주어지며, 근로시작일이 1월 1일이 아닌 경우 20일에서 실제 근무 개월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이후 매년 1일씩 추가되어 근로자의 전체 경력이 12년이 되거나 동일한 직장에서 10년 근속한 경우 연간 25일이 주어진다. 전체 근무경력이 25년이 되면 26일이 된다.(Law 3302/2004). 출산휴가는 전체 119일로 출산 전에 63일이 주어

져야 하며, 처음 25일간은 고용주와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출산휴가 이후 인력관리공단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6개월의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30개월 간 부모 중 1인은 1시간 지연출근 또는 조기퇴근이 가능하다.

그리스 정부는 2021년 6월 1982년 제정된 노동법을 경제사회 발전에 맞추어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Law 4808/2021)을 추진하였으며, 기업의 유연성, 근로자의 보호 및 동기부여, 국가의 보장 등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 개정 노동법 주요내용(2021.6월)

- 대체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주와 노조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임금감소 없이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일일 근무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연장하고 추가근무 시간은 휴가 또는 다른 근무일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조정 /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음
- 법정 근로시간외 시간외근무 상한을 연간 12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확대
- 물류, 데이터센터, 학교회 활동, 면허증 시험 전산업무 등 일요일 근무 가능
- 노조의 온라인행정 등록 의무화 및 전자 투표 보장 등을 통해 파업결과와 노조조직 운영의 투명성 확보, 파업시 최소 근무자수 33% 하한선을 설정하여 공익 확보
- 재택근무 근로자 및 직장내 폭력 피해자 해고 금지 등 근로자 보호 강화
 - 재택근무 근로자는 근로시간 이후 온라인 연결을 중단하고 응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고용주는 응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디지털 출퇴근 기록을 통한 근로시간 관리를 의무화하되, 은행과 제조업부터 시행
-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자 보호
 - 아버지의 유급 출산휴가를 5일에서 14일로 확대, 자녀 출산 후 첫 6개월 동안 해고를 금지하는 대상을 기존 어머니에서 아버지까지 확대, 부부는 각각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2개월동안 보조금 지원 등

모든 근로자는 사회보장보험 가입 의무대상자로 근로자 채용 시 고용주는 사회보장기관 및 노동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를 발견

할 경우 1인당 10,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Law 4387/2016). 아울러 사회보장기여금은 직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월급의 36.66%에 해당하는 보험연금공단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스의 사회보장은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사망시 적용되는 종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지 노동법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하나, 계약기간 종료 이외의 기타 사유로 해고 시에는 일정 기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해고와 동시에 근로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유효하다. 재직 기간과 서면 통지 여부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관련 절차 진행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반드시 요구된다. 다만 무기계약의 첫번째 1년은 수습기간으로 보아 보상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무효에 대해서 3개월 이내, 해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Law 3198/ 1955 제6조). 동일한 기간 내에 근로자는 노동부나 노동부 산하 노무관리위원회에 관련 조정을 청원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완료시 까지 해고 관련 청구 시효는 유예된다(Law 4611/2019 제48, 58조). 상기 절차 중 해고 사유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한편 2021년 개정 노동법은 해고 금지 사유를 확대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으나, 다만 고용주가 해고 통보를 할 경우 해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근로자의 출근 금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적 정년을 연금 수급과 연계하고 있어 40년 이상 연금 가입자는 62세, 15년(최저 연금 가입기간) 이상 40년 미만 가입자는 67세이며, 통상 67세를 법정 정년으로 본다.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령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연령도 다르나, 2022년부터는 퇴직연령에 관계없이 전체 연금(full pension) 수급자는 62세, 축소연금(reduced pension) 수급자는 67세로 연령이 일원화될 예정이다(Law 4336/2015).

에너지 개발

EU 회원국인 그리스는 EU의 에너지 정책 하에서 자국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하에서 그리스 정부는 △자연과 환경을 보

호를 추구하면서 △모든 에너지 부문에 현실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를 위해 국제적 협조 체계를 구축에 힘쓰고 있다.

1965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스의 에너지 소비량이 5배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EU 회원국 평균 증가율(1.8배) 및 세계 평균 증가율(2.7배)을 넘는 수준이다. 그리스의 에너지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주로 이라크,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란 등으로부터 수입³²⁾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1996년 관련 규정 폐제화 후 소비가 급증하였으며, 주로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알제리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에너지 공급은 2016년에 석유(50%), 석탄(19%), 천연가스(15%), 신재생에너지(12%), 전기(3%) 순이었으며, 2018년에도 석유(46%), 석탄(20%), 천연가스(18%), 신재생에너지(13%), 전기(3%) 순으로 순서는 변하지 않았으나, 석유의 비중이 줄고 천연가스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전체 전력생산의 32%가 석탄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나, EU의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정책에 맞춰 석탄 등 화석연료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감에 따라 2018년 석탄의 에너지 공급비중이 2006년 대비 50%가량 축소하였다. 총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5.9%에서 2018년 13%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9%에서 2019년 29%로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풍력(15.6%), 태양광(8.8%), 열병합(2.1%), 수력(1.6%), 바이오매스(0.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말 정부는 국가에너지환경 전략을 마련하였고, 2019년 7월에 출범한 신정부는 기존의 국가에너지 환경전략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EU 기준인 32%에서 35%로 확대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2020년 10월에는 2021년~2030년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인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NECP)를 발표하였다.

32) 그리스는 이라크(46%), 카자흐스탄(13%), 러시아(12%), 이란(10%), 사우디아라비아(8%), 리비아(7%), 이집트(4%)로부터 원유를 수입(2018년 기준)

2050년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2% 감축, 2005년 대비 56%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총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18%에서 2030년 35%로 높이고,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9%에서 2030년 61%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다만 석탄발전소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단기적으로 10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기 위해 석탄발전소 운영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석탄 채굴도 50%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리스 정부가 석탄 발전소 운영 연장은 일시적인 것이며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도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어 그리스의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경되거나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2030년 NEC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438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그리스 정부는 폐기물 관리법(Law 2939/2001)을 통해 재활용 관리를 개시하였으나, 폐기물 분리수거를 의무화하지 않아 폐기물의 재활용도가 20%로 저조한 수준이다. 그리스는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분리수거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소 설치도 지역사회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9년 7월 출범한 신정부는 신규 성장법(Law 4399/ 2019)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기업 간 민관합작(Public Private Partership) 형태로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 설치와 폐기물 수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2016년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한 아드리아해 횡단 가스관(TAP: Trans Adriatic Pipeline)이 2020년 10월에 완공되어 11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적 운영을 위한 가스구매 입찰을 시작하였다. TAP은 총사업비 39억 유로로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국경인 키포이(Kipoi)지역에서 시작하여 그리스(550km), 알바니아(215km), 아드리아해(105km)를 거쳐 남부 이탈리아(8km)로 연결되는 총 878km의 가스 수송관으로, 연간 수송규

모는 100억 입방미터이며 향후 두 배 수준인 200억 입방미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TAP은 아나톨리안 횡단 가스관(TANAP: Trans Anatolian Pipeline)과 연결되어 카스피 해 아제르바이잔 연안의 샤 데니즈(Shah Deniz)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하게 된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그리스-불가리아 가스관(IGB: Interconnector Greece-Bulgaria) 개통식이 개최되었으며 10월부터 상업적 운영을 시작하였다. IGB는 2009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여러 차례 지연되다가 본격적인 건설은 2019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IGB는 그리스 북동부 코모티니(Komotini)와 불가리아 스타라 자고라(Stara Zagora)를 연결하는 183km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TANAP 및 TAP과 연결된다. IGB의 연간 가스 공급량은 30억 입방미터이며 50억 입방미터로 용량을 늘릴 수도 있어 남동부 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 확보 및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그리스는 북동부 알렉산드로폴리(Alexandroupolis) 지역 및 트라키아(Thrace) 지역에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선박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부유식 LNG 터미널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레비투스사(Revithoussa) 지역의 LNG 해상 터미널의 설비 용량을 기존 22.5만 입방미터에서 37.5만 입방미터로 66% 증가시켰다. FSRU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진척이 없다가 2019년 7월 신정부 출범 이후 그리스를 지중해 지역의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속도가 빨라졌으며, 알렉산드로폴리의 FSRU 프로젝트는 2023년말 상업적 운영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특히 FSRU 프로젝트를 위한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할 계획으로 있어 미국의 관심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그리스는 2018년부터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부터 미국으로부터 LNG 수입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2021년말부터 시작된 에너지 위기 및 2022년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도 대비하여 알제리와 튀르키예(BOTAS, 아제르바이잔)로부터 수입 또한 늘렸다. 한편 2022년 11월에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ExxonMobil)이 그리스 해역에서 천연가스 매장이 가장 유력한 크레타 섬 남서쪽 지역에 대한 탐사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리스 에너지관리공사(EDEYEP)의 초기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유럽 연간 수요량의 15~20%인 2조~2.6조 입방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25~2026년중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진행하고 경제성이 확인될 경우 2027~2028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체류허가

2006년 1월부터 신이민법에 따라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신청 및 발급이 하나로 통합 처리되고 있고, 그간 수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최초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입국 후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5년의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10년의 합법적 체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10년 장기체류 허가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행정시스템의 낙후,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불법체류자 급증에 따른 행정부담 과중으로 인해 체류·노동 허가에 있어서 외국인 거주분 포지역에 따라 관련 규정보다 허가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체류허가 연장시 불만을 감안, 그리스 정부는 투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법인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동 체류허가 권한을 경제부에서 담당토록 하고, 체류허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동법에 근거한 지상사 주재원들의 체류 허가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네덜란드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네덜란드 경제 동향

전형적인 개방형 강소국인 네덜란드 경제는 과거 20년 간 EU 경기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2년 EU 경제성장률이 1.3%로 떨어졌을 때 네덜란드는 0.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5~2007년 경기회복 시기에는 EU 경제성장률을 다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네덜란드는 2009년 -3.3%라는 사상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네덜란드 경제는 2010년 수출을 원동력으로 경기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2011년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2012년 -1.1%, 2013년 -0.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4년부터 국내 재정건전성이 회복되고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진정되면서 네덜란드도 경제위기로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하여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주요 교역국의 경기 호조와 유로화 약세에 힘입은 수출 증가, 국내의 수요 확대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가처분 소득 및 가계소비 증가로 2016년에는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7년부터는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어 2.9%, 2018년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유럽 평균 전망치(2017년 2.4%, 2018년 2.1%)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이어왔다.

그간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민간투자와 소비의 확대에 따른 내수 경기 회복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건물, 운송수단, 장비, 소프트웨어 등

전반적인 제조산업 분야에 걸쳐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비에서는 의류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자동차, 부동산 임대 등 대규모 소비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 자유무역이 보호주의와 무역 분쟁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 점은 개방형 경제구조를 가진 네덜란드 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예년에 비해 낮지만 1.8% 성장했고, 2020년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대외적 경제 충격에도 충분히 대응하면서 1% 대의 성장이 전망되어 7년 연속 경제성장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2020년 초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020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었고, 2020년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하였다. 네덜란드 중앙경제정책분석국(CPB)은 2021년 9월 발표한 거시경제전망(MEV)에서 2021년 경제전망을 기저효과 등의 요인으로 인해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3.5% 성장을 전망했다. 2021년 8월 중순 이후 안정화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및 입원 환자 추이가 지속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회복은 예상보다 빨라서 2022년 8월 발표한 거시경제전망(MEV)에서 2021년 경제성장은 4.9%로 나타났고, 2023년 3월에는 2022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잠정 발표하였다. 경제회복에 따라 재정지출 방향을 피해지원에서 장기과제 해소로 전환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에너지, 생활환경, 교육 및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 보건 및 바이오헬스 분야 정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계획이다. 또한 집값 등 자산가격 상승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 심화, 재정안정성 위협 등의 우려가 있어 공급확대와 재정정책 강화도 계획 중이다.

◦ 네덜란드 주요경제지표 (단위: %, 2023, 2024년은 전망)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경제성장률	1.8	-3.9	4.9	4.5	1.6	1.4
민간소비	1.0	-6.4	3.6	6.6	1.7	1.4
정부지출	1.4	1.6	5.2	0.7	2.8	1.6
민간투자	4.7	-6.3	2.9	1.5	1.3	1.5
수출	2.4	-4.3	5.2	5.3	3.7	2.3
수입	3.1	-4.8	4.0	4.4	4.2	2.5
물가상승률	2.7	1.1	2.7	10.0	3.0	3.1
실업률	3.4	4.9	4.2	3.5	3.9	4.1
재정수지	1.7	-3.7	-2.6	-0.7	-3.0	-2.6

출처 :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 (CPB) 2023년 3월 발표)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동향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진출국 중 9위이며, 유럽 내에서는 최대 투자진출국으로, 2021년 누적 기준 총 211억 달러가 투자신고 됐다. 네덜란드는 신고건당 투자금액이 매우 큰 편으로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투자 건의 0.48%에 불과하나,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3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는 2001년 급증하였다가 2003~2006년 급감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기에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2012년과 2013년 2년간 전체 누적 투자금액의 30%에 가까운 약 3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유럽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네덜란드로의 투자도 급감하였다. 그러나 2019년 216백만 달러 이후, 2020년 1,096백만 달러, 2021년 4,258백만 달러, 2022년 267백만 달러가 네덜란드에 투자되었다.

부문별로는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편중되어 있다. 2012년~13년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광업과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2014년 이후

감소해 전반적인 투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7년 9백만 달러(0건)에 그쳤던 금융 보험업 분야 투자가 2018년 6억 4천만 달러(2건)로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네덜란드 총투자를 두 배 이상 상승시킨 바 있다. 이후 전반적인 네덜란드 진출이 감소한 가운데, 2019년에는 부동산업, 2020년에는 도·소매업의 네덜란드 진출 비중이 높았다.

2016년 약 2.43억 달러(50건)에 머물렀던 신규투자액은 2017년 2.84억 달러(63건), 2018년 8.48억 달러(53건)로 증가했으나, 국제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2019년에는 네덜란드 투자 신고금액이 2.16억 달러(51건)로 감소했으며, 2020년 네덜란드 투자금액은 10.96억 달러이며 신고 건수 57건이었다. 2021년 투자금액은 42.58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신규건수는 56건이며, 2022년에는 48건 2.67억 달러다.³³⁾

한국의 투자는 진출 목적에 따라 크게 물류 거점형, 마케팅 거점형, 우회투자 진출형으로 나눌 수 있다.³⁴⁾ 물류 거점형 투자 진출은 네덜란드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형태로 항만물류가 발달한 로테르담과 항공물류가 발달한 스키폴 지역이 중심이 된다.

유럽 마케팅 거점형 투자 진출은 유럽의 소비시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한 인프라를 가진 네덜란드의 이점을 활용하는 형태이다. 네덜란드에 유럽 총괄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서유럽을 비롯한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까지 마케팅 관할지로 활용하고 있다.

우회투자 진출형은 네덜란드의 유리한 조세제도와 광범위하게 체결한 조세 조약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지주회사 및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회사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최근에는 대한전선이 2019년 네덜란드 국영 송전회사 테넷(TenneT)이 발주한 로테르담 소재 Maasvlakte 해저케이블 설치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고, LS전선이 2020년 TenneT이 발주한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3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

34) Kotra(2020), 「2020 국별 진출전략: 네덜란드」 참고.

공사를 벨기에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수주하는 등 현지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젝트를 통한 진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누적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광업으로 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한국전력공사의 사우디 라빅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 등 우회투자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다. R&D 투자진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국내 대기업의 네덜란드 반도체 부품장비기업 대상 R&D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투자액도 크게 증가했다.

투자환경

2021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국가경쟁력은 2020년도에 이어 연속 4위를 차지하였다.³⁵⁾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의 국제 경쟁력지수에서도 네덜란드가 2021년 4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³⁶⁾ 또한,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1 글로벌 혁신지수에서는 세계 6위를 차지(한국은 5위)했고, 2020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서 세계 190여 개국 중 42위에 올랐다.³⁷⁾ 특히 무역강국답게 국경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수출입 환경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기업활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공조를 통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https://business.gov.nl>)를 통해 외국기업에게도 사업자 등록, 통관 등 네덜란드 내 사업 추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리상 이점

네덜란드는 유럽의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35)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https://imd.org/wcc/world-competitiveness-center>)

36) World Economic Forum (<https://weforum.org/reports/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

37)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base(<https://doingbusiness.org/en/doingbusiness>)

반경 300마일(일일 생활권) 이내 1억7,000만명(유럽 인구의 50% 이상), 600마일 이내에는 2억 4,400만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 기업의 50%가 자리잡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 주요 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라인강과 마스강 사이에 위치한 로테르담은 바지선(barge)과 근해운송선(feeder)을 이용한 내륙 운송 및 근해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200개 이상의 유럽지역 항구와 연결되어 있다.

우수한 물류 인프라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 스키폴 공항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배송품질 가격, 통관의 용이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세계은행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세계물류성과지수(World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 2018년 6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물류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³⁸⁾ 로테르담 항은 2019년 기준 북유럽을 제외한 유럽 해상물류의 36.4%(물동량 4억 6,940만 톤)를 점유하고 있는 유럽 내 최대 항만이다.

효율적인 통관 시스템

EU 회원국에는 원칙적으로 공통의 관세법이 적용되나 국가별로 집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세관 통관 절차가 간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품 반입시 부가세나 통관세 없이 다른 유럽 국가로 수출이 가능하고 보세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축적이다.

또한, 로테르담항은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 정보시스템(INTIS)을 구축하고 있으며,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DI)을 통해 처리한다. 따라서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물류 대행사에서 세관사이트 접속하여 통관 처리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 이후로, 원산지와 생산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투명하고 간단한 원산지 판정(BOI: Binding Origin Information)이 이루어

38) World Bank, World Logistics Performance Index(<http://lpi.worldbank.com>)

지고 있다. FTA 발효에 따른 변화에 맞춰 네덜란드의 통관 시스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어려움 없이 관세 혜택을 받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유치기관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대외개방형 국가로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네덜란드 투자유치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투자진흥청(NFIA: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https://nfia.nl>), 암스테르담의 투자유치기관인 Amsterdam in Business (<https://iamsterdam.com/en/business>), 로테르담의 투자유치기관인 Rotterdam Partners (<https://en.rotterdampartners.nl>) 등 지역 투자유치기관이 있다. 특히 NFIA는 서울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 내 서울 사무소(<https://nfia-korea.com>)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 진출 초기에 투자유치기관은 각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 기업이 법무법인, 회계법인, 그리고 현지 산업별 기관 및 협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투자 기업 주재원의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 처리는 각 지역에 위치한 IN Amsterdam(iamsterdam.com)을 활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진출시 유의사항

네덜란드는 특별한 비관세 장벽이나 차별 정책은 없다. 투자 또한 어떤 외국 기업이더라도 네덜란드 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내국 기업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등 별다른 제재나 특별한 제약이 없다.

네덜란드인들은 영어구사력이 매우 높은 편이라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서는 네덜란드어를 하지 못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법률이 모두 네덜란드어로만 제공되고, 공문서 역시 네덜란드어로만 발행되기 때문에 네덜란드 진출 시 중요한 문서를 번역해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영구직원의 태업 및 직원과의 노사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영구 직원의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성과평가 및 인사 관리체계의 정립을 통하여 이와 같은 노무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에 따라 직원을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토로하는 진출기업들이 많다. 영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경우 고등학력을 갖추고 현지화된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인력 채용이 유연하지만, 네덜란드 시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인력 풀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현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한국은 물론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비해 같은 임금 수준에서 네덜란드 내 채용 가능한 인력이 제한적이며, 또한 IT 능력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노무관리의 또 다른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차별금지나 업무 부하 등의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현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꼽는다. 일례로 네덜란드에서는 차별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직원들 간 갈등으로 빚어진 불만이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이에 대한 조정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사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직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법에 따른 절차에 유의하지 않으면 노사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노사문화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다. 여름에 2~3주 이상 장기 휴가를 가져나 잤은 휴가 및 병가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사내에서 사회·심리적 업무 부담(성희롱, 인종차별, 직무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에게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제도적 대응할 의무를 부과한다.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문화 간 조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노사 간 대화와 이해를 전제로 하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직원들의 행동강령 제정, 현지 직원 병가 시 발생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병가보상보험 가입, 직장 내 사회적·심리적 업무 부담 방지제도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물류 허브로서 EU 및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재수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장려하고 있다. 수입규제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고, EU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제3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제도 등 수입규제조치에 있어서는 EU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를 이행한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EU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일정에 의거,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각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5년에 걸쳐 철폐되었다.

한편,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되어 있어 수입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안전·건강·경제·환경과 연관된 일부 민감한 품목(VGEM: Veiligheid, Gezondheid, Economie, Milieu)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등 제약이 따른다. △폐기물(Waste materials), △멸종위기 동식물, △문화적 물품(예술품, 골동품 등), △동물 사료, △의약품,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전략물자(군사물품 또는 민군 공용 물품), △마약류, △무기 및 탄약, △환경 유해 물질, △동물 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된 목제품은 이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된다.

관세부과와 수입수량 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및 철폐되고 있지만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기술장벽으로는 CE마크 제도, 에너지 라벨링,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 관리제도(RoHS), 폐가전 처리지침(WEEE) 및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의무규제(EuP) 등이 있다.

최근 네덜란드식품안전당국(NVWA, Dutch Food Safety Authorities)과 위험평가국(RuRO, Bureau for Risk Assessment)의 연구 결과, 대나무와 멜라민(melamine) 혼합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건강상 위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2월 두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네덜란드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3국의 식품안전당국은 공동서한을 통해 사업운영자들에게 EU 시장에서 ‘대나무-멜라민’ 상품을 즉시 회수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

통관시 유의사항

상품분류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상품 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물품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에 BTI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면 양식을 교부받아 신청해야 하며, 세관당국은 가장 빠른 시일내 결과(BTI)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정 EU 회원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교부된 물품 코드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BTI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네덜란드에서도 유효하다. 네덜란드 관세청에서 BTI를 교부받기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담당 세관에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교부받은 BTI는 6년간 유효하나, 도중에 물품코드 자체가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네덜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관세 및 기타 조세

관세는 통상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BTW: Belasting over de Toegevoegde Waarde)가 부과된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제품에 21%의 BTW를 부과하며, 일부 식품류에 대해서는 6%의 BTW를 부과해 왔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식품류에 대한 BTW가 9%로 인상되었다. 이외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Accijnzen), 그리고 주스 등 비알콜성 음료에 대해 소비세(Verbruiksbelasting)가 부과된다. BTW와 물품세, 소비세는 네덜란드 국세청 홈페이지(belastingdienst.nl)에서 확인 가능하다.

EORI 번호 (Economic Operation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2010년 1월 31일 이후, EU 회원국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EORI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EORI 번호는 EU 차원에서 도입한 일종의 통관 고유 부호로, 특정 EU 국가에서 받은 EORI 번호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이 번호는 법인, 자연인, 자연인 혹은 법인이 모인 그룹으로 법인격을 갖지

않는 단체(예: 컨소시엄)에만 부여되며 지사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사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취득한 EORI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 역시 2010년 1월 31일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엄격 시행하고 있어 통관 시 EORI 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품세 부과품목(알코올 성분 포함 음료, 향수, 담배류, 벤젠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이미 물품세 품목수입 허가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EORI 번호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EORI 번호가 필요한 기업은 네덜란드 관세청(belastingdienst.nl)에서 신청서 (영문 혹은 네덜란드어)를 다운받아 기입 후 명기된 세관주소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통관절차

직송 통관(Customs Clearance) 절차 흐름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 → 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의 배송 절차를 거치며, 통관에 약 1.5일 소요된다.

물류창고 경유 절차 흐름도

물류 창고를 경유하여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 → 물류 창고로 보세 운송(T1) → 창고 보관 → 세관 신고 및 통관 → 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관세 납부 → 바이어로의 배송 절차를 거친다.

소요 시간 및 제출 서류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통관은 모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 사이트를 접속해 창고사(대형 업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하다. 접속 후 CN번호, Commercial Value, 제

품명, 총량(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은 원산지 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즉시 통관된다. 다만 EDI를 통해 통관 이후에도 네덜란드 세관이 다소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므로 Commercial Invoice, BL, Packing List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인증제도

네덜란드 인증제도

네덜란드 시장은 EU 통일 인증 마크인 CE 마크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네덜란드 자체적인 인증 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EMA-KEUR'라는 인증으로, 제품 수출입시 강제사항은 아니나, 네덜란드 국민 94%가 인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적용되는 국제(ISO, IEC), 유럽(EN), 국내(NEN) 기준은 네덜란드 표준화기관(NEN; Nederlands Normalisatie-instituut)에서 관리하고 있다. NEN은 3만 개 이상의 표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네덜란드에만 적용되는 것은 1,500개가량으로 추정된다. 모든 표준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회사, 소비자, 정부에서 '우수사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NEN 홈페이지(www.nen.nl)에서 각종 제품에 대한 규정을 유료로 구매해 열람할 수 있다.

강제인증

(1) CE마킹 제도(EU 공통)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가스기기, 저압 전기기기 등 24개 카테고리 품목에 CE마킹 지침(93/ 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하여 부착해야 한다.

CE 인증은 대상품목에 따라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네덜란드 인정기관(RvA, Raad voor Accreditatie, www.rva.nl)은 DEKRA Certification(dekra-certification.com) 등 47개 기관에서 CE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⁹⁾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EU 공통)

EU는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2011/65/EU)을 통해 해로운 물질의 규제치 이상(납 0.1%, 수은 0.1% 등)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자기기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SGS Nederland B.V., Intertek, TUV Rheinland 등에서 RoHS 인증을 받을 수 있다.

(3) WEEE - 폐가전제품의 의무 재활용 관련 규제(EU 공통)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으로, RoHS 2002/95/EC와 함께 2003년 2월 제정됐다. WEEE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회수, 재활용, 재생을 목표로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분 및 개인 전자제품 사용자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한다. WEEE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네덜란드 내의 전기·전자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는 법적으로 Het Nationaal (W)EEE Register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전년도에 WEEE 마크를 붙인 제품의 시장 판매, 수출, 회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4) 에너지 라벨(EU 공통)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에서 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에어컨, 건조기, 청소기 등이다. 2021년부터 일부 품목(냉장고,

39) 네덜란드의 CE 인증기관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country.notifiedbody&cou_id=528

식기세척기, 세탁기, TV, 램프)에 대해서는 +등급(A+, A++, A+++)을 적용하지 않고, A+까지의 등급만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는 건물의 신축, 매매, 임대 계약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건물 에너지라벨 미취득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건물에는 450유로, 상업용 건물에는 9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물 에너지라벨은 녹색 A등급부터 적색 G등급까지 나뉘며, 에너지 효율 등급은 단열재 사용, 이중창, 에너지절약 난방장치, 태양전지판 등의 기기 및 재료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라벨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2017년 상반기에 총 62,000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라벨을 보유한 주택은 평균적으로 6,000유로 비싸고, 판매에 1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2%의 주택은 A, B 등급, 15%는 F, G 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실행중인 에너지 라벨의 등급은 건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지만, 2018년 11월 개정된 네덜란드 건축 법령이 발효됨에 따라 사무실용 건물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3년 1월부터 에너지 라벨 등급이 최소한 C를 달성하지 못하는 외교 공관을 포함한 사무실용 건물은 그 소유 및 사용이 금지된다.⁴⁰⁾

(5) 측량도구에 대한 인증(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초가 되는 측량 도구에 대해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 2월 2일 'Metrologiewet(Metrology act)'에 따라 측량도구들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해당되는 측량도구들은 중량기, 경찰용 측정기(호흡 분석기계, 스피드 미터 등), 택시 미터기, 자동차 검진용 측정기, 액체 및 가스 측정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측량도구에 관한 인증을 총 관리하고 있는 네덜란드 경제부는 다양한 기관들에게 측량도구들의 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40) <https://business.gov.nl/running-your-business/environmental-impact/making-your-business-sustainable/make-your-office-energy-efficient-by-2023/>

따라서 네덜란드 및 유럽에 측량도구를 유통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아래의 네덜란드 인증 담당기관을 접촉해 해당 도구에 대한 인증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⁴¹⁾

자율인증

(1) EU 유기농 인증 로고(Organic farming Logo)(EU 공통)

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packaged food)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선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이 유기농 인증로고를 운영하는 기관은 네덜란드의 유기농 검사기관인 Skal이다. 2019년 말 기준 2,076개의 유기농 농장과 3165개의 식품가공업체가 Skal로부터 로고를 획득했다.

(2) 에코라벨(EU 공통)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년 9월말 기준 다목적 세제,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많은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제정된 품목도 계속해서 기준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SMK(smkn.nl)를 통해 해당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3) KEMA-Keur 인증(네덜란드)

KEMA(Keuring Elektrotechnische Materialen Arnhem)에서 전기제품의 안전 상태를 검사하여 인증한다. 1924년 국제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 검사를 통과한 완제품 및 부분품에 인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뿐만

41) Kalibra(<http://kalibra.nl>), Kema Nederland (<http://dnvgl.com>), Kiwa(<http://kiwa.nl>), NMI Certin (<http://nmi.nl>), SGS Nederland (<http://sgs.com>)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KEMA는 세계 20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CE마크 인증은 시장 진출을 위한 강제 인증이나 해당 인증은 부가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천 종의 제품이 해당 인증을 취득하였다. 해당 인증의 취득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유로에서 수만 유로가 소요되기도 하며, 인증 취득 후에는 매 1년마다 해당 제품 생산 공장과 해당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대상 품목은 건식 전원변압기, 고정된 전기설비 스위치, 금속 스위치, 라인트랩, 방폭퓨즈, 변압기, 부스바, 스위치기어, 안정기, 저항기, 전기라우터 및 에지트리머, 전류제한퓨즈, 전압변압기, 전원변압기, 전원케이블, 절연기, 절연부스, 접지스위치, 케이블, 케이블접속기, 케이블중단접속재, 클램프, 타일, 트랜스포머, 퓨즈복합기, 회로차단기 등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dekra-certification.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4) KOMO 인증(네덜란드)

네덜란드 건축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필수인증인 CE 인증에 더하여 KOMO 인증을 취득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해당 제품이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자기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CE 인증에 비하여 높은 대외 공신력을 보장할 수 있다. KOMO 인증은 네덜란드 건축법(Bouwbesluit)과 토질법(Besluit bodemkwaliteit)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KOMO 재단(Stichting KOMO, <https://www.komo.nl>)에서 관리하고 있다.

(5) PEGI 인증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인증은 게임 연령제한 등급 라벨로, 사용자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고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PEGI는 벨기에 소재 ISFE(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에서 2003년 처음 도입

했으며, 30여개 유럽 국가들의 연령등급제도를 통합했다. PEGI는 자율인증이지만 네덜란드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콘솔, 온라인 게임은 PEGI 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며, MS,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게임 제조사들도 PEGI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다.

PEGI 라벨은 게임 포장지에 이용 가능 연령을 표시하는 형태로 부착된다. 연령 레벨은 게임의 난이도나 필요한 기술과는 상관없으며, 유해성 또는 적합성만을 기준으로 한다.

네덜란드의 NICAM(Netherlands Institute for the Classification of Audiovisual Media)와 영국의 VSC(Video Standards Council)은 PEGI 시스템을 관리하고 등급을 체크한다. 3, 7세 연령에 해당하는 게임은 NICAM에서 관리하고, 12, 16, 18세 이상 게임들은 VSC에서 관장한다. PEGI 관련 정보는 <https://pegi.info>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6) 채식 인증(V-Label)

V-label은 EU의 대표적인 채식 인증 제도로, 현재 네덜란드에서 채식인증은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⁴²⁾ 업계 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채식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 구매율이 상승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네덜란드 식품기업 Unilever는 유럽채식연합(EVU)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Unilever 500개 제품에 EVU의 채식인증마크 V-label을 부착했다. 따라서 네덜란드 시장에 제품 수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제품이 유럽채식연합 또는 네덜란드 채식연합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채식인증을 받는다면 시장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v-label.eu/faq>)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2) www.v-label.eu

네덜란드 조세 제도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네덜란드는 법인세율 20~25%,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49.50% 등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글로벌 경제중심으로서 기업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를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당초 네덜란드 정부는 법인세율 구간을 2020년 16.5~22.55%로 인하하고, 2021년에는 최종적으로 15~20.5%까지 인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9년 9월 기존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 감세의 최대 세율은 20.5%에 미치지 못하는 21.7%까지로 제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은 종전과 같은 25%를 유지하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최저 세율은 계획과 같은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기존 20만 유로 이하에서 2021년부터 24.5만 유로로 상향하고, 2022년에는 39.5만 유로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⁴³⁾ 2023년에는 20만 유로까지 15~19%의 세율이 적용되고 20만 유로 이상 구간에서는 25.8%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인세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간	2019	2020	2021	2022	2023
20만 유로 이하	19.0%	16.5%	15.0%	15.0%	19.0%
20만 유로 초과 24.5만 유로 이하					25.8%
24.5만 유로 초과 39.5만 유로 이하					
39.5만 유로 초과					
	25.0%	25.0%	25.0%	25.0%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세대상 소득은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업 지분 및 주식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43) Report "the netherlands 2020 tax budget summary" arranged by Norton Rose Fulbright

저축·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료도 함께 부과된다.

2018년까지 개인소득세율 구간은 4개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에는 개인소득세율 구간을 다음과 같이 3개 구간으로 변경하고, 2021년부터는 2개 구간으로 줄여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⁴⁴⁾

소득구간	세율
0유로 이상, 69,398유로 이하	37.07%
69,398유로 초과	49.50%

또한, 2020년 9월 발표한 2021년 정부예산안(Miljoenennota 2021)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에는 기본 소득세율을 37.10%로 인하하고, 2022년에는 37.07%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또한, 저축·투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30%에서 31%로 인상되지만, 자산규모가 5만 유로(부부 합산 10만 유로) 이하인 경우 2021년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네덜란드 내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나 한국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네 사회보장협약에 따라 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5년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의 경우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가가치세(BTW: Belasting over de Toegevoegde Waarde)

부가가치세(BTW)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납부한 BTW는 전액 공제되거나 환급받는다. 네덜란드에서는 원료에서부터 최종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BTW를 납부해야 하며, 기업은 세무당국에 주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44) <https://www.lorijn.nl/box1/tarieven-inkomstenbelasting-box-1>

대표 BTW 세율은 2012년 10월 종전 19%에서 21%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식품, 물, 농산품, 의약품, 예술품 등 일부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6%의 예외적으로 낮은 BTW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전자 신문, 잡지, 책에 대한 BTW 세율이 21%에서 9%로 낮아졌다.⁴⁵⁾

2013년 말 네덜란드 조세 당국은 네덜란드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세무를 세무 대행업체(Fiscal Representative)가 대리하는 것과 관련해 세법을 제정했다. 네덜란드에 설립되지 않은 외국기업이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네덜란드 세법에 따라 BTW를 납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무 대행 업체를 통해 BTW 유예가 가능하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대행 업체를 통한 BTW 유예만이 가능하며, 세무대행업체가 없는 외국기업은 반드시 BTW를 세관 신고 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네덜란드를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 국가로 이동하는 도관국가로 활용하는 행태를 타파하기 위해, 조세회피처로 지불되는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해 법인세율만큼 높은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Withholding Tax Act 2021)을 마련하였으며, 동 법안은 2019년 11월 14일 하원 승인 및 같은 해 12월 17일 상원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동 법안에 따른 원천징수율은 21.7%이다. 아울러, 2020년 5월에는 2024년부터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21.7%을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부동산세(Onroerendezaakbelasting)

부동산세에는 부동산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금과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 두 종류가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소유주가 동시에 사용자인 경우에는 양측에 부과되는 세금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WOZ value)와 각 지방정부가 정한 부동산세 요율에 따라 다르다. 2017년 주택 구매를 위한 일회성 증여 비과세 허용금액이 작년 대비 89% 증가한 10만

45) www.government.nl

유로로 개정됐다. 증여금액은 오직 주택구매, 집 개조 또는 모기지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고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관없으나 수령자의 나이가 18세에서 40세사이여야 하며,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 2만 5,449유로는 집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양도세 부과 방식은 주택과 그 밖의 부동산으로 나뉘어진다. 주거 목적으로 구매하는 주택은 양도세율이 2%이고 상업건물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일 경우 6%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부터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8%로 인상된다.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였으나 일부가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2%의 양도세가 적용된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젊은 세대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18세에서 35세사이의 주택구매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는 6%에서 8%로 인상된다.

체류허가

우리 국민이 취업, 학업 또는 가족 결합을 위해 네덜란드에 체류하는 경우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단기체류허가(MVV)를 받은 이후 네덜란드 입국하여 다시 정식체류허가(VVR)를 신청하거나, 단기체류허가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네덜란드 입국하여 바로 정식체류허가를 신청한다.

2013년 6월 1일 네덜란드의 새 이민법인 MoMi(Wet Modern Migratiebeleid/ Modern Migration Policy Act)가 발효되면서 기존의 '고급인력' 이민자(주재원 등)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이 법에 따라 고급인력 이민자의 경우 이민법상의 의무와 권리를 '이민자 당사자'가 아닌 해당 이민자를 데려오는 측, 소위 이민자를 고용한 회사 등 '보증인(referent)'에게 부과한다. 즉, 이민자 당사자가 아니라 보증인이 이민자의 장기체류 취득을 위한 절차의 공식적인 주체로서, 직접 체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민청이 허가를 거부할 시 이에 대한 항의 및 재심 청구 등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된다.

특히 비EU지역의 외국인이 네덜란드에서 취업 및 창업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

(Work Permit)를 취득해야 하며, Work Permit 없이 일할 경우 Inspectie SZW⁴⁶⁾에 의해 적발된다. 강도 높은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채용 또는 본국에서 한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Work Permit을 발급한 이후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금융시장

주요 은행

네덜란드 금융/은행 시스템은 경쟁이 치열하고 성숙한 시장이다. 네덜란드 금융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버설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유니버설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은행으로 개인 및 기업 금융은 물론 파인낸싱, 보증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겸업은행 제도를 말한다. 은행 부문은 2020년 2월 기준 총 자산이 약 2조 4천억 유로에 달한다. 전체 은행자산의 약 79.74%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 3대 유니버설 은행은 ING (8,900억 유로), Rabobank(5,900억 유로), ABN AMRO(3,700억 유로)이다.⁴⁷⁾ 이 은행들은 2014년 9월 이래 유럽중앙은행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⁴⁸⁾ 자산규모에서 네덜란드 제 4위의 은행이었던 SNS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를 겪다 결국 2017년 Volksbank로 단일 통합되었는데, 운영은 SNS, ASN 등의 다양한 브랜드의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다.⁴⁹⁾

네덜란드 회사들은 파산율이 높지 않고 금융위기에도 건실한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신규 투자에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 네덜란드 은행들의 이들 회사에 대한 신규 대출은 그다지 많지 않다. 네덜란드 은행들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46) Inspectie SZW(www.inspecitieszw.nl)는 네덜란드 사회고용부(Minist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 산하 기관으로 고용주의 노동착취, 최저임금 미지급, 인신매매, 보험사기 등을 적발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47) <http://thebanks.eu/articles/major-banks-in-the-Netherlands>

48) <http://thebanks.eu/articles/major-banks-in-the-Netherlands>

49) Volksbank 위키피디아

충족해야 하는 Basel III를 따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도 있다.

외환거래 및 외국인 투자

네덜란드는 외환거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외국 기업은 네덜란드 기업을 100% 소유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 이익, 기술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현지 자금 조달도 네덜란드 기업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은행, 네덜란드 은행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며 L/C 결제 등 각종 무역 관련 결제 서비스도 네덜란드 기업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거주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De Nederlandsche Bank, DNB)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인된 은행을 통해 무제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5만 유로 이하의 국제 송금은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모든 국제 결제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관련 부서에서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 기업 간 외환 송금 중 5만유로가 넘는 경우는 반드시 중앙은행에 통보되어야 하며, 송금시 이용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건별 송금시에는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 중앙은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 총괄 보고도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

2018년 5월 이후 EU의 GDPR이 적용됨에 따라 네덜란드에도 GDPR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Wet bescherming persoonsgegevens)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에 네덜란드는 GDPR 이행법(Uitvoeringswet AVG/UAVG)을 제정하여 가능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자국 내에서도 GDPR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법령에서는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이전 받는 국가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경우에만 외국으로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GDPR을 준수해야하며 정보 이전에 있어 단일 관할권으로 간주되는 EEA 역내에서는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역외 이전의 경우 해당 국가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는 국가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재 적절한 보호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안도라, 아르헨티나, 캐나다(상업기관만 해당), 페로제도, 건지, 맨섬, 이스라엘, 일본, 저지, 뉴질랜드, 우루과이, 스위스 등이며, 그 외에는 GDPR 제49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다.

EU의 GDPR하에서 모든 국가는 감독기관을 두어야 하며, 네덜란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독립기구인 네덜란드 정보보호 위원회 AP(Dutch Data Protection Authority: 네덜란드어로 Autoriteit Persoonssgegevens)가 감독기구 역할을 맡고 있다 AP는 벌금 부과, 경고 및 주의, 데이터 처리의 일시 또는 영구 정지 명령, 제3국으로의 데이터 이전 중지의 수단을 통해 GDPR를 이행·감독한다.

네덜란드 내 GDPR 위반 사례

(1) 2019년

- (헤이그 소재 의료기관 The Haga Ziekenhuis 병원)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병원이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미흡 → 46만 유로 과징금 부과

* 최근 헤이그 지방법원은 동 병원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과징금 액수를 46만에서 35만 유로로 감액 결정

(2) 2020년

- (로얄네덜란드테니스협회, KNLTB) 두 명의 스폰서에게 회원 약 35만명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 → 52.5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 (익명의 기업) 근로자 출근 여부 확인 등 근태 관리를 위해 지문 스캔 요구
→ 72.5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 자연인 식별을 위해 처리된 지문과 같은 생체인식 데이터는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이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 금지

* GDPR 제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같은 데이터 처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업체는 두 조건 모두 충족 못함

-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신용정보재단, Bureau Krediet Registratie) 회원 본인의 정보 접근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장벽을 설정, 투명성 훼손 → 83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때에도 일정 비용을 납부(우편을 통해서만 무료 정보 제공 등) 하도록 함으로써 본인 정보접근권 제약

(3) 2021년

- (암스테르담 소재 OLVG 병원) 환자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관리(2차 인증 및 로그인 검증 시스템 결여) → 44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 (Booking.com) 해킹으로 고객들의 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늦게 보고 → 47.5만 유로 과징금 부과
- (엔스헤데(Enschede)시 당국) 도심 중앙 혼잡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무선망추적(wifi tracking)을 통해 쇼핑하는 사람들의 수를 집계한 것이 불필요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판단 → 60만 유로 과징금 부과
- (자재기업 CP&A) 근로자들의 병가 사유를 접수시 불필요한 개인 건강 정보까지 요구 및 처리 → 1.5만유로 과징금 부과
- (극우정당 PVV)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초대 이메일에 101명의 이메일 수신자 이름을 모두 공개하여 개인의 정치적 견해 유출 → 7.5만 유로 과징금 부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14개국은 아동 포르노 근절을 위해 2004년부터 'Cospol Internet Related Child Abusive Material Project (CIRCAMP)'에 참여하고 있다. 네덜란드 경찰은 인터폴과 협력하여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며,

해당 리스트에 있는 자국업체에는 자발적으로 웹사이트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인터넷, 전화 및 우편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공급업자는 소비자에게 ①회사 연락처, ② 제품, 서비스 특성, ③ 구매가격, ④ 배송비, ⑤ 배송·결제방법을 알려야 한다.⁵⁰⁾ 또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제품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⁵¹⁾, 나아가 전자상거래 시 계약, 책임, 분쟁, 상업적 통신에 대한 명확한 지침⁵²⁾을 두고 있다.

한편, Directive 1999/93/EC에서는 전자 서명 및 인증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명자와 고유하게 연결되고 제3자에 의해 식별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은 종이 서명만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50) Directive 97/7/EC

51) Directive 2002/65/EC

52) Directive 2000/31/EC



독 일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2021년 독일 경제는 전년도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4.6%(실질경제성장률)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견조한 수출 및 고용시장을 기반으로 2.9%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2021년 전 세계적인 백신 보급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이 경기를 견인하며, 2분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델타 변이 확산과 더불어 원자재와 전자부품 공급 및 운송 차질이 비용 상승과 제조업의 둔화로 이어지며 완만한 성장세에 그쳤다.

2021년 11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공급망 병목현상이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리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연이어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생산, 소비 및 투자를 압박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22년 9월 초 러시아가 대 독일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12일 독일 정부는 2022년 경제 전망을 기존의 +2.2%(2022년 4월 27일) → 1.4%, 2023년 전망을 기존의 2.5% → -0.4%로 하향 조정 발표하였다.

독일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제4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기준으로는 중국, 미국에 이어 제3대 무역대국이다. 2011년 이래 유로존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독일이 EU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2021년 독일의 GDP는 3조 6,018억 유로로 27개 EU 회원국 전체의 24.9%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1883년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무역을 시작하였고,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 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왔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한-독 간 교역규모는 302.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년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95.8억 달러, 수입은 206.8억 달러로 약 111.1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독 간 무역수지는 2006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점차 확대 추세를 보인다 2019년 이후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독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FTA 또는 무역장벽과 같은 특정 변수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제성장이 저조하고 유로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는 등 우리의 수출환경이 악화되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대독일 4대 수출품목 중 1위였던 선박에 대한 독일의 발주가 급감하였고, 무선전화기는 베트남 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여 대독일 수출통계에서 빠져나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의 경우, 현대와 기아의 유럽 현지생산이 증가하여 현지 시장 내 시장점유율 확대가 수출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국내에서는 독일산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수입은 급증하였다.

한독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유럽경제의 회복과 이에 따른 유로화 강세 전환이라는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함께,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제고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의 세계화에 따라 무역수지를 양자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다자적 관점으로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양국간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독일의 대한투자는 2022년 1~3분기 기준 2.1억 달러(누계기준으로는 1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총 외국인 투자액(누계) 4,243억 달러 중 약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대독일 직접투자는 약 3.4억 달러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7.3억 달러) 대비 절

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7,700만 달러(누계기준으로는 71억 달러)로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기업의 대독일 투자는 주로 유럽 경제의 중심지인 독일에서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영업거점을 구축하고자 판매법인 또는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년 전부터 국내 기업은 현지 고객지원을 위한 연구소 및 서비스센터 형태로 진출 형태를 다양화하고, 독일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한화는 태양에너지기업 Q-Cells을 인수했으며, 2013년 SK는 Continental과 합작법인 설립하고 2013년 삼성은 조명기업 Novaled를 인수하였으며 2015년 나이스홀딩스는 자동차 휠 제조기업 BBS를 인수한 바 있다. 2018년 CJ 제일제당이 유럽 냉동식품 시장 진출을 위해 독일 냉동식품 전문업체인 Mainfrost Tiefkühlfrost GmbH를 인수하였으며, 2020년 1월에는 2차 전지 관련 한국기업 원준이 2차 전지 소재 등 첨단소재 열처리 솔루션 전문 독일 제조기업 ETS(Eisenmann Thermal Solutions)의 지분을 100% 인수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소섬유 열처리 공정 전체를 일괄 구성할 수 있는 노하우 및 동 분야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근 들어서는 독일 내 공급망 재편 가속화와 유럽 역내 GVC 구축 중요성에 따라 현지거점 확보 및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우리 기업의 독일 투자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2020년 2월 현대 캐피털은 독일 렌터카 기업 Sixt의 자회사 Sixt Leasing 지분을 인수했고, 2021년 1월 연성정밀화학은 독일 원료약 기업인 Arevi Pharma를 인수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세계 주요 수출국인 독일은 개방형 통상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EU 및 WTO 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EU 조약에 따라 독일의 통상정책은 EU 통상정책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일의 수출입 제도는 EU의 통상협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도 EU의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 독일의 수입 정책 개관

☐ EU 시장 내 상품과 자본의 자유 유통

-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독일 시장에 무관세로 수입된다.
- EU 시장 내에서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 EU 관세 규정 적용

- 독일은 EU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규정(TARIC)을 적용하고 있다.
 - EU 시장 밖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CIF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한다.
 - EU 시장 내에서의 유통과정에 포함된 운송비는 CIF 가격에서 제외한다.
 - EU 시장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하여 최종 생산된 상품의 경우 CIF 가격 산정시 중간재 가격은 제외한다.

☐ 일반 특혜 관세(GSP) 적용

- 독일은 특정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EU에서 공통으로 정하는 GSP를 적용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EU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제독적인 관점에서 EU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통관절차상의 제한이나 장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수입품에 대한 상품 포장 규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상품포장 규정은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및 독일 기업들에게도 공통 적용된다. 예를 들면, 독일 검역당국은 2007년 이후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목재 수출포장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용 화물을 목재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준(ISPM No. 15)에 따라 해당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 공인된 소독처리마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 업체들은 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독일의 공항, 항만 등에서 수출품이 압류 및 검역 조치를 받음으로써 해당 물품의 납기 지연, 기타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 사용 공급자에게 포장재 사용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독일의 통관 절차

- 독일 수입업자가 통관 신고서와 Invoice를 세관에 제출하며, Invoice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판매자 및 구매자의 성명과 주소
 - Invoice 발급지 및 발급 날짜
 - 상품의 수량, 종류, 표시
 - 포장 일련번호
 - 상품 내역 설명
 - 상품의 수량
 - Invoice 가격
 - 수송 및 지불 조건
- 통관절차(운송포함)는 통상 4~5일(해상운송 화물의 경우 약 40~45일)이 소요된다.

※ 독일의 상품 포장 규정

- 독일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 및 사용 후 포장재 수거라는 두 가지 목적 하에 2007년 11월 기존의 포장규정을 개정, 2009년 1월부터 시행한 바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개정·시행되고 있다.
- 독일 정부는 2010년부터 모든 포장재에 사용되는 단위를 미터식(미터, 리터, 킬로그램 등)으로 통일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다.
- 또한, 독일 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품 공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장재 사용 신고서(statement of completeness and accuracy)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재별 수량
 - 독일내 인가된 수거 및 처분 절차에 따른 포장재 처리 방법
- 상기 신고 대상인 포장재 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8만 kg 이상의 유리 포장재
 - 5만 kg 이상의 종이 포장재
 - 3만 kg 이상의 기타 재질 포장재
- 2019년 1.1일부터 도입된 신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에 따라 상품을 포장해 독일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제조사와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숍, 수입기업에게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동 법 도입의

목표는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이며, 그 핵심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 신 규정에는 판매 시 포장재 관련 유통과 회수, 분류, 재활용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거래상 중앙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장재 사용이 불허된다.
- 즉, 제품 포장재(내·외 포장재 포함)를 유통하는 모든 제조사와 유통기업(온라인 유통 및 수입기업 포함)은 신고와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폐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온라인 유통기업 역시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해 듀얼 시스템(Dual System) 등록 및 이를 통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 신 포장재법의 가장 중요한 신 의무규정은 등록 의무와 포장관련 라이선싱, 등록번호 기재, 2018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심사규정 등이다.
- 이제까지 해당 기업은 이른바 '완전성 선언(Vollstaendigkeitserklaerung)'을 각 소재 지역 상공회의소(IHK)에 보고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당해 연도 5.15일까지 오스나브뤼크(Osnabrück)에 신규 신설된 중앙 관할 기관 'Stiftung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에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포장재의 평가 보고서도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완전성 선언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8만 kg 미만의 유리
 - 5만 kg 미만의 종이 및 종이상자
 - 3만 kg의 철제 금속, 알루미늄, 음료수 상자 또는 기타 합성 포장재
 - 따라서 새로운 포장법은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적용되나, 대부분의 소규모 온라인 스텝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이어 독일은 2021년 7월 포장재법을 개정해 포장 등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업체 책임을 강화하였다. 주요 변경사항 및 시행일정은 아래와 같다.
 - 2021년 7월 3일 : 플라스틱 함유량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를 기록한 라벨링 부착
 - 2022년 1월 1일 :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알루미늄 캔에 보증금제 적용(Pfand)
 - 2022년 7월 1일 : 포장의 등록 범위가 판지 상자, 배송 포장재, 완충 포장재, 레이블, 팔레트 등과 같은 모든 포장재로 확대 적용
 - 2022년 7월 1일 : 전자 상거래 및 주문 유통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강화
 - 2023년 1월 1일 : 케이터링, 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은 일회용 포장재의 대안으로 재사용 가능 포장재도 함께 제공 의무(5명 이하 기업과 사업장 규모 80㎡ 이하는 예외)
 - 2024년 1월 1일 : 우유 및 유제품 포장 보증금제(Pfand)
 - 2024년 7월 3일 : 뚜껑 일체형 페트병 도입
 - 2025년 1월 1일/2030년 1월 1일 : 일회용 PET 병 생산 시 최소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단계별 각각 25% 및 30%
- * 자료원 : 독일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포장재법 개정법(VerpackG2)

수입 규제

독일은 EU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를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독일시장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독일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의 각종 검사 및 인증 제도는 특별하게 외국상품을 차별하거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통해 독일, EU 및 세계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품

수출상품에 VDE 또는 GS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공산품에 대한 독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종래 전기부품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업자 단체인 독일전기업협회(VDE)에서 부여하여 오던 VDE 표시나 일반 생활용품의 안전성검사를 필하였음을 확인하는 GS 표시 등 독일 특유의 인증 제도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인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을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특히 「독일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독일에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연방 정부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각 주정부 소관이며, 특정 물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선 행정기관(Handelschemiker)의 사실판단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독일에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를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신규 의료기기 규정(MDR: Medical devices Regulation) 시행으로 등급 분류가 총 4개 등급(Class I, IIa, IIb, III)으로 변경되었고, 제품 범위 및 사후 관리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재인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독일 바이어의 의료 기기 구매는 비용보상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의료 기기 시장의 효과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기가 보험 처리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 독일의 표준 및 인증제도

☐ DIN

- 독일 표준연구원(DIN)에서 개발된 표준이 독일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DIN은 유럽표준위원회(CEN), 국제표준기구(ISO)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DIN EN 기준, DIN ISO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CEN 및 ISO 기준을 독일 내에 도입하고 있다.

☐ CE

- CE 인증 필수 품목의 경우, 반드시 시장 출하 전 부착 의무가 있으며, 인증 미 취득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인 경우 최대 1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Blue Angel

- 독일 품질보증 및 증명 연구소는 친환경 상품에 대해 Blue Angel 마크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내에서 친환경 상품으로 공인된다.

□ 안전성 표준

- 독일 내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마크로 GS(일반상품), VDE(전기 및 전자제품) 등이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 내 시장 판매에 유리하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독일 내 소매업자들은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거부하는 관행이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EU Directive인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와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2005년 3월 「전기 및 전자장비법」을 제정하고,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폐기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는 연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자는 EAR에 제품을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2013년 새로 도입된 RoHS II에 따라 2014년 7월 22일 이후 의료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 2016년 7월 22일 이후 체외 진단 의료기기, 2017년 7월 22일 이후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에 적용되며, 2019년 7월 22일 이후 모든 신규 출시되는 전자제품에 확대 적용된다. 처음 발표와는 달리 개정을 통해 이미 유통기업에 배송된 신규 제품이 아닌 시장 내 최초로 출시된 제품에 한해 RoHS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또한 2019년 7월 22일부터는 2015년 6월 4일 발표된 RoHS II 추가 지침에 따라 4가지의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가 추가돼 사용 규제 물질이 총 10가지로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케이블

(카테고리 11, 공칭 전압이 250V 미만, 플러그가 없는 미완성 케이블도 포함)에도 RoHS II 규정이 적용된다.

품목별 장벽

우리 기업의 독일시장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시장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농업 등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각종 수입제한 조치와 보조금 정책은 모두 EU 기준과 부합하며, 그 밖에 환경 관련 규제나 각종 표준·검사 및 인증제도도 사실상 모두 EU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독일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시행한 바 있으나 동 보조금은 독일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비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의 입찰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이 준수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2006년 11월에 정부조달규정(VO: 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Directives: Richtlinie)의 국내이행 절차를 완료하였다. 정부조달규정(VO)은 상품조달규정(VOL), 서비스조달규정(VOF) 및 건설서비스조달규정(VOB)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공공기관, 연방주, 지자체, 연방정부, 사회보험 기관 등을 포함한 총 30,000여 공공기관에서 연간 100만 건의 조달계약을

제결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0년 10월 1일 독일 경제부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장관 재임 시 공공 조달 통계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2022년 10월 독일경제·기후보호부(BMWK)는 공공조달 관련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약 87,000건, 총 528억 유로 규모의 공공조달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45,000건, 총 158억 유로의 공공조달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고 있고 독일 내 관보(Bundesausschreibungsblatt, Staatsanzeiger)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Fach-und Tageszeitungen)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독일연방조달청은 2000년 전자조달을 위한 플랫폼 ‘e-Vergabe’를 출범시킨 이래 2010년부터 모든 발주건을 전산화하였다. 2013년 11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2016년 4월 18일 이래 전 독일행정기관의 전자조달 시스템이 완료되었다.

아울러 독일은 2016년 4월 이래 조달 규모에 따른 공공조달 절차를 두 단계에 걸쳐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무엇보다 중소기업보다 용이하게 구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Berücksichtigung mittelstä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찰자 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우대조항은 없으나, 입찰 공고시 계약대상 및 낙찰기준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입찰공고가 되는 경우(예컨대 ‘Funktionalausschreibung’의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고 발주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정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약의 경우에는 언어와 복잡한 절차와 양식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독일 내 기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독일에서 지식재산권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유럽특허협약(EPA) 등 국제적인 규범의 범위 내에서 보호되고 있다. 독일은 관련 국내법에 따라 내국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독일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등을 출원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 등 제3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독일기업 및 국민경제의 피해 규모가 크다는 독일 내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독일당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장 내 부스를 설치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우리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주의할 것을 기술포럼으로써, 예상치 못한 지재권 분쟁 상황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전시일정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국기업들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독일 세관 및 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지재권 침해 및 피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독일 현지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6월부터 프랑크푸르트 무역관내에 IP-Desk가 설치되어 우리 기업들의 독일 및 유럽시장 진출에 있어 지재권과 관련한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법률의견서 작성지원 그리고 전반적인 지재권 자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독일의 서비스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EU 기준에 의하여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 다만, 영화산업의 경우는 대다수 EU국가들과 마찬가지로 WTO에 개방양허가 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되고 있다.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독일의 영화산업에 대한 독일 정부 차원의 공식 보조금 규모는 연간 4,400만 유로 수준으로 프랑스(8억 유로)나 영국(2억 7천만 유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영화진흥청(FFA) 뿐만 아니라 각 연방주 차원에서 2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영화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독일 시장 내 문화 콘텐츠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비디오 및 온라인 게임 분야의 경우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자체검열기구)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화, 비디오, DVD 분야의 경우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영화산업의 자발적인 자체 규제) 인증이 필요하다. USK는 독일 국민에게 공개되는 모든 컴퓨터·비디오 게임 연령제한 및 컴퓨터게임 트레이일러 관련 검열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FSK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를 위시하여 DVD, Blu-ray와 VHS와 같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비디오를 평가하고 연령별 제한을 할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장벽

독일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주식회사(AG)와 유한회사(GmbH)로 등록된 외국인 소유회사는 독일인 소유회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사회 주주에 대한 국적 제한이 없고 투자금액을 신고하는 제도도 없으며, 과실을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제한도 없다.

투자절차상의 제한

외국인투자만을 전담하는 허가·감독기관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의 기업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업무역사무소(Gewerbeamt) 또는 법원(Amtsgericht)에 등록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은 독일 기업 인수 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투자가 구별 없이 동 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동 법에 따라 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등으로 매수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 중대한 경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동 법에 정해진 경제적 규모가 동 법에 따라서 해당될 경우,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독일 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에 사전 신고의무가 있으며, 매각대상기업도 50% 이상의 지분, 25% 이상의 의결권 또는 중대한 기업 자산을 매각할 시 사전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독일 정부는 외국기업의 공격적 M&A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경제법 시행령(Außenwirtschaftsverordnung; A WV) 개정하여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 위협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였다. 2017년 7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독일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2018년 12월 개정된 대외경제법 시행령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특정산업(에너지·금융·교통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 통신설비, 국민여론과 관련된 언론사 등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10% 이상의 의결권을 획득할 경우 정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2020년 5월 발효된 대외경제법 시행령은 의료분야(백신, 의약품, 의료장비 및 전염병 치료 관련 의료제품의 제조업 등) 제조 및 연구개발 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동 산업분야에서 관련된 인수계약이 체결될 경우 거래 참여 기업은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에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이어 2021년 5월에는 또 한 차례 개정으로 미래 첨단 기술 분야 기업의 M&A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 투자자가 미래 첨단 기술 분야(AI, 자율주행, 반도체, 양자기술, 항공우주, 핵기술 등 총 16개 분야) 기업의 지분을 최소 20% 취득하는 경우, 신고 의무

가 적용되며, 또한 이전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강화 조치된 의료분야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20% 지분(기존 10%) 취득 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독일 정부의 조사는 인수계약서 체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자 및 매각 대상 기업에게 조사 개시를 서면으로 공지한 후 가능하다. 다만 인수에 대한 계약 체결 이후 5년이 경과하면 독일 정부는 조사 개시 권리가 없다.

※ 독일 내 기업 설립 절차

□ 기업 등록 절차

- EU 회원국 국민이 아닌 경우 사업활동을 허가하는 체류허가를 신청해야한다.
- 독일 내에서 법인 또는 지사 설립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상업 무역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단독 또는 합작 기업은 지방 법원 상업 등기소에 등기(기업공개)하여야 한다. 유한 책임회사 및 주식회사도 등기할 의무가 있다.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 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협회는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규제 및 감독할 권한이 부여된다.
-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은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협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독일 내 설립된 기업은 지방 세무당국에 등록하여, 조세 ID(소득세 관련)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기업이 현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자 번호(현지 고용인 사회보장 관련)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기업은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직장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청(Gewerbeamt) 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청에 등록된 기업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관계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동 기관에 제공된다.
- 사업자등록청은 기업등록 수수료를 사업 종류별로 15~65유로 부과한다.
- 사업자등록청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록 신청서
 - 여권 (대표사무장), 또는 본사 경영진 여권 복사본
 - 기술증명서(기술직종의 경우)
 - 상업 등기부 등본 (번역본 및 원본)

- 상용 비자
- 독일 거주신고서(Meldebescheinigung)
- 전권 위임장
- 사무실 임차계약서
- 상업 무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수일 내 관할 지방 상업 무역사무소에 기업을 등록하고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 법원 상업등기부 등기 절차

- 기본적으로 모든 자회사는 필수적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 되어야한다. 개인사업 및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등기가 되어야하나, 소규모 영업자(Kleingewerbe)로 간주 될 경우, 등기 의무는 없다. 법원 상업 등기부에 아래내용을 공증 받아서 등기하여야 하며, 동 등기내용은 일반 공개 되어 handelsregister.de로 통해 조회 가능하다.
- 회사명 및 주소
- 회사 사업 목적
- 법인 형태
- 소유권 및 주주
- 법적 대표
- 지분 및 연간 재정보고
- 기타 법적관계 (예: 파산절차 신청, 법인 전환 등 내용)
- 상기 등기자격을 갖춘 기업이 등기하지 않을 경우 상업 무역청 또는 세무당국이 법원에 제보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상기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선택적으로 등기할 수 있으나, 일단 등기를 한 경우 일반 민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 직장협회 등록 절차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직장협회는 회원들에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협회 가입요건 및 시험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원의 창업지원, 회원이 관련된 분쟁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장협회는 연방 또는 지방단위로 조직되며, 대표적인 직장협회로는 기능인협회, 상공회의소, 전문직 종사자 협회, 농업인 협회 등이 있다. 특정 기업은 사업성격에 따라 둘 이상의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 등록 절차

-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피고용인의 직장 사고와 관련된 보험(의료, 재활, 사고예방, 연금, 보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협회에 가입한 기업은 피고용인이 3일 이상의 병가를 요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협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서 보장하는 보험의 범위는 직종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기업이 지방 상업무역 사무소에 등록시 동 사무소가 관련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기업과 접촉토록 추천한다.

□ 고용청 등록 절차

-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장 번호(Betriebsnummer)를 받아야 한다.
- 사업자 번호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 의료보험, 직장 사고보험, 고용 허가 등을 받는 데 필요하다.
- 등록 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 지방 고용청은 독일 고용시장 정보, 재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방 고용청 산하 중앙 직업소개사무소(EAV)는 독일인 취업 희망자를 외국 기업에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2003년 1월 「한 · 독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독일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원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일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및 독일의 공적연금보험법에 대해 적용된다(독일의 철강근로자보충보험법 및 농민노령보장법은 최종 합의 시 제외되었음).

독일에서 근무하는 상사주재원(독일 내 소득이 발생할 경우)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용(Sozialabgaben)은 2022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반씩 분담한다. 2021년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된다.

- ① 의료보험료(Krankenversicherung, 총소득의 14.6% 수준),
- ② 연금보험료(Rentenversicherung, 총소득의 18.6% 수준),
- ③ 노후간병보험료(Pflegeversicherung, 총소득의 3.05% 수준),
- ④ 실업보험료(Arbeitslosenversicherung, 총소득의 2.4% 수준)

한편 「한·독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은 위 4가지 사회보장비용 가운데 연금 보험료와 실업 보험료이다.

경쟁정책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차별(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경제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 기업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 기업 인수 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에 따른 합병(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등)이 진행되고,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동 법에 정해진 경제적 규모(참여하는 기업이 함께 전 세계적으로 5억 유로 이상의 매출 달성 등)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당국(Bundeskartellamt)에 사전 신고의무가 있다.

※ 독일 내 Marketing 관련 제도

□ 판매망

- 독일 내 물품을 공급하는 외국인 공급자에게 판매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주로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판매망이 활용된다.
- 대부분의 제조업 상품은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되며, 중개업자는 판매 margin 또는 commission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 외국 기업이 독일 시장에서 체계적인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시장 조사나 마케팅활동에 국한되므로, 차후 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단계로 봐야 한다.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 세계 주요 무역 및 상품전시회의 2/3가 독일 내에서 개최되며, 동 전시회는 내외국인 기업이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관련 정보는 독일 전시산업협회(AUMA) 웹사이트에 공개되므로, 내외국인 기업이 차별 없이 공유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에 있는 한독상공회의소에서 독일 내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며,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프랑크푸르트 메쎄와 라인메쎄를 통해 관할 전시회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 B2B 시장

- 독일무역투자청(GTAI) 산하 iXPOS는 독일 및 해외의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사이트 상의 기존의 'iXPOS Business Finder'가 'GTAI-Exportguide'로 변경되었다. 신규 개편 사이트는 2022년 10월 오픈되었으며,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되었다. iXPOS의 개정 및 개칭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기업이 플랫폼에서 이전보다 더 빠르게 수출 비즈니스 및 가장 중요한 파트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며, 독일 수출 경제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독일무역투자청(GTAI)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마케팅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장벽

독일 내 상거래 규정 및 관행

독일 정부는 독일 내 국제 상거래 활동 관련 독일 국내법인 민법, 상법 등의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들은 「국제 상품 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럽 협정」 등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 독일내 상업 활동 관련 규정 및 제도

□ 국제 계약

- 독일 내 국제계약과 관련된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일 민법 27조 규정이 적용되는데, 동 규정은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럽 협정」의 관련 규정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국제 계약 당사자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국가의 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거주국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 소비자의 권리가 관련된 사안인 경우 소비자 거주국 법률이 적용된다.
- 또한, 판매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국제 상품 판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이 적용될 수 있다.

□ 계약의 종류

- 기본 독일 민법은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노동, 임대 계약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기본 규정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한다.
-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모든 계약에 강제 적용되며, 권리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의 형식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 가능하며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다만, 부동산 판매 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 계약은 제안자의 제안이 수락되었을 때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조건이 부가된 수락은 원래의 제안에 대한 거절로 간주된다.

□ 국제 판매 계약

- 독일은 「국제 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을 국내법(민법의 일부)으로 수용하였다.
- 독일내 국제 상품판매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CISG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독일 상공회의소는 관할지역내 국제 판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독일 법원은 상사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
- 정식 계약체결 전에 작성되는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가 계약 체결 의무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동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따라서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작성시 당사자의 계약 체결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증 조건

-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는 결함 보정, 대체품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함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계약을 취소시키거나, 구매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소비자 보호

- 독일 민법은 판매 계약과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 제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판매계약 조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2주간의 구매계약(대출 계약 포함) 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판매 후 6개월 내 숨겨진 결함이 발견될 경우 동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무과실 입증 책임이 면제된다.

□ 상법

- 독일 상법은 연간 매출액 25만유로 이상이고 연간 수익 2만5천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 기업은 소유권, 법적대표, 재정상태 등을 공개하여 법원에登記하여야 하며,登記 내용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 독일 상법은 계약상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Incoterms (국제 상품 수송 비용부담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상거래 관행)를 존중한다.

장기체류비자 발급 간소화

독일 내 상용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EU 국민과 비 EU 국민 간 EU 협정에 따른 구분이 있으나, 독일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2004년 12월 「한·독 간 입국 및 체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일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및 EU 회원국과 같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다.

상사주재원의 체류허가(노동허가 포함) 취득절차가 이원화되어 1) 출국 전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는 절차와 2) 입국 즉시 외국인관청에 신고하고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외국인관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가 있다.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 시에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독일은 사회 고령화로 인해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엔지니어·IT 전문가 등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취업 장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블루카드(Blue Card)도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2012년 8월 1일 이후 독일 대학을 졸업하거나 유사한 외국 학위를 취득하고, 일정 연봉 수령이 가능한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은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연봉 56,400유로(세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 특히 ‘전문인력부족 분야’에서는 연봉 하한선이 43,992유로(세전)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노동부에서 노동 조건 및 연봉이 적당한지 심사를 한다. 블루카드를 취득할 경우 취업 생활 33개월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블루카드 소지자가 B1(중급) 수준 이상의

독일어 능력 및 독일 법 및 사회 지식을 입증 할 수 있을 경우에는 21개월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12년 8월 1일 이후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기존의 12개월보다 늘어난 18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허가가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에는 근로에 제한이 없다. 외국 유학생들은 연 최대 120일(기존 90일) 노동이 가능하다.

독일 정부는 2020년 3월 ‘전문인력이민법’을 도입하여 비EU 인력의 취업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타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는 5년 취업생활을 하면서 국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0년 3월부터 영주권 신청 기간이 4년으로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비EU국 구직자의 경우 독일 내에서 직장을 찾고 노동계약을 체결해도 노동부가 동일한 업무를 독일인이나 EU인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우선권 검토(Vorrangspruefung)’을 진행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어 한국인도 독일 내에서 제도적으로 독일인 또는 EU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독일은 타국 대학 졸업자가 독일 내 취업을 희망할 경우 6개월간 독일 체류가 가능한 ‘취업 준비 비자’를 발급했는데 발급 대상을 직업훈련을 받거나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비대졸자로 확대하였다.

워킹홀리데이 관련, 2009년 4월 한·독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어, 18~30세의 한국인은 독일에서 1년간 유효한 취업 관광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취업 관광 복수사증은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발급되며 동 사증을 발급 받을 경우 독일에서 1년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2012년 8월 1일 EU 차원에서 도입된 고급인력 지침 시행령 (Gesetz zur Umsetzung der Hochqualifizierten-Richtlinie)을 통해 외국인의 이주 및 창업조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아울러 2013년 6월 15일부터 독일의 고용법시행령 제26조가 개정·발효되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우대조항에 포함됨으로써, 독일 주재 상사 주재원들의 체류·노동허가에 대한 심사요건이

완화되고, 독일에 신규 취업을 원하는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독일 내 노동 사무소의 심사가 완화되었다.

※ 상용비자 발급 절차

- 상용비자 발급은 외국소재 독일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독일에 이미 체류중인 경우 외국인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상용비자 발급은 독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고, 특수한 지역적 수요가 있거나, 자기자본 또는 신용대출 확보로 창업 실행이 가능할 경우 가능하다.
- 외국인 투자자는 자산 또는 신용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45세 이상인 경우 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2년 8월 1일 EU 차원에서 도입된 고급인력 지침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창업을 위한 최소 투자비용 25만 유로 증명과 최소 5개의 일자리 창출 규정 및 특수한 지역적 수요 기대 조항은 삭제되었다.
-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 자금증빙서류, 이력서, 자격증, 외국어 능력 증명서, 기업 등기부, 사업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용비자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3년 연속 비자 갱신을 받을 경우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출통제제도

독일제품의 수입·가공 및 독일제품의 제3국 중개수출 등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독일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일은 MTCR, Australia Group, NSG, Wassenaar Arrangement 등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무기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협약이다. 수출통제대상인 이중용도품목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추가되고 있으므로 독일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수출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승인에 1달 내외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독일에서 무기 등 방산물자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과 장비를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가 최종 사용자이고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품목인 경우에는 수출통제

청 (BAFA)에서 상대적으로 승인을 쉽게 내주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품목이거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연방수출경제관리청(BAFA)를 통해 경제에너지부(BMWi)(독일 총선 이후 '경제·기후보호부(BMWK)'로 개칭)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독일산 부품을 수입해서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제3국에 수출할 경우 그리고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중동지역 등이 최종 사용자인 경우에는, 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승인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독일 수출기업이고 승인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우리기업은 수출통제청으로부터 승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방산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독일 연방정부의 수출승인 여부 및 승인기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독일 수출기업이 지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출관리제도 관련 현황은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는 경제기후보호부(BMWK) 산하 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진출에 대한 장벽

독일 금융시장 현황

독일의 금융산업 및 보험시장은 총자산 규모 대비 영국과 함께 유럽 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는 상장 기업 수 438개, 시가 총액 약 2조 2,841억 달러(2020년 기준) 규모로 프랑스(Euronext Paris), 런던증권거래소(LSE) 다음으로 유럽 3위 규모이다. 독일 증권거래소는 세계 6위 규모의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독일 총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4조 3,100억 유로이며, 이중 개방형 펀드(open funds)가 2조 1,880억 유로로 50.8%를 차

지하고 있다. 2022년 8월 말 기준 약 7,649개의 개방형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독일은 총 약 3조 8,000억 유로의 자산 규모로 총 13조 7,000억 유로 규모인 EU 펀드 시장의 28%를 차지하는 EU 최대의 펀드 시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특성을 보유한 펀드 자산은 총 펀드 자산의 14.4%를 차지하며 지속해서 상승세(2020년 10%)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고 금융 관련 규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런던 금융시장에 비해서 경쟁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은행의 소규모·고밀도 지점망과 공영은행의 높은 시장 점유율도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독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민간은행의 인수·합병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업(universal banking system)하며, 리츠(REITs) 운용대상 자산에서 주거용 건물이 제외되고 헤지펀드에 대해 엄격한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다.

금융기관의 진출과 관련된 장벽기타 장벽

독일에 진출한 주요 외국계은행으로는 독일 3위 상업은행이었던 Hypo Vereinsbank가 인수한 Unicredit가 자산 기준 독일 5대 은행이며, 네덜란드계 ING Diba 은행은 독일 10대 은행이다. 이외에 J.P Morgan(미국), UBS(스위스), Santander(스페인), Targobank(Citybank의 자회사, 미국) HSBC(영국), Toyota Kreditbank(일본)도 규모가 큰 편이며, 자산 기준 독일 100대 은행 안에 속한다(2021년 기준). 아시아계로는 우리나라의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의 산업은행의 현지법인과 한국 산업은행 및 한국은행 연락사무소가 진출해 있으며(총 5개 은행), 일본 9개, 중국 7개, 인도 2개가 진출해 있다. 독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규제 외에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한편,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가결 발표 이후 프랑크푸르트는 차기 런던을 이을 금융도시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스위스 UBS, 미국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을 위시해 일본(Mizuho, Nomura, SMFG, Daiwa), 중국(CICC, Essence Securities) 등의 유럽 본부가 독일(프랑크푸르트)로 이전했다. 2021년 4월 씽크탱크 New Financial의 브렉시트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63개의 금융계 기업이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하였으며, 이 중 36개(약 60%)가 은행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장벽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근거하여 역외국으로 고유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의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U 개인정보보호법은 역내에서 수집된 정보의 역외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 EU와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 보호체제를 갖춘 국가에 대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에 따른 정보이전, ② 정부 및 기관 간 협약, ③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Binding Corporate Rules) 준수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적용되었다고 고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보이전을 승인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디지털의료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전자환자서류(elektronische Patientenakte, ePA)’ 제도를 도입하고 ‘원격인프라구조(Telematikinfrastruktur)’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동 시스템에는 환자정보(보험, 의사 진단 및 소견서, 의료검사 기록) 등이 저장되어, EU 내 모든 의료기관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동 제도 도입에 따른 환자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환자정보보호법(안)(Patientendaten-Schutz-Gesetz, PDSG)’이 제정돼 2021년 1.1일부터 발효되었다.

독일은 2017.10.1.부터 인터넷 상에서 거짓뉴스, 증오범죄 등을 포함한 불법콘텐츠 관련,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에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관계

망에서의 적법성 관철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DG), 소위 ‘페이스북법(Facebook-Gesetz)’을 시행 중이다. 동 법에서는 등록된 사용자 200만 명 이상인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는 불법콘텐츠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24시간 또는 1주일 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이의제기자 수 및 해당업무 담당자 수를 공개해야 하며, 동 규정 위반 시 과태료(50만 유로~최대 500만 유로)가 부과될 수 있다.



루마니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주요 경제지표 동향

루마니아 경제는 2022년 상반기 5.8% 성장하며, 기존 예상치(약 4.7%)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제한 조치의 단계적 철폐, 임금 인상, 실업률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7.5% 증가한 민간 부문의 소비가 이러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23년에는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어, 평균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코로나19 극복, 실질 임금의 지속적 상승, 정부 지원책 등으로 가계 소비가 회복되긴 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안 요소 증가, 에너지 가격 급등, 높은 인플레이션, 공급망 이슈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루마니아의 2022년 1인당 명목 GDP는 14,825달러로 최근 5년 동안 약 37% 증가하였다. 루마니아의 GDP 성장률은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 공공 부문·국영기업 구조개혁, EU 기금 흡수율, 유럽 경제상황, 국내 소비 증가율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루마니아 물가는 최근 5년 동안 평균 3.46% 상승하였으나, 2022년 6월 15.1%를 기록하며 200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2022년 연 평균 물가 상승률은 13.8%로 전망되며,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023년까지도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루마니아 실업률은 2020년 6.1%에서 2021년 5.6%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높은 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2022년에는 실업률이 5.4%, 2023년에는 5.3%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GDP(십억 달러)	211.4	239.5	243.7	248.7	279	296.5
1인당 GDP(달러)	10,762	12,270	12,483	12,896	13,798	14,825
GDP 성장률(%)	7.11	4.5	4.2	-3.8	6	4.7
인플레이션율(%)	1.3	4.6	3.8	2.6	5	13.8
실업률(%)	4.9	5.3	4.9	6.1	5.6	5.4

출처: EIU / 주: 2022년 추정치

한편, 루마니아 정부는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루마니아 중앙은행(BNR)의 기준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 기조를 펼치며 2020년 1.5%, 2021년 1.75%의 유지하였으나, 2022년 11월 기준 6.75% 상당히 상향 조정하였다.

루마니아 화폐(RON)의 對美 달러 평균 환율은 2021년 4.16RON 이었으나, 2022년 달러 강화로 인하여 최근 10년 만에 5RON을 돌파하였다. 對유로 평균 환율은 2021년 4.92RON이었으며, 22년 10월 기준 4.92RON으로 달러 대비 안정적인 환율을 보이고 있다.

루마니아 현지화 평균 환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0
USD	4.0525	3.9416	4.2379	4.2440	4.1604	5.0140
EUR	4.5681	4.6535	4.7452	4.8371	4.9204	4.9266
100 KRW	0.3584	0.3581	0.3637	0.3598	0.3635	0.3569

출처: 루마니아 중앙은행(BNR)

루마니아의 2022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 2,550RON(515EUR)로 이는 EU 회원국 중 불가리아(332EUR/월), 라트비아(500EUR/월)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23년에는 약 17.6%가 상승한 3,000RON(600EUR)로 최저 임금이 조정될 예정이다.

유로존 가입 관련, 루마니아는 유로화 채택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인 물가 안정, 공공부채 비율, 환율 안정, 장기 금리 수렴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바, 루마니아는 현실적인 가입 시기를 2029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외환보유고는 2022년 10월 기준 437억 유로로 전년 대비 7.9%로 증가하였다.

무역·투자 동향

2021년 루마니아의 상품무역 교역액은 2,035억 달러로 2012년 대비 약 58%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지난 10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였다.

루마니아의 상품 무역 현황

(단위 : 10억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57.90	65.87	69.72	60.61	63.53	70.78	79.65	76.87	70.71	87.34
수입	70.26	73.51	77.75	69.85	74.56	85.51	97.74	96.54	92.12	116.18
무역액	128.16	139.38	147.47	130.46	138.09	156.29	177.39	173.41	162.83	203.52
무역수지	-12.36	-7.64	-8.03	-9.24	-11.03	-14.73	-18.09	-19.67	-21.41	-28.84

출처: Global trade atlas, 2022

루마니아 상품 무역에서 EU 역내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으로 2021년 기준 상위 수출 10개국 중 9개국이 EU회원국이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독일(20.74%), 이탈리아(10.4%), 프랑스(6.46%), 헝가리(5.73%), 폴란드(4.03%) 등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독일(20.12%), 이탈리아(8.76%), 헝가리(6.87%), 중국(6.27%), 폴란드(6.23%) 등이 있다.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입 국가 현황(2021년)

(단위: 10억 달러, %)

주요 수출국	금액	비중	주요 수입국	금액	비중
전체	87.3	100	전체	116.1	100
독일	18.1	20.74	독일	23.3	20.12
이탈리아	9.0	10.40	이탈리아	10.1	8.76
프랑스	5.6	6.46	헝가리	7.9	6.87
헝가리	5.0	5.73	중국	7.2	6.27
폴란드	3.5	4.03	폴란드	7.2	6.23
불가리아	3.4	3.94	튀르키예	5.1	4.40
네덜란드	3.0	3.47	프랑스	4.8	4.21
튀르키예	3.0	3.46	불가리아	4.7	4.10
체코	2.7	3.16	네덜란드	4.5	3.93
스페인	2.6	3.02	러시아	3.7	3.19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2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21년)

(단위: 10억 달러)

수출품목	HS code (2단위)	금액	수입품목	HS code (2단위)	금액
전체	-	87.3	전체	-	116.10
전자기기·TV·VTR	85	15.4	전자기기·TV·VTR	85	17.00
일반차량	87	12.9	보일러·기계류	84	13.40
보일러·기계류	84	9.5	일반차량	87	10.30
곡물	10	4.2	광물성 연료, 에너지	27	8.70
철강	72	3.8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6.50
광물성 연료, 에너지	27	3.0	의료용품	30	4.80
가구류·조명기구	94	2.9	철강	72	4.50
고무와 그 제품	40	2.8	철강제품	73	3.60
철강제품	73	2.7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90	2.6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90	2.7	각종화학공업생산물	38	2.20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2

루마니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2021년 1,0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10.48% 증가하였다. 루마니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 상당부분이 EU회원국으로부터의 투자이며, EU 역외 투자는 많지 않다.

2020~21년 루마니아 FDI 상위 10개국

(단위 : 백만 유로)

	국가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
1	독일	13,792	14,911	8.11
2	오스트리아	10,153	10,724	5.62
3	프랑스	8,733	9,709	11.18
4	이탈리아	7,556	7,928	4.92
5	미국	6,167	7,854	27.36
6	네덜란드	4,321	3,851	-10.88
7	영국	3,706	3,508	-5.34
8	스위스	3,061	3,615	18.10
9	사이프러스	2,418	2,237	-7.49
10	벨기에	2,112	2,210	4.64

자료 : 루마니아 중앙은행, 2022년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 관계

개관

루마니아 개방 초기인 1990년대에 한국은 대우자동차 등의 투자 진출로 루마니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루마니아의 EU 가입 및 경제개혁 가속화,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영향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교역,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무역현황

2021년 기준 한국과 루마니아 간 무역액은 12억 1,500만 달러이며, 한국의 對루마니아 수출액은 5억 8,800만 달러, 수입액은 6억 2,700만 달러로 3,900만 달러 적자이다. 루마니아도 EU 회원국으로서 2011년 7월 1일 이후 한-EU FTA의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루마니아 10대 수출 품목은 2022년 9월 기준 아연도 강판, 승용차, 냉연강판,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이다.

○ 한국의 對 루마니아 상품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432	483	562	505	588
수입	451	404	455	531	627
수지	-19	79	107	-26	-39

자료: 무역협회

○ 한국의 對 루마니아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22년 9월 기준)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22년 (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414,752	-5.5	595,899	41.0	-181,147
1	아연도 강판	30,734	5.2	0	0.0	30,734
2	승용차	26,509	-43.0	47	-8.3	26,462
3	냉연강판	23,770	-8.0	121	-18.5	23,649
4	합성수지	22,734	-29.8	2,854	-21.7	19,880
5	열연강판	20,825	61.9	0	0.0	20,825
6	자동차부품	18,390	-10.7	78,267	2.9	-59,877
7	유선통신기기부품	12,759	998.8	8,248	238.7	4,511
8	폴리에스터사	11,093	9.6	0	-99.7	11,093
9	타이어	10,507	-9.8	6,901	-30.8	3,606
10	연선 및 와이어로프	10,472	36.5	1	38.6	10,471

출처: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투자 현황

2021년 우리나라의 對 루마니아 투자액은 5백만 달러였으며, 2004년부터 누적 투자액은 7억 6,400만 달러이다. 주요 투자진출 기업으로는 생산법인으로 삼성 오텔리눅스, 효성 GST, GMB 코리아, 캄텍, 뉴인텍 등이 있으며 판매법인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다. 2022년 9월 기준 루마니아 회사등록청에 등록된 한국 기업 수는 281개이다.

한국 진출기업들의 현지 진출은 순수 루마니아 진출 목적보다는 여타 서유럽 고객사 납품을 위한 루마니아내 공장 설립 또는 유럽 기업 인수 시 해당 기업의 루마니아 공장 인수 등의 경우가 많다.

우리 기업 진출 유망 분야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진출 유망 분야로는 자동차, 의료기기, ICT, 에너지, 건설, 농업 등이 있다.

자동차 산업

루마니아에는 2개(르노-다치아, 포드)의 완성차 공장이 소재하며, 이 완성차 기업들과 서유럽 및 인근지역의 완성차 공장 납품을 겨냥하여 설립된 Tier 1 및 Tier 2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루마니아의 수출 및 경제성장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0년대 루마니아 경제 성장 및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인해 자동차 판매량 및 등록 건수는 연간 약 20%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7%가 감소한 12.5만대가 판매되었으며, 2021년에도 4.1% 감소한 11.9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루마니아 자동차 산업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생산량	49.0만대	44.0만대	42만대
내수 신차판매 등록수	159,696	125,004	119,817

출처: APIA(Automotiv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ssociation)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의 루마니아 시장 점유율은 8%를 기록했다.

브랜드명	판매량	시장점유율
Dacia	34,833	29.10%
Hyundai	9,532	8.00%
Toyota	8,832	7.40%
Skoda	7,967	6.60%
Volkswagen	7,812	6.50%
Ford	7,802	6.50%
Renault	7,794	6.50%

브랜드명	판매량	시장점유율
Suzuki	4,381	3.70%
Peugeot	3,388	2.80%
BMW	3,275	2.70%

출처 : APIA(Automotiv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ssociation)

의료기기 산업

루마니아는 의료 개혁 프로젝트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주요 도시 내 대형병원 설립 등 기초 인프라 구축 및 노후 장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클리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의료 시스템 회복력 강화(20억 유로), 의료 분야 디지털화(4억 7,000만 유로) 등) 루마니아 내 수요되는 의료기기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지 병원, 장비 개선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의료기기 수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ICT 산업

루마니아는 ICT 인력·기술력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이 연간 10~15%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우리 ICT 기업들의 투자 진출 및 합작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특히 루마니아에는 컴퓨터/수학 능력이 뛰어나고, 외국어 능력이 탁월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ICT 인력이 풍부하고 이들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다국적 ICT 회사들의 유럽지역 요충지가 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4월에는 EU차원에서 “EU 사이버안보 역량 센터(EU Cybersecurity Competence Center)”를 루마니아 수도 부카레스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루마니아 내 ICT 고용 인력은 178,700명 (18년 8월 기준)이며, 명목 GDP 기준 ICT 산업 비중은 6% 수준이다.

루마니아 ICT 전문가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 능하며, 루마니아의 해킹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바, 그 해킹 기술을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로 연결시켜 현재 전세계 5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보안프로그램 “BitDefender”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루마니아 ICT 산업의 특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투자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루마니아의 ICT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R&D 센터 개설 방안, 루마니아 내 SW 개발회사 M&A 추진, 루마니아 정부의 2020년까지의 ICT 발전 전략 청사진인 “디지털 어젠다 국가전략 2020 (National Strategy on Digital Agenda for Romania - 2020)”에 따른 향후 대규모 ICT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 진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초고속인터넷망(브로드밴드) 사업, 전자상거래, 전자카드사업, 전자정부 사업(조세 세수, 지적(地籍)전산화, 교통, 의료, 관세, 교육, 경찰, 항만, 스마트시티 등) 등への 투자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6 루마니아 디지털 어젠다 국가전략 2020 (National Strategy on Digital Agenda for Romania - 2020)에서의 중점 추진 분야 및 분야별 투자 수요

중점 추진분야	투자수요 (백만 유로)	상세내용 (링크)
e-Government and Interoperability	247.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 pp. 25-36)
Cloud Computing and Social Media	60.2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 pp. 43-46)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 pp. 48-52)
Cyber Security	30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 pp. 37-41)
ICT in Education	207.4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 pp. 60-64)
ICT in Health	119.2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 pp. 66-69)
ICT in Culture	37.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 pp. 72-74)
e-Commerce	76.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 pp. 78-81)
e-Inclusion	2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 pp. 74-76)

중점 추진분야	투자수요 (백만 유로)	상세내용 (링크)
Research-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ICT	60.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 pp.82-85)
Broadband	3,100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 pp.87-93)
Total	3,963.8	

에너지

루마니아 정부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통한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 확보(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를 추진 중이다. 현재 가동 중인 체르나보다(Cernavoda) 원자력 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 프로젝트, 3, 4호기 신규 건설, 소형 모듈 원전(SMR) 설립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으며, 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 또한 추진 중이다. 루마니아는 2030년까지 석탄과 갈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소를 포함한 재생 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를 주요 공급원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인프라 건설

루마니아 정부는 2015~2030년 도로, 항구, 운하, 철도, 공항 등 운송 인프라 개발 계획인 “종합교통마스터플랜(GTMP: General Transport Master Plan)”을 총 450억 유로 규모로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동 계획에서 도로 건설 개발이 262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 철도 개보수 등(137억 유로), 항구·운하 건설(31.9억 유로), 공항 개조·신축(13억 유로), 종합운송센터 건립(3.2억 유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PPP(민관합작투자) 제도를 활용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6월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행규범을 보완하였다. 루마니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정부 예산외에도 EU 기금, EIB(유럽투자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EU 예산 및 유럽차원의 개별협력 기금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바, EU내 현지 파트너사 발굴,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진출 방안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

NATO 동부전선에 위치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지형의 변화 속에서 국방비를 GDP 대비 최대 3.0%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무기구매를 통한 전력 증강이 기대되고 있다. 2022년 9월 서울 개최 DX Korea 2022 방산전시회에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등 양국간 방위산업 협력의 잠재력은 증대되고 있다.

농업

루마니아는 토양이 비옥하고 일조량이 충분하여 작물 재배에 유리한 여건을 구비하였으며, 강수량은 연평균 677mm 수준이다. 농경지는 1,470만 헥타르(hectare)로서 국토면적(2,380만 헥타르, 한반도의 1.1배)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EU 국가 중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폴란드에 이어 6위 규모이고, 유희 농경지는 약 200만 ha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 작물은 밀, 콩, 감자, 옥수수, 해바라기씨, 유채씨 등이 있으며,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와인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다만, 농업에 대한 관심 저조, 관개시설 개선 지연, 영세한 농가, 낮은 농기계 활용도, 재배기술 낙후 등으로 현재 농업 생산성은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루마니아의 넓고 비옥한 농토와 자연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 정부 정책과 대규모 영농이 추진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농업이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농업 생산성이 선진 유럽국가 수준에 도달할 경우, 루마니아 인구의 4배 규모인 8,500만 인구에 대한 식량공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콘스탄차 항이 위치해 있고 곡물수출 등에 필수적인 시설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 강을 활용한 곡물수송, 비교적 잘 갖추어진 철도시설 등은 농업투자의 장점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EU 기금

등을 통해 루마니아 농업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이에 발맞추어 농기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루마니아 진출시 고려사항

기업 진출여건 SWOT 분석

〈장점 : Strength〉	〈약점 :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하고 풍부하고 저렴한 인적 물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선진국의 1/3~1/4수준 - 우수 인력(외국어, IT, 엔지니어 등) - 인구 2천만명의(유럽내 7위) 내수시장 - 셰일/천연가스, 석유, 비옥한 토지 ○ 동유럽의 물류 요충지로서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동 유럽 등에 교두보 기능 - 흑해, 다뉴브 강을 통한 물류 용이 ○ 한-EU FTA(2011.7)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주의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간접 비용 다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의 복잡성, red tape 만연 등으로 경영활동 애로 ○ 사회주의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과 열성이 상대적으로 미흡 ○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교량 등 부족, 운하, 항만 시설 개선 미흡
〈기회 : Opportunity〉	〈위협 :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책사업으로 사회간접 시설 확충시 안정적 경제성장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펀드 등 활용 가능성 -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기회 ○ 경제성장 및 내수시장이 지속 확대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기업 진출 촉진 가능성 ○ 정세 및 경제의 안정적 운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가입이후 EU지침 적용으로 국가 운영시스템 발전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수준으로의 수렴 과정에서 인건비, 유틸리티 등 물적 비용의 지속 증가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인력 해외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임금 상승 등 우려 ○ 경제성장 지속으로 근로자의 각종 복지 요구 증가 및 노동조합 운동 강화/ 활성화 가능성

무역 거래와 결제 관행

루마니아 일반 기업들은 까다로운 개설조건이 동반되는 신용장 결제방식(L/C) 등의 신용거래를 기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신환 송금방식(T/T)의 거래를 유지하다가 무역거래가 이루어질수록 T/T 거래에서 외상 거래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한 후 거래 조건의 변경을 고민해야 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 수출보험에 가입한 후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⁵³⁾

루마니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 이중과세방지, 자유 송금 등 인센티브, 2) 국가보조금 인센티브, 3) 세제 인센티브(① 신기술 장비 투자 사업에 대한 이윤세 면제, ② IT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 면제, ③ 재투자분에 대한 배당금 세금 면제, ④ R&D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 ⑤ 최근 졸업생 및 편부모 자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 4)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있다.

기업/회사 설립 절차

루마니아 정부가 2016년 발표한 루마니아 내 “기업/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다.⁵⁴⁾

- 1) 주요 사항 결정(회사명, 자본금 규모 및 출자방식, 각 주주별 자본금 점유 비율, 회사 본사 소재지 주소, 회사 운영진 및 각각의 직능, 회사의 사업 내용 등)
- 2) 회사명 예비 등록(회사등록청을 방문, 회사명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회사명을 예비 등록해야 하며, 예비등록 유효 기간은 3개월임.)
- 3) 관련 문서 준비 및 서명(회사등록청에 제출할 서류 준비), 회사 정관, 각 주주별 책임 소명서, 운영진 소명서, 운영진 서명 견본(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동 회사에의 참여 승인 결정 문서

53) 관련 세부 사항은 주루마니아대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의 루마니아 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됨.

<http://www.dce.gov.ro/>

<http://www.mfinante.ro>

<http://www.aippimm.ro>

<http://www.snia.ro/>

54) 관련 세부 사항은 주루마니아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ro-ko>)에서 제공됨.

- 4) 은행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 후 각 주주별 출자액 송금 및 동 송금내역 증명서 발급)
- 5) 설립되는 회사본사 주소지 사용권 확인서 마련(설립되는 회사가 본사 소재지 주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 마련)
- 6) 자산 양호 상태 확인서 발급(각 주주들이 자산 양호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은행 확인서 발급)
- 7) 각종 인허가 증명서 발급
- 8) 등록신청서 제출(등록신청서 제출시 위 관련 서류 및 여타 필요 서류 제출)
- 9) 등록 확인서 발급
- 10) (재무/세무관련) 회사 및 주주 등록(재무/세무 관련하여 각 지역별 세무 당국에 등록서류 제출)



불가리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시장규모 및 특성

불가리아는 과거 소련위성국에서 탈피하여 2004년 NATO에 가입하였고 마침내 2007년 EU에 가입 하는 등 최근 경제 개혁, 민주화, 부정부패 일소 및 시장 개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서유럽 및 인근 튀르키예, 그리스 등과의 교역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IU 및 세계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불가리아의 인구는 약 690만 명, 1인당 GDP는 약 9,975.8달러로 불가리아는 2015년 이래 3.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나 2020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3.8%의 마이너스 성장률, 7.4%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인구수가 적고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아 소비자나 기업들의 구매력이 취약하고 가격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이에 따라 주문량이 한국기업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최소 주문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불가리아 산업자본협회(BICA)는 2019년 불가리아의 비공식 경제 규모가 약 600억 유로로 추산되며 이는 GDP의 약 2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0년 GDP의 36.65%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EU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현금 거래, 소량구매 등 여러 탈세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는 소득계층이 대다수의 저소득층과 일부 신흥 고소득층으로 양분화되어 있어 저소득층을 겨냥한 저가품 시장은 중국·불가리아·튀르키예 등 개도국산이,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가품 시장은 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선진국산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여지가 쉽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판매가능 품목을 선정하기에 애로가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제품은 비교적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으나 중국산의 저가품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열세에 처해 있어 앞으로 이와 같은 가격 경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16+1 경제협력체' 등을 통해 중·동유럽 지역내 영향력 확대를 의도하고 있는 중국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역내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역내국(독일, 이탈리아 등) 및 인근국(그리스, 튀르키예 등) 위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가리아에서 2020년 기준 對중국 수출이 9위, 對중국 수입은 6위를 차지, 불가리아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 높은 편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의 국가 신뢰도 하락, 성공적인 방역 프로세스로 인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힘입어 의료제품을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중국산 저가품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는 하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현지 수입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요 판매점(대형몰 및 화장품 등 특정상품 유통전문 대형상점 등)을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020.7월 불가리아는 소위 유로존의 대기실로 불리는 환율조정매커니즘(ERM) II 가입이 성사되었으며, 향후 최소 2년간 극심한 경제적 긴장이나 결정 환율에 대한 의도적 평가 절하 없이 ERM II 참여를 지속할 경우, 2024년경 유로존 가입이 전망되고 있다.

ERM II 가입을 통해 불가리아의 국가 신용도 상승이 기대되며 이는 정부, 기업 등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어 불가리아 내 자금 유입 및 외국인 투자장려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ERM II와 함께 은행연합(Banking Union)

가입도 이루어짐으로써 불가리아 은행은 EU의 공통된 은행 규칙을 적용받게 될 것인 바, 이러한 유럽 국제금융매커니즘 가입 과정에서 은행 건전성이 일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對 불가리아 수출 시 유의사항

불가리아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사나 사무소 대신 현지인을 에이전트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출시에는 한국과의 거리, 언어 및 문화장벽, 시장규모를 감안해야 하며, 에이전트와 계약 시 동 파트너의 재정 능력, 신용도, 현지인맥 활용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사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직접 현지시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장상황 및 동 파트너의 능력, 영업 실적 등을 체크해야 한다.

품목별로 다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불가리아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컨테이너 단위 물량의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이 어렵다. 암스테르담, 부다페스트 등 인근 국가 물류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서유럽 에이전트 또는 직접 웨어하우스 운영 등의 방식으로 소량씩 신속하게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 자국의 생산기업 미발달로 인해 자국기업들과의 경쟁은 높지 않으나 대부분의 상품들이 선진 서유럽 국가들의 제품인 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서유럽 기업들과의 경쟁은 치열한 편이다. 여전히 EU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지하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불가리아는 수입 시 일부 바이어의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의 상대적 미성숙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이 낮은 측면이 있으며 높은 거래비용, 금융서비스 비용 발생 측면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독점 딜러가 유통망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 거래부터 공급자를 대상으로 독점 거래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불가리아 레바화 환율은 유로화에 고정(1유로 = 1.95583)되어 불가리아

바이어들은 환위험 회피를 위해 유로화 거래를 선호하므로 결제통화는 달러화보다 유로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가 2007년 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규정 및 품질인증 제도에 적합한 제품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판매보다는 공동 발전 파트너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고 카탈로그, 소형 견본 제품 등의 제작을 통해 불가리아 수입상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에는 투자자금 부족으로 설비투자 및 기술 지원 등 우리나라 기업과의 합작 희망 업체가 상당히 많은 바 이들과의 합작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현지업체는 공장건물이나 부지 제공, 한국업체는 설비 또는 기술 제공 등으로 설비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역시 동 합작 대상 기업의 재무상황, 거래의 투명성에 관한 트랙레코드(track record), 과거 여타 국내외 기업들과의 법적 분쟁 이력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격제시 시 FOB Korea Port가 아닌 C&F Varna, 혹은 CIF Varna 조건으로 제시하여 수입 업체의 수입가격 산출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도 조건은 현지 Varna 도착 기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한국에서 선적하는 경우 항해 일수를 계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최근 Varna 항구 이외에도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불가리아내 Burgas 항구(고속도로 완공), 그리스 Thessaloniki 항구도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1989년부터 지속되어온 입법개혁조치에 의해 불가리아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법 및 제도적 환경은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동 법 및 제도를 실제 적용 및 운용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량 및 의지가 아직 미약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외국인 투자자와 불가리아 현지 기업인과의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기업에 동등한 법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에 기인하고 있다.

1996년부터는 불가리아 투자청(IBA: Invest Bulgaria Agency)를 경제부 산하에 두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IBA는 불가리아에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경제현황, 투자지, 인력, 인센티브), 자문(법률, 행정절차 및 허가), 파트너십 형성(대학교, 정부기관, 협력사, 투자 파트너) 등의 서비스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對불가리아 누적 투자액은 2.3억 달러이며, 한국의 불가리아 투자는 태양광 발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아울러, 불가리아 경제부는 2019.9월 한국이 1996-2018년 총 투자액 기준 불가리아 30대 투자국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불가리아는 개인소득세 10%, 법인세 10% 및 부가가치세 20%(숙박의 경우 9%)의 일률과세시스템(flat-tax system)을 적용하고 있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Eurostat에 따르면 2019년 불가리아의 GDP 대비 세수(tax revenue) 비율은 30.3%로 동 비율은 EU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불가리아는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법인세 등 조세제도뿐만 아니라, 흑해와 중동부 유럽을 잇는 남동부 유럽의 관문에 위치한 EU의 신흥 시장으로, 개방적인 경쟁체제하에 비교적 저렴한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Cushman & Wakefield's rating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2016년 아웃소싱 대상지 7위(유럽에서 2위)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세계에서 아웃소싱 산업이 3번째로 발달한 나라로 기록됐다. 불가리아 혁신·비즈니스 우수성·서비스 및 기술협회(AIBEST)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아웃소싱은 2019년 불가리아 GDP의 5.5%를 차지, 2020.8월 기준 동 분야 고용인원은 약 81,000명으로 2022년까지 GDP의 8.9%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면(고실업 지역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부가세 면제(투자 실현을 위한 현물자산 수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고용보조금(청년 및 빈곤층 고용 시, 고용청(The employment Agency)은 각 고용인의 고용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와 고용주세를 일정 기간 부담) 지급, R&D 지원사업(첨단사업 및 R&D 분야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금액, 분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등급 기준

구분	A 등급	B 등급
제조업 분야 투자	5백만 유로 이상 (2백만 유로 이상, 150개 고용 창출)	2.5백만 유로 이상(1백만 유로 이상, 100개 고용 창출)
고실업 지역 투자	2백만 유로 이상(25개 고용 창출)	1백만 유로 이상(10개 고용 창출)
제조업 중 첨단 산업 분야 투자	2백만 유로 이상(25개 고용 창출)	1백만 유로 이상(10개 고용 창출)
서비스 분야 투자	1.5백만 유로 이상(0.5백만 유로 이상, 150개 고용 창출)	0.75백만 유로 이상(0.25백만 유로 이상, 100개 고용 창출)
서비스 중 첨단 산업 분야 투자	1백만 유로 이상(50개 고용 창출)	0.5백만 유로 이상(25개 고용 창출)

주 : 금액 조건만 충족시키거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감안하여 등급 선정

다만, 이와 같은 불가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과는 다르게 조세 감면,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해외투자의 규모에 따른 제한

불가리아에 대한 해외 직·간접 투자 및 불가리아 기업에 대한 해외 주식투자에 있어 투자 규모에 따른 제한 및 차별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불가리아 법은 외국인의 불가리아 부동산(토지)취득권과 부동산에 팔려있는 건물에 대한 취득권과 건축권을 구별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비 EU 회원국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즉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회사는 농지 구매가 불가하나 현지 법인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지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불가리아국적이 아닌 EU 회원국 투자자는 제2 주거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에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나 신규 건축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아울러 모기지 계약이나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에 있어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라이선스, 허가권 및 기타 행정적 조치

원칙적으로 현지 불가리아 기업인과는 차별적으로 해외 투자자에 대해 요구되는 라이선스나 허가권과 관련된 행정적 규제는 없다. 불가리아 정부는 라이선스나 허가권과 관련한 행정규제를 가급적 철폐하려는 입장이나 아직까지 에너지, 무기, 비철금속의 거래 은행 및 보험업 등에 있어 라이선스나 허가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기업인과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조달 참여

해외 투자자는 불가리아 지역에서 모든 정부조달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외투자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재원조달충족여부, 몇몇 특수 정부조달분야에 있어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특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기술적인 사전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조세

불가리아정부는 개인 및 기업에 관계없이 불가리아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10% 일률과세를 하고 있으며 2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

해외투자자가 불가리아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다. 다만, 해외투자자의 배당수익금 또는 청산금에 있어 적절한 과세 납부 절차 이전까지 해외송금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우리나라와는 1995년 6월 발효).

투자회사 등록

요구되는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불가리아에서 해외 신규 투자자가 회사설립신고를 하는데 약 3~5일이 소요된다. 유한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필요자본금은 2레바(약 1유로)이고, 합작 주식회사의 경우는 50,000레바 (약 25,000유로)이다.

對 불가리아 투자 시 유의사항

불가리아에 투자를 검토 시 우선 EU 회원국이며,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튀르키예, 이스라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이들 인접 유럽 및 흑해연안 국가들과 관세부과 없이 상품 이동이 가능하며,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지 국내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진출하기 보다는 유럽 전체 시장을 겨냥한 진출이 바람직하다.

다만, 불가리아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열악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투자 시 입지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신용거래 및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낮은 행정투명도, 관련 제도 미비는 투자진출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및 일관성 없는 정책과 빈번한 법률 개정 등은 투자 시 상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 중 하나이다.

불가리아는 EU 가입으로 인해 변화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규정의 빈번한 변경 및 사회주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복잡한 규정이 아직 잔존하여 복잡하므로 투자 시 법률, 회계 등 전문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료, 장비 등 반입 시 CE마크 등 현지 산업 규제 정보에 대해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현지기업과 합작 투자 시에는 합작투자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판결에 적용하지 않아, 사전에 가능한 현지 유력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강화예정인 환경 기준, 품질 기준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규정 및 세관정책의 강화, 노동비용의 상승 등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측면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도 있다.

현지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취약한 편이며 전기를 제외한 에너지의 경우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전기 에너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풍부한 편이나 보다 저렴한 대체 에너지인 가스의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에너지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불가리아 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발전소 유형별 총 전력 생산 구조는 화력발전소 34%, 원자력발전소 41%, 신재생에너지 14% 등이며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상수도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용수공급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유틸리티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불가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기준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한 1,525 BGN(약 780유로)으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불해야 하므로, 단순한 현지 평균 임금 수치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 사업 분야의 외국업체 임금 수준을 조사하여 참고로 하여야 한다.

최근 무디스는 2020년 10월 불가리아의 장기 외화 및 현지 통화 등급을 Baa2에서 Baa1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불가리아의 ERM II 가입과 관련 제도적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코로나19 전염병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 및 신용 프로필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향후 유로존 가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내부 구조 개혁으로 인해 기존 불가리아 수출 및 투자 시 주요 장애물이었던 취약한 법치주의, 정부 비효율, 부정부패가 크게 개선됨으로써 불가리아의 국가 리스크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매력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불가리아는 WTO 정부조달위원회의 옵저버국으로서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비서명국이였으나, 2007년 1월 EU 가입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EU 회원국으로서 GPA의 대상국이 되었다. 불가리아 정부는 WTO와 EU 기준에 합치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관련 법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조달사업 입찰자들은 조달 절차가 불투명하며,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소송절차 또한 길고 복잡함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불가리아는 2007년 1월 1일 EU 가입과 동시에 유럽 특허청(Europe Patent Office)의 멤버가 되었다. 불가리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에 관한 법률들은 대부분 EU 규정들과 일치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은 크게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유용 모델, 제약, 저작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가리아에서 등록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등록상표 폐지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 상표 및 지리적 지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3자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침해한 경우
- 불가리아 내에서 5년간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6년 8월 20일 상표 및 지리적 지표에 대한 법률 개정이 있었으며, 이에 특허청은 상표등록과 관련한 모든 신청서와 등록된 상표를 공시해야 한다.

산업디자인 등록절차는 공식 및 실제 조사를 포함하여 12개월이 소요된다. 등록된 디자인은 신청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

특허권 취득을 위한 요구사항은 신상품(World novelty), 발명 단계, 산업 적용성이며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은 등록 및 정식 절차가 없이도 인정되며, 권한은 저작권자의 생존 및 사망 후 70년간 유효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에는 불법 음반 및 CD, 온라인 영상물 불법복제, 유명 브랜드 위조품 등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불법 복제품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이 결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및 방송 저작권 침해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저작권 집행 문제로 남아 있다.

서비스 장벽

불가리아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은 공중파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pre-dominant portion’)을 유럽 내에서 도입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불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에 방영코자하는 외국 방송사는 불가리아 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급자와 바터(barter)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디지털무역 장벽

정보 보호

불가리아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서 EU GDPR의 규칙들을 따르고 있으며, 불가리아 헌법(1991년 7월 13일 채택)과 개인 정보보호법(Law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에 근거한다. 관할 업무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Commission for Personal Data Protection)가 담당하며,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보호

시장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분석 및 통제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승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불가리아는 2015년 유럽 GDPR 발효 직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국가 훈련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무역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써오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불가리아 국세청 해킹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가리아 정부의 정보보호 시스템과 예방책 부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불가리아 개인정보보호법 제 72조(2019년 SG No.17)에 따르면 관할 당국은 처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개인 데이터를 정보 주체 합법적 이익 보호, 유럽 연합 회원국 및 제 3국의 공공질서 및 안보 위협여부, 범죄 행위의 심각성, 이전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관할 당국의 승인 후 제 3국 또는 제 3자 이전을 전제로 국제기구로 전송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기타 장벽

불가리아 기업의 탈세 및 국영기업의 불안정한 경영행태가 외국인 투자가들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불가리아 인허가 제도의 복잡성과 관련 규정의 임의적 해석 및 법 집행, 공무원의 부패 등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스웨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1995년 가입) EU 공동통상정책을 준수하며,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EU가 제정한 관련 지침과 이를 반영한 관련 국내법규 및 정책에 의거한다.

시장 특성

시장규모 및 특성

2017년 인구 1,000만 명을 돌파한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외국 시장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업 창업 시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기술경쟁력을 구축하는 등 수출 지향적인 산업구조가 발달하여 대기업 위주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산업발전을 이루어 왔다. 스웨덴의 연간 총 수출은 약 2,902억 달러, 수입은 약 2,629억 달러 수준(2021년 기준, 출처 : World Bank)이다. 한국 무역협회 통계(2021년) 기준 대 스웨덴 수출은 15.2억 달러, 스웨덴으로부터의 수입은 20.5억 달러로 약 5억 달러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팬데믹 속에서도 양국 교역액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스웨덴은 노르딕 국가 중 한국과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한국의 수출액은 제3국에서 생산된 우리 제품의 수출액을 제외한 수치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서 생산되어 스웨덴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타이어, 전자제품 등이 연간 1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스웨덴 주요 10대 수출입 품목(2021년)

(단위: 미화 백만불)

순위	對스웨덴 수출	對스웨덴 수입
총계	1,520	2,047
1	전기차(336)	승용차(1,077)
2	승용차(288)	화물자동차(707)
3	핸드폰(136)	의약품(689)
4	합성수지(67)	원동기(592)
5	자동차부품(54)	기타플라스틱제품(521)
6	축전지(51)	합성수지(311)
7	아연도강판(50)	기타자동차(285)
8	화학기계(46)	기타철강제품(268)
9	타이어(32)	반도체제조용장비(190)
10	압연기(30)	중후판(176)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스웨덴 기업 : Volvo, Ericsson, H&M, IKEA, Electrolux, Scania, Saab, AstraZeneca(영국-스웨덴 합작), Tetra Pak, ABB(스위스-스웨덴 합작), Assa Abloy, Atlas Copco, SKF, Sandvik, Envac, Skanska 등
- ICT, 자동차, 생활용품, 패션, 디자인,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산업기계류 분야 등에서 두각

소비재 및 산업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안정된 수입과 잘 발달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높은 품질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은 내구재 제품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나 자국산 제품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품질 수준과 적극적인 A/S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품질과 가격을 철저히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져 납기일 등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구매 후 자유로운 반품, 교환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 특성

스웨덴인의 소비 특성은 매우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지는 않으며, 제품의 품질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타 유럽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타이어 등이 현지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가동차, 휴대폰, 평면TV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2021년 KIA 전기가동차는 테슬라를 제치고 스웨덴 전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최초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21년 국가 경쟁력 지수 관련 디지털 스킬(Digital Skills) 분야에서 스웨덴은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 대부분의 지불 결제는 현금 허용이 되지 않고 신용카드 및 디지털 결제 서비스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BNPL(선구매 후지불) 공급업체 중 하나인 Klarna는 스웨덴의 이러한 디지털화 된 소비시장 환경에서 탄생하였다.

스웨덴 전자상거래 시장은 신기술 적용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며 온라인 상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능과 접근성에 대한 요구 수준 역시 높은 편에 속한다.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상황에서 스웨덴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식품 및 일상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웨덴 비즈니스 특성은 보수성과 정확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1995년 EU에 가입했지만 아직 유로화를 쓰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품 이미지가 나쁘게 된 업체는 또 다시 스웨덴 시장에 발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동종업계

종사자 간 정보공유가 빠르기 때문이다.

스웨덴인은 처음 사귀기는 힘이 들지만 한번 사귀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한번 거래 관계가 성립되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관계로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꺼리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스웨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시에 가격은 충분히 받는 대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탕주의(Spot Business)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상품 인지도

스웨덴 소비자의 대부분은 한국이 1960~1980년대를 거쳐 급속도로 공업화되었으며, 수출 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나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상당히 막연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특정 한국산 제품의 상표 및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반면 수입상, 도매상 등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과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 상품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소비자들보다는 높으나 삼성, LG, 현대, 기아 등 대기업 위주의 몇몇 브랜드를 거론하는 정도이며, 우리 상표에 대한 인지도는 일본산, 유럽산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등을 통한 기업들의 홍보 노력과 함께 스웨덴 시장에서 한국 스마트폰, LED TV, 특히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한국산 미용 제품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임에도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양질의 제품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백화점, 미용·화장품 유통 체인 등에서 “K-beauty”라는 이름하에 판매되는 등 스웨덴 미용 시장에서 그 인지도를 넓혀 나가고 있다.

투자환경

(1) 투자지로서의 장점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환경을 갖춘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2022년 스웨덴은 유럽위원회(EU Committee)의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3위, 블룸버그(Bloomberg)의 혁신지수 5위를 차지하였고,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부패지수에서 180여개 국가 중 부패 없는 국가 4위에 선정된 바 있다.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최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노르딕 지역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북구 판매 법인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

산업체-대학-연구소-지자체간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에 약 65개의 산업별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서 창업지원부터 입주기업간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 시스타(Kista) Science City : IBM 및 에릭손(ERICSSON) 등 972개 기업이 입주, 32,500명이 종사하고 있는 북유럽 최대 ICT 클러스터로, 5G 및 IoT 테스트 베드 기능(Urban ICT Arena) 등 수행. 국책연구기관(RISE) 및 기업, 학계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
- 그 외, 말뫼/룬드-Medicon Valley(제약, 생명공학), 예테보리- 자동차 클러스터, 옘살라-BT 및 제약 클러스터, 스톡홀름- Clean Tech(환경산업) 클러스터 등 운영

또한 외국기업들은 우수한 IT 인프라와 혁신 기술, 개방적인 경제 구조와 새롭고 다양한 시도가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첨단기술 분야는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서 진출, 활동하고 있다.

수준 높은 인력과 통신 인프라,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환경 등은 외국기업들

이 스웨덴을 선호하는 투자 국가 중 하나로 꼽는 주된 이유가 된다.

또한, 우편,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 근교에 오피스 빌딩과 은행, 우체국 등 기반 시설을 갖춘 비즈니스 단지가 산재해 있어 기업의 입주 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개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관리되고 있어 신용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부합하면 절차대로 잘 처리해 주기 때문에 예상외의 난관에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외에도 철강, 화학, 목재 공업 등이 발달되어 있어 원료 조달이 용이하며,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발달된 사회 간접 시설로 인해 생산 여건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스웨덴의 주요 시장은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이며, 이는 총 교역량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2021년, Eurostat). 또한, 스웨덴 자체가 수출 주도형 경제이므로 교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매너는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 그간 국제 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도와 기술 제품 수출국으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춘 Made in Sweden 제품이라고 한다면 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2) 투자지로서의 단점

고용 비용이 매우 높다. 고용주세 납부로 인해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고,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용이치 않다.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업무에 적합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가 어렵다. 또한 교통, 통신을 비롯한 제반 물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액 대비 생산되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한하여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자문 등 원스탑 서비스의 부재, 높은 생활비 물가와 지속적인 주택 부족 문제는 여전히 투자 및 진출지로서의 현실적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종래에는 스웨덴의 중요 산업을 보호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점차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동일한 대우(지원)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업종 제한은 없다.

한편, Facebook은 북극의 찬 공기를 이용하고 전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웨덴 북부 Luleå 지역에 2013년부터 첫 유럽의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시작하여 3개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역시 활성화되면서 2013년부터 새롭게 탈바꿈한 룰레오 사이언스 파크(Luleå Science Park)에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AI 및 사이버 보안, 천연자원, 우주 기술, 통신 분야 등의 100여개 회사가 입주해있고 1,4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4) 디지털 무역 장벽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스웨덴은 전자 상거래 및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The Swedish Act on Electronic Commerce and Information Society Services(2002:562))을 적용하고 있다. 2022년 5월 1일 스웨덴에 소비자 판매법(New Consumer Sales Act)이 발효되었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EU(Omnibus Directive(2019/2161) 및 the Sales of Goods Directive(2019/771))과 맥을 같이 한다.

디지털 무역 관련 데이터 보호 관련해서는 대부분 EU 규정을 따르고 있고,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 개인정보법(personuppgiftslagen)은 2018년 5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시행으로 대체되었다. IT 시스템 및 루틴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 제공, 공유 행위는 금지이다. 스웨덴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3국에 전송하는 경우에도 GDPR 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제3자(국) 소유의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공급자와의 계약 시 서버·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스웨덴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일반 의무 조항은 따로 없으나,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하려는 기업은 개인 데이터를 제3

국으로 전송하는데 적용되는 GDPR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EU 역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1) 해당 국가가 합당한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보장한다는 EU 집행위의 적정성 결정이 있거나 2)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 또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과 같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을 경우 3) 기타 특정 상황 또는 개별 사안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모든 EU 회원국은 GDPR 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1개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스웨덴에는 독립 감독기구로서 IMY (Integritetsskyddsmyndigheten)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관한 조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스웨덴 내 기업의 GDPR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는 ‘개인 정보 관리 및 처리의 미흡’(위반 조항 제5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G20 차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EU 경제재정 이사회(ECOFIN)은 2019년 3월 디지털 기업에 매출액에 기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단기 대책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스웨덴을 비롯한 일부 북유럽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1년 10월에는 G20정상들이 새로운 디지털세 도입 제안에 합의하였으나, ‘유니콘 기업의 나라’로 불리며 다수의 테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은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와 스웨덴 기업의 비용 증가 및 세금 분쟁 등의 복잡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빠질 수 있는 우려로 인해 여전히 디지털세 도입에 그다지 적극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5) 투자 인센티브

가. 세제 인센티브

(R&D 세금 공제) 제조공정의 개선 또는 생산비 절감, 새로운 지식 창출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R&D 인력 세금 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회사 규모 및 소재지, 산업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스웨덴에서 직접 고용한 피고용인에 적용되어 고용주는 급여 분담금에서 급여의 9.59%-10%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세금 공제) 스웨덴에서 찾기 어려운 전문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 임원, 전문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피고용인의 소득세와 고용주의 고용세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3개월 이내 Research Workers Board에 세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승인되어야 하며 승인된 신청서를 세무서에 보내야 한다. 스웨덴 근무 첫 5년 동안의 소득 및 수당의 75%에 대한 세금만 내고 나머지 25%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기타 인센티브) 스타트업의 경우 녹색 기술 및 생명공학 분야에 주로 투자하는 Almi Invest의 8개 지역 및 국가 벤처캐피털 제공 등이 있다.

나. 지속가능 인센티브

(녹색 산업 지원) 탄소배출과 온실가스 저감 차원의 그린 솔루션 및 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R&D 예산’을 지원, 22년 기업들에게 약 9억 900만 크로나를 지원했으며, 18년 이후 총 8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약 15억 크로나를 지원해왔다. 스웨덴 에너지청(Swedish Energy Agency)의 e-service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스웨덴어로 작성해야 한다. 상, 하반기 2회 지원 공고를 하며, 지원 요건은 응용R&D, 타당성 조사, 산업 프로젝트 등에 한하며, 녹색 산업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투자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관련 투자에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

(기후 변화 대응) 민간 및 공공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신기술 개발과 관련 하는 운송 및 농업, 부동산, 그린 에너지 전환 기반 시설 등에 주로 ‘투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기업투자 관련 22년 보조금은 약 28억 크로나였으며, 수익성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나 법률 요구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생산에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국가관리위원회(Country Administration Board)의 e-service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스웨덴 환경보호청(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승인한다.

다. 혁신 인센티브

- 혁신 연구와 관련한 R&D 지원 보조금으로 혁신청(Vinnova)에서 관리하며 지속가능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및 협력, 스웨덴의 글로벌 혁신 솔루션 및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17개의 전략적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총 80억 크로나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라. 지역 인센티브

한국과 달리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제·지역성장청(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은 인구밀도가 낮고 개발이 부진한 스웨덴 중북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역 투자 지원금(regionalt investeringsstöd)'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지원 방식으로, 건물, 설비, 기계 등에 대한 투자 또는 신규 투자에 따른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 보조금 지원 등이 해당한다. 동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가 고용 제고, 지역 산업 구조 확대, 여타 기업들의 투자 촉진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밖에 투자의 종류, 지역,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각 신청 건별로 개별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가 정해지며, 소기업의 경우 30~40%, 중기업의 경우 20~30%, 대기업의 경우 10~2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결정이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어야 하며, 대기업(250명 이상 고용, 연간 매출액 5천만 유로 초과하거나 총 자산 연간 4,300만 유로 초과 기업)의 경우 신규 기업 활동이거나 같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투자지원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거리상 물류 운송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Norrbotten, Vasterbotten, Jamtland 및 Vasternorrland 지역에서의 제조 기반의 사업 물류비용에 대하여 운송비의 5~45%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500만 크로나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운송 거리는 401km를 초과하여야 하며 철도와 트럭, 해상 운송이 포함된다. 경제·지역성장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1) 투자 통계

스웨덴은 인구 약 1,042만명(2021년 기준)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은 높은 편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웨덴에는 대략 16,000개의 외국계 기업이 700,000여명의 인력을 고용을 창출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Business Sweden의 보고서(Global Rebound From Crisis Level)에 따르면 2021년 스웨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200억 크로나(213억 달러, 추정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0년 1,760억 크로나(170억 달러, 추정치)에서 25% 증가한 것이며 2019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수치로 2008년 이후 최고액이다.

글로벌 최대 M&A 미디어 그룹인 Mergermarket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182건의 비즈니스 거래가 스웨덴에서 이루어졌으며, 2020년 133건과 비교하여 49건이 증가하여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기업들의 스웨덴 내 투자 확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FDI 잔액(FDI stock)은 2021년 기준 3조 3,900억 크로나(3,282억 달러) 수준으로 서비스 분야 투자 64%, 제조업 분야 투자 36%를 기록하면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노르딕 국가와 유럽 기업이 스웨덴 FDI 잔액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북미 기업은 지난 1년간 점유율이 12%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 기업의 스웨덴 FDI 잔액 점유율은 4%로 다소 감소하였다.

(2) 스톡홀름의 본사형 경제(headquarter economy) 발전 현황

스웨덴은 북유럽, 발틱 연안과 EU 시장의 주요 연결 통로이자 창의적 문화와 탄탄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해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수도 스톡홀름은 실리콘 밸리에 이어 1인당 최대 유니콘 기업(총 8개)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European 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및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로 선정된 바 있다. Invest Stockholm과 Region Stockholm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2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스톡홀름에 위치해 있어 이는 유럽 내에서 암스테르담과 함께 런던 파리에 이어 3번째로 가장 많은 수치로, 스톡홀름에 위치한 본

사의 85%가 외국 기업이다. 아울러 노르딕 국가 내 노르딕 또는 글로벌 본사의 54%가 스톡홀름에 위치해 있다.

(3) 스웨덴 진출 한국기업: 총 14개사

현재 스웨덴에 진출하여 영업 중인 한국기업(법인 및 지사)은 총 14개사로,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대한항공(화물), 현대상선, 제일기획, HS애드, 범한판토스, 유코카캐리어스, 제일기공, 동진세미켄, 웰코스가 있으며, 법인·지사 진출 및 스웨덴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은 총 30개사이다.

(4) 한-스웨덴 직접투자 현황

(對스웨덴 투자 현황) 21년 이후 팬데믹 속에서도 전기장비 제조업과 발전업, 2차전지 소재 관련 신설법인 설립 관련 부동산업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對스웨덴 투자 규모가 다섯배 이상 급증하게 되었다.

○ 한국의對스웨덴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US\$, 도착액 기준)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21	3	0	3	6	6	15	14	11	11	18	104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22년)

(對한국 투자 현황) 건축 소재 및 자동차 제조업, 해양레저, 자동차 금융(파이낸스) 분야에서 주로對한국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스웨덴의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US\$, 도착액 기준)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28	79	205	110	269	8	2	25	40	49	42	47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22년)

창업절차의 간소화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2020년 국가별 사업환경(Doing business)에 관한 조사(직원 수 50명 이하 기업 창업시 수반되는 법적, 행정적 장애수준 평가)에서 스웨덴은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용

스웨덴 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개인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 25,000 크로나(약 3,840달러), 공개 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의 경우 50만 크로나(약 76,800 달러)이며, 지사(branch)를 설립할 경우에는 자본금이 요구 되지 않는다. 스웨덴 기업등록청(Bolagsverket)에 대한 등록 비용은 법인 설립 신고 시 2,200 크로나(약 340 달러), 지사 설립 신고 시 2,000 크로나(약 300 달러)이다.

직업별 월 평균 보수

스웨덴 전체 월 평균 보수는 2021년 기준 40,200크로나이며, 남성의 월 평균 보수가 46,600크로나, 여성의 월 평균 보수가 38,300크로나이다. 업종 중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분야의 관리직이 가장 높은 월 평균 보수인 144,900 크로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월평균 보수는 설문 및 시장조사원이 22,600크로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 월 평균 보수(2021, 세전)

(단위: 크로나)

직업	임금
최대 급여 총 평균 보수	
금융 및 보험업 관리직	144,900
고위공직자(지방정부 등)	99,900
의사(외과 전문의)	83,200
R&D 관리직	78,500

직업	임금
영업마케팅 관리직	70,900
대학교수	70,200
행정 및 계획 관리직	69,200
최저 급여 총 평균 보수	
설문 및 시장 조사원	22,600
레스토랑 주방 보조원	24,800
택시운전사	25,300
군인	25,000

출처 : 스웨덴 통계청(2022년)

조세정책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인세

스웨덴에 소재하는 기업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법인세(national corporate tax)만을 납부하며, 지방 법인세(local corporate tax) 및 영업허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6%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스웨덴의 법인세율(2013~2018년 법인세율은 22%, 2019~2020년은 21.4% 적용)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다. 한편, 스웨덴에 상주하는 외국기업도 영업활동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배당금

일반적으로 스웨덴 기업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dividend)에 대해서는 30%의 원천과세(withholding tax, kupongskatt)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면세 또는 세율 인하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15% 수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 협정은 1982년 9월 9일 발효되었다. 한편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법이 2022년 1월 부터 시행되었다.

사용료

스웨덴 관련법상 사용료(royalties)에 대해서는 원천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 스웨덴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순 사용료 이익(net royalty income, 총 사용료에서 사용료 관련 지출을 제한 금액)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21.4%)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

스웨덴의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은 부가가치세 관련 EU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바, 표준세율인 25%의 부가세(moms)를 부과한다. 예외적으로 식료품 또는 호텔 숙박비 등의 경우에는 12%, 교통비 및 신문 잡지 및 도서류, 상업적 체육시설·문화공연, 항공 및 기차, 버스, 택시 이용료 등의 경우에는 6%의 인하된 부가세가 적용된다. 한편, 의료·치과 치료, 의약품, 복지, 은행·금융(보험)서비스, 학교 및 대학 교육, 부동산 임대 또는 매매, 본인 예술작품 판매액이 연간 336,000 크로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한편, 2012년부터 청년 실업 감소 및 고용 활성화 차원에서 요식업계 부가가치세가 25%에서 12%로 인하되었다.

개인 소득세

2021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523,200크로나(약 59,13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만 부과된다. 연간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 외에도 초과 소득분의 20%를 국세로 납부하게 된다.

자본 이자(capital interest), 자본 이득(capital gains), 배당금에 따른 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분의 100%까지 향후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자산 총액이 150만 크로나 이상인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부유세(wealth tax)는 2007년 1월 폐지되었다.

지식재산권

스웨덴 특허청(PRV, Swedish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권리에 대해 관할하고 있다. 음악 및 영화 문학, 기타 창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보호하는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보호되며, 기술 솔루션 특허는 18개월 후 출원되고 최대 20년 동안 보장된다. 상표보호는 10년 동안 적용되며, 한번에 10년씩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디자인 보호는 최대 25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경쟁정책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20018년 새로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 1993년 최초 제정)을 근거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배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는 한편, 경제·통상행위의 집종을 규율한다.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은 '원활히 작동하는 시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를 모토로 하며, 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위법 여부 결정 및 벌금부과 권한을 행사한다.

공공조달

스웨덴의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약 8,000억 크로나(약 775억 달러)(출처: 조달청, 2022)로, GDP의 1/5 수준이다. 스웨덴 정부는 10여개의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조달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2011년 1월 행정서비스청(Kammarkollegiet) 산하에 국립조달센터(Statens Inköpscentral)를 설립하였다. 국립조달센터는 중앙정부의 조달업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ICT 분야 입찰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국립조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EU 규정에 의거한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2008년 1월 발효)이 모든 공공조달(중앙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정부소유기업 등 계약 체결 주체의 판매, 임대차, 구입, 용역, 할부 구입, 공공 토목공사 등)을 규율한다. 한편 조달청(Upphandlingsmyndigheten)은 공공조달을 위한 관련 지식, 도구 및 방법의 개발과 전달을 통해 당국, 단체 및 공급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2021년 4월 공공 조달체계 단순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국립조달센터의 전자입찰정보시스템(www.avropa.se)과 EU 정부조달 통합시스템(www.simap.europa.eu)을 통해서 공지되고 있다.

공공조달은 EU 규정에 의거 비차별(non-discrimination),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투명성(transparency), 비례성(proportionality) 및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이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비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은 국적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행위의 금지를 의미한다. 어떠한 계약체결 주체도 특정 현지 기업이 단순히 관할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원칙은 모든 공급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에 의거, 조달절차는 예측 가능성과 개방성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입찰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문서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조달품목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은 심사(qualification) 요건과 계약체결 대상에 관한 요건이 조달 대상 공급, 용역, 공사들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은 EU 회원국의 관련당국이 발급한 관련 서류 및 인증서가 여타 회원국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스웨덴의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및 혁신에 관한 고려와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식의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1) 환경

EU는 ‘지속적 개발을 위한 신전략(EU renewed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에 적절한(environmentally-suited) EU 평균 공공조달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스웨덴 정부는 이에 따른 행동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2) 인권

조달과정에서 작업환경, 양성평등, 인권, 아동노동문제를 고려한 조건을 부과하며, 이는 공급자 심사기준요건, 평가기준 또는 특정 계약조건의 형식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공급자는 조달대상 물품이 ILO 8개 주요협약 및 UN 아동협약 의무를 준수하여 생산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혁신

스웨덴 정부는 조달 절차 · 방식 및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혁신 수준 및 혁신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4)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 협력(PPP)이라 함은 조달 획득자(procurement)와 공급자(supplier)간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용역 제공 관련 자금조달, 이행, 현대화, 관리운영을 위한 협력의 형식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공공조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액의 조달계약에 해당된다.

부동산 취득

스웨덴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자산 취득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스웨덴 내 부동산 소유와 토지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동산은 주로 대도시에 위치한 사무용 빌딩·상업용 빌딩, 접근성이 높은 주거용 건물, 학교·병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samhällsfastighet) 등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부동산 관련사항은 토지법(Swedish Land Code, Jordabalken)이 규율하며, 토지, 건물, 기타 부속물의 지적, 등기, 소유권, 저당현황 등 제반사항은 스웨덴 토지 등기소(Swedish Land Register, Fastighetsregistret)가 담당한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누렸고, 2020년 스웨덴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2,310억 크로나(약 25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최대 규모이다. 또한 스톡홀름은 2021년 PWC가 발간한 부동산 동향 보고서(Emerging Trends in Real Estate)에서 부동산 투자지로 가장 매력적인 유럽 도시 16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은 스웨덴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노르딕 지역의 신용평가 기관인 Nordic Credit Rating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3분기 스웨덴 부동산 가격은 2020년과 비교하여 급격히 하락했으며 전국 주택 가격 연평균 성장률(CAGR)은 3분기에 -21%를 기록했다. 예테보리 지역의 아파트 시장 가격 정도만 팬데믹 이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근로관계

노동조합

스웨덴은 노사관계의 매개체로서 오랜 노조(trade union)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 근로자의 약 70%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 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약 60%가 주로 생산직 노조 연맹(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72%가 사무직노조연맹(TCO)에 가입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노조연맹인 사무직노조연맹의 경우 140만명의 조합원 보유와 13개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60% 이상이 여성이며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종사자가 약 50%씩 가입되어 있다. 대졸자노조연맹(SACO)에는 21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여러 전문 및 학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별 노조는 고용주단체와 단체근로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을 체결하는 바, 동 협약은 개별 기업과 노조간 계약체결의 지침 역할을 하며, 주로 임금 및 직무 관련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여타 사항은 노동법이 규율한다.

고용계약 적용대상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은 스웨덴 내 적용되는 고용계약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피고용인은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피고용인의 고용계약상 근로조건과 의무가 관리직에 해당하는 경우 (Managing Director, CEO 등)
- 피고용인이 고용주 또는 소유주 가족의 직원인 경우
-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가정에 고용된 경우
- 피고용인이 특별고용지원(special employment support) 및 보호받는 고용관계(sheltered employment)와 관련하여 고용된 경우

일시 해고(redundancies)

스웨덴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기업의 재구성, 축소 또는 활동 종료의 사유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량 하에 기업의 활동을 결정한다. 그러나 스웨덴 고용보호법 및 특히 공동결정법(Co-determination in the Workplace Act)은 일정한 형식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피고용인을 일시 해고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LIFO(last-in, first-out) 원칙이 적용되는바, 최장기간 근무한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근무기간이 최단기인 피고용인이 해고되며, 해고당하지 않은 피고용인에게는 현재 직책에서 만족할 만한 근무평점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 단, 직원 수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향후 기업활동에 특별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원 2명까지는 동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일시 해고된 피고용인은 9개월 이내 직장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대상으로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다.

사회보장비용 분담

고용주는 관련 법률에 의거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월 기본급의 31.42%를 사회보장세(employer's contributions)로 국세청에 납부한다. 사회보장세에는 퇴직연금, 건강보험, 출산휴가수당, 병가수당, 실업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직장연금 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을 경우, 고용주는 민간의 직장연금 관리회사 중 한 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 비용을 납부한다. 직장연금 납부액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 보호 의무

스웨덴은 정부 및 민간기업 모두 환경보호와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교통분야(국내 항공편 제외)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70% 감축, 2045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1990년 보다 최소 85% 감축)으로 만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예방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제품선택의 원칙(product choice principle, 생산 시 기존의 재료나 공정보다 덜 위해한 대체재나 방법이 존재할 경우, 이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 환경법상 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기단계 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경법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Konkurrensverket, 경쟁청, www.konkurrensverket.se)
- Swedish Customs Service
(Tullverket, 관세청, www.tullverket.se)
-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atent-och registreringsverket, 특허청, www.prv.se)
- 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urvårdsverket, 환경보호청, www.naturvardsverket.se)
- Business Sweden
(스웨덴 무역투자대표부, www.business-sweden.se)
- 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Bolagsverket, 스웨덴 기업등록청, www.bolagsverket.se)
- The Swedish Business Link
(기업등록청, 국세청, 경제 및 지역개발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국투자자 지원 웹사이트, www.verksamst.se)
- Working in Sweden(스웨덴에서 근무하는 해외 근로자 지원 사이트,
www.workinginsweden.se)
- Swedish Chambers of Commerce
(스웨덴 상공회의소, www.cci.se)

- Swedish Trade Federation
(스웨덴 도소매상 연합, www.svenskhandel.se)
- National Board of Trade Sweden
(Kommerskollegium, 스웨덴 무역위원회
www.kommerskollegium.se)
- SCB
(Statistics Sweden, 스웨덴 통계청, www.scb.se)
- Swedish Tax Agency
(Skatteverket, 국세청, www.skatteverket.se)



스페인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 현황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20	2021	출처
국내총생산 (GDP)	1조 2,787억 달러 (세계 15위)	1조 4,262억 달러 (세계 14위)	IMF
1인당 GDP	27,132 달러 (세계 35위)	30,089 달러 (세계 34위)	IMF
경제성장률	-10.8%	5.1%	스페인 통계청
교역 규모	6,126억 달러	7,789억 달러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실업률	15.5%	14.8%	스페인 통계청
관광수입	197억 유로	348억 유로	스페인 통계청
외국인 관광객 수	1,895만 명	3,118만 명	스페인 통계청
최저임금 (월, 연 14회)	950 유로	1,000 유로	스페인 정부
신용평가등급 (무디스)	Baa1 (2020.9.)	Baa1 (2021.9.)	무디스
UN 인적개발지수 (HDI)	25위	27위	유엔개발계획 (UNDP)

최근 경제정세

(1) 사회당(PSOE)-포데모스당(PODEMOS) 연립정부 경제정책 기조

2018년 6월 집권한 중도 좌파 성향의 페드로 산체스 사회당 정부(2020.1월부터 포데모스당과 연립정부 구성)는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및 친환경 기조로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 제시하였다.

※ 주요 추진 정책

- (확장재정 및 불균형 해소) △최저임금, 국민연금, 공무원임금 인상 △노동자 지위 강화 △금융세, 디지털세 도입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최저생계비 지급 등
-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전환부 신설 △내연기관 차량 통행 제한 △친환경 차량 구매 장려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 강화 등
- (디지털화) △산업연결 4.0(Industria conectada 4.0)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디지털화 촉진(산업연결 4.0 컨퍼런스 개최) △스페인 디지털 아젠다 2025 발표 등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 19로 야기된 경제 위기를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생산모델 현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EU로부터 지원 받기로 한 경제회복기금을 활용하여 친환경·디지털 경제 중심의 국가경제재건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2020.1월부터 사회당과 집권 연정을 이루고 있는 강경 좌파 성향의 포데모스당의 영향으로 확대 재정, 환경, 노동 친화적인 경제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우파 정치권 및 재계,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각종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EU의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는 정책이 표면화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EU로부터 경제회복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구조개혁안에 대한 EU의 승인이 필요한바, 노동개혁, 연금개혁, 재정개혁 등에 관한 원만

한 합의안 도출여부가 향후 스페인 경제회복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 코로나 19와 스페인 경제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2010년대 초반 경기침체를 겪었던 스페인 경제는 각종 구조개혁 및 구제금융을 토대로 2014년부터 EU 평균 2배 수준의 견고한 성장률을 시현해 왔으나, 2020년 코로나 19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2020년 경제성장률 -10.8% 기록). 대면활동이 필수인 관광산업(전체 GDP의 약 10~14% 차지) 및 코로나 19피해가 극심했던 유럽지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주변 국가 보다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 서비스 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우 2020년 스페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와 이들로부터 얻은 수입이 전년 대비 80% 가량 급감하였다. 다만 2021년 들어 유럽 각국의 백신 접종 진전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유럽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2021년 이후 해외관광객수 및 관광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이다.

※ 해외관광객 2019년 8,350만 명 → 2020년 1,896만 명 → 2021년 3,118만명

※ 해외관광객 수입 2019년 922억 유로 → 2020년 197억 유로 → 2021년 311억 유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수년 간 꾸준히 개선되어 오던 실업률도 2020년말에 15.5%까지 상승한바, 스페인 정부는 기존 임시고용해제(ERTE)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대규모 고용 파괴 및 실업률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에 들어서는 백신 접종 진전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및 국내소비 회복에 따라 실업률도 낮아져 2021년말에는 14.8%로 하락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 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 한 해 전체 GDP의 20%에 달하는 약 2,500억 유로(약 337조원)를 투입하였다. 주요 코로나 19 경제 지원책으로 △기업 신용대출 확대를 통한 유동성 공급 △임시고용해제(ERTE) 제도의 유연 적용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및 사회보장세 감면 △자영업자 지원 △극빈층 최저생계비 지원 △각종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2020년 대비 13.1% 대폭 증액된 4,560억 유로(약 627조원)를 책정하였으며, 최저생계비제도 도입, 임시고용해제제도 확대,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저소득층 주거 임대료 납입 유예 및 강제퇴거 금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신용지원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기조는 2022년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경제규모가 11% 가까이 축소된 가운데 팬데믹 피해를 입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및 공중보건 관련 공공재정 지출 증가로 2020년도 GDP대비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등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었으나, 2021년도엔 경제성장세(5.1% 성장)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비율이 개선되었으며, 스페인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재정적자 개선 등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을 강조하는 등의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도 병행하고 있어 주요 경제예측 기관들은 향후 스페인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GDP 대비 재정적자 2019년 2.9% → 2020년 11.0% → 2021년 6.8%

※ GDP 대비 공공부채 2019년 95.5% → 2020년 119.9% → 2021년 118.4%

스페인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들어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한 결과 2021.8월말 집단면역 형성의 기준이 되는 전체 인구 대비 70%의 접종률을 달성하였으며, 2022.9월 현재 전체 인구의 55%와 70세 이상 노인의 93%가 3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백신접종 진전 및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경제도 관광산업과 요식업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2021년 들어 경제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2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축적되었던 저축이 소비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의 핵심인 내수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다만, 하반기 이후 여름철 이상 고온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급증과 신재생 에너지 공급 불안정이 겹치며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과 글로벌 공급망 적체가 위험요인으로 부각되며 회복세가 둔화되어 2021년도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6%대에 이르지 못하고 5.1%에 그쳤다.

2022년 들어서는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및 국내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견고한 고용세도 유지되면서 여타 유럽 국가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다만, 2022년말부터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가계 구매력 저하 등이 본격화되면서 2023년도 성장세는 다소 더뎠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국가경제재건계획(Plan for Recovery, Transformation and Resilience)과 경제 회복 및 전환을 위한 전략프로젝트(PERTE: Proyectos Estratégicos para la Recuperación y Transformación Económica/ Strategic Projects for Economic Recovery and Transformation)

스페인 정부는 2020.7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조성된 총 7,500억 유로의 EU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가운데 이탈리아(2,090억 유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400억 유로를 6년(2021-2026) 간 지원 받을 예정이다. 동 1,400억 유로 중 700억 유로는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으로 스페인 정부는 동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가경제재건계획을 수립 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국가경제재건계획이 스페인 현대 역사에서 가장 야심찬 경제 현대화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근본적인 경제모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핵심 정책 및 투자 분야는 아래와 같다.

※ 10대 정책

- ① 도시·농촌개발, 인구 사막화 방지, 농업 현대화
- ② 회복력 강한 친환경 인프라 시스템 구축
- ③ 포용적이고 공정한 친환경 전환
- ④ 21세기에 맞는 행정으로 현대화
- ⑤ 중소기업 디지털화, 창업지원, 관광산업지원
- ⑥ 과학혁신, 의료보건시스템 개선

- ⑦ 교육, 지식, 평생교육, 능력개발
- ⑧ 경제적 약자보호 및 고용정책
- ⑨ 문화 및 스포츠 산업 진흥
- ⑩ 조세제도 현대화

※ 핵심 투자분야 (상위 10대 투자 분야에 500억 유로 집중)

- ① 친환경 모빌리티(132억 유로)
- ② 친환경 리모델링 및 도시 재생사업(68억 유로)
- ③ 공공행정 현대화(43억 유로)
- ④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40억 유로)
- ⑤ 5G 활성화(40억 유로)
- ⑥ 신산업정책 및 순환경제 활성화(38억 유로)
- ⑦ 국가 디지털 경쟁력 향상(36억 유로)
- ⑧ 관광산업 지원(34억 유로)
- ⑨ 국가 과학혁신 시스템 강화(34억 유로)
- ⑩ 신재생에너지 확대(32억 유로)

스페인 정부는 ‘국가경제재건계획’의 세부 투자 계획으로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첨단보건, 우주항공 등 11개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PERTE)를 마련하여 적극 투자를 진행중이며, 11개의 전략산업은 아래와 같다.

※ 11개 전략사업('22.11월 현재)

- ① 전기·연결차('21.7월 확정) 2023년까지 총 240억 유로를 투자하여 전기 및 연결차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 충전소, 전문인력 등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 ② 첨단보건('21.11월) 2023년까지 총 14.7억 유로를 △첨단 치료법 혁신과 개발 주도, △맞춤형 약품 개발, △디지털 국가보건시스템 개발, △디지털 전환을 통한 1차 의료 시스템 개선 등에 투자

- ③ 신재생에너지·녹색수소·에너지 저장(‘21.12월) : 2023년까지 총 163억 유로를 △신재생 녹색수소에너지 가치사슬 구축, △녹색수소에너지 개발 혁신, △에너지 저장 R&D 프로젝트, △에너지 자급 프로젝트 등에 투자
- ④ 농식품(‘22.2월) : 2023년까지 10억 유로를 △생산과정 개선 및 경쟁력 증진을 통한 식품사업 강화, △원료생산,수송,상품화,유통 등 농식품산업 모든 가치사슬 구성요소들의 디지털화 지원, △연구·혁신 활동 지원에 투입
- ⑤ 신 언어경제(‘22.3월) : 총 21억 유로를 △스페인어 기반 인공지능, △스페인어 기반 과학, △스페인어 기반 학습, △언어기반 문화산업이라는 4개의 축 아래 14개 선도 프로젝트에 투자
- ⑥ 순환경제(‘22.3월) : 12억 유로를 △환경친화적 생산방식 촉진, △첨단 공정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개선, △생산 및 폐기물 처리과정 디지털화 촉진 등에 투자
- ⑦ 조선(‘22.3월) : 14.6억 유로를 △조선업 가치사슬의 전환, △저공해 선박 개발, △디지털화 촉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선, △근로자 역량 강화 등에 투입 예정
- ⑧ 물순환(Water Cycle) 디지털화(‘22.3월) : 30억 유로를 △각 산업부문별 물사용 실태에 대한 지식 강화, △수자원 관리기관들의 현대화 및 최종사용자들에 대한 수자원 정보 제공 강화, △수자원 관련 사업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투입 예정
- ⑨ 우주항공(‘22.3월) : 총 45억 유로를 무공해 수소 항공기 및 다용도 무인기들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강화와 사이버 보안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양자통신위성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투자 예정
- ⑩ 반도체(‘22.4월) : 총 120억 유로 이상을 △ 반도체 기초연구역량 강화(11.65억 유로), △ 첨단 마이크로프로세서(5 나노미터 이하) 설계회사 설립 및 시범생산라인 가동(13.3억 유로), △ 스페인 내 반도체 공장 설립(93.5억 유로), △ ICT 제조업 보조금 지원(4억 유로) 등에 투자
- ⑪ 돌봄·사회경제(‘22.5월) : 2026년까지 총 8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여 △ 의료 및 돌봄 분야 전문화, △농촌지역 복지 및 교육 서비스 개선, △디지털

텔 교육 및 훈련 촉진, △생산자-소비자 간 농식품 판매 및 유통 촉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 기업의 사회적 경제 모델로의 전환, △사회적 경제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개선 및 상호 협력체계 강화 등 추진

(3)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대응

스페인 정부는 2022.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에너지 및 곡물 위기, 국내 소비 위축 등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및 식량 공급선 다변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 (인플레이션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전력요금 인하를 위한 전력생산용 가스가격 상한제('22.6월 -'23.6월) 시행, △전기료에 포함된 세금 인하, △주요 유통업체들과 협업하여 생필품 가격 인하 시행,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추진, △ 유류 및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전기요금 및 난방비 할인 확대 등의 에너지 위기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등
- (에너지 위기 대응) △미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 러시아산 에너지의 대체 수입선 발굴, △EU와 약속한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절감 특별조치 시행('22.8-11월), △여타 유럽국가들과의 에너지 연결망 확대, △에너지 소비 감축, 에너지 자립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에너지 안보강화 계획(10월) 시행 등
- (식량 위기 대응)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산 식량의 대체 수입선 발굴, △GMO 농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EU농산물 검역규정 완화 추진,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대체 육로(철도) 운송 등

(4) 주요 경제전망 지표

주요 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GDP	2.0	-10.8	5.1	4.4	2.1
실업률	14.1	15.5	14.8	12.8	12.2
공공부채	95.5	120	118.4	115.2	112.4

출처: 스페인경제부('22.10월초)

주요 산업 동향

산업구조

스페인은 1986년 EU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여,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산업구조도 농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모하였다.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

부문/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농축수산업	2.8	2.8	2.8	2.6	3.1	3
제조업	14.7	14.7	14.6	14.5	14.7	16.8
건설업	5.3	5.3	5.5	5.7	5.7	5.8
서비스	67.9	67.8	67.6	67.9	67.8	74.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스페인 통계청

업종별 고용분포

(단위 : %)

부문/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농축수산업	4.3	4.2	4.0	4.0	4.1
제조업	14.3	13.8	13.8	13.9	13.7
건설업	6.0	6.5	6.4	6.6	6.5
서비스	75.4	75.4	75.8	75.4	75.7

자료: 스페인 통계청 (각 연도별 4분기 기준)

주요 산업 현황

(1) 관광산업

관광산업은 국가 전체 GDP의 약 12%를 차지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2010년대 스페인 경제회복 및 경장 수지 개선을 주도하였다. 스페인은 연 8천만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과 1,000억 달러 이상의 관광수입을 자랑하는

세계 2위 규모의 관광대국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방문객이 전체의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 정부는 기존 유럽 국가들 외에 소비성향이 큰 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등) 및 중동 국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추진 중이며 특정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원관광과 같은 테마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019/2021년 스페인 방문 국가별 관광객 순위	
국가	방문자수 (만 명)
영국	1,801/430
독일	1,115/520
프랑스	1,114/580
이탈리아	453/170
네덜란드	368/200
한국	63/3.7
전체	8,350/3,118

자료: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인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여행관광경쟁력지수(T&T competitiveness index 2019) 순위에서 전체 140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의 관광산업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스페인은 관광지로서 풍부한 자연 및 문화자원, 교통 및 서비스 인프라, 우수한 치안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순위에서 이탈리아, 중국에 이어 3위(총48개) 기록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온을 바탕으로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여름 휴양지가 발달하였고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서늘하고 습한 편으로 여름에는 피서지, 겨울에는 스키 등과 같은 겨울 스포츠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일명 MICE산업으로 불리는 컨벤션·비즈니스 산업도 발달하였는데 매년 2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등 세계적인 전시행사를 다수 개최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던 관광산업은 2020년 코로나 19로 크게 위축되었다. 출입국, 영업활동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페인 방문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이 각각 전년 대비 80%가량 급감하였다.

※ 스페인 방문 해외관광객: 2019년 8,350만 명 → 2020년 1,893만 명

※ 스페인 해외관광 수입: 2019년 920억 유로 → 2020년 197억 유로

2021년 들어 코로나 19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백신접종이 진행되면서 관광산업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관광객수(1.893만 명 → 3.118만명)와 관광수입(197억 유로 → 311억 유로)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2년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2021년 전체 관광객수와 비슷한 3,020만명의 해외 관광객이 스페인을 방문하였다.

한국기업이 스페인 관광산업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며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보다는 현지의 다양한 숙박업소에 각종 용품 등을 납품하는 방식의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현지에 대형 호텔을 다수 보유한 호텔 체인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에 각종 소비재 또는 내구재 등을 납품하는 수입·유통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제품 외에도, 숙박객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각종 IT기기 및 솔루션도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품은 스페인 내 유망 전시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마드리드에서 매년 초 개최하는 FITUR는 전 세계 3대 국제 관광 박람회 중 하나로 손꼽히며, 매 행사마다 160여개국에서 약 1만 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25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2020년에는 한-스페인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동 박람회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석하였다.

-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 관광 박람회(FITUR)
 - 홈페이지: http://www.ifema.es/fitur_01/
 - 전화: +34-91-722-5795
 - 이메일: servifema@ifema.es

(2) 자동차 산업 (기타 차량 산업 포함)

스페인인은 2019년 기준 연간 약 28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세계 9위, 유럽에서는 독일에 이은 2위를 기록한 세계적 자동차 제조 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제조업이자 제1위 수출업종으로 전체 GDP의 약 8%, 전체 수출의 13%, 세수의 약 15%를 차지하고 스페인 전체 고용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이다.

구분	2020	2021	비고
생산량(대)	2,268,185	2,098,133	2021년 세계 9위, 유럽 2위
수출량(대)	1,195,448	1,820,727	전체 생산량의 약 90% 가까이를 수출
수출 비중(%)	14.8%	12.8%	스페인 전체 수출 내 비중 (부품 포함)
국내 판매량(대)	851,211	859,477	가솔린 차량(하이브리드 포함) 판매가 약 70%
친환경	201,612	312,295	전기차, 하이브리드, 천연가스

출처: 스페인자동차생산자협회(Anfac)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자동차 생산량도 전년 대비 20% 가량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부족 현상으로 스페인 완성차 공장에서도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스페인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도체 부족 현상이 2022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계의 장기적·구조적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인은 자체 완성 브랜드(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세아트(SEAT)는 독일 폭스바겐 그룹에 소속)는 없으나 탄탄한 부품산업을 바탕으로 스페인 전역에 9개 자동차 메이커가 17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생산기반은 대부분 스페인 북부(아빌라, 팜플로나, 바야돌리드, 비고, 비토리아, 팔렌시아)나 북동부(바르셀로나, 사라고사)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 마드리드와 남부 세비야에도 일부 기업의 생산 시설이 있다.

○ 브랜드별 스페인 내 자동차 생산기반 현황



아프리카·유럽·미주 대륙을 잇는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생산된 차량의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 중인바, 자동차 및 관련부품은 스페인의 제1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전체 수출량은 코로나 19 여파로 전년 대비 15.5% 감소한 195만 대였으며, 2021년에는 182만대를 수출하였다.

○ 2021년 스페인의 주요 자동차 수출 대상국

순위	제조사	판매량	점유율(%)
1	프랑스	336,052	18.5
2	독일	318,536	17.5
3	영국	222,696	12.2
4	이탈리아	221,066	12.1

출처: 스페인자동차생산자협회(Anfac)

코로나 19를 계기로 친환경 경제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내연기관 차량의 점진적 퇴출 및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선 2040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지하고 2050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스페인 2019년 친환경 모빌리티(Indicador Global de Electro-Movilidad) 순위에서 유럽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아직 친환경 차량 보급률, 충전인프라 측면에서 여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시설 유치, 전기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확대 등 다방면에 걸쳐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생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스페인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참고로 스페인의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 지역은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을 유럽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스페인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인 만큼, 각종 자동차 부품을 현지 생산 공장에 납품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부품 구매 결정권이 현지 생산 공장이 아닌 각 기업의 본사에 있으므로, 각 업체의 본사 구매부서와 접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또한 현지 Tier1, Tier2 기업들도 대부분 외국계 기업으로 스페인 현지에서는 구매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기업의 본사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자동차 A/S 시장의 경우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스페인 시장 점유율이 약 10%에 달하나, 한국산 자동차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지 시장점유율이 높은 유럽 또는 일본 자동차와도 호환이 가능한 부품을 취급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마드리드에서 자동차 부품 전시회인 Motortec이 격년제로 열리고 있으며 주요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드리드 자동차 부품 전시회(MOTORTEC)
 - 홈페이지: http://www.ifema.es/motortec_01/
 - 전화: 0034-902-22-15-15
 - 이메일: motortec-automecanika-madrid@ifema.es

(3) 건설업

스페인은 전 세계 해외 건설 수주 시장에서 수위(2013년 1위, 2014년 이후 중국에 이어 2위)를 다투는 건설 강국으로, 특히 유럽 및 언어·문화적 토대가 유사한 중남미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풍부한 시공경험과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항·항구·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정유·수처리 등 플랜트 수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 발굴, 기본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에 특히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인 건설전문매체 ENR이 발표한 2020년 세계 250대 해외 건설 수주 순위(2020 ENR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에서 상위 20위 내에 ACS(1위), Ferrovial(11위), Tecnicas Reunidas(18위) 등 3개의 스페인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민자 유입 증가에 따라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유로존 가입으로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서 호황을 이뤄 2000년대 초 중반 건설업이 한 때 국가 전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어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경제회복과 함께 부동산 산업도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투자 상승세가 꺾이고 말았다.

한국 역시 세계적인 건설강국으로 양국은 각자의 장점(분야 및 지역)을 살려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양국의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실적은 77건, 205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협력 사업으로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건설, 호주 웨스트 커넥트 도로공사, 카타르 도하 메트로 건설, 바레인 정유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오만 정유공장 프로젝트 등이 있다.

스페인 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스페인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교통 인프라(공항, 기차/버

스 터미널, 고속철도 등) 및 에너지 플랜트 등의 분야에 관련된 건설자재나 설비, 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바르셀로나에서는 격년으로 건설자재 및 장비 박람회(Construmat)가 개최되고 있다.

○ 스페인 바르셀로나 건축 박람회(CONSTRUMAT)

- 홈페이지: <http://www.construmat.com/>

- 전화: +34 93 233 2000

- 이메일: construmat@firabarcelona.com

(4) 신재생에너지 산업

스페인은 50만km²의 넓은 국토(남한의 약 5배 규모)와 풍부한 풍량, 일사량, 삼림자원 등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선도국 중 하나이다. 국제신재생에너지 기구(IRENA) 발표 기준 202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세계 8위 국가로 2021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47%에 달했다.

2000년대 이후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에너지 대외 의존도 완화 및 에너지원 다변화 필요성에 따라 스페인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 결과,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쳐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자연환경 △다변화된 발전믹스 △신재생에너지 통합 전력시스템 △광범위한 R&D 네트워크 △기업들의 탄탄한 국제 경쟁력 등이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강점으로 꼽히며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 추진 △중남미 등 신흥국 수요 증대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의 풍부한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 시 향후 성장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분석된다.

스페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목표로 2021-2030 국가에너지 기후변화통합계획(PNIEC), 2050 탄소중립장기전략(ELP 2050) 등의 중장기 전략을 연이어 발표하고 2021.5월 최초의 종합 기후변화 대응관련 법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법’을 마련하여 친환경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법안은 △경매제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지원 △노후 건물 친환경 리모델링 △전력시스템 운용 유연성 확대 △친환경 이동수단 및 관련 인프라 보급 확대 △에너지 저장시스템 강화 등의 세부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스페인 정부의 전략산업육성프로젝트(PERTE)중 하나이기도 하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수소 에너지 저장 및 운영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페인은 수소경제의 모든 밸류체인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자체 수소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가능한 수소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스페인 수소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명확한 전략의 부재였으나 2020.10월 스페인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여건이 마련되었다.

(5) 제약산업

스페인 내 제약산업 종사자는 약 4만 명으로 유럽 내 6위권이며, 판매액 기준으로 유럽 5위권의 제약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스페인 전체 R&D 투자 중 제약산업 비중이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86년 스페인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이후 경제 성장에 따른 공공의료 확대 및 정부의 지속적인 의약품 개발 투자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하였다.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을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회사 및 연구시설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탄탄한 제약산업 기술과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유럽 내 주요 코로나 019 백신 생산 거점국가로 부상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제약산업을 포함하는 첨단보건산업 육성프로젝트(PERTE)를 마련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 내 활동 중인 제약사의 약 70%가량이 외국계 기업으로 이들은 대부분 북미 또는 유럽계로 스페인 시장에서 오랜 영업활동을 통해 탄탄한 유통망을 보유 중이다. 이들은 스페인에 판매법인 및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현지화를 통해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스페인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세계 의약품 박람회(CPhI)에 참여하는 것이다. 동 박람회는 유럽에서 매년 순회 개최되며, 2018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

○ 세계 의약품 박람회(CPhI)

- 홈페이지: <http://cphi.com/europe/en/home/.html>

(6) 항공우주/ 방위산업

항공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함께 스페인을 대표하는 제조업 중 하나로 EU의 다국적 항공우주 및 방위사업 기업인 에어버스(Airbus)의 군용기 및 수송기 부분(Airbus Defence and Space) 공장이 마드리드 인근 헤타페(Getafe)와 남부 안달루시아 세비아(Sevilla)에 소재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급유기 4대가 헤타페 공장에서 제작되어 2018-2019년에 걸쳐 인도된 바 있다. 스페인 인드라(Indra)사가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육박하며 현재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공항들도 인드라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300년의 역사를 가진 스페인 국영 조선소인 나반티아(Navantia)도 군함정·잠수함 등 방산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항공우주산업은 스페인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프로젝트(PERTE)에도 포함되어 향후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7) 금융산업

관광산업과 더불어 스페인을 대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2021년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스페인 대표 10대 브랜드 가운데 산탄데르(Santander, 1위), 베베우베아(BBVA, 4위), 카이사방크(CaixaBank, 10위) 등 3개 은행이 포함되어 있다. 산탄데르 은행과 베베우베아 은행은 자산 기준 세계 50위 안에 드는 글로벌 은행으로 스페인 외 미주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자랑하며 스페인 보다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의 해외 매출 비중이 절대적일 정도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탄탄한 입지 구축하고 있다.

(8) IT

스페인 IT시장은 크게 제조와 서비스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비스 분야 매출이 90%이상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심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SW 서비스로 전체 서비스의 40% 가량을 차지하며 전자통신과 유통이 각각 30%, 20% 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IT기업으로는 스페인 및 중남미 최대통신사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무선통 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Telefonica, 세계 항공운항 솔루션 1위 기업인 Amadeus, 전 세계 항공관제시스템 시장점유율 30%를 확보하고 있는 교통·방위·에너지 솔루션 기업 인 Indra 등이 있다.

스페인 및 중남미 최대 이동통신사인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차이나 모 바일, 보다폰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고객 확보하고 있다. 텔레포니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등에서 1위 통신사업자이며 Movistar(스페인, 중남미)를 비롯하여 O2(영국, 독일), Vivo(브라질) 등 각국에서 유력 이동통신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스페인 주요 대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큰 국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각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중에 있다. 특히, Telefonica사는 Wayra라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공유오피스, 멘토링, 금융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향후 스페인 시장은 물론 유럽, 북미 등 여타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높아,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으나 재정 또는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스페인 대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르셀로나에서 연례 개최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IT 관련 박람회인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여하는 것이다.

○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 홈페이지: <http://www.mobileworldcongress.com/>

- 이메일: 상기 사이트의 'Contact Us' 서비스를 통해 컨택 가능

한편, 스페인 정부는 최근 ICT 산업 발전 및 자주성 확보를 위해 반도체 PERTE에 120억 유로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스페인 내 반도체 연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삼성전자, 인텔, 시스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스페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9) 농식품업

스페인인 일조량이 풍부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을 보유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유전 공학, 집중농업, 수경재배, 통합 물순환 기술 등 농업관련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남부 안달루시아를 중심으로 올리브 산업, 북부 갈리시아 및 아스투리아스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업 및 낙농업, 중부 리오하, 카스티야 라 만차, 카스티야 이 레온 지역을 중심으로 와인 산업, 동부 발렌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감귤 농업 등이 각각 발달하였다. 스페인은 올리브 및 와인 수출 세계 1위 국가이다. 스페인 와인은 프랑스, 이탈리아 와인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아직 낮은 편이지만 가성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겔 토레스(Miguel Torres), 펠릭스 솔리스(Félix Solís) 등의 브랜드가 유명하다. 올리브, 와인 등 스페인의 식음료는 스페인의 對한국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한국 내에서도 인지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10) 패션산업

스페인인 자라(Zara), 마시모 두티(Massimo Dutti)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패션그룹 인디텍스(Inditex)를 위시하여 망고(Mango), 캠퍼(Camper), 로에베(LOEWE) 등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산업 분야 강국이다. 인디텍스 그룹은 2020년 말 기준 스페인 시가 총액 1위 기업이다.

조세 제도

법인세(Impuesto sobre Sociedades)

부과 대상 법인은 ‘거주’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스페인 조세법에 의거해 설립됐거나 사업장이 스페인 영토 내에 소재하거나, 실질적인 운영 본부가 스페인 영토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거주 법인’으로 간주해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스페인 내 지사, 사무소, 고정 사업장 등 비거주 법인을 소유한 기업은 해당 비거주 법인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윤을 포함해 스페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거주 여부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스페인과 해당 법인의 출신국 간에 이중방지과세협정이 체결돼 있으면 동 협정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법인세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기업활동 외 이익, 일반적인 기업활동과 무관한 투자 행위에 따른 이익, 주식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 부과된다. 법인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BI, Base Imponible)을 산출하는 방식은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소득-공제 가능 항목+순 양도 소득]이다.

2022년 기준, 일반적인 법인소득세율은 25%이다. 그러나 스페인 투자청에 따르면 투자, 고용 및 R&D 활동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법인세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신생기업의 경우 법인세율로 15%가 적용되며,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에 2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금융기관과 화석연료 탐사 및 채굴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 세율보다 높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업종(부동산 투자 기금을 포함한 단체 투자 기금: 1%, 특정 조합: 20% 등) 및 소재 지역(카나리아 특별구역: 4%)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IT 신기술 투자, 장애인 채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도 하며, 법령에 따라 적용비율 및 일정이 달라지므로 전문 회계사 등을 통해 자사의 활동 중 해당 회계연도 세액 공제 수혜 대상활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인세 이외에 설립된 지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각 지방 세무서에 영업허가(License) 관

런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초설립 시점부터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신규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2~3년 후에 나타나는 숨겨진 비용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기업 영업실적 외에 부지면적, 직원 수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산출하는데,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하므로 초기 진출 시부터 전문 세무사와 상의해 향후 부과가 예상되는 잠정 세액을 산출해 보는 것이 좋다.

개인소득세(IRPF)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스페인 영토 내에 고정 거주지를 보유한 자: 스페인 영토 내에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또는 직업이나 기업활동의 기반이나 중심이 스페인 영토 내에 있는 경우
-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법이 정하는 몇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자(예: 외교관)
-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조세 피난처에 거주하는 자: 거주지 변경 해당 연도와 이후 4년간 납세 의무 부과

스페인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스페인 영토에서 회계연도 중 183일 이상을 체류한 사람
-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직업이나 기업 활동의 기반이 스페인 영토인 경우

스페인 내 비거주자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지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 스페인 국적자 중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자.(4년간 납세 의무 부담)
- EU회원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총소득의 75% 이상을 스페인에서 취득한 자.
(비거주자 소득세 대신 개인 소득세 납부를 선택 가능)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 부동산 자본 소득, 동산 자본 소득, 경제 활동에 따

른 소득, 조세 피난처에 소재한 투자 기관을 통해 얻은 소득,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유한 자산의 변동으로 발생한 소득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19~47%까지 누진 적용된다.

- 2022년 기준 스페인 개인소득세 구간별 세율
 - 0~12,450유로: 19%
 - 12,451~20,200유로: 24%
 - 20,201~35,200유로: 30%
 - 35,201~60,000유로: 37%
 - 60,001유로~300,000유로: 45%
 - 300,001유로 이상: 47%

부가가치세(IVA)

기업이나 직업인이 스페인 영토 내에서(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멜리야 제외)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을 만들거나 수입한 법인 또는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이를 총괄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은 반드시 각각의 사업장 등록이 필요하다. 부과 대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세율이 적용된다.

- 일반세율 21%: 기본 부가가치세율
- 경감세율 10%: 주류를 제외한 식·음료, 물, 승객 및 짐 운송, 호텔, 레스토랑, 연극 및 영화 관람료, 관목 등 나무, 식물, 주택 구매 및 판매 등
- 초경감세율 4%: 빵, 밀가루, 우유, 치즈, 계란, 과일, 채소 등의 생필품 농축산물, 서적, 신문, 잡지, 의약품, 장애인용 차량, 장애인용 보철기, 공공 보호시설 등

※ 2021년부터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부가세가 기존 10%에서 21%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1년 6월 기존 21%에서 10%로 인하했으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2022년 7월에는 5%로 더욱 낮췄다. 아울러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천연가스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기존 21%에서 5%로 대폭 인하했다.

보험, 금융, 의료 서비스, 교육, 주택 임대 등과 같은 일부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출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는 수출 과정에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멜리야 지역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대신 일반간접세(IGIC) 5%가 부과되며 세우타와 멜리야에서는 부가세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으로 생산, 서비스 및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스페인인은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의 과세 기준을 두고 있다. 2015년부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생산지국 과세원칙'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변경되었으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인터넷을 통한 구매 및 판매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기본통칙을 발표하여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며, '기타유통증권(Other Negotiable Instrument)'으로 분류된다.

특별소비세

- 담배세 : 담배 최종 소비자 가격 중 약 80%가 세금으로 구성되며, 담배 제품 판매 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Ad Valorem 세율(가치평가세금) : 최종 소비자 가격의 51%
 - 고정세율 : 담배 천 개비당 24.7 유로
 - 최소세율 : 담배 천 개비당 131.5 유로

- 주세 : 크게 맥주, 와인/발효주, 기타 알콜음료(도수 22% 이상)으로 나뉘며, 각 주종별 세금은 아래와 같다.
 - 맥주 : 헥토리터(1리터의 100배)당 2.75~9.96유로
 - 와인 : 주세 면제
 - 기타 알콜올 음료 : 헥토리터당 830.25유로
- 유류세 : 2022년 기준 스페인 유류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휘발유 : 종류에 따라 1,000리터당 472.69~505.79유로
 - 경유 : 종류에 따라 1,000리터당 96.71유로~379유로
 - LPG : 사용처에 따라 1톤당 15유로~57.47유로 등
- 환경세 : 스페인 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의 사용 또는 소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환경세를 적용하고 있다.
 - 특별전기세 : 5.1%
 - 자동차세 : 차량 종류에 따라 12.62유로~112유로
 - 폐기물처리세 : 지방세로 지역마다 상이. 마드리드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톤당 1유로~8유로 부과

한편, 스페인 정부는 자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특별전기세율을 5.1%에서 0.5%까지 낮췄으며, 전력생산세(7%) 부과를 일시 중단했다. 해당 정책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도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 무역 현황

통상 기조 및 특징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내수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외 부문이 크게 성장하며 대내외 불균형 구조가 일부 개선되었으며 이후 대외 부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힘쓰

고 있다. 경제위기 당시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가 자연스레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되었으며 임금 조정 및 유로화 약세가 스페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성장에 기여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높은 내수 의존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 수출 지원, 수출 지역 다변화 중심의 대외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7-2027스페인 경제 국제화 전략 (Estrategía de Internacionalización de la Economía Española 2017-2027)’을 통해 국내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과 고부가가치 해외투자 적극 유치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스페인은 대표적인 친EU 성향의 국가로서 EU의 자유무역 원칙과 정책기조를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 미·중 갈등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요 교역 국가

스페인의 교역은 유럽 역내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대외 무역의 70% 이상을 EU에 의존하고 있어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스페인 정부는 대 아프리카 수출 확대를 위해서 별도의 재정지원 및 통상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 스페인의 전체 대외교역액은 7,790억 유로(수출: 3,742억/ 수입: 4,048억)였으며 10대 수출입 국가 및 품목은 다음과 같다.

순위	10대 수출국	금액 (백만€)	10대 수입국	금액 (백만€)
1	프랑스	59,690	독일	45,274
2	독일	38,328	중국	41,088
3	이탈리아	31,419	프랑스	40,350
4	포르투갈	29,368	이탈리아	26,728
5	영국	22,259	미국	20,132
6	미국	17,454	네덜란드	19,714
7	벨기에	16,982	포르투갈	16,061

순위	10대 수출국	금액 (백만€)	10대 수입국	금액 (백만€)
8	네덜란드	13,519	벨기에	10,984
9	모로코	11,226	영국	10,188
10	중국	10,261	스위스	10,094

출처: ICEX(스페인무역투자진흥청)

※ 스페인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산업용 중간재(28.2%), 산업용 생산재(18.6%), 식음료 및 담배류 18%, 자동차(오토바이류 포함) (12.8%), 에너지 (6.7%)
- (수입) 산업용 중간재(26.3%), 산업용 생산재(20.7%), 에너지(13.5%), 식음료 및 담배류(11.5%), 자동차(오토바이류 포함) 9.5%

對 한국 교역

2019 년 한-스페인 교역규모는 60.1억 달러(수출 34.9억 달러, 수입 25.2억 달러)로 스페인은 우리나라의 29위 교역국이였다. 양국 교역은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다소 정체되었다가 스페인 경기회복과 함께 2014년을 기점으로 살아났으며, 교역량은 2012 년 한-EU FTA 체결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약 45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한 2021년에는 55억 달러로 회복세를 보여주었으며, 2022년은 상반기에만 약 30억 달러를 기록하여 예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국의 對 스페인 교역액 추이 (백만\$)

연도	수출	수입	수지
2017	3,830	1,964	+1,866
2018	3,706	2,363	+1,343
2019	3,494	2,518	+976
2020	2,745	1,722	+1,023
2021	3,248	2,288	+960

출처: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한국의 주요 對 스페인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전자전기, 석유화학, 철강 금속, 기계류, 섬유류 등이며 수입 품목은 자동차/부품, 식품류 (돼지고기, 올리브, 와인 등), 정밀화학(의약품, 화장품 등), 광물성 연료(석유제품, 천연 가스 등) 등이다.

수입규제 및 관세

수입규제

스페인인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수입규제 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즉,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집행위의 조사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되게 된다. 따라서 역외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 28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스페인이 한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 등)는 없다.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4대 분쟁광물 수입금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하

고 있어 수입금지를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2)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유통제한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었다.

관세제도

스페인인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관세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개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 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전한 관세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EU 규정 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규정 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이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을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스페인 관세율은 EU 공동 관세율을 따르나 관세 부과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부가가치세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유류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스페인의 부가가치세 요율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

비관세장벽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TBT(기술장벽)를 들 수 있는데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서 EU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검사, 라벨링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 가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스페인인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유럽 특허청 등 크게 3곳으로 나뉜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등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 외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스페인의 경우 EU 가입 이후 기존 국내제도 대부분을 EU의 통일된 제도에 맞춰오고 있으나,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EU 통합특허의 공식언어(영어, 독일어, 불어)에 스페인어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EU 통합 특허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에서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페인에서 특허를 받거나, 뮌헨에 있는 유럽특허청에 출원 후 스페인 특허청의 인정을 다시 한 번 받아야 하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를 비롯한 상표법, 실용신안 등과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차이는 특허 및 상표법, 실용신안 등이 등록(registration)을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반면, 저작권은 등록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특허 및 실용 신안은 상업적 목적에 따라 제작되며, 저작권은 이러한 특수 목적 이외에 더 큰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한-EU FTA 체결로 인해 지재권 침해 상품의 통관 보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표권·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 신품종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농수산물 및 주류 등을 특허로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되면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만 유효했던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됐다.

○ 특허권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

○ 디자인권 :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보호되며, 최대 4번 5년간 연장

- 상표권 :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무기한 갱신 가능
- 저작권 :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
- ※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 유럽특허청 <http://www.epo.org>
 - 출판 저작권 협회(SGAE) <http://www.sgae.es>
 - 문학 저작권 협회 <http://www.cedro.org>
 - 스페인의 시청각 협회 <http://www.egeda.es>
 - 음반 제작 저작권 협회 <http://www.agedi-aie.es>
 - 예술 저작권 협회 <http://www.vegap.es/inicio.aspx>

통관 및 물류

물류정보

(주요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스페인행 화물은 주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의 3개 항구에 도착한다. 해당 무역항은 각각 북부(바르셀로나), 중부(발렌시아), 남부(알헤시라스)에 위치하고 있어, 바이어들은 최종 목적지에 따라 도착항을 결정한다.

(물동량) 2021년 기준으로 스페인 내에는 총 28개의 무역항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최대 규모는 알헤시라스 항구로 연간 물동량이 1.1억톤에 달하며, 뒤를 이어 발렌시아항은 8천만톤, 바르셀로나항은 7천만톤을 기록하였다.

통관절차

스페인 운송 시에는 스페인 내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운송업체를 이용해 현지 도착 시 통관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통관 시에는 인보이스, 화물내역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기본적인 통관서류와 함께 품목별로 현지에서 요구되는 제품 수출 인증서를 준비해 통관 시기에 맞춰 현

지 공인 관세사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관 대행업체가 선적 서류와 수하인의 위임장을 첨부해 세관에 접수하고,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받고 수입품을 반입한다. 통관은 통상 7~10일이 소요된다.

우편물 발송 시 카탈로그나 제품 샘플의 경우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통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샘플의 경우 인보이스에 반드시 샘플이라고 적고 가격(Value)에는 45유로 미만으로 기입하여야 하며, 카탈로그는 가격을 매기지 않고 카탈로그라고 작성해야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스페인의 경우 특별히 타국과의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려는 개별적인 시도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나,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중시하는 만큼 동 이슈가 예기치 않게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스페인은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이전에 이미 헌법에 ‘법은 시민의 명예와 개인 및 가족의 사생활과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 기술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할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사업 운영 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스페인 내 개인정보 보호 법적 근거
 - 스페인 헌법 제18조 4항
 - EU개인정보보호법(GDPR)
 -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법(LOPDGDD)(2018.12월)
 - 개정 소비자 보호법 : 소비자들이 기업에 유료 또는 개인정보 입수 조건으로 무료 제공 받는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해, 제공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신설
-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 스페인정보보호청(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윤리 장려를 위한 디지털 협약을 추진
- 2021년 중 인터넷서비스, 광고 등 기업활동에 대해 585건의 제재 처분 및 264건의 벌금 부과

해외투자 유치

투자유치제도

스페인 투자유치정책의 기본목적은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우선으로 유치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며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스페인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유시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해외투자 신고 절차 등을 동일하게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미주 및 아시아 지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외국인 투자경로를 다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페인은 1999년 정부령(Royal Decree) 664/1999를 제정해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종류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했다. 동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특정한 경우에만 보고의 의무를 가지며, 보고의 종류로는 사전보고, 사후보고 그리고 연간 보고가 있다.

투자지원기관

스페인무역투자진흥청(ICEX)이 해외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 기관은 스페인산업통상관광부 산하기관으로서 2013년 스페인투자유치청(Invest in Spain)을 통합하여 무역진흥과 투자 유치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다. 현재 약 80개국에 스페인 대사관에 소속된 무역사무소를 운영중이며, 서울 사무소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이메일: seul@comercio.mineco.es
- 전화번호: 02-3703-6600

외국인 투자의 제한

스페인인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있으나, 국무회의를 통해 특정 사례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스페인무역투자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무회의에서 제한한 전례가 있는 외국인 투자 분야는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기, 군수품 및 폭발물 제조 분야와 실험적 혹은 과학적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분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비 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투자 승인을 취득해야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광물 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해당 산업별 특별법이 지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스페인 정부는 2020.03.14. 코로나 19로 ‘국가비상경계령(Estado de Alarma)’을 발동했으며, 이를 통해 EU 투자자들의 스페인 전략기업에 대한 헐값 인수 방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법을 수정했다. 동 법안 수정으로 EU 또는 EFTA 소속이 아닌 국가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스페인 주요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행위가 공공 안전·질서·건강상의 이유로 중단되었다. 단, 중단 범위는 특정 기업의 자본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투자로 인해 스페인 기업의 운영·통제권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한다. 또한, EU역외국의 공공기관 또는 국부펀드의 투자 행위가 위와 같은 자본참여 비중 초과 또는 운영통제권양도 범주에 해당될 시에도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

투자진출 방식

○ 법인

- 법률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합명회사, 1인 투자회사가 법인이 속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식회사(S.A.)와 유한책임회사(S.L.)이며, 법정 최소 자본금은 주식회사 6만유로, 유한회사 3천유로이다.
- 법적으로 본사와 다른 독립적인 기업으로 법인격을 가지며 운영도 독립적인 특징이 있다/ 영업활동 및 세무 등에 있어서 스페인 국내법이 적용된다.

- ‘현지 법인 대표자 위임 → 상업 등기소에 상호명 인증 확인 → 은행 법인 계좌 개설 → 공증인에 의한 법인 개설 증서 공여 → 임시 사업자 등록 번호 발급(NIF) → 세금 정산 → 상업 등기소 등록 → 정식 사업자 등록 번호 발급’ 절차를 거치며 통상 1달이 소요된다.

○ 지사

-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본사를 대표해 스페인에서의 수출입, 판매 등 모든 영업활동을 이행하지만, 대부분의 운영은 본사에 의존한다.
- ‘상호명 신청 → 임시 사업자 등록번호(NIF) 발급 및 스페인 국세청에 의한 모회사 대표 임명 → 발기인에 의한 정관 작성 → 공증인에 의한 지사 개업 증서 공여 → 상업 등기소 등록 → 국세 조사’ 등의 설립 절차를 거치며 통상 6-8주 소요

○ 연락 사무소

- 법적으로 본사에 완전히 종속된 기업으로 스페인 내 직접적인 판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마케팅 및 판촉 등의 부수적인 영업행위만 허용된다. 또한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 투자 위험도

- 스페인은 유럽연합 및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어 현지 투자 진출에 따르는 제도적 측면의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 컨설팅 기관인 A.T.Kearney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스페인의 FDI 신뢰지수는 3.0점 만점에 1.906점으로 조사대상 25개국 중 8위를 기록하였다.

○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 (전반적 사업환경)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사업환경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조사에서 스페인은 2020년 190개국중 30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국가간 거래’나 ‘지급불능 관련 문제 해결’부분에서는 각 1위와 18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편리함’ 부분에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평균 7회)와 더딘 공공행정(평균 12.5일)등으로 97위라는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 (현지 직원 채용시) 스페인 노동법은 대체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해 보호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과 노동자 간 법적 분쟁 발생 시 노동자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채용은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되며, 이후 재계약 시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현지 노동환경 및 관행 이행) 스페인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주당 40시간 이상 노동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내 대부분 기업들은 여름 시즌(6-9월) 중 노사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단축근무제(점심식사 시간 없이 매일 6-7시간 연속 근무)를 운영 중이므로 이를 사전에 숙지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외투자 유치현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내 외국인투자는 '20년과 '21년 각각 1.0%, 22.0% 증가함.

- 주요 투자 분야('20~'21): 에너지공급(13.5%), 건설(9.5%), 금융(7.2%) 순으로 다양한 산업에 투자
- 주요 투자국('20~'21): 프랑스(18.9%), 미국(15.6%), 영국(11.3%) 등 인근 유럽 국가에서 주로 스페인에 투자
- 주요 투자 지역('20~'21): 마드리드(73.4%), 카탈루냐(11.4%), 바스크(4.5%) 순으로 특히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 지역으로의 투자가 집중

스페인 FDI 추이 (단위: 백만불)

구분	2019	2020	2021
해외→스페인	27,638	27,926	34,057
스페인→해외	26,952	36,441	26,076

출처: DatainveX

한국기업 투자현황

2021년 기준 한국의 대 스페인 누적 투자액은 20.5 억 달러이며, 스페인의 대 한국 누적 투자액은 32억 달러이다. 과거 우리 기업의 진출이 주력 수출품의 판매법인 설립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2010년을 전후하여 제조업(수처리 플랜트, 에너지, 자동차부품, 화학 등) 분야에 설비투자가 이루어졌고, 법인 설치도 물류, 광고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 한진해운은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알헤시라스에 연간 180만개의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반자동 컨테이너 터미널 TTIA를 개장하였고, 동 터미널은 2017년 현대상선에 인수되었다. 2011년 말 GS 건설이 스페인의 수처리 업체 Inima사를 인수하여 GS INIMA를 설립하였고, SK 이노베이션은 스페인 최대 정유사인 Repsol과 합작으로 2억 5천만 유로(SK지분 70%)를 투자해 스페인 남부 카르타헤나(무르시아주)에 윤활기유 공장을 설립해 2014년부터 양산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늘어나는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1년 5,300백만불을 추가로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하였다. 동국실업은 2012년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ICT를 인수하여 KDK Automotive를 설립하였고 동 회사의 스페인 공장(Zaragoza 지역 위치)을 함께 인수하였다. 2015년 서울금속은 바스크 지방에 위치한 자동차용 볼트·너트 전문제조업체인 Industira-Gol을 인수했고, (주)나노는 2015년 Tudela에 위치한 베어링 제조회사인 KPF를 인수하여 Nano Automotive를 설립하였다. SK 종합화학은 미국 Dow Chemical이 Tarragona에 보유하고 있던 기능성 접착제 생산공장을 2017년 인수하여 SK Primacor Europe을 설립하였다. 2017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부문 사업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전문기업인 Zhilab을 인수했다. 2018년엔 기아자동차는 스페인 정유기업 Repsol과

함께 마드리드에 차량공유서비스인 Wible을 개시하였으며 2019년 초 한화 에너지는 스페인 현지법인 설립 후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하였다. 이외에도 일진머티리얼스가 스페인 카탈루냐주에 6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4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소재(일렉트로일)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스페인 기업의 한국 진출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금속 가공, 의류, 물류, 식품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5년 이후 스페인의 글로벌 패션그룹 Inditex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이 개인 자산운용사를 통해 서울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물들을 연이어 매입하면서 부동산부문이 對 한국 스페인투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기업 진출 및 수출 장벽 작용 가능 제도 및 조치 (사례)

- 엑스트라마두라주 내 리튬 채굴을 위한 규제 강화 (2022.8월)
 - 스페인 내 최대 리튬산지인 엑스트라마두라주정부가 리튬 광산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리튬 가공 공장 건설, 리튬 광산 폐쇄 시 복구 방안 등에 대한 계획도 제출토록 규정
 - 리튬 개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동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과거에 비해 환경 오염 방지에 대한 방안을 더욱 세밀히 마련해야 하고, 관련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산품 품질보증기간 3년으로 상향 조정 (2021.4월)
 - 스페인 정부가 2021.4월 소비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산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체 부품 보관 의무 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또한 품질 불량 발생 시 소비자가 별도의 증빙 없이 제조사 측에서 제품 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제조기업이 직접 해당 제품 수리와 관련해 제공한 정보와 제품의 분해 난이도, 교체 부품 공급 능력, 오리지널 부품과 교체 부품간의 가격 차이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수리가능성 지수를 계산해 제품에 해당 라벨을 부착하는 방안도 도입 예정

-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제품에 대한 무상 A/S 기간이 늘어나고, 제품 생산 중단 후에도 해당 부품을 최대 10년까지 보관해야 하므로 추가 물류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공산품 유통기업의 A/S 업무 부담도 가중 예상
-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2022.4월)
 - 재생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 및 수입기업들 대상으로 Kg당 0.45 유로의 특별세가를 부과하고, 폐기물 매립 및 소각에 대한 특별간접세도 도입되었으며,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포크, 나이프, 접시 등 일회용 생활용품 유통 금지 등
 - 법령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 불가피

기타

시장특성

스페인의 인구는 약 4,700만 명으로 EU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인구가 많다. 또한, 스페인은 프랑스와 함께 매년 8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으로, 이들이 스페인을 여행하며 소비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스페인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 중 하나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1) 보수적 시장

스페인 시장은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늦고 고객의 호기심이 적은 반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상품 수명 주기가 긴 편이다. 스페인 소비자들은 소비재 구입 시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이며, 직접 보고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터넷 구매, 홈쇼핑 구매빈도가 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다만, 인터넷 보급 확대에 발맞춰 여행상품, 건강용품, 주방제품, 소형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구매와 TV 광고를 통한 구매가 점차 활성화 되는 추세이다.

(2) 구매력 있는 실버마켓

스페인통계청(INE)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스페인 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로 고령 인구가 매우 많다. 또한, 스페인은 여타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연금제도가 잘 발달해 있어 노년층의 구매력이 우수하다. 공공연금 지급 수준은 2021년 기준 최저 월 851유로, 최고 2,700유로로 2021년 평균 월급 1,916유로와 비교해보면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스페인의 노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못지않은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스페인의 경제위기로 인해 노년층의 연금소득이 자신을 위한 소비가 아닌 자녀부양을 위해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구매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스페인이 유럽 노령인구의 은퇴 이민 지역으로 선호되는 곳이라는 사실도 향후 실버 마켓 확대 가능성에 긍정적인 요소이다. 노년 소비층을 겨냥한 각종 기능성 미용제품, 건강관리 관련 상품, 전자기기 등 판매가 유망하리라 전망된다.

(3) 가성비 중시

스페인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 수준은 2021년 기준 약 26,800 유로로, 독일(52,556유로)이나 프랑스(39,971유로) 등 인근 국가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2022년 1분기 기준 실업률도 13%에 달하는 등 EU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 소비자들은 인근 유럽국 소비자들에 비해 구매력이 크게 떨어져, 가격에 매우 민감한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 분위기로 인해, 스페인의 장바구니에서 자체개발(PB)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에 이른다.

(4) 온라인 구매 확대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정착과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구매 보편화 등으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스페인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통계 전문업체인 Statista의 2021년 6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9%가 매달 최소 한 번 이상 온라인 구매를 경험했으며, 36%는 매주 온라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전자상거래 규모는 2021년 전년대비 11.7%가 증가한 577억 유로에 달했다.

한국상품 이미지

과거 한국산 제품은 저가 저품질 이미지가 강했으나, 대기업 브랜드를 중심으로 현지시장 내 입지를 넓히며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가 스페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자동차 브랜드 TOP 10에 포함되어 있으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부문에서, LG전자는 가전 부문에서 현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매년 한국기업 제품의 현지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류 확산에 따른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스페인 내 한국 화장품의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수한 품질과 참신한 패키지 디자인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 스페인 내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인 프리모르(Primor) 등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K뷰티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입 및 유통하는 온오프라인 뷰티 스토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제 납부제도

스페인 국민은 사회보장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스페인 국민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가입여부가 정해진다.

2022년 사회보장 분담금 비율

(단위: %)

구분	고용자 부담	피고용자 부담	합계
각종 연금	23.6	4.7	28.3
실업 보장	5.5	1.55	7.05
직업 훈련 분담금	0.6	0.1	0.7
급여 보장 기금	0.2	-	0.2
합계	29.9	6.35	36.25

자료: 스페인 노동부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7월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4월 1일자로 동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면제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스페인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스페인에서 가입한 연금기간도 합산된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 국가 법령 적용
- 파견근로자는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한국 10년, 스페인 1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국에서 비례방식(자국 가입기간/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보장범위는 전 국민 대상이며, 각 산업체 작업자 대상 산재보험인 “의료 보장”과 실업 전 근무연수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결정되는 “실업 보장”(1년 근무 시 4개월간 실업수당 혜택 있음), 최소 15년- 최대 35년간 근무 시 67세 이후부터 수혜 받는 “국민연금”이 있다.

스페인 정부는 퇴직연금 부담 증가, 경제난 등으로 인해 연금개혁안을 추진, 2013년 1월 1일부로 일부 기준이 강화된 바, 퇴직정년이 65세에서 매년 1~2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 2027년부터는 정년이 67세로 변동 (조기 퇴직정년은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되며, 연금수령액 산정 기준 또한 ‘퇴직 전 마지막 15년간의 기준임금’에서 매년 1년씩 추가되어 2022년에는 ‘퇴직 전 마지막 25년간의 기준임금’으로 변화된다. 연금을 100% 수령받기 위한 조건은 사회보장세 38.5년 이상 납입한 경우 65세, 그 이하로 납입한 경우는 67세 퇴직이다.

2021.11월 스페인 정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여 2023 ~ 2032년 기단 동안 연금 보험요율을 0.6%p 인상(고용주 0.5%p, 근로자 0.1%p 각각 추가부담)하는 방안을 노조 측과 잠정합의하였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1년 2월 발효된 「한-스페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각서」에 근거, 스페인에 체류하는 우리 국내 운전면허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소정의 신청 양식에 따라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당국에 거주허가(residencia normal legal)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허가 취득 시 6개월 내에 교환을 신청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거주증 발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추가 6개월 기간 내 신청이 허용된다.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스페인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다(18~65세: 10년, 65세 이후: 5년 유효).



영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최근 영국의 통상환경 및 특징

영국은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3조 1,869억 달러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다. 1970년대에는 제조업이 GDP에서 약 30%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이후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 총 부가가치(GVA)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인 반면, 제조업 및 기타 산업의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제약, 항공우주, 디자인 등 첨단 제조업 및 창조문화산업의 경우 여전히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영국의 상품 무역은 수출 4,596억 달러(전 세계 14위), 수입 6,647억 달러(전 세계 8위)로, GDP 대비 무역액 비중은 35.3%이다. 2021년 영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자동차(7.3%), 발전기(6.7%), 비철금속(6.5%), 원유(5%), 과학기술장비(4.8%)이며, 주요 수입상품은 자동차(5.4%), 의약품(4.5%), 천연가스(4.1%), 비철금속(3.8%), 원유(3.7%)이다. 그리고 영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14.7%), 독일(9.2%), 네덜란드(8.2%), 아일랜드(6.8%), 프랑스(6.0%) 순이다⁵⁵⁾.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런던은 세계 1위의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국제채권 간접투자거래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금융 중심지이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자국의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EU내 경제 관련 이슈들에서 여타 EU 회원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영국

55)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데이터는 영국 통계청(ons.gov.uk)이 발표한 2021년 연간 영국의 교역통계를 참고해 작성

정부는 지난 2011년 브뤼셀 회담에서 발의된 EU 재정통합안에 자발적 제외 조치(opt-out)를 취한바 있다.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EU탈퇴/잔류 국민투표 결과(탈퇴 51.9%, 잔류 48.1%),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영국 내 EU 탈퇴(Brexit) 여론은 동유럽 등지의 이민자가 영국으로 집중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으며,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EU 집행위가 정책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불만과 영국이 EU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더 역동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중장기 비전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직후 메이(May) 총리가 취임하면서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EU 탈퇴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갔다. 메이 총리는 EU 탈퇴 협상을 위한 부처를 신설하고 EU 탈퇴를 위한 준비를 시작, 2018년 3월 29일 영국 정부가 EU측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EU법 제50조에 따른 탈퇴 절차가 개시되어 2019년 3월 29일부로 영국은 EU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 6월 영국과 EU간 탈퇴 협상이 개시되어, 그해 12월 1단계로 △ 영국 및 EU 시민의 권리(citizen's right), △ 영국의 EU 분담금(financial settlement), △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3개 중점 사항에 대한 큰 틀이 마련되었다. 양측은 상대방 국민의 상호권리 보호를 제공하고, EU탈퇴에 따른 분담금을 정산하며,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후 양 협상단은 상기 원칙적 합의를 문서화한 탈퇴조약 초안을 작업하는 한편, 영국과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시작하였다. 특히 양측은 2019년 3월 29일 탈퇴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이 EU규정을 준수하는 대신, 기존과 동일하게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약 21개월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갖는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런데 당초 2019년 3월 29일로 예정되었던 영국의 EU탈퇴는 영국 정부와 의회의 탈퇴협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EU 특별정상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31일로 연기되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의 주장이 대립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EU측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EU의 관세동맹·단일시장·EU VAT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EU회원국인 아일랜드와의 국경 통제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나, 영국은 본토(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와 북아일랜드를 분리하는 것은 주권적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메이 총리 사퇴에 이어 2019년 7월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브렉시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강경파인 존슨 총리는 재협상 결과에 상관 없이 10월 31일 반드시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에 9월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주도한 EU 탈퇴법(일명 Benn Act)이 상하원 통과 및 여왕의 재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존슨 총리의 일방적 노딜 브렉시트 추진안은 급제동이 걸렸다. EU 탈퇴법은 EU정상회의 다음날인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에 합의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의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두 가지 모두 실패시 EU 집행위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10월 2일 EU 집행위에 브렉시트 최종 협상안(총 44쪽)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과 EU 집행위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기존 협정문 중에서 북아일랜드 의정서(백스톱)만 수정하여 10월 17일 EU 정상회의 직전 브렉시트에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관세영토 안에 속하므로 상품이 EU로 유입될 위험이 없는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사이에 법적으로는 관세국경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국경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에 설치, 운영하여 두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인 국경을 없애는 방안이다.

또 각종 산업규제로 인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규제 및 위생검역조치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 북아일랜드를 EU의 단일시장에 남기는 방안에도 합의하였다. 아울러 북아일랜드의 자치권 등 민주적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행기간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4년 또는 8

년에 한 번 북아일랜드 의회가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측은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문은 기존의 메이 총리 협상안을 따르는데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문(이행기간 동안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서 섹터별로 포괄적인 협력방안 마련)에도 최종 합의하였다.

10월 19일 존슨 총리는 하원에서 영국과 EU와의 합의안 통과를 추진하였으나, 브렉시트 이행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레트윈 경 제출) 및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탈퇴법에 따라 EU 집행위에 브렉시트 3개월 연기 신청을 하는 한편, 10월 22일 하원에서 브렉시트 신속처리안(programme motion)의 표결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되었다. 이후 10월 28일 EU는 브렉시트 시한을 2020년 1월 31일 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존슨 총리가 상정한 12월 12일 조기 총선안이 10월 29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보수당이 과반수로 승리하자 영국이 EU에서 2020년 1월 31일 탈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2020년 1월 중 'EU 탈퇴협정 이행 법률안'이 상·하원 의결, 여왕 재가를 거쳐 내부절차가 마무리되자, 1월 30일 EU 각료이사회가 'EU 탈퇴협정'을 최종 승인했다. 2020년 1월 31일 자정, 영국은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되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의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갖게 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EU를 탈퇴하게 되었다.

2021년부터 영국은 EU와 다른 별도의 규제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독자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EU에서 제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한 CE 마킹 제도는 UKCA 마킹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EU에서의 화장품 등록제도의 CPNP도 영국의 독자적인 제도인 SCPN으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또한 영국과 EU간 교역에 기존에는 없었던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생기게 되어 양국 기업들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되어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다. 영국은 기후변화당사국총회 개최를 계기로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운송 탈탄소화 계획(Transport Decarbonisation Plan, '21.7월), 수소전략(UK Hydrogen Strategy, '21.8월), 넷제로 전략(Net Zero Strategy, '21.10월), 국가 조선 전략(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 '22.3월), 에너지 안보전략(Energy Security Strategy, '22.4월) 등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시장특성

소비 특성

영국 소비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또한 높아 외국 기업이 영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벽을 넘기 위해 영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차별화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0%), 고 마진의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이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주로 부활절(4월), 학교 개학시기(1월, 9월), 성탄절(12월말), 여름과 겨울의 정기 대 바겐세일 시즌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바겐세일이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정가의 30%를 할인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영국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비중이 한층 확대되었고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다양화 되면서 평소 구매하던 것과는 다른 브랜드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소비행태를 보였다. 코로나19에 따라 높아진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격 대비성능(가성비)이 좋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기간 중에도 웰빙, 친환경, 교육 관련 제품에 대한 선호는 꾸준히 이어졌다. 2021년 2분기 이후 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로 비필수 업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점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다.

한국 상품 인지도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삼성, LG는 스마트폰과 고급TV시장에서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프리미엄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도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한국의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10억불로 전년 대비 57%나 성장하였다. 그 외 한국 중소기업 상품의 인지도도 아시아 국가의 저가 생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또한, K뷰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는 추세로 2021년 영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21.1% 증가한 5,626만 달러를 기록했다. 영국에서 인기있는 K뷰티 제품은 스킨케어로, 한국의 단계별 스킨케어 트렌드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한류에 대한 인지도는 과거 높지 않았으나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성공을 거둔 이후 대중음악, 영화 등을 중심으로 영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9년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BBC 방송 ‘더 그레이엄 노튼 쇼’, ‘브리티시 갓 탤런트’에 출연하였다. 2020년에는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BAFTA)에서 각본상과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였다. 2021년 10월에는 영국의 주요 일간지인 The Times에서 한류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Hallyu! How Korean culture conquered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한류의 성공요인에 대한 특집기사가 실렸다. 2022년 9월에는 170년 역사를 지닌 런던의 빅토리아앤앨버트(V&A) 박물관에서 ‘Hallyu! The Korean Wave’라는 특별 전시가 열리기도 하였다.

유통 채널

최대 소비지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 맨체스터 및 버밍엄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글라스고우 등 북부 지역으로 상권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시장 특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국 유통 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마진이 높은 시장

전통적으로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마진이 높아 여타 유럽국가와 가격 비교시 동일 제품일 경우 평균 3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영국 정부도 자동차 및 유명 브랜드 제품의 병행수입제(Grey import)를 도입하는 등 유통 마진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펴고 있다.

② 보수적인 거래 관행

영국업체들과의 거래는 최종 계약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단 상대 업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거래는 소액, 소량다품종 주문 방식이며, 새로운 제품이 영국시장에 출시될 때에는 소량을 주문하여 시장성 평가를 한 후 수요를 측정하여 주문수량을 조정한다.

③ 제3국의 조달선

과거 광범위한 식민지를 경영했던 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영연방 국가들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구매 조달선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조달 품목은 중고자동차, 건설 자재를 비롯하여 의류, 모조 장신구, 신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다. 바이어들은 해당국가에 본사를 두고 런던에는 1~2명의 구매담당자가 buying office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바이어들과의 거래 시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신용장(Letter of Credit) 계약 체결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규제 제도

수입규제 조치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EU의 수입규제

조치를 따르며, 이후에는 영국은 독립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영국은 1973년 이후 EU 차원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여 왔으나,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한 2021년 1월 1일부터 수입규제 관련 자체적인 신규 조사 개시 및 조치부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EU와 완전히 다른 제도를 시행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와 연속성을 위해 EU의 수입규제 조치를 모니터링·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EU의 수입규제 조치는 무역구제국(Trade Remedies Authority)의 검토를 통해 영국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덤핑관세

수출국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덤핑 조사는 국내 산업의 제소 또는 국제통상부장관의 직원으로 개시할 수 있다. 제소장이 제출되면 무역구제국은 제소장을 바탕으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소장 접수 후 4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덤핑 사실의 존재 여부
 - 수출국(제3역외국) 기업의 對영국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덤핑으로 간주
- ② 영국 산업에 대한 피해의 존재 여부
 -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영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에는 영국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 즉, 영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영국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 경우
- ③ 영국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
 - 반덤핑 조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에는 반덤핑 조치가 영국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

무역구제국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하는 경우 무역구제청의 권고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를 승인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통상부 장관의 공고로 확정된 반덤핑 관세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최장 5년 동안 발효된다.

반덤핑 조사는 일반적인 경우 무역구제국이 최종적으로 부정 판정을 내리거나 경제적 이익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조치를 권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종료된다. 또한 산업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제소자가 제소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조사가 종료된다. 이에 더해 덤핑마진이 미소마진이거나 덤핑수입물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의 모든 단계에서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 영국은 EU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항목별로 유지 또는 철폐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EU의 종료재심 항목 중 반덤핑 관세의 철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영국도 해당 품목에 대해 자체 수입규제 조치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WTO의 3대 주요 무역 협정 중 하나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SCM)에 따라 적용받는다. 일부 국가의 수출보조금이 보편화된 농산물 교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도국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출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 특별 규칙도 있다.

세이프가드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져도 일시적으로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영국내 산업과 기업, 영국의 이익에 위협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국내 기업의 제소 또는 국제통상부 장관의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제소장이 접수되면 무역구제국은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그 사실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무역구제국은 적용 기간의 중간 지점이 도래하기 전에 조치를 계속 유지 또는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중간 재심을 의무적으로 개시해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이 결정되면 다자 세이프가드의 경우 모든 국가에 단일의 관세율 또는 관세율 할당(TRQ)가 적용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에도 국익과 관계있는 한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예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영국 생산과 관련 있는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EU의 세이프가드를 2021년 6월31일까지 이행하였다.

2021년 7월1일 부터는 이행재심사를 거쳐 2021 No.1 Tariff-rate quota on steel goods를 통해 10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2021 No.2 Tariff-rate quota on steel goods를 통해 5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1년 동안 세이프 가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영국은 2022년 6월 30일 5개 품목군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과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존 조치를 연장하였다.

쿼터 사용 방식은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방식으로 영국 수입업자에게 부여하게 되고 해당 분기 미사용 쿼터는 다음 분기로 이월되며 해당 년도 미사용 쿼터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지는 않는다. 또한 해당 년도 특정 국가에 부여된 미사용 쿼터는 4쿼터에 다른 국가 제품 수입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영국에서 군수용품, 민군겸용(dual use) 제품, 무기, 고문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 등은 특별한 라이선스가 있어야 교역할 수 있으며, ECJU(Export Control Joint Unit)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 EU-영국간 해당 제품을 교역하려면 기존 라이선스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취득해야 한다.

영국은 그동안 유럽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농업 정책을 시행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 자체 농업법(Agricultural Act 2020)을 제정해 독자적인 농업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기존 CAP 하에서의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s)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반면, 환경, 동물 건강 및 복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특정 목적형 보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특정국 대상 경제제재 형 수입금지 조치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시(2020년 12월 31일)까지는 EU의 경제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에 입각해 자체적인 인권 제재 및 경제제재를 이행하게 되었다. 2022년 11월 11일 기준 영국 제재 명단(UK Sanctions Lit)에는 북한의 84개 기관(Entity), 15개 선박(Ship)이 포함되어 있다.

검역관리 규정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식물 및 식물관련 제품의 경우 검역이 요구되며, 반려동물과 말의 경우 PETS(Pet Travel Scheme) 및 동물 종류에 따른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하며, 식물의 경우 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의 제출이 요구된다.

관세제도

영국은 EU의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자체적인 관세율표(UKGT: UK Global Tariff)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세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해당 관세율표가 적용되며, GSP 수혜제품, 관세 보류 제품 등은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 EU와의 협상은 물론 역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2022년 9월 기준 EU를 제외한 67개국과 총 36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과는 2016년 12월 영국에서 개최한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한-영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설치 합의를 시작했다. 이후 3차에 걸친 무역작업반 회의를 통해 한-영 무역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한-영 FTA 추진에 합의하고, 2019년 8월 22일 한-영 FTA를 공식적으로 체결했다.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영 양국은 한-EU FTA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며,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상품 분류번호

모든 제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제도(CN CODE)를 적용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상품 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영 교역 시, 수출입 제품의 영문 품목 설명을 보고 HS 코드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해당되는 CN CODE를 선택하고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 관세율 확인은 UK Global Tariff Tool⁵⁶⁾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본 관세 외에 부가세가 추가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 결정을 집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제품이 생산, 재배, 제조된 곳이며 배송된 곳이나 구매한 곳이 아닐 수 있다. 제품의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관세율 결정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 심

56)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sections>

지어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정책의 적용에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원산지 규정은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한-영 FTA에서는 특혜 관세 대우의 목적상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해당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획득한 제품,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은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관세 부과가액

제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세 부과가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관 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일부 특정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주요 인증제도

UKCA 마킹 및 CE 마킹 제도

EU 회원국이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EU 27개 회원국 및 영국, EFTA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4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8/68/EEC)에 의거한 CE 마크를 획득, 부착하여야 한다. CE 마크는 제품이 EU 내에서 유통·판매되기 위한 안전, 환경 규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에도 2023년 1월 1일까지 CE 마크 제품의 유통·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자체의 UKCA 마크 사용을 통해 기존 CE 인증 제품 대부분을 대체해나가게 된다. 다만, 북아일랜드에서는 EU의 CE 마크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과 UKCA 마킹 대상품목

CE 마킹 대상품목	UKCA 마킹 대상품목
가전제품용 기체 연료(Appligas), 민간용 폭발물, 의료기기, 인명 구조장비(PPE), 엘리베이터, 온수 보일러, 체내 삽입형 의료장치, 단순 압력 용기, 저압 전기장치, 리프트 또는 리프트가 탑재된 장치, 체외 시험 의료장치, 압력장치, 건축자재, 기계류, 수동 계량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폭발 위험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Atex), 측정장치, 라디오&무선 통신 단말기(R&TTE), 장난감, 가정용 냉동냉장고, 불꽃 제조 품목, 환경소음배출 품목, 전자파환경적합성 검사 대상 품목	장난감, 레저용 및 개인용 선박, 단순압력 장치, 전자파적합성 장치, 수동식 계량기, 계량기, 엘리베이터, 폭발 위험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ATEX), 라디오 장비, 압력 장치, 개인보호장비(PPE), 가스 장비, 기계류, 에코디자인, 에어로솔, 저기압 전기장치 등

EU 에코 라벨 및 기타 친환경 라벨

1992년부터 시행된 EU 에코 라벨은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자율적인 라벨로 영국에서 통용됐으나,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대행기관에서 발급된 EU 에코 라벨은 유효성을 잃게 된다. EU 에코 라벨 외, 영국에서 통용되는 친환경 관련 라벨은 90여 개로 주로 식품과 소비재 등에 사용된다.⁵⁷⁾

KITE 마크 제도

KITE 마크 제도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되고 있다. KITE 마크 제도는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팬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57) 라벨 종류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ecolabelindex.com/ecolabels/?st=country_gb

- 대상 품목: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
- 취득 절차: <https://www.bsigroup.com/en-GB/kitemark/>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KITE 마크 공식 사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

지식재산권

영국의 특허신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의 산하기관인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ww.ipo.gov.uk)’이 관장하고 있다.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은 지식재산권을 Copyright, Designs, Patents, Trade Mark 등 4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영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종류

- 1) 저작권(Copyright): 기록 및 문헌, 그림, 사진, 영화, TV, 음악, 웹콘텐츠 등
- 2) 특허권(Patents): 기계, 부품, 도구, 의약품 등의 발명품 및 제작품
- 3) 디자인(Designs Right): 형상화된 형체
- 4) 상표권(Trade marks): 제품명, 로고 등

- 각 지적재산권별 신청 준비 및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및 등록비용

- 1) 저작권(Copyright): 관련 영국법령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 시, 등록없이 자동으로 보호됨

2) 특허권(Patents): 특허신청대상인 발명품의 종류 및 신청범위에 따라
약 4-5년 / 특허권당 £60 이상

3) 디자인(Designs Right): 약 2-3개월 / 디자인당 £50-£60

4) 상표권(Trade marks): 약 4-5개월 / 상표권당 £170-£200

이 외에, 신청서와 같이 제출된 자료의 분량/종류 및 추가적인 Form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국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tellectual-property-off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각 지적재산권별 등록신청절차

1) 저작권(Copyright)

- 관련 영국 저작권 법령(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등)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 시 등록 없이 자동으로 보호
- 단, 해당 저작권을 라이선스하거나 매각 등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의
보호 조항 및 라이선스/매각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필요

2) 특허권(Patents)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for-patent>)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권이 기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 (Form 1, Form 9A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정보와 함께 등록신청
- 신청 후 6개월 내 영국 특허청에서 Feedback 제공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 충족 시 영국특허청 저널
(Journal)에 기재하여 18개월간 Public에 공개
- Public에 공개된 시점부터 6개월 내 영국특허청에 실질심사
("Substantive examination") 신청

- 해당 기간 동안 해당 특허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고
실질심사를 통과한 경우, 등록 허가

영국 특허권은 등록 후 4년까지 존속되며 이후 매년 갱신해야 함. 만료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갱신 가능

3) 디자인(Designs Right)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registered-design>), EU특허청 데이터베이스 (<https://www.tmdn.org/tmdsview-web/welcome>) 및 WIPO데이터베이스 (<https://www.wipo.int/designs/en/#services>)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기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 (DF2A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정보과 함께 등록신청(<https://www.registered-design.service.gov.uk/Apply/design/b497ba5e-7250-4814-a100-188e65018f88/description>)
- 신청 후, 40일 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 제공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디자인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하여 2개월간 Public에 공개
-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상표권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 허가
- 영국 디자인의 최초 존속기간은 5년, 최대 25년이며 최초 5년 이후 매 5년 갱신해야 함

4) 상표권(Trade marks)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for-trademark>)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이 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 여부 확인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 (TM3 Form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정보와 함께 등록신청 (<https://trademarks.ipo.gov.uk/ipo-apply>)
- 신청 후, 40일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 제공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상표권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하여 Public에 공개
- 2개월 동안 해당 상표권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 허가
- 영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만료기간 6개월 이내 갱신해야 함

통관 및 운송

영국의 수입절차를 통하여 수입된 EU 역외국 제품은 영국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타 EU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나,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통관 과정이 추가되게 되었다.

물품 도착 전 → 물품 반입 → 수입신고 → 관세납부 및 물품 반출

물품 도착 전

1. 적하목록 사전제출:ENS(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착신고서)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의 운송인은 화물 적재 24시간 전에 최초 도착항 관할 세관에 ENS 제출 의무가 있다(2010년 12월 31일 최초 시행). 원칙적으로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는 EU로부터의 수입 건에 대해서도 ENS를 작성해야 하지만, 영국은 2021년 6월 30일까지 EU 및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수입 건에 대해 ENS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운송 수단에 따른 ENS 제출시기

구분	세관 통보 시한
컨테이너 해상화물	출발지에서 선적 전 24시간 전
벌크화물	도착 4시간 전
단거리 해상화물	도착 2시간 전
단거리 비행(4시간 이내)	비행기 실제 이륙시간까지
장거리 비행(4시간 초과)	도착 4시간 전
철도/운하	도착 2시간 전
육로	도착 1시간 전

- 운송인이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 화물 상세 정보(물품명,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등의 인적 정보 (AEO 인증 여부 포함)
 - 운송 항로 등 운항 정보

물품 반입

1. 보세구역 물품 반입

- 수입 물품의 통관 前 반입 장소 (보세구역)
 - 세관 지정 세관 사무소
 - 세관 지정 내지는 승인한 기타 장소
 - 자유지역(Free Zone)

2. 도착 보고

- 수입물품 도착 보고
 - 아래 해당자는 보세구역 반입 즉시 도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수입물품 운송인 및 대리인, 통관 절차 이행 대리인, 보세구역 운영인 등
 - 도착 보고 생략 대상 물품
 - 우편물, 여행용품, 기타 상업적 가치가 낮은 물품 등

3. 하역 및 검사

-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은 원칙적으로 세관 허가 대상
 - 긴급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관 즉시 통지 후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 가능
 - 검사, 샘플 채취 및 운송 수단 검사 목적으로 세관은 수입물품의 하역 또는 포장 개봉 요구 가능

수입 신고

1. 수입신고

- 신고대상 : 영국으로 수입 되는 물품
- 수입신고인 :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 세사)
- 신고방식 : 수입 약식신고(Simplified Declaration) 자격이 없는 수입 신고인의 경우 물품이 영국에 도착하기 전(이동 중)에 Entry Summary Declaration을 인터넷 통관 시스템(CHIEF: Customs Handling of Import and Export Freight) 또는 서면 신고서를 통해 제출. 이후 물품이 영국에 도착하면 Full Declaration 제출
- 제출 시기 : 수입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입 신고인의 요청 및 그에 따른 세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수입 신고 이후 9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상업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필수 제출 서류)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FTA 특혜 관세 적용 목적), 기타 요건 구비 증명 자료 (선택 제출 서류)

2. 수입신고처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는 것이 보통이나 세관은 일부 수입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기 제출된 수입신고서 관련 서류 검증 및 추가 자료 제출
- 수입물품 검사, 분석 및 샘플 채취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前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의무가 있으며, 수입신고 수리 및 관세 납부(담보 제공)가 이루어진 물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이 가능하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 검사를 수행 하지 못한 경우(단, 수입신고인의 귀책사유에 한함)
- 납부기한 내에 관세 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공공조달 시장

영국 조달시장 동향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이 행하는 물품, 서비스, 건설 등에 대한 지출인 공공조달 규모는 전체 공공지출의 1/3 수준이며 영국 GDP의 13%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1/22년 기준 영국의 전체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규모는 약 3,790억 파운드였다.⁵⁸⁾

글로벌 재정위기 이래 영국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 및 재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보수당 단독정부가 공공조달을 재정

58) 영국 하원 도서관, Procurement statistics: a short guide(2022.7.26.)

절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연립정부 시절인 2014년 4월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CCS(Crown Commercial Service)를 확대·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으며, 대형 공급사와의 계약시 회계 공개(Open-book)를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자역경매, 상용물품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확대 등 공공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중이다.

특히 세계최대의 의료 바이어인 ‘국민보건서비스(NHS)’는 2009년부터 조달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국내유통 중심의 다단계 납품체제를 쇄신, 아시아 소재 제조사들로부터 유럽의 중간상 개입 없이 직접 납품을 받는 ‘제조사직납체계’ DFM(Direct from Manufactur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영국 공공조달 시장 관행상 영국 내에 물류 및 사후관리를 책임질 지사 또는 에이전트가 입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거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조사직납체계는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개혁은 우정/물류사업자인 로열메일, 통신 인프라 공급사 BT 등이 벤치마킹하면서 점차 공공바이어 전반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2021/22 회계연도 기준 보건분야 공공조달 규모는 약 1,462억 파운드로 전체 공공조달의 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제공 및 하도급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제품혁신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초에 조달공고 통합조회 웹사이트(Contracts Finder)를 구축한 데 이어 에너지, 행정용품, 시설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향후 3~5년 동안 있을 조달사업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조달품목은 공공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주요 품목은 IT 장비 및 서비스, 통신 장비, 군수용품, 의약품, 사무용품 및 가구, 식품, 청소 서비스, 인쇄, 출판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는 ‘Find a Tender’를 통해 공공조달품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기존 공공조달 사이트인 Contracts Finder, MOD Defence Contracts Online, Public Contracts Scotland, Sell2Wales, eTendersNI 등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영국 조달시장 특성 및 진출전략

브렉시트 결정 이후인 2018년 6월 영국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독립적으로 가입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으며, 2019년 2월 가입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조달 건에 대하여 한국 기업은 기존 관행대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장벽 및 A/S 등 문화적·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계약담당자들이 한번 검증된 공급자와의 관계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자들이 들어갈 틈이 작고 아직까지 한국 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영국 조달시장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영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으며 조달과정 및 절차가 통상적으로 우리보다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군수 및 시설·건축, 플랜트, 저탄소 관련 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수요기관의 하나인 NHS의 경우 영국 정부의 재정감축 정책에 따라 조달 금액 축소가 불가피하나, 국제적인 품질 수준을 확보한다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공략 대상이다.

영국의 경우 가격만 싸내는 입찰이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 제안서 제출 후 협상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EU 공공조달지침이 개정·발효됨에 따라, 영국도 그에 준하여 2015년 2월 국내 조달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을 개정한 바 있다. 전자조달 강화 등 기존에 비해 조달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계약(lot) 분할 허용, 입찰자 보유 전문 인력 및 사회적 요소(social aspect)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영국 조달시장의 경우 한국의 물품 중심의 공공조달 거래 관행과 달리, 물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복합적인 구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하나의 조달구매 건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들은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때문에 조달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주계약자, 즉 대기업이나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먼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조달시장에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EU 및 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조달청에 설치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헬프데스크’ 등을 활용하여 진출 관련 자문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투자환경

용이하고 신속한 기업 설립 절차

기업설립은 신고제로 필요한 서류, 정보만 갖추면 2~3일에 설립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당일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1인 창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특히 온라인 기업설립 서비스 시장이 발달해 있어 24시간 이내에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영국 법인의 종류는 3가지로 구분되며 일인 회사(Sole traders), 일반 법인(Limited companies), 동업/파트너십(Partnerships)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영국진출 한국기업은 일반 법인(Limited companies)으로 설립이 되어있다.

일부는 법인이 아닌 사무소/연락사무소(UK Establishment)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한국 본사에 귀속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영국은 기업에게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성장과 이익을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주요 산업국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익에 대한 부가 지방세도 일체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익금의 해외 송금 등 외환 관리에 어떠한 규제가 없으며, 배당금 해외 송금에 대한 원천 과세도 없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역시 원천과세 없이 이익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디자인 개발

영국의 대학들과 과학 연구소들은 그들의 학문적 성과를 상업적 영리 사업에 응용하기 위하여 기획된 공동 벤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외국 기업들이 영국 대학들과의 연구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연구소는 캠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의 명성으로 인하여 최초의 미국 이외 지역의 연구소 소재지로 영국을 선택했다. 영국은 170개 이상의 계약 연구단체들이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 많은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0년 7월 1일 영국 R&D 로드맵을 통해, GDP 대비 R&D 투자액의 비중을 2.4%로 높이기 위해 2024~2025년까지 매년 R&D 투자액을 220억 파운드로 증대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런던, 세계의 금융 중심지

런던은 뉴욕, 도쿄와 더불어 밤낮없이 움직이는 전 세계의 자금 및 투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자금 조달과 전 세계의 프로젝트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영국의 금융 분야 종사자는 110만 명이며, 영국 조세 수입 10% 이상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런던에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 거래소, 외환 사업체, 국제 채권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런던은 유로화 거래, 유로 은행 거래, 보험업, 선물매매, 선택매매, 펀드운용 등의 중심지이다. 게다가 강력한 금융서비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든버러, 리즈, 맨체스터를 포함한 영국의 여러 도시에 산재해 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도 런던은 유럽 최고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EU는 브렉시트 이후 런던과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 구축을 목표로 했으나, 유럽 금융시장은 지역별로 분열되어 있어 런던과 같은 위상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예로 프랑크푸르트와 파리는 은행 분야, 더블린과 룩셈부르크는 투자펀드가 특성화되어있다.

용이한 국내 및 해외시장 접근성

영국에 소재한 외국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영국의 통합 수송망은 유럽 경제구역 전역으로 원자재와 제품들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배달해 주며, 광범위한 무료통행 고속도로와 도로망은 영국의 주요 대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을 공항과 항구로 연결해 주고 있다.

영국 전역 어디에나 100마일 이내에 컨테이너 항구가 소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구들은 민영화되어 있으며, 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1년 영국 항구에서 처리된 물량(Tonnage Handled by UK Ports)은 4억 4,550톤으로 이는 전년 대비 2% 증가했으나, 2019년 대비 8% 축소된 규모이다. 영국 해운 국제 물동량(International Freight)의 55%, 전체 물동량의 44%를 EU가 차지하고 있어 해상운송에서 EU와의 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영국에 기반을 둔 2만여 개의 운송회사 수는 화물요금이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며, 영국의 물류회사들과 범유럽 중개업체들은 포괄적인 서비스와 계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hannel Tunnel은 육로와 철로로 영국을 유럽지역과 연결하고 있다. 파리와 브뤼셀 등도 런던에서 기차로 3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탑승자(Passengers)수 기준 2019년 유럽 1위, 2020년 유럽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은 공항으로 대부분의 유럽 주요 도시들과 직항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20곳 이상의 지방 공항들도 영국의 도시들로 취항하고 있다.

투자자를 위한 영국 정부의 지원

영국 정부는 R&D 분야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 우대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해외 기업의 R&D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영국을 이 분야에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영국에서 R&D 관련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고용인원 500명 미만, 매출 1억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 500명 이상인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 대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 RDEC(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Credit)는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으로, R&D 비용에 대해 13%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Relief는 중소기업이 R&D 분야에 대한 총비용의 최대 230%까지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R&D 분야의 일반적 비용 항목

-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 R&D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부 용역비용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 R&D 업무에 소요된 소모품 비용
- R&D 세부 분야에 대하여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 비용

세계 공통의 언어인 영어

세계의 공통 언어인 영어 사용국으로서, 제2외국어가 아닌 영어로 원활한 비즈니스와 생활이 가능해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임금과 높은 물가수준은 부정적 요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고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 투자의 기본적인 회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수준이 매우 높아 기업의 운영비용 부담이 크고, 특히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사무실 임대료와 주재원 주거비용 부담이 크다.

투자관련 규제내용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영국에는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 사업 인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사업 인허가를 해야 하는 업종:
 - 금융 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 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 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
-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
 - 의료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

외자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 있는 산업 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의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연구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체재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며, IT 등 전문직의 노동허가증 발급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 여부(조건 등은 지역에 따라 상이)

영국에는 외국 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다. 영국에서는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왕실(The Crown)에 있다. 토지 소유의 형태로는 Freehold와 Leasehold가 있고, 각각 소유권과 임차권에 해당한다.

공업용 부동산은 Freehold, 오피스 물건은 Leasehold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 개발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있으며,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공업 부동산 및 각 지방의 개발, 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투자유치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비거주자도 국내 규제에 따라 토지 소유가 가능하고,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 토지 소유의 절차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왕실 토지등기소(Her Majesty's Land Registry)에서 토지 소유권을 등록한다. Freehold는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토지의 구입과 임차 시에는 양도증서 작성 비용, 인지세(구입 시, 상세한 것은 아래 참조), 지방 자치체의 조사비용, 은행 송금수수료 등 법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물건의 소개를 부동산 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로 연간 임대료의 약 10%를 지불하여야 한다.

영국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입 등의 경우에도 제한이 없는데,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인지세(Stamp Duty Land Tax)라고 불리는 고정 자산세가 부과되며 인지세율은 아래와 같다.

2022년 9월 23일 이후 인지세율

부동산 가격	인지세율
£ 250,000 이하	0%
£ 250,001 ~ £ 925,000	5%
£ 925,001 ~ £ 1.5million	10%
£ 1.5million 이상	12%

비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그 외 점유자에게는 통일 사업세(Business Rates)라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과세 평가액은 5년마다 재평가되며, 점유 물건의 임대료 해당 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하여 각 지방자치체가 설정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세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 나타나 있다.

- 잉글랜드, 웨일즈 : <https://www.gov.uk/>
- 스코틀랜드 : <https://www.gov.scot/>
- 북아일랜드 : <https://www.northernireland.gov.uk/>

자본금에 관한 규제

공개유한책임회사(PLC: Public Limited Company)는 사업 개시에 앞서 최저 5만 파운드의 발행 완료 주식 자본을 소유하고, 2명 이상의 대표(Director)를 두어야 한다.

영국은 고용창출, 지역개발에 대한 공헌, 신제품 및 신기술의 도입, 경영관리 기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합시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자기 자본금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노동 허가, 입국 허가신청 등을 참조하면 된다.

국산화율 규제

WTO 및 OECD 규정에 따라, 영국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 부품 등의 현지 조달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진출 지역에 대한 경제 공헌의 관점에서 현지 조달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정부는 해상풍력발전 산업에서 영국내 프로젝트의 전체 생애 영국산(Total Lifetime UK content) 비율을 6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화된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어 국가간 거래에서도 디지털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영국은 상품, 데이터, 서비스 등을 전자적인 수단으로 국가간 이동시키는 것을 디지털 통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이전 문제 등이 그 핵심이다.

지리정보의 국외이전 규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거나, 데이터보호법의 목적상 개인 데이터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반출 제한 법령은 없다.

고유식별 정보의 국외이전 규제

금융, 의료기록 중 일반적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로 간주되어 국외이전이 제한된다.

OTT 서비스 규정

영국에서는 OTT서비스를 Communications Act 2003에 따라 EU의 AVMSD (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를 반영, ODPS(On-Demand Programme Service)로 분류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세부과는 없다.

플랫폼 사용자 책임범위 관련

현재 사생활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 제공자 외에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제한규정(법령)은 따로 없다.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영국 전체 서비스 수출의 19.0%를 디지털 섹터(Digital Sector)가, 14.2%를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이, 3.0%를 문화 섹터(Culture Sector)가 차지하고 있다⁵⁹⁾.

59) 출처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부 'Sectors Economic Estimates 202: Trade headline

이에 영국정부는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 하고 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 이는 아태지역 신규 디지털 무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하며, 미국, 일본과 같은 파트너들과의 FTA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영국으로의 투자를 장려하고자 한다.

또한 2021년 9월 20일 영국의 국제통상부(DIT)는 디지털 무역 목표(Digital trade objectives)를 발표하였다. 영국 정부가 상정한 디지털 무역의 비전은 영국 전역에서 생산성, 일자리 및 성장을 촉진하는 국제 협약 네트워크(Network of International Agreements)를 통해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 in Digital Trade)가 되는 것이다. 또한 열린 디지털 시장(Open Digital Markets), 데이터 흐름(Data Flows), 소비자 및 기업 보호(Consumer and Business Safeguards), 디지털 거래 시스템(Digital Trading Systems), 국제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Global Governance) 등 5개 영역을 통해 디지털 무역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도 2022년 6월 13일 영국 디지털 전략(UK's Digital Strategy)을 발표하면서 영-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 체결, G7 디지털 무역 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 주도, 전자 무역 서류 허용 법제화, WTO 협정 현대화 등을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1조 파운드 of 디지털 수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외국인 취업비자 – CK

외국인이 영국 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영국 측 입장에서 가치가 높은 이주민을 위한 Tier1 비자, 영국 내 숙련된 직무(Skilled jobs) 오피를 받은 인력을 위한 Tier2 장기노동 비자, 일시노동자를 위한 Tier5 비자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비 EU 국민이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General work visa(Tier 2) 비자를 받아야 한다.

release'

Tier1 비자는 스타트업(Start-up), 혁신가(Innovator), 학문 및 리서치, 예술 및 문화, 디지털 기술 분야의 글로벌 탠런트(Global Talent), 투자자(Investor), 등에게 발급된다.

기술 인력을 위한 Tier2 비자는 일반취업(General), 보건분야(Health and Care), 종교취업(Minister of religion), 스포츠인(Sportsperson), 주재원(Intra company transfer) 등에 발급된다. 같은 회사에서 영국지사(혹은 본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는 Tier2(Intra company transfer) 비자를 받아야 하며, 통상의 경우 풀타임 취업을 위해서는 Tier 2(General) 비자를 받아야 한다. Tier2 비자의 경우 발급여부가 신속하게(5일 내외) 결정되는 급행제도(Tier2 priority Service)가 있으나 별도의 수수료 부담이 있다. 일반취업 비자인 Tier2(General)는 영국회사로부터 스폰서십 증서번호(certificate of sponsorship)가 담긴 잡오퍼레터(job offer letter)를 받아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하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3년 이상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뉘어 수수료에 차이가 있다. Tier2(General)비자로는 최대 5년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Tier5 비자는 창의적인 혹은 체육 활동, 자선단체 활동, 종교 활동, 워킹홀리데이(Youth Mobility Scheme으로 불림) 등 영국 내 일시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발급된다.

전자여권 게이트 이용

영국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전자여권 게이트(ePassport gate) 운영을 시행해 입국장에서 이민관 직원과의 대면 인터뷰 없이 여권스캔으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EU/EEA,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인은 전자여권 게이트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여권 게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국가 국적의 입국자를 위해 영국은 외국인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주는 Registered Traveller Scheme(RTS)를 운

영 중이다. 이는 영국의 국경 안전에 위협 요소가 적은 상기 국가 국민 중 비즈니스, 투자, 관광 등 목적으로 영국을 빈번히 방문하거나 영주권 또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가입이 승인될 경우 입국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일종의 멤버십 서비스이다. 1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비용은 70파운드이다.

조세제도

2005년 4월 18일 이후 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청(HM Customs & Excise)이 통합되어 HMRC(HM Revenue & Customs)가 새로 출범하여 업무를 통합하게 되었다. 영국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Income Tax)

- 과세 년도 : 매년 4월 6일~다음해 4월 5일
- 과세 대상 : 영국 내 소득 발생 내·외국인
- 원천징수 제도와 소득 신고
 - 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 : 대부분의 영국 납세자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 소득과 경비. 후생적 급여 보고 체계를 통해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자진소득신고(Self Assessment) : 자영업자는 온라인 혹은 SA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소득세율

소득	소득세 (예금소득 제외)	예금 소득세 (£5,000 이상 과세)	배당 소득세 (£2,000 이상 과세)
0 ~ £12,570	0%	0%	0%
£12,571 ~ £50,270	20%	20%	7.5%
£50,271 ~ £150,000	40%	40%	32.5%
£150,000 초과	45%	45%	38.1%

- 회계연도 2020/21년 비과세 소득(Tax-Free Allowances): 12,570파운드

법인세(Corporation Tax)

◦ 법인세율

Rates for Financial Years Starting on 1 April				
	2019	2020	2021	2022
Small profits rate (companies with profits under £300,000)	-	-	-	-
Main rate (companies with profits over £300,000)	-	-	-	-
Main rate (all profits except ring fence profits)	19%	19%	19%	19%
Marginal Relief lower limit	-	-	-	-
Marginal Relief upper limit	-	-	-	-
Standard fraction	-	-	-	-
Special rate for unit trusts and open-ended investment companies	20%	20%	20%	20%

법인 신고

회사가 영국 회사 등기소(Companies House)에 등록을 하면 동 사실이 영국 국세청(HMRC)에 통보되며, 영국 국세청은 통상 CT41-G 서식을 당해 회사로 발송한다. 영국에 설립된 외국회사의 현지 법인은 영국 소재 법인 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영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한다. 단,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09년 10월 1일 이후로 영국에서는 지점(Branch),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영국에 있는 외국회사의 지점이나 사업장을 UK establishme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이나 지점 등 일정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가 있을 경우에 외국기업으로 등록(Register an Overseas

Company)을 하게 된다. 등록시 UK establishment의 명칭은 자국기업 이름을 사용해도 되고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법인세 관점에서는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UK establishment의 소득이 발생하면 영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VAT)

영국 정부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VAT를 인하, 2009년에는 한시적으로 VAT 세율로 15%를 적용하였으나, 2010년에 17.5%, 2011년에 20.0%로 다시 인상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979년 10월 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한 환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과실 송금

영국은 외국 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 송금, 곧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이 자유롭다.

영국에서의 자금조달 제도

1979년 10월에 외국 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자금, 해외 자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 가능하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미달러 등 외국 통화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관한 제한이 없다. 단, 금융 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도 차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 증권이나 금융 상품의 규제가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 기관에서 신규사업 등록자나 기 영업 중인 사업체들을 상대로 폭넓은 사업자금 대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현지 거래은행이나 전국 상업금융중개인협회(NACFB)에 등록된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한국 업체들의 경우 영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은행들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노동 관리

고용관련 규제

영국 내 종업원 고용은 신문 광고, 지역 고용센터(Job Centre), 전문직업 소개소(Recruit Agency)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제 분석가 등의 고급 인력 채용은 Recruit Consultancy로 불리는 전문 업체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 조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 조건으로는 의료 진단(Medical Examination), 영국 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 노동 허가증(Work Permit-비 EU 국민 해당) 제출 등이 있다.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 시작 후 2개월 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있다. Written

Statement of Employment Particulars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 고용주(기업) 이름
- 피고용인(종업원) 이름, 직책(Job Title) 및 담당 업무
- 고용 개시일
- 급여액, 급여 계산 방법, 급여 지급일
- 근로 시간
- 휴가
- 근무지 및 근무지 변경 여부
- 수습 기간 및 조건
- 연금 및 기타 복지 혜택
- 고용 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 업무를 위한 교육

상기 고용 조건들을 보다 상세한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 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의 고용 계약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 계약서의 작성이 권고되며, 고용규모가 클 경우 법률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업원의 법적 보호권(Mandatory Rights)

영국의 고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종업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및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 23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대상	최저 급여	비고
23세 이상	시간당 £9.50	
21세~22세	시간당 £9.18	
18세~20세	시간당 £6.82	
18세 미만	시간당 £4.81	
견습생	시간당 £4.81	19세 이상 경우, 첫 해만 적용

주: 2022년 4월부터 적용

- 평등 지급권(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지급 평등법(Equal Pay Act 1970)에 따르면, 모든 종업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 유급 휴가권: 종업원은 최소 연 5.6주(28일, National Holiday 포함)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 법정 병가 임금(SSP, Statutory Sick Pay): 근로자가 4일 이상 병가를 신청할 시, 일주일에 £96.35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28주까지 지급됨.
- 육아휴직: 근로자는 법정 산후 수당(Statutory Maternity Pay), 배우자 출산휴가 수당(Statutory Paternity Pay), 입양휴가 수당(Statutory Adoption Pay), 공동 육아 수당(Statutory Shared Parental Pay)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총 39주간 지급됨. 첫 6주는 주급(Average weekly earnings)의 90%를 지급, 나머지 33주간은 £156.66또는 주급의 90%를 지급(두 가지 중 낮은 액수 지급). 출산 휴가는 총 52주로 26주의 기본 출산휴가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산 예정일 11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출산 후 2주의 휴가는 필수이며, 공장생산직의 경우 출산 후 4주 휴가가 의무적임. 배우자의 경우 아이의 출생 이후 56일 안에 1~2주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Agency Workers)의 지위 향상

정규직 및 일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던 급여 명세서 권리가 2019년 4월 6일부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되었다.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에는 관련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 했거나, 급여 명세서에 명시된 정보와 사실이 다르다면 고용심판원(Employment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다.

성차별 금지

영국 정부는 1975년부터 성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강화된 성차별 금지법을 2008년 4월 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주요 내용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회사 내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서도 성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임신,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때 임신전의 대우와 임신후의 대우에 대한 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근로자의 추가 출산휴가 기간(26주) 동안에도 고용주는 그 이전과 같은 대우(각종 혜택)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의 의무 출산휴가 기간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 종료(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 종료와 관련된 종업원의 권리이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고용 종료권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1) 상호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고용 계약서에 고용 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법한 소송 제기 가능하다.

(2) 종업원의 자발적인 고용 종료

종업원은 고용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3) 고용주의 계약상 고용 종료 통지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고용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업원은 적절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계약 종료 시 수당

종업원은 정리 해고에 의한 고용 종료의 경우가 아니면 고용 종료 시 법정 수당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종업원이 정리 해고로 해고된 경우,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 정리 해고 수당(Statutory Redundancy Pay)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4월 6일 이후 법정 정리 해고 수당은 주급(현재 최고 571파운드)에 근무 연수(현재 최고 20년)와 연령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현재 최고 법정정리 해고수당은 17,130파운드이다.

대상	지급조건
22세 미만	총 근속연수 x 주당임금의 절반
22 ~ 40세	총 근속연수 x 주당임금
41세 이후	총 근속연수 x 주당임금의 1.5배

종업원은 또한 특정한 경우 고용 계약 종료 수당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향상된 정리 해고 정책을 운영할 경우 계약상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법정 정리 해고 수당 외에 퇴직 수당과 같은 혜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해고

고용주는 고용 계약 종료를 종업원에게 적절히 통지함으로써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종업원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통지 기간은 계약상 통지 기간이나 법정 최소 통지 기간 중 긴 기간이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상 통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종업원은 타당한 기간 동안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통지 기간은 관련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1) 해고 관련 규정

고용 계약에 의하여 통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복리 후생비가 있다면 복리 후생비 포함)을 함으로써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종종 계약서상 언급이 없지만 통지 기간 동안의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통지 기간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통지 없이 그러한 지급을 할 계약상의 권리가 없는 경우, 이는 기술적으로 계약위반이 되며 종업원에게 수당 지급이 사실상 손해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 해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종업원이 계약서상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예: 중과실) 고용주는 통지 수당 지급 의무 없이 즉시 통지(Summary Notice)로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서상에 즉시 해고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종업원은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공정 해고 조건(이유)

- 무능(Capability) :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바람직하지 않은 품행(Misconduct)
- 정리 해고(Redundancy) : 보통 고용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정 작업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적어진 경우, 또는 특정 위치에 필요 없는 경우
- 불법 행위(Contravention of a Statutory Enactment)
- 기타 해고를 정당화하는 상당한 이유(Some Other Substantial Reason)

(3) 부당 해고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 조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해고 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닌 이상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 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인정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 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 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다.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 노동시장 통계

내용	2018	2019	2020	2021
고용인구(16세 이상)	32,439 천명	32,799 천명	32,529 천명	32,567
고용률	75.6%	76.2%	75.4%	75.5%
정규직 노동자 주간 평균 근무시간	37.1시간	37.2시간	33.7시간	35.5시간
고용인구내 실업자 수	1,380 천명	1,306 천명	1,550 천명	1,219 천명
실업률	4.1%	3.8%	4.5%	4.1%

노동관리 유의사항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법적인 권리는 주로 영국의 판례법에서 파생한 계약법과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많은

영국의 법령이 EU지침의 요구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유럽 법원의 판결이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보편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제도 - 국민보험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과 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로 나누어진다. 동 국민보험 등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 하게 되어있으며, 외국인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 보험으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DWP)를 대신하여 국세청(HMRC)에서 징수한다. 2020년 10월 기준, 1951년 4월 6일 이전 생의 남성과, 1953년 4월 6일 이전 생의 여성이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종업원 부담분: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주간에 대해서는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음.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 고용주 부담분: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함. 그러므로 최소 52주간의 면제 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 의무가 없음.

한-영 워킹홀리데이

한-영 양국 청년 대상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12년 7월 9일부터 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에 가입함과 동시에, 영국 청년들에게 한국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청년들이 2012년 하반기부터 YMS를 통해 영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18~30세 청년들은 YMS를 통해 2년간 취업 활동을 하면서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YMS 인력을 활용하여 노무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트리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동향

2021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GDP는 약 4,771억 달러이며, 1인당 명목 GDP는 53,26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도 강점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전체 기업의 99.6%를 차지하는 높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은 오스트리아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레드불, 스와로브스키와 같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히든 챔피언도 2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등 작지만 강한 강소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오스트리아 경제는 2016년 하반기부터 EU,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증가,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정책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9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성장이 더욱 더뎠으면서 마이너스 6% 상당의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다만,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0년 한해 동안 약 350억 유로 상당의 긴급 금융지원 집행을 통해 계속되는 봉쇄 조치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많은 부분 완화하였으며,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을 통해 실업률도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들어서는 1분기부터 플러스로 반전, 세계경기 회복과 내수 소비, 수출, 가계 투자의 반등 효과로 3분기에 팬데믹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기록하며 연간 성장률 4.6%를 달성했다. 2022년 역시, 서비스 경제의 재개와 산업 생산의 증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으나, 1분기 발발한 러-우 사태로 인해 하반기 전 부문에 걸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심화된 인플레이션이 9월 이후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에서는 2022년 경제성장률을 0.2%로 예상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제성장률	%	2.4	2.6	1.4	-6.2	4.6
명목 GDP	십억 달러	417.09	455.30	445.13	432.52	477.08
1인당 명목 GDP	달러	47,318	51,246	50,247	48,593	53,268
물가상승률	%	2.2	2.1	1.5	1.4	3.6
실업률	%	5.9	5.2	4.8	5.4	6.2

자료 : IMF, EIU, Worldbank 등

수입정책상의 장벽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 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동일하게 취해진다.

통관

개관

수출입 통관 절차는 대부분 운송 회사와 세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B/L, 원산지증명 등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수출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로서 자국 내에 바다

에 인접한 항구가 없는바, 선박을 이용한 화물은 보통 독일의 함부르크 항,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 슬로베니아의 코퍼 항 등을 통해 수출입 절차가 진행된다.

수입

1995년 1월 1일 EU 가입과 함께 EU 규칙이 오스트리아 법에 우선한다. 오스트리아의 수입 관련 절차 및 규제 사항은 대외무역법(Aussenhandelsgesetz, 2011년 개정) 및 경제부 장관령(1987/630)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들이 있는데, 동 물품들을 Freiwaren이라고 부른다. 동 물품들은 상기 경제부 장관령 별표 3에 'F'자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 그것이다.

한편 HS 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 물품은 특별한 요구 없이 세관의 통과 과정에서 수입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같이 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농산물(HS 코드 1-24류):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 승인서를 신청, 교부 받는데 담당관청은 연방 농업부이다.
- 다국간 섬유 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제품: 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연방 경제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 갈탄 및 의약품

다만, 363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량에 대해서는 상기 수입 승인 요건이 면제된다.

수입 통관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선하 증권(B/L, Bill of Lading)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및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이다.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제1단계로 수하인(Consignee)이 수입 통관 대행 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제2단계로 통관 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가 주로 수행)는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코드,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 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3단계에서는 보세 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을 반입한다. 물품이 도착한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운송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2~5일 정도 소요된다.

수출

오스트리아의 수출 관리 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며 대부분의 수출품은 수출 허가서가 필요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경제부, 농림부)의 수출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수출 허가가 필요한 제품으로는 수출 할당량이 있는 제품 이외에 국내 경제상 수입 조절이 필요한 품목과 같은 특정 농산물 그리고 무기류, 생화학 물질, 민간 및 군용으로 모두 가능한 제품 등과 같은 특수 품목이며,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8년 1월부터 대외무역법에 List C를 신설하여 동 리스트 상에 기재된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할 경우 경제부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스트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인증 제도

CE 마킹 제도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 제도이다.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 (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2006/95/EC, 2014/29/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발화 제품(Pyrotechnic articles)	2013/29/EU(2015년7월1일부터 적용)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2014/28/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유류 및 가스 사용 온수 보일러(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92/42/EEC
승강기(Lift)	95/16/EC, 2014/33/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품목	규정 지침
기계(Machinery)	2006/42/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2017/745/EU(2021년5월26일부터 적용)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2017/745/EU(2021년5월26일부터 적용)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2017/745/EU(2021년5월26일부터 적용)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2014/31/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2014/53/EU(2016년6월13일부터 적용)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 2014/29/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2014/68/EU(2016년7월19일부터 적용)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2013/53/EU(2016년1월19일부터 적용)
장난감 안전(Safety of toys)	88/378/EEC, 93/68/eec, 2009/48/EC
건축 관련 제품(Construction products)	205/2011/EU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2014/30/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측정기기(Measuring Instrument)	2004/22/EC, 2014/32/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폭발가능성 대비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2014/34/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RoHS2 지침	2011/65/EU

이외에도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을 적용하여,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제품 안전에 대해서는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소음과 관련하여,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에코 라벨링(ECO-labeling)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20년 10월 기준 총 12개 품목군, 55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라벨 대상 품목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식기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컨디셔너)
- 의류(섬유 제품, 신발)
-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 전자제품(PC, 노트북, TV)
-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 가구(목재가구)
-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 윤활유(Lubricants)
-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 신문용지(Newspprint)
- 캠프장 및 관광객 숙박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s accommodation service)
- 인쇄된 종이(Printed paper)
- 교육 시설(School, Educational Facility)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제품의 에너지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사용되었으나(A+++, A++, A+, A, B, C, D의 7 등급 체계), A등급의 비중이 커지면서 변별력 부족, 소비자 혼란 초래 등의 문제 발생하게 됨에 따라 기존 A부터 G까지의 7단계로 회귀(EU 에너지라벨규정 Energy Labeling Regulation EU2017/1369)하여, 냉장고, TV,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은 2021년 3월부터, 전구 등 조명제품 202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보일러 등 난방제품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개관

2002년 이전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정부, 주(州)정부별로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존재하여 왔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모두 폐지되고, 현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세워진 국영 기업인 연방조달 유한회사(BBG)가 조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주(州) 정부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에 있어서 반드시 연방 조달 유한회사에 대행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

(州) 정부별로 있던 조달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조달에 따른 관련 비용의 절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규모가 큰 조달의 경우 연방조달 유한 회사에 입찰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연방 정부 및 각종 국영 기업, 정부 산하 기관 역시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입찰을 대행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규모가 큰 입찰이나 공동 입찰의 경우 주로 연방조달 유한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장벽

오스트리아 조달 시장은 외견상 연방조달 유한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서 외국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응찰자 등록회사인 ANKÖ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낙찰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수물자를 제외한 전체 조달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오스트리아 현지법인을 제외한 순수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이하로 추정된다.

아울러, 국내 입찰의 경우 모두 독일어로만 공고되고 각종 증빙 서류를 비롯한 응찰서류 역시 모두 독일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비독일어권 국가 기업들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국제 입찰의 경우 외국 기업들이 일부 낙찰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독일어권인 독일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비 방안

정부 조달 입찰의 경우 해당 공고 및 입찰 관련 서류들이 모두 독일어로 되어 있어, 오스트리아 현지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 참여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역량 있는 오스트리아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오스트리아 유통 바이어를 통한 우회 공급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품 홍보 및 현지 업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오스

트리아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 또는 참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바이어들은 장비 관련 제품 구입시 기능성 및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장 우선시하는바, 시장 진출에 필요한 관련 인증 및 기술데이터(Technical Datasheet) 등을 사전에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산 제품 등 시장 인지도가 낮은 제품들의 경우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초기 시장 진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EPO)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권 등에 있어서 EU 차원에서 조화된 법규를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 정부는 집행위에서 마련한 지침을 기초로 자국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수립,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오스트리아 내 국내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번째 방법으로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 EPO)에 특허를 출원해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 심사 후 등록하는 방법이다. 세번째 방법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따라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유럽 특허청은 유럽 특허 협정(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해 1973년에 창설됐으며 38개 유럽 회원국(28개 EU 회원국과 11개 여타 유럽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이며 출원자는 이 3개 공식 언어 중 1개 언어를 선택해 출원할 수 있다. EPO가 출원서류 심사를 거쳐 일단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 소유자는 특허 클레임(Scope of protection)의 텍스트를 출원시 선택한 언어 외 나머지 두 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EPO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즉, 대부분의 EPC 협정국에서는 특허권 보호를 받으려면 또 다시 각국 특허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특허 소유자는 각국 특허청에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각기 상이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각국 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각 회원국 당국에 갱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다가,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용할 때 각 회원국 당국에 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유럽특허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것이 큰 단점이자 장애 요인이다.

한편, 이 같은 막대한 특허권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은 공동 특허제를 마련해 유럽특허의 경쟁력을 증대키로 했다.

※ 유럽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해서는 앞의 '유럽연합(EU)'에 대한 기술 참고

〈EU공동 특허제의 주요 내용〉

- 1회 출원으로 25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유럽특허제도와는 달리 EU 공동 단일특허를 받은 후에 각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EU 공동 단일특허 출원방법은 현행 유럽특허 출원방법과 동일하다. 즉, 유럽특허청(EPO :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하여 동 기구로부터 일단

특허를 받아 관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동 기구에 유럽특허 등록대장(European Patent Register)에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단일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전 EU 2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유럽특허청은 단일특허효과를 등록하고 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 갱신비용 지불 등 특허권 유지와 관련된 행정을 취급한다.
- 유럽특허법원 창설로 단일제소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즉 EU 단일 특허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특허 침해시 한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제소제도(unified litigation system)의 도입이다.

상표권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 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2015년 12월15일 EU의 상표법 개혁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함으로써 2016년부터 신규 상표지침(New EU Trade Mark Directive 2015/ 2436)과 상표규정(Trademark Regulation)이 적용되게 됐다. 집행위는 1989년에 제정된 상표지침과 1994년 제정된 상표규정 간 불일치 문제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소리상표, 동작상표 등 신규 형태의 상표 등 규정의 현대화를 위해 이 같은 개혁법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상표지침으로 그간 회원국간 상이하게 규정돼 왔던 단체상표(Collective marks)가 통일화 되고, 상표법 절차가 조화로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된 상표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로 유럽상표청으로 불러왔던 OHIM은 유럽연합상표(EUTM: European Union Trade Mark)로, EU의 공동체 상표인 CTM(Community trade mark)은 EUTM으로 변경됐다.

디자인

EU의 디자인 제도는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통한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과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등 2종류의 보호체계가 있다. 디자인 보호를 위해 EU는 2001년 12월,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단일 공동 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각 EU 회원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2종류 형태의 디자인, 즉 등록 공동체 디자인 및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OHIM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 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3년간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은 제3자에 의한 디자인의 복제행위를 부정한 경쟁행위로 규정해 보호하는 제도로, 동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격성, 신규성 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 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하여 재 판매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 재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투자 장벽

투자환경 개관

오스트리아는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고용증대 기여산업, 수출 산업, 수입 대체 및 첨단 기술 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오스트리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신규 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투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섬유, 철강, 종이 산업 등 과도한 시설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 유치 활동은 소극적이다.

오스트리아 내 특정 지역에 대해 외국 기업 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 지역, 철강 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 도산 기업 속출 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오스트리아 투자의 장점으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 완비된 인프라 스트럭처, 서구 및 동구 시장에의 접근 용이성, 안정된 노사 관계와 높은 생산성, 중계 무역지로서의 강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과 임금 부대비용, 느린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허가

오스트리아는 거의 전 산업 분야(99.7%)에 걸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TV 무선 방송은 2002년부터 자유화되었다.

금지 대상 종목은 환경오염 산업, 국가독점 사업 등 극히 일부분이다.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인 만큼, EU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금지 대상을 통일할 예정이다.

투자 인센티브

첨단 기술 및 고용 효과가 큰 산업, 지역 발전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 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 시의 책임 보증, 우대 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는 고율의 세금이 전반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를 위하여 2005년도 회사 법인세를 34%에서 25%로 인하하였다 (2021년 10월 발표된 조세 개혁안에 따르면 1단계 2023년 24%, 2단계 2024년 23%로 단계적 인하 예정). 오스트리아 동부 및 남부 국경지대 등 일부 저개발 지방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상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개별 주(州)정부 차원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체류허가

3개월간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오스트리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장기 체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외국인 체류법상 체류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체류허가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2006년부터 매 1년 단위로 고용허가를 갱신하도록 주재국 고용체류허가 연장제도가 변경되어 상사 주재원들의 불편이 증가되었다. 단,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갱신을 신청할 경우, 신규 체류허가가 발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신청인의 체류권리는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운전면허

오스트리아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오스트리아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단,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은 추가적으로 주행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소유한 차로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오스트리아에 대한 최근 'OECD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서비스 산업, 회사 설립, 외국인 투자, 경쟁정책 등에 있어서 신규진입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매거래에 있어서는 자유화를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뒤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외환관리 및 자금 조달

개관

1991년 말부터 외환 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외국 은행 구좌 운용, 국내 기업의 외국환 표시 채권 발행 등이 자유화되었다.

외환 관리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연방중앙은행)에서 집행하나 경상 거래, 자본 거래 등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외환 거래

14,5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투자 자금에

대한 과실 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외자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는 없지만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된다. 경제적 후진 지역이나 특별 산업 진흥이 필요한 부문에 지원되는 혜택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현지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있어 법적으로 내국 기업과의 차이는 없으며, 기업신인도,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대출 금리는 연 2.12% 수준인데, 2014년 들어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대출 금리는 2014년 4/4분기를 기점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대출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 들어서는 가계와 기업 대출 측면에서 대출 금리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기업 대출 금리는 2015년에 이어 그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가계 대출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에는 가계와 기업 대출 모두 전년 대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 들어서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이후 2019년부터는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신규 대출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개인이나 기업 고객 모두 과거에 비해 신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2014년 하반기부터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그 신용경색 국면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대외 신인도

오스트리아의 금융권은 매우 견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최고 점수인 AAA로 평가 받아 왔다.

금융위기 및 2011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동유럽에 대한 과다한 투자 및 이에 따른 부실 우려로 인해 신용등급이 잇달아 강등되면서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건전성 및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3년 하반기부터 오스트리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회복되면서 2014년 상반기 들어 국가 및 주요 금융기관들의 신용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부실 은행 Hypo의 처리 문제가 다시 표면화 되면서 해당 주 정부인 케른텐 주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주 정부 및 오스트리아, 주요 금융기관들의 신용도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Standard & Poor's는 지난 2012년 1월 오스트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낮춤으로써 3대 신용평가회사 중 오스트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하향 조정한 최초의 회사가 됐다. 2016년 3월에도 Standard & Poor's는 오스트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이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는데, 동사는 신용등급 유지의 근거로 오스트리아 경제가 당분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난민 위기 및 부실은행 지원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Moody's는 2016년 6월 평가등급 조정에서 오스트리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는데, 중기적으로 오스트리아의 GDP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Fitch도 2015년 2월 오스트리아의 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다.

2022년 10월 기준 오스트리아는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로 부터 모두 두 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해외송금 및 환전

기본적으로 해외자본 도입, 수익 송금, 차입금 상환, 로열티 지급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대외송금 및 환전에 제한이 없다. 단, 14,5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에서 통계 처리를 위해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2010년 10월 1일자로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2010년 1월 23일 서명)」이 발효됨으로써, 5년 이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원들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오스트리아 연금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우리는 연간 10억원, 오스트리아는 연간 1.6억원 상당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효과 예상). 또한 동 협정 발효로 인해 양국간 연금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오스트리아 장기 체류자 및 동포 약 2,000명의 연금수급권도 개선되게 되었다.

진출 유망 분야

오스트리아 시장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 전통적인 하이테크 산업, 예컨대 정보 기술, 사무 자동화, 전자 및 전기/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의 수요가 많아 이들 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화공약품 분야도 진출 전망이 비교적 밝으며, 최근 들어 환경 이슈가 큰 관심을 모으면서 에너지 절약형 제품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호텔 체인을 비롯한 여행 대리점, 패스트푸드 체인 등 서비스 분야도 진출 전망이 좋다. 통신 장비, 항공기 부품, 방송 장비 및 부품 등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분야의 입찰 참가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오스트리아는 GATT 정부 조달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서 각종 정부 조달 혹은 주정부 조달 형태로 많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건설 시장 혹은 정부 입찰 등에 참가하는 것도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의 유망 분야 중 하나이다.



이탈리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동향

이탈리아는 2022년 GDP 기준 세계 8위의 국가로 유럽 내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4위이며, 1인당 명목 GDP 33,740달러로 전 세계 국가 중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탈리아 경제는 남유럽발 금융위기 후 2013년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반적 경제지표가 모두 호조세로 전환,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든 듯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세는 2018년 급격히 둔화되어 3분기 -0.1%, 4분기 -0.1%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2019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1분기 0.1%, 2분기 0% 등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탈리아 GDP는 -8.9% 성장을 기록하면서 EU 내에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국가 중 하나였으나, 2021년 산업 생산 정상화를 통해 기대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며, 6.6% 성장을 기록했다.

IMF는 이탈리아가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은 달성하였으나, 높은 정부부채를 기록중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채권 상환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이탈리아는 대규모 EU 자금을 투입해 ‘국가회복 부흥계획(PNRR)’을 지속 추진 중이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3.2%, 2023년에는 0.3% 성장이 전망된다.

◉ 이탈리아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제성장률	%	1.7	0.9	0.3	-8.9	6.64
명목 GDP	십억 달러	1,961	2,093	2,012	1,891	2,101
1인당 명목 GDP	달러	32,649	34,918	33,628	31,717	35,472
정부부채(GDP대비)	%	134.1	134.4	134.1	155.3	150.9
물가상승률	%	1.33	1.24	0.63	-0.15	1.94
실업률	%	11.3	10.7	10.0	9.3	9.5
무역수지	백만 달러	53,579	19,284	62,721	72,928	52,751

자료 : IMF, EIU, 이탈리아 통계청, OECD

한편 유로존의 경우, 2023년 0.3%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며 전반적인 경제 둔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1, 2위 교역 상대국인 독일 및 프랑스와의 동반 침체가 전망된다.

◉ 2023년 이탈리아 GDP 성장률 전망

구분	2021	2022 (추정)	2023 전망			
			ISTAT	EU	IMF	OECD
GDP 성장률	6.6%	3.2%	1.9%	0.3%	-0.2%	0.4%

자료: IMF, OECD, European Commission, ISTAT(이탈리아 통계청)

이탈리아와의 무역환경

이탈리아는 2020년 기준 한국의 26위 수출대상국이자 14위 수입대상국으로, 유럽내 수출대상국으로는 5위(독일,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이자, 수입대상국 2위(1위 독일)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교역규모 기준 전 세계에서 9위(한국)와 10위(이탈리아)를 기록한 세계 10대 교역대국이다. 양국의 교역은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으며, 팬데믹의 여파로 2020년도 교역액은 98억 7000만 달러로 감소했으나, 2021년도 다시 회복하여 교역액 126억만 달러, 2022년 8월 기준 교역액은 91억 52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對이탈리아 무역수지는 한국이 적자를 보이는 구조로 무역적자 추이는 26.8억 달러(2019년)→34.4억 달러(2020년)→34.1억달러(2021년)이며, 2022년 8월 기준 한국은 19.2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8월
수출 (증가율)	4,494 (-19.6)	3,773 (-16)	3,221 (-14.6)	4,597 (42.7)	3,618
수입 (증가율)	6,303 (10.7)	6,449 (2.3)	6,649 (3.1)	8,006 (20.4)	5,534
교역액	10,796	10,223	9,871	12,603	9,152
무역수지	-1,808	-2,675	-3,428	-3,409	-1,916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8월 기준)

양국의 교역은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의 특징이 뚜렷하여 주요산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1위인 승용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자재 및 부품류(합성수지, 철강, 자동차 부품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품은 대부분 소비재(가방, 신발, 의류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 2021 對이탈리아 10대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감율	품목	금액	증감율
1	합성수지	564	77.0	가방	1,577	20.9
2	승용차	546	46.9	신발	565	13.7
3	열연강판	351	72.1	직물제의류	381	29.3
4	기타정밀화학제품	242	-7.0	승용차	346	61.8
5	의약품	241	129.3	의약품	318	2.8
6	냉연강판	236	18.7	주얼리	309	81.9
7	금속절삭가공기계	170	195.1	편직제의류	287	37.3
8	자동차부품	113	25.2	원동기	159	80.9
9	기타정밀화학원료	93	69.4	기타정밀화학제품	133	12.9
10	축전지	92	27.9	나프타	118	-18.2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2021년 기준)

EU 회원국인 이탈리아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공동역외관세, 반덤핑관세, 수입쿼터제 등을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가 2011년 7월 정식 발효되면서 양자간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있다. 2018~2020년 한국의 對이탈리아 교역은 수출은 감소세, 수입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해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점차 커졌으나, 2021년 한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져 22.8월 기준 對이탈리아 무역적자는 감소하였다.

산업 및 시장특성

이탈리아는 독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유럽 내 4대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강소선진국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이 발달하여 GDP내 제조업 비중이 23.6%에 달해 독일에 이어 유럽 2위의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고 있다.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 중소기업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로 독일 4.1%, 스페인 5.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뛰어난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패션, 식품, 가구 등 소비재 분야 뿐 아니라 기계, 금속, 화학,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포함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제조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디자인과 신속한 시장대응능력을 강점으로 다품종 소량 주문에 특화되어 있다.

시장은 지역색이 강해 품목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유통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장인·가족 중심의 중소기업이 지역별로 전문화되어 있다. 지역별로 자연발생적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유기적인 생산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200여 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제조업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기반이 중·북부에 밀집해 있어 남·북부간 산업 및 소비의 격차가 최대 2배 이상 나고 있다. 인구의 36%, 국토의 40%를 차지하

는 남부지역의 GDP는 전체의 23%에 불과하며, 밀라노가 위치한 롬바르디아 주의 GDP는 남부 풀리아주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고른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건설 및 인터넷 등 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및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서 2021년 ‘국가회복·복원계획(PNRR)’을 수립하여, 2021-2026년간 총 2,351억 유로(EU 재원 2,045억 유로, 국내 재원 306억 유로 비율) 투입을 추진 중이다. 2022년 7월 드라기 총리 사임 및 9월 조기 총선에 따라 PNRR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델로니 신임 이탈리아 총리는 현재까지는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산업

섬유·패션 산업

이탈리아는 패션명품(고급소비재) 수출 1위국으로 세계 패션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자국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시킨 덕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장인기술과 선진기술이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그 시너지 효과가 커진 결과이다. 이로써 다양한 패션분야에서 품질과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Made in Italy’의 신뢰도가 구축됐다.

이탈리아 무역진흥공사(ITA)에서는 패션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Made in Italy’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에서도 2017년 ‘패션기업연합’을 출범시켜 섬유, 안경, 피혁, 신발, 귀금속 등 패션관련 협회들을 통합하여 산업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이탈리아에 주요 생산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 제조그룹 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CA)는 프랑스 푸조 그룹과 50:50 합병을 2021년 1월 완료했고, 그 결과 세계 4위 자동차 제조사인 스텔란티스가 탄생되었다. 스텔란티스社は 산하에 총 14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이탈리아에서는 피아트(Fiat), 알파 로메오(Alfa Romeo), 마세라티(Maserati)와 페라리(Ferrari) 등 국민 보급형 차량부터 럭셔리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량을 생산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스텔란티스社를 필두로 전기차 및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시장공략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요 전장부품 및 배터리 공장의 국내 설립 및 유럽 내 생산기지 설립을 통한 리쇼어링을 추진 중이다. 또한 다양한 기업 등과의 협업을 진행 중이므로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계 산업

기계산업은 이탈리아의 제1수출산업으로 전체 수출에서 약 20%를 차지하며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공작기계 분야는 2019년 기준 생산액 총 59억 유로로 세계 4위(1위 중국, 2위 독일, 3위, 일본)이며 수출액은 34억 유로로 세계 4위(1위 독일, 2위 일본, 3위 중국)로 유럽 내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7~2020년 4년간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주도로 추진된 인두스트리아 4.0(산업 4.0) 및 그 후속정책으로 2021년부터 출범한 트란지쥘리오네 4.0(전환 4.0)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진행중이며, 직접 수혜품목으로 생산설비 자동화를 추진하는 주요 산업분야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항공우주 산업

이탈리아는 항공우주 산업 매출액 기준 세계 7위, 유럽 4위의 항공우주 강국이며, 로마 소재 이탈리아 항공우주청 (1984년 설립, ASI) 및 이탈리아 11개 지역 항공우주 산업클러스터가 동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탈리아 항공우주 산업은 매출액 164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는 2,640 유로 매출) △항공기 동체, 엔진, 부품 및 관련 시스템 제작, △동체 내외 · 부 디자인, △우주선 관련 시스템, 엔진 생산, △소형 위성 및 관련 시스템 제작, △동체 및 관련 시스템 유지 · 보수 등 항공우주 산업 전체 분야 망라하고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Leonardo, Avio, Sital 등 있으며, 65개 스타트업 및 혁신 SME를 포함 총 514개 기업에서 약 5만명 고용하고 있다. 또한 伊 30개 대학, 53개 연구센터가 항공우주 산업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산학 협력 또한 활성화되어 있다. 레오나르도, Avio 등 伊 대형 항공우주기업은 Boeing 등 해외 다국적기업과 파트너십 또는 조인트벤처를 구축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이탈리아 항공우주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은 △디지털화(Digitizat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기업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 △우주경제(Space Economy)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두스트리 4.0」과 연계하여 로봇틱스, 3D프린팅,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생산기술, 빅데이터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통해 효율적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우주기술이 민간 경제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로봇 산업

이탈리아는 로봇 생산 기준 세계 5위(한국 세계 6위), 유럽 2위의 로봇 강국이며, 수출 기준 및 소비 기준 각 세계 4위, 로봇 분야 연구 논문 발표 기준 세계 6위 (1만건 발표, 인용율 미국 다음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伊 국내 총 11,672 개 로봇 소비 (10,457개 수입, 1,215 국내 생산 조달), △2,220개 해외 수출 (국내 로봇 생산 3,435개)을 기록했으며, 伊 전역에 10만 4천개 업체 (43만명 종사)가 로봇 산업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 제조업, 기초과학, 디자인 강국 특징

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기초과학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탈리아는 노벨상 수상자 17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3개를 기초과학 분야에서 수상)을 바탕으로 높은 기계공학 수준을 보유하고, 로봇 R&D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디자인 강국 특징을 바탕으로 미학적 관점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유하고, EU 차원의 다양한 로봇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풍부한 국제 협업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역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로봇 산업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밀라노(1만2천 업체, 11만명), 로마(1만1천 업체, 6만3천명), 나폴리(5천 업체, 1만3천명), 투린(5천 업체, 2만5천명) 등에 분포하고 있다.

의료·제약 산업

이탈리아는 독일과 함께 유럽 2대 제약국으로 제약산업은 이탈리아 전체 산업군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2020년 기준 생산액은 343억 유로로 전년대비 1% 증가했고, 유럽 내 매출액 기준 1위를 달성했다. 또한 이탈리아는 제약 산업 전체 종사자인 6만7천명 중 약 10%가 R&D 분야에 종사하고, 연간 생산액의 10%에 달하는 30억 유로를 R&D 및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등 R&D 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전시 산업

이탈리아는 유럽 2위의 전시산업 국가로 세계 3대 전시장인 피에라 밀라노 전시장(47만 ㎡)에서 연 80회의 주요 전시회가 개최되며 총 3만여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연간 2,000여회의 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집계되어 이탈리아의 회의·여행·컨벤션·전시(MICE)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산업협회

- 이탈리아 안경협회(ANFAO): <http://www.anfao.it>
- 이탈리아 전자공업협회(ANIE): <http://www.anie.it>

- 이탈리아 자동차공업협회(ANFIA): <http://www.anfia.it>
- 이탈리아 수입자동차협회(UNRAE): <http://www.unrae.it>
- 이탈리아 오토바이협회(ANCMA): <http://www.ancma.it>
- 이탈리아 신발산업협회(ANCI): <http://www.anci-calzature.com>
- 이탈리아 자동포장기계협회(UCIMA): <http://www.ucima.it>
- 이탈리아 공작로봇자동화기계협회(UCIMU): <http://www.ucimu.it>
- 이탈리아 섬유산업협회: <http://www.sistemamodaitalia.it>
- 이탈리아 금형조합: <http://www.assocomplast.com>
- 이탈리아 플라스틱생산협회: <http://www.federazionegommaplastica.it/>
- 이탈리아 제약협회: <http://www.farminindustria.it>
- 이탈리아 철강산업협회: <http://www.federacciai.it>
- 이탈리아 식품산업협회: <http://www.federalimentare.it>
- 이탈리아 IT산업협회: <http://www.assinform.it>
- 이탈리아 가구산업협회: <http://www.federlegnoarredo.it>

이탈리아의 비즈니스 환경

회사 설립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 기업은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이탈리아 회사법은 무한책임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기업 형태는 주식회사(Società per Azioni, S.p.A)와 유한회사(Società a responsabilità limitata, S.r.l)로 이들 회사는 모두 정관을 통해 설립된다.

① 주식회사 (Società per Azioni, S.p.A)

주식회사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한 유형으로 설립 자본금은

5만 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증권이 되는 ‘주식’으로 분할된다. 자본금은 기업 설립시 결정되며, 현금으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경우 최소 25%의 자본금을 납입한 후 나머지 75%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투자한다.

정관은 회사가 위치한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주식회사에 투자한 자본에 상응하는 가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구성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기관 등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되고, 이사회는 회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감사 기관은 기업을 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위탁 혹은 자체적으로 회계 감사를 진행한다.

② 유한회사(Società a responsabilita limitata, S.r.l.)

설립자가 자신들이 투자한 출자액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기업은 완벽히 독립된 형태로 중간 규모의 기업에 적합한 모델이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이탈리아의 기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투자 파트너들의 권리는 각자가 출자한 출자금에 따라 정해지며, 정관에 별다른 조항이 없는 이상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

이탈리아 정부에서 개인 사업자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유한회사에서 회사 설립 절차를 단순화한 소자본 유한회사(Società a responsabilita limitata a capitale ridotto, S.r.l.c.r.)와 유한합작회사(Società a responsabilita limitata semplificata, S.r.l.s.)의 형태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러한 형태는 별도의 투자자나 파트너 없이 개인이 설립 가능한 형태로 자본 1유로 이상만 있으면 가능하고 출자는 현금만 허용된다. 또한, 회사 자본 및 예치금 평가도 은행 증명서만으로 회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단순화되었다.

조세 제도

기업에 부여되는 직접세로는 법인세(Imposta sul reddito delle società, IRES)와 기업소득지방세(Imposta regionale sulle attività produttive, IRAP)가 있다. 이외에는 개인소득세(IRPEF), 부가가치세(IVA, 22%), 등록세 및 양도세 등이 있다.

① 법인세(Imposta sul reddito delle società, IRES)

이탈리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탈리아 및 해외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은 이탈리아 기업은 이탈리아 국내 및 국외 소득에 대해, 그리고 해외 기업은 이탈리아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2021년 현재 과세율은 기업의 자산 및 이윤의 24%이다.

② 기업소득지방세(Imposta regionale sulle attività produttive, IRAP)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윤이 아닌 매출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밀라노가 속한 롬바르디아주는 3.9%인 반면, 로마가 속한 라치오주(4.82%)를 비롯한 이탈리아 중남부 지역에서 재량권을 적용하며 기업소득지방세를 상향조정한바 있다. 이탈리아에 있는 해외기업의 경우 이탈리아 내 고정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에만 과세한다.

③ 개인소득세(IRPEF)

개인소득세는 연 183일 이상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누진세로 소득 정도에 따라 과세율이 23~43% 나뉜다. 세법상 이탈리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 즉 연 183일 미만 거주자는 이탈리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한국과 이탈리아는 1992년 한-이탈리아 간 이중 과세 및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비준, 발효한 바 있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적용되고 있다.

노동 및 고용

이탈리아의 근로자 채용은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며, 근로 개시 전 지방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다르다. 사업장 규모가 15~35명인 경우 1명, 36~50명 규모는 2명, 50명 초과시에는 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계약은 고정 및 시간제 계약을 따지지 않고 서면으로 작성된다. 계절 직업, 기존 직원의 출산 휴가, 질병, 병역, 또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나 예외적이다. 계약 체결 시 법률 CCNL 14/12 1990를 기초로 하되, 각 섹터별로 최소임금 등 별도의 고용 관련 법률이 있으므로 세부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거한 정식 계약에 따를 경우 기업과 근로자는 채용 전 연봉을 포함해 근로자의 등급, 기타 근로조건 등을 합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노무관리

① 임금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위해 사회 보장제(INPS), 신고용주세(IRAP)를 납부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급여가 연 12회가 아닌 14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법적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14회차(6월) 및 13회차(12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3회차 급여는 당해연도 1~12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불되며, 14회차 급여는 전년도 7월~당해연도 6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불된다. 이탈리아 노동법에 의거, 고용주는 해고 또는 사직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탈리아는 법적으로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통해 최저 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②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법령(Decree 66/2003)에 의해 농업 종사자, 저널리스트, 여행사 직원 등 일부 직종에 한해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된다.

또한 근로자는 24시간 중 11시간, 1주일에 24시간 동안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야간 근무는 24시간 내에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단체 협약으로 정하며, 단체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간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 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는 일주일에 1일 휴식이 보장되고 법정 공휴일(연간 11일) 및 연간 4주일(근로일 기준 20일)의 휴가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전년도 미사용 휴가는 다음 연도에 사용 가능하고, 재직 중 미사용 휴가는 퇴직 시에 일시불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병가는 1-3일간 실시할 경우 회사에서 봉급을 100% 지급하며, 4-20일 실시할 경우 75%를 회사에서 지급한다. 21-180일간 실시할 경우, 회사에서 100% 지급하나, INPS(Istituto nazionale della prveidenza sociale)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이미 지급된 월급의 66.66%를 환급해 준다. 계약 조건에 따라 본인 결혼, 친척 경조사, 자녀 간호 등을 위해 별도 휴가가 가능하다. 1촌 관계의 가족 장례식은 3일 유급 휴가, 3세 미만 영아 간호시에는 제한없는 무급 휴가가 가능하며, 3세 이상 8세 미만 유아의 간호시에는 5일 무급 휴가가 가능하다.

여성은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3개월간의 100% 유급(80% INPS 부담, 20% 회사 부담) 휴가가 주어지며, 추가 6개월간의 30% 유급 휴가가 보장된다(전액 INPS 부담). 동 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부담되며, 남성 역시 육아 필요가 있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법정 공휴일이 주말 또는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일로 간주하고 월급에 포함된다.

③ 해고

이탈리아 정부는 경직된 노동환경 개혁을 위해 2012년 40년 만에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높은 고용 비용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 기피 문제 해소를 위한 동 법안의 최대 핵심사항은 노동법 제18조(Articolo. 18)에 의한 평생 고용 폐지이다. 이로써 법적 절차에 의한 합법적 해고가 가능해졌으며, 개인 해고의 경우 명확한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라 보상을 통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노무관리 유의사항

정식 근로 시작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가질 수 있는데, 직종과 직위에 따라 최대 허용 수습기간이 다르다. 직종별 수습기간은 전국 노조의 노사 합의에 따른다. 근로자가 일단 근무를 개시한 후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법적으로 무효),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자와 고용자 모두 자유롭게 상호통지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나, 고용자에 의한 계약 파기일 경우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불만족했던 이유들을 상세히 기술 및 전달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 장벽

이탈리아는 국가간 자유로운 디지털무역을 제한하는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디지털 무역에 관한 신규법 정립에 있어 유럽연합 차원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투자진출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물류거점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있고 GDP 기준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나, 외국인의 對 이탈리아 투자는 EU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탈리아 투자환경의 최대 취약점으로는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관료주의, 외국인 투자 기업 유인을 위한 적절한 수단 및 관련 지원기관의 부재, 비싸고 불완전한 수송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다.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세제, 학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관계 형성 곤란, 일부 지역에서의 여전히 높은 범죄율, 노동시장의 경직성, 느린 법정 시스템 등도 비우호적인 투자환경에 포함된다.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개혁으로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Doing Business 지수에서 이탈리아는 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2019년 발표된 Doing Business 2020 지수에서 이탈리아는 세계 58위를 차지해 전년도 51위에서 7계단 하락하였으며 영국(6위), 독일(22위), 프랑스(32위)는 물론 한국(5위)에도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를 유럽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이탈리아의 외자 유치 매력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소기업 비중이 99%이며 5인 이하 사업장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기업 구조로 인해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하지 않으며, 투자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단독투자보다는 M&A 및 합작투자 형태의 투자가 선호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EU에서는 취약해진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탈리아는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정부권한을 확대해 대부분의 주요사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이탈리아 투자는 교역규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말 누계 기준 對이탈리아 투자는 10억 5200만불, 이탈리아의 對한국 투자는 341건 8억 6800만불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주요 업종으로는 의류, 무역업, 자동차, 전자 등 제한된 업종으로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판매법인 및 지사 설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이탈리아 산업구조와 높은 세율, 경직된 노동시장 등 영업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

이탈리아 금융제도도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 은행예금, 보험증서 등의 금융자산과 이들이 매매되는 시장, 금융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금융기관 세 가지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 금융자본의 흐름은 자유로운 편이며, 외국인의 이탈리아 자본시장(Capital Market) 진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시장에서 자본이나 다양한 종류의 신용을 조달하는데 제한은 없으나, 주식 관련 자본(Equity Capital)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신용금융(Credit Financing)이 선호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법에 의해 계산되는 지수인 FTSE가 있으며, FTSE MIB와 FTSE Italia Mid Cap, FTSE Italia Small Cap, FTSE Italia Micro Cap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이탈리아 주식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220개 이탈리아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약 8,2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인데다가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모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출장 시 참고사항

이탈리아에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2~3주 전에 시간을 두고 미리 미팅 약속을 잡는 것이 관례이며 미팅에 임박해서 이메일 혹은 전화로 미리 일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캐주얼한 미팅이라고 해도 장소, 용무에 적합한 의복 착용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일반적으로는 정장 차림이 선호된다.

첫 만남에서 악수를 할 때 본인의 이름을 말하며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기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호칭 역시 Mr. (이탈리아어 Signore)나 Ms. (이탈리아어 Signora)와 같이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러 번 만나 친숙해진 경우에도 인사예절은 중요하므로 반드시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치 및 종교 등 민감한 화제와 이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상대방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이탈리아 기업들은 8월 한달간, 12월 말~1월 초까지 그리고 부활절이 있는 4월 2~3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휴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미팅 일정을 잡지 않도록 한다. 미팅 시간은 오전대가 좋으며, 금요일 오후와 월요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맥과 소통이 중시되는 문화로 업무 관련 식사자리가 길어지는 것 역시 네트워킹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회의 내에서는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상관없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종종 다른 주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회의가 길어질 경우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회의 종료 후 도출되기 때문에 회의는 정보 교환의 자리로 인식되며 이러한 분위기가 식사자리로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있기에 초반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나 적극적인 대화 참여가 필요하다.



크로아티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2021년 1~10월 누적액 기준 우리나라의 대크로아티아 수출은 1억 달러, 수입은 2천만 달러로 상품 무역수지는 8천만 달러 흑자이다. 한국의 대크로아티아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류, 승용차, 합성수지, 합성고무, 전기강판, 베어링, 기타 정밀화학제품, 건설중장비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화학공업제품, 편직제의류, 자동차부품, 축전기, 제재목, 전동기, 전원장치 등이다.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 간의 무역은 2021년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크로아티아 수출이 54.8% 증가한 반면, 수입은 2.2%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은 전년 대비 양국 교역량이 55% 감소했다는 점에서, 2021년 교역규모 역시 2~4억달러에 달하던 과거 교역 실적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까지 대 크로아티아 수출 실적의 과반을 차지하며 매년 1억 달러 이상 수출액을 기록해온 의약품이 2020년 대폭 감소한 이후 아직 회복되지 않아 전체적인 교역 규모가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양국간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3년 최저치(6천3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13%씩 성장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와 의약품 수출의 급격한 축소로 교역량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그 동안의 교역량 확대에는 2013년 크로아티아의 EU가입에 따른 한-EU FTA 효과 및 관광산업의 성장 등에 따른 크로아티아 경기 회복에 기인한다.

한-크로아티아 교역추이

(단위: 천 달러)

연도	대크로아티아 수출	대크로아티아 수입	무역수지	교역규모
2013	46,307	16,603	29,704	62,910
2014	93,728	15,328	78,400	109,056
2015	299,912	9,987	289,925	309,899
2016	448,413	13,445	434,967	461,858
2017	327,605	15,986	311,619	343,591
2018	241,137	18,852	222,285	259,989
2019	241,177	26,592	214,585	267,769
2020	97,161	23,248	73,913	120,409
2021.1~10.	99,601	19,747	79,854	119,348

출처: 한국무역협회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자로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EU가입으로 인해 개선된 투자환경과 EU기금 재원 확보, 보다 용이해진 국제금융기구 융자를 활용해 항만 개발, 교통인프라, 환경 관리, 에너지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2014~20년 2차 EU기금(ESI Fund)으로 107.3억 유로를 배정받았으며, 여기에 자체기금으로 19.2억 유로를 더해 총 126.5억 유로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2021년 11월 기준 크로아티아는 확보된 전체 기금의 52%를 실제 집행한 상태로 EU 평균인 56%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집행하지 못한 자금은 2023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 11월 총 29개 13.3억 유로 달하는 EU기금 활용 프로젝트의 공개입찰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2021~27년 다년도지출예산(MFF) 및 경제회복기금(NGEU)으로 향후 7년간 약 220억 유로의 EU 기금을 배정받으려, 저탄소에너지전환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건설, 디지털 전환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크로아티아 진출 투자 유망분야는 에너지, 인프라 건설, 관광, 물류, 교통, 쓰레기처리, 수처리 분야 등이다.

크로아티아는 석유 및 가스를 자체생산하고 있음에도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해 많은 양의 에너지와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총 전력

소비량은 18,660 GWh임에 반해 생산량은 12510 GWh에 머물러 부족한 6150 GWh 즉 33% 만큼의 전력을 수입하였다. 전력 소비는 산업용이 62.2%이며 일반 소비자용은 37.8%이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량이 매년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아드리아해 및 내륙의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에너지 수입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는 EU 집행위의 2030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에너지·기후 전략(NECP: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을 2018년에 수립했으며, EU 집행위의 검토 및 수정을 거쳐 2019년 12월 최종본을 발간하였다. 동 전략은 205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스배출량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가 주요 목표이다.

크로아티아의 에너지 관련 주요 진행중인 사업은 EL-TO CCGT Zagreb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HPP Kosinj/Senj II 수력 발전소 확장, (2020년 기준 >2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Zagreb 온수 공급망 보수 프로젝트 (총 227.3km 파이프 중 68.5km 교체 예정), E-mobility 관련 크로아티아 전역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 체인 구축을 위한 ELEN 프로젝트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프로젝트 중 Osijek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준비,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 건설 준비 (현재 목표는 >100MW이며 2030년까지는 350MW 목표), 2030년까지 350MW 생산량의 풍력발전소 건설 준비, 소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준비 프로젝트 등이 있다.

크로아티아는 지리적 위치, 항구 접근성, 발달된 도로체계 등을 바탕으로 구유고권 국가로의 물류운송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연간 1,90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EU 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현대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기술 적용 및 ICT 네트워킹 활용 확대 등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유고내전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지역내 평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물가 및 환율이 안정되고,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 부흥과 도로건설 등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자본지출 등에 힘입어 2003년 이후 5년간 연평균 5%대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09~14년 동안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 2015년 크로아티아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2016~19년 동안 연 3%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세가 완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분야(GDP의 약 20%)가 큰 타격을 받은 결과 2020년 크로아티아 경제는 GDP가 8% 감소하는 기록적인 역성장을 보였다. 2021년에는 관광 실적 회복 및 민간 소비에 힘입어 8%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⁶⁰⁾

◉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GDP(EUR백만, 경상가계)	46,644	49,262	51,979	54,269	49,318
1인당 GDP(EUR)	11,174	11,942	12,716	13,349	12,186
GDP 성장률(% ,불변가계)	3.5	3.4	2.8	2.9	-8.0
연간 인플레이션율(CPI)	-1.1	1.1	1.5	0.8	0.1
수출(EUR백만)	47.7	50.0	50.2	52.0	42.8
수입(EUR백만)	46.5	49.3	51.0	52.3	49.7
경상수지(백만 유로)	1.089	1.765	993	1.682	-54
경상수지규모 (%, 국내총생산대비)	2.3	3.6	1.9	3.1	-0.1

출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main macroeconomic indicators

크로아티아의 교역량은 2003년 총 200억 달러 규모에서 2008년 444억 달러 규모로 급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60) 2021년 크로아티아 실질 GDP 성장률을 EU 집행위는 8.1%, EBRD는 8%, 크로아티아 정부는 9%로 전망함.

2009~10년 교역량이 약 315억 달러대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크로아티아의 경기회복과 함께 대외교역량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데, 2019년에는 약 453억 달러의 교역액(수출 172억 달러, 수입 281억 달러)을 기록하였다.

국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크로아티아의 수출과 수입의 85% 이상은 여타 EU 회원국과의 교역이 차지한다. 특히 크로아티아는 독일 및 이탈리아, 슬로베니아와의 교역 비중이 전체 무역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독일,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순이고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 독일,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오스트리아 순이다.

EU 가입으로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부터 EU의 공통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에 구속되는 한편, 크로아티아가 개별국가와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들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크로아티아는 그간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회원국으로서 역내 국가와의 교역이 활발했으나, EU 가입과 함께 CEFTA 회원국을 탈퇴하게 되어 CEFTA 7개국(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코소보)과의 교역시 적용되어 온 관세 혜택이 사라짐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대외교역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EU 회원국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 여타 EU 회원국과의 교역 증대,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적용에 따른 대외 진출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 가입에 이어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로존 가입과 쉥겐조약 가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조약 가입이 성사될 경우 접근성 제고 및 물류비용 저하, 결제편의 증대 등의 효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된다.

2020년 7월 유럽환율조정메커니즘(ERM II)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2023년 1월 유로화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규 정비, 유로화 주조 준비 작업과 함께 ERM II 가입시 약속한 자금세탁방지, 기업환경, 공공분야, 사법분야 등 4가지 영역의 개혁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2013년 EU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통상정책에 관한 권한을 EU 집행위에 위임함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역외 국가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EU 공동관세율을 따르며 일련의 수입금지·제한 조치(반덤핑, 수입쿼터, 세이프가드 등)는 모두 EU 집행위의 결정을 따른다.

통관 시 부과되는 일반 부가가치세는 25%로 EU에서 두 번째로 세율이 높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3%와 5%의 할인된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된다. 대표적으로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및 기저귀, 생고기, 생선, 야채, 과일, 달걀 등 일부 생필품 등에는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빵, 우유, 교과서 및 시청각 교재, 크로아티아 의료보험 환급대상 의약품, 장애인 개인 용도의 의료기기, 보조기 등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별세(Special Tax)는 자동차·이륜차, 주류가 아닌 음료수, 커피 등에 부과된다. 수입 시에는 세관에서 부과하고, 국내 생산 시에는 제조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 ▶ 자동차와 이륜차(motor cycles)의 경우 차량판매가격, 연료별 CO2 배출량, 엔진출력(kW), 엔진용량, 가스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특별세가 결정된다. 차량판매가격에 따라 0~17%의 세율이 결정되고 기타 사항에 따라 추가세금이 가산된다.
- ▶ 로스트 커피는 6쿠나/kg, 커피추출물, 농축액은 20쿠나/kg의 세율이 적용된다.
- ▶ 음료수(Non Alcoholic)는 40쿠나/hl, 음료수 제조를 위한 시럽 및 농축액은 240쿠나/hl이 적용된다.

물품세(Excise Tax)는 주류, 주류성 음료, 담배, 석유·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부과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담배 등 일부 제품의 세율을 인상했다.

- ▶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1,000리터당 100쿠나에서 4,500 쿠나의

세율이 적용되며, 난방용 천연가스는 8.10/MWh(가정용), 4.05/MWh(산업용)이 적용된다. 단, 차량용 천연가스는 물품세 대상이 아니다.

- ▶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쥘련(cigarette)은 34%의 세율에 더해 370쿠나/1000개피가 적용된다. 담배(tobacco)는 800쿠나/kg 이며 시가(ciga)와 엽쥘련(cigarillo)은 800쿠나/1000개피가 적용되며, 전자액상담배는 물품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 ▶ 주류중 에틸알코올은 6,000쿠나/hl 세율이 적용되며, 맥주는 1% 도수마다 40쿠나/hl 세율이 적용된다. 와인 및 스파클링 음료는 물품세가 없다.
- ▶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은 주류 중간제품의 경우 도수가 15% 이상이면 800쿠나/hl, 미만이면 500쿠나/hl이 적용된다.

EU 부가가치세 규정 변경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가격과 상관없이 수입 부가세가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의 가치가 22유로 이하이었을 때 수입부가세가 면제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부터는 소액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적용되어 역외 제품, 특히 중국제품의 EU내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관절차 및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수출입 물품에 대해 EU 공통의 통관규정이 적용되며, EU 국가에서 통관을 마친 물품은 추가적인 통관절차 없이 크로아티아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선적서류(Transport documents: Certificate of origin, Bill of lading/Airway Bil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이며, EU와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s(SAD: "Jedinstvena carinska deklaracija")도 크로아티아에서 통용된다.

통관절차 처리를 위해서 수입업자는 크로아티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Documents of representation)가 통관서류로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목에 따라, 식품위생증명서(Sanitary inspection certificate for food: 음식, 음식 포장품, 개인 위생 및 청결 용품), 수의위생 증명서(Veterinarian certificate for live stock), 품질보증서(Quality certificate/Certificate of conformity)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음식물, 가공·처리·수리용품 등을 제외한 물품을 임시 통관할 경우 수입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ATA Carnet를 발급받으면 통관 서류 및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ATA Carnet이 해당되는 대상은 샘플 용품, 전문 기기, 전시회 및 박람회용 물품 등이다. 통관 편의를 위해서는 현지 운송업자를 지정하여 통관 수속을 대행 시키는 것이 편리하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s)
- ▶ 품목 리스트(List of items)
- ▶ 수입 서류
 - 발송인(전체 법인명 및 식별 번호(Identification No))
 - 수취인(전체 법인명, 주소, 연락인)
 - 영수증 번호 및 발급 일자
 - 품목 명세서(개별 수량 및 가격과 총액)
 - 총/순 중량
 - 총 수량 및 포장 방식
 -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00과의 비율 (Parity)
 - EUR 1(Movement Certificate): 6,000유로 이상 물품
- ▶ 식물병리학 통제 증명서(Phytopathological Control Certificate)
 - 식물 및 식물 제품
 - 목재 포장 재료

- 농업 번식용품(씨, 감자, 과일, 관상용 식물 등)
- 삼림 번식용품
- 식물 보호 제품
- ▶ 수의위생 통제 증명서(Veterinary Control Certificate)
 - 수입일 최소 30일 이전에 동물, 동물 제품, 동물성 원료 함유 제품, 난자(ova), 태반(embryos), 동물 사료, 부화 알, 동물 사료 원료, 전염성 질환 전파 또는 공공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경우 크로아티아 농업부에 수입허가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 수입 계획(Import Disposition)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지침(Directives)을 자국 기술표준에 적용했다. 대부분의 기술표준이 EU 혹은 국제표준이며 약 0.2%의 표준만이 크로아티아 자체 표준이며 이마저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한, EU 회원국으로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EU 통일 인증 마크인 CE 마크 획득, 부착이 필수이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EU 지침과 자국의 기술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생산품의 기술 규격과 품질 적격 평가법(The Law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conformity assessment(OG No. 20/2010, 14/2014))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생산품이 기술 표준에 부합하고 생산자에 의한 품질 적격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시장에 출하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품질 적격 평가를 위한 서류로는 검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품질 적격인증서(conformity certificate), 검토보고서(review reports), 품질 적격설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 서류(technical documents) 등이 있다.

라벨(Label)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정보는 시장에 판매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표기 또는 병기되어야 한다.

- 제품명(name of product)
- 생산자 주소 및 원산지(full address of the importer and the country of origin)
- 순 수량/무게/부피(net quantity/weight/volume)
- 성분(ingredients)
- 보관 방법(manner of storage)
- 소비자 정보(GMO 성분 포함 여부)

정부조달 관련 장벽

크로아티아 정부는 EU의 정부조달지침에 부합하는 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OG No. 90/ 2011))을 제정·시행(2012년 1월)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새 정부조달 법안(OG No. 120/2016)이 적용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새로운 정부조달법은 수도, 에너지, 운송, 우편 서비스 부문도 EU 정부조달 지침과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공공 건설 계약, 공공 서비스 계약, 공공 물품 조달 계약 등에 있어서 전자 입찰 공고, 특정 입찰 절차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EU 정부조달지침 변화에 맞추어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공공입찰에는 공개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수의 계약 등이 일반적이나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공모(design contest)가 추가 되기도 한다.

20만 쿠나(약 2만7천 유로) 이상의 상품·서비스 구매와 50만 쿠나(약 6만6천7백만 유로) 이상의 공사 계약은 모두 새로운 정부조달 법안의 적용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조달(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동 법은 건설공사 계약(Works Contract), 물품조달 계약(Supply Contract),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에 모두 적용된다.

2020년 기준 크로아티아 공공조달에서 공개입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이며, 모든 입찰 정보는 크로아티아 전자 공공입찰 기관인 OGLASNIK(<https://eojn.nn.hr>) 및 EU 관보(<https://ted.europa.eu>)에 등록된다. 입찰희망자는 OGLASNIK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이후 주요 정부 조달 입찰 공고는 EU의 관보(Official Journal)에 자동으로 게재 된다.

공공입찰에 응찰하는 참가자는 입찰주체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로아티아어가 요구됨)된 입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조달시 공고문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contract notice
- design contest notice
- prior notice of intention to award a contest
- periodic(indicative) notice
- notice of the publication of the prior(indicative) notice on the contracting entity(buyer) profile
- contract award notice
- notice of the results of design contest
- notice for additional information, cancellation of the procedure or correction

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은 입찰 참가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범죄조직 가담, 부패, 뇌물수수, 돈 세탁 등의 각종 범죄행위에 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회보장제나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배제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가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자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Evidence of legal and business capacity(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with the business, court(commercial) etc, the authorization related to the subject-matter of procurement, the certificate of membership in a specific organization)
- Evidence of the non-existence of a criminal record
- Proof of technical and professional ability
- Proof of compliance with certain quality assurance standards

지식재산권 보호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위해 단기간에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법률을 EU 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크로아티아는 WTO 회원국으로서 TRIPS 당사국이기도 하다. 그리고 WIPO의 회원국으로서 21개의 관련 협정에 가입해 있다.

특허권은 2020년 2월 과거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Patent Act(NN 16/2020)로 통합하였다. 동 법은 사전 특허권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시스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권은 새로운 Patent Act(NN 16/2020) 법령에 따라 부여되며 특허 담당 기관인 SIPO(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ww.dziv.hr)에 등록이 되어야 특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허권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최신의 고안품이어야 하고,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요청서, 발명에 대한 기술, 권리에 대한 주장, 도면(필요시), 발명 개요 등이 담긴 신청서를 행정 수수료와 함께 SIPO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나, Consensual Patents 의 경우에는 10년간 보호된다.

상표권은 2019년에 발효된 New Trademark Act(OG, OG No. 14/2019)에 따라 부여되며, 제품 판매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잠재적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권장되고 있다. 상표권은 시각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을 경우 어떤 형태라도 등록될 수 있다. 문장, 구절, 심벌,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 제품의 형태 또는 포장, 3차원 형상물, 색깔도 등록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는 특허권 신청절차와 유사하며 SIPO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되며 10년 주기로 계속 갱신될 수 있다. 상표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크로아티아 영토 내에서 5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타인의 상표권 등록에 대한 이의는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산업디자인권은 Industrial design Act(OG, No 173/2003, 76/2007, 30/2009, 40/2011, 46/2018)에 따라 부여되며, 제품의 외관이 시각적인 차별성을 가져야 산업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특허권 신청절차와 유사하며 SIPO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산업디자인권은 5년간 보호되며 25년을 한도로 매 5년마다 갱신될 수 있다.

저작권은 Copyrightand Related Rights Act(OG, NN 11/2021)에 따라 부여되며 문학적, 학술적, 예술적 창작품이 대상이 되고, 아이디어, 절차, 일처리 방식, 수학적 개념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 작가의 저작권은 저자의 사후 70년까지 권리가 보장되며, 공연가의 저작권은 공연일로부터 50년까지 권리가 보장된다. 음원, 영상물, 방송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일, 첫 방송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그 권리가 보호되고, 공동 저작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저자는 제3자나 기관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반도체 제작기술(Topography of semi-conducting products)은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 and Act amending and supplementing the Protection of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 Act(OG, No 173/2003, 76/2007, 49/2011, 46/2018)에 의해 보호된다. 그 제작기술이 지적노력의 산물이어야 하고,

독창적인 기술이어야지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반도체 제작기술과 관련된 개념(Concept), 절차(Process), 시스템 등은 보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권리는 상업적 이용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상업적으로 이용된 적이 없는 기술의 권리는 권리보호 등록을 하지 않는 한 15년 내 그 독점권이 만료된다.

디지털 무역 장벽

크로아티아는 국가간 자유로운 디지털무역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디지털 무역에 관한 신규법 정립에 있어 주요 이슈되고 있는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제한, 소스코드 요구, 특정 데이터 국내 보관 강제 등의 제한 조치가 없다.

투자 환경 일반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3년 7월 1일 EU 가입과 함께 정치, 경제, 사법제도 등 모든 부문에 걸쳐 EU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크로아티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투자 환경 관련 법률은 크게 크로아티아 회사법, 투자진흥법 및 전략투자프로젝트법 등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관련해서 크로아티아 정부의 주된 목표는 에너지·인프라·관광·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크로아티아가 가진 천혜의 관광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수출 지향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촉진시키고, 신기술과 know-how의 도입을 권장하며,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확대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키는 것도 크로아티아 정부의 중요한 투자유치 방향이다.

2012년 9월 크로아티아는 투자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규정한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제정하였다. 동 투자진흥법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 금액 요건을 종전 30만 유로에서 5만 유로(소기업) 및 15만 유로(중소기업 및 대기업)로 대폭 낮추었으며, 관광 분야를 인센티브 수혜 대상 분야로 신규 추가했으며, 재투자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면 감면하는 우대 조치를 제공하며, 투자 금액, 투자분야 및 고용창출 인원 등에 따른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5년 9월 개정된 투자진흥법은 신규 설비 혹은 기술 도입, 실업률 해소 기여, 지역 균형발전,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였고, 2018년과 2020년 추가 개정을 통해 ICT 분야 투자인센티브 수혜 충족 조건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5만 유로로 낮추는 한편, 임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부지에 3백만 유로 이상 투자할 경우 10년 동안 무상 사용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동 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신청서는 반드시 투자 개시 전 경제지속가능개발부에 제출해야 한다.

◦ 투자 유치 선호 분야

- 제조업
- R&D 센터
- 전략적 기업 지원 분야(고객관리센터, 물류센터, 데이터처리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등)
- 관광 프로젝트 분야(4성급 이상 호텔, 리조트, 스포츠 및 헬스 센터)

◦ 투자 인센티브

- 세금 인센티브
- 관세 혜택
- 고용 및 고용 보조금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센티브

◦ 해당 투자비용

- 부동산, 건물, 기기 및 기계류(Equipment, Machinery)
- 무형 자산(특허권, 라이선스, Know-how 등 유형자산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 2년간의 총 임금

◦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최소 투자 규모

- (영세기업) 5만유로+ 신규 고용인원 3명 이상
- (중소/대기업) 15만유로+ 신규 고용인원 5명 이상
- (ICT) 5만유로+ 신규 고용인원 10명 이상
- (현대화 프로젝트) 50만유로

◦ 세금 인센티브

투자금액 (유로)	신규 고용인원	감면법인세를 부여기간	고용기간	감면 법인세율
5만 (영세기업)	3명	최대5년	3년	50%
5만~100만 (ICT)	10명	최대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50%
15만~100만	5명	최대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50%
100만~300만	10명	최대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75%
300만 초과	15명	최대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100%

◦ 고용 보조금 인센티브

투자지역 실업률	신규 고용 창출비용 인센티브(비용 대비)	기술혁신 및 개발활동 추가 인센티브	비즈니스 지원 전략적 활동시 추가 인센티브	혁신 및 개발 활동 인센티브
10% 미만	10%(3,000유로 한도)	50%(1,500유로)	25%(750유로)	하이테크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20% (50만유로 한도)
10~20%	20%(6,000유로 한도)	50%(3,000유로)	25%(1,500유로)	
20% 초과	30%(9,000유로 한도)	50%(4,500유로)	25%(2,250유로)	

※ 장비수입 관세 : 무관세 적용

◦ 투자 프로젝트 초기 자본 지출 인센티브

- 지원 대상: 500만유로 이상 투자 및 50인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투자지역 실업률	자본 지출 인센티브
10~20%	투자비용중 아래 해당 분야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됨. · 신규 공장 및 생산시설 건설 · 신규 기계 구입(예: 생산 설비) (최대 50만유로 한도로 인센티브 지원, 단 기계·설비 구입비용이 총 투자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계·설비의 최소 50%는 첨단 장비여야 함.)
20% 미만	투자비용의 아래 해당 분야의 2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됨. · 신규 공장 및 생산시설 건설 · 신규 기계 구입(예: 생산 설비) (최대 100만유로 한도로 인센티브 지원, 단 기계·설비 구입비용이 총 투자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계·설비의 최소 50%는 첨단 장비여야 한다.)

◦ 직업 훈련 인센티브

신규 고용 창출 인원	신규 고용 창출 지원 증가
100명 이상	25%
300명 이상	50%
500명 이상	100%

◦ 정부 지정 임대용(비활성 상태) 부지 투자 인센티브

최소투자금액(유로)	신규 고용인원	신규 고용 창출 시간	인센티브
300만	15명	3년 이내	최대 10년간 무상사용

2013년 11월 14일 전략투자법(Strategic Investment Act)이 발효되어 투자 금액 및 분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 행정적 지원 제공, 국유 부동산 불하 등 투자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그간 외국인 투자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지자체의 건설 관련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건설부)로 이관토록 하였다. 2018년 4월 동법 개정을 통해 전략투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투자 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대상 분야에 일부 확대되었다. .

- 전략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투자 금액
 - 1천만 유로(원 표기 7천5백만 쿠나)
 - EU기금이 공동투자(co-financed)된 경우 1천만 유로(7천5백만 쿠나)
 - 저개발 분야 투자의 경우 1.5백만 유로(1천만 쿠나)
- 전략 투자 분야
 - 생산 또는 가공 분야
 - 혁신 분야(생산 공정, 기술 및 상품의 개량 또는 개발과 관련된 분야)
 - 비즈니스 지원 분야(고객지원센터, 물류센터, IT, 통신개발센터 등)
 - 고부가가치 분야(건축, 디자인, 예술 등 창조활동, 관광, 비즈니스컨설팅, 교육, 산업엔지니어링 등)
 - 에너지 분야
 - 사회 인프라 분야
 - 농·어업 분야
 - 과학·교육 분야

채용 및 고용 계약의 경우 외국기업은 신문 광고를 통한 공개 채용이 일반적이며, 고용 계약서 작성 후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 요구되며, 개인 소득세 납부를 위해 세무서에 소득 신고 및 매월 급여 지급 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납부가 필요하다.

고용 계약서 작성시 근로장소, 근로 계약자의 직위, 역할 및 담당 업무, 계약 기간, 근무시간, 휴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기간을 한정하는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대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수습기간 내에는 1주일 전의 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퇴직금 제도는 없으나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근무기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급여의 1/3을 Severance Pay라는 명목으로 급여의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연간 최소유급휴가는 공휴일 13일을 제외하고 4주(20일)이며, 기타 경조사(결혼, 자녀 출산, 가족 사망 등)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추가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초과근무를 포함한 근무시간은 1주에 5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업은 고용주세로 근로자 급여의 16.5%를 의료보험료로 납부하며, 근로자는 급여의 20%를 연금보험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원천 징수 후, 해당 기관에 납부하며, 근로자는 별도의 의료(건강)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서비스인 HITRO.HR⁶¹⁾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HITRO-공증 사무소-상사 법원의 3단계로 단축되었고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5일 근무일(15 working days)이다. 그리고 최근 온라인 회사창립 서비스인 “e-company”를 이용할 경우 HITRO측은 공증 사무소 등록과 상사 법원 등록이 1일 내에 이루어져 24시간 근무시간(24 hours) 이내에 회사 창립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다만 이는 상사 법원 서류제출이 아무 문제 없이 통과시켰을 때 가능한 등록일이고 법원이 서류를 기각했을 시, 다시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해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투자 유치 현황

크로아티아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적액은 1993년부터 2021년 2분기까지 총 368억 유로이며, EU 가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른 동구권 국가와는 다르게 크로아티아는 그린필드 형태의 투자 유치는 저조한 반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등 금융투자 누적 투자액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3-202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통계를 살펴보면 FDI 주요 업종은 금융(22%), 도매 유통(9%), 부동산(7%), 통신 (6%)등의 분야이며, 주요 국가는 오스트리아(14.1%), 네덜란드(13.2%), 룩셈부르크(11.3%), 독일(10.6%), 이

61) www.hitro.hr

탈리아(10.3%), 헝가리(8.2%) 등으로 EU 회원국의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포함, 게임 및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혁명분야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인수 및 지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단위: 백만 유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Q1~2
894.7	1,014.7	734.3	2,309.3	30.1	370.0	437.3	1,035.9	1,233.7	1046.1	1696.2

출처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진출 유망 분야

크로아티아는 비엔나, 부다페스트 등을 통해 유럽 어느 지역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며, 크로아티아가 갖고 있는 기존 구 유고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 및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과의 언어적인 소통이 가능함에 비추어, 우리 기업의 크로아티아 진출은 주변 유럽 국가들로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크로아티아가 2013년 7월 1일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인구 약 407만 명의 크로아티아 시장을 넘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의 대크로아티아 투자진출 유망 분야는 에너지와 유통·물류 등이다. 크로아티아의 국내 에너지 생산은 전체 소비량의 약 66%정도를 충족하는 수준이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2030 청정에너지 목표인 온실가스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32%, 에너지효율 32.5%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건물 개보수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수력 및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2030년까지 태양광/태양열 발전용량을 2020년의 700%, 풍력 발전용량은 85% 증대 하겠다는 계획인 바, 상대적으로 증가계획이 적은 바이오매스나 지열발전 보다는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 우리기업의 장기적인 진출 노력이 요망된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는 지리적 위치, 항구 접근성, 발달된 도로체계 등 측면에서 구 유고권 국가는 물론 EU시장으로의 물류운송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바, 크로아티아를 유럽 물류 및 유통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구권까지 확대된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주로 동유럽에 위치해 있어 원활한 원·부자재 조달과 물류기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크로아티아 제1의 항구인 리예카(Rijeka)항은 북부 아드리아해안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부산항 등 아시아 항구와 최단거리상에 위치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그간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불편했던 통관절차상 어려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부다페스트-리예카 구간 철도 물류 이동이 1일 이내에 가능해 지고 향후 리예카 항만 및 고속도로망 확장 공사가 완공 될 경우 현재의 연 300,000TEU 물동량 처리 능력이 크게 확대되어 크로아티아의 EU지역에 대한 물류 센터로의 입지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유럽의 교역 관문인 크로아티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물류거점 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트리에스테(이탈리아), 코퍼(슬로베니아) 항구의 대안 항구로서 리예카항에 대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의료비 지출 수준이 현재로서는 인근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의약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아티아의 의약 시장은 EU 및 중동부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잠재력이 있어 우리 업계의 진출 검토가 요망된다.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춘 관광지로서의 매력에 더해 저렴한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의료 관광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식, 이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크로아티아는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법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에 방해가 되는 제도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관료주의,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등 구시대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어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크로아티아에 설립 및 등록된 크로아티아 법인은 법인 명의로 크로아티아 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 또는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비EU 국가의 외국인은 크로아티아와 상호호혜주의(양국의 개인이 상대국에서 부동산구매 가능)에 따라 부동산을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승인 하에 거주용 부동산만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내 부동산 거래시에는 소유권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 미비,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는 관행 및 소유자가 다수인 복잡한 소유 구조 등으로 부동산 매입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은 100%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일반 외국인은 개인자격으로 현지에서 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크로아티아 기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현지법인명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받으려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영업실적을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진출 초기에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의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시 보통 외환 계좌와 현지화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게 된다.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송금에는 세금 납부 등 법적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어려움이 없으며, 계좌에 외환잔고만 있어도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인출시 자동으로 현지화로 환전하여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세금부과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현지 법인으로 기업을 설립하면 크로아티아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투자금액과 투자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 및 면세, 고용 및 훈련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크로아티아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무역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수년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법제도의 비효율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연간 1.25백만 건의 소송이 시작되고 절반정도의 소송이 매년 미해결로 남아 있어 소송비용뿐 아니라 소송지연으로 인한 투자비용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장진입 전략

상품, 서비스 시장접근에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통관 수속, 서류작업, 창고 보관 등의 일을 대행하는 크로아티아 기업을 에이전트나 배급회사로 선정하여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지 상관습을 잘 이해하고 판매망을 갖춘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신규 진출 기업이 주경쟁대상인 유럽지역 기업과 경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A/S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유통업자들이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 장기간에 걸쳐 거래선과의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제조업 분야가 취약하여 다양한 부품 및 부분품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의 경우 인근국가로부터 부품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미약한 편이며 주로 인근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미국, 영국, 일본식 기업 풍토에 보다 익숙한 우리 기업들은 다소 낯선 사업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중국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근 동구권 국가에 비해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비효율적 사법 제도 등이 대크로아티아 투자시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 행정 및 사법 분야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잘 교육된 전문적인 노동인력, 현대적 인프라, 쾌적한 생활환경, EU 및 동구 시장 접근 용이성, EU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국민들의 높은 영어구사율 등은 대크로아티아 투자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다.



튀르키예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한국과 튀르키예의 교역량은 2013년 한·튀르키예 FTA가 발효된 이후 보다 활발해졌으며, 2021년 기준, FTA 발효 이전인 2012년(52억 달러)과 비교하여 약 60% 증가한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출은 2014년 6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2019년까지 튀르키예의 국내 정세 불안, 경기침체 및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27%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입은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현지화(튀르키예 리라화) 가치 급락에 따른 튀르키예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52.1% 급증한 1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12억 4천만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약 6% 감소하였다.

☞ 우리나라의 대튀르키예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수출 (증감률)	5,980 (-2.8)	5,298 (-11.4)	5,545 (4.7%)	7,026 (26.7%)
수입 (증감률)	1,188 (52.1)	1,189 (0.0)	1,317 (10.8)	1,237 (-6.1%)
교역총액 (증감률)	7,169 (3.34)	6,487 (-9.5)	6,862 (5.8%)	8,263 (20.4%)

자료:무역협회

2021년 기준,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출 증가 품목은 합성수지 및 철강판, 석유화학합성원료, 자동차부품, 자동차, 기타석유화학제품, 원동기 및 펌프, 플라스틱 제품, 인조섬유장섬유사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입에서는 니켈제품의 수입이 전년 대비 2,000% 이상 증가하였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2021년 대튀르키예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MTI 3단위 기준)

구분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율	품 목	금액	증감율
1	합성수지	1,267	61.9	농약및의약품	354	-43.5
2	철강판	933	34.5	의류	135	16.2
3	석유화학합성원료	525	74.1	자동차부품	97	8.3
4	자동차부품	396	24.8	석유제품	57	216.8
5	농약및의약품	367	-38.7	정밀화학원료	48	97.9
6	자동차	292	7.6	기호식품	40	-25.4
7	기타석유화학제품	283	60.6	니켈제품	33	2,006.7
8	원동기및펌프	273	31.4	의료용기기	33	43.0
9	플라스틱 제품	213	21.7	항공기및부품	29	13.1
10	인조섬유장섬유사	193	42.0	합금철선철및고철	26	135.3

자료: 무역협회

2018년 8월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및 한-튀르키예 간 고위급 교류(2018년 5월 튀르키예 대통령 국민방한, 2021년 8월 우리 국회의장 튀르키예 방문, 2022년 3월 우리 국무총리 튀르키예 방문)에 힘입어 한-튀르키예 간 경제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5년 이래 튀르키예측이 한-튀르키예 간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측에 FTA 농산물 분야 양허 개정과 튀르키예산 농수산물 수입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어 관련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 교류가 감소하

였다. 2021년 기준, 한국에 입국한 튀르키예인 관광객은 5,323명이었으며, 튀르키예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1만5천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대비 약 58% 가량 감소한 수치다.

관세제도

튀르키예는 EU의 제3국 관세제도를 수용하여 국가군을 자국과의 관계 및 해당 국가의 개발정도를 기준으로 7가지로 분류한 뒤 관세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1군은 EU, EFTA 등 관세동맹 체결국으로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군은 FTA 체결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본래 7군에 속해 평균실행 관세율(MFN)을 적용받았으나, 2013년 FTA 체결 이후 2군에 포함되었다.

튀르키예의 MFN 관세율은 EU 기준인 4.2%이며, 농산품 및 일부 민감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견과류의 경우 43.2%, 채소의 경우 5.3~49.5%, 과일류 6.8~86.4%, 의류 12%, 신발 8~17%, 유리제품 11%, 철과 비합금강에는 30%의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는 튀르키예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총 5회(4.14, 4.20, 5.11, 5.19, 6.27)에 걸쳐 약 4,700개 수입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적용 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 31일에 추가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를 개정하여 발표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총 4,8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관보번호 제31351-3호, 시행령 제3351호). 2022년 1월 1일부터는 4,237개로 추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소폭 축소시켰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될 예정이다(관보번호 제31706-3호, 시행령 제5053호). 다만, 튀르키예 무역부에서 발표한 관보에 따르면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추가 관세 부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입규제

튀르키예는 관세법(The Customs Law No. 458)과 기타 개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특정 폐기물, 일부 화학유기물, 고철 등이며 튀르키예 무역부에서 매년 수입금지 품목을 개정하여 고시한다.

수입허가 관련, 농산품(쌀, 콩, 해바라기씨, 밀, 호두 등), 에프터서비스가 필요한 공산품(복사기, 데이터처리장비, 디젤 발전기 등),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약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검사가 필요하다. 한편, 알코올제품, 담배, X-ray 필름, 보석류 등은 정부 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사위원회’가 수량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반덤핑

튀르키예는 통상 정책에 있어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조치를 매우 빈번하게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WTO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세계 10대 반덤핑 조치 발동국가 중 하나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반덤핑 조사 개시국 10위, 반덤핑 조치 발동국 7위를 기록하였다. 튀르키예의 반덤핑 조사 및 조치는 주로 플라스틱, 고무, 섬유, 비금속(base metal)을 대상으로 한다.

튀르키예는 2022년 6월 기준 5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중이며, 한국에도 모두 적용 중(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벽지, 나일론, 칫솔,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이다. 폴리에스터 단섬유사(Polyester Staple Fiber: PSF)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0년 5월 조사 개시, 2021년 8월 최종 판정을 통해 2024년 8월 23일까지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됐다. 벽지(Wallpaper and Similar Wallcoverings)에 대한 조치는 2015년부터 3년 간 시행된 이후, 2018년 3년의 기간이 연장되었고, 2020년 일몰재심 이후 2024년 8월 5일까지 적용 예정이다. 나일론 역시 2022년 11월 20일

부로 세이프가드 종료 예정이었으나, 일몰재심을 통해 연장되어 2024년 11월 20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2022년 6월 현재까지 튀르키예는 총 135건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중이다. 이 중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치는 13건⁶²⁾이며, 세이프가드 조치는 7건⁶³⁾이다. 지난 1년 동안(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튀르키예는 총 12건(반덤핑 1개, 재심조사(expiry review investigation) 10개, 세이프가드 조사 1개)의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통관절차

튀르키예의 세관심사는 적색라인(물품검사), 황색라인(서류검사), 청색라인(간단한 서류검사), 녹색라인(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으로 분류된다. 튀르키예 정부는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주로 적색라인을 적용하여 엄격한 세관 통과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아시아산 수입품의 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경우 적색라인이 적용될 확률이 높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한편, 섬유·직물제품, 자동차, 원유 및 액체연료,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튀르키예 내 지정된 세관을 통해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2020년 6월부터는 향수, 디퓨저, 립스틱, 샴푸, 헤어스프레이 등 제품군에 대한 정확한 관세 부과를 위해 전문관세제가 도입되었다. 전문관세제 적용 대상 물품의 통관은 튀르키예 내 6개 세관(아다나, 앙카라, 딜오바스, 에렌콰이, 이즈미르, 무라트 베이 세관)에서만 가능하다.

62) 경천, 폴리에스터 단섬유, DOP/DOTP, 무수프탈산, 장식체인, 금속드리사, 콘크리트 펌프카, 합성 필라멘트 섬유, 열연강판 등

63) 다자 세이프가드 포함, 나일론 등 섬유, PET Chip, 칫솔, 벽지, PET 원료, 폴리에스터 단섬유

원산지규정

튀르키예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튀르키예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요구되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튀르키예 간 원산지 규정은 한-EU FTA 상 품목별 원산지기준(PSR)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거나 원산지 예외 쿼터 물량을 설정하고 있다.

○ 원산지 규정 완화(3품목)

- 설탕과자(HS코드 1704), 초콜릿 함유 식료품(HS코드 1806), 기타 비스킷(HS코드 1905)

○ 원산지 예외 쿼터(3품목)

- 면사(HS코드 5205), 인조필라멘트 직물(HS코드 5408),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HS코드 5501)

노동허가

튀르키예는 2003년 2월 27일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노동허가법 시행 이후, 본래 튀르키예 재무부와 문화관광부에서 맡던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업무가 노동부로 일원화 되었다. 튀르키예 노동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했던 재무부와는 달리 국내 노동시장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튀르키예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동허가 발급심사를 강화하였다.

2010년 8월 2일, 튀르키예 노동부는 ‘노동허가법 시행령’ 평가기준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튀르키예에서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튀르키예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러한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 규정은 튀르키예 내 외국인 투자 관련 분야에서 주요한 애로사항 중 하나이며, 이 규정으로 인해 노동허가 취득에 관한 민원 또한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튀르키예 정부는 2011년 4월 20일 ①튀르키예 당국이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입찰 받은 경우, ②튀르키예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힘든 첨단기술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 그리고 ③외국인 직접투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부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은 튀르키예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과 주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튀르키예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허가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자 및 서비스 장벽

튀르키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또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되어 있다. 단, 라디오 TV 방송⁶⁴⁾, 국내 민간항공⁶⁵⁾, 국내해운⁶⁶⁾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금융·석유·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제도

튀르키예 정부는 2003년 6월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 4875)’을 제정하였으며,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하던 사전허가제(pre-permit)와 5만 달러 이상

64) 방송법(Law No. 3984)에 따라 라디오 및 TV 방송국 관련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됨.

65) 항공법(Law No. 2920)에서 튀르키예 국내의 승객, 화물, 우편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항공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됨.

66) 해운법(Law No. 815)에 따르면 튀르키예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튀르키예 국민만 수행 가능함.

의 투자금액을 요구하는 제한이 철폐되었다.

또한 2017년도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시, 튀르키예 국적 취득 신청자격 및 거주허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2018년 7월 신정부 출범⁶⁷⁾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 투자실을 설치·운영하고 각 지역에 자유구역(Free zone)을 지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주의, 잦은 지침 변경, 정부부처 간 소통 미흡 문제, 산업구역 내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투자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건설서비스

튀르키예에서는 도로, 건물 등 일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자국 건설업체들이 맡아 추진한다. 그러나 높은 기술수준이 필요한 공사(화학플랜트, 대규모 공항 및 항만, 장대교량, 해저터널, 초고층 빌딩 등)는 외국기업과 튀르키예기업 간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외국 건설업체들이 설계·감독·관리를 진행하며, 튀르키예 건설업체들은 주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업⁶⁸⁾ 형태로 시공에 참여하거나 하청기업으로서 공사에 참여하여 노동력과 건설 자재를 공급한다.

최근에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기업과 튀르키예기업이 컨소시엄(조인트벤처)을 구성하여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자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 기업들이 건설 중이거나 완공 후 운영 중인 ①유라시아 해저터널(2016년 12월 개통), ②가지안텝 병원(건설 중) ③차낙칼레 대교(건설 중)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튀르키예 정부가 재정 절감과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업 형태를 더욱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7) 기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개편됨.

68) EPC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 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함.

한편, 튀르키예 건설업체들은 계약 시 합의한 사항 외에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해당 튀르키예 업체가 외국 업체와의 사업 경험이 많은지, 신용도가 높은지 여부 뿐 아니라 계약서 작성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정 등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건설인프라 국제입찰에 참여할 경우, 튀르키예 은행에서 발급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낙찰 받은 후에도 선수금 환급보증서, 계약 이행 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 시 은행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Stamp duty는 보증서 금액의 0.5%에 해당하며, 동일 보증서의 간단한 기간 연장 및 내용 변경 시에도 별도의 Stamp duty가 부과될 수 있어 입찰 참여기업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여타 유럽국가들에 비해 튀르키예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는 미흡한 편이다. XIMI VOGUE, YOYOSO 등 한류팬승 외국계 유통기업이 대도시 위주로 진출해 있으며, 최대 규모의 한류팬승 외국계 유통기업인 YOYOSO의 경우 상표명 및 상호 간판 등에 한글·한자를 사용하고 한국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튀르키예 내 지식재산권 무단 침해사례 확산에 대비하여 상표권 무단 등록 금지 규정을 포함한 유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장되며, 상표권 등록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튀르키예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영국의 EU회원국 탈퇴 이후, 기존 영국소재 CE 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았던 인증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

또한, 비EU 회원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인증(CE인증서) 뿐 아니라 튀르키예표준인증(TSE: Turkish Standard Institution)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포르투갈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포도주, 코르크, 올리브, 대리석이 대표적 생산물인 포르투갈은 EU 및 OECD 회원국으로 경제규모 및 산업발전 정도를 볼 때 호텔, 요식업,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과 유통업이 발달한 반면, 제조업 등 공업기반은 다소 취약하다. 포르투갈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대다수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관계로 원유 등 각종 원자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로, 거의 매년 80억 유로에 달하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에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의 경우 기존 판매법인 중심의 투자진출 외에도 투자무역청(AICEP)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생산공장 신설도 고려해볼만 하며,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이미 한화큐셀, CS Wind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더 많은 우리기업의 진출이 전망된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의 효과도 포르투갈 시장 진출에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럽과 브라질·앙골라 등 인구가 2억이 넘는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포르투갈은 브라질 등 다른 포르투갈어권 국가들과 달리 영어가 널리 통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포르투갈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긴축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민간 소비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무선전화기, 가전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의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된 2014년 이후 양국간 교역량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021년 1~9월 한국의 대포르투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5.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한 3.4억 달러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수입규제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품(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장벽

투자환경 개황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으며, 포르투갈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2000년대 동구권의 EU 가입 등 주변 여건의 변화와 국제적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포르투갈에 투자했던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낮은 생산성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중부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이동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혁신적인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적, 세제적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하여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Golden Visa

포르투갈 정부는 국내투자를 최소 5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 ① 50만 유로 이상 상당 부동산 매입 ② 100만 유로 이상 자본 이동 ③ 일자리

10개 이상 창출 - 외국인(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에 대하여 장기거주를 허가하는 “Golden Visa” 발급 프로그램을 2012년 10월 8일 발표시키고 2013년 3월 5일 동 비자 발급을 개시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골든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연구, 예술활동 지원, 국가문화유산 복구·유지보수, 중소기업 자본확충 등을 위한 35만 유로 이상 자본 이동까지 확대하였다.

동 제도 시행이후 2021년 9월까지 포르투갈이 골드비자 차원에서 발급한 거주허가 10,000건(외국인 투자액 총 59억 6,458만 유로) 중 50% 이상이 중국인에게 부여되었다. 최근에는 한국인의 골드비자 신청 문의가 많아지고 있고, 최근 포르투갈 관광산업의 호황 등의 사유로 부동산 매입 후 게스트 하우스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리스본 및 포르투 광역시 등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포르투갈 국민들의 거주지가 대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나, 여당인 사회당 주도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해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도시 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골든비자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사회당은 2020년도 정부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골든비자 취득시 부동산 투자 가능지역에서 리스본과 포르투 광역시를 제외하자고 제안하였고 2020년 2월 6일 국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으며, 2021년 2월에는 골든비자 제도 개정에 관한 법률(Decreto-Lei n.14/2021)이 공포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개황

포르투갈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3~94년 Volkswagen 계열사 생산공장 설립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에 따르면 포르투갈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6년 45.8억 유로에서 2019년 107억 유로로 증가하였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절반 수준인 55억 유로로 감소하였다.

포르투갈에 대한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컨설팅, 부동산,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58%(2019년 기준)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주요 업종은 컨설팅·과학기술 관련업(18.7%(13.8억 유로), 부동산업(12.7%(9.4억 유로), 금융·보험업(12.7%(9.4억 유로), 전기·수도·가스 8.7%(6.4억 유로) 등이다.

최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에너지, 바이오기술, 전기·전자부문, 화학, 정보통신·IT, 관광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는 독일 Volkswagen 계열사 생산공장 (Autoeuropa), 브라질 항공기 제작업체 Embraer, 프랑스 Renault 자동차 부품공장 (Renault Cacia), 미국 Cisco Systems, Nokia Siemens(합작투자), 스웨덴 IKEA그룹, 프랑스 Leroy Merlin 등이 있다. 또한, 미국 우버와 구글, 넷플릭스도 리스본에 R&D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2020년 기준 포르투갈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20.8%), 스페인(20.6%), 룩셈부르크(18.2%), 프랑스(7.9%), 독일(3.5%) 등으로 대부분 EU회원국들이며, 이는 외국인 투자 전체의 71%에 달한다. 그밖에 EU 역외 국가들로는 영국(6.2%), 중국(1.8%), 앙골라(1.4%) 등이 있다.

(최근 중국투자 증가) 포르투갈 내 중국 투자액은 2011년 China Three Gorges가 EDP 지분 21.3%를 26.9억 유로에 매입한 이래 이미 100억 유로를 초과하여, 최근 몇 년 동안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영국, 독일 및 프랑스에 이어 4번째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중국 기업들은 에너지, 금융, 보험 및 의료 분야는 물론 언론, 스포츠 분야까지 포르투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포르투갈의 주요 외국인 투자자의 하나로 등장했다.

(전담기관) 포르투갈무역투자청(AICEP : 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은 2002년 투자전담기구로 설립된 투자청(API)이 2007년 무역관광청(ICEP, 1982년 설립)을 통합하면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무역투자청은 포르투갈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전 단계 지원에서부터 인센티브 협상, 산업단

지내 입지 제공 등 정착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AICEP의 한국내 재외사무소는 2010년 5월 폐쇄된 바 있으나, 2014년 11월 10일 북미, 유럽 및 아시아(한국, 중국 및 일본)에 FDI Scouts(외국직접투자 유치 전문가) 네트워크 개설과 한국 사무소 재개설을 발표하였다. 그 후 AICEP은 2015년 10월 26일 Miguel Frascuilho 청장 참석하에 주한포르투갈대사관내 사무소를 재개설하고 상무관을 파견하여 현재 활동 중이다.

노동시장 개황

(노동관련 법규) EU 회원국인 포르투갈의 노동환경은 다른 EU국가, 특히 남부국가들과 유사하다. 포르투갈 노동법(Código do Trabalho, 2019년 9월 4일 19차 개정)은 2019년 7월 국회의 승인을 받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과도한 이직률을 보인 기업에게 2021년부터 세금 부과 ▲개정된 노동법 적용일로부터 최장 1년 내 개인 대체휴일 사용 가능(이후로는 철폐) ▲기한부 고용 계약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최대 3회 연장 가능 ▲장기 실업자 및 구직자에 대한 수습기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초단기 계약직의 전 직종 확대 적용 ▲임시직 연장 횟수를 6회로 제한 등의 항목이 적용되었다.

(노동법 개정)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노동법을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19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2011년 재정위기 발생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IMF, EU 및 유럽중앙은행과 서명한 MOU 틀 안에서 포르투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2년 6월 해고사유 확대, 실업수당 지급 축소, 휴가 및 공휴일 단축, 해고수당 산정방식변경 및 상한선 설정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조치 중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투자 제한 분야

포르투갈은 거의 전 산업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 다만 수도, 우편, 철도, 항만 등 국가 기본 인프라사업에 한해서는 양여계약의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포르투갈 내 외국인기업의 해외이전 방지를 위해 법인세(IRC)를 과거 2003년 30%에서 2012년 25%, 2014년 23%, 2015년 21%까지 인하하였고, 투자 인센티브법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10년 12월 15일 기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소 등을 골자로 한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발표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인센티브의 대상으로는 ①인적 잠재성, 경쟁력, 지역개발 등 3가지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금융 인센티브, ②특정 프로젝트 계약을 기본으로 세제 감면 또는 면제, ③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등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 ④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자금 지원, ⑤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상호 보증 등이 있다. 따라서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재정 및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무역청(AICEP, www.portugalglobal.pt)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세제도

개인소득세(IRS)의 경우 포르투갈 거주자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0-48%까지 누진세율에 의해 부과되며, 포르투갈 비거주자(183일 미만 체류자)에게는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일률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세(IRC)의 경우 2020년 현재 21%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 15,000 유로까지는 17%, 그 이상에 대해서는 21%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1.5백만 유로 이상, 7.5백만 유로 이상, 35백만 유로 이상 과세 이익에 대하여 각각 3%, 5%, 9%의 국가부가세(state surtax)가 부과되고, 15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지방부가세(municipal surtax)가 최고 1.5%까지 추가 부과된다. 따라서 과세 이익이 연간 35백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31.5%까지 부과될 수 있다.

Madeira 자치지역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본토와 동일한 법인세인 21%가 적용되고, Açores 자치지역은 2015년 부터 16.8%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세는 보유세(IMI)와 양도세(IMT)로 구분된다. 보유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농촌 부동산에 대해선 0.8%, 도시 부동산은 0.3-0.45%, 사법 관리 대상인 법인 소유 부동산은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상기 세율의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인지세의 대상이기도 한 양도세는 양수인이 지불하며 농촌 부동산의 경우 5%, 도시 부동산의 경우 6.5%가 적용된다. 항구적 주거용도로만 사용되는 도시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라 0~8%까지 차등 부과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IVA)의 기본 세율은 23%로 일부 식료품, 정기간행물, 서적, 의약품, 호텔 숙박요금, 농산품, 승객운송 등에 대해서는 6%의 감면세율, 일부 식료품과 특정 요식업 서비스 그리고 문화공연(음악·무용·연극·영화·투우·서커스 등) 등에 대해서는 13%의 중간세율이 적용된다.

인지세(Imposto do Selo)는 계약, 서류, 명칭, 서적, 규정 등에 대해 부과된다. 각 부문별 세율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취득의 경우 0.8%, 개인 상속 및 기부 등에 의한 물품의 취득은 10%, 부동산의 임대 또는 재임대는 10%, 계약 등의 보증은 기간에 따라 0.04~0.6%, 신용의 사용도 기간에 따라 0.04~0.6%, 금융이나 신용기관의 이자, 수수료 등은 2~4%,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5% 등이 적용된다.

이외에는 주류세, 유류에너지세, 담배세, 차량세 등이 있다.

사회적 생산기반

포르투갈 통계청이 2021년에 시행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총인구는 10,347,89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평균 학력이 서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1인당 노동 생산성(시간당)도 2020년 기준 EU 27개국 중 19번째로 낮은 편이다(출처 : PORDATA)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등 제도적인 환경이 고용을 제약하는 한편 생산성 증가를 약화시키는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야기하였으나, 2012년 개혁적인 노동법 개정과 노사정 협약 체결 등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지수 2019 보고서에서 포르투갈의 경쟁력 순위는 총 141개 국가 중 34위를 차지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인프라(21위), 보건(22위), 비즈니스 역동성(28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이며, 반면 거시경제 안정성, 기술 숙련도, 경직된 노동 구조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최저임금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으나,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3년까지 485유로로 동결하였다가, 2014년 10월부터 505유로로 인상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였다. 2018년 580유로, 2019년 600유로, 2020년 635유로, 2021년 현재 665유로로 인상되었다.

포르투갈은 지리적으로 유럽 서남부 끝에 위치하고 있어 아프리카와 중남미와의 연결은 용이하나, 포르투갈산 제품을 여타 유럽국으로 수출하는데는 운송비용 부담이 크다. 또한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가 많이 오른 유럽 국가 중 하나이다.

항만 시설

포르투갈의 리스본, Porto, Setúbal 등 기존의 항구에는 초대형 선박이 출입할 수 없다. 교통편이 양호한 리스본 항구에는 노조의 파업 등으로 통관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으며, 파업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추가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2010년부터 세계은행이 2년 마다 발표하고 있는 세계 각국 항구들의 물류 성능 순위(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2018년 23위(2016년 3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물동량 기준 포르투갈 최대 항구로 남서부에 위치한 Sines항(물동량

기준 Sines, Leixões, Lisbon, Setúbal, Aveiro 항 등, 출처 : 포르투갈 통세청)은 수심이 깊고 천혜의 항만여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 정부는 Sines항 주변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파업과 종이 없는 (paperless) 수속 등 효율적인 항만관리운용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물류 중심 항구로 육성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 항구로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포르투갈 정부(경제부)는 최근 Sines항 개발과 관련, 한국과 항만·해운협력 MOU 체결을 제안하는 등 한국측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기존 시네스 항만을 확장하기 위해 3백만 TEU 규모의 바스코다가마 신규 화물터미널 신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총 3단계에 걸쳐 최대 6백만 TEU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1단계 신축사업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본래 2018년 상반기 중 국제 입찰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환경평가 과정이 지연되어 2019년 10월 14일에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다. 건설사업 규모는 6억 4,200만 유로이며, 낙찰된 기업은 향후 50년간 터미널 운영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네스항 5개 터미널 중 싱가포르 PSA가 운영중인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최근 5년내 3배의 물동량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당초 2029년까지의 운영기간을 2049년까지 연장하고, 또한 3단계 확장 공사를 통해 현행 230만 TEU 용량을 410만 TEU 용량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진출 외국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IVA)에 대해서 사후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IVA 환급에 따른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IVA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보증서와 제품전량 수출보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보증의 경우 환급금 예상액의 1%를 사전 보증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증명서를 모두 구비하는데 복잡한 행정관행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류허가, 운전면허 및 각종 증명서 취득 절차

포르투갈은 쥬겐협약 가입국으로 쥬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로부터 180일 기간 중 90일간 쥬겐국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사전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체류목적에 따른 입국사증(단기체류사증 Visto de Estada Temporária 또는 거주증 발급용 사증 Visto de Residência 등)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 포르투갈 이민국(SEF)에서 체류비자를 연장 받아야 한다.

또한, 쥬겐 회원국을 경유하여 포르투갈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 후 3일 안에 포르투갈 이민국(SEF)에 입국신고를 하여야 한다(EU 또는 포르투갈의 6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자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제외. 위반 시 벌금 부과). 체류허가를 발급·연장받는데 보통 1개월이 소요되나,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별도로 한·포르투갈 양국은 2014년 4월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MOU를 체결하여 매년 18세~30세의 양국 청년 각 200명에 대해 최대 1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2014년 MOU 체결 이후 12명을 시작으로 2015년 18건, 2016년 13건, 2017년 26건, 2018년 40건, 2019년 49건, 2020년 23건 등 현재 총 181명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았다(포르투갈 청년들의 경우 2014년 3명, 2015년 4명, 2016년 4명, 2017년 6명, 2018년 9명, 2019년 20명, 2020년 4명 등 현재 총 50명)(출처: 주포르투갈대사관).

운전면허증의 경우 포르투갈 거주증(Título de Residência)을 소지한 자에 한해 우리나라 면허증을 포르투갈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거주증 발급 후 90일 이내 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시험이 면제되나 90일 이후 신청시 도로 주행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요 서류는 포르투갈 입국 후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포르투갈 기관에서 보관), 반명함판 사진 1장, 의사가 발급한

건강진단서(Atestado médico), 대사관 확인서,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번역공증과 체류허가증(거주증)을 첨부하여 포르투갈 교통국(IMT)에 제출하면 포르투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 기간은 보통 1개월 에서 2개월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현지은행 계좌 개설 후 직불·신용카드 발급까지 보통 2~3주가 소요되며, 전화·인터넷 설치는 2~3일이 소요된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는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하며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간소화 프로그램인 “Simplex Project”를 2006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행정기관(특히 민원처리기관)에서는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는 한편, 복잡한 문서작성의 간소화,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센터내 집중하여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책을 통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시장 관련

포르투갈 은행 현황

금융 분야는 포르투갈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1년 4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Moody's, Fitch 및 S&P)이 포르투갈 국채를 투기등급으로 평가한 이후 변경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국제금융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3월 15일 Standard Poor's는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하였고, Fitch는 2018년 6월 1일 투기등급(BB+)에서 2단계 상승한 투자 등급(BBB)으로 조정, 2021년 11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한 Moody's는 2018년 10월 12일 BAA3(Stable)이었던 등급을 2019년 8월 9일 BAA3(Positive)로 조정했다가, 2021.9.17. BAA2(Stable)로 상향조정했다.

최근 포르투갈의 사회당 정부는 BES 은행, BANIF 은행, 국영은행인 CGD 등이 파산 위기 또는 경영난에 빠지자 과감한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국고

투입을 통해 정상화하거나 해외 글로벌 은행에 매각하고 있어, 포르투갈의 금융 부문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된다.

2017년 기준, 포르투갈 은행 점유율은 포르투갈 국내은행 53.7%(CGD 21%), 스페인계열 은행 29.2%, 중국, 앙골라 은행 17.1%로 구성되어 있다. Santander Totta, Bankinter, CaixaBank 등 스페인계열 은행들의 점유율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하여 현재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스페인 최대 시중 은행인 Santander Totta는 불과 2년사이 Banif(2015년)와 Banco Popular(2017년) 등 2개의 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시장점유율 17%를 차지하고 있고, CaixaBank는 올초 BPI은행에 대해 공개 매수하여 포르투갈 시장내 10%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Bankinter는 2016년 Barclays를 86백만 유로에 인수한 바 있다.

수출유망 품목

한-포르투갈 교역동향

2021년 1~9월 우리의 대포르투갈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하였다. 포르투갈은 구제금융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한 이후 미비하게나마 지속적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계속하여 EU역외 교역상대국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앞으로 양국간의 교역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포르투갈은 우리의 수출상대국 57위, 수입상대국 62위(2021년 9월 기준)이다.

한-포르투갈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수출	493	526	436	459	579	504	669	554
수입	181	203	233	270	322	286	396	349
무역수지	312	323	203	189	257	218	273	205

출처: 한국무역협회

- 2021년 9월 기준 주요 상품교역 품목(출처: 한국무역협회)
 - 수출 : 전자기기(26.76%), 철도차량 및 부속품(18.1%), 플라스틱 (15.8%), 철강(11.8%),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8.6%), 의료용품(4.2%), 고무(2.2%), 유기화학품(2.1%) 등
 - 수입 : 의류(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포함, 28.3%), 고무 (20.9%), 전자기기 (10.9%), 의료용품(7.5%), 기타 의류 (5.7%), 신발류(4.2%), 플라스틱 및 그외 제품(2.8%) 등

우리 기업 진출 현황

포르투갈에는 1980~90년대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의 생산법인이 진출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판매법인 2개사(삼성전자, LG전자), 생산법인 3개사(한온시스템, 유도실업, 두울 보르그스테나)가 진출해 있다. 양국 경제 규모에 비해 교역 및 투자 액수가 아직까지는 작으나, 최근 상거 생산법인 3개사가 투자 규모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온시스템은 2018년에 약 5천만 유로를 투자해 전기자동차용 콤프레서 공장을 설립했고, 최근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용 콤프레서 주문 급증으로, 향후 2-3년내 공장 신설을 목표로 추가 투자를 계획하는 등 포르투갈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 임플란트 제조사인 (주)디오가 2019년 포르투갈 소재 임플란트 회사(CPM PHARMA)와 현지 합작법인(약 220만유로 상당 지분 51% 취득)을 설립한바 있고, 2016년 한국제약사의 포르투갈 수출사례가 있으며, 포르투갈의 한국 화장품 및 한국 식품(인삼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El Corte Inglés(스페인 백화점) 리스본 지점에 우리 화장품, 홍삼 제품 등을 진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 유망 품목

(1) 재생에너지

2015년 10월 출범한 포르투갈 사회당 정부의 기본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량 확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탄소 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유럽내 최고의 연간 일조량이라는 장점을 활용,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를 EU국가에 판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 30년간 연간 평균 일조량이 2,799시간(2015년 3,079시간)으로 유럽내 최고수준이다.

2020년 8월에 열린 포르투갈 태양광발전소 운영권 경매에 한화큐셀이 참가, 12개 태양광발전소 중 절반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입찰시 전력 최저공급가를 제시한 한화큐셀은 포르투갈에 15년간 전력을 공급하는 권한을 획득하였고, 알렌테주와 알가르브 지역에 발전용량 315MW규모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 풍력발전 기업 CS Wind는 2021.7. 포르투갈 풍력타워 및 해상 설비 생산기업인 ASM Industries(ASMI)의 지분 60%를 인수하고, 1억 불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400개의 육상타워와 140개의 해상타워를 생산 예정이다. CS Wind는 ASMI 인수로 유럽 시장에서 해상풍력의 핵심 생산기지를 구축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향후 3년 내 세계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포르투갈간 투자보장협정(1996), 이중과세방지협정(1997)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와 2014년 7월 체결된 신재생 에너지 협력 MOU를 통해 환경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포르투갈 직접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성장 잠재성을 감안하면 직·간 투자 방안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유로기금(EU Fund) 활용도 가능하다.

포르투갈은 전기(26%), 운송(35%), 냉·난방(39%)의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유럽 최대 태양광 발전소, 세계 최대 풍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조력발전소(08.9-11월)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2021년 9월 기준 포르투갈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64%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었고 그 비

율은 수력 27.62%, 풍력 25.32%, 바이오매스 6.98%, 태양광 3.89% 순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단점인 에너지 저장 측면,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전기 생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포르투갈은 2019년 기준 54.2% 수준인 전기 생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40년까지 100%로 끌어 올리고, 약 26% 수준인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50년까지 50%로 끌어올릴 목표를 갖고 있다.

(2)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

공기조절기와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의 수출과 냉장고 · 냉동고와 금전등록기,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클러치,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바 있다.

포르투갈의 중앙난방용 보일러 수입은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포르투갈 기존 주택들은 대부분 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나 최근 신축건물들에 보일러 설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급 리조트 건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IT 제품

포르투갈은 유럽국가중 IT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며, 전자정부 부문에서도 2006년 이래 “Simplex Project”로 명명되는 ICT를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디지털전략(New Digital Strategy)”을 마련하여 IT산업과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2017년 2/4분기에 69.9%를 기록했고(포르투갈 통신청) 인트라넷 솔루션 및 하드웨어, online 비즈니스 솔루션, DB, 무선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산 휴대폰은 2017년 우리의 對포르투갈 수출에 있어 합성수지, 승용차, 정밀화학, 철강제품 등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충전지 케이스, 블루투스 등 액세서리와 모바일 게임, 음원 콘텐츠 등 모바일 콘텐츠와 동영상 처리, 모바일 플래쉬 구현 등과 같은 모바일 솔루션 부분이 유망하다.

※ 포르투갈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스페인과 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장악

(4) 고무제품

고무제의 공기타이어는 대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대형 자동차용 타이어 수출이 호조를 보여 왔는데, 포르투갈과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하여 포르투갈을 통한 對아프리카 수출활로 개척 등 삼각 무역을 추진도 검토해 볼 만하다.

(5) 화장품 · 인삼제품

최근 포르투갈 경제의 점진적인 성장으로 여성들의 미용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스본 시내 유명 백화점 El Corte Inglés와 화장품 전문판매업체 Sephora, Douglas 등에서 한국 화장품브랜드가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 수출업체 소개를 요청하는 현지 업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직·간접 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을 고려해볼만 하다. 또한, 홍삼에 대한 현지 관심도도 높은 편이어서, 진출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6) 전기기기 및 부품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및 영상전화기 수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현지 치안이 예전에 비해 다소 불안해 지고 있어 대형 고급빌라의 신축에 필요한 CCTV 카메라, DVR, 출입문 잠금장치 등 디지털 보안장비 또는 관련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향후 전망도 밝다.

포르투갈내 인쇄회로 수입 또한 200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관리를 위해 1997년 이후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하고 있고, 위험한 견종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화가 실시 증으로 추후 모든 애완동물에 대해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RFID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렌스 폰더, 판독기, RFID 소프트웨어, 데이터 품질 및 통제 시스템, 장치관리 등과 같은 RFID 장비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2년부터 EU 차원의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품목군인 자동차관련 부품의 유럽시장 수요 증가는 물론 차량기록장치(블랙박스) 등 안전장치 시장의 확장으로 한국 블랙박스 제품의 대EU 수출 기회와 수출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승용차, 건설중장비 및 부품

민간건설 둔화로 포르투갈의 건설 중장비 수입은 다소 감소했으나, 승용차와 건설 중장비, 농업용 기계 등은 여전히 對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월 10일 포르투갈 기업 중 하나인 Salvador Caetano 그룹(현대 자동차 딜러십 및 아프리카 32개국에 현대, KIA 딜러십 보유) 부회장인 Miguel Ramos가 주포르투 명예영사로 임명되어 활동 증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 섬유 및 의류

섬유와 의류는 한국의 對포르투갈 수출의 주요 품목이나, 최근 중국과 동남 아시아 제품과의 경쟁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이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포르투갈은 섬유, 의류분야(신발 포함)가 수출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대표산업이고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더욱 현대화 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의 진출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몇몇 중소기업이 포르투갈 의류회사에 단추 등을 납품중이다.

(9) 화학제품

포르투갈은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로부터 합성 유기착색제와 그 조제품 수입이 증가해왔다. 특히, 2007년 우리나라로부터 향생물질 수입이 전년대비 500%에 이르는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고 이후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0) 냉·온수기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반 가정은 물론 사무실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급률이 높지 않아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제품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 의료분야

우수한 품질에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의약품 수출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한국바이오켄제약에서 제네리스(Generis)를 통해 포르투갈에 소염진통제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미약품의 세파항생제 트리악손은 포르투갈 제약기업 BASI社에 100만 바이알 규모로 수출되고 있다.

포르투갈은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치아(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동 제품의 수출 또는 현지 직·간접 투자를 검토해 볼만하다. 최근 사례로 2019년 한국 임플란트 제조사인 (주)디오와 포르투갈 소재 임플란트 기업 CPMPharma간의 현지 합작법인(약 220만 유로 상당 지분 51% 취득) 설립을 들 수 있다. 향후 동 분야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된다.

(12) 농산물

아직까지 수요가 큰 편은 아니지만, 식생활 개선 및 웰빙문화 도입으로, 잡곡, 두부, 김, 미역 등 건강식품과 인삼, 로얄젤리, 은행잎 추출물 등 건강보조 식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 개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 및 한-폴 무역투자 동향

폴란드는 인구 3,790만 명(EU회원국 중 5위), GDP 약 5,940억 달러, 경제 규모 세계 21위(2020년 KOSIS 통계)로 중·동부유럽 핵심국가이며, 공산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로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제모델이다. 공산권 붕괴 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90년대 연평균 6% 경제성장율로 유럽 내 최고)을 달성했다.

특히, 1989년 체제전환 후 급진적 경제개혁(Shock Therapy)을 실시하였으며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6년 우리나라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2004년 EU 가입 이후 EU기금 및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때에도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유로존의 재정위기 가운데에서도 EU 27개국 평균 경제 성장률(1.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3%의 경제성장 달성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20년 마이너스 2.8% 성장률을 보였으나 EU 평균(-6.3%) 대비 양호한 편이며, '21년에는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어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 도입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정부재정적자폭 확대, 높은 물가 상승률 등 유로화 가입조건 충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폴란드 간의 무역은 2003년 4.6억 달러에서 2020년 60.4억 달러로 1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대폴란드 수출은 56.3억 달러, 수입은 8.3억 달러로 48.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다.

한국의 對폴란드 무역 통계

(단위: 백만 달러, ()는 증감률)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 출	2,808 (△27.1)	2,912 (3.7)	3,116 (7.0)	4,334 (39.1)	5,315 (22.6)	5,639 (6.1)
수 입	696 (△9.9)	541 (△22.2)	628 (16.0)	673 (7.2)	771 (14.5)	834 (8.2)
무역수지	2,111	2,371	2,488	3,661	4,544	4,805
총교역액	3,504	3,453	3,744	5,007	6,086	6,472

출처 : 한국무역협회

폴란드는 우리의 중·동부 유럽 지역 최대의 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기업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 2020년까지 약 260여 개의 우리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분야를 중심으로 폴란드에 진출해, 우리의 대 폴란드 투자액은 총 42.1억 달러(2020년 말 누계 기준)에 이른다. 2005년 LG전자의 본격적인 투자 진출을 시작으로 2010년 삼성전자가 브롱키(Wronki) 소재 냉장고/세탁기 공장을 인수했으며, 2011년 만도가 바우브쥐흐(Walbrzych)에 대규모 자동차 부품공장을 건설, 투자 진출하는 등 중서부 지방 중심의 가전 부품 분야, 남서부 지방 중심의 자동차 부품 분야 투자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남서부 브로츠와프 인근 코비에지체(Kobierzycie) 지역 경제특구에 대규모 전기차용 리튬배터리 제1생산 공장을 건설했다. 동 배터리 공장은 유럽 최대 규모의 전기차용 리튬배터리 생산기지로서 폴란드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9년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조2880억 원 규모의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한데 이어 현대로템이 바르샤바 트램운영사로부터 3,358억 원 규모의 트램 123편성(추가 옵션 포함)을 수주해 2021년 하반기에 최초 트램차량 2대를 납품하였다. 2020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폴란드 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략적 자문사로 선정되었으며, 두산중공업이 2,200억 원 규모의 올슈틴시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 사업을, 포스코건설이 4,900억원 규모의 바르샤바시 폐기물 소각로 사업을 수주했다. 2021년에는 PKN Orlen이 2조7,000억원 규모의 올레핀 플랜트사업자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한데 이어 SK넥실리스와 폴란드 정부가 약 9,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 한국의 對폴란드 직접 투자 현황

(단위 : 개,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누 계
신규법인수	10	21	14	29	36	22	299
투자금액	39.1	54.4	216.1	535.0	1161.0	735.0	4217.3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폴란드 주요 경제지표

주요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추정치)
명목 GDP(십억 달러)	527	586	593	594	655
1인당 명목GDP(달러)	13,868	15,431	15,630	15,654	17,319
경제성장률(%)	4.8	5.1	4.4	-2.8	5.1
실 업 륜(%)	4.89	3.79	3.58	6.2	3.5
소비자물가상승률(%)	1.98	1.60	1.96	3.4	4.4
정부부채(GDP대비 %)	51	48	47	58	60
총수출(십억 달러)	234.4	260.6	301.3	271	284
총수입(십억 달러)	233.9	266.5	276.5	257	269
무 역 수 지(십억 달러)	0.6	-5.9	24.8	14	15
경 상 수 지(백만 달러)	602	-4,320	-6,823	2,690	2,824
환율(USD 연평균)	3.78	3.61	3.84	3.90	3.8
해외직접투자(백만 달러)	2,760	864	2,132	4,600	-
외국인직접투자(백만 달러)	9,179	11,476	13,220	13,800	-

출처 : IMF, EC, Global Trade Atlas, 폴 중앙은행(NBP), IHS Markit

통관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EU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폴란드의 세관행정이 대부분 전산화되어 통관수속 및 소요시간이 개선되었다. 2011년 7월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수출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통관이 더욱 간소화되었다.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EU는 간이 통관 제도를 설치, 운영해 통관 형식과 절차의 간소화하고 있다.

관세환급의 경우 과거에는 상당히 지연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의 경우 SAD(유럽 통일무역 서식)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환급을 신청하면 세관당국의 검토를 거쳐 환급을 받게 된다. SAD 양식을 받는데 보통 7일에서 14일이 걸리며, SAD를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한 후 청구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바로 환급을 받게 된다.

또한 현지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관련 물품을 임시로 반입하려면 폴란드 세관 공무원의 감독 하에 임시 수입 허가증 ATA를 받아야하며, 여기에는 해당 상품이 특정 날짜에 폴란드로부터 반출될 것이라는 서면 확인이 포함된다. 전시회 참가를 위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현지 수령 업체의 EORI 번호(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는 법제도 정비, 현금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폴란드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다. 외국인 투자를 민영화 추진과 연계시켜 대부분 자유화하는 한편, 외자 유치를 위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상의 문제점은 많이 해소됐다. 특히 1999년부터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 개방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는 등 선진국형 개방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나 인가를 취득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업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분야에 진출하려면 사업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하며, 주류나 담배 제조,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서비스,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은행, 부동산 중개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permit)를 받아야 한다.

◦ 허가/인가가 요구되는 업종 또는 주요 사업 활동

인허가의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사업권 (concession)	광물 탐사 및 채굴 폭약, 무기 제조, 기타 군용 제품 및 기술 연료 및 에너지의 제조, 가공, 유통, 거래 사람과 재산의 보호 항공 수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등
등록(register)	화장품 판매 통제되는 활동(예: 사설탐정, 외국환으로 상행위 등)의 경우
허가(permit)	주류 도매 주류 및 담배 제조 유독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방사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특정 우편 및 택배 서비스 카지노의 운영 은행 운영 보험회사 또는 중개회사의 운영 통신 서비스 도로 수송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투자펀드 또는 연금펀드 설립 비료 및 살충제 거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원양 어업 경제특별구역(SEZ)에서의 사업 활동 등
라이선스 (license)	특정 물품의 수입 및 판매에는 라이선스, 증명서 등이 필요: 화장품, 일부 아동용품(크레용, 물감 등), 식수와 접촉하는 물품 등 공공 전화 네트워크 이용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 통신 네트워크의 이용

회사의 형태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EU나 EFTA 지역 외국인과 여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는 다소 차이가 있다.

EU나 EFTA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는 폴란드 국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여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의 회사 설립은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 (limited partnership), 유한주식합작회사(limited joint-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만 가능하다. 한편, 상기 형태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본국 기업의 지사(branch office) 혹은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다양한 회사 형태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법인성을 보장받는 회사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꼽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sp.zo.o.)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성(legal personality)을 갖고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자연인 또는 법인은 1인 주주 형태로 유한책임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1개의 회사만 설립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최소 설립자본금은 5,000 PLN 이고 지분(membership)의 최소 액면가는 50 PLN이며,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 모두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을 마치면 법인 자격을 얻게 된다.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S.A.)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10만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0.01 PLN이다. 주식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주주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나, 1인 주주가 유한책임회사일 경우 설립이 불가능하다. 주식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을 마치면, 법인 자격을 얻게 된다. 주식회사는 공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한책임회사와 다르다. 바르샤바 주식거래소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나, 현물출자시 감사인의 산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사(branch office)는 법인성은 갖지 못하나,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지사의 영업 활동은 본사의 영업 범위 내의 활동만 가능하며, 국가법원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영리 활동은 할 수 없고 폴란드 개발부가 관장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

폴란드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경제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중앙정부의 현금 지원이다. 투자기업은 현금 지원과 법인세 면제를 함께 신청하거나, 법인세 면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투자액이 3억 5천만 즈위티(약 1천억 원) 이하일 경우 정부의 현금 지원 한도가 3백만 즈위티(약 91억 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 투자 인센티브 (법인세 면제)

과거에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기업이 전국 14개 경제특구 내 토지를 매입해야 법인세 감면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폴란드 전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지역과 상관없이 투자 금액과 내용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투자기업(폴란드 및 외국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는 해당 지역 실업률과 투자기업 규모 등에 따라 투자 금액의 최소 25%(단, 수도 바르샤바는 10%)에서 최대 50%까지 법인세 면제 수혜 대상이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9개 경제특구 지역은 현행 비율보다 약 5%~15% 높아지고, 돌르노실롱스크(Dolnośląsk), 비엘코폴스카(Wielkopolska), 포모르스카(Pomorska) 3개 주는 5~10% 감소할 예정이다.

※ 돌르노실롱스크주 지역에는 SKIET를 비롯한 우리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비엘코폴스카 지역에는 삼성전자 가전공장이 진출해 있음

2022년 변경되는 폴란드 주별 경제특구 지원을



자료: Deloitte 폴란드

또한 2022년 1월부터는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수혜 기간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어, 돌르노실롱스크, 비엘코폴스카 주 등은 10년, 중부 및 서북부 지역은 12년, 남동부 및 남동부 지역(저개발 지역)은 15년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1) 양적 투자조건 (최소 투자금액 요건)

전국 평균 대비 투자 지역이 속한 군(폴란드 행정단위로 Powiat)의 평균 실업률, 투자기업의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등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 ① 1억 즈워티(약 300억 원): 전국 대비 군 지역 평균 실업률이 같거나 60% 이하인 경우
- ② 8000만 즈워티(약 240억 원): 60% 초과~100%
- ③ 6000만 즈워티(약 180억 원): 100% 초과~130% 이하
- ④ 4000만 즈워티(약 120억): 130% 초과~160% 이하
- ⑤ 2000만 즈워티(약 60억 원): 160% 초과~200% 이하
- ⑥ 1500만 즈워티(약 45억 원): 200% 초과~250% 이하
- ⑦ 1000만 즈워티(약 30억 원): 250% 초과

* “대기업”: 본사 및 본사의 해외 법인과 지점의 총 고용인원 249명 이상, 본사 및 그룹사 연간 매출액 5000만 유로 이상, 또는 연간 재무제표상 수익이 4300만 유로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본사 및 본사의 해외 법인과 지점의 총 고용인원 50~248명, 본사 및 그룹사 연간 매출액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연간 재무제표상 수익 4300만 유로 이하인 기업

* “소기업”: 본사 및 본사의 해외 법인과 지점의 총 고용인원 50명 미만, 본사 및 그룹사 연간 매출액 또는 연간 재무제표상 수익이 총 1000만 유로 이하인 기업

(2) 질적 투자조건 (제조업의 경우)

① 구조적 개발

- 전문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고용 제공 (고용인원 최소 70% 이상을 노동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 폴란드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국가의 현재 개발정책에 부합 하는 산업 분야 투자
- 수출 판매 수준 등

② 기술개발

- 폴란드 영업장에서 R&D 수행
- 폴란드 정부가 육성하는 고도산업(자동차, 전자, 항공, 바이오, 농업식품,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R&D) 분야 투자 등

③ 균형발전

- 폴란드 전국 평균 대비 실업률이 높은 지역 투자
- 영세 또는 중소기업의 투자
-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 중소도시, 이들 도시와 인접한 지역, 또는 전국 대비 평균 실업률 160 % 이상인 도시 인접 지역에 대한 투자 등

④ 인적자원 개발

- 지역 소재 직업학교, 공업고등학교, 공대 등과 산학협력
- 현지 직원의 기술 교육 및 전문 자격 취득 지원 등

투자지역에 따라 질적 투자요건 기준이 다르므로 낙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평균 4-5점을, 그 밖의 지역은 6점을 획득해야 하며, 위 투자요건은 경제특구 시행령 개정 시 일부 바뀔 수 있다.

중앙정부의 현금 지원(Governmental grants) 제도

폴란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2011~2030년 폴란드 경제에 중요한 투자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다.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 19로부터 경제회복을 위해 2021년 3월 25일 국무회의 결의로 현금지원 인센티브 수혜 기준(예: 투자금액, 고용인원수 등)을 낮추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폴란드 경제부 장관과 개별 투자기업이 체결하는 양자 협약에 따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지급 조건의 세부 사항은 위 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 기업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자 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관련 비용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의 경우 비즈니스 서비스 아웃소싱 또는 연구개발(R&D) 분야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 관련 비용은 전략 또는 혁신,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1) 지원금액

- 신규 일자리 창출 비용 지원(고용 보조금) 해당 분야
 - 비즈니스 서비스 아웃소싱: 신규 고용 1인당 최대 7천5백 또는 1만 5천 즈워티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모두 해당되며 투자지역 입지 및 해당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금액 차등)
 - R&D: 신규 고용 1인당 최대 1만 또는 2만 즈워티(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모두 해당되며 투자지역 입지 및 해당 지역 실업률에 따라 금액 차등)
- 신규 투자 적격 비용 지원 (투자 보조금)
 - ① 전략 또는 혁신 분야
 - 대기업(투자금액의 최대 5% 또는 15%)
 - 중견기업(투자금액의 최대 10% 또는 20%)
 - 소기업(투자금액의 최대 15% 또는 25%)
 - ② R&D 분야
 - 대.중.소 기업 모두 해당(투자금액의 최대 15% 또는 25%)

위에 소개된 고용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투자 대상 지역의 낙후 정도, 실업률, 입지(동부 및 북동부 지역은 수혜 금액 커짐)에 따라 달라짐.

(2) 수혜 적격평가 기준 (양적 및 질적 기준 모두 부합해야 함)

○ 양적 기준

- 양적 기준은 투자기업의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여부), 최소 투자액 및 고용인원 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 투자기업에 주로 해당되는 전략산업(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전자 등) 대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액은 8천만 즈워티, 최소 고용인원 수는 50명이다.

○ 질적 기준

- 질적평가의 주요 기준은 사업유형, 투자기업의 해외 수출액, 연구 및 개발 활동 수행 및 친환경 사업 여부, 직원 교육 및 지역 소재 산업학교와의 협력 지원 여부 등이 해당된다.
- 질적 기준 평가등급은 투자지역에 따라 다르며 개발 낙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평균 4-5점, 그 밖의 지역은 6점을 획득해야 한다.

지방세 면제

부동산세의 부분 또는 전액 면제 혜택이 가능하며, 해당 지방자치체 의회(municipality council)의 결의가 필요하다. 국가보조금 관련 규정에 명시된 지원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차량세도 부분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나 차량세는 트럭과 버스에만 적용되고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Act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Foreigners)에 따라 이루어진다. 부동산은 토지, 토지 구획상의 건물 등으로 구성된다. 폴란드에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법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장기임차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다.

- 소유권(ownership right)
- 장기임차권(the right to a long-term lease) 또는 영구 사용권(perpetual usufruct):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가지되, 임차인이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40~90년 간 토지 사용권이나 해당 토지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권을 가짐
- 사용권(usufruct)
- 임차(lease or rental)

위 법률은 ‘외국인’을 a)폴란드 국민이 아닌 사람, b)폴란드 국외에 등록된 법인, 또는 c)폴란드에 등록된 회사나 법인으로 위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회사나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배(controlled)되는 회사로 정의된다.

외국인은 폴란드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의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신청을 하면 폴 내무부는 국방부, 농업부와 협의해 해당 부동산 취득이 국방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는지, 사회 및 보건정책 위반은 아닌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린다.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 장기임차권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거나 인수 또는 양수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단, 이 기업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공개 거래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폴란드의 EU 가입일(2004년 5월 1일) 이후 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 국민이나 기업은 폴란드 내 부동산 구입 또는 부동산 장기임차권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 취득 시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단 농지/삼림 및 제2 주택(second house)은 예외로 농지/삼림은 EU 가입일로부터 12년간, 제2 주택은 5년간 허가를 받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내무부는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또는 외국 기업의 지사)에만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발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현지에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이 이러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EA 지역 내 국민 및 기업가에 대한 허가 면제에 추가하여 EEA 이외 지역의 외국인의 다음과 같은 부동산 구입도 허가가 불필요하다.

- 거주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5년간 폴란드에 거주 중인 외국인
- 폴란드 국민의 배우자로 거주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2년간 폴란드에 거주 중인 외국인
- 외국인의 직간접 지배를 받는 법인의 사업 목적 미개발 부동산 구입 (0.4ha 이내이며, 도시 경계 안에 위치해야 함)
- 공개 거래되는(상장된) 기업의 주식 취득

단, 위의 허가 예외사항은 해당 부동산이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1ha 이상의 농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관련 법 위반 시 토지매입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소유한 장기임차권은 경매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고, 여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임차권 판매가 가능하다.

송금 등 외환관리

폴란드는 경제발전 및 2004년 5월 EU 가입 등으로 외환거래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현지 법인(거주자 지위)이 합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제시할 경우, 대외 송금(예: 수입대금, 배당 송금 등)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다. 단, 만기 1년 미만의 대규모 외화 단기차입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은행(NBP; National Bank of Poland)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세제도 개요 및 법인세

폴란드의 조세 제도는 전국 공통이나, 지방세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의 방식이나 세율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법인 및 개인)와 폴란드 법인/개인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소재지 지방 세무서에 등록하고 납세

자 번호(NIP)를 부여 받게 된다. 법에 따라 기업은 독자 계정을 두고 세금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촉진 등의 목적으로 2004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기존 27%에서 19%로 인하하였다. 2020년 1월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기존 법인세율(19%)은 유지하되 전년도 매출액이 120만 유로(약 16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 영세기업은 9%로 인하된 법인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1년부터는 9% 적용 대상 영세기업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이 120만 유로에서 200만 유로로 증액되었다.

과세대상 소득은 해당 기업에 과세연도(tax year)에 벌어들인 총 수익에서 공제대상비용과 추가 특정비용(예컨대 공제대상 기부)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표 산출의 기본이 된다. 본사가 폴란드에 있는 회사(등기된 사무소나 이사회를 폴란드에 둔 회사)는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법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대상이다.

공제대상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 창출에 소요된 비용으로 주요 항목은 각종 경비(원자재 구입, 에너지, 수송 비용 등), 종업원 급여 및 사회보장세, 감가상각, 리스, R&D, 공제대상 기부금 등이다.

한편,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비공제 비용)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본화대상 비용: 자산구입 관련 부대비용 및 금융비용(외화환산손익 포함)으로 자산 원본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 매출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세법상 64개 항목이며 해당 비용은 전액 공제 불허
- 접대성 비용

손실처리와 관련하여 폴란드 법률은 납세 기업의 손실 소급은 허용하지 않으나 미래 연도 이월은 허용하고 있다. 매 회계연도에 총 손실 금액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차후 5년간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과세연도가 되나 납세 기업은 12개월 기준으로 다른 과세연도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폴란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해 낮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배당금 5~10%(수혜업체가 지급업체의 지분 10% 이상 보유 시 5%), 이자 0~10%(정부·지방기관, 중앙은행에 이자 지급 시 0%), 로열티 10%로 되어 있다.

디지털무역 장벽

최근 폴란드는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합리적 과세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1.5% 세율의 ‘디지털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s Taxes)를 책정하고 Netflix, Amazon, Apple TV 등 역외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기업과 폴란드 최대 인터넷TV 서비스 기업 IPLA 등에 동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DST는 EU 및 OECD 내 지속적인 글로벌 차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기타 참고사항

체류비자 및 노동허가

1993년 12월 24일 발효된 ‘한-폴란드 간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영리 또는 유급행위 종사를 목적이 아닌 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폴란드에 체류할 수 있다. 폴란드의 경우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위 교환각서가 연중 총 180일 한도 내에서 입국시마다 90일 체류를 허용하는 쉥겐조약보다 우선하므로, 비영리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비셡겐조약 국가로 출국 후 재차 폴란드 입국 시 추가로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상용비자는 거주 국가에 소재한 폴란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다.

2006년 7월 21일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절차 및 조건에 관한 노동부령”을 개정, 2006년 8월 23일부터 노동허가가 필요 없는 직원(대개 폴란드인) 2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노동허가 신규발급 및 갱신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노동 관련 사안은 가족사 회정책부의 소관이다.

그간 폴란드에서는 노동허가(work permit)와 거주증 신청 및 갱신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9일 내무행정부장관이 제출한 거주 및 노동 허가 절차 간소화 수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원에 송부되었고, 11월 17일 하원을 최종 통과하였다. 본 수정안에는 거주증 신청 시 거주지와 일정한 수입 요구 조항 삭제, 거주 및 노동허가 발급 신속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안 입법에 앞서폴란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비자 만료 45일 전에 회사가 소재한 주 정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주 정부는 고용인원 수 등 해당 기업이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유효기간 최대 2년의 체류허가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운전면허 취득

1999년 1월 24일 발효한 한-폴 간 ‘국제 및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는 폴란드 내에서 1년간 유효하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최초 입국 후 6개월간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국내운전면허증과 공증번역문을 소지하면 폴란드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이론 및 실기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폴란드 국내 운전면허 교환이 가능하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공증번역하여 거주 지역의 교통과에 제출하면, 통상 신청 후 2~4주 이내에 폴란드 국내운전면허가 발급된다.



프랑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프랑스 통상 관계

대외 교역

프랑스의 GDP 규모는 세계 7위, 유럽연합(EU) 2위로 다자·양자 통상이슈와 협상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화학·기계 등 제조업 분야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다수 있으며, 세계 8위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국이다. 2019년까지 수출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들어 급감 후, 2021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2021년 상품수출은 5,011억 유로, 상품수입은 5,859억 유로이며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 프랑스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2021년에는 2010년 이후 최고수치인 855억 유로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프랑스 무역수지 현황(FOB-FOB 기준)

(단위: 십억 유로)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395.0	455.5	452.9	473.4	492.0	508.0	428.1	501.1
수입	447.5	498.5	497.7	531.8	554.8	566.9	493.3	585.9
수지	-52.4	-43.0	-44.8	-58.4	-62.8	-58.9	-65.2	-85.5

출처: 프랑스 관세청, 프랑스 경제재정부 2022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은 식품, 우주항공, 화학, 자동차, 의약품이고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에너지, 식품, IT·전기제품 등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이며 수입국 대상국은 독일, 중국, 이탈

리아, 스페인, 벨기에이다. 프랑스는 EU 국가(영국 포함)들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로 2021년 기준, 수출의 54.4%, 수입의 53.8%를 EU국가들에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상품이 2.8%, 서비스가 3.5% 수준으로 지난 6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과거 1990년 6.3%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인데 이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점유율을 늘렸고, 2000년대 프랑스 국내 노동비용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최근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에는 노동시장 개혁, 세금부담 완화 등을 추진해 비용경쟁력이 점차 회복되고, 우주항공, 럭셔리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프랑스 교역

2021년 한국과 프랑스 교역 규모는 112억 달러로 전년도 88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프랑스 수출은 45억 달러로 25억 달러 전후였던 2014~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수입 또한 66억 달러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프랑스와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20억 달러를 기록했다.

☞ 한국의 대 프랑스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교역	수지
2016	2,468	5,843	8,311	-3,376
2017	2,994	5,745	8,739	-2,751
2018	3,540	5,879	9,419	-2,338
2019	3,317	5,834	9,151	-2,517
2020	2,983	5,880	8,863	-2,897
2021	4,561	6,642	11,203	-2,080

양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교역규모가 작은 것은 자동차, 반도체, 사치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 프랑스 기업들이 해외 또는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프랑스 내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과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지역 공장에서 생산돼 수입되고 있다.

한국-프랑스 투자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는 최근 3년간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IT, 부동산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네이버가 제록스 AI연구소를 인수하고 프랑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또한 국내 다수 금융기관들이 프랑스 내 부동산에 대한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생산 공장 인수·설립 등 그린 필드 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의 프랑스 투자 현황(신고기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고건수	86	64	59	63	122	137	137	76	100
신고금액 (백만 달러)	91	72	29	305	195	423	2,022	480	1,381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프랑스의 對한국 투자는 2021년 2억 2천2백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투자 규모가 이례적으로 컸던 2018년을 제외한다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對한국 투자는 금융업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한국 투자 현황(신고기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고건수	29	34	34	44	41	37	35	38	40
신고금액 (백만 달러)	530	208	103	194	280	687	147	201	22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통계

통상정책 방향

프랑스는 EU회원국으로서 EU조약에 따라 다른 회원국과 함께 공동 통상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EU통상정책 중 특히 EU 기업들이 제3국의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EU와 다른 국가들이 체결한 협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중요한 분야로 보고 있으며 상대국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ILO 핵심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 장벽

관세 장벽

EU조약에 따라 프랑스의 통상정책은 EU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CN(combined Nomenclature) Code에 따라 역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다른 회원국과 같이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CN code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한 8단위이며, 이를 더 세분화한 10단위 code인 TARIAC code(통합관세 분류번호)도 사용되고 있다. TARIAC code는 EU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정책 및 관세 조치(일시적 관세 유예, 반덤핑 관세 등)를 식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관세율표는 매년 EU 관보를 통해 공표되고 있으며, 2015년 12월 13일,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한-EU 품목별 관세 정보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 EU의 관세 정보 : TARIC 시스템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원산지 규정

프랑스 원산지 규정은 EU의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통관에

관한 규정도 EU 집행위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법령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통관절차상 제한이나 장벽은 없다. 다만 이를 집행하는 것은 각 회원국 소관 기관이므로 이행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프랑스 관세청은 수입되는 품목별 요구사항과 규제내용을 관세정보시스템(RITA)을 통해 제공한다.

※ 프랑스 관세청 품목별 정책 정보 : RITA

(https://www.douane.gouv.fr/service-en-ligne/ouverture?code_tele-service=RITA_ENCYCLOPEDIE&sid=&app=38)

표준, 인증 및 라벨링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으로 EU의 제도를 따르며, 프랑스 자체 표준, 인증 및 라벨링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공업표준화에 관한 법령(Décret n° 2009-697)에 따라 프랑스 표준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별 구체적 인증 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관이 위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 공업표준화에 관한 법령(n°2009-697):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0749979&categorieLien=id>

※ 프랑스 표준협회 관련 사이트

- (표준) <https://normalisation.afnor.org/nos-solutions/>

- (인증) <https://certification.afnor.org/>

일반적으로 인증 절차는 당해 인증 신청자가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AFNOR 또는 산업별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동 기관은 인증 위원회(Commission de normalisation)에 심사를 요청하고, 최종 결과는 AFNOR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표준관련 사이트 참조:

<http://www.afnor.org/metiers/normalisation/panorama-normalisation>

프랑스의 인증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EU 지침(89/336/ EEC)에 따른 CE 마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등급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에코(ECO) 라벨 부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라벨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Loi n° 94-665)’에 따라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품 등에 대해서는 상표를 프랑스어로 표기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다만 ‘꾸스꾸스’, ‘샌드위치’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특정 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참고로 상업상 사용되는 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 제반 서류, 채용 공고 및 근로 계약 등 노동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Loi n° 94-665):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49929&categorieLien=cid>

무역관련 환경 규제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Déclaration) 대상, 허가(Autorisation) 대상, 감독 및 허가(Autoris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별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받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의 경우 최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최소 75,000유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20년 초 「순환경제와 낭비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해양오염 경감 차원에서 산화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금지하고, 화장품·세정제품·의료 기기에 추가된 미세 플라스틱을 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⁶⁹⁾

정부조달

2020년 기준 프랑스 조달시장 규모는 1,113억 유로, 계약건수가 169,060건에 이른다. 금액 기준 비중은 물품이 34%, 노동이 29%, 서비스가 37%로 물품과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조달시장 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계약건수(건)	144,796	163,519	153,324	170,764	169,060
계약금액(억 유로)	839	893	1,008	1108	1113

출처: www.economie.gouv.fr/daj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14/23/EU, 2014/24/EU, 2014/25/EU)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és Publics)과 2016년 3월 25일 시행된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16-360) 등을 통합하여 공공구매법(CCP, Code de la Commande Publique)을 마련, 2019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정부조달 대상은 사업(work) 계약, 물품공급(supplies) 계약, 용역공급(services) 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방식은 크게 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으며, 각 방식별로 조달 절차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공공조달 금액이 EU 공공조달 하한선 이상이면 반드시 EU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하한선 이하인 경우에는 프랑스 공공입찰관보(bulletin officiel des an-

69) 세부 사항은 프랑스 환경부 웹사이트 참조.

<http://www.installationsclassees.developpement-durable.gouv.fr>

nounces des marches publics) 또는 프랑스 법정공고관보(journal annonces lecale)에 공고하고 있다.

아울러 조달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2년 6월 공포된 정부조달시장 전자 서명화법(l'arrêté du 15 juin 2012 relatif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dans l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정부조달 입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 입찰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은 프랑스 재무부 정부조달시장 홈페이지⁷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적재산권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등에 있어서 EU 차원에서 조화된 법규를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각 회원국 정부는 집행위에서 마련한 지침을 기초로 자국의 지적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수립,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청 INPI(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를 두어 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자는 INPI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세관당국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일시적으로 중단(최대 10일, 훼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3일)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70) www.marches-publics.gouv.fr

특허의 경우 유럽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해 프랑스를 지정하여 심사를 받아 등록하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따라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직접 INPI에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에 대해 별도의 실제적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출원 대상 발명이 이미 기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 국제적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조사한 검토보고서를 발행한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특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신청서류 제출(INPI 웹 사이트에 신청서류 목록 게시), INPI의 검토보고서 작성 및 추가 작성서류의 신청인 전달(통상 7~9개월 소요), 신청인의 추가 서류 INPI 제출, INPI의 관보 게재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시부터 관보게재시까지 통상 1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의 경우 INPI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거나, 유럽 공동체 지재권청(EUIPO)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권리보호기간이 10년이며, 이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디자인의 경우도 INPI나 유럽 공동체 지재권청(EUIPO)에 등록할 수 있다. 권리보호기간은 5년이며, 최대 25년까지 보장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droits moraux)과 저작재산권(droits patrimoniaux)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작품에 대한 자격권, 존중권, 공개권 및 수정/철회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구적으로 보호되고 양도할 수 없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복사본의 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재생권과 공개방식에 관한 재현의 독점권으로 구성되며,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⁷¹⁾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자체 법률, 제도, 집행기구와 EU 집행위 규정, 제도, 집행기구에 의해 이중으로 영향을 받는다. EU 집행위는 EU조약 101조와 102조, EU 경쟁법(Regulation(EC) NO. 1/2003)에 따라 시장진입장벽 없이 공정하고

71) 세부 사항은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pi.fr>

개방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카르텔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심사, 국가 보조금 심사, 시장감시, 업종 분석 등 역할을 수행한다. 각 EU회원국도 자체 경쟁법에 근거하여 시장왜곡 활동을 제재하고 시장을 감시한다.

회원국의 경쟁정책 담당 기구와 집행위원회는 유럽 경쟁 네트워크(European Competition Network)를 조직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는 Directive(EU) No.1 / 2019를 통해 각 회원국이 집행담당기구의 독립성, 강제력을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조사를 위한 인력과 기술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각 회원국의 집행역량이 강화되어야만 유럽 경쟁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09년 1월 경제선진화법(Loi du 4 août 2008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을 통해 기존의 경제재정부와 경쟁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로 분산되어 있던 경쟁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을 하나의 독립적인 관청으로 통합하기 위해 프랑스 공정거래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을 설립하였다. 공정거래청장은 의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프랑스 공정거래청은 카르텔, 독점적 지위의 남용 등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감독하고 규제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⁷²⁾

투자유치 지원정책

기업환경 개선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 혁신,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72) 세부 사항은 프랑스 경쟁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autoritedelaconurrence.fr>

우선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해고 부담을 완화하고 노사협상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⁷³⁾ 대신 저숙련노동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등 노동 인력 고급화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⁷⁴⁾

한편, 노동시장 개혁과 직업훈련 강화 토대 위해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PACTE: Le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을 발표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하였다.⁷⁵⁾ 이를 통해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구분기준을 단순화하면서 소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연구자의 기업참여와 창업을 유도한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를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근로자 지분 참여를 장려한다. 기업혁신에 투자하기 위해 100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또한, 마크롱 정부는 기업 세 부담 감면을 위해 2017년 최고 33.3% 수준이던 법인세를 2022년까지 25% 수준으로 인하해왔다. 2022년부터 연매출규모가 38,120 유로 이하인 기업에만 법인세 15%가 적용되고, 이상의 기업은 25%가 적용된다.

2020년 9월,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0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인 재건플랜(plan de relance)⁷⁶⁾을 발표하였다. 경제 재건을 목표로 친환경 투자(Ecology), 기업경쟁력 강화(Competitiveness), 사회연대(Cohesion)의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기여금, 산업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생산세를 2021~22년간 50%를 감면할 계획이며, 감면규모는 200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외국기업의 프랑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감세제도, 인센티

73) <https://www.gouvernement.fr/en/labour-law-reform>

74) <https://www.gouvernement.fr/en/apprenticeship-vocational-training-and-unemployment-insurance-reforms.kr>

75) <https://www.gouvernement.fr/en/pacte-the-action-plan-for-business-growth-and-transformation>

76) <https://www.economie.gouv.fr/plan-de-relance#>

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법인세 인하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부터 기업에 부과되는 생산세 중 하나인 기업 부가가치부담금(CVAE)을 폐지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생산세에는 법인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제약은 없으나, 2014년부터 EU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국방, 에너지, 물, 운송, 통신 및 공공보건 등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주요 산업에 투자할 때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프랑스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로, 외국인 투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투자자 규정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2019년 5월 발효된 ‘기업혁신과 성장촉진 전략 실행법안’인 파кте 법(loi PACTE)에 외국인 투자규제 내용이 포함됐고, 우주항공, 공공안전, 사이버안전 분야에 투자시 사전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2020년 4월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환으로 프랑스 전략산업 확대 및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제재를 당분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프랑스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가 기존 최대 25%에서 10%로 축소되고, 투자 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산업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가 추가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방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낙후 지역 및 산업 재개발 지역 내 투자

프랑스 정부는 지역개발보조금(PAT: Prime d'aménagement du territoire)⁷⁷⁾을 통해 동 지역내 공장 설립형 투자기업 및 고용창출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낙후 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 후 2년간은 소득세(impôt sur les bénéfices)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단계별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77) 시행령에 기간별 세부 사항을 규정함. 2014~ 20년 기간의 경우 고용 창출, 사업 다각화 등 지원대상 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에게는 10%까지, 중소기업에게는 20~30%까지 지원함.

혁신 및 연구개발 촉진 투자

기업이 R&D 및 혁신을 위한 활동⁷⁸⁾을 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연구개발 세액 공제(CIR: Crédit d'impôt recherche)를 통해서 모든 산업부문, 상업, 농업 등 모든 영역의 중소기업⁷⁹⁾이 R&D 활동을 수행한 경우 R&D 연관지출의 30%(해외 데파르트망 소재 기업은 50%), 최대 1억 유로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억 유로가 넘는 부분은 5%가 적용된다.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20%(해외 데파르트망은 40%), 총액 40만 유로가 적용된다.

또한, 기업의 개발연구에 관해서는 BPI France가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개발R&D 등 활동(제품·서비스·프로세스 혁신, 디자인·마케팅 활동, 지적재산권 관리, 관련된 국제협력 프로젝트 포함)에 대해서 혁신활동을 위한 대내외 비용을 최대 3백만 유로까지 지원한다. 외국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경우 적어도 프랑스기업 1개와 외국기업 1개가 포함되어야 하며, 한 개 파트너사의 지분이 75%를 넘어서면 안 된다.

대·중소기업 및 연구기관·교육기관들과의 다각적 협력활동을 위한 Pôles de compétitivité 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여기에서는 공동 R&D 활동을 통한 산업화, 마케팅 등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설립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서 JEI(Jeune Entreprise Innovante, 청년 혁신기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R&D 활동을 통해 설립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설립 8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총지출의 15% 이상을 R&D에 투입해야 하며, 자연인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독립기업이어야 하고 합병이나 분사를 통하지 않은 순수 창업기업이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법인세를 최대 24개월 감면(첫해는 전액, 2년째는 50%)받게 되며, 소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78) R&D 및 혁신 활동에는 연구개발 인건비, 재료비, 위탁연구비, 특허관련 비용, 시제품 및 파일럿 제품을 본격 제품화하는 활동까지 포함됨.

79) EU의 중소기업 기준은 직원 250명 미만, 연매출 5천만 유로 이하의 기업임.

친환경 산업 관련 투자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산업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오염, 소음, 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를 줄이고 환경 보호가 가능한 건물, 플랜트,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해당 지출금액의 최대 35%, 중소기업의 경우 45%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열병합발전, 재생 에너지 투자 등 일부 투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출의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회사 설립 절차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해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과 주된 사업활동은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프랑스 시장 조사,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그리고 프랑스 내 판매대리인을 통해 제품판매 활동만을 수행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프랑스 내에서 자회사 또는 지점 등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기업 전략 및 사정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는 상장이 가능한 주식회사(SA: société anonyme), 상장은 할 수 없지만 설립요건이 완화된 단순주식회사(SAS: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설립은 용이하지만 상장을 할 수 없고 참여 주주 규모 등도 제한돼 폐쇄적 구조를 가진 유한책임회사(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등이 있다.

법인 설립 관련 절차는 기업수속센터(CFE: centre de formalité des entreprises)에서 담당한다. 동 센터는 법인 설립 희망 투자자로부터 정관, 주식납입금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상업등기소(RCS: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통계청, 세무서 등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게 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K-bis'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며, 통계청에서는 'SIRET'라는 회사등록번호를 발급한다. 프랑스에서는 법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있는 CFE에서 법인이나 지사 설립 업무를 볼 수 있다.

이 기업수속센터는 이용자(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의 신청서류를 접수해 신청자 대신 해당 행정기관으로 보낸다.

CFE에 법인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인대표(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직원이다. 대표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해당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센터를 통해 프랑스 내 RCS에 법인 또는 지사를 등록할 시 발생하는 행정적인 비용은 약 84유로(한화 약 12만 원)이며, 법인의 설립을 위해 관보에 고시하는 비용은 약 230유로(한화 약 33만 원)이다.

프랑스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한 기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현재 단일 창구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전문직 종사자들의(변호사, 건축설계사, 의사 등) 영업·업무허가 신청이나 협회가입 신청도 접수하면서 이 기업수속센터의 단일 창구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프랑스 투자청(AFIL, Agence Franç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⁸⁰⁾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전담해 왔으나, 현 정부는 투자유치 효율화 정책 기조 하에서 2015년 1월 1일 자로 투자청과 프랑스 기업의 수출지원기관인 UBIFrance를 통합, Business France를 신설했다.

조세 제도

프랑스 조세체계는 과세대상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자본세 등으로 구분되고, 부과징수기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납세자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이나 동 금액 이상부터는 누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하며 최고세율은 45%이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대별로 종합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가족 수로 나눈 후 이에 상응하는 세율을

80) <http://invest.businessfrance.fr>

적용하여 1인당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 수를 곱하여 세대별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2022년도 소득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 소득구간별 소득세율

2022 세율구간(유로)	세율(%)
10,225	0%
10,225~26,070	11%
26,070 ~ 74,545	30%
74,545 ~ 160,336	41%
160,336 이상	45%

출처 : www.service-public.fr

법인세율은 기업 규모, 매출액, 순이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마크롱 정부는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22년까지 법인세를 2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해 왔다. 2022년부터 연매출규모가 38,120 유로 이하인 기업에만 법인세 15%가 적용되고, 이상의 기업은 25%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율은 기본 20.0%이며, 예외적으로 운수, 호텔, 요식, 박물관 등은 10%, 식료품, 전기 및 가스요금, 장애인용품 등은 5.5%, 의료보험 대상 의약품 등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적용되고 있다. 일명 부유세는 2017년 폐지 되었으나, 80만 유로 이상의 토지, 농지, 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가 적용하고 있다. 2022년 적용중인 부동산세율은 0.5%(80만~130만 유로), 0.7%(130만~257만 유로), 1%(257~500만 유로), 1.25%(500만~1,000만 유로), 1.5%(1,000만 유로 이상)이다.

한편, 프랑스 진출 우리기업 및 국내 거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경우, 프랑스 내에서 발생한 사업 및 자본 소득 등에 대해서는 양국간 체결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동 협약은 1981년 2월 발효, 1992년 3월 개정).

프랑스의 노동법은 기업의 경제적 목표를 감안하는 한편,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노사관계는 각 경제 산업분야의 관행을 반영하는 단체협약(conventions collectives)으로 결정된다. 종업원의 이윤 배분 참여 및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 소득세 및 급여세를 면제해 장려하고 있고, 효율적 생산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및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조정 및 해고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3,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노동법으로 대변되는 프랑스 노동법제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의 신규 고용을 꺼리게 하고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과거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실업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정부 출범 이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2013년 ‘고용안정화법(Loi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2015년 ‘사회적 대화와 고용에 관한 법’, ‘마크롱법’ 등을 통해 정리해고를 제한적이거나 보다 용이하게 하고 노동재판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도입하였다.

2016년 8월에는 총리 직권을 이용해 의회 표결 없이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 수정 노동법은 관련 시행령이 2017년 9월 발표 즉시 적용되고 있다. 개정 노동법(Loi 2016-1088)은 경제적 해고사유를 구체화하고 근로시간 연장 등 조치에 있어 산업별 단체협약보다 기업내 협약이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청년층 고용지원정책 보편화 등 새롭고 강화된 근로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2019년 5개의 마크롱 개정법령도 2017년 9월 22일 내각 비준을 통해 대통령이 서명 후 당일 관보 게재되는 즉시 발효되었다. 2017년 12월 20일 5개

법령의 일관성을 위한 6번째 총괄 수정법령(n. 2017-1718)을 발표했으며 12월 말에는 27개의 시행령을 통해 내용이 보충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모두 적용되었다.

※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 주요 내용

- 프랑스의 경우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대신 해고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종래 규정이 없던 해고배상금의 상·하한을 법률에 명시(하한은 6개월분 임금, 상한은 20개월분 임금이며, 이 범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 다국적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의 평가 범위를 '기업 전체'에서 '프랑스 내 회사'로 한정
- 종래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취급하던 것을 추후에 해고사유를 명시하더라도 사후 치유되는 것으로 변경
- 부당해고 제소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 종래 산별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를 지명하였으나 산별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지 않은 일반 근로자도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별 교섭·협약체결권을 인정
- 기업별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산별 협약보다 불리하더라도 기업별 협약이 강행적으로 우선 적용
- 기업규모·활동 목적에 따라 3종류(건강, 안전, 근로조건)이던 근로자대표기구를 '기업 내·사회·경제위원회'로 일원화 하여 교섭권 부여(기존에는 협의권만 부여)
- 개별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발의하고 근로자 2/3의 찬성을 얻어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산별 협약에 우선하여 적용

한편 프랑스의 '법정 최저임금'을 의미하는 SMIC(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는 세 가지 요소(①인플레이션(소비자 물가지수 반영) ②근로자의 구매력 상승률(근로자 임금상승률 반영) ③노사 정 협의를 거쳐 결정된 인상 요인(정부 재량으로 반영))를 반영하여 매년 노동부가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표한다. 2021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최저 임금을 6%인상했고, 2022년 7월 최저시급은 11.07유로, 최저한달 급여는 1,678.95유로로 발표했다.

개인정보 이전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GDPR은 모든 EU회원국에 적용된다. 프랑스 또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일반법으로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을 두고 있다. 동법의 제1조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데이터 처리자 등의 의무에 관하여 EU 규정(Regulation (EU) 2016/679,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EU 지침(Directive (EU) 2016/680), 그리고 동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GDPR 시행 후 프랑스는 2018년 LOI n° 2018-493 du 20 juin 2018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제정을 통해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GDPR에서 각 회원국의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거나 GDPR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일반법적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EU GDPR과 프랑스 국내법(‘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U GDPR 챗터V. 제44조 내지 50조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동 챗터에서는 현재 처리 중이거나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이전 후에 처리될 개인정보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GDPR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전이 가능하다. GDPR에서 이전이 가능한 경우는 ①EU 집행위가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적절한 보호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결정하거나 ②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정보주체가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법적 구제가 보장되거나 ③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을 갖춘 경우로 제한된다. 프랑스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12조 내지 114조에도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범죄 예방과 적발, 수사과 기소, 형사제재 실행,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예방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이 프로세싱하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인정보의 이전은 범죄예방 등의 목적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위 목적을 실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일 경우 허용된다.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을 규율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개인 건강 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이다. 동 법에서는 데이터 이전 제한에 관해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데이터 국외 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1111-8조에 따르면 프랑스 의료 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 데이터 호스팅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관할기관(Comité français d'accréditation)으로부터 인증(certification)을 획득해야 한다. 데이터 호스팅 기업의 국적이나 설비의 위치를 프랑스 또는 EU에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기업 또는 해외에 설비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증을 획득한 외국 기업은 프랑스인의 개인 건강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컴퓨팅 설비 위치 제한

최근 몇 년간 컴퓨팅 설비의 위치 제한과 관련해 프랑스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2016년 4월 프랑스 상원은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EU 내로 컴퓨팅 설비 위치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채택했으나,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상하원 공동위원회 논의 결과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2019년 10월 프랑스 상원이 미국의 클라우드법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상원은 컴퓨팅 설비 위치 제한을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미국 기업이 EU 내 설치한 컴퓨팅 설비에 저장된 정보도 미국 정부가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자국 기업에 오히려 부담만 지운다는 결론을 내렸다.

EU GDPR과 프랑스 국내법은 컴퓨팅 설비 위치를 EU 내로 제한하지 않으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설치도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민감정보인 개인 건강 데이터를 저장 설비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설치가 허용된다. 공중보건법 제1111-8조 제2항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보존 장소도 인증 획득 후 프랑스, EU 외 지역에 설치 가능하다. 현재 Google, IBM, MS, Amazon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프랑스 내 어떤 저장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동 인증을 획득하여 국외에 전자의무기록 보존이 가능한 상황이다.

※ 프랑스 인증업체 리스트

<https://esante.gouv.fr/labels-certifications/hds/liste-des-herbergeurs-certifies>

이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EU, 프랑스에서는 컴퓨팅 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2020년 7월 EU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협정(Privacy Shield)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필요한 경우 자국 기업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미국 정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법제가 GDPR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EU 시민들의 효과적 구제 수단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EU와 미국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Privacy Shield에 근거하여 EU의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는 사실상 컴퓨팅 설비 위치를 EU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프랑스에서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건강데이터허브(Health Data Hub)의 호스팅 기업 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프랑스 정부는 2019년 7월 보건체계 조직과 개혁에 관한 법률(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을 제정해 프랑스 공공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 활용할 목적으로 국가건강데이터시스템(Système national des données de santé)을 중앙집중화된 국가건강데이터허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Microsoft를 호스팅 기업으로 지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미국 기업을 호스팅 기업으로 지정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해외로 건강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관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도 광범위하고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건강 데이터허브의 호스팅 서비스를 해외 기업에 맡기는 것의 위험성을 지속 경고하였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1일 정부명령을 발령해 우선 Covid-19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활용에 한정하여 국가건강 데이터허브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 재정을 본격 투입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7월 EU 사법재판소의 Privacy Shield 효력정지 결정 이후 CNIL은

이를 근거로 2020년 10월 9일 미국 법률이 적용되는 기업에 건강 데이터의 호스팅을 맡기는 것을 금지하였다. 결국 프랑스 정부도 국가건강데이터허브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EU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Microsoft가 아닌 EU 기업과 협력해 EU 내 설비를 두고 저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제약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제약과 관련해 프랑스에서는 검색엔진과 소셜 미디어 등에서 사용된 뉴스에 대한 사용료 지불이 이슈가 되고 있다. EU는 2019년 3월 검색엔진과 소셜 미디어 등에서 뉴스 콘텐츠가 사용되면, 이를 제작한 해당 언론사가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규약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2019년 10월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비준했다. 이후 대표적인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은 사용료 지불을 회피하기 위해 프랑스 매체가 제작한 뉴스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무료 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만 기사와 사진을 앞에 노출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목과 링크만 드러내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프랑스 뉴스정보제공자연합(l'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과 AFP 통신은 2019년 11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구글을 프랑스 공정위에 제소하였고, 프랑스 공정위는 2020년 4월 구글에 3개월 내 언론사 등과 협상에 나서라고 명령했다. 이후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2021년 1월,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과 개별협상을 거쳐 뉴스 사용료를 받게 됐다. 구체적인 금액은 일일 기사 발행량, 월간 인터넷 트래픽 등을 기준으로 언론사마다 다르게 산정된다.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 콘텐츠 검열

프랑스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제6조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가 언론자유법, 형법 등에서 정한 각종 불법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은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0년 6월 인종, 종교, 민족,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거나 이러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적 모욕, 홀로코스트, 성폭력 등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동 법률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명백하게(manifestly) 불법인 콘텐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내 이를 삭제하고, 테러 미화·또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요청할 경우 1시간 내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헌법위원회는 위법성이 명백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해야 하고 과도하게 짧은 시간 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자 면책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 이의 제기 기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원으로 하여금 저작물의 권리자, 관계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침해사실에 대한 적절한 경고 조치 또는 중단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헝가리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통상투자환경 개요

주요 경제지표 동향

헝가리 경제는 2021년 7.1%의 고성장 이후 4%대의 성장률 유지를 전망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동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IMF는 2023년 이후에도 3%대의 둔화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의 경우 8%대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실시한 선심성 정책(각종 세금 환급,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 증진이 견인한 결과이나, 최근 정부 지출이 건축 기조에 들어가며 2022년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1~2년간은 경제 침체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2022.10월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헝가리의 2022년 성장률은 5.7%, 2023년은 1.8%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2024년까지 정책적으로 임금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포린트화 약세 및 높은 인플레이션 등 상황과 맞물려 가계 실질 임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헝가리의 낮은 실업률과 함께 물가-임금이 연동되어 상승하는 상호작용(wage-price spiral)이 나타나는 등 더욱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연초 7%로 예측되었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0.1%에 달하여, 대부분의 유럽 여타국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중심으로 한 헝가리 내각은 親기업적인 정책노선을 펼쳐 경쟁력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집중하였다. 2017년 법인세를 19%에서 9%로 인하하고, 고용주세는 2017년 이후 조정하여 2020년 기준 15.5%까지 인하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2022년 4월 실시된 헝가리 총선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연임이 결정됨에 따라 당분간 헝가리의 친기업적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황재세(windfall tax)부과 등 재정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기업 운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여 헝가리 내 기업활동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 주요경제지표 : 2022년 IMF 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망)
명목 GDP (US\$ bn)	127,3	141,3	157,6	160.7	155.0	180.9	197.8
명목 GDP (Ft bn)	35,848	38,764	42,580	46,717	47,714	53,478	62,238
1인당GDP (구매력평가 기준 US\$)	27,304	29,280	31,239	34,227	15,820	18,527	20,335
실질 GDP 성장률	2.1	4.5	5.1	4.9	-5.1	7.1	5.7
정부부채비율 (GDP대비)	75.6	73.0	70.3	66.4	80.5	76.6	76.1
재정수지 (GDP대비)	-1.8	-2.4	-2.3	-2.1	-8.1	-6.6	-6.7
인플레이션율	0.4	2.3	2.8	3.3	3.3	7.4	20.1
실업률	5.1	4.2	3.7	3.4	4.1	4.1	3.4
경상수지 (US\$ m)	5,855	3,150	-678	-1,139	-2,473	-1,746	-2,603

시장환경의 특성 및 변화

헝가리는 유럽 내 외국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이다. 헝가리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헝가리 수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업체로, 약 17만명이 동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그 외 헝가리 정부가 R&D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전자전기제품, ICT, 의약품 등 여타 업계도 성장 중이다.

헝가리는 중동부유럽, 발칸지역, CIS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와 임금대비 우수한 노동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헝가리는 유럽 내 고속도로가 가장 조밀하게 건설된 국가 중 하나이며, 5개의 국제공항 및 4개의 지역공항 또한 물류의 중심지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헝가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낮은 법인세이다. 2017년 1월부터 책정된 헝가리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CIT)는 정률 9%이며, 이외 통제된 외국법인 (Controlled Foreign Corporates, CFC)에서 받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면제된다. 이외 최대 2%의 지방 기업 세금, 0.3%의 기술혁신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품목에 따라 최대 27%의 VAT가 적용된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많은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의 각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부다페스트 및 일부 중심지를 제외한 지방의 대부분이 20~50%에 달하는 지역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5천만 유로가 넘는 투자에 대해서는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EU 규정이 적용되어, 현금성 보조금 혹은 개발세(development tax) 인센티브 등의 지역 발전기금 제공을 위해 EU 집행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2022년 재집권에 성공한 현 오르반 정부는 유럽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 하에 동방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중국,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신흥 경제권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투자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및 2021년 대형가리 투자 1위국으로 헝가리

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 중 하나가 되었으며, 2022년 누적 투자액 기준 독일과 미국에 이어 3위국으로 부상하였다. 2022년의 경우, 우리 기업(에코프로비엠, 더블유스코프 등)들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였지만, 중국의 배터리기업인 CATL이 헝가리에 73.4억유로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2022년의 경우 중국이 최대 투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요소들을 감안, 다수의 경제연구소들은 헝가리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하고 있지만, 낮은 실업률로 인한 인력 부족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은 헝가리 진출에 있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으며,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에너지 저장 시설 증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Faculty Rescue Program”을 시행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신청이 20분만에 마감되는 등 운영 비용 증대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헝가리 정부의 경제정책

헝가리 정부가 2016년 발간한 산업개발계획인 Irinyi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자동차 제조, 특수기계 제조, 보건산업, 식품 산업, 녹색경제 발전, ICT 분야 등을 대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오르반 총리는 노동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되, 사회주의 등 이념이 아닌 효율에 근거하여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헝가리 정부의 자체적인 평가에 따르면, 헝가리는 코로나19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지만, 여전히 유럽의 중심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바탕으로 더욱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어, 항공 및 지상 물류를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2022년 초 오르반 총리의 상공회의소 연설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5개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향후 목표가 될 것이다.

- ①헝가리의 발전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외자 의존도가 지나친 분야(보험, 통신, 건축 등)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헝가리 국적 기업의 점유율 확대 ②80%이상의 헝가리 수출이 대기업 혹은 외국 기업에 편향되어 있어, 수출이 가능한 헝가리 중소기업을 육성 ③외국계 회사들의 자본 유출로 인한 무역 수지 적자 개선 ④기술력 측면에서 외국계 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R&D를 통해 헝가리 기업들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 촉진 ⑤지방의 생활 수준 낙후에 대해, 인프라 구축 확대

동방 정책

헝가리 정부는 EU 시장에 의존한 자국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러시아, 중국, 동남아, 한국, 일본 등과의 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 정부는 2010년부터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 추진에 따라 중국, 일본, 한국에 고위급 인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관계 확대 및 경험증진 심화를 도모해 오고 있으며, 특히 한국 및 중국에서의 투자 증대를 동방 정책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2014년 6월 기존 외교부에 통상 기능이 병합되면서 동방 정책은 기본적으로 헝가리 외교 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기업 진출 유망산업 및 시장

주요산업 연계 유망 시장

(1) 자동차/자동차 부품

자동차 산업은 헝가리의 핵심 산업으로, 2021년 운송장비 수출이 총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글로벌 100대 자동차 관련 기업 중 Bosch, Denso, ZF Friedrichshafen 등을 포함해 49개사가 헝가리에 진출해있다. Audi, Mercedes-Benz, BMW, Suzuki 등 완성차 제조업체는 헝가리를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BMW는 2024년에 제조공장을 완공하여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헝가리 소재 자동차 관련 기업은 700개사 이상이며, 1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헝가리 자동차 협회(MAGE)에 의하면 2021년 헝가리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총 41만대로, 이 중 Audi가 17만대, Mercedes-Benz가 14만대, Suzuki가 11만대를 생산하였고, 전체 시장에서의 전년대비 생산량은 약 10.2% 증가했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자 다수의 기업이 전기차 부품 제조를 확대하고 있다. Suzuki와 Mercedes-Benz는 각각 2019년과 2020년 헝가리에서 첫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한 이후, 많은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기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Audi가 헝가리에서 생산하는 엔진 160만개 중 25만개는 전기차용이며 2029년부터 순수 전기차를 헝가리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BMW는 2025년부터 프리미엄 제품군을 전면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2차전지 시장도 성장 중이다. 2021년 유럽에서 생산된 2차전지 중 약 42%에 해당되는 28GWh가 헝가리에서 생산됐다. 이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헝가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R&D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2022.3월에는 헝가리 서쪽의 Zalaegerszeg주에 위치한 연구단지(Zalazone) 내 새로운 주행시험장이 개소하였다. 2022년 10월, 안전 및 품질 테스트 업체인 TÜV Rheinland InterCert는 Zalazone 연구단지 인근에 배터리 테스트 센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2) 기계 및 설비

헝가리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야의 매출액은 2021년 52억 4,826만 유로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의 79.6%는 수출에 해당한다.

한국의 對헝가리 기계 수출액은 2020년 6.96억 유로에서 2021년 8.5억 유로로 증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2021년 기계 및 설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2021년 투자액은 전체 제조업 분야 투자액의 5%에 해당한다.

(3) 건축자재

헝가리 정부는 도로 및 철도, 교통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했고, 주택 건설을 위한 저금리 대출제도와 보조금 정책(CSOK)을 펼쳤다. 건설 산업의 생산 규모는 2021년 약 134억 유로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2021년 신규 건축 건수는 전년 대비 17%, 토목 건설은 9.1% 증가했다. 2022년 9월까지 건설 산업의 생산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2021년 건설업에는 약 37만명이 종사했으며 2020년 광역건설업 고용 인원은 약 42만명으로 2010년(37만명) 대비 13.6% 증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2022년 상반기 원자재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0.4%, 건설생산자물가가 22.8% 상승했다. 비용 상승으로 인해 건설 시장은 당분간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환경(특성) 연계 유망 시장

(1) 의료기기

헝가리 의료기기 산업의 매출액은 2020년 7억 1,327만 유로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국경 병원의 수요는 연간 약 3억 6,900만 유로이다. 헝가리 의료 관련 분야에는 Norma Instruments Co., 3DHISTECH Ltd. 등 927 개사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헝가리 의료기기 시장의 70% 이상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GE Healthcare, Medtronic, Johnson & Johnson, and Becton Dickinson 등 미국 의료분야 기업들은 헝가리에 지점 및 자회사를 두고 있다.

해당 분야의 주요 제품으로는 전자 의료 장비, 혈압 장비, 실험실 키트, 수술 및 치과 용품, 무호흡 경보기, 인큐베이터, 주입 펌프, 기계 의료 용품, 출산 용품 등이 있으며, 의료영상 분야를 비롯해 전기 및 바이오 센서 장치, 혁신

의약품, 체외진단기기 등 첨단 분야 역시 성장 중이다. 의료용품은 헝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이며, 2021년 대형가리 의료용 수출액은 2.33억달러로 전년 2.15억 달러 대비 8.4% 증가했다.

특히 치과용 의료기기 브랜드는 약 70여개로, Alpha Bio, Cortex, Straumann, ImplantDirect에 더불어 한국의 Dentis, Osstem, Cowellmedi, Megagen, Dio, IBS 등이 있다.

EU기금 및 헝가리 정부의 병원 현대화 계획(Healthy Budapest Programme)에 따라 공공의료 체계의 중앙적인 일원화 노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병원 현대화에 따른 고가 장비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사설 병원에서도 치과 관광 및 현지소득 증가에 따른 사설의료 시장이 점차 확장해가고 있으며, 영상진단기기 등 ICT 결합된 형태의 기기나 검진기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 생명공학 및 신약개발 사업

헝가리는 약품 개발 및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신약개발 관련 매년 40개 가량의 신규 특허를 출원한다. 제약 분야 생산규모는 2019년 9,100억 HUF, 2020년 9,630억 HUF, 2021년 9,950억 HUF로 지속 성장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2020년 9,440억 HUF에서 9,770억 HUF로 증가했다. 투자 규모는 2021년 기준 전년대비 7.2% 증가했으며 전체 제조업 투자의 3.3% 수준이었다. 의약품 제조 산업에는 약 3만명이 고용돼있다. 의약분야의 R&D 규모는 전체의 25%에 달하며 이는 수익의 약 20% 수준이다.

부다페스트, 데브레첸(Debrecen), 세게드(Szeged), 페치(Pécs) 등 4개의 생명과학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우수한 의과대학과 생명과학대학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헝가리 수출청(HEPA)에 따르면 업계 종사자 1인당 창출하는 이익이 자동차 산업에 비해 매우 큰 편으로 헝가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2012년 제약 R&D 지출은 535억 HUF에 근접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가 2017년까지 일부 정체 상태 시기를 거쳐, 2019년에는 697억 HUF 규모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제약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비해 상당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체 제조업 R&D 중 제약 산업 분야의 R&D가 차지하는 비율은 30.7%로 이는 EU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한다.

헝가리 국내 기업으로는 Teva Zrt, Alkaloida Vegyészeti Gyár Zrt., Chinoi Zrt. 등이 있으며 Johnson&Johnson, GE Hungary, Novartis, Pfizer, Roche, Coopervision 등 글로벌 기업도 진출해 있다.

(3) 재생 에너지(태양광 패널 등)

헝가리 태양광 발전(Photovoltaic) 분야는 2016년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0.5%에 불과했지만 2019년 4%로 증가했다. 풍력 및 수력 자원이 부족한 헝가리는 태양광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헝가리는 0.5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헝가리에는 수많은 태양광 전력 단지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NECP,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과 '2030 국가에너지 전략(National Energy Strategy 2030)'을 도입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고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6.5GWh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지열 에너지, 태양광 발전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이 전략에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Net Zero Energy Building, NZEB)도 포함되었다. 새로이 건축되는 건물들은 에너지 제로 기준에 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약 25%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자체 에너지 생산 설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2020년 헝가리 의회는 국가 청정 발전 전략 2050(National clean development strategy 2050)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부터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 기준에 부합하는 건물만 짓도록 규정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을 비롯하여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 헝가리 정부가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제를 신설해 시장의 성장이 단기적으로 억제될 전망이다. 2022년 10월, 헝가리 정부는 에너지 공공 그리드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별 태양광 발전소에서 실제 사용량보다 초과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이는 공공 그리드에 판매될 수 없고 그대로 손실된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 네트워크 개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효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헝가리의 태양광 발전 대표 기업으로는 Optimum Solar Kft. Pannon Watt Zrt. Solar Kraft Kft. 등이 있다. 헝가리 내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들은 직접 제조보다는 수입 및 설치, 시공,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형 기업들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반면 중소형 업체들은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지역 내 가정 또는 공장에 소규모로 설치함으로써 시장이 양분화 되어있다.

(4) R&D 센터 설립

헝가리는 18세기말 중부유럽 최초의 공과대학이 설립된 곳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다수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릭슨, GE 등 세계 유수 기업이 헝가리의 이러한 우수인력을 활용하고자 R&D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현대중공업도 헝가리에 연구법인을 운영 중이다. 높은 임금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헝가리 연구인력의 임금은 낮은 수준이지만 이들의 성과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헝가리 중앙 통계청(KSH)에 의하면 2020년 GDP 대비 R&D 지출 규모는 1.61%이며 전체 인력 중 1.1%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헝가리는 R&D 지출 규모를 2030년까지 GDP의 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헝가리 정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와 향후 재투자자를 촉진코자 헝가리 전역에서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R&D에 대한 VIP 현금 인센티브, 법인세에 근거한 R&D 비용(100%) 감면 인센티브 등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5) 의료관광산업

헝가리는 국토의 2/3가 온천 개발이 가능하며, 이들 온천도 관절염, 피부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유럽전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또한 헝가리는 치과를 중심으로 많은 우수 의료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은 편이다. 최근 헝가리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고, 온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헝가리 관광산업 진출도 검토해 볼 만하다.

헝가리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140여만명(당일 여행객 포함, 동부 유럽 2위, 세계 20위)이 방문했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이며, 2022년 상반기부터 헝가리는 대중 교통 등 일상 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등 코로나19의 완화에 따른 봉쇄 해지로 관광 산업은 다시금 각광받을 전망이고, 특히 2022.10월부터 대한항공이 인천-부다페스트간 직항을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 서비스 센터 및 물류기지

2022년 헝가리 투자청(HIPA)에 따르면 90개 이상의 기업이 이곳에 100개 이상의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BSC)를 개설했으며 약 4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헝가리는 V4국가(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들과 비교해 임대료가 낮은 편(m2당 14유로)이며, 외국어에 능통한 헝가리 우수인력의 낮은 임금도 글로벌기업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IBM, 루프트한자, 프랑스계 제약회사 Sanofi, 인도계 IT업체 Tata Consultancy Services 등이 헝가리에 BSC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유럽 전역과 항공, 철도, 고속도로망으로 연결돼있어 유럽 서부와 발칸을 잇는 유통 및 물류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EU 기금을 활용하여 각종 교통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과의 일대일로 일환으로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중부 유럽 내 물류 거점으로서의 헝가리의 위상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헝가리의 비관세 장벽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한-EU FTA 협정이 적용되며, EU의 기준과 규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타 EU 회원국과 비교할 때 비관세 장벽이 높은 편은 아니다. 헝가리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아래 사항들이 있다.

식품류 산지표시에 대한 규제 시행

헝가리 지역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는 2013년 9월 1일부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식품류에 아래와 같이 ‘헝가리산’, ‘국내산’, ‘국내제조’ 3가지 문구를 기입하기로 결정했으며 하단 3가지 문구 중 한 가지 표기가 원칙이나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헝가리산(Hungarian Product) : 원재료 100%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산(Domestic Product) : 원재료 50% 이상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가공품(Domestically Processed Products) : 원재료 다수 수입산, 자국생산

국내 생산 식품류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 헝가리산 소비 촉진이 주목적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신토불이, 일본 지산지소(地產地消) 운동과 유사하다. 2019년에는 식품류 산지표시 외에 2가지인 우수 품질 제품(Excellent Product)와 녹색 제품(Green) 신규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소비자들에게 각각 품질 측면의 우수성과 친환경적인 제품임을 홍보하고 있다.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자국 기업의 수주가 보다 유리

2012년부터 공공조달 입찰서류는 헝가리어로만 제출해야 한다. 단, 공공조달 공고가 외국어로 난 경우는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아래 사항의 경우 공공조달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 일반제품 :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 건설 : 1억5천만포린트(약 66만달러) 이하

- 서비스 :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 개정된 공공조달법은 자국 중소기업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우리기업 진출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인증제도 및 기술장벽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또한, EU 회원국인 헝가리 내에서의 사업을 위해서는 EU에서 요구하는 인증 또한 받아야하며,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다.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 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 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했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 진행 가능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 진행 가능

기술 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 5)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예정)
- 6) 한국 인스턴트 라면류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헝가리는 2011년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정보 자기 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 (Act CXII of 2011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을 통과시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헝가리 정부는 2018년 EU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이행하기 위해 상기 법률을 수정하여 시행 중이며, 2019년 헝가리 규제 체제를 GDPR에 합치시키기 위해 금융, 건강, 소매 등 부문별 86개 조항을 입법 개정된 Bill no. T/8016(Salad Act)을 제정하였다.

또한, GDPR 관련 사항을 감독 및 관할하는 공식 기관인 NAIH(The Hungarian National Authority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는 상기 법률 시행을 모니터링 및 촉진할 책임을 지고, 위반사례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2021.3월 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자유를 기본권으로 이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등 공표사항에 따르면, NAIH는 헝가리 내 정보 관련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및 데이터 통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지방자치 단체 △중앙부처 △공공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체 및 조직 △공익을 이유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든 법적 기구 및 메커니즘의 4가지 분야에 대해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고, 결과는 2022년 12월 이후 NAIH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11년 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국에 대한 국경 간 정보 이전은 (i)이전에 대한 데이터 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ii)정보 처리의 목적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며, 상기 법률 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충족하고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adequate level of protection)가 제공되는 경우, 또는 (iii)국경 간 정보 이전이 법률에 명시된 예외적 상황(정보 주체의 필수 이익 보호, 국가의 공공 안보 보호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제약

헝가리 정부는 온라인 무역 서비스 및 정보사회와 연결된 서비스에 관한 2001년 법령(Act CVIII of 2001 on Online Trade Services and Services Connected to Information Society)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2000/31/EC) 등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사전 승인은 요구되지 않으며(제3조)(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한 전자적 소통은 예외), EU 회원국에 위치한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되지 않는다.(제3조A) (소비자, 아동,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위험을 구성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예외) 다만,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원거리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제6조).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

정부는 헝가리내에서 불법적인 웹사이트가 아니라면, 어떠한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지 않는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언론 및 방송 콘텐츠 관할 정부 당국이 형법상 금지되는 콘텐츠(홀로코스트 부정과 같은 약자에 대한 선동)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 상기 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03년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법령(Act C of A 2003 on Electronic Communications) 제10조에 따라 언론 당국은 상기와 같은 전자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명령을 집행하고 그러한 명령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노르웨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동향

2008년 세계경제 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및 2014년 석유·가스 가격 하락 등을 겪으며 둔화되었던 경제성장률이 2016년부터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2.5%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높은 백신보급율, 효과적인 방역관리 등에 힘입어, GDP 하락, 실업률 증가 등 팬데믹의 영향을 여타 EU국가 및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였다. 2022.2월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된 이후에는 경기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향후 2년간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에 따른 對러 제재 조치 단행 이후, 노르웨이산 천연가스는 EU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처로 급부상(2022 상반기 EU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약 25%를 공급)하였으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가격 상승 기조에 힘입어 2022 상반기 동안 미화1천억 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기록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 및 가스 부문 의존도를 줄여 경제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증진해 나가야 하며, 이와 관련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해상풍력, 수소, 탄소포집저장 기술 개발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2050 Net-Zero 목표 달성이 녹색전환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노르웨이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명목 GDP(US\$억)	3,983	4,341	4,033	3,620	4,824
1인당 명목 GDP(US\$)	75,306	81,549	75,294	67,294	74,500
실질성장률(%)	1.8	2.2	2.3	-2.5	3.9
물가상승률 (평균소비가격, %)	1.87	2.76	2.16	1.30	3.50
실업률(%)	4.2	3.8	3.7	4.8	4.4
평균환율(Nkr/1US\$)	8.26	8.13	8.8	9.40	8.59
평균환율(Nkr/1EUR)	9.32	9.59	9.85	10.20	10.16

출처 : 노르웨이 통계청, 중앙은행, IMF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노르웨이는 WTO 가입과 EU와의 EEA 협정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높은 관세부과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외무역은 EEA 협정과 우대협정(preferential agreements)에 의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품의 85%가 무관세로 거래되며, 공산품의 평균 최혜국대우(MFN)관세는 2019년 기준 0.4%(simple average)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농업 분야에서는 WTO 관세쿼터에 따라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나, 농산품의 MFN 관세는 40.4%(simple average)로 여전히 높다. 축산물, 유제품, 곡물에 대한 관세는 매우 높은 편이며(각 127%, 123%, 41%), 국내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상품(커피, 바나나, 감귤류 등)에 대한 관세는 거의 무관세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2018년 WTO 노르웨이 무역정책검토회의(TPR)에서 참석국들은 노르웨이가 원유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농업에 대한 보호수준이 과도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소규모 국가로서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전자상거래, 중소기업(MSMEs), 수산보조금, 여성 등 WTO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2005년 7월 FTA를 체결하였고, EFTA측은 동 협정이 발효된 2006년 9월 1일 부터 모든 한국산 공산품(가공농산물 포함) 및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기초농산물 400여 품목에 대해서는 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FTA 체결 이후 한국과 노르웨이와의 교역량은 2005년 11억 달러에서 2019년 31억 달러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한국무역협회). 주요 교역 품목은 선박, 전기차, 수산물, 철강 제품 등이다.

수입부과금 등⁸¹⁾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2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식료품에 대해서는 15%, 교통, 숙박 및 영화 등 서비스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 19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교통, 숙박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2020년 4월~2021년 9월간 한시적으로 12% 세율이 6%로 하향되기도 하였다. 수산물 생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수산물에는 예외적으로 11.1%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2020년 4월부터는 VEOC(VAT on E-Commerce, 전자상거래에 관한 VAT)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350 NOK 이하로 해외에서 온라인 구매한 경우 적용되던 VAT 면제는 폐지되었으며, 세금 계산 및 징수, 지불 의무는 판매자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국내생산과 수입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ies)가 부과되며, 특히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 및 여타 에너지에 대해서는 고율의 소비세(약40~50%)가 부과된다. 농산품 수입에 대해서는 검역(inspection)세 및 연구개발 관련 추가 세금(평균 0.35%)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FTA 발효 이후에는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과금 등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다.

81) www.skatteetaten.no, www.toll.no

통관절차상의 장벽

대부분의 통관절차가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간단하고 편리하며, 일반적으로 통관신청 후 1~2일 정도면 통관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수입업체가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업체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알코올, 담배 등 민감 품목의 포함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함으로써 통관절차가 완료된다. 농산물과 식품 등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실시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EEA협정에 따라 EU시장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적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사용을 통보하는 등 국제 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수입규제

노르웨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시장선점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나 시장질서 교란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일부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계절별 쿼터제도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별도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는 농산물, 주류, 의약품, 소형화기 및 탄약, 폭발성 물질, 그리고 멸종위기종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대상임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담배, 식자재, 무기, 문화재, 골동품 등도 노르웨이의 담당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EFTA(유럽자유 무역연합)와 FTA를 2005년 7월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년 9월 1일부터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불공정 사례는 없다. 노르웨이는 1985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래 현재까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바 없으나, 2018년 6월 미국의 노르웨이 산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 대상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측에 WTO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 절차를 요청하였으며, 2019년 1월 청문절차가 실시된 바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해주며,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EEA 국가 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토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규정을 국내법령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야 특히 위험물질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asbestos)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환경 관련 규제

노르웨이는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뮴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 변형체)에 대해서도 EU 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노르웨이 국내 생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GMO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라벨링을 해야 하며(GMO 사용량이 0.9% 이하인 경우는 면제),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새로운 식품(novel foods)은 EU 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이 기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GMO 수입업자는 제품의 사용이 윤리적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색소, 비타민, 향료 등 식품첨가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캐나다, 미국, 멕시코, 포르투갈,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목재의 경우, 한층 강화된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노르웨이 식품안전청).

한편, 한-EFTA FTA에 의하면 한-노르웨이 간 농수산물의 교역과정상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WTO/SPS 협정(Conven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EU 및 EEA에 대한 수출이 승인된 기관이나 상품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별도의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한-EFTA FTA 회원국인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출처 : Restrictions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https://www.loc.gov/law/help/restrictions-on-gmos/norway.php>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농산품 중 노르웨이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쿼터나

수입금지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제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정부보조로 인해 국제수준보다 높은 원가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1995년 1월 WTO 회원국이 되면서 수입규제를 종전 수량규제나 금지에서 고율의 관세부과로 대체하였으며, 노르웨이와 경쟁적인 제품의 경우 여전히 관세율이 매우 높다. 가축, 육류, 유제품 등의 경우 10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높은 관세(40% 내외)를 통해 농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동시에 곡물, 기름용 씨앗,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소, 양, 돼지, 닭, 계란, 양모에 대해 목표 가격 책정(국내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 2~4일 단기간 고시하여 수입 관세를 일시 인하,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 등 행정적 조치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2018년 WTO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노르웨이 농업 부문의 보호 수준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노르웨이는 농업 정책 관련 3가지를 약속하고자 한다면서 농업 관련 통보 의무를 준수하는 등 투명성에 대한 약속, 저개발국가 등 취약 국가에게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약속, WTO 농업 협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약속을 언급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2020년 기준 공공부문 조달은 6,114억 NOK(2019년 5,954억 NOK)로 GDP의 18%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당사국으로서 국내입법을 통해 GPA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 한-EFTA FTA에 의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양국 간 권리와 의무도 동 GPA에 의하여 규율된다. 공개입찰의 경우는 어느 기업이나 참여 가능하나, EEA나 WTO의 GPA 당사국에 등록된 기업이 아닌 경우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허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을 총괄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각 수요기관들이 직접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및 기관,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 등 약 5,500여 기관이 직접 입찰을 기획,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 전체적인 입찰기준 및 대외교섭 업무만을 통상산업부가 책임지고 있다.

연간 공공부문 조달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달규모 중 노르웨이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비율은 대략 4:6 정도로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높다.

노르웨이의 공공부문 입찰관련 정보는 <http://www.doffin.no>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요입찰의 경우 각 정부부처나 발주기관들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므로 해당분야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는 것도 정보수집의 중요한 방안이 된다.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는 영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노르웨이는 정부의 상장·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주식 보유 비중이 큰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정부 지분 확대 조치는 지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르웨이 의회 역시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매각 작업을 원칙적으로 승인하기도 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노르웨이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노르웨이 산업재산청(Norwegi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NIPO)이 담당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들을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로마협약, 베른협약 등 주요 국제협정의 당사국으로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통상 20년간 특허권 보호/사후 70년 저작권 보호). 2005년 6월 이후로 EU 2001 Copyright Directive⁸²⁾를 바탕으로

82)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온라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한-EFTA FTA를 통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WTO 협정(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 국민의 지재권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호간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

서비스 장벽

원칙적으로 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기업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대표자와 이사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이고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거주에 관한 수평적 제약 부과).

EEA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에 은행, 증권사, 조합 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가).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자산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해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 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서도 EU 지침을 차용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의 경우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고, 대표자와 이사진의 1/2 이상이 영주권자인 경우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즉, 노르웨이 항구 간 승객 및 화물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 항구 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2013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Invest in Norway」를 설립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2019년 9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다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부여는 거의 없으며 외국자유무역 지대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2015~17년 3년 연속 노르웨이 내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금액(FDI Net Inflows)은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에는 증가로 전환되어 2019년 16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1억 달러로 나타났다. 스웨덴, 미국과 네덜란드는 꾸준히 투자 상위 1~3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세 국가의 투자 금액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노르웨이 정부는 새로운 투자 심사 제도를 도입, 담당기관이 국가 안보와 재정안정성 등을 위해 FDI를 조사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기술 분야,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오지의 미개발지역 투자 시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994년 1월 EEA협정에 따라 과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일부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관계부처는 개별 외국인투자(일반적으로 대기업 소유지분의 1/3 이상 보유 시)에 대해 해당기업, 관련 산업, 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공공이익원칙(public interest principle)이라는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30일내 관계부처의 회답이 없는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허가시에도 명기된 분야 외 사업은 불가하며, 조건부 허가가 내려질 수 있다.

수력 발전, 우편, 철도, 양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산림, 광산, 경작지, 휴양지, 수력발전용 폭포 등을 10년 이상 임대

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0년 이래 외국환 이동을 자유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익배당금, 이자, 투자과실 송금시 중앙은행에 통보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롭게 반출 가능하다. 외국투자가가 현지에서 금융 조달을 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결제상의 문제 점도 없으나,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경우 금융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기업 설립 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여야 한다는 거주에 관한 수평적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 (노르웨이 GATS Schedule of Commitments에 명시) 개인 사업가의 국내 거주 의무는 없으나 사업체는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외 국적 기업은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NOK 5백만(약 62만 5천 미국달러) 이상의 영업 수익을 내는 사업체 혹은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국내 회계 감사원을 고용할 의무를 지닌다. 영업 수익 5백만 NOK, 대차대조표 2백만 NOK, 평균 10 man-year 이하인 회사의 경우에는 재정보고서를 감사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사진(Board)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레저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분야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투자자 1인이 정부의 양허(concession)가 없는 한 국내 TV와 Radio의 1/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⁸³⁾

경쟁 정책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Price Regulation Act, 1993년 제정) 및 경쟁법

83) <http://www.altinn.no/en/Start-and-Run-a-Business>

(Competition Act, 2004년 제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 가격,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합산 연간 매출이 10억 NOK(약 1억 미불, 2022.12월 환율 기준) 이상인 합병을 원하는 기업은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경쟁청은 합병 3개월 내 최종 신고(complete notification)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경쟁청은 신고 접수 후 근무일 25일 내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늦어도 신고 접수 후 근무일 70일 내 예심 판결을 통보한다. 기업은 예심 판결 후 근무일 15일 내에 의견을 회신을 하여야 하며, 경쟁청은 기업의 회신을 참고하여 회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한다. 기업합병(특히, 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경쟁청은 3개월 내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내 최종판정을 한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수산업·임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적용)로 인하여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EFTA FTA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게 된다.

외환관리

노르웨이의 외환관리는 Exchange Act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외환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 1990년을 기점으로 완전 자유화되었다. 따라서 배당금의 송금이나 현지지사 이익금, 로열티 및 각종 서비스 대금의 제3국 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치 없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즉, 국제 환거래나 자금이동 사항은 단지 거래은행에 신고(실제적으로는 은행을 통한 거래자체가 신고에 같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것도 외국 당사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인 노르웨이인(법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문제와 관련된 이익금이나 배당금의 경우에는 세금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의 현지

진출 외국기업들은 이익금이나 배당금 중 세금해당 액수만큼을 사내 유보금으로 확보하고 송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또한, 노르웨이 거주인(법인 포함)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외국환을 소지하거나 시중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외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환거래는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징수하여 중앙은행인 Norges Bank에 신고하며, 중앙은행은 필요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화폐, 수표 등 현금성 지급 수단을 휴대하여 출입국시에는 노르웨이 화폐와 외환을 포함하여 총 25,000 NOK 이상의 금액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시 휴대 현금 총액의 20%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경찰에 통보된다. 다만, 내·외국인의 원활한 공항수속 절차를 위해 실제 여행자의 신고를 받는 이외 특별히 여행자의 몸수색을 하거나 소지품을 검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집행하는 사례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디지털무역 장벽

노르웨이는 디지털무역에 관해서는 가장 개방된 국가의 하나이며, 작지만 개방적인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자유 무역을 추구해 왔으며, 디지털 무역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부문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경제 특성상,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개방된 디지털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⁸⁴⁾

2020년 4월 1일부터 VOEC(VAT on E-Commerce) 실시에 따라 노르웨이 내 연 매출이 50,000 NOK를 초과하는 외국계 온라인 판매업자는 노르웨이 국내 소비자에 대한 저가 상품(청구서 총액 기준이 아닌 품목당 3,000 NOK 이하)의 국경간 B2C 판매에 대한 VAT를 지불하여야 한다. 외국 회사가 VAT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VAT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VOEC를 위해 마련된 간소화된 등록 절차 또는 기존 일반 등록 절차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VOEC 범위 내 상품은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VOEC 등록업체가 발송한 경우 세관 신고 적용도 받지 않는다.

84) European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 참고.

기타 장벽

우리 국민은 국내에서 발급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노르웨이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운전이 가능하다.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거주허가증을 취득한 장기체류자의 경우, 일시체류자와 동일하게 노르웨이 입국 후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으로 3개월간 운전할 수 있다. 노르웨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을 한 때에 한하여, 필기시험(Theoretical Test)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도로 주행시험(Practical Test)을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야간주행(Night driving) 과정, 응급조치(First aid) 과정, 필기시험과 도로 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러시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재정

주요지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⁹
인구	백만 명	146.5	146.8	146.9	146.8	146.7	146.2	145.6
명목 GDP	십억 달러	1,280.6	1,575.1	1,653.0	1,695.7	1,484.4	1,778.5	2,133.1
1인당 명목GDP	달러	8,724	10,724	11,262	11,555	10,155	12,218	14,665
실질성장률	%	0.2	1.8	2.8	2.2	-2.7	4.7	-2.9
실업률	%	5.5	5.2	4.8	4.6	5.8	4.8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도말 대비)	%	5.4	2.5	4.3	3.0	4.9	8.4	12-13
재정수지 (GDP대비)	%	-3.5	-1.4	2.6	1.8	-3.8	0.4	-0.9
총수출(상품) (경상계정)	억 달러	2,817	3,529	4,439	4,197	3,334	4,938	5,786
(對韓 수출)*	억 달러	86.4	120.4	175.0	145.7	106.3	173.6	-
총수입(상품) (경상계정)	억 달러	1,915	2,384	2,489	2,539	2,396	3,040	2,762
(對韓 수입)*	억 달러	47.7	69.1	73.2	77.7	69.0	99.8	-
상품수지	억 달러	902	1,146	1,951	1,658	937	1,898	3,024
경상수지	억 달러	245	322	1,157	657	354	1,223	2,530
환율(연평균)	루블/US\$	66.90	58.33	62.54	64.73	71.94	73.65	68.1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223.1	367.6	313.8	219.2	58.5	658.8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25.4	285.6	87.8	319.7	94.8	404.5	-

출처: (러시아 통계청/경제개발부/재무부) 인구, 실질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GDP대비)
(IMF WEO) 명목 GDP, 1인당 명목GDP
(러시아 중앙은행) 총 수출입(전망치는 경제개발부), 환율(전망치는 경제개발부), 직접투자
(무역협회) 對韓 수출/수입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 상황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⁸⁵⁾, 러시아 전역에 대한 방역 제한조치 시행(2020.3월말~5월 중순)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면서 2020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하에 재정지출 확대 및 양적 완화를 추진하였다. GDP 3.5% 수준(비예산 조치 포함시 4.5% 수준)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통해 2020.3월말부터 항공·관광·호텔 등 피해분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금융 지원 하였으며, 2020년 초 6.0%였던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4.25%로 인하하였다. 아울러 3세 이하 아동 수당(3개월간)·3~16세 아동 수당(1회)·실직 가정 아동 수당(6개월간)·1.5세 미만 영아 보육 수당 인상 등 양육가정 지원을 확대하였고, 실업 급여 인상·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2분기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 전액 면제(부가세 제외) 등 민생안정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대응 등에 힘입어 2020년 2분기 러시아 GDP가 전년 동기대비 -7.4% 감소한 이후에는 3분기 -3.3%·4분기 -1.3%로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었으며, 2021년 2분기에는 10.5%의 회복세를 기록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하에 2021년도 러시아 경제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 및 억제되어 왔던 민간 소비 증가와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2020년 대비 강하게 반등하며 실질 GDP는 2020년 대비 4.7% 증가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주요 기관들은 2022년도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3.0%대로 예상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85) 브렌트유 가격 \$/b: 2020.1월 63.7 → 3월 33.7 → 9월 41.9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 조치 시행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EU·영국·캐나다·호주·일본 등 서방국가들은 그간 경고해왔던 대로 러시아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핵심 기술·부품 유입 제한 등 수출통제, 러시아산 에너지 등 수입금지, 운송·물류 제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의 배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채택하였다.

첫째, 서방 국가들은 금융분야에서 Sberbank·Alfabank 등 러시아 대형은행 및 러시아 재무부·중앙은행·국부펀드에 대해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러시아의 주요은행을 국제은행간 통신협정(SWIFT)에서 배제하는 등 국제 금융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국채유통을 금지시켰고, 러시아가 해외의 외환보유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여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약 6,300억불 중 절반가량인 약 3,000억불이 동결되었다.

둘째,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산업·기술 품목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수출통제 조치도 실시하였다. 미국은 저사양 반도체·선박 및 항공부품 등 수출통제 조치를 채택하였으며, EU는 이중용도 품목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우주항공 분야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하였다.

셋째,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재 조치도 실시하였다. 미국은 2022년 3월 8일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금지하였다. EU는 2022년 8월 5일부터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고,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금수조치(원유 금수 2022년 12월 5일, 석유제품 금수 2023년 2월 5일 발효)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G7과 호주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가 발효되는 2022년 12월 5일 시행을 목표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⁸⁶⁾를 추진하였다.

86) EU는 제8차 대러 제재(2022년 10월 6일 발표)를 통해 여타 국가들이 상한가격 이내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EU의 해상운송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EU 국가 내 기업들이 이에 대해 운송·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서방국가들은 영공폐쇄 및 입항금지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푸틴 대통령·주요 관료·올리가르히(과두재벌)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 미국의 주요 대러제재 조치

일시	주요 내용
2.24.	러시아 주요은행 제재대상 지정, 대러 수출통제 조치 실시 등
2.25.	푸틴 대통령, 소이구 국방장관, 라프로프 외교장관 등 제재대상 지정
2.26.	러시아 주요 은행 SWIFT 배제 등(VTB 등 7개 은행)
2.28.	러시아 중앙은행 등의 외환보유고 접근 제한, 러시아 국부펀드 제재대상 지정 등
3.3.	러시아의 석유정제에 필요한 수출·재수출·이전을 제한
3.8.	러시아 에너지(석유, LNG, 석탄) 수입 금지 행정명령
3.11.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철회, 다자금융기구(IMF, WB 등) 차입 금지, 러시아 주요 생산물 수입금지 및 러시아로의 사치품 수출금지, 달러화(dollar dominated banknotes) 공급 금지 등
3.31.	러시아 경제의 항공우주, 해양, 전자 분야로 제재 적용범위 확대
4.6.	미국인의 대러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신규 행정명령, 러 최대 금융기관 Sberbank(42개 자회사 포함) 및 러 최대 민간금융기관 Alfa-Bank(6개 자회사 및 선박 5척 포함) SDN 리스트 등재, 재무부의 美 관할 하의 금융기관 자금을 통한 러 국제 상황 불허(4.4.) 사실 확인 등
4.21.	러시아와 연계된 선박의 미국 항구 입항 금지 등
5.9.	목재, 산업기계, 보일러, 모터, 환풍기, 불도저 등 205개 품목을 새로이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여 허가거부 원칙 적용 등
6.28.	러시아 産 금(金) 수입금지 등

◉ EU의 주요 대러제재 조치

일시	주요 내용
1차 (2.23.)	제재대상 추가, 러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금융상품의 매매 및 이들에 대한 투자와 신규대출 금지, 도네츠크·루한스크 주에 대한 제재
2차 (2.25.)	푸틴 대통령 등 제재대상 추가, 러시아 정부·국영기업(군수산업체 포함) 및 러 은행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EU 자본시장 접근 제한·차단, 정유 정제에 필요한 제품·기술의 판매·공급·이전·수출 금지, 항공·우주산업 관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 수출 제한 등
3차 (2.28.)	러시아에 대해 EU 회원국 영공 폐쇄, 러시아 7개 은행(VTB, Bank Rossiya, Otkritie, Sovcombank, Novikombank, PSB, VEB)을 SWIFT에서 배제, 제재대상 추가 등

일시	주요 내용
4차 (3.15.)	WTO 최혜국 대우 철회, 군산복합체를 포함한 주요 러시아 국유기업들과 거래 금지, 러시아 철강 수입금지,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개인·기관에 대한 신용평가 및 유관 서비스 제공 금지, EU産 사치품(차량, 보석류 등) 대러 수출 금지, 이중용도 및 러 국방기술 관련 제품 수출제한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 항공·방산·이중용도·선박건조 분야 주요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5차 (4.8.)	러産 석탄 및 고체연료 수입 금지('22.8월부터), 러 기국 선박의 EU 회원국 항구에 대한 접근 금지, VTB를 포함한 러 주요 은행 4곳과의 거래 완전 금지,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의 육송업자들의 EU 내 활동 금지, 컨테이너 컴퓨터·고급 반도체·제트기 연료·소프트웨어·고사양 전자기기·민감 기기 부속·운송장비 등에 대한 수출 금지, 러産 목재, 시멘트, 비료, 해산물, 주류 수입금지(약 55억 유로 규모), 러 기업들의 EU 회원국 공공조달 입찰 금지 및 러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 차단, 제재대상 추가
6차 (6.3.)	수출통제 파트너국으로 한국과 영국 추가, 러産 원유(2022.12.5.) 및 특정 석유정제제품(2023.2.5.)의 구매·수입·이전 금지, Sberbank, Credit Bank of Moscow, Russian Agricultural Bank 및 벨라루스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은행 SWIFT 배제, 회계, 홍보, 컨설팅 서비스 공급 중단, 제재대상 추가 등
7차 (7.21.)	러産 금(金) 등의 구매·수입·이전을 금지(귀금속에도 적용), 러시아 군사 및 기술 분야 수출 통제 대상 품목 확대, 제재대상 추가 등
8차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4개 지역으로 제재 대상 범위 확대, 러시아의 군사·산업·기술 품목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 실시, 70억 유로 규모 수입제한 조치 실시 등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제재 참여

2022년 2월 28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대러시아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발표하였다. 3월 1일에는 미국 제재대상 7개 은행 및 그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한 후, 3월 7일에는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NWF 및 RDIF), 그리고 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단을 발표하였다. 또한, 3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하였다. 아울러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EU 발표에 따라 조치⁸⁷⁾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87) EU의 SWIFT 배제 대상 러시아 은행 : VTB, Bank Rossiya, Otkritie, Sovcombank, Novikombank, PSB, VEB (3차 대러제재 패키지, 2.28.) / Sberbank, Credit Bank of Moscow, Russian Agricultural Bank (6차 대러제재 패키지, 6.3.)

이와 함께, 2022년 2월 28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전략물자 대상으로는 우리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57개 비전략물자를 대러시아 수출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3월 4일 미국은 한국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시켰으며, 6월 3일 EU는 수출통제 파트너국으로 한국을 추가하였다.

러시아의 제재 대응 조치

2022년 3월 7일 러시아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우리나라 포함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였고,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성 조치 및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여 러시아의 금융경제 및 실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금융 분야 특별경제조치]

첫째, 2022년 3월 1일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거주자에 대한 대출 및 비우호국 거주자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관련 소유권 변경을 수반하는 거래시 특별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고, 특별허가 여부는 ‘외국인 투자통제 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소위원회(재무부 내 설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2022년 2월 28일부터 러시아 거주자 본인 명의 해외 계좌 송금 금지 및 타인 명의 계좌 송금시 5천불 한도 제한, 그리고 비우호국 비거주자 해외 송금 금지 등 조치를 실시하였다. 다만, 동 조치는 4월부터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여 7월 1일부터는 러시아 거주자 및 우호국 비거주자에 대하여 월 100만 달러 한도 내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부터 해외 본인 또는 타인 계좌로의 송금을 허용하게 되었다. 한편, 비우호국 비거주자 단체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해외송금이 금지되었다.

셋째, 2022년 3월 5일부터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외화채무를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특별계좌(C-type)를 통해 루블화로 상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국채(유로본드)를 상환할

때도 해외 채권자 명의 특별계좌(I-type)를 러시아 내에 개설하고 루블화로 환전 지급토록 하였다. 아울러, 러시아 법인(기업)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유로본드) 상환시에는 해외 채권자 명의 특별계좌(D-type)를 국내에 개설하고 루블화로 환전 지급토록 하였다.

넷째, 2022년 2월 28일부터 러시아 거주자(법인, 개인사업자)가 무역거래로 획득한 외화의 80%를 획득일로부터 3일 이내 국내 은행을 통해 매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동 조치는 4월 이후 의무 매각 기간 및 비율을 점차 완화되면서 6월 10일에는 전면 폐지되었다.

다섯째, 2022년 3월 27일부터 러시아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추가 계약을 맺을 경우 선금금 지급 한도를 총 계약 금액의 30% 이내로 한정하였다. 다만 동 조치는 4월 이후 기준을 완화하다가, 7월 20일에 폐지되었다.

[실물경제 분야 대응조치]

첫째, 산업 일반 분야⁸⁸⁾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주요 외국산 장비·물품 부족 대응 및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통제, 비우호국 기업의 철수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러시아 내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 대출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러시아 하원은 비우호국 철수·사업중단 기업 법정관리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5월 24일 하원에서 1회독을 마친 이후 (2022년 12월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둘째, 에너지 분야⁸⁹⁾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자원 무기화 및 외국기업 재산권 제한과 같은 보복적 성격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달러 결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루블화 사용 결제 조치를 강행하였다.

88) 산업 일반 분야 주요 조치 : ▲농기계·공산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한시적 수출 제한 조치('22.3.9, 정부령 제311호, 312호) ▲비우호국 대상 불활성가스 품목 한시적 수출 허가제 도입('22.5.30, 정부령 제987호) ▲비우호국 특허권 및 디자인권 무상 실시('22.3.6, 정부령 제299호) ▲제조업체·혁신중소기업 등 우대 대출 지원('22.4.1, 정부령 제711-g호 등)

89) 에너지 분야 주요 조치 : ▲천연가스(파이프라인가스) 대금의 루블화 결제('22.3.30., 대통령령 제172호) ▲사할린-2 프로젝트 신규 운영법인 설립 ▲('22.6.30, 대통령령 제416호) ▲러 에너지·연료 및 금융 기업 비우호국 보유 지분 거래 금지('22.8.5, 대통령령 제520호) ▲노르드스트림 1을 통한 가스공급 중단('22.9.2., 가즈프롬 발표)

셋째, 농업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내 품귀현상 및 국제가격 급등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제한조치를 추가하였으나, 3/4분기 이후에는 수출업체 요구에 따라 비관세조치(수출쿼터, 수출금지)는 종료하고 관세조치(수출세)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한편, 비료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비료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수출용과 내수용간 균형이 요구되자 쿼터를 연장하고, 주요 비료(질산 암모늄 등)에 대해 수출금지를 한시적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과학기술 분야⁹⁰⁾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의 무화·통신장비 국산화·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 등을 취하였고, 우주분야에서는 영국 위성발사 취소 등 여타 분야와 달리 서방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력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섯째, 해양 분야⁹¹⁾에 있어 러시아는 비우호국 선박에 대한 러 항만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고, 동시에 아조프해 수산기업과 북극항로 화물운송 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치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교통·항공 분야⁹²⁾에 있어 러시아는 외국 리스 여객기 반환을 중단하고 임차료를 무불화로 지불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리투아니아의 제재 품목 운송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칼리닌그라드 지역 운송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야⁹³⁾에 있어 러시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족상

90) 과학기술 분야 주요 조치 : ▲핵심 정보 인프라 기술독립 및 안정 보장 조치('22.3.30., 대통령령 제166호) ▲통신 장비에 대한 국산 판정 포인트제 도입('22.7.18) ▲IT 기업 소득세 면제 등 지원('22.3.2, 대통령령 제83호) ▲정보보안 확보 추가 조치('22.5.1., 대통령령 제250호) ▲영국 OneWeb 위성 발사 취소('22.3.4, 로스코스모스) ▲러시아·유럽 소유주 프로젝트 협력 중단('22.2.26, 로스코스모스) ▲2024년 이후 국제우주정거장(ISS) 프로젝트 협력 중단('22.7.26, 로스코스모스)

91) 해양 분야 주요 조치 : ▲러 국적선박 입항을 제한한 비우호국 선박에 대해 러 항만 입항 제한 조치('22.3.21, 정부령 제418호) ▲외국국적 군함 및 기타 정부 소유 선박의 북극해 진입시 사전 신고 의무('22.8.4, 법안 제176880-8호, 하원 계류 중) ▲아조프해 조업 수산 기업에 보조금 지급('22.4.22, 정부령 제736호)

92) 교통·항공 분야 주요 조치 : ▲외국 리스 여객기 반환 중단 및 임차료의 무불화 지불('22.4월, 항공청 발표) ▲칼리닌그라드 지역 운송 지원

93) 보건·의료 분야 주요 조치 : ▲외국산 의료기기 수출 제한('22.3.6., 정부령 제302호) ▲외국산 의약품 등록

황에 대비하여 등록 및 조달 절차 간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2023년 말까지 수출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경제 상황 및 전망

2022년 2월 22일부터 3월초에 걸쳐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는 러시아 주요 국영은행과의 거래 금지(2.24, 2.28), 외환보유고 동결(2.26), 주요 은행 SWIFT망 차단(3.12) 등 집중적인 고강도 금융 제재를 신속히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루블 환율이 급등하고 러시아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주요 외국계 기업 철수 조짐 등 러시아 경제에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인 2022년 1~2월에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달러당 70루블 대에 거래되었던 루블 환율은 3월 9일 달러당 120루블까지 상승하였으며, 1300~1500선대였던 모스크바 거래소의 RTS 주가지수는 2월 25일 855.87로 급락한 후 시장 안정을 위해 2월 25일부터 거래가 한 달여 중단되었다가 3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거래가 재개되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3~4월 대다수의 기관들은 2022년도 러시아의 실질 GDP⁹⁴⁾가 -10.0%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인 2022년 2월말부터 3월 기간 중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를 통한 환율 방어가 무력해진 상황에서 기준금리 조정, 자본 및 무역거래 통제, 물가·민생 안정 조치 등을 통해 환율 방어 및 경제 불안에 전력 대응하였다.

제재 직후 기준금리를 연 9.5%에서 20%로 인상하였으며(2.29), 이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자 경기 진작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⁹⁵⁾를 인하하였다.

간소화 ('22.4.5. 정부령 제593호) ▲의료기기 조달 절차 간소화 ('22.3.6. 정부령 제297호)

94) World Bank(4.11) -11.2%, EBRD(3.31): -10%, Goldman Sachs(3.21): -10%

95)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경 추이: (2.29) 20.0% → (4.8) 17.0% → (4.29) 14% → (5.26) 11% → (6.10) 9.5% → (7.22) 8% → (9.16) 7.5%

또한, 급격한 자본유출 억제를 위해 일련의 강력한 외환거래 통제 조치를 단행하고 무역 거래를 통해 수출업자가 획득한 외화의 80%를 의무적으로 매각토록 하였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곡물 한시적 수출 금지·펄프 수입 원자재 관세 면제·주요 식료품 가격 통제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한편, 연금·최저생계비·최저임금 10% 인상, 저소득 양육 가정(8-17세 자녀) 보조금 지급, 기업 저리대출 지원 등 민생 안정 및 기업 지원 조치도 병행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경제 제재 하에서 기축통화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차 탈피해 나가기 위해 자국화폐인 루블화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 비중⁹⁶⁾을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중국·인도·튀르키예 및 동남아시아·중남미 등으로 교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로 인해 2022년 2분기부터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지만, 석유·가스·석탄 등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및 러시아 정부의 정책대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제재로 인한 경제에의 충격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재의 충격이 다소 제한적인 원인에 대해 러시아 정책당국의 신속한 통화 안정 조치와 고유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가 제재의 영향이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았고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제재 직후 러시아 정책당국의 신속한 환율 안정 조치와 이후의 완화적 통화 정책 및 재정 지원 등이 제재의 부정적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평가이다

러시아産 석유 수출이 고유가 및 인도·중국 등 수출선 다변화에 의해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세를 주도하였는데, 9월 22일 세계에너지기구(IEA)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수출로 인한 수입

96) 2021년 19.5%, 2023년 25%, 2025년 40%로 확대

은 금년도 상반기 월평균 20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도 월평균 150억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미국·EU·영국·한국 등으로의 금년도 러시아産 석유 수출 물량 감소분의 2/3 가량이 중국·인도·튀르키예 등으로 신규 공급되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유가⁹⁷⁾ 상황이 지속되고 물류 및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세가 확대·지속되었고, 2022년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2,530억 달러로 2021년도(1220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의 확대·지속으로 인해 루블화 환율은 4월부터 안정되면서 제재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루블 환율은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2022년 3월 9일 달러당 120루블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2022년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6월에는 50루블대까지 하락하였으며, 10월 이후에는 달러당 60루블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루블 환율 안정 및 러시아 정부 지원시책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세도 점차 둔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자 물가는 2022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16.7%, 4월 17.8%까지 상승한 후에 5월부터 점차 상승세가 둔화되어 2022년도 물가상승률은 연말 기준 12~13%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루블 환율 안정 등으로 인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도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을 -3.5%~-3.0%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금년도 -10.0%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망치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다.

건설업과 농업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수출지향 제조업(목재·화학 등) 및 중간재 수입의존 제조업(자동차·경공업 등) 부진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광업 부분은 원만한 원유 생산으로 감소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다.

97) 우랄산 유가 추이(달러/배럴) : (2월) 92.2, (3월) 89.05, (4월) 70.5, (5월) 78.8 (6월) 87.3, (7월) 78.4, (8월) 74.73, (9월) 68.25, (10월) 70.62 / (1~10월 우랄유 평균 수출가는 배럴당 79.57달러로 전년 동기 (67.51달러) 대비 17.9% 증가)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1~8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수준 증가하였으며, 2022년 8월 러시아의 석유 생산은 1일 1,059.9만 배럴로 미국 및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저소득층 및 기업 지원, 고용안정 조치 등으로 인해 실업률도 2022년 3분기 3.8%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주요 경제 지표

(전년 동기대비,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1/4	2/4	3/4
실질 GDP 성장률	2.2	-2.7	4.7	3.5	-4.1	-4.0
산업생산 증가율	3.4	-2.1	6.4	5.1	-2.5	-1.3
- (광업)	3.4	-6.5	4.2	7.3	-1.2	0.0
- (제조업)	3.6	1.3	7.3	4.7	-3.8	-2.0
건설업 증가율	2.1	0.7	6.0	4.5	3.5	6.7
농업 생산 증가율	4.3	1.3	-0.4	1.9	2.5	6.2
소매판매 증가율	1.9	-3.2	7.8	3.5	-9.8	-9.1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1.2	-2.0	3.0	-1.2	-0.8	-3.4
실업률(평균)	4.6	5.8	4.8	4.2	4.0	3.8

자료: 러시아 통계청, 경제개발부

IMF 등 주요기관은 금년도 러시아 경제의 실질 GDP 전망을 2022년 초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도 실질 GDP 성장률⁹⁸⁾을 -2.9% ~ -5.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이르러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 EU의 러시아産 원유 금수 조치 및 G7 등의 원유가 상한제가 2022년 12년 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추가적인 수출 제재가 현실화될 시는 2025년에서야 성장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98) 러시아 중앙은행(10.28): -3.0% ~ -3.5%. IMF(10.11): -3.4%. World Bank(10.4): -4.5%, 러시아 경제개발부(9.28): -2.9%, OECD(9.26): -5.5%

서방의 수출 통제 조치 및 외국기업 철수 등에 대응한 러시아 정부 및 기업의 주요 수입 부품 등 공급망 대체선 발굴 및 수입대체 등의 산업구조 개편 과정 또한 러시아 경제의 향후 성장 경로를 좌우할 주요 변수이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러시아 정부의 주요 거시지표 전망은 아래 표와 같다.

❖ 러시아 중앙은행 거시 전망(2022.10.28일)

구분	2021 (실적)	2022	2023	2024	2025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증가율, %)	8.4	12~13	5.0~7.0	4.0	4.0
실질GDP (전년 대비 증가율, %)	4.7	-3.0~-3.5	-1.0~-4.0	1.5~2.5	1.5~2.5
가계소비 (전년 대비 증가율, %)	9.5	-3.0~-3.5	0.0~-3.0	3.5~4.5	1.5~2.5
총고정자본형성 (전년 대비 증가율, %)	6.8	0.0~1.0	-3.0~-7.0	3.0~5.0	1.0~3.0
경상수지 (십억불)	122	253	123	53	15
유가 (우랄유, \$/bbl)	69	78	70	60	55

❖ 러시아 정부 거시 전망 (2022.9.28일)

구분	2021 (실적)	2022	2023	2024	2025
유가 Urals(배럴당 \$)	69.1	80.0	70.1	67.5	65.0
가스 수출가격 1천㎥당 \$	304.6	829.5	700.3	550.3	449.9
명목 GDP 조 루블	131.0	146.1	150.0	160.0	170.6
실질 GDP 성장률(%)	4.7	- 2.9	- 0.8	2.6	2.6
기업이익 조 루블	38.7	35.5	36.8	39.7	43.1
임금 총액 조 루블	29.5	32.8	35.8	38.8	41.6
고정자본투자(%)	7.7	-2.0	-1.0	3.9	3.7
산업생산(%)	6.4	-1.8	-1.3	2.2	2.3
실질임금(%)	4.5	-2.0	2.6	2.9	2.8

구분	2021 (실적)	2022	2023	2024	2025
명목임금(%)	10.6	11.1	9.2	8.2	7.4
실질가처분 국민소득(%)	3.0	-2.2	1.6	2.8	2.5
소비자 물가 (전년 말 대비)	8.4	12.4	5.5	4.0	4.0
환율(루블/\$)	73.6	68.1	68.3	70.9	72.2
수출액 (10억 미불)	494.4	578.6	529.0	522.0	530.4
수입액 (10억 미불)	304.0	276.2	303.3	317.5	330.3
무역수지 (10억 미불)	190.3	302.4	225.7	204.5	200.1
경상수지 흑자 (10억 미불)	122.3	247.2	157.6	134.6	124.5

외국기업 철수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후 러시아에 대한 규탄 여론이 유럽 및 미국 등 서방 세계에서 급속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적 이미지·평판 악화를 우려하여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였다. 러시아 내 생산 공장이 없는 IT, SW 및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기업들은 사태 초기에 철수하였다. 3월 1일 애플 및 미국 영화 배급사(월트디즈니,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유니버설픽처스)가 러시아 내 판매 및 신작 개봉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어 넷플릭스·페이스북·스포티파이 등이 러시아 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신규 사업을 중단하거나 투자를 중단하였다. ING그룹·페이팔 등이 3월초에 사업을 중단하였고, KPMG·PWC 등 글로벌 회계법인도 러시아 시장 철수를 발표하였다.

여타 항공·기계 분야 업체들도 러시아 시장에서 영업중단 혹은 철수를 발표하였지만, 러시아 일반 대중이 해외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철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계기는 주요 소비재 기업들의 철수가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사태 발발 직후인 3월 2일 IKEA는 러시아 내 17개 매장을 폐쇄했고, 6월 16일 러

시아내 4개 공장을 매각하고 사실상 철수하였다. 5월 16일에는 32년 전에 러시아에 진출했던 맥도널드가 철수를 결정했고, 이어 5월 23일에는 스타벅스가 철수를 선언했다. 러시아 내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던 유니클로는 서방 NGO들의 여론에 밀려 결국 3월 11일에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러한 서방 기업의 철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압박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쿨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3월 14일 SNS를 통해, 러시아에서 영업 중인 주요 외국 기업 명단을 공개하며 즉시 떠날 것을 요구하였고,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주요국 의회에서 화상 연설시 해당 국가의 주요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러시아 전략연구센터에 따르면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기업 수는 총 5천 여개 인데 이중 약 70%인 3,527개 기업이 영업중단 또는 완전철수 했다고 하며,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에 따르면 '22년 11월 현재 조사대상인 1,200여개 기업 중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영업 감축·중단 또는 철수를 선언하였고, 철수한 기업의 90%는 비우호국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외국 기업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예상보다 적다는 평가가 있다. 외국 철수 기업을 인수한 러시아 기업이 새로운 상호로 개업하거나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비록 기업은 철수하더라도 서비스와 상품은 러시아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코카콜라와 펩시는 3월 초에 대부분의 상품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11월초 현재 코카콜라·펩시콜라 음료수가 병행수입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맥도널드 및 스타벅스가 철수한 매장에는 브쿠스나 & 토치카 및 스타스커피로 브랜드가 바뀌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KPMG, PwC 등 주요 회계법인들도 상호만 바뀐 채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

외국 자동차 기업 철수 상황

자동차는 서방 제재 및 기업들의 철수로 큰 영향을 받은 대표적 분야이다. 부품 수급 등 문제로 대부분의 해외 브랜드 자동차의 생산·수입이 어려워지면

서, 22년도 1-3분기 신차 판매규모는 전년대비 약 60%가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판매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재고 부족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신차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러시아 내에는 14개 외국 자동차 기업이 생산 활동⁹⁹⁾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부품 수급 등 문제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생산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며, '22년 10월말 현재 6개 회사(르노, 닛산, 포드, 마쓰다, 토요타, 벤츠)는 이미 러시아에서 철수하였거나 철수 발표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4개사(르노, 닛산, 포드, 마쓰다)는 1유로 등 상징적인 가격에 자산을 매각하는 대신 수년 내 동 자산을 재구매 할 수 있는 조건(buy-back option)으로 러시아 정부·정부산하 자동차 연구원·러시아 기존 파트너회사 등과 매각을 합의하였다. 철수를 발표하지 않은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도 부품 수급 등 문제로 사실상 금년 상반기부터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기존에 생산했던 신차 재고도 하반기로 갈수록 소진되었다. 현재 러시아에 남아있는 현대·기아, BMW, 폭스바겐(스코다), 미쯔비시, 푸조, 시트로엥, Haval 등 외국 자동차 기업 중 중국 브랜드인 Haval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생산을 중단하였다.

자동차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는 자국 브랜드 자동차 생산, 중국 브랜드 자동차 CKD 방식 생산, 병행수입 활성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표 브랜드인 LADA를 생산하는 아브토바즈(Avtovaz)사는 내년도 50만대 생산 계획을 밝혔지만, 서방에서 수입해오던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관계로, 에어백·ABS 등이 없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지원 아래 Haval 등 중국 브랜드들의 시장점유율 및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Haval 자동차의 경우 러시아내 신규 크로스오버 모델을 생산하기로 발표하였으며, 러시아 정부는 생산 현지화를 조건으로 동 차량 구매시 대출 우대 등 지원을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외 브랜드의 러시아 현지 생산이 위축됨에 따라, 주변 CIS국가에서 자동차 병행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99) 승용차·경상용차 생산 법인 기준(대형 트럭 생산 업체 등 제외)

서방 주요기업의 러시아 시장 철수 및 생산중단, 첨단 부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자동차 공급부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체 개발을 통해 부품을 확보하여 2024년부터 생산되는 신차에는 에어백·ABS가 장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아브토바즈 사장이 “오토매틱, 4륜구동, 첨단엔진 등도 개발 가능 하겠지만, 많은 투자와 비용이 든다”고 언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관찰되고 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2000년 10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키르기즈공화국·타지키스탄 5국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를 출범시키고,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 중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은 2010년 1월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출범시키고, 회원국간 관세 철폐, 대외 공동관세 부과, 상호 통관수속 철폐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창설 조약에 서명하고, 유라시아 경제통합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1월 1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을 창설 회원국으로 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이 출범하였고, 이어 아르메니아(2015년 1월 2일)와 키르기즈공화국(2015년 8월 12일)이 비준 절차를 거쳐 회원국으로 합류하였다. 2018년 5월에는 몰도바가, 2020년 12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EAEU 옵저버 회원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EAEU는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기존의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구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며, 회원국간 상품·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상호이동 뿐만 아니라, 공동의 거시경제정책 수립, 분야별 시장통합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합을 달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내시장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AEU는 2017년 3월 백서 출간을

통해 역내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제거해 나가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벽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5월에 공동 의약품 및 의료장비 시장을 위한 규칙을 도입하였으며, 2018년 말 의약품 및 의료장비 승인과 안전성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8년 1월부터는 EAEU 통합관세법(The Customs Code of the EAEU)을 적용 중으로, 기존에 각 회원국 별로 이루어지던 통관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조건을 최대한 수용한 EAEU 차원의 통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2025년까지 전력·가스·석유 등 단일 에너지시장, 단일 금융시장 및 단일 운송서비스 시장 구축을 추진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전략적 발전방향’을 2020년 12월에 채택하여 2025년까지 석유·석유제품·가스 공동시장을 출범시킨다는 목표 하에 법적·경제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한편, EAEU는 출범 이후 대외적인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출범 후 처음으로 체결한 베트남과의 FTA는 2015년 5월 서명되어 2016년 10월에 발효되었으며, 양국 교역 품목의 88%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하였다. 2018년 5월 체결된 EAEU와 이란 간의 FTA는 양측 교역의 약 50%에 해당하는 제한된 범위의 관세 양허를 담은 유효기간 3년의 잠정 협정으로, 2022.3월 잠정협정의 유효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되었으며, 2023년부터 동 잠정 협정을 전면적인 협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9년 10월 1일에는 EAEU와 싱가포르 간 상품 FTA가 체결되었으나 현재 발효되지는 않았으며, 서비스·투자 FTA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EAEU와 세르비아 간 FTA 협정은 2019년 10월25일에 체결되어 2021.7.10. 발효되었다.

중국과는 관세 인하를 포함하지 않는 무역경제협력협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8년 5월에 체결되어 2019년 10월 25일 발효된 EAEU-중국 간 무역경제협력협정은 규제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통관 절차 간소화, 협력 관계 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EAEU는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2022년 2월 이후 강화된 대러시아 제재는 EAEU 통합에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 러시아가 EAEU 국가들에 대해 22년 3~6월간 4대 곡물(밀, 호밀, 보리, 옥수수) 수출금지를 실시하는 등 EAEU 통합에 타격도 있었지만, 동시에 서방의 재보험사가 처리를 거부하는 사항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 유라시아 재보험회사(EARC: Eurasian Reinsurance Company) 설립 협정 서명이 22년 8월 EAEU 정부간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등 일정 부분 진전도 관측되고 있다.

한편, EAEU는 소득 수준 등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지표 향상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EAEU의 경제적 지원대상 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한국을 EAEU 관세특혜 부여대상국인 개도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발효되었다.

EAEU의 역내 수급 안정을 위한 무역 조치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EAEU는 역내 필수 재화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의료장비, 식품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화의 제3국 수출을 제한하고 수입관세를 완화하는 등 공동 조치를 취하였다.

2020년 3월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주요 보건의료장비의 역외 수출을 9월말까지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EAEU 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방역 상황의 개선에 따라 6월 13일부터 수급 부족 문제가 없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금지를 해제하였고, 러시아의 경우 산업통상부가 사안별 판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용 개인보호장비 수출을 허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양파·마늘·호밀·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EAEU 이외 제3국으로의 수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2020.4.12~6.30), 해바라기씨(2020.7.1~8.31)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 수출허가제를 시행하였다. 코로나19의 상황의 지속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물가 안정을 위하여, 2021

년에도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계속되었다. 콩 수출세 부과 조치가 연장(2021.2.1.- 6.30.까지 → 2022.8.31.까지)되었고, 밀/옥수수/보리에 대한 탄력적 수출세가 2021년6월2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바라기씨박 및 해바라기유에 대한 탄력적 수출세도 2021년에 도입되어 2023년8월31일까지 시행된다(해바라기씨박 2021.5.1.-2023.8.31.; 해바라기유 2021.9.1.-2023.8.31.).

EAEU 역내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역외 수출제한 조치는 2022년에도 계속되었다. 4대 곡물(밀, 호밀, 보리, 옥수수)에 대한 수출세쿼터(tariff quota)를 2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하였다. 그러나 2월24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3월15일부터는 EAEU를 포함하여 4대 곡물에 대하여 6월30일까지 수출을 금지하였다. 또한, 식물성기름 관련 수출제한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8월31일까지 해바라기씨에 대해서는 수출금지를, 해바라기유 및 해바라기씨박에 대해서는 수출쿼터를 실시하였다. 유채씨에 대한 수출금지는 2023년2월28일까지 시행되고, 콩 수출세(20%)는 2024년 8월31일까지 연장되었다.

한편, EAEU 회원국 정상들은 2020년 4월 14일 최고경제이사회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국제 교역 및 투자의 지속 필요성, 경제 제재의 중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들의 잠정적용 및 위기해제 시 철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식품, 의약품, 의료장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필수물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통관절차(Green Corridor)를 도입하고 확대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의 WTO 가입 및 최근 동향

1993년 6월, 러시아는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후 WTO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1995년 7월 러시아의 WTO 가입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 1998년 금융위기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04년 러시아는 EU, 중국, 한국과 양자 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에는 미

국과도 양자 협상을 타결했으며, 2011년 10월 153개 회원국 중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유일하게 반대해온 조지아가 스위스의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2011년 11월 WTO 가입작업반 공식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①각료결정문안, ②가입의정서안, ③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 ④가입작업반 보고서)가 승인됐고, 2011년 12월 16일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공식 확정되었다. 2012년 러시아는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으며, 2012년 8월 22일부터 WTO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에 따르면, 상품 양허 부분에서 러시아는 수입 관세를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특히 공산품 관세를 평균 9.5%에서 7.3%로, 농산물 관세를 13.2%에서 10.8%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10~15%에서 5~6.5%로, 의료기기의 경우 기존 10%에서 5%로 각각 인하하기로 하였다. 단계적 관세인하 계획 이행은 매년 9월 1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수입관세율은 4.9%를 기록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2012년 WTO 가입시 4년 이내에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 8월 정부조달협정 가입 의향을 WTO에 공식 통보하고 2017년부터 양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14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며, '최혜국(MFN) 대우' 중지 등 각 국가가 자국의 필수 안보이익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EU 등 국가들이 러시아의 WTO 회원국 혜택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는 다자주의 무역시스템을 와해하는 조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는 WTO 일반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런 조치들을 경제 전쟁이라 명명하고, 이는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해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내부 일각에서는 차라리 WTO를 탈퇴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러시아 야당인 정의당 의원들은 WTO 가입으로 러시아 원자재 기업들은 수혜를 입었지만 공산품 시장 개방으로 미국·유럽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다고 비난하며, WTO 탈퇴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수입대체화 정책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이후 수입대체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총리 주재로 ‘수입대체화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러시아 산업통상부 주도로 639개의 수입대체 분야를 지정하였다. 주요 산업의 수입대체화를 위해 산업개발기금(IDF)을 통한 자금 지원, 정부 보조 프로그램 운영, 공공조달 특혜 등을 운영 중이다. 2019년 3월 29일 러시아 연방정부는 산업개발기금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여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9년 산업개발기금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의 총 지원규모는 3,133억 루블(약 50억 달러)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운송 및 특수 공학 기술 개발, 조명 및 섬유 산업, 아동용품 산업개발, 제조용 공구 생산, 전통 소재 및 신소재 생산, 민간 첨단 제조 분야, 민간 산업연구 및 개발, 산업 인프라, 기술 규제 시스템 개발 및 표준화 등이다. 2015년~2016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 결과로, 22개 산업(2,255개 품목)에서 집중적으로 수입의존도를 낮추었으며 2022년까지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6월 6일 승인한 ‘2024/2035년 러시아연방 제조업 발전 종합전략’에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19년 14.3%에서 2035년 17%로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제조업 분야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를 주요 과제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총부가가치 대비 수입 비중을 2024년 45% 이하, 2035년에는 40% 이하로 낮추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산업생산품 수출 목표를 2024년 2,050억불, 2035년 2,900억불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항공, 조선, 의료, 자동차 등 15개 산업 분야별로 국내생산 비중 증대, 수입대체 및 수출규모 증대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여, 전 산업의 수입대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최근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북극개발에 있어서도 수입 대체화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7월 공포한 ‘북극 기업 활동 국가지원법’을 통해 기존 에너지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북극 지역에 최소 백만 루블(약 14,000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으로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북극 내 다양한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20년 3월 ‘북극정책원칙 2035’ 및 2020년 10월 ‘북극 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 2035’ 발표 등을 통해 북극 지역의 경제 개발을 중점 국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동 전략에는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도입, 인프라 투자 시 국가 지원,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장비 확보, 러시아산 장비 및 물품 활용도 제고, 러시아 내 쇄빙선 건조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1년 5월 러시아 상선법 개정에 따라, 북극항로를 통한 자원 운송 사업에서 러시아 내 건조선박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도 북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선박 및 해양설비의 단순 수주 뿐 아니라, 한-러 조선소 간 북극 LNG2 프로젝트용 쇄빙 LNG선 공동 건조 등 다각화된 방식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23개 산업분야, 1,000개 품목을 망라한 신규 ‘수입대체 2.0’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수입대체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대리 수출 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프트웨어,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 수입대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수입 규제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2014년 8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후 금수 조치를 매년 연장하고, 현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서방 농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러시아 대통령령 제725호, 2022.10.11.).

수입 금지 서방산 농식품 품목

분류	주요 품목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 식용설육 등
생선류	활어, 냉장 및 냉동어류, 갑각류 등
낙농품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
채소류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 등(신선/냉장/건조) * 단, 씨감자, 파종용 옥수수 및 콩 제외
과일류	코코넛 및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 및 건조과실 등
육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 품목 등
곡물류 및 기타	맥아엑스 및 관련 전분, 기타 조제품 등

자료 : 러시아 산업통상부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러시아는 WTO 가입과 EAEU 통합관세법 발효(2018년 1월 1일)를 통해 통관 간소화, 통관시스템 전산화 진행 등 통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2020년 러시아의 종합 비즈니스 환경은 28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력 확보(7위), 재산권 등록(12위), 계약 이행(21위), 신용 확보(25위), 창업환경(40위) 등 다수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통관행정 분야에서는 99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통관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출입 국경 통과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OECD 및 러시아 통관서류 및 시간 비교

국가		수출시 소요시간 (Hour)		수출시 소요비용 (USD)		수입시 소요시간 (Hour)		수입시 소요비용 (USD)	
		서류	국경 통과	서류	국경 통과	서류	국경 통과	서류	국경 통과
OECD	2020	2.3	12.7	33.4	136.8	3.4	8.5	23.5	98.1

국가		수출시 소요시간 (Hour)		수출시 소요비용 (USD)		수입시 소요시간 (Hour)		수입시 소요비용 (USD)	
		서류	국경 통과	서류	국경 통과	서류	국경 통과	서류	국경 통과
러 시 아	2020 (99위)	26	66	80	580	43	12	160	400
	2019 (99위)	25.4	66	92	580	42.5	30	152.5	587.5
	2018 (100위)	25.4	72	92	665	42.5	38.6	152.5	587.5
	2017 (140위)	25.4	96	92	765	42.5	96	152.5	1,125

출처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7/2018/2019/2020

러시아에서 통관되는 상품의 분류는 국제 HS CODE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수출입에 있어서는 러시아 기업이 통관책임을 지게 되며 러시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모든 세금을 해당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통관절차는 러시아 거주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선의 소개를 받아 믿을 수 있는 통관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다.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산정은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세관에는 제품별(HS CODE) 최저 단가가 등록되어 있어, 등록된 제품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의 등록을 방지하고 있다. 수입 신고 서류상에 실제 인보이스 금액(Invoice Value)을 기입하여 신고를 하여도 HS CODE를 근거로 러시아 중앙 세관에서 적용하는 세율을 강제로 반영하여 인보이스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신고가격과 러시아 세관이 인지하는 적정가격과의 차이 발생시 서류보완제출에 따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단가 증빙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우선 예치금(Deposit)을 납부하고, 통관한 후 증빙을 통해 예치금을 환급받는 조건부 통관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잡은 화물검사(Inspection)으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발생도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초 수입하는 업체는 초기 1~3회 또는 6개월간 세관 통관 시에 실 화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과정 중 신고된 서류와 실제 제품

상 차이점 발생 시에는 세관 데이터베이스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차후 검사 시에 일정 기간 100%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러시아편), 2017).

러시아 수입 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관세, 인지세, 수입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관세는 제품의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가세와 제품의 무게 및 부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WTO에 가입하면서 당시 평균 10%의 수입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왔으며 최근 러시아 정부는 가중평균된 수입 관세율이 2016년 5.22%에서 2020년 4.49%로 낮아졌다고 발표하였다(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21).

러시아의 관세율은 최혜국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되, EAEU 회원국 및 최빈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 외 최혜국 비대상국은 기본 관세의 200%를 적용한다. 관세 이외에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제품 인보이스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인지세가 있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수입가격의 20%에 해당되는 수입 부가가치세(Import VAT)가 추가된다. 아울러 사치품목과 국민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된 기호상품의 소비 감소를 목적으로 자동차, 보석, 주류, 담배 등 8개 품목에 대해 상품의 수량, 중량, 부피 등에 따른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러시아편), 2017).

○ 러시아 관세율 인하 추이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e)
관세율	7.3	6.1	5.3	4.8	4.9	4.8	4.8	4.8

자료: 러 재무부, Main Directions of Budget, Tax and Customs Tariff Policy in 2020 and Plan Period of 2021 and 2022

(e) : 전망치

○ HS Code별 주요 품목 관세율 변화

H.S. Code	품목그룹	연 평균수입 관세율, %				
		2020	2021(e)	2022(e)	2023(e)	2024(e)
01-24	식료품 및 농업 원료 (섬유원료 제외)	6.03	6.37	6.40	6.50	6.51

H.S. Code	품목그룹	연 평균수입 관세율, %				
		2020	2021(e)	2022(e)	2023(e)	2024(e)
25-27	광물 제품	4.40	4.62	4.64	4.64	4.64
28-40	화학 제품, 고무	4.10	4.30	4.31	4.31	4.33
41-43	가죽 원료, 모피 및 그 제품	11.85	12.14	12.14	12.14	12.14
44-49	목재 및 펄프종이 제품	5.57	5.70	5.73	5.75	5.75
50-67	섬유, 섬유제품 및 신발	7.07	8.14	8.24	8.27	8.30
71-83	금속 및 그 제품	6.68	6.96	6.74	7.12	7.12
84-90	기계류, 장비류 및 차량	3.18	3.47	3.49	3.49	3.49
68-70, 91-97	기타 제품	9.70	9.87	9.88	9.87	9.90

자료: 러 재무부, The main directions of the budget, tax and customs tariff policy for 2022 and for the planning period of 2023 and 2024

세이프가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2018년 8월 열연, 냉연, 도금강판 등의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우리 철강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 조사 과정에서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조사당국에 의견 제출, 공청회 참석, 양자 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9년 8월 조사결과 최종보고서를 통해 열연 제품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고 도금, 냉연제품은 조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열연제품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특별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 초과물량에 대해 20%의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이 조치에서 제외되어 우리 기업들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보조금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이후 수입대체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개발기금(IDF)을 통한 자금 지원, 정부 보조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2015년-2016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 결과로, 22개 산업(2,255개 품목)에서 집중적으로 수입의존도를 낮추었으며 2022년까지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부터 취약한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세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2년 8월 WTO 가입 이후에는 농업보조금 지급 체계를 WTO 농업보조금 규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모든 농업보조금은 생산 및 가격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decoupled) 지급되어야 하므로,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단위별로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러시아는 WTO 가입 시 농업보조총액(AMS)을 2013년 90억 불에서 44억 불까지 감축하고, 품목특정 지원액을 품목불특정 지원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수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WTO 농업위원회에 러시아가 공식 제출한 2020년 농업보조총액(AMS)은 89.5백만 불에 불과하다.

정부조달 장벽

러시아의 공공조달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3,788억 달러로 GDP의 24.4%를 차지한다. 전체 조달시장 중 공기업의 조달 비중이 72%로 매우 높다. 조달 관련 주요 법률은 중앙 및 지방정부 조달을 규율하는 연방법률(No.44-FZ, 2014년 1월 1일 전면개정 시행)과 공기업의 조달을 규율하는 연방법률(No.223-FZ, 2011년 7월 18일 발효)이다.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 절차를 투명화하고 소수 기업의 조달시장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당초 정부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공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추세이다. 모든 입찰공고는 조달웹사이트 (www.zakupki.gov.ru)에 게재

되어야 하며, 동 웹사이트 게재와 병행하여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의 공공조달 방식은 크게 경쟁입찰, 경매, 견적요청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은 공개경쟁입찰·비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2단계 경쟁 입찰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경매, 견적요청 및 수의계약에 의하여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조달법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 진행되는 계약방식은 전자경매를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경쟁입찰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에게 단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및 입찰규정서에 관한 정보를 공지하여 참가토록 하고, 그 중에서 발주기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은 온/오프라인에 따라 일반입찰과 전자입찰로 나뉘지는데 그 진행방법은 동일하다.

전자입찰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 희망자에게 단일정보시스템(<http://zakupki.gov.ru>)을 통하여 전자경매 및 규정서에 관한 정보를 공지하여 참가토록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최저가 낙찰)이다. 경매 방식을 통한 조달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년 결정하며, 경매일 20일 이전에 공식사이트에 경매일자, 장소, 물품 시작가격, 공탁금 등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견적요청은 견적요청의 시작가가 50만 루블을 넘지 않을 경우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연간 조달금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1억 루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견적요청을 통한 의로기기 조달 시 시작가는 300만 루블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계약가격이 30만 루블 미만일 경우 단일공급자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다. 견적요청 역시 단일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zakupki.gov.ru>)에 응찰 정보를 게재하며 응찰서류를 접수하면 발주기관/입찰대행기관이 과거 실적을 검토하여 잠재적 계약자를 발굴해 개별적으로 응찰을 요청하게 된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 합병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여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4월 30일자 정부 결의안을 통해 기계·자동차·경공업 제품·소프트웨어 등 12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내 생산 부재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산 제품 조달 금지를 시행하였으며¹⁰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마스크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공공조달시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021년까지 외국산 마스크의 공공조달을 금지하였다¹⁰¹⁾.

또한 의료 장비, 특정 방사선 제품, 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특정 식품 등의 경우 두개 이상의 러시아 제품이 공공조달 입찰 참가시 외국제품의 조달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입찰시 EAEU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가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사이버 보안 강화 차원에서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통신장비 국산 인정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산 IT 제품의 공공조달을 제한하고 있다(상세 내용은 ‘디지털 무역 장벽’ 부분 참조).

EAEU의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분야
2014년 7월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기계
2014년 8월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소비재
2015년 1월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기계
2015년 2월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의료
2015년 9월	외국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IT

100) https://etpgpb.ru/posts/9688-pravila_natsionalnogo_rezhima_pri_zakupkah_izmeneniya_i_praktika_primeneniya/

101) <https://iz.ru/1104959/2020-12-26/v-rossii-zapretili-goszakupki-importnykh-meditsinskikh-masok-do-kontca-2021-goda>

발표일	내용	분야
2017년 1월	외국산 일부 식료품 구매 제한 법령	식품
2017년 2월	국방 및 보안 제품 제한 법령	국방
2017년 5월	외국산 약품 구매 제한 법령	의료
2017년 9월	외국산 가구 및 목재가공제품 제한 법령	소비재
2017년 12월	의료기기 연방, 지방 조달 제한	의료
2018년 9월	스포츠 소총, 총알, 기타 탄약 및 부품	스포츠
2019년 3월	외국산 공작기계 제품 제한 법령	기계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러시아의 정부공공조달 참여 규제

방법	내용	분류
금지 (Bans)	수입제품 조달 금지	버스, 디젤트럭, 트랙터 등 섬유, 의류 및 신발류 등 방위품
제한 (Restrictions)	수입제품의 조달참여가 가능하나 제한적 (선별적)	의료기기 일부(X-ray 제품 제한) 의약품,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신청 필요 조건 (Admission Requirements)	가격 기준 선별 * 현지제품 가격 기준은 유사 수입제품보다 15% 높게 시작	식품, 가구, 컴퓨터 등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인증제도

2010년 1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 확립에 따라 러시아가 199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던 국가표준규격인 GOST-R¹⁰²⁾ 인증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변환되었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은 관세동맹(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역내 국가의 통합 인증체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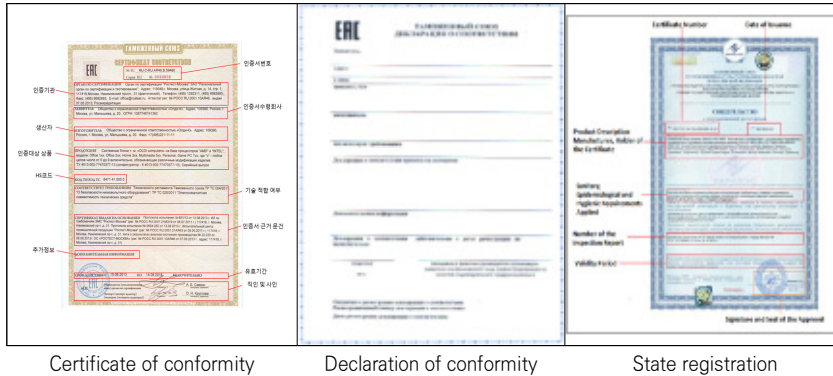
102) 러시아연방 국가표준(State Standards, Gosstandart로도 불림)

아르메니아(2015년 1월), 키르기스공화국(2015년 8월)의 관세동맹 가입으로 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어난 EAEU는 유럽의 인증제도인 CE와 유사한 통합 EAC(EurAsia Conformity) 인증제도를 구축하였다. 유라시아 5개국의 단일 인증제도 구축으로, 러시아의 GOST-R 등 각 국가별로 적용되던 인증은 순차적으로 EAC 인증으로 대체되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 총 47개의 공통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42개의 기술규정이 시행되어 이를 기준으로 EAC 적합성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EAC 인증으로 편입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별 인증제도인 GOST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유라시아 현지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EAC 인증서 발행과 함께 해당 인증서 정보가 5개국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EAEU 5개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서 취득 및 DB 등록이 이루어진 제품은 EAC 마크를 부착한 후 EAEU 5개국으로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

EAC 인증서는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5개국 국가등록증(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 3가지로 분류된다. 적합성 인증서(CoC)는 유라시아 현지 인증시험기관에서의 시험 및 서류 심사, 국내 제조사 공장방문 심사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행되고 DB 등록이 이루어지며, 인증서 유효기간(최대 5년) 동안 매년 1회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 선언서(DoC)의 경우, 유럽연합의 자기적합선언(CE DoC)과 달리, 국내 제조사가 아닌 유라시아 현지 법인(국내 제조사의 현지 지사, 법정대리인 또는 수입업체)이 적합성을 선언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5개국 DB에 등록되어야 한다. 즉, EAC DoC는 EAEU 역외 기업의 직접 발행 및 DB 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관계로, 현지 유라시아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 강제 인증서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국가등록증의 경우, 인증기관이 아닌 국가 기관에서 인증 감독 및 인증서 발행을 담당하며, 제품의 기술규정에서 해당 제품의 국가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U인증 샘플



식품위생 분야(SPS)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 식품 및 농수산물 수입에 대하여도 다양한 보호무역 장치를 발동하여 국내 농어업 보호를 꾀해 왔으나, 2012년 8월 WTO 가입으로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협정을 받아들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WTO SPS 협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목표 달성을 위해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장하면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SPS 관련 업무는 동식물위생감독청 및 소비자권리보호청이 관세선(국경)에서 실질적인 위생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이에 필요한 서류의 진본 여부를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 가입 이전부터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에서 주요 농수산물 교역국들과 상호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정 체결국은 수입국의 위생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상대국에 상호 등록하여야 하고 이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상호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

은 수입국인 러시아 당국이 요구하는 일정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검사증명서를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통 약정 체결국간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과 동물, 식물 및 수산물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위생검역협정(MOU)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세계 각국의 등록시설들은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 홈페이지에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다.

축산물의 경우 러 동식물위생감독청은 2010년 2월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한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4년 한국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후 러시아는 2020년 5월에 한국산 열처리유류 및 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2004년 이후 러시아에서도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여 우리 정부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러시아를 축산물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 대해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러시아 3개 지역(모스크바주, 브란스크주, 상트페테르부르크) 産 쇠고기 수입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품 라벨링 제도 시행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전자이력추적시스템(National Track and Trade Digital System)을 구축하여 상품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위조 상품을 근절함으로써 불법 유통/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을 2017년 12월 발표했다. 동 시스템은 정보유형 4개¹⁰³⁾를 포함하는 코드를 상품 낱개 단위로 부착하고, 그 코드 정보를 디지털 마킹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라벨링 및 이력추적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에 관한 결정, 러시아 정부령 제487-FZ, 2017.12.31.).

103) Global Trade Item Number(GTIN) 14자리, Serial number 13자리, Verification key 4자리, 유효기간

현재는 담배, 모피, 신발, 의약품, 향수, 카메라, 타이어, 유제품, 포장된 물(생수)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제품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는 2021년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광천수(mineral water)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는 2021년 12월 1일부터, 광천수 외 생수에 대한 의무화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2년 11월 1일부터 생수 유통 참여자들은 선적 및 위탁 시 전자문서관리를 사용하고 라벨링 시스템에 관련 정보(규모, 종류)를 전송해야 한다.

라벨링 실험단계에 있는 품목은 현재 6개로 건강기능식품, 맥주 및 맥주음료, 살균소독제, 자전거, 휠체어, 의료장비이다. 맥주 및 맥주음료에 대한 실험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다.

지식재산권

러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개별 법률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 민법 제4부 제7편 지식재산권편’ 내에 총칙,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 품종개발, 집적회로 배치도, 영업비밀(노하우), 상표, 지적활동 결과물의 이용 등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체계와 상이한 러시아의 제도로써, △확대된 선원 불인정 △특허 관련 권리 양도 계약의 서면 계약 의무화 △실용신안의 판단 기준(신규성만 평가) △공개실시권 제안시 등록료 감면 △발명의 단일성 판단기준(위배시 보정 통보만 하고 심사 진행) △‘유라시아특허청’의 특허권 인정 △발명자주의 위반시 무효사유 인정 등이 있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22일부터 W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WTO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2013년 2월부터 지식재산권 문제를 전담하는 법원을 개원하였다. 한편, 2021년 5월에 우리 기업들

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내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개소되었다.

(1) 특허권

러시아민법 제7편 제72장에서 특허권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특허권 신청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가입한 특허 관련 국제 조약으로는 1883년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정, 1973년 특허협약(CONTRACT ABOUT PATENT COOPERATION), 1994년 유라시아 특허 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이 있다.

특허권은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과 법인에게 주어진다.

개인은 러시아 시민, 러시아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 외국인, 무국적자를 의미하며, 만 14세 미만의 개인명으로 특허 발급 신청 시에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으로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법인은 러시아 법인뿐 아니라, 외국법인도 동일한 권한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특허청에 외국인이 직접 특허 등록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발명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고, 실용신안은 5년간 유효하며, 특허권자가 신청할 경우 3년 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장에 대한 특허권은 10년으로 특허권자가 신청 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권의 양도는 특허청(Rospatent)을 통해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차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서 작성, 특허 설명서, 청사진, 도표,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및 도안 제출 후 특허청(Rospatent)의 심의를 거치며, 18개월 후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신청된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발표하며, 특허권을 발급하기 전까지 임시 특허권을 발급한다. 임시 특허권 상태에서 특허권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정식 특허권이 발급 된 이후에 소급해서 특허사용료를 지불한다.

(2) 상호, 상표 등록법

상호는 국가 등록소에 등록 이후 상호에 대한 권리가 주어져지며, 상호권을 지닌 회사는 자신의 상호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상호권은 무기한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 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정 제8조에 따라 협정서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등록이 필요한데, 신청서를 특허청(Rospatent)에 제출하고, 이를 연방 산업재산권 연구소(Rospatent 산하)에서 심의한다. 신청서 제출은 신청인 본인(개인, 혹은 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며, 변리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으나 개인 혹은 법인이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변리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에서 상표에 관한 권한이 주어져지며, 파리 협정 가입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파리협정 가입국에서도 상표에 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후 1달은 특허청(Rospatent)의 형식상 심의단계로서 필요 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 심의로 이 단계에서 상표등록여부가 결정되는데, 등록거부 시 해당 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저작권

러시아 법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누어 문학, 학문, 예술 창작에 관한 권리와 공연, 상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영권 등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고 있다. 러시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유효하며, 저작 인접권은 그 기간이 짧게는 20년,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4)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 대응 조치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국에 속하는 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 · 사업 중단으로 인한 러시아 내 제품 · 부품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3.29.부로 특

정 물품에 대한 병행수입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갱신하는 외국산 상품 목록에 대해서는 러시아 유통업자 등 수입자가 러시아에 등록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우호국 기업의 동의 없이 해당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지재권 침해에 따른 수입자의 책임이 면책된다. 다만, 지재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이 러시아 내 상품 생산 또는 러시아로의 상품 수입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병행수입 허용 상품 목록에서 해당 상품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병행수입 상품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러시아민법 상 국방·안보 및 시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등록된 특허권·디자인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지재권 실시자는 권리자에게 수입의 0.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6.자 러시아 정부령에 의해 비우호국 국적자가 보유한 지재권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없이 무상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금융상의 제한

(1) 외환 및 금융거래상의 규제

러시아는 2003년 12월 10일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외환규제법')을 제정하여 수차례 개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외환규제법상 거주자는 i) 러시아 국민, ii) 영주권 보유 외국인 및 무국적자, iii) 러시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 iv) 러시아 법인의 러시아 역외 지점, 대표 사무소, 기타 부서, v)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소속 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한편, 외환규제법상 비거주자는 i) 러시아 국민, 영주권 보유 외국인, 무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ii) 외국법률로 설립되고 소재지가 러시아 역외에 있는 법인(이하 '외국법인'), iii) 법인이 아니며, 외국법률로 설립되고 소재지가 러시아 역외에 있는 단체(이하 '외국단체'), iv) 러시아에 소재한 외국의 외교

공관, 영사관 및 국가간 또는 정부간기구 산하 해당 국가들의 상주대표부, v) 러시아에 소재한 국가간 또는 정부간기구, 이들의 지사 및 상주대표부, vi) 러시아 내 소재한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의 지점, 대표사무소, 독립적인 조직 내 부서, vii) 국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라 러시아에 등록 외국법인, viii) 외환규제법에서 거주자로 정의된 자를 제외한 모든 자이다.

중앙은행은 대출, 수출입, 서비스제공 등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지급자의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의 문서를 통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환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적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외환 및 금융 거래에 관한 다수의 특별조치를 발표 및 시행하고 있다.

(2) 외환반출에 대한 제한

EAEU 통합관세법 제260조 제1항제7호에 따르면 개인이 세관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금 및 여행자 수표 미화 10,000달러에 상응하는 초과금액을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10,000달러에 상응하는 초과금액을 미신고한 후 적발될시 i) 미신고금액의 0.5배에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과태료로 부과하거나 ii) 위반 대상물에 대한 몰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행정위반에 관한 법률 제16.4조). 다만,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20,000 달러 또는 50,000 달러에 상응하는 초과금액을 반입/반출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외환밀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러시아형법 제200.1조).

(3)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송금 규제

2001년부터 불법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다. 입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죄를 통한 수익 및 테러리즘 자금지원 방지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자금세탁방지법')이 2001년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감독기관은 개인간 600,000루블 이상의 자금거래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은행 등은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 상 개인은 40,000루블 이하의 현금 거래(환전)의 경우 개인 정보 제공 없이 가능하나, 금융 전산거래(비현금거래)의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인 신상정보(성명, 은행 계좌 번호, 납세자 번호 또는 거주지(등록) 또는 체류 장소) 제공이 필수사항이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금융권의 높은 거래 기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원인으로 신용장(L/C) 방식 거래보다 T/T 및 현금거래가 보편적이며, 대부분의 수입업자는 10~50%를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제품이 러시아에 도착 후 지불하겠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당수의 수입업자가 외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L/C 개설만 고집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L/C가 개설된 경우에도 가능하면 개설은행의 순자산규모 등 은행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2013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는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기업이 면허가 취소된 은행에서 발행된 L/C를 근거로 수출을 한 경우에는 수출대금 회수에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도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직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무역보험 가입 등 제반 안전장치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입업자가 관세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갑자기 계약서상이나 인보이스상의 가격보다 저가신고(Undervalue)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때에도 후일 분쟁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거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분쟁 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의 준거법 및 분쟁해결지를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동일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모델명이 다를 경우 별도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의외로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특히, 바이어가 인증(GOST-R 또는 CU인증)을 대행할 경우 비용 지불 주체에 따라 러시아내 제품인증 권한의 주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인증 관련 업무 추진 시 동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바이어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바이어 명의로, 한국 업체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한국 업체 명의로 제품인증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제재 대상 은행

미국 및 EU 등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다수의 러시아 금융기관이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SDN)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들 은행이 비즈니스에 연계될 시 자금 조달이나 송수금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2022년 2월부터 러시아의 주요 은행인 Vnesheconombank(VEB)(2.23일), VTB Bank(2.24일), Bank Otkritie(2.24일), Sovcombank(2.24일), Novikombank(2.24일), Sberbank(4.6일), Alfa-Bank(4.6일)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 OFAC)의 SDN List(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에 등재되어 동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동 은행과 미국인들의 거래가 전면 금지 되었다.

또한, EU는 제3차 대러 제재 패키지(2022.3.2. 공표)를 통해 7개 주요 러시아 은행(Bank Otkritie, Novikombank, Promsvyazbank, Bank Rossiya, Sovcombank, Vnesheconombank(VEB), VTB Bank)을 국제금융통신망인 SWIFT 금융 메시지 시스템에서 차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3.12일 시행), 제6차 대러 제재 패키지(6.3일 공표)를 통해 추가로 3개 은행(Sberbank, Credit Bank of Moscow, Russian Agricultural Bank(Rosselkhozbank))을 SWIFT 시스템에서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6.14일자 시행). 이에

따라 SWIFT 금융 메시지 시스템에서 차단된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결제시스템인 Visa 및 MasterCard社は 러시아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였으며(3.10일) 이에 따라 현지 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Visa 및 MasterCard를 이용한 러시아 외의 지역에서의 해외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러시아 내에서는 카드발급 유효기간까지만 사용 가능).

러시아 중앙은행은 SWIFT망 및 국제결제시스템 차단에 대응하여 자체 개발한 금융메시지 시스템(Financial Messaging System of the Bank of Russia : SPSF, 법인 간 결제 시스템), 고속 결제시스템(Faster payment system : FPS, 개인 간 결제 시스템) 및 자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인 Mir카드의 사용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도에 50개 기관이 추가로 SPSF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9월말 현재 총440개 금융기관이 SPSF시스템을 사용중으로 이중 100개 기관은 외국기관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입기관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러시아의 Mir카드는 2022.10월 기준 한국을 포함한 약 8개국(Armenia, Belarus, Vietnam,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Uzbekistan, South Korea)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튀르키예에서는 향후 제재 리스크 등 우려로 인해 9월말 Mir카드 사용이 중단된 바 있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에 디지털 루블 플랫폼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도에 15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범 테스트 중에 있다. 2023년에는 일부 신용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2024년부터 모든 신용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루블 플랫폼에 단계적으로 연결하고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결제 옵션과 거래량을 늘릴 계획이다. 서방의 금융 제재 상황 하에서 디지털 루블화를 일부 국제 결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조세 체계

(1) 조세 체계

러시아의 세금은 크게 연방세(federal taxes), 주(州)세(regional taxes), 지방세(local taxes)로 나누어진다.

러시아의 기본 세제

구 분	종류 및 세율
연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 일반적으로 20% 세율, 식품 · 유아용품 · 의료용품 · 정기 간행물 등의 경우 10% 부과 · 법인소득세 : 기본 과세율은 20% · 보험부담(2010년부터 기존 통합사회보장제 대체): 피고용자 월평균 급여의 30% 부과, 전액 고용주 부담 · 소비세 : 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 등에 부과 · 개인소득세 : 과세율 13% (2022년부터 연소득 5백만 루블 이상 경우 15%) · 관세, 광물추출세 등
광역단체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자산세 : 최대 2.2%까지 부과 · 교통세 · 오락세
기초단체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세 · 개인자산세

각종 세금의 세율표

세금	세율
부가가치세 (VAT)	20%(일부 식품, 정기간행물, 의료용품, 유아용품의 경우 10%)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표준 과세율 20%(연방예산에 3%, 지역예산에 17% 귀속) * 광역단체의 경우 세율을 자체적으로 4.5%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외국법인), 13%(내국법인) 정부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15%(외국법인), 13%(내국법인)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거주자 : 표준율 13%, 배당소득 13%, 상금 등 35%, 채권소득: 13% 비거주자 : 표준율 30%, 배당소득 15%

세금	세율
기업 재산세 (Organisation property tax)	지방세이며, 기업 재산의 최대 2.2%까지 책정되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2.2%가 적용되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인하·면세도 실시.
토지세 (Land tax)	토지 형태·용도·지역별로 책정하며, 0.3~1.5% 수준임
개인 재산세	개인 재산 가치의 2%까지 책정
교통세	엔진 용량이나 교통수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책정
보험 부담 (Insurance Contributions)	기존 통합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의 새로운 이름, 2012년부터 월평균 급여의 30% 적용(이중 연금보험료는 22%)
오락세	슬롯머신, 갬블링, 도박용 기기 등에 대해 책정

* 법인 소득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FEZ) 입주 기업들의 경우 최대 13.5%(일부 예외 규정 제외)

(2) 개인에 대한 과세

①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러시아내 거주하는 개인과 러시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러시아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개인을 포함한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과세 목적상 러시아 거주자(tax residence)는 최근 12개월간 최소한 183일을 러시아에서 실제 소재한 자를 의미한다(세법 제207조 제2항).

세법상 러시아 거주자에 대해서는 13%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3% 단일세율 적용은 종전법률과 같이 최근 12개월보다는 캘린더 기준으로 1년간 최소 183일 거주한 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목적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의 13%, 상금·보험금수령액·특정범위를 초과하는 이자수입액·기준금리보다 낮게 대출받음에 따른 소득발생 추산액의 35%가 과세된다. 세법상 비거주자가 러시아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나,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외국인지위법’)에 따라 고급전문가 비자(Highly Qualified Specialists)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러시아 거주자와 같은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개인 종합 소득신고는 매년 4월 30일전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은 7월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세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중앙은행 연간 재할인율의 1/300이 미납금에 일단위로 가산된다.

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공제액과 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총소득은 모든 경제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독립경제행위에 따른 소득·자산소득·저금리로 대출받는 등에 따른 소득, 고용주가 지급한 주거비용, 고용주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소득, 고용주로부터 수취한 일정금액 이상의 선물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총소득에서 공제되거나 면세되는 항목은 표준공제, 사회공제, 재산공제, 직업공제(professional tax deductions) 등 4가지이다.

표준공제는 연간소득이 4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달 400루블이 공제되며, 연간 소득이 28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월 1,000루블이 공제된다, 특히 부양 자녀에 대해서는 2자녀까지는 월 1,400루블이 공제되며, 3자녀부터는 월 3,000루블이 공제된다.

사회공제는 납세자의 교육경비, 가족 의료비, 비국가연금기여액 등에 대해 최대 12만 루블의 공제가 가능하며, 24세까지의 자녀교육비, 현금 자선기부금 등에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실정이다.

3년 이상 소유한 주택 매각시 매각소득이 전액 공제되며 3년 미만이라도 1백만 루블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의 경우 자산종류와 보유기관에 따라 공제내용이 달라진다. 정부지급 실업·육아수당·연금, 러시아 정부국채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② 사회보험료

러시아내 모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세법 제426조에 발표된 적용 보험률은 봉급액 전체의 약 30%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보험료는 봉급액의 22%이며 연간소득 1,021,000루블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국가연금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는 월별로 하며,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급여의 2.9%(급여 최대 기준액 연간 912,000 루블)이며 사회보험기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한편, 의료보험료는 급여액의 5.1%이며 의료보험기금에 납부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 러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연금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국적을 지닌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근무할 경우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러 연금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급전문가(HQS) 지위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연금기금	사회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총계
			연방정부	지방정부	
2010년	20.0%	2.9%	1.1%	2.0%	26.0%
2011년	26.0%	2.9%	2.1%	3%	34.0%
2012년이후	22.0%	2.9%	5.1%	-	30.0%
2015-2017	22.0%	2.9%	5.1%	-	30.0%
2018-2020	22.0%	2.9%	5.1%	-	30.0%

(3) 기업에 대한 과세

① 외국기업의 러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 러시아 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은 20%가 대부분이며, 배당금 수입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 국제운송수단의 운용·유지·대여 수입에 대해서는 10% 부과)를 하고 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로열티, 경영 및 특정의 서비스 제공 수수료, 임대 소득, 배당금, 이자 수입, 화물수송 수수료

료 등이 포함되고 있다. 원천징수 책임은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러시아 법인 또는 러시아 내 고정사업장을 등록한 외국법인이 부담하게 되며 소득지급 후 3일 내에 원천징수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벌금은 해당 금액의 최대 20%에 달한다. 외국법인이 대가 수령 이전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국의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임을 신고할 경우 해당조약에 근거한 세율로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10%,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0%, 로열티는 5% 원천징수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다.

② 법인소득세(Corporate profit tax)

러시아 세법은 러시아 내 외국법인과 러시아내 외국법인이 아니더라도 러시아내에서 발생한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세법상 법인세 납세자는 i) 러시아 기업, ii) 고정사업장을 통해 러시아 내에서 영업을 하며,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하는 외국 기업, iii) 연결납세제도에 따른 대표 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러시아 역내는 물론 역외에서 수취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외국법인의 러시아 내 고정사업장 개념은 OECD 모범조세조약(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하다.

수취한 소득에서 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이고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재화의 판매로 얻은 이익(손실)+자본자산·여타 자산·기업 매각에 따른 이익(손실)+비 영업이익-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 산정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직전 4분기의 분기별 평균소득이 백만 루블 이상일 경우에는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

러시아 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은 20%이다. 20%중 2% 상당의 세금이 연방정부 예산에, 18% 상당의 세금이 주(州)정부예산에 배정되고 있다. 다만, 2017-2024년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 중 3%가 연방정부로 17%가 주정부로

귀속된다. 한편,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최대 4.5% 경감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특정한 경우에는 0%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인 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3%, 러시아 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대개 10% 또는 5%로 인하된다. 한편, 러시아내 합작기업(Joint Company)이 외국의 수익자(Beneficiary)에게 지불한 배당금은 외국의 수익자가 러시아 관세기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0%의 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러시아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위해 주식보유기간이 365일 이상이고 배당되는 주식총수의 50%이상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지불하는 기업이 러시아 재무부에서 지정한 off-shore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국제금융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해당 보유기간동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거나, 하이테크기업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법인소득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먼저 기업의 이익 창출하는데 직접 연관된 비용이어야 하며, 둘째로 경제적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적정한 문서로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취득가액이 100,000 루블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은 비용(expense)으로 처리되며, 토지 및 천연자원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광고의 경우 신문, 라디오, TV, 옥외광고, 브로셔, 카탈로그, 전시회 참가 등은 제한 없이 비용공제가 가능하나 여타형태의 광고는 통상 판매수입의 최고 1%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고객접대, 리셉션, 이사회비용 등도 납세자의 총임금지급

액의 최고 4%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특정한 R&D의 경우 결과에 관계없이 완료 후에 비용의 150%까지 공제가능하다. 특별경제구역에 따라서는 R&D 비용발생시 즉각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자공제의 일반 원칙은 동종대출의 20%를 상회하는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고정자산 유지보수, 하자이행, 회수가 의심되는 부채 등에 대한 적립금(reserves)을 유보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러시아 내에서 상품·노동·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사 소비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러시아 및 외국법인(대표사무소 및 지점 포함) 및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율은 2019년 1월 1일 부터 기존 18%에서 20%로 인상되었다.

다음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공공운송(public transport), 주거장비(household utilities), 장례용품
- 보험·재보험·금융서비스, 개인연금서비스
- 자선·기부, 비영리단체에 의한 교육서비스
- 특정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 거주용 주택 및 아파트, 외국법인에 대한 사무실 공간 리스
- 광고목적으로 무료로 공급된 상품의 경우 1개당 100루블을 넘지 않을 경우
- 우주탐사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협력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4) 법인 재산세 (property tax)

과세대상은 러시아내에 동산 또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및 외국 법인과 그 지점 및 대표사무소가 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 및 쇼핑센터, 오피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자산 등과 같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 등록대상상의 가치

가 과세표준이 된다. 건설중인 자산, 재고, 원자재, 상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주정부 세무당국에 의해 0%에서 2.2% 사이에서 결정되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부분의 주정부는 세율 2%를 적용하고 있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의 독점규제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경쟁보호법')에 따라 시장에서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 행위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이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통상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시장점유율로 판단하는데 1개 기업이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로 간주되며, 시장점유율이 35~50% 미만일 경우에도 반독점청이 지배적 지위로 판단하게 되면 독점의 지위가 된다. 시장점유율이 35% 미만일 경우에는 비시장지배적 지위로 간주되나, 만약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유통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와 같이 경쟁법상 근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반독점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정부 기준에 근거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단일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로 지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가격인상 또는 인하와 같은 독점적 가격조정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의 회수조치,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야기하는 계약체결 행위, 특정 소비자

에게 적절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적절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이중가격설정행위, 타 기업의 시장진입과 탈퇴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되게 된다.

불공정 경쟁

러시아 경쟁보호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경제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차별(거짓, 부정확, 왜곡된 정보의 유통) 행위를 통해 다른 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왜곡정보를 배포하여 타 법인에 손실을 주거나 법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타 법인 제품과의 부정확한 비교, 타 법인의 제품, 상표, 로고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법인의 비밀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공표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경쟁법 적용 예외

경쟁법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북극지역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과학 및 교육발전, 기초과학연구수행, 환경보호, 문화발전 및 문화유산 보전, 스포츠 발전, 농업생산, 국방 및 치안,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건 및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독점청에 특혜 제공 목적, 향후 2년간 제공되는 특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독점청은 모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독점청은 이러한 혜택부여가 경쟁제한을 유도한다고 믿을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2달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생산제품의 특성 및 정부정책상 독과점 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시장(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력공급, 철도수송, 운송터미널·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비스)에 대하여는 「자연독점에 관한 연방법률」(제정 1995년 8월 17일, 최근 개정 2017년 7월 29일)에 의거, 자연독점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시장에 대한 높은 장벽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에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2년 8월 22일 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이 일부 완화되었다. WTO가입 협상에 따라 러시아는 11개 서비스 부문, 116개 하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양허했다. 이중 광고, 마켓 리서치, 자문과 경영서비스를 포함한 30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제한조치가 철회된 반면, 파이프라인 운송, 철도, 의료, 국내운하운송,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광물자원의 생산·개발·탐사 등에 관련된 공급, 운반 등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국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러시아 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접근에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다.

WTO 가입일로부터 러시아는 외국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들이 법률, 건축, 회계, 엔지니어링, 보건, 광고, 마켓-경영 서비스, 화물 특송, 도소매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시장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업

러시아 금융산업은 크게 은행업, 보험, 연금펀드, 뮤추얼 투자펀드, 마이크로파이낸싱(저소득층 대출지원펀드), 주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CBR) 발표에 따르면 2021년도 러시아 은행의 자산은 전년도에 104조 루블 대비 약 16% 증가한 120조 루블이며 이는 GDP 대비 92% 수준이다. 2022년 10월 1일 기준 전체 은행 수는 총328개이며 2019년(1.1월) 440개, 2020년(1.1월) 402개, 2021년(1.1월) 366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¹⁰⁴⁾. 자산 기준 러시아 Top 5 은행은 Sberbank, VTB, Gazprombank, National Clearing Center, Alfa-Bank이다.

러시아 Top10 은행 현황

순위	은행명	2022년 2월 기준 (단위: 조 루블)
1	Sberbank	39.1
2	VTB Bank	19.8
3	Gazprombank	8.9
4	National Clearing Center	6.2
5	Alfa-Bank	6.1
6	Rosselkhozbank	4.2
7	Credit Bank of Moscow	3.7
8	Bank Otkritie Financial Corporation	3.4
9	Sovcombank	2.0
10	Raiffeisenbank	1.6

자료 : www.banki.ru

러시아 금융권에 대한 감독 기능은 2013년부터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CBR)이 담당하고 있다. CBR의 역할은 금융 개혁 및 안정화, 국가금융자산 관리 시스템 운영,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화 등이다.

러시아는 현지법인(자회사) 형태의 외국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지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러시아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1% 이상 10% 미만의 주식취득은 중앙은행에 신고로 가능하다.

104) <http://www.cbr.ru/press/event/?id=9710>

외국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무소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3년이며 등록은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영업활동범위는 러시아 경제상황 및 러시아 은행부문에 대한 연구, 국제협력증진으로 한정되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고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러시아 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 중 외국계 은행 수는 170개였으나 2022년도에는 약 63개로 대폭 감소하였다¹⁰⁵⁾. 우리나라 은행으로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조흥은행(현지법인) 등이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었으나 외환위기사 모두 철수하였다. 이후 수출입은행 (2002년 11월), 우리은행(2003년 6월), KEB하나은행 (2008년), 산업은행(2013년)이 각각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 러시아에 재진출하였다.

수출입은행은 러시아 주요은행에 대해 전대자금 한도를 설정하여 러시아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의 수입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은행도 2013년 7월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재개소하여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과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은행 중 우리은행은 2007년 12월 6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기업영업) 라이선스를 획득하였으며, 2008년 1월 9일부터 모스크바에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24일 개인영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모든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1년 9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2014년 10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였다.

KEB하나은행은 2008년 4월에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였으며, 2014년 7월 7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기업영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2014년 9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 은행들은 2022년도 상반기에 약 1.5조 루블 가량(약 25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외환 거래에 대한 제재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05) <https://www.bankodrom.ru/inostrannye-banki-v-rossii-spisok/>

보험업

보험관련 법률은 “러시아연방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2013년 9월 1일부터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보험기관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험기관들을 통합하여 대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부실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소규모 보험회사들을 줄여나가고 러시아 국내 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2017년 보험법 개정과 함께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CBR)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76개의 보험회사가 청산되었다.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보험회사들은 외국의 재보험회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외국에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국제보험시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는 현재 현지법인(자회사)형태로만 러시아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러시아 국내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중 4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의 러시아내 자회사에 대해서는 재산과 연관된 개인보험, 의무 국가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 영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자본 진출에 대한 또 다른 제한은 외국자본이 러 보험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제한이 있다. 현재는 WTO 가입에 따라 그 한도가 50%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전체 러시아 보험회사의 자본중 외국인 지분이 49% 이상인 기업들의 지분의 총합이 전체 보험업계의 50% 이상이 될 경우 규제당국은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EU회원국내 모기업이 있는 러시아내 자보험회사들은 양국 간 협약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라 외국회사의 러시아내 지점설립이 가능해

질 전망이나 그 시점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지 9년이 경과되는 2021년
부터나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러시아내 현지법인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무역보험공사가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두고 대 러시아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보험회사로는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2012년 11월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였다.

주식시장

주요시장은 MICEX(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와 RTS(Russian Trading System)이다. MICEX는 1992년 중앙은행 및 주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외환거래소와 증권거래소로 구성되어있다.

RTS는 1995년에 설립된 주식시장으로서, MICEX와의 차이점은 MICEX 지수는 루블화 표시 지수인 반면, RTS지수는 달러화로 표시된다는 점이다.

2011년 12월 MICEX와 RTS의 합병에 따라 MOEX(Moscow Exchange)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MOEX는 CIS지역 최대 주식시장으로 세계 30대 주식시장 가운데 하나이다.

2021년 2월 말 기준 모스크바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총 210개사로, 시가총액은 7,190억달러 규모이다. 2019년 12월 30일 3,045 포인트로 마감된 MOEX 지수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도세가 본격화되면서 3월 18일에는 2,112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기준 금리 인하 등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여 2020년 12월 30일 3,289를 기록하였다. 2021년 들어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9월 22일에는 4,000 포인트를 갱신(4,030)하였으며, 2021년 12월 30일 종가 기준 MOEX 지수는 3,787 포인트로 2020년 말 대비 약 15.6% 증가하였다¹⁰⁶⁾

106) https://finance.yahoo.com/quote/IMOEX.ME/?guccounter=1&guce_referrer=aHR0cHM6Ly93d3cuZ29vZ2xlLnJ1Lw&guce_referrer_sig=AQAAACuJ3bFjPIPFPMXjzFVI6YgBhtBy8roOFFEmJ_6TqbsWlw iq-9MmasruBdHWXNK08Sq4EPyoMccOh43xx7MdOzWsmg0wdXDKDZfpJ-Ne17UY6Fq3Ldj2MOb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2022.2.24일 MOEX 지수가 2058포인트로 급락하였으며, 이후 2.26일부터 모스크바증권거래소(MOEX)에서의 주식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후 3.24일부터 순차적으로 Sberbank, VTB and Gazprom 등 33개 종목의 일부 주식부터 거래를 재개하였다. 2022.11월 MOEX 지수는 2100~2300 포인트대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2월 28일자로 외국인이 보유한 증권 매도를 금지하였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국금융기관들이 사전 경고 없이 러시아인이 매입한 비우호국 주식에 대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월부터 러시아의 비전문 투자자(별도 허가를 받은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들)들의 비우호국 증권 매입을 제한하였으며(포트폴리오의 15% 이상 보유 금지) 향후 단계적으로 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 산업

보건의료산업 개요 및 규모

러시아 보건산업은 2012년 1월 발효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법(Federal Law No.323-FZ On the Fundamentals of Citizens’ Health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과 ‘국가 사회보건법(No.178-FZ On State Social Care)’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의약품유통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61-FZ On the Circulation of Medicines)’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보건과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 보건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연방보건감독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러시아의 보건의료시장은 의료서비스(약 105억 달러), 의약품(약 312억 달러), 의료기기(약 41억 달러) 등을 합해 약 458억 달러로 추정된다.

러시아 보건의료시장 규모

(단위 : 10억달러, 10억루블)

구분	2018	2019	2020	2021
의료서비스	10.9 (678.0)*	11.1 (723.0)	9.7 (694.0)	10.5 (771.0)
의약품	27.2 (1,694.0)	28.5 (1,859.0)	28.6 (2,037.0)	31.2 (2,295.0)
의료기기	4.6 (287.6)	4.7 (304.9)	4.1 (289.7)	4.1 (304.1)
합계	42.7 (2,659.6)	44.3 (2,886.9)	42.4 (3,020.7)	45.8 (3,370.1)

* ()는 루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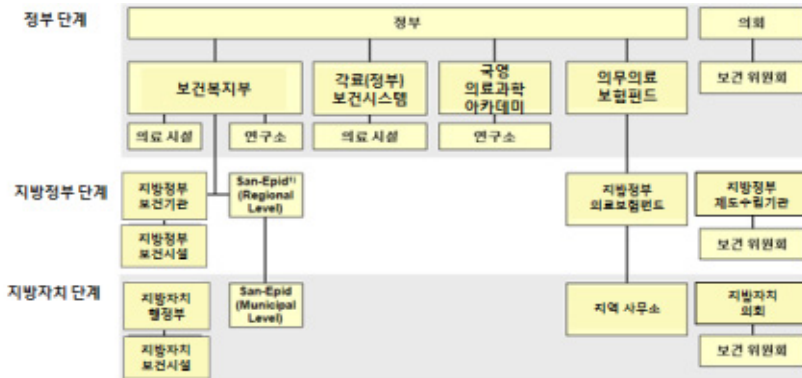
※ 출처 : 러 통계청(의료서비스, 의료기기), DSM 그룹(러 제약시장 조사 전문기관) 보고서(의약품)

환율 : 각 년도 평균 환율(1달러 당 루블 : 18년 62.28루블, 19년 65.23루블, 20년 71.22루블, 21년 73.56루블)

의료서비스 시장

러시아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우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정부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구소련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높은 의료기술과 전문 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의료시설의 82%가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공병원의 긴 대기시간, 복잡한 등록절차, 공공 의료 불신 등을 이유로 민간병원이 선호되고 있으며 해외 의료관광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서부 지역 주민은 독일 · 이스라엘 · 튀르키예 등을, 극동지역 주민은 한국 · 일본 · 중국 등을 주로 방문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공공 부문의 의료비 부담률은 92%로 세계 평균인 52.6%보다 월등히 높다. 러시아 공공병원은 병상 수가 OECD 평균 2배에 가깝지만 최근 운영 효율성 악화 등으로 병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한편, 치과, 안과, 미용성형 분야는 민간병원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내 진출한 외국계 민간병원 또한 증가 추세이다.

○ 러시아 보건 의료 체계 구조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 병원은 American Medical Center(91년 모스크바), American Medical Clinic(93년 상트페테르부르크), European Medical Center (모스크바) 등으로 미국 및 유럽계 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병원장 등 핵심인사에 외국계 의료인력이 포진되어 운영되는 러시아 법인이라는 특색이 있다. 이는 러시아 보건법에서 외국인 의료진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에서 실시되는 정식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러시아 내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설립과 유사한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는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민간병원 현황

- 핀란드 AVA-Peter Clinic(민간병원) : 유럽 클리닉 인지도를 이용하여 러시아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러시아 연방지역에 체외 수정기술 시장 진출 성공
- MNTK Eye Clinic(사립병원) : 러시아 유명 안과의사인 Fyodorov에 의해 설립. 명성을 바탕으로 제휴 지점과 네트워크 확대하여, 연방에서 지방까지 병원 설립 성공
- European Medical Center(EMC, 민간병원) : 모스크바 내 가장 큰 민간병원으로 약 340병상 소유. 외국인 의사(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 진료 홍보. 러시아인 소유지만 외국인 병원 브랜드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

○ American Medical Center(AMC, 민간병원) : 러시아 전국 30여개의 병원*으로 이루어진 그룹. JCI 인증기관으로 대사관, 다국적 기업, 여행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병원. 직접대금결제(Direct Billing)를 통해 주요 유럽 보험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외국 보험사**를 이용한 민간병원 중 성공적인 사례

* 전체 30개 지점 중 18개가 모스크바에 있으며, 건강검진센터, 소아과, 외래환자 진료로 구분

** 글로벌 보험사 bupa, CIGNA, AETNA, 알리안츠, AXA와 협력

한편, 러시아는 자국 내 의료서비스 육성을 목적으로 2015년 6월 ‘국제의료 클러스터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스크바 스콜코보 혁신센터 내에 ‘국제의료클러스터(IMC)’를 조성하였다. IMC 내에서 OECD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러시아 의료서비스 면허 취득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OECD 국가에서 취득한 의료인 자격이 IMC 내에서 자동 인정되며, OECD 국가에 등록된 의료기기 및 의약품도 IMC 내에서 재차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018년 9월 IMC 내에 첫 외국계 병원으로 이스라엘 하다사병원의 건강검진센터가 개원하였다.

의약품 등록(인허가) 절차 및 의약품 시장

러시아 의약품 규제에 관한 중요 법률은 의약품유통법(2010년, 연방법률 제 61-FZ호)이며, 이 법률은 의약품의 개발,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심사, 국가 등록,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조 및 생산, 보관 및 운송, 수출입, 유통 및 판매, 사용 및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러시아의 의약품 허가과정은 ‘의약품 국가등록’이라는 용어로 정의되며, 그 절차를 보건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의약품 등록은 신청서류 제출-서류적합성 확인(서류 부적합시 재제출)-전문기관 심사 및 필요시 보완 서류 제출-보건부 최종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의약품 등록 처리기간은 보건부가 국가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의약품 등록증명서 발급일까지 160일(휴일 제외)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의약품 국가등록을 위한 임상시험은 러시아 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의약품 등록자료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희귀의약품으로 등재 신청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의약품 중 GMP 기준에 따라 임상시험을 해외에서 진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러시아 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보고서 대신에 해외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러시아의 의약품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필수약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의약품 비중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의약품 수입 대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 제약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까지 “2020년 제약 및 의료산업 발전 전략”(Pharma 2020) 정책을 시행하였고 2018년부터 “2030년 제약 및 의료산업 발전 전략”(Pharma 2030)으로 대체되어 실행되고 있다. Pharma 2030의 주요 목표는 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의약품 원료까지 현지에서 생산하고 의약품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제약 분야의 혁신 및 투자 잠재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의료기기 인증 절차 및 의료기기 시장

러시아의 모든 의료기기는 정부 등록 및 인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의료기기의 수입, 유통, 판매 및 운영은 등록 절차를 거친 후 허용된다. 러시아 인증은 매우 복잡한 편으로 통상 바이어나 인증 전문 업체가 인증절차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허가 인증 절차는 수발문서 검사-1차 검사-임상 검사-2차 검사-인증 완료로 구성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후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인증 절차를 단축(2025년 1월1일까지)하였으며 수발문서 검사-2차 검사-인증 완료로 절차를 대폭 단축하였다.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인증 발급 과정이 1년 이내로 단축돼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등록 절차 간소화가 적용되는 의료기기 개별 목록은 관계 부처 합동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대상 품목은 보건감독청 홈페이지¹⁰⁷⁾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방사선 안전보

107) <https://roszdravnadzor.ru/rzn/prerchen-izdelij-po-552-postanovleniyu-pravitelstva/>

호구·혈압계·수혈필터 등 1,617개의 의료기기에 적용되고 있다(22.8.29 기준). 절차가 단축되었다고 무조건 인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증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받기 위해서는 실험실 계약 및 실험 진행, 기술 문서 작성, 기술문서·설명서·법인문서 등 번역 및 공증을 동시 다발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 담당 전문 인력이 없다면 반드시 인증 전문업체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의 의료기기 인증절차 간소화는 서방 제품 수출입 중단의 영향을 최소화해 러시아 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러시아 병원의 82%는 국립병원으로 해당 병원의 의료기기 공급은 공공조달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병원에서 사용하는 X-ray 기기의 33%, 초음파 기기의 24%, 실험 진단기기의 52.7%는 내용연수 10년이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기 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러시아 정부는 의약품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기에 서도 수입대체정책을 시행 중으로 2015년 공공조달제한 외국산 의료기기 목록을 도입한 이후 대상 품목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 337호 결의안에 따라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EAEU 역내 국가 소재 2개사가 입찰했을 경우 그 외 국가의 제조업체는 입찰 참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대러 제재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러시아 정부의 대응 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등록 및 조달 절차 간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수출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대러 제재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대응 조치

조치	주요 내용
외국산 의료기기 수출 제한 (정부령 제302호('22.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우호국가들로부터 러시아에 배송된 외국 의료기기의 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22.3.18~12.31) - 현재 수입업체 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통관 절차 진행 중인 의료기기에도 적용 ※ 한시적 반출 금지 예외 대상 : 외국의 국제 인도적 지원 목적의 의료기기, 국제 운송 상 환송(경유) 제품, 외국에 있는 러시아 군대 보급용, 바이코누르(카자흐스탄) 소재 러시아 기관 보급용, 스피츠베르겐 군도 소재 러시아 기관 보급용
외국산 의약품 등록 간소화 (정부령 제593호('2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수입의약품 및 러시아 내 제조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등록기간을 30일로 단축 - 외국 의약품(러시아에 등록된 의약품)의 원래 포장 상태로 러시아에 수입 가능
의료기기 등록 간소화 (정부령 제552호('2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수입 및 러시아 내 제조 의료 기기 중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 등록 간소화 적용 - 등록 간소화 적용 특정 의료기기기의 경우 등록 기간이 50일에서 22일로 단축, 다른 특정 의료기기의 경우 최대 5일로 단축 * 등록 간소화가 적용되는 의료기기 개별 목록은 관계 부처 합동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방사선 안전보호구, 혈압계, 수혈필터 등 1,617개 의료기기 지정('22.8.29. 기준)
의료기기 조달 절차 간소화 (정부령 제297호('22.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장비 및 의료장비 소모품, 장애인 재활 장비 등에 대해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간소화 절차가 적용되는 계약 가격도 3백만 루블에서 5천만 루블로 상향 조정하고 간소화 절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연간 한도도 1억 루블에서 7억 5천만 루블로 상향
의료기관들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기회 확대 (정부령 제373호('22.3.16) 및 정부령 제346호('22.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선지급금 확대) 국가의무보험 가입 의료기관들이 보다 신속하게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비 선지급에 규모 대폭 확대 - 기존에는 의료기관 월 선지급액이 당해 연도 지급액의 1/12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동 정부령 시행으로 월 지급액 한도를 연간 지급액 수준까지 확대 ○ (구매한도 확대) 국가의무보험 가입 의료기관들의 일부 의료기기(의료기술·실험실·검사용 장비 및 기기 등)에 대한 구매한도(대당)를 기존 10만 루블에서 100만 루블로 확대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입 규모

최근 4년간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러 총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9월말 기준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분야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약 2억 3,784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하였다. 세부 품목별로는 의료용기기 수출액 약 9,456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의료용전자기기 수출액 약 5,782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 X선 및 방사선기기 수출액 약 4,644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 의약품 수출액 약 3,813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분야 대러시아 수입액은 약 707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하였다. 세부 품목별로는 의료용기기 수입액 약 95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 의료용전자기기 수입액 약 67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 X선 및 방사선기기 수입액 약 9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64.9% 감소, 의약품 수입액이 약 535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

폐차세(Utilization Fee)

2012년 9월 1일 러시아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신차·중고차에 대해 폐차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폐차세는 차량의 폐차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는 일종의 환경분담금 성격의 세금이다. 도입 초기에는 수입차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까지 모두 부과하고 있다. 부과 세금은 차종별 책정된 기본 부과금에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책정된 부담금 지수를 곱해서 산출되며, 러시아 정부는 기본 부과금과 부담금 지수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폐차세 기본 부과금은 승용차 2만 루블, 화물차 15만 루블이다.

현지 생산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일정 비율로 폐차세 환급 지원을 하고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는 5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차량생산자 및 그 자회사들에 대해, 2022년 1~3분

기에 납부해야 하는 폐차세를 4분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 해당 기업이 제재 대상일 경우, 2021년 4분기 납부액까지 2022년 4분기로 유예가 가능하다.

기후 변화 대응

2021.7월 푸틴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 №296-F3호(Federal Law on Limiting Greenhouse Gas Emissions)에 서명,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법안에 따라 2023.1월부터 온실가스 연 15만 톤 이상 배출 기업, 2024.1월부터 연 5만 톤 이상 배출 기업은 생산 및 기타 활동의 결과 발생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량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동 법은 의무 보고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동 법안 내용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한 관련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legal persons), 개인사업자(individual entrepreneurs) 또는 개인(individuals)은 온실가스 감축 등 자체 기후 프로젝트를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동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기후 프로젝트 이행 결과에 따른 감축량은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 등록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평가시 기후 프로젝트 이행에 따른 감축분을 감안할 예정이다.

상기 법안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사전 실험으로 2022년 들어 사할린 지역의 배출권 거래제 실시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3월 러시아 연방의 특정 주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험을 위한 연방법 №296-FZ호(Federal Law on Conducting an Experiment to Limit Greenhouse Gas Emissions in Certain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8월에는 2023.1월~2028.12월간 유효한 정부령을 통해 사할린 지역 내에서 킬터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징수하기 위한 구체 사항을 규정하였다. 수수료는 킬터를 초과한 배출량에 비례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1톤 당 1,000루블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러시아는 「개인정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개인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자동처리 시 개인 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협약」 당사국 및 동 협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국가(관련 법령으로 해당국가 목록 승인, 한국 포함)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동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러시아의 헌법질서 기초, 공중도덕과 건강, 시민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방 및 국가 안보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그 외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개인정보주체가 정보 이전에 동의한 경우, ▲러 연방의 협약에 규정된 경우, ▲러 연방의 헌법질서, 국가안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 ▲개인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수행 목적인 경우, ▲개인의 생명, 건강, 기타 중요 이익 보호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데이터의 국외이전 제한

러시아는 「국가기밀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또는 국제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해당 국가기밀 정보 보호 관련 부처간위원회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밀은 군사, 외교 정책, 경제, 방첩 작전 및 수색활동 분야의 정보로써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해당 정보가 확산될 경우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에 해

를 끼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며,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러시아 연방 및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도 포함된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 2021.9.30. 「외국,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외국단체, 외국 시민 또는 무국적자에게 수집되는 경우 러시아의 국가보안에 반하여 이용될 수 있는 러시아연방 군사 및 군사기술 활동 분야의 정보 목록」명령¹⁰⁸⁾ 공표를 통해 국가기밀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이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동 명령에 따르면, 무기 샘플, 군사장비, 특수장비에 적용되는 양자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술, 정보의 암호화 보호기술에 관한 데이터, 군·군사조직·특수기관·방위산업체의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납품 및 정보보호 프로그램 정보 등과 같이 주로 무기나 국가우주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군사기술 활동 분야의 광범위한 정보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컴퓨팅설비 위치 제한

러시아는 2014.7.21.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처리절차 확립에 대한 개별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현지화 규정을 도입하여 2015.9.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을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제18조 제5항에 따라 2015.9.1일부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내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상기 법률들은 러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내에 저장·보관(data localization)토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021년 8월에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미국의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및 메신저 왓츠앱에 대해 러시아 이용자 정보를 러시아 내 저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총 50만불 규모의 벌금 부과 판결을 한 바 있다.

108)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109300048>

다만, 러시아 연방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는 러시아 내 데이터저장서버의 현지 구축 요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처리절차 확립에 대한 개별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은 개인정보를 기본 데이터와 서버 데이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백업용 서버 데이터로써 러시아인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외에 동시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의무 부과

러시아는 2021.7.1.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연방 법률」을 제정하여 러시아 연방 내에서 러시아 국민과 외국인의 활동에 대한 동등한 조건을 확립하고자 러시아 내에서 인터넷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러시아 연방의 법률이 규정한 요건과 금지·제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하루에 5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이용자를 가진 해외의 정보자원 소유자들은 러시아 연방에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 설립을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언론감독청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 웹사이트에 계정을 등록하여 러시아 개인 및 단체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한 전자 양식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통신장비 국산화 등의 국산화 정책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각종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2022.3.30.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핵심 정보인프라 기술독립 및 안전 보장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2022.3.31.부터 공공기관·공기업 및 그 자회사들은 관계당국과 협의 없이 핵심 정보인프라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산 소프트웨어 구매를 할 수 없으며, 2025.1.1.부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은 소속 핵심 정보인프라에서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2022.5.1.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정보 보안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조

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2025.1.1.일부터 정부기관, 국영기업, 연방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타 조직, 전략 기업 및 주요 정보인프라를 다루는 조직은 비우호국 기업에서 생산된 정보 보안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국산 통신장비(기지국, 교환기, IoT, 안테나, 레이더 장비 등) 인정에 대한 평가제도(국산 판정 포인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산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설계 및 기술 문건에 대한 모든 권리 보유, ▲상표와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대한 독점권 보유, ▲러시아 내 자체 또는 위탁생산기지 보유와 보증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센터 보유가 필요하게 된다.

수산 무역·투자

외국인 투자 제한

러시아는 어업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외국의 투자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어업분야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절차법」을 개정(‘21.7.2 공포)하였다. 개정 법률은 ‘해양생물자원의 포획’을 전략산업으로 명시하고 ▲수산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을 기존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축소, ▲법률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업 지분의 25% 이상 50% 미만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에 대한 지배권 승인 신청서를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투자 지분을 25% 미만으로 축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법정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어업합작법인(신고업체 10개사, 2022.10 기준)은 2021년 법률 개정으로 대부분 지분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한편 2022년에는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추진되었다. 2022년 10월 개정된 법률(연방법 제389-FZ, 2022.10.7.)에

서는 전략산업의 범위를 ‘해양생물자원의 포획’에만 한정하지 않고 어업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산생물 생산뿐만 아니라 어획을 보관·운반·하역 및 가공·제품 생산 모두가 외국인 투자 통제대상이 되었다.

수산생물자원 이용세

러시아 정부는 「세법」 제2부 제25.1장에 따라 수산생물자원을 이용자에게 톤당 정액으로 세금(연방세)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과 북부지역에서 어획되는 주요 품종을 중심으로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이용료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수산생물자원 이용료는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인상되며, 2023년부터 인상된 이용료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이용료가 인상되는 품종은 명태, 킹크랩, 태평양연어 등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우리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주요 품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투자 어획쿼터제

러시아 정부는 수산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수산생물 자원의 어획 및 보존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하여 신규 수산가공공장 건설 및 러시아 조선소에서 신규어선을 건조하는 투자자에 대해 쿼터를 추가로 배정하는 새로운 유형의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전체 어업쿼터 중 일부를 과거 어획이력에 따라 배정하고, 잔여 쿼터를 어선건조 또는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의무를 이행할 경우 추가로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경제 제재로 서방의 기술 및 장비 지원 등이 중단되면서 투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 완료 기한을 당초보다 최대 2년 연장하는 법안을 2025년 5월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서방 제재로 투자사업 추진 지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투자쿼터제를 통해 자국 수산업의 인프라 현대화와 생산량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평가하고 현재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물 자원 어획 및 보존에 관한 연방법」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다.

2단계 사업은 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수산가공단지 건설로 확대하고 크랩(crab)에 50%를 적용했던 경매방식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의 주요 제재 대응조치

금융 분야 특별경제조치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인해 외환보유고를 통한 환율 방어가 무력해진 상황에서, 외국 기업 및 투자자의 급격한 철수와 자금회수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거래에 관한 강력한 특별조치를 단행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22.2.28일부터 외환 규제에 관한 일련의 특별조치(대통령령) 및 러시아 중앙은행 공표를 통해 비우호국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비우호국 비거주자와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거래 제한(특별 허가 절차 신설), 해외 송금, 외화 현금 인출, 외화 매입, 외화 현금 해외 반출, 수출업자의 외화 의무 매각, 외국인과의 계약시의 선급금 지급 제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외환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2022.3.5일 No.95. 대외채무 지불을 위한 임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을 신설하여 러시아 정부 및 기업의 대외채무 상환을 외화가 아닌 원칙적으로 자국화폐인 루블화로 상환토록 의무화하면서, 특히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대외채무 상환시는 러시아 국내에 해외채권자 명의의 C-타입 루블화 특별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채무이행을 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C-타입 루블화 특별 계좌는 인출이 불가능하며 단지 세금 납부, 러시아 국채 매입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 재무부나 러시아 중앙은행의 허가가 있을 시는 해당 외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러시아 거주자의 해외로의 자본 유출 뿐 만이 아니라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에 속한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러시아 외로의 자본 유출을 제한하는 대응 조치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러시아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개 인	법정 단체
러시아 거주자	러시아 국적자 및 영주권자	현지에 등록된 법인
러시아 비거주자	외국 국적 소지자	현지 법인 외의 단체 * 현지 등록된 대표사무소/지사. 외교 조직, 외국 등록 법인 등

* 2.28일부터 시행된 일련의 특별조치 사항에 적용되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 근거 규정: ▲러시아 정부 통화 규제 및 통제법, ▲러시아 중앙은행 지침

다만,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2022년 4월 들어 루블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서자 모스크바 거래소에서의 외화 매입시의 커미션을 폐지(4.11), 1만달러 한도 내에서의 달러화 외의 유로화 예금의 현금 인출도 허용(4.11), 개인의 외화 현금 제한 완화(4.18) 등 단계적인 외환 규제 완화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분야별 러시아 거주자 및 러시아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주요 분야별 외환 규제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특별 허가 절차 신설

러시아 정부는 No.81. 러시아 금융안정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한시적 경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3.1)을 통해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비우호국 비거주자와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관련 소유권 변경을 수반하는 거래 등의 경우에 사전에 특별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특별허가 여부는 ‘외국인 투자통제 위원회’ 산하의 러시아 재무부 내에 신규 설치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특별허가 도입 이후 소위원회 결정 및

후속 법령에 따라 비우호국 비거주자와의 다음 거래 시에는 특별 허가 절차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게 되었다.

-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비거주자와의 개인간 부동산 소유권 변경 거래(다만, 비우호국 외국인사가 러시아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매각시에는 매각 대금은 C-타입 루블화 특별 계좌로 입금되어야 함)
-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의 공동 지분 참여
-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러시아 법인(기업) 25% 내의 지분 획득 및 비우호국 비거주자가 지배력을 보유한 러시아 법인의 추가 지분(또는 채권) 매입
- 비우호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무상 부동산 소유권 변경 거래
-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통제 하에 있는 러시아 거주자에 대한 루블화 신용 및 대출

러시아 수출업자의 외화 의무 매각

러시아 정부는 No.79, 미국 등의 비우호적 행위 관련 특별경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2.28)에 따라 러시아 거주자(법인·개인사업자)가 대외 무역거래로 획득한 외화의 80%를 획득일로부터 3일 이내 국내 은행을 통해 매각토록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약 6300억불 가량의 외환보유고 중 약 3,000억불 가량이 2월말 미국과 EU 등의 제재로 인해 동결(2.26, 2.28)되면서, 외환보유고를 통한 루블화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자 무역을 통해 획득한 외화의 국외 반출을 제한함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내려진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4월 이후 루블 환율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의무매각 기간·비율을 점차 완화하기 시작하여 5월에는 매각 대금 비율이 50%로 완화되고 매각일이 외화 획득 후 12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6.10일에는 전면 폐지되었다.

해외송금 제한

러시아 정부는 2.28일부터 러시아 거주자 및 비거주자 개인 및 단체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였으며 이후 4월부터 외화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이를 점차 완화하였다. 개인 및 단체의 해외송금 제한 조치는 아래와 같다

개인의 해외 송금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러시아 거주자 본인 명의 해외 계좌 송금 금지(2.28), △러시아 거주자의 타인 명의 해외 송금 5천불 한도 제한(3.5) △ 비우호국 비거주자 해외송금의 3월말까지 전면 금지 및 우호국 비거주자는 3월달 5천불 한도 제한(3.1)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4월부터 이를 점차 완화하여 왔다. 4월 이후의 완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동 제약 조치들은 2022년 9.30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2023.3.31.일까지 연장되었다(9.29).

- 4.1일부터 월 1만달러(비우호국 개인은 현지 근로자에 한정)로 한도 상향
- 5.16일부터 비우호국 비거주자는 근로소득(또는 서비스 제공 대가)에 한해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부터의 해외송금(루블화 또는 외화) 허용 (러시아 내 근로하지 않는 비우호국 비거주자는 제외)
- 6.8일부터 러시아 거주자 및 우호국 비거주자는 월 15만 달러 한도(여타 외화시 15만 달러 상당액)내에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부터 해외 본인 또는 타인 계좌로의 송금 허용
- 7.1일부터 러시아 거주자 및 우호국 비거주자는 월 100만 달러 한도(여타 외화시 100만 달러 상당액)내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부터 해외 본인 또는 타인 계좌로의 송금 허용

단체의 해외송금의 경우 러시아 거주자(법인) 단체, 우호국 비거주자 단체의 해외 송금 제약은 없으나, 비우호국 비거주자 단체는 3.1일부터 해외 송금이 금지되었으며 동 제약조치는 2022년 9.30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2023.3.31.일까지 연장되었다(9.29)

한편, 비우호국 비거주자(개인·단체 모두)는 러시아 브로커 계좌로부터의

해외송금 또한 금지되었으며(4.1), 러시아 거주자가 러시아 법인(기업)에서 수취한 수익 분배 자금(주식 배당금 등)의 해외 본인 계좌로의 송금 또한 외국인 투자통제위원회의 허가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7.5)

외화 현금 인출 및 해외 반출 제약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및 단체의 외화 현금 인출 제한하였다. 이는 서방의 추가 제재 직후의 루블 환율의 급격한 하락, 러 주요 은행에 대한 EU의 SWIFT 차단과 함께 시행된 EU 지역로부터의 러시아로의 유로화 현금 반입 금지 조치(대러 제재 3차 제재 패키지, 2022.3.2),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 제약, 미국의 추가 제재(3.11일)에 따른 러시아로의 달러화 현금의 유입 금지 등으로 인해 현지에서 외화 예금에 대한 현금인출 수요가 폭증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은 개인의 경우에는 2022.3.3.9일-2023.3.9.일 간 2022. 3.9일 이전에 예치된 외화 예금에 한하여 1만 달러 한도 내에서 달러화 또는 유로화(4.11일부터 추가로 인출 허용) 현금으로 인출 가능토록 하였다. 적용기간은 당초에 2022.9.9.일까지 설정하였으나 이후 8월 들어 2023.3.9.일로 시행 기간을 연장하였다. 2022.3.3.9일 이전에 은행에 예치된 외화는 외화 종류에 상관없이 달러화 및 유로화로만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1만 달러 한도 초과 시는 루블화로 환전하여 인출 가능하다.

개인 일반 고객 외의 단체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러시아 거주자인 단체(법인)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22.3.10일~2023.3.9일 동안 해외 출장시에 한해 4종 외화(달러·엔·파운드·유로)에 대해 5천 달러 한도내에서만 현금이 인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비거주자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는 4종 외화 인출을 금지하였다. 다만, 4종 외화 이외의 외화 현금 인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당초 적용기간을 2022년 9.9일로 하였으나 이후 8월에 적용기한을 2023.3.9.일로 연장하였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No.81, 금융안정을 위한 추가적·한시적 경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3.1)을 통해 2022.3.2일부터 외화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의

해외 반출 한도 또한 1만 달러(여타 외화시 1만 달러 상당액)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거칠 경우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2022.10.15.)

외화 신규 매입 제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 현금 인출에 대한 제한과 아울러 시중은행을 통한 신규 매입도 제한하였다.

개인의 경우 시중은행을 통해 외화 현금을 매입하는 것을 2022.3.9.일~2023.3.9.일까지 금지 하였으며, 비우호국 비거주자 단체(공관·대표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3.27일부터 러시아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 매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다만, 개인의 경우는 2022.4.18일부터 외화 현금 매입을 완화하였으나 전제조건으로 시중 은행이 2022.4.9일 이후 매입한 외화 현금 보유분에 한하여 개인의 외화 현금 매입을 허용하였으며, 2022.5.20일부터는 달러 및 유로화 외의 여타 외화의 경우는 시중은행의 해당 외화의 현금 매입 시점과 관계없이 외화 현금 매입을 허용하였다. 당초 적용 기간을 2022.9.9.일로 하였으나 8월 들어 2023.3.9일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하였다.

선금금 지급 한도 규제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3.27일부터 러시아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i)서비스 공급, ii)작업 수행, iii) 지적활동 관련 정보 및 결과물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시 지급할 수 있는 선금금(선결제) 한도를 총 계약 금액의 30% 이내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2022.4.1일부터 1.5만달러 미만 계약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i)금융 서비스, ii)러시아 국적 운송수단의 운영·유지 관련 서비스, iii)국제운송 및 철도차량 제공 서비스, iv)물류 서비스 등은 예외를 허용하고 4.16일부터는 비거주자에 의한 관광·여행 서비스 등도 추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22.7.20.일에는 이러한 선금금 지급 한도를 전면 폐지하였다

대외채무 상환 규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의 서방의 주요 금융기관 제재 조치, 외환 보유하고 동결, 외국자본 철수 등에 따른 대외 채무 디폴트 상황을 피하는 동시에 비우호국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No.95, 대외채무 이행을 위한 임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3.5)을 시행하였다.

동 대통령령에 따를 때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외화 채무 이행(월 천만 루블 이상 상환시)시에 비우호국 채권자 명의 특별계좌(C-type)를 국내에 개설하고 해당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토록 의무화하였다. C-type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납세 등 법정 의무 이행, 러시아 국채 및 회사채 매입 등에 국한하여 사용토록 제한된다.

이러한 우호국 비거주자에 대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채권 발행 및 대출 계약에 따른 상환은 물론이고 이후 일련의 대통령령 등을 통해 ▲배당금 등 이익 배분, ▲부동산 매각 대금 지급, ▲보증 채무 이행시 등에도 적용하도록 적용 대상 거래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동 대통령령은 러시아 거주자가 러시아 중앙은행 또는 재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C-type 계좌 이용 없이 해당 외화로 상환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통령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재무부는 국가부도(Sovereign Default) 상황을 피하고자 美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의 일반허가(러시아 연방 재무부는 2022.5.24.일까지 달러화로의 부채 상환 허용) 하에서, 일반허가 만료 이전 지급 도래한 러시아 정부의 유로본드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해 계약상의 통화인 달러화로의 지급을 이행하여 왔다.

한편, 러시아 재무부는 美 OFAC이 러시아 정부의 채무상환에 관해 2022.5.24일까지 허가한 일반허가의 갱신이 어려울 것으로 사전에 예상하고 일반허가 만료 이전에 러시아 정부의 2022.5.27일 지급도래분 유로본드에 대해

해당 외화(달러화 및 유로화)로의 조기 상환을 시도하였으나 자국의 채무상환을 위한 지급대행기관인 러시아의 증권 중앙예탁결제기구인 NSD(National Settlement Depository)을 통해 국제예탁결제기구(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로 송금한 상환 자금은 최종적으로 채권자에 도달하지 못하고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동결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美 OFAC의 5.25일 일반허가의 미갱신으로 인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달러화 송금이 차단된 것과 아울러 EU의 제6차 대러 제재 패키지(6.3일 공표)와도 연계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유로본드의 지급대행기관인 러시아 증권중앙예탁결제원(National Settlement Depository : NSD)이 EU의 제6차 대러제재 패키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EU 지역에 보유한 모든 해외 자산이 동결되었고 이에 NSD는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유로화 거래를 중단을 선언하였다(6.3일). 이로 인해 NSD를 통해 유로화 예금 및 증권을 EU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한 러시아 시중은행·투자회사 등 고객의 유로화 자산이 동결됨과 아울러 NSD를 통한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유로본드 채권에 대해 해외채권자에 대한 유로화로의 상환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No.394. 외화표시 러시아 정부 국채의 거주자와 외국 채권자에 대한 상환을 위한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6.22)을 신설하여 2022.6월말부터 지급 도래한 외화 표시 유로본드 국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해외채권자 명의의 계좌를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지급통화를 루블화로 변경하여 상환을 시도하고 있다.

신설된 대통령령(No.394)은 해외채권자 명의의 특별계좌(I type)를 NSD에 개설하고 외환시장 환율을 적용하여 루블화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정부의 대외 채무를 상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채권자는 루블화로 수령한 자금을 러시아 국내 외환시장에서 해당 외화로 환전 후 해외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루블화 상환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NSD 또는 지정된 러시아 국내 은행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외화 송금 실패(2022.5.27.일 지급도래분) 및 6월 이후의 루블화로의 채무 상황에 대해 서방 언론(Bloomberg, 2022.6.27.일자 보도) 등은 러시아 정부가 국가부도(default) 상황임을 거론하였으나 러시아 재무부는 제3자의 방해로 인한 해당 외화로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러시아의 귀책이 아니며 이에 따라 디폴트 상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한편, 공식적인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의 디폴트(default) 판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채권자들 또한 현 상황을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해외채권자의 루블화로의 상환 신청이 매우 유보적인 상황이며 이는 러시아 재무부가 대러 제재 하에 놓인 상황에서 해외채권자들이 러 재무부와와의 접촉에 대해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2022.9.30)

한편, 러시아 정부는 No.529. 외화예금 계좌 약정 및 유로본드 상환 의무 이행 임시절차에 관한 대통령령(2022.8.8)을 신설하여, 러시아 법인(기업)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유로본드) 상환시에도 해외 채권자 명의 특별 계좌(D-type)를 국내에 개설하고 루블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D-type 계좌로 입금된 루블화의 외화로의 환전 및 채권자로의 해외 송금은 별도의 특별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규 발행한 루블화 채권으로 기 발행한 유로본드 채권을 대체하거나 신규 발행한 루블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루블화)으로 대외 채무를 상환하는 것 또한 허용하고 있다.[No.430, 대외경제 활동 참여 러시아 거주자의 외화 및 자국통화 송금에 관한 대통령령(7.5)]

※ 참고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외환 규제 관련 특별조치(대통령령)

- ◇ No.79. 미국 및 미국과 동참한 국가,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조치 관련 특별경제조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2.28)
 - 수출입자 외화 의무 매각, 외화 대출 금지, 러시아 거주자의 본인 명의 해외 계좌 송금 금지 등 도입
- ◇ No.81. 러시아 금융안정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한시적 경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3.01)
 -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외국인에 대한 대출 및 비우호국 외국인과 유가증권/부동산 소유권 변경을 수반하는 거래시 외국투자 통제를 위한 정부위원회의 특별 허가를 거치도록 의무화
 - 외화 현금 해외 반출 제약 (1만불 상한)
- ◇ No.126. 금융안정을 위한 외환규제 분야의 추가적·한시적 경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3.18)
 - 러시아 중앙은행에 외국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선금액 한도, 비거주자 단체의 외화 획득 거래 금액 등을 결정할 권한 부여
 - 2022.12.31.일까지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허가 없이 러시아 거주자의 비거주자 단체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지분 취득, 러시아 거주자의 비거주자 단체와의 파트너쉽 형태의 공동 자본투자 금지
- ◇ No.95. 대외채무 지불을 위한 임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3.05)
 -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외국인 채권자에 대한 외화 채무(월 천만 루블 이상 금액) 상환시 비우호국 외국인에 대한 채권자 명의 특별계좌(C-type)를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루블화로 상환
 - 러시아 거주자가 러시아 중앙은행 또는 재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없이 해당 외화로의 상환 가능
- ◇ No.254 기업관계 분야 특정 외국채권자들에 대한 금융 채무 이행을 위한 한시적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5.4)
 - 러시아 유한책임회사·파트너쉽·협동조합의 비우호국 인사에 대한 이익 배분(배당금 등)은 러시아 금융기관에 개설된 특별계좌(C-type)를 통해 루블화로 지급하되 러시아 중앙은행 또는 러시아 재무부의 허가 시는 예외
 - 비우호국 채권자(수혜자)에 대한 보증 채무 이행시도 특별계좌(C-type)를 통해 비우호국 채권자(수혜자)에게 루블화로 지급
 -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인사와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 거래 시의 특별허가 절차 예외 인정
 - 비우호국 비거주자와의 개인간 부동산 소유권 변경 거래
 -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의 공동 지분 참여

-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러시아 법인(기업) 25% 내의 지분 획득 및 비우호국 비거주자가 지배력을 보유한 러시아 법인의 추가 지분(또는 채권) 매입
 - 비우호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무상 부동산 소유권 변경 거래
- ◇ No.394. 외화표시 러시아 정부 국채의 거주자와 외국 채권자에 대한 상환을 위한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6.22)
- 러시아 연방이 발행한 유로본드의 상환시 채권자 명의의 특별계좌(I-type)를 국내에 개설하고 국내 외환시장 환율에 따라 외화 총 지급액을 루블로 환산하여 지급
- ◇ No.430. 대외경제 활동에 참여 러시아 거주자의 외화 및 자국통화 송금에 관한 대통령령 (7.5)
- 러시아 거주자 단체(법인)가 발행한 유로본드의 상환시 수익-만가액면가치 등이 유사한 신규 발행 루블화 채권으로 기존 유로본드를 대체하거나 신규 국내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루블화로 지급
 - 러시아 거주자 단체(법인)가 신디케이트론 상환시 비우호국 지급 대행기관을 우회하여 러시아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것을 허용
 - 러시아 거주자가 러시아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금 또는 러시아 유한회사파트너쉽-협동조합의 수익 분배로 수취한 자금을 해외 은행 및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로 외화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되, 외국인 투자통제위원회에 러시아 거주자의 해외 본인 계좌로의 외화 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 No.529. 외화예금 계좌 약정 및 유로본드 상환 의무 이행 임시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8.8)
- 비우호국의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한 조치(자금 동결 등)가 발생할 시에, 동 대통령령 시행 이후, 러시아 은행의 기업 고객이 입금한 외화 예금 지급 의무의 중단(이체 및 인출 등 포함)을 허용
 - 러시아 법인(기업)이 발행한 유로본드 상환시는 해외 채권자 명의의 특별 계좌(D-type)를 국내에 개설하고 루블로 환산하여 지급(8.8일)
- ◇ NO. 618. 특정인들간의 특정거래 관련 특별절차에 관한 대통령령(9.8)
- 비우호국 인사와의 러시아 유한회사 형태의 회사의 지분 거래시에 외국인투자통제 위원회의 사전 특별허가를 거치도록 의무화 (금융기관 제외)
 -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시 기업 고객의 외화 예금에 대한 루블화로의 상환 허용
- ◇ NO. 737. 특정 거래 집행 관련 대통령령(10.15)
- 비우호국 인사와의 러시아 금융기관(은행, 보험, 펀드 등)의 지분(주식) 1% 이상의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시는 외국인투자통제 위원회의 사전 특별허가를 거치도록 의무화
 -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의 국외 반출시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승인 필요

실물경제 분야별 주요 조치

① 산업 분야

러시아 정부는 제재 참여국에 대한 비우호국 지정(3.7, 한국 포함 48개국), 주요 외국산 장비·물품 부족 대응을 위한 수출 통제,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불활성 가스 수출 허가제 시행, 외국 철수 기업에 대한 법정관리법안 등 마련 중

〈수출 통제 조치〉

- 농기계·공산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한시적 수출 제한 조치
(‘22.3.9, 정부령 제311호, 312호)
 - * 주요 목적 : 대러 제재로 인한 외국인 물품(농기계·공산품·의료기기 등) 수급 애로 해소
 - * 정부령 제311호 : 2023.12.31.까지 러시아로 수입된 특정 농기계·운송수단·공산품·통신장비·광업장비·의료기기 등의 EAEU회원국·압하지야·남오세티아 이외의 국가로 수출 금지(단, 러시아 원산지 물품은 적용 제외)
 - * 정부령 제312호 : 2023.12.31.까지 러시아로 수입된 특정 농기계·운송수단·공산품·통신장비·광업장비·의료기기 등의 EAEU 회원국·압하지야·남오세티아공화국으로의 수출 승인 절차 도입
- 비우호국 대상 목재·고철에 대한 한시적 수출 제한 조치
(‘22.3.9, 정부령 제313호, 3.17, 정부령 제390호)
 - * 주요 목적 : 러시아 내 관련 물품 수급 안정 및 비우호국 대상 보복
 - * 정부령 제313호 : 2023.12.31.까지 러시아산 특정 목재 품목(우드칩·합판용단판 등)의 비우호국 수출 금지
 - * 정부령 제390호 : 비우호국향 수출금지(제313호) 대상 품목에 내식강·합금강·팅스텐 스크랩 등 품목 추가
- 비우호국 대상 불활성가스 품목 한시적 수출 허가제 도입
(‘22.5.30, 정부령 제987호)
 - * 주요 목적 : 반도체 등 대러 수출통제에 대한 보복적 성격
 - * 주요 내용 : 2023.12.31.까지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불활성가스(희소가스, 주로 반도체 공정 등 산업용) 품목의 수출은 러 연방정부의 허가 필요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

- 특정 물품 병행수입 합법화('22.3.29, 정부령 제506호)
 - * 주요 목적 : 비우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사업중단으로 인한 제품·부품 수입 애로 해소
 - * 주요 내용 : 비우호국 기업 지재권자의 동의 없이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외국인 상품 목록 (산업부가 갱신)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에 따른 수입자의 책임 면책
- 비우호국 특허권·디자인권 무상 실시('22.3.6, 정부령 제299호)
 - * 주요 목적 : 비우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사업중단으로 인한 지재권 실시 애로 해소
 - * 주요 내용 : (중전) 국방·안보, 시민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러 정부는 권리자 동의없이 특허권·디자인권의 실시를 결정하고 러 실시자는 권리자에게 보상금 (수입의 0.5%) 지급
(개정) 비우호국 국적의 권리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0% 지급
- 비우호국 지재권자에 대한 로열티 루블화 결제('22.5.27, 대통령령 제322호)
 - * 주요 내용 : 비우호국 국적의 권리자에 대해서, 러 거주자는 지재권 사용료를 O-type 특별계좌를 통해 루블화로 지급(의약품·의료기기·식품·통신서비스·개인목적사용 등 적용 제외)

〈국유화 동향〉

- 비우호국 철수·사업중단 기업 법정관리 법안('22.4.12, 법안 제104796-8호)
 - * 주요 내용 : 비우호국 철수·사업중단 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및 국유화 조치 법안이 러 하원 (Duma)에 제출(4.12), 5.24. 현재 러 하원 1회독 완료

〈기업 지원 조치〉

- 제조업체·혁신중소기업 등 우대 대출 지원('22.4.1, 정부령 제711-g호 등)
 - * 주요 내용 : 제조업·IT·수입업·폐기물관리·연구개발·도서출판인쇄·에너지연료 산업·건설·교통 등 15개 분야별 기업 저리 우대대출 및 혁신중소기업 무이자 대출 지원
- 소재·부품·장비 수입 관세 면제('22.5.9, 정부령 제839호)
 - * 주요 내용 : 곡물·식음료·약품·종이·전기·컴퓨터·정보통신·교통·건설·가스석유 생산 등 47개 중요 산업분야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수입 관세 면제

② 에너지 분야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보복적 성격의 조치(에너지 무기화 및 외국기업 제산권 제한과 달러 거래 어려움에 따른 루블화 사용 결제 조치를 강제

○ 천연가스(파이프라인가스) 대금의 루블화 결제

(‘22.3.30., 대통령령 제172호)

- * 주요 목적 : 대러 에너지 제재에 대한 보복 및 무역대금의 루블화 결제 강제
- * 주요 내용 : 유럽 비우호국 가스 구매자는 가즈프롬(및 자회사)의 가스 공급대금을 K-type 외화계좌로 송금 ⇒ Gazprombank는 동 대금 환전 및 K-type 루블계좌로 입금한 후 가즈프롬 계좌로 송금
- * 최근 현황 : 6.4. 현재, K-type 계좌 개설 거부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6개국 가스 구매자에 대해 가스 공급 금지

○ 사할린-2 프로젝트 신규 운영법인 설립

(‘22.6.30, 대통령령 제416호)

- * 주요 목적 : 사할린-2 프로젝트 기존 운영사의 자산·권리를 승계하는 운영법인의 러시아 법인화 및 러시아 정부가 외국 지분권 승계여부 결정
- * 주요 내용 : ▲사할린 에너지 인베스트먼트社(‘94 버뮤다 법인등록, 가즈프롬 사할린 홀딩 50%+1, Shell 27.5%-1, 미쯔이 12.5%, 미쯔비시 10% 지분 보유)의 자산·권리를 승계하는 신규 러시아 법인 설립(8.2.자 사할린에너지社 러 법인 설립 정부령)
▲러 정부는 기존 외국 투자자의 신설 러 법인 지분 승계(인수) 여부에 대한 결정권 보유

○ 러 에너지·연료 및 금융 기업 비우호국 보유 지분 거래 금지

(‘22.8.5, 대통령령 제520호)

- * 주요 목적 : 비우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사업 중단 대응
- * 주요 내용 : 2022.12.31.까지 비우호국 외국인이 보유한 사할린-1 및 하리야가(Kharyaga) 프로젝트 관련 기업, 에너지 분야 장비 제조 및 유지수리서비스 기업, 전력·난방 생산 및 공급 기업, 석유 가공 및 정유 기업, 석유·가스·석탄 및 지하 광물자원 개발 기업, 러 금융기관, 전략적 기업 등의 지분 거래 금지

③ 농업 분야

곡물의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자국 식품시장(물가) 안정을 위하여 주요 곡물을 중심으로 EAEU 역외 수출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실시해 옴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에는 국내 품귀현상 및 국제가격 급등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제한조치를 추가하였으나, 3/4분기 이후에는 수출업체 요구 등에 따라 비관세조치(수출쿼터, 수출금지)는 종료하고 관세조치(수출세)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

비료의 경우, 21년 동절기 국제비료가격이 급등하자 수출을 통제하고 파종기 국내수요 충당을 위하여 질소비료(질소 함유한 2·3종 복합비료 포함)에 대한 EAEU 역외 수출쿼터를 시행

- 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비료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수출용 및 내수용 간 균형이 요구되자 쿼터를 연장하고, 주요 원료(질산암모늄)에 대하여 수출금지를 한시적으로 실시
- 기타 품목별(쌀 등) 국내수요 충당 및 對서방 맞대응 제재 조치로 신규 수출 제한 실시

〈 기존 조치의 연장 : 수출세 부과 지속 〉

- ‘밀, 보리, 옥수수’ 유동적 수출세 부과(2021.6.2.~, 정부령 제117호)
 - 수출세 산정 : (지표가격-기준가격) × 70%. [톤당 기준가격] 밀15,000루블, 보리·옥수수 13,875루블.
 - * 매주 금요일 농업부 홈페이지에 지표가격·수출세 게시, 차주 수요일-화요일 기간 적용
- ‘콩’ 수출세 20% 부과 및 연장(2021.7.1.-2022.8.31. 정부령 #803 → 2024.8.31. #1580)

- ‘해바라기씨’ 수출세 50% 부과 및 연장(2021.7.1.-2022.8.31. 정부령 #547 → 2023.8.31.)
- ‘해바라기씨유’ 유등적 수출세 부과 및 연장(2021.9.1.-2022.8.31. 정부령#546 → 2023.8.31. #1179)
- ‘유채씨’ 수출세 30% 부과 및 연장(2022.1.1.- 8.31. #2068 → 2023.2.28. #1580)
- ‘쌀 및 쌀가루’, 수출 금지(2022.7.1.- 12.31. 정부령 #1171)

〈러시아산 곡물 수출 촉진 합의(7.22)〉

- 흑해 항구로부터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밀의 수출 제약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튀르키예 대통령 및 UN 사무총장의 중재 하에 2개의 협정서가 체결됨(2022.7.22.)

* ‘흑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4자(UN-러시아-튀르키예-우크라이나) 합의(유효기간 120일)’ 및 ‘러시아 농산물·비료 수출 장애 제거를 위한 양자(UN-러시아) 합의(유효기간 3년)’

- (주요내용) ▲우크라이나 3개 항만(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유즈니)을 통한 우크라이나産 곡물 수출 ▲이스탄불에 ‘공동조정센터(JCC)’ 설치
▲러시아産 곡물·비료 수출 촉진

〈비료 수출 제한〉

- ‘질소비료’ 및 ‘복합비료’ 수출쿼터 및 연장 (2021.12.1.-2022.5.31., 2022.7.1.- 2022.12.31.)
- ‘질산암모늄’ 수출금지 및 연장(2022.2.2.- 4.1. 정부령 #82 → 5.1. #472)
- ‘유황’ 수출쿼터 개시(2022.8.10.-12.31. 110만톤. 정부령#1392)

〈목재 및 사료 보충제 수출 제한〉

- ‘리신’ 및 ‘메티오닌’ 수출금지(2022.7.1.~ 2022.12.31. 정부령#1169)
- ‘펠나무용 목재, 합판용 목재’의 비우호국 수출금지(2022.3.10.-12.31. 정부령#313)

④ 과학기술·IT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산 SW 사용 의무화·통신장비 국산화 등 국산화 정책 및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였고, 우주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와 달리 서방에 대해 先制的으로 협력 중단 조치 시행(* 영국 위성발사 취소 등)

〈국산화 지원 조치〉

- 핵심 정보 인프라 기술독립 및 안정 보장 조치 (‘22.3.30., 대통령령 제166호)
 - * 2022.3.31.일부터 공공기관·공기업 등은 관계당국과 협의 없이 외국산 SW 구매 불가, 2025년부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러시아産 SW 사용 의무화 등
- 통신 장비에 대한 국산 판정 포인트제 도입 (‘22.7.18)
 - * 주요 목적 : 해외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의 시장 이탈에 따라 자국산 통신 장비 개발·생산을 위한 통신장비 국산화 지원
 - * 주요 내용 : 국산으로 판정 시에 공공조달 참여 가능
(설계 및 기술 문건 권리 보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독점권 보유, 러시아 내 자체 또는 위탁 생산 기지 보유 등 필수)

〈IT 산업 지원〉

- IT 기업 소득세 면제 등 지원 (‘22.3.2, 대통령령 제83호)
 - * 주요 내용 : △ 2024.12.31.까지 IT 기업의 소득세 면제
△ 외국인 IT전문가 고용절차 간소화 등 조치
△ 정부 보조금 확대, ‘24년까지 법인세 및 감사 면제
△ 27세까지 징집 유예, 우대금리 대출 등

○ 러시아산 SW 등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22.7.5., 연방세법 개정)

* 주요 내용 :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및 무선전자 장비 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직원 교육비용 공제 대상에 포함, 원가 계산 시 1.5의 곱셈계수 적용 등

〈해킹 등 대비 사이버 보안 조치 강화〉

○ 정보보안 확보 추가 조치('22.5.1., 대통령령 제250호)

* 주요 내용 : 2025.1.1.일부터 주요 정보인프라를 다루는 조직은 비우호국 기업에서 생산된 정보보안 제품 사용 금지, 정보보안 조직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설치 등

○ '22년 말까지 사이버 보안사고 명부 작성 계획('22.8.23, 디지털개발부)

* 주요 내용 : 보안 사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사이버 보안사고 정보 제공

* 주요 목적 : 주요 기관·정보인프라에 대한 해킹 증가에 따라 핵심 정보인프라 안전 보장 및 사이버 보안 강화

〈우주분야에서 선제적 협력 중단 조치〉

우주분야에서 서방과의 선제적 협력 중단은 미국 IT·반도체 제품 및 미국 기술 이용 장비·기기에 대한 대러 수출 금지 발표('22.2.25) 등 대러 제재에 따른 보복적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러시아·유럽 소유즈 프로젝트 협력 중단('22.2.26, 로스코스모스)

* 주요 내용 :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의 소유즈 발사체 발사 협력 중단

○ 미국으로의 액체 로켓엔진 공급 중단('22.3.3, 로스코스모스)

* 주요 내용 : 미국 Altas-5 발사체용 RD-180 엔진, Antares 발사체용 RD-181 엔진 공급 중단

○ 영국 OneWeb 위성 발사 취소('22.3.4, 로스코스모스)

* 주요 내용 :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소유즈-2.1b 발사체를 통한 36기의 영국 OneWeb 위성 발사 취소

○ 2024년 이후 국제우주정거장(ISS) 프로젝트 협력 중단('22.7.26, 로스코스모스)

⑤ 북극·해운 분야

러시아는 비우호국 선박에 대한 러 항만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 조치(3.21)를 취하였고, 아조프海 수산 기업과 북극항로 화물운송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치를 시행

한편, 북극이사회 활동 일시 중단을 선언한 바 있고, 외국 군함·선박의 북극해 진입 시에 90일 전 사전 신고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 마련

〈비우호국 선박 입항 제한 등 조치〉

- 러 국적선박 입항을 제한한 비우호국 선박에 대해 러 항만 입항 제한 조치('22.3.21, 정부령 제418호)
 - 배경 : 영국, EU 등 러시아 선박 항만 입항을 금지하는 비우호국에 대한 보복적 조치
 - * 영국, 캐나다, EU, 미국 등에서 러시아 선박 입항금지
 - ** 러 교통부는 자국 선사에 대하여 영국·캐나다·EU 및 대러 제재 국가의 영해나 항만으로 기항 자제 경고(3.5)
 - 주요 내용 :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등 제한조치를 취한 특정 비우호국 국적 선박에 대한 러 항만 입항 거부 등 보복조치 가능
 - * 금지 해제는 러 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던 비우호국의 결정이 취소될 경우 가능
 - 우리나라는 러시아 선박 입항을 허용하고 있어 동 조치 영향 없음
- 외국국적 군함 및 기타 정부 소유 선박의 북극해 진입시 사전 신고 의무('22.8.4, 법안 제176880-8호, 하원 계류 중)
 - 주요 내용 : 외국 국적 군함 및 정부소유 선박들이 △러시아 항만 △해군기지 △군함 주둔지역 기항 목적을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북극항로를 통과하고자 할 때 예상 통과 날짜로부터 90일 이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연방 당국에 통과 사실을 사전 고지

〈수산 기업 등 보조금 지원〉

- 아조프해 조업 수산 기업에 보조금 지급 ('22.4.22, 정부령 제736호)
 - 배경 : 아조프해 긴장 고조로 동 해역에서 조업이 중단된 수산기업의 고용 유지 등 경영 지원
 - 내용 : 아조프해에서 조업 중단된 수산기업에 5천만 루블 지원
(보조금 지원 조건 : 전체 직원 수의 90% 유지)
- 북극항로 화물운송업체 보조금 지급 ('22.3.18, 정부령 제397호)
 - 배경 : 대러 제재에 따른 화물운송 업체의 수익성 제고 및 적극적 북극항로 개발에 따른 정부 목표* 달성('24년까지 8천만톤의 화물 운송) 의지 표명
 - 주요 내용 : 북극항로 이용 화물운송업체에 매년 5.6억 루블(약 112억원) 예산 지원
- 어선 및 수산물 가공공장건설 투자사업 시한 연장 ('22.5.11, 정부령 제857호)
 - 배경 : 대러 경제 제재 등으로 투자-쿼터 프로그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투자사업** 기한 연장을 통해 수산기업 지원***
 - * 러는 수산기업의 어획쿼터를 20% 일괄 삭감하고 러 조선소 내 어선건조나 수산물 가공 공장 건설 등 투자 시에 어획쿼터를 추가 배정하는 투자-쿼터 프로그램운영
 - ** 1차 계약('18~'24)으로 어선건조 64건(2,050억 루블), 가공공장 24건(250억 루블) 추진 중
 - *** 기한 내 어선 미건조시 벌금, 추가 어획쿼터 배정 지연 등의 불이익 처분
 - 내용 : 투자쿼터 프로그램에 따른 어선 건조 및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 기간을 최대 2년 간 연장
 - 우리나라 기업은 투자쿼터 프로그램 미참여로 직접적 영향은 없음
 - * 다만, 합작법인 파트너사에서 어선 1척 건조 중

〈북극 이사회 활동〉

-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이사회 7개 회원국의 러시아 개최 회의 불참 선언 (3.3)에 대해 러시아는 북극이사회 및 부속기관 활동의 일시 중단을 선언

* 러시아는 '21.5월부터 2년간 북극 이사회 의장국 수임

-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 이사회 7개국의 활동 재개* 공동 성명 추가 발표 (6.8)에 대해 의장국인 러시아 없이 북극 이사회를 대신한 결정은 불법이며 관련 문서 합의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

* 러시아가 관여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업무 재개

⑥ 교통·항공 분야

- 남부 지역 11개 공항 운영 중단 (‘22.2.24 이후 일정 기간 간격으로 지속 연장 중)

* 주요 목적 :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지역 주변의 항공기 운항 안전 보장 차원

- 외국 리스 여객기 반환 중단 및 임차료의 루블화 지불 (‘22.4월, 항공청 발표)

* 주요 목적 : 동 조치는 ▲러 외환보유고 동결 ▲달러송금 어려움 ▲EU · 미국 · 캐나다 등의 영공폐쇄 등에 따른 맞대응 성격의 조치로 보임

* 주요 내용 : 7.1(금), 러시아 내 운용 1,274대 중 1,207대 항공기에 대해 등록 완료

- 러시아의 외국 리스 여객기는 약 700대이며, 해외 압류 위험을 고려 하여 비우호국 아닌 국가들 위주로 운항(7.1 기준, 러 항공기 77대가 해외에 억류 · 압류 중)

- 칼리닌그라드 지역 운송 지원

* 주요 목적 : 리투아니아의 EU 제재 품목(화물)에 대한 운송 제한 조치(6월말 도입) 하 전략적 요충지인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

* 주요 내용 : 현재 해운을 통한 칼리닌그라드行 화물 운송에 대해 보조금 논의 중

7 보건·의료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등록 및 조달 절차 간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수출 제한 조치를 실시

- 외국산 의료기기 수출 제한 ('22.3.6., 정부령 제302호)
 - 목적 : 비우호국가가 제재 조치로 인한 러시아의 의료기기 부족 방지
 - 내용 : 비우호국가들로부터 러시아에 배송된 외국 의료기기의 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2022.3.18.~12.31까지)
- 외국산 의약품 등록 간소화 ('22.4.5, 정부령 제593호)
 - 목적 : 약국 및 의료기관의 의약품 부족 상황 발생에 대비
 - 내용 : 해외 수입 의약품 및 러시아내 제조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등록 기간을 30일로 단축, 외국 의약품(러시아에 등록된 의약품)의 원래 포장 상태에서 러시아로 수입 가능
- 의료기기 등록 간소화 ('22.4.1, 정부령 제552호)
 - 내용 : 해외 수입 및 러시아 내 제조 의약기기 중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 등록 간소화 적용(등록 간소화 적용 특정 의료기기에 대해 등록 기간 50일→22일로 단축, 일부 특정 의료기기는 최대 5일로도 단축)
- 의료기기 조달 절차 간소화 ('22.3.6, 정부령 제297호)
 - 내용 : 의료장비 및 의료장비 소모품, 장애인 재활 장비 등에 대해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 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기회 확대 ('22.3.16, 정부령 제373호, '22.3.12, 정부령 제346호))
 - 목적 : 대러 제재에 대응해 신속한 의료장비 구매 및 확보
 - 내용
 - ① (월 선지급금 확대) 기존 의료기관 월 선지급액이 당해 연도 지급액의

1/12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월 선지급액 한도를 연간 지급액 수준까지 확대

- ② (구매한도 확대) 국가의무보험 가입 의료기관들의 일부 의료기기(의료기술·실험실·검사용 장비 및 기기 등)에 대한 구매한도(대당)를 기존 10만 루블에서 100만 루블로 확대



벨라루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2.42	3.0	1.22	-0.9	2.3
명목 GDP(십억\$)	54.44	56.93	62.57	61.4	63.3
1인당 명목 GDP(\$)	5,728	6,299	6,603.92	6,397	6,762
1인당 GDP(PPP, \$)	18,871	20,175	20,643.66	20,187.33	22,008.54
정부부채(% of GDP)	53.44	55.92	46.18	47.50	41.20
물가상승률(%)	6.03	5.52	5.36	5.5	9.5
실업률(%)	5.7	4.8	4.2	4.1	4.0
수출액(백만\$)	29,240	33,726	32,940	29,041	39,024
수입액(백만\$)	34,234	38,408	39,350	32,169	39,815
무역수지(백만\$)	-4,994	-4,682	-6,410	-3,578	-791
외환보유고(백만\$)	5,449	5,296	7,082.53	7,468.5	8,425.0
이자율(%)	11	10	9	7.75	8.25
환율(자국통화)	1.93	2.04	2.09	2.43	2.55

자료 : IMF, 세계은행,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중앙은행

경제·통상 환경

벨라루스 경제·통상 환경은 지리적·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의 경쟁구조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 제조업 중심지이자 동유럽 굴지의 공업지대였으며 기초과학중심지로서 우수인력을 다수 배출하는 곳이었다. 소련 붕괴 후 동유럽 및 구소련 대다수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며 경제개혁을 지향했던 것과는 달리 벨라루스는 다수의 국영기업을 유지하면서(전체 기업의 약 70%)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늘리는 등 구소

련 시절의 경제정책 기초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시설이 벨라루스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구소련 시절의 비효율(관료주의 및 보수적인 근로 성향, 이에 따른 낮은 생산성 등) 또한 잔존하여 시장경제 전환 및 경제발전에 다소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위에서 일부 시장개혁과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 및 가스 공급 등에 힘입어 한때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수지 적자 누적 등으로 경제위기를 맞았다. 2011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약 3분의 1로 폭락하는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의 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증대,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EurAsEC)의 구제금융 등으로 외환위기를 일단 극복하였으나 기술 발전이나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국가경쟁력 회복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2013년 들어 GDP 성장세 둔화, 수출·수입 등 무역량 감소 및 국제수지 악화, 공공부채 및 상품재고량 증가, 루블화의 지속적인 약세 등 경기 침체 동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침체되자 벨라루스도 2015-16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급 하강세를 보였다.¹⁰⁹⁾ 2017년부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¹¹⁰⁾ 2018년 러시아의 석유세제 개편이 벨라루스에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벨라루스로서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EU 경제권을 연결하는 철로 또는 도로가 지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EAEU 출범으로 인구 1억 8천만의 거대 시장을 구성하는 일원이 되었다. 또한 벨라루스는 안정적인 국내정세, 비교적 예측 가능한 행정체계, 낮은 유가, 저렴하고¹¹¹⁾ 우수한 노동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

109) 벨라루스 대외교역의 약 50%가 러시아에 편중되어 있으며, 원자재의 9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함.

110) 2023년 벨라루스 경제성장 전망(2022년 기준)

벨라루스 정부	EBRD	IMF	WB	EABR
-4.7%	-5.2%	-7.0%	-4.2%	-6.5%

아, 카자흐스탄 등 기타 CIS 지역과 EU로 동시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2020년 8월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이 대선 결과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권 탄압 등의 이유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벨라루스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위와 같은 잠재력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도 2022년 3월 최초로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하였다¹¹²⁾.

유라시아 진출의 관문이 되는 벨라루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가장 활발하게 벨라루스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Great Stone’ 산업단지는 두 나라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진다.¹¹³⁾ 이 산업단지를 통해 벨라루스는 중국의 차관 등 경제지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중국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Great Stone’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EAEU 뿐만 아니라 EU와 중국 시장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벨라루스는 2014년 63위에서 2020년 49위(74.3점)로 상승하여 투자환경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등록의 편이(14위), 전력공급(20위), 대외무역(24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사업허가(48위), 계약 이행 수준(40위), 투자자 보호(79위), 대출(104위), 조세납부(99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이후 Index가 미발표 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순위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 유엔이 발표하는 2022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벨라루스는 60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CIS권에서 러시아(52

111) 2022년 벨라루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47달러(1,637루블) 수준임.

112) 전라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①상환허가 대상 품목인지 ②우려거래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품목 또는 우려거래대상자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환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해야 함.

113) Great Stone 산업단지는 벨라루스 최대 해외직접투자(FDI) 사업(총면적 91.5km²)임. 2011.9.18. 벨라루스-중국 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2012.1.31.부터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2030년 완공 예정임. 민스크 국제공항으로부터 5km, 민스크 시내 중심으로부터 25km 자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트해 항구와의 거리는 약 500km임. 2020.10월 현재 65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제3국 기업도 입주 가능함.

위), 카자흐스탄(56위) 다음으로 높은 순위이며 그만큼 벨라루스의 인적자원이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CIP-2022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46위로 러시아(35위)를 제외하고 CIS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법적 안정성 부족,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개입 관행 등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으나,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벨라루스 정부는 2010년 경제부 산하에 외국인 투자와 민영화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투자민영화청(National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Agency)을 설치하고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건설·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벨라루스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2011년 189억 달러까지 성장했으나, 2015년부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해외투자 유입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10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2020년 대선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2021년 87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지분 매각 후 철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벨라루스 유가증권 처분 제한에 관한 재무부령”(2022년 7월 5일)을 도입했다.

2021년 벨라루스의 대외무역을 보면 러시아가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폴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등 EU 국가와의 무역도 높은 수준을 차지하였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EAEU 국가에 대한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EU가 경제제재를 한층 강화하면서 2022년 EU 국가와의 무역은 대폭 축소되고, 러시아·중국 등 비서방 국가와의 무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벨라루스는 역내 IT 강국으로서 IT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디지털 경제개발 법령’을 시행중이다.¹¹⁴⁾ 이 법령을 통해 벨라루스 대표 IT 산업단지인 High-Tech Park(HTP)¹¹⁵⁾의 활동 범위와 역할이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이 법령은 △HTP 입주기업의 가상화폐 거래 전면 허용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획득한 소득세 면제 △HTP 입주기업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플랫폼 운영 허용 △HTP 입주기업을 통한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 허용 등 블록체인 기술기반 사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벨라루스는 가상화폐 거래의 복잡성과 투기 위험성을 감안하여 동 법령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HTP 입주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입주심사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실질적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게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 하에서 벨라루스 내 IT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다수의 해외기업이 철수하고 IT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벨라루스는 1993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WTO 가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1993년 10월 벨라루스 가입 작업반이 설치되었으며, 1997년 6월에는 제1차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WTO 가입 추진 노력은 2005년 제7차 가입 작업반 회의 개최 이후 한동안 지체되었다. 이는 벨라루스가 WTO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목록을 마련하지 못했고, 개별국가가 아닌 공동관세지역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WTO 협정 내용에 따라 2009년부터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공동 가입협상을 개시하였으나 WTO가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세 나라가 개별적으로 가입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26일 세 나라 중 러시아가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114) 디지털 경제개발 법령은 2018년 3월 28일 발효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http://www.park.by/topic-faq>에서 확인할 수 있음.

115) 2005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산업단지인 벨라루스 IT 산업의 60%를 차지함. 2021년 기준 67개국 1,065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됨.

벨라루스의 WTO 가입은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벨라루스-러시아 - 카자흐스탄 3국이 2011년 체결한 ‘관세동맹의 기능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관세동맹 회원국 중 한 나라가 WTO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WTO협정(마라케쉬협정)은 법적으로 관세동맹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여 효력을 발하도록 되어있어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벨라루스는 WTO 비회원국임에도 WTO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반면,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장벽 해소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벨라루스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3월 WTO는 벨라루스의 가입신청 검토 중단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벨라루스와 최초로 양자협의를 개시한 이후 2017년 1월 제6차 양자협상을 끝으로 벨라루스의 WTO 가입을 위한 한-벨 양자협상 완료료를 선언하였으며, 2017년 4월 한-벨 양측은 민스크에서 양자협상 완료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한-벨라루스 교역 현황

2021년 기준 양국 교역액이 약 1.5억 달러¹¹⁶⁾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양국 협력 발전 가능성에 비추어 보다 활발한 교역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다시 양국 교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벨라루스와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KOTRA 민스크무역관이 2014년 3월 정식 개소하여 양국간 교역 증대 및 우리 기업의 벨라루스 진출 확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 제5차 한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개최하여 벨라루스 정부와 그간의 경제 협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116) 벨라루스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의 대벨라루스 수출은 8천233만 달러, 수입은 1억527만 달러로 양국 교역 규모가 우리측 통계보다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벨라루스와 직접 교역한 거래만을 한-벨 교역으로 계상하는 반면, 벨라루스는 제3국(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통한 거래도 통계에 포함하기 때문임.

한-벨라루스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 출	금액	47,026	28,469	28,645	32,559	47,696	54,573	69,612
	증가율	14.8	-39.5	0.6	13.7	46.5	14.4	27.6
수 입	금액	46,940	37,163	44,613	44,769	55,934	40,885	82,434
	증가율	4.6	-20.8	20.0	0.03	24.9	-26.9	101.6
총교역	금액	93,966	65,632	73,258	77,328	103,630	95,458	152,046
	증가율	9.5	-30.2	11.6	5.2	34	-8.5	59.3
무역수지		86	-8,693	-15,968	-12,210	-8,238	13,688	-12,822

자료출처: KITA

우리나라의 대벨라루스 10대 교역 품목(2021년)

(단위: 백만\$)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무역수지	품 목		금 액	무역수지
	코드 (MTI 4단위)	상 품	52	52	코드 (MTI 4단위)	상 품	77	-76
1	7411	승용차	11	11	2330	칼륨비료	66	-66
2	3203	타이어	11	11	8311	집적회로반도체	6	-6
3	7420	자동차부품	10	10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3	-2
4	6134	아연도강판	5	5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1	-1
5	7331	의료용기기	3	3	4490	기타섬유제품	1	0
6	2140	합성수지	3	3	4399	기타의직물	0	-1
7	2262	의약품	3	3	4412	직물제의류	0	0
8	2273	화장품	3	3	4391	마직물	0	0
9	7251	건설중장비	2	2	7152	광학기기부품	0	0
10	8124	TV카메라 및 수상기	1	1	8155	분석시험기	0	0

자료출처: KITA

또한, 2014년 6월에 우리 기업 SK-Hynix가 벨라루스 소프트웨어, 펌웨어 아웃소싱 기업인 Softeq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하여 투자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 최초의 대벨라루스 직접 투자 사례이다. 이 투자

법인은 2018년 9월 ‘SK-Hynix 메모리 솔루션 동유럽’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활동을 축소 중이다.

하지만, 벨라루스는 기본적으로 기초과학과 IT 분야의 수준이 높고, 저렴한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및 유라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와 협력 잠재력이 높다. 특히 양국이 모두 IT 강대국이라는 점이 작용하여 향후 여건이 개선된다면 ICT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향후 한-벨 양국 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수입정책상의 규제

자국산업 보호제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전신인 관세동맹은 2010년 1월부터 역외 국가에 대해서 자체 기준으로 상품군을 분류하여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무역의 명분을 내세운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수입규제 조치는 3국이 단일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규제 적용 여부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포함하고 있다.

수입규제(주요 비관세 수단)

관세동맹 차원에서 규정된 주요 비관세 수단은 수출입 할당제, 무역허가제, 독점무역권, 6개월 이내 수입금지조치,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의 조치 등이 있으며, 벨라루스 관세당국은 자국에 대규모로 수입되는 상품 생산업체에 제조원가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여 상품 원가정보공개를 통해 보호무역 및 국내 수입 상품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해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위생검역증 이외에 자국 특별 검역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¹¹⁷⁾하여 이를 자국상품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17) 2015년 8월 총리 훈령(No.666)을 제정함.

(1) 수출입 할당제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외 각 경제주체 간 수출입 물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3국에 수입량을 할당할 수도 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지역을 경유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 외부로 반출되는 상품이나 자유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틀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역허가제도

단일관세율 품목 중 제3국과의 거래가 금지·규제된 일부 품목은 공동관세 협정에 따라 수출입허가의 대상이 된다. 주로 알콜제품, 어류 및 수산가공품, 담배제품 등이며 1년 이하로 발급되는 유효한 1회성 허가(One-time license), 1년간 유효한 일반 허가(General license),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사안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배타적 허가(Exclusive license)가 있다.

(3) 독점적 무역권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무역독점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외부에 공표된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독점적 수입이 인정되는 품목은 알콜제품, 수산가공품, 담배제품이며 칼리비료가 독점적 수출 대상이다.

세제상의 제한

(1) 부가가치세 부과

벨라루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에 추가하여 원칙적으로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벨라루스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일시적인 물품 수입(최대 3개월), 벨라루스산 식료 가공품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국내소비세(Excise) 부과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신 국내소비세가 부과된다.

- 가수분해 알콜류
- 알콜함유 용해물(약품류 및 예방치료용 약물 제외)
- 알콜함유 식료품(보드카, 코냑, 포도주 등)
- 맥주류 및 담배류
- 원유, 가솔린, 디젤유 등
- 보석 세공품
- 미니버스, 승용차, 개조화물차 등

수출입 관련 제도적 문제점

벨라루스는 WTO 비회원국으로 국제무역 규제 해소나 법집행의 투명성이 모호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애매한 해석 뿐 만 아니라, 통관 절차의 투명성 및 선진화 수준이 미흡하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역내, 역외 통관 관련 행정 및 내부 규정들이 상당부분 수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아 중소 무역업자들에게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물류통관(세관부패)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2021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세계 180개국 중 82위를 차지하였으며, 정부는 세관 등 정부기관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혜관세 제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에서 생산된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실시하고 있는바, 특혜관세 적용국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수입관세의 75% 적용 국가
: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홍콩, 이란,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3개국

◦ 0%의 수입관세 적용 국가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르완다, 이디오피아 등 50개국

한편,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되는 관세율 인하조치를 이용하려면, 해당 상품 생산국가에서 발급하는 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품 생산자와 수입자는 상품 생산국가내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거나,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역내에서 통용되는 단일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최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역내 원자재 공급망 수급부족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결정문 46호(2022.4.5.) 및 63호(2022.4.12.)를 통해 특정 유기화합물, 화학제품, 특정유형의 기계장비 및 부품, 특정 유형의 제지류 등 537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으며, 다음 사이트에서 HS코드별 해당 제품군 검색이 가능하다.(<https://www.alt.ru/tamdoc/22sr0046/>, <https://www.alt.ru/tamdoc/22kr0063/>)

품목별 수출입 장벽(수출입 금지 · 제한 품목)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은 역외 제3국과의 교역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¹¹⁸⁾을 두고 있다.

◦ 수출입 금지 품목

- 방사성 물질 등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 군용 및 사제 무기류와 그 주요 부속, 탄약 등
- 국가 주요정보 및 선거, 불법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 생물자원 채취장비

118) http://tsouz.ru/db/entr/norm-prav-doc/ediniy_perechen/Pages/default.aspx

- 포획금지 동물 가죽 등
- 수출입 제한 품목
 - 야생 채취 약제
 - 야생 동·식물
 -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귀금속 및 보석원석, 동 귀금속과 보석원석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되지 않은 귀금속, 귀금속 파편 및 폐기물, 광석, 고농축된 귀금속 및 원자재
 - 광물자원류
 - 향정신성 약물류 및 최음제
 - 민간용 전파기기 및 고주파 장비 등 기타 금지 품목

표준, 인증 관련 장벽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인간의 유전자·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규범과 표준시스템의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에의 부합 여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25,000여개의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의무 인증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벨라루스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인증서와 적합 심사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상품들은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인증서 발행 대신에 정부등록이 필요하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중 한 곳에서만 인증받아도 다른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에서 별도의 재발급 또는 재등록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품질·안전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공유되는 반면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에서 수입된 품목의 품질·안전 인증은 회원국간 공유에 예외가 많다.

- STB(GOST-B) 인증등록: 벨라루스 국가 인증등록
- EAC 인증등록: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 단일 통합인증, 벨라루스 정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규격도 있음.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20년 10월 현재까지 철도차량, 고속교통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48개의 관세동맹기술규칙을 채택하였다.¹¹⁹⁾

인증의 경우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고 복잡한 편으로, 예를 들어, 가전 제품군은 이미 인증이 통합되어 각 나라의 인증은 없고 EAC 인증만 존재한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TBT(기술무역장벽)에 해당하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벨라루스의 경우 가전제품 수출을 위해 EAC 인증 외에 에너지효율 인증등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동물 약품의 경우에는 아직 EAC 인증으로 통합되지 않았으며, 각국의 개별 인증을 취득하되, 1개국에서만 인증을 취득하면 EAEU 모든 국가에서 유통판매가 가능하게 다소 느슨하게 되어있다. 화장품, 일반소비재, 기계류, 부품류 등 대다수 제품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인증으로 통합된 상태이다.

환경 관련 규제

벨라루스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생산·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의무환경인증제도가 시행중이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119) [https://gosstandart.gov.by/approved-technical-regulations-of-the-customs-union-\(eeu\)](https://gosstandart.gov.by/approved-technical-regulations-of-the-customs-union-(eeu))

친환경에너지 사용과 관련 벨라루스는 발전용 연료의 약 80%를 해외에서 수입함에 따라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해 2005년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주요 정책 과제로 지정한 바 있으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벨라루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이 전체 에너지 생산의 6%에 불과하나 벨라루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9%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2년5월 국회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분야 관련 규정"에 관한 법률안 채택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벨라루스에서의 지식재산권은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나 기타 국가들과 유사한 편이다.

- 벨라루스가 적용하는 국제협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협약, WIPO 실연·음악 조약, 파리 조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협약, 베른협약, 올림픽마크 보호조약, 니스협정, 로카르노협정,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 프로토콜,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조약, 제네바음반협약, 로마협약.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품목을 규정하는 단일관세목록을 구비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기준으로 벨라루스 제품 100여 종류가 단일관세 등록처(Single Register)에 등록되어 통관 시 심사를 받고 있다. 통관절차 진행 중 단일관세목록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에 대한 권리침해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통관시키지 않고 최장 10일간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회 10일 연장 가능).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 세관은 관세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의 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 중 다음에 대해서는 지식

재산권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 자연인이 개인용으로 들여오는 물품 및 국제우편을 통해서 수령받는 물품
- 외교사절단과 영사대표부, 기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기관 및 인사 등이 공적·사적 용도로 반입시키는 물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벨라루스는 132개국 중 종합 77위(‘21년 62위)를 차지했으나, 정치, 환경, 신용·투자 지표를 제외한 인적·자원연구(Human capital and research)는 35위, 지식·기술 성과(Knowledge and technology outputs)는 40위를 차지하여 중상위권에 위치해있다.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법

벨라루스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투자법” 53-3호(2013년 7월)와 “면허권(Concession)에 관한 법” 63-3호(2013년 7월), “벨라루스내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통령령 제10호(2009년 8월) 등이 있다.

2012년 발효하고 2014년 일부 개정된 투자법은 투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벨라루스 내 투자를 위한 기본 원칙과 투자 방식을 보다 확대 규정하였다. 또한, 예외적인 투자와 투자를 통해 발생한 다른 재산에 대한 보상 조건을 재정비하였다.

외국인 투자 촉진책 시행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벨라루스내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하였다.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임대되는 국가부지는 경매(auction)없이 제공
- 투자자가 투자대상물이 위치한 부지내 녹지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
- 투자자 소유 건물, 시설물 등을 무상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설계자, 시공자, 하청업자를 직접 선정할 권리 보장
- 경제자유구역 개발기금,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산입되던 부지임대계약 체결 권리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구입하는 상품, 서비스, 재산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공제
- 투자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국유지에 건축물이 완공된 해의 다음해 12월 31일까지 토지세 및 임대료 면제
- 투자계약 유효기간중 혁신기금(Innovation Fund) 납부의무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벨라루스인이 아닌 제3국인을 고용할 경우, 제3국인 고용시 발생하는 세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로 부지 사용시 야기되는 농업·임업상의 손실 보상 의무 면제
- 기타 대통령이 부과하는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투자 보호대책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권을 보호 받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벨라루스 법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모든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하면 잔여 수익을 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재산을 국유화할 때에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분쟁시 국제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금지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벨라루스 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분야
- 벨라루스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경제부의 동의없는 투자
- 벨라루스 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분야

세부적으로 군수품(총기, 탄약, 폭발물 등) 및 군사시설, 마약류, 방사능·화학 폐기물 처리, 귀금속 채굴 및 가공, 임업, 복권사업, 역사 유물 등 약 21개 산업군/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투자 허가 절차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벨라루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투자 계약목록에 등록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투자계획 실행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계획의 산업적 특성과 그 행정관할권을 고려하여, 해당 투자안에 대해 권한을 갖는 국가행정기관 및 기타 중앙정부 산하 국가기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됨.
- 투자자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내용이 벨라루스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자계약이 체결됨.

투자계획은 투자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적법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은 투자계획 실행을 위해 벨라루스내로 반입되는 장비와 부속품, 부가가치 등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투자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 부지를 경매과정 없이 임대할 수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외국인 및 외국인 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을 아무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외국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자연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관련기관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투자 지분 제한 관련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서방 제재 등으로 현지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 외국 투자기업들이 지분 매각 후 철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벨라루스 유가증권 처분 제한에 관한 재무부령”(2022년 7월 5일)을 도입했으며, 특히 벨라루스에 비우호적 조치를 한 국가¹²⁰⁾ 출신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190개 기업이 지분 매각 금지 대상기업 목록에 포함되었다.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법 채택

한편, 벨라루스에서는 2016년 7월 2일 ‘민관파트너십(PPP)에 관한 법(이하 PPP 법)’이 발효되었다. PPP 법은 정부와 민간업체 간 협정 체결에 있어 새로운 계약형성 방식을 제시한다. PPP 협정체결은 벨라루스 정부가 주관하는 입찰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PPP 사업수행 대상은 국가가 소유한 엔지니어링 및 제조, 에너지 포함 사회, 교통 인프라 등이다. PPP법은 정부와 민간업체는 체결된 PPP 협정 조건에 따라 해당 PPP 사업 이행에 관련 사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PPP 사업 수행시 민간업체는 해당 인프라 시설에 관한 전체 또는 일부 설계, 공사, 재건, 개보수, 유지, 현대화, 기술 서비스 제공 및 운영할 의무가 있다. 동 의무 이행 보장을 위해 동 시설 소유 또는 사용이 민간업체로 이전될 수 있으며, 동 시설의 기반을 이루는 부지는 민간

120) 2022년 4월 벨라루스 정부는 39개 비우호 국가 명단을 발표하였다. 동 명단에는 EU 회원국(27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알바니아,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포함된다.

업체에 영구적 혹은 한시적으로 임대될 수 있다. 민간업체는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전체 또는 일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업체 권리에 대한 보장은 아래와 같이 제공될 수 있다.

- 투자자가 제공받는 전반적인 권리 보장
- PPP 협정 또는 여타 법규가 예외로 규정하는 사례 또는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도덕·국민건강, 제3자 권리·자유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업체 활동 불간섭
- 외국 파트너에게 자유로운 수익 양도
-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보호

디지털 무역 장벽

2018년 1월 1일 발효된 조세항목에 따라 벨라루스에서 벨라루스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전자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세무당국에 등록
- 상품 가격 설정 시 부가세 20%를 고려하여 책정
- 세무당국에 세금 신고서 제출
- 부가세 20%를 포함하여 세금 납부
- 세무당국에 소득 및 세금 납부에 대한 확인 서류 제출

외국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반드시 세무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그 이후에 고유의 계좌번호와 계정을 부여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59개 외국 기업이 세무당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2018년 약 8백만 달러의 세입이 기록되었다.

대중매체법(Law on Mass Media)에 따라 정부가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웹사이트를 법원의 판단 없이 차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권단체 홈페이지나 온라인 뉴스매체의 웹사이트들이 주기적으로 접속 차단되고 있다.

최근 해외 온라인 구매 증가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해외 온라인 구매에 대한 VAT 세율이 20%로 적용되며, 인터넷 판매금지 상품 목록(무기, 금괴, 귀금속 등)도 운용하고 있다.(세법 No.31-6)

투자 환경 평가

기업경영여건 : Doing Business 2020

		기업경영여건순위				
		2020	2019	2018	2017	2016
종합순위		49/190	37/190	38/190	37/189	44/189
1	사업등록(기업등록절차)	30	57	30	31	12
2	사업허가(상품보관창고 건축)	48	46	22	28	34
3	전력공급(신설창고 전력공급 절차)	20	20	25	24	89
4	재산등록(재산양도 규제)	14	5	5	5	7
5	신용획득(법적권리, 신용정보)	104	85	90	101	109
6	투자자보호(기업 거버넌스)	79	51	40	42	57
7	조세납부(조세부과대상, 환급)	99	99	96	99	63
8	대외무역(수출입)	24	25	30	30	25
9	계약이행(법정 효율성)	40	29	24	27	29
10	사업폐쇄(파산)	74	72	68	69	69

자료 : Doing Business 2020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에서 벨라루스는 2020년 49위를 기록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러시아(28위), 카자흐스탄(25위), 아르메니아 (47위), 키르기스스탄(80위)들에 비해 저조한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위권 이상의 평가가 내려진 주요 이유는 재산등록(14), 대외 무역(24)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 공급은 2016년 대비 69단계 상승(89→20)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지수 : 2022년 세계경제자유지수 (The Heritage Foundation)

			기업경영여건순위				
			2021	2020	2019	2018	2017
종합순위			135/184	88/180	104/180	108/180	104/180
1	재산권 보호제도	법률 및 법치제도	34.5	63.2	55.2	53.5	50.9
2	청렴도		43.7	37.4	37.7	42.0	37.6
3	사법효과성		15.5	—	—	—	—
4	재정정책	정부기관 행정	95.3	95.4	85.4	89.8	92.8
5	정부지출		56.7	54.1	41.3	47.9	48.7
6	조세부담		93.3	—	—	—	—
7	기업 자유	관리감독기관 효율	54.5	76.4	75.0	74.1	71.3
8	노동 자유		46.8	74.8	75.3	73.1	74.6
9	통화 자유		70.2	69.8	67.0	62.3	60.4
10	무역 자유	시장 자유도	75.6	82.0	76.4	81.4	80.6
11	투자 자유		30.0	30.0	30.0	30.0	30.0
12	금융 자유		20.0	20.0	10.0	10.0	10.0

자료 : 2022년 세계경제자유지수 (2022 Index of Economic Freedom)

2022년 벨라루스는 전체 조사대상국(184) 가운데 과거 대비 대폭 하락한 135위를 위치¹²¹⁾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64위), 아제르바이잔(75위) 등은 ‘어느정도 자유로운(Moderately Free)’ 범주 분류에 남았으나 CIS 국가 대부분이 하락하면서, 벨라루스와 러시아(113위)는 ‘대체로 자유롭지 않은(Mostly Unfree)’ 단계로 내려왔다. 이는 재산권 보호제도 및 기업·노동자유 부문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유럽지역 45개국 중 45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21)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순위 : 러시아(113위), 카자흐스탄(64위), 아르메니아(58위), 키르기스스탄(116위)

벨라루스 국가투자민영화국

- 영문명 : 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 홈페이지 : <http://www.investinbelarus.by/en/>
- 전화번호 : +375 17 200-81-75
- 이메일 : mail@investinbelarus.by

벨라루스 경제부

- 영문명 : Ministry of Economy
- 홈페이지 : <http://economy.gov.by/en>
- 전화번호 : +375 17 200-53-16
- 이메일 : minec@economy.gov.by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 영문명 :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 홈페이지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 전화번호 : +7 495 669-24-00
- 이메일 : info@ecommission.org



세르비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 동향

세르비아 경제는 90년대 구유고 내전, UN의 경제제재, 코소보사태와 NATO 공습 등 국내외 정세불안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3.5%의 높은 GDP 성장을 시현하였다.

세르비아 경제는 기본적으로 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유럽 경제의 부침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2008년말 세계 금융위기와 이에 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침체 영향으로 세르비아 경제는 실업률 급증, 외환위기 등 경제가 크게 악화되기도 하였다.

2012년에도 유럽 지역 경제가 미처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부문 부진, 주요 철강공장 조업 중단 등 악재가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2014년 5월 대규모 홍수로 인해 경제활동에 큰 피해를 입어 실질 GDP는 -1.6%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세르비아 경제는 2015년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16년 3.3%, 2017년 2.1% 2018년 4.5%, 2019년 4.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¹²²⁾ 2020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축이 불가피함에도 세르비아는 거시경제의 안정세, 지속적인 경제 구조 개혁 노력에 따라 주변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의 경제성장률(-0.9%)을 기록하였다.

122)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locations=RS>

2021년 세르비아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기에 접어들어 전년대비 7.4% 성장하였다. 2022년 세르비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대란으로 인한 고인플레이션에 따라 경제성장속도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 국제기구는 2022년 세르비아의 경제성장률이 2.5%~3.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²³⁾

세르비아혁신당 주도의 현 정부는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적을 바탕으로 EU 가입 추진, 디지털화, 외국 기업 투자 적극 유치,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경제구조 개혁과 투자 유치,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정책을 지속 강화할 예정임에 따라, 거시경제 안정화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지표

항목(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GDP (억USD)	444	506	515	533	629
1인당 GDP PPP 기준(USD)	16,611	17,718	18,822	19,094	21,432
실질GDP 성장률(%)	2.1	4.5	4.2	-0.9	7.4
수출액 (백만 USD)	15,905	17,830	18,372	18,414	24,519
수입액 (백만 USD)	20,438	23,813	24,662	24,355	31,511
무역수지 (백만 USD)	-4,534	-5,983	-6,290	-5,941	-6,992
경상수지 (백만 USD)	-2,323	-2,459	-3,535	-2,177	-2,742

123) EBRD. <https://www.ebrd.com/where-we-are/serbia/overview.html#:~:text=GDP%20growt%20is%20projected%20at,anticipated%20slowdown%20in%20EU%20markets>
 IMF.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11/02/pr22366-imf-staff-reaches-sla-with-serbia-on-third-review-under-pci-and-stand-by-arrangement-request>
 세계은행.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serbia/overview#:~:text=Serbia%20reboun ded%20strongly%20from%20the,risks%20tilted%20to%20the%20downside>

항목(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순유입 FDI (백만 USD)	2,745	3,714	3,973	3,369	4,286
외환보유고 (백만 USD)	11,906	12,875	14,995	16,583	18,617
공공부채 (GDP 대비 %)	57.9	53.7	51.9	57.0	56.5
평균환율 (RSD/USD)	99.1	103.4	104.9	95.7	103.9
평균환율 (RSD/EUR)	118.5	118.2	117.6	117.6	117.6
물가상승률(%)	3.2	2	1.7	1.6	4.1
실업률(%)	13.5	12.7	10.4	9.7	10.1

자료 : EIU, 세르비아중앙은행, 세르비아 통계청, IMF, 세계은행

대외 통상환경

세르비아는 2012년 3월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였고, 2013년 9월에는 EU와의 안정제휴협정(SAA)이 발효되었으며, 2014년 1월, EU 가입협상이 시작되었다. 세르비아는 총 35개 세부분야 중 18개 분야에서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이 중 2개 분야 협상을 완료하였다. 또한, 2021년 6월 새로운 EU 가입 협상방식 수용 후 개최된 1차 정부간회의에서 클러스터 1(Fundamentals)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 EU와의 가입 협상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투자 환경 및 경제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세르비아는 EU,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 인근 발칸국가 등 총 45개국과 통상협정을 맺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무역 비중이 전체 무역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 규모는 약 13억 명에 달한다. 현재 세르비아는 WTO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22년 현재, 세르비아가 체결한 통상협정 체결 현황¹²⁴⁾은 아래와 같다.

124) 세르비아 투자청, <https://ras.gov.rs/en/invest-in-serbia/why-serbia/free-access-to-a-market-of-11bn-consumers>

- EU와의 안정제휴협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SAA)
: 일부 농산물(와인, 설탕, 육우)의 수출 쿼터 부과, 그외 세르비아 산 품목 무관세 적용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는 별도 협정(Partnership,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 자유무역협정(FTA)
 - CEFTA(Central Europe FTA): 세르비아 외 발칸 지역 6개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몰도바, 코소보)
 - EFTA(European FTA): 북유럽 4개국(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EAEU(Eurasia Economic Union) FTA: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 * 기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개별 체결된 FTA 통합¹²⁵⁾
 - 세르비아-튀르키예 FTA
- 일반특혜관세(GSP) : 미국, 일본, 호주

2021년 세르비아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운수장비, 제조제품, 식품 및 동물 등이다.¹²⁶⁾ 지난 3년간 제조업 분야로 외국인투자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 상품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민간 소비 증가와 건설업 활황으로 소비재 및 건설자재 수입이 증가하여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경제 대외 신인도 개선을 위해 2015년 2월 IMF와 3년 기한으로 체결한 935.4백만 SDR(약 12억 유로) 규모의 대기성차관약정(Stand-By Arrangement)을 2018년 2월 종료하였다. 또한, 2018년과 2021년 IMF 정책조정자문(PCI: Policy Coordination Instrument) 경제

125) KOTRA, 2020 세르비아 진출전략

126) 세르비아 통계청, Statistical Pocketbook 2021

개혁프로그램(1차 2018년 7월~2021년 1월, 2차 2021년 6월~2023년 12월)을 이행하였다. 2022년 11월 세르비아 정부는 IMF와 2년 기한으로 19억 SDR (약 24.5억 유로) 규모의 대기성차관약정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동 대기성차관약정 체결 이후에도 세르비아는 IMF 정책조정자문의 경제개혁프로그램 제안 사항을 이행하며 재정건전성 회복, 디지털 및 녹색경제로의 이행, 에너지 부문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국영기업 효율성 제고 등을 달성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¹²⁷⁾

한-세르비아 교역현황

한-세르비아 양국 간 교역액은 2017년 162백만 달러, 2018년 214백만 달러, 2019년 383백만 달러, 2020년 375백만 달러, 2021년 477백만 달러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9년에는 세르비아산 옥수수 수입량이 전년대비 15배 증가함에 따라 교역 규모가 급증하기도 하였다.¹²⁸⁾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액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2021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한국수출입은행 및 현지 진출 기업 정보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기업 총 투자액은 약 1억 7천만 유로 규모이며, A사(약 1억 2천만 유로) 및 B사(약 3천만 유로), C사(약 2천 4백만 유로)가 주로 차지하고 있다.¹²⁹⁾ 주요 투자 진출 분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다.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 전자·기계 부품 등이다. 세르비아 정부의 의료시설 현대화 전략에 따라 의료기기, 질병 관리를 위한 면역질환 의약품 등 의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건설업 및 화장품 시장의 급격한

127) IMF.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11/02/pr22366-imf-staff-reaches-sla-with-serbia-on-third-review-under-pci-and-stand-by-arrangement-request>

128)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

129) KOTRA. 2022 세르비아 진출전략

성장에 따라 화장품, 자동차 부품, 중장비 부품 등도 수출 유망 품목이다. 이들 품목 관세율을 아래와 같다.

2022년 세르비아 수출 유망 품목 관세율¹³⁰⁾

의료기기 (HS 9018)	1-5%	의약품 (HS 3003, 3004)	1-5%
화장품 (HS 3304)	15%	자동차 부품 (HS 8708)	1%
중장비 부품 (HS 8431)	1-3%		

투자 환경

지리적 이점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중심부에 위치하여 발칸과 중유럽을 잇는 관문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유럽과 튀르키예, 그리스를 연계하는 물류 허브로서, 향후 EU 가입이 실현될 경우, 유럽 진출 거점으로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의지

세르비아는 구유고 내전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바 있으나, 2000년대 초반 민주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 모두가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디지털화 및 전자정부 구축을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두고 투자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행정 처리 전자화(Digitalization)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기업 등록, 건축 허가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으며,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¹³⁰⁾ Ministry of Finance - Customs Administration, https://carina.rs/upload/media/2022/5/9/53913/Regulation_on_harmonization_Customs_Tariff_nomenclature_for_2022_Consolidated.pdf

Doing Business에서 190개국 중 44위를 기록하며 2018년보다 4단계 상승하였으며, 2021년에도 동 순위를 유지하였다.¹³¹⁾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그린필드 FDI 성과 인덱스(Greenfield FDI Performace Index) 조사에서 세르비아는 2017년 1위, 2018년 2위, 2019년 1위(2018년 해외직접투자 107건 달성), 2020년 유럽 지역 1위, 2021년 유럽 지역 3위, 2022년 유럽 지역 2위를 달성하며 지역 내 상위권을 차지해오고 있고¹³²⁾, IBM은 2020년 세르비아는 유럽 내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로서, 4년 연속 좋은 투자 성적을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¹³³⁾

아울러 세르비아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EU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EU 표준에 부합되도록 기존 제도 및 법률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투자 및 통상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국 대비 비교우위의 노동시장

세르비아 근로자의 약 86%가 영어 구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르비아 진출 외국계 기업들은 세르비아인들의 학습 의욕 및 성실한 근무 태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¹³⁴⁾ 또한, 2022년 8월 기준 세르비아의 월 평균 총임금은 887유로로¹³⁵⁾ 주변 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1,389유로)¹³⁶⁾ 및 헝가리(1,202유로)¹³⁷⁾의 약 64~74% 수준이고,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131) World Bank Group,
<https://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country/s/serbia/SRB.pdf>

132) FDI Intelligence,
<https://www.fdiintelligence.com/content/data-trends/pandemic-redraws-fdi-outperformers-map-81222>

133) FDI Greenfield Performance Index 2020

134) 세르비아 투자청, "Why Invest in Serbia"

135) 세르비아 통계청. <https://publikacije.stat.gov.rs/G2022/HtmIE/G20221294.html>

136) 크로아티아 통계청.
<https://dzs.gov.hr/news/the-average-net-earnings-in-august-reached-7-679-kuna/1306>

137) 헝가리 통계청. <https://www.ksh.hu/docs/eng/xftp/gyor/ker/eker2208.html>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주변국에 비해서도 낮다.¹³⁸⁾ 실업률은 2021년 기준 11%로 여전히 높은 편이나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이며, 인근국과 비교할 때 임금상승 압박이 크지 않고 노동시장 인력 수급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¹³⁹⁾

투자유치정책

세르비아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010년 5월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과 규정에 관한 명령(Decree on Terms and Conditions for Attracting Direct Investment)”을 제정하고, 이후 지속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 혜택(financial incentives)

세르비아 중앙정부는 제조업, 수출 관련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금융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혜택의 수준은 기업규모, 투자금액, 고용창출 인원, 투자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2016년 1월에 세르비아투자수출진흥청(SIEPA)과 세르비아지역개발청(NARR)이 통합되어 경제부 산하에 설립된 세르비아 투자청(RAS)이 금융 인센티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제조업, 국제적으로 판매 가능한 서비스, 식품 가공업, 온천 지역에서의 호텔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다. 2019년 세르비아 투자청이 발표한 인센티브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38) 세르비아 투자청, “Why Invest in Serbia”

139) 세르비아 통계청, <https://publikacije.stat.gov.rs/G2021/PdfE/G20215671.pdf>

◉ 세르비아 정부 제공 투자 인센티브(2019)

분야 및 지역		제조업					서비스	식품 가공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저개발 지역		
최소고용인원(명)		50	40	30	20	10	15	30
최소투자금액(천 유로)		500	400	300	200	100	150	2,000
급여 (2년치 급여당)	최대보조금비율 (%)	20	25	30	35	40	지역별 상이	지역별 상이
	보조금상한선 (유로)	3,000	4,000	5,000	6,000	7,000		
고정자산	지원비율(%)	10	15	20	25	30		

주: 지역의 개발 정도에 따라 세르비아 정부는 I-IV 및 저개발 지역을 구분해놓았으며, I지역이 수도 베오그라드를 포함한 개발 정도가 높은 지역이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개발 정도가 낮음.

세르비아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목적으로 15개¹⁴⁰⁾의 Free Trade Zones(자유무역지역)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세르비아 투자청에 따르면, Free Trade Zones내 2008-2021년 누적 투자 금액은 38억 2,500만 유로이며, 총 227개의 다국적기업이 입주하여 42,046명을 고용하고 있고, Free Trade Zones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세르비아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¹⁴¹⁾

세금 혜택 (tax incentives)

세르비아의 법인소득세는 15%, 개인소득세는 10%이고, 부가가치세는 20%(기본 식료품, 일간지 등은 10%)다.¹⁴²⁾

(1) 법인소득세 면제

고정자산에 일정금액(10억 디나르, 약 850만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기간

140) Piort, Subotica, Novi Sad, Zrenjanin, Sabac, FAS Kragujevac, Uzice, Smederevo, Krusevac, Svilajnac, Apatin, Vranje, Priboj, Belgrade, Sumadija

141) 세르비아 정부. <https://www.srbija.gov.rs/tekst/en/130037/free-zones-.php>

142) 세르비아투자청.

<https://ras.gov.rs/en/invest-in-serbia/why-serbia/competitive-operating-costs>

동안 100명 이상 추가 고용할 경우에 최초 과세가능 순익보고서 제출연도부터 10년 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해준다. 그 밖에도 투자규모에 따라 건축자재·수송료·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가세(20%) 면제, 원자재·기계·건축자재 수입관세(1-10%)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2) 손실 이월 공제

세금으로 인한 손실은 최대 5년 간 이익에서 차감하여 공제 가능하다.

(3) 이중과세방지

2016년 11월 발효된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 범위 내에서 개인, 기업 및 국가의 소득에 대한 면세, 이중과세 방지 등을 규율하고 있다.

(4) 부가세 및 관세 면제

15개 Free Trade Zones내 공장 설립 시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며, 공장 설립과 상업 활동을 위한 건축 자재, 장비, 원자재 등의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 면세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다.

투자시 고려사항

세르비아는 EU 가입에 대비하여 각종 법령이나 규정을 EU 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 물품의 품질 규격도 EU 표준에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세르비아 수출시 수입 허가요건 변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시 세르비아 지형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도인 베오그라드를 중심으로 헝가리, 크로아티아 국경에 가까운 북부 지역은 독일, 일본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연구개발 관련 투자에 적합하다. 반

대로 베오그라드 이남인 세르비아 중남부 지방은 여전히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이 가능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이 보다 적합하다.

세르비아는 다른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낙후된 행정체계, 노사분규 문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대면 행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행정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중앙·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행정절차를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결정에 있어 세르비아 투자청과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투자 후보지부터 각종 인허가 및 정부 인센티브 협상까지 세르비아 투자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르비아 중앙·지방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협상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더 좋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수입 장벽

통관 절차 및 관세 장벽

세르비아는 2010년 5월 관세제도를 EU 표준에 근접하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 평가, 원산지 규정, 관세요율 분류, 통관절차 등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등이 권고하는 규정에도 상당히 부합하게 되었다.

세르비아는 상품 통관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는데, 수입된 상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전문 인력 및 시스템의 부족으로 수입 상품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정비와 전문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최근 통관 절차는 상당 부분 간소화되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 관세청에 등록된 수출업자의 경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다만, 동 규정은 물품세(excise tax) 부과 대상 상품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운영 측면에서는 주말 및 심야 통관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세르비아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재 총 1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7.4%이다.¹⁴³⁾ 농산물 및 계절성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20%이다.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한다. 빵, 우유, 설탕, 계란, 식용유, 고기, 과일, 채소 등 기본 식료품과 출판물, 숙박 시설 등의 경우 10%, 나머지 대부분 제품에 대해서는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¹⁴⁴⁾ 다만, 자유무역구역(Free Trade Zone)에서 사용되는 자재 수입 또는 그 자재의 운송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수입업자는 물품세법에 따라 석유 제품, 바이오 연료, 최종소비용 전기, 담배, 주류, 커피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tax)를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입업자는 통관처리수수료와 통관처리 관련 행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입규제

세르비아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과도한 수입 보호조치, 그리고 재정수지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세르비아 정부는 특정물품 수입으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하는 수량 제한 및 추가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환경 관련하여 세르비아는 다음 항목들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유로 1~6” 중 적어도 “유로 3(Euro 3)” 조건(배기가스 기준과

143) WTO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daily_update_e/tariff_profiles/RS_E.pdf

144) Ministry of Finance – Tax Administration,
<http://www.purs.gov.rs/en/Legal-entities/Vat/TheLaw/VALUEADDEDTAXLAW.html>

소음 규제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된 차량(중고차 포함)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⁵⁾ 다만, 세르비아 정부는 “유로 3”의 낮은 수준의 환경 요건, 주변국들이 “유로 5”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고차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로 3” 차량의 수입을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¹⁴⁶⁾

또한, 세르비아는 3년 이상 되어 노후한 가스 트랙터, 건축 및 광산 설비(인도주의적 목적 제외)와 유해폐기물 및 유독성 물질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수입허가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그리고 금·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귀금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제 실시 품목은 관세 대상 품목 10,270개 중에서 2%에 해당하는 212개이다.

수입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동 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원산지 규정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와 세관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EU, FTA 체결국 등에 적용되는 특혜 지위(Preferential Status)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 지위(Non-Preferential Status)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특혜지위 대상국가인 EU, EFTA(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CEFTA(발칸 국가) 및 튀르키예는 “EUR 1”로,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즈 등은 “Form CT-2”로 분류하고 있다.¹⁴⁷⁾

145)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erbia-prohibited-restricted-imports>

146) BalkanInsight, “Serbia Mulls Banning Import of Euro 3 ‘Junkyard’ Cars”,

www.balkaninsight.com/2020/01/27/serbia-mulls-banning-import-of-euro-3-junkyard-cars/

147) Commecium.rs.

https://commercium.rs/Customs_Tariff-218/group_id=Rules_of_origin-60#:~:text=The%20certificate%20of%20origin%20EUR,4%20months%20upon%20the%20issuance

세르비아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따라 환경 규제가 까다롭지는 않으나,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EU가입 협상(27장 환경과 기후변화)과 기후변화에 관련한 국제협약(교토의정서, 파리협약 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2017년 환경보호부를 신설, 국경 간 환경오염물 이동 및 기후변화, 환경 보호 정책 및 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관할토록 하고 있다.

2018년에 제정된 “공공재 사용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해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세(eco tax)를 부과한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기업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기업은 연 RSD5,000~RSD2,000,000(약 45~20,000 유로) 사이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반면 환경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제공한다.

세르비아 정부는 폐기물 처리와 폐수처리,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2034년까지 EU 환경개선기금과 자체 예산,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약 54억 유로 이상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간 세르비아는 지열, 태양광, 히트펌프, 폐기물에너지화 등을 통해 지역난방에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일본 자본으로 폐기물 매립지 Vinca 지역에서 열을 연계하여 에너지화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3년 2월부터 유럽개발부흥은행의 지원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¹⁴⁸⁾

2021년 세르비아는 EU 환경기준 국내 이행을 위해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개정 및 도입하였다. 2021년 3월 세르비아는 기후변화법(Law on Climate Change)을 도입하여 탄소배출절감정책 기본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에너지기후통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¹⁴⁹⁾ 또한 2021년 4월 세르비

148) 유럽개발부흥은행. <https://www.ebrd.com/work-with-us/projects/psd/53021.html>

149)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아는 재생에너지원 활용에 관한 법(Law on Use of Renewable Energy)을 도입하였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쟁방식의 시장프리미엄 도입을 명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활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¹⁵⁰⁾ EU가 세르비아의 관련 제도 및 법안을 2050 그린어젠다와 합치할 것을 주문하는 만큼, 향후 관련 법제 제·개정 및 기존 제정된 법안의 시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¹⁵¹⁾

정부조달

세르비아 정부는 2019년 11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달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5개년 정부조달 개발 프로그램을 발표¹⁵²⁾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조달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르비아 조달 시장 규모는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성장하였으며, 2020년 기준 GDP의 6.88%¹⁵³⁾인 36억 달러 규모를 차지한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의 조달 시장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할만 하다.

2019년 세르비아 정부는 EU 정부조달 지침과의 조화를 위해 정부조달법을 추가 개정하였다. 개정 법안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 등 정부조달 절차, 비용,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및 부패 방지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¹⁵⁴⁾

한편 2020년 2월 제정된 “선형인프라시설(Linear Infrastructure Project)에 대한 특별법”은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등 “세르비아에 특별한 중요성(special

150) Balkan Green Energy News.

<https://balkangreenenergynews.com/serbia-adopts-four-laws-on-energy-mining/>

151)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152) 세르비아재무부,

https://www.mfin.gov.rs/wp-content/uploads/2020/02/ENG_PFM-Izves%CC%8Ctaj-2019.pdf

153)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erbia-report-2021_en

154)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rbia,

<https://www.srbija.gov.rs/vest/en/145530/government-passes-public-procurement-bill.php>

importance for the Republic of Serbia)”이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조달법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정부가 조달 절차에 개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세르비아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EU는 조달 절차에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조달법의 취지와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언급하였으며, 2021년 EU집행위원회 국별보고서는 코로나19 연관 품목을 이유로 상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조달법 적용의 예외가 된 품목 및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022년에도 동 조항의 폐지 필요성을 상기하면서 선형인프라시설 관련 공공조달 투명성 증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¹⁵⁵⁾

지식재산권 보호

세르비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며, 정부 내에서는 지식재산실(IP office)이 상표 등록, 특허, 저작권, 산업디자인, 원산지 표시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한 법과 정책을 관할한다.

EU 가입 협상(7장 지식재산법)에 따라 세르비아는 관련 국내 규정을 EU 기준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2019년 9월, 특허법,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법 등이 개정되고, 관련 절차법이 마련되었으며, 2020년 1월에는 상표등록에 관한 법이 새로이 도입되었다.¹⁵⁶⁾ 또한 늘어나는 지식재산권 신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자 신청(e-application)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허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절차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⁵⁷⁾ 이외에도 세르비아는 특허법 일부를 개

155)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ites/near/files/serbia_report_2020.pdf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156) 세르비아 지식재산실,

https://www.zis.gov.rs/upload/documents/pdf_sr/pdf_o_nama/god.izv.2020-10sa%20korica%20za%20Sajt.pdf

157) 세르비아 지식재산실,

http://www.zis.gov.rs/upload/documents/pdf_sr/pdf_o_nama/god.izv.2019-10%20za%20sajt.pdf

정하고 지적재산권 유관 담당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⁵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혁신지표(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세르비아는 2022년 전년도보다 한 계단 낮아진 55위(2021년 54위)를 차지하였는데, 동 기구는 세르비아가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혁신 성과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하였다.¹⁵⁹⁾

세르비아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 아니므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상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국제특허협력조약(PCT) 및 파리협약¹⁶⁰⁾에는 가입되어 있어 세르비아 내에서 개인과 법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상표등록이나 특허권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권리 침해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세르비아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경쟁 정책

세르비아의 경쟁보호법은 경쟁보호위원회(CPC)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카르텔 참여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인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2013년 10월 경쟁보호법 개정을 통해 경쟁보호위원회의 조사권이 강화되었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정의가 EU규범에 가깝게 조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통상관광이 동통신부의 주도로 새로운 경쟁보호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¹⁶¹⁾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경쟁보호법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 세르비아의 경쟁보호 노력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위원회(Foreign

158)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159) 세르비아 지식재산실, <http://www.zis.gov.rs/news.370.html?newsId=2490>

160) 국제지식재산기구,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gii_2021/rs.pdf

161) Emerging Europe.

<https://emerging-europe.com/news/serbia-drafts-new-competition-law/>

Investors Council, FCI) 2021년 백서는 경쟁보호위원회의 활동이 전년 대비 활발해졌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규 경쟁보호법의 조속한 도입과 위원회의 시장행위자 대상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⁶²⁾

국가보조는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에서 규율하고, 2019년 10월에는 국가보조 수단 명시, CSAS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조 통제에 관한 법이 개정됐다.¹⁶³⁾ 2022년 EU 국별보고서는 전년 대비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 집행력이 보다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¹⁶⁴⁾. 다만 동 보고서는 전년 지적 사항과 같이 세르비아가 특정 국적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보조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조는 비차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⁶⁵⁾

부동산 취득과 사용 제한

기본소유권법에서 명시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세르비아 국민 및 법인과 큰 차이는 없으나,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예컨대 외국인은 군사시설, 국립공원 등 인접지역 부동산 소유에는 제약이 있으며, 외국 법인은 해당 자산의 상업용 사용 목적 및 모국과의 상호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아파트 형태의 부동산을 상호주의에 따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세르비아 내 영구 또는 임시 거주 요건은 없다.

162) 세르비아외국투자자위원회,

<https://fic.org.rs/wp-content/uploads/2021/11/White-Book-2021.pdf>

163) Stojković Attorney,

<https://statt.rs/the-national-assembly-of-the-republic-of-serbia-adopts-a-new-law-on-state-aid-control/>

164)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erbia-report-2021_en

165)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모든 부동산 소유권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동산세(부동산 시장가치의 0.4~2%)와 소유권 이전시 부과되는 소유권이전세(부동산 시장가치의 2.5%) 및 자본이익세(실현된 이익의 15%)가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세르비아 정부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기반하여,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2020년 1월 세르비아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이전 표준 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에 따라 세르비아에 기반을 둔 법인이 당사자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 국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절한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는 국가 및 단체 목록”상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 지역에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¹⁶⁶⁾ 2021년 12월 EU집행위원회가 한국을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 및 단체 목록”에 포함함에 따라 세르비아에서 한국으로의 개인정보이전에 적용되던 제약 또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¹⁶⁷⁾

통신장비 및 서버 위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및 제약

세르비아 정부는 통신장비의 위치나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EU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외 클라우드의 경우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과 사업자와의 법률 계약에 기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66) 세르비아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Decision On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Commissioner For Information of Public Importance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167)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1_6915.

인터넷 서비스 및 OTT 국경간 공급 제한

세르비아는 EU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인터넷망중립성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Open Internet)을 마련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에 따라 세르비아 내 특정 통신망이나 인터넷 서비스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재생 속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OTT서비스 제공은 전자미디어에 관한 법(Law on Electronic Media)에 따라 국내, 국외 사업자 모두 제약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2022년 현재 외국계 OTT서비스로는 넷플릭스, HBO, 구글TV, 아마존 프라임, 애플TV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검열 및 제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인터넷상의 표현이나 개인 이메일, 대화창 등에 대한 검열과 제한은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법, 형사 소송법상 근거나 공공 안전을 목적 등 정부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판단될 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계 당국이 개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와 조사 일시, 트래픽 기록 등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전자상거래

세르비아 내 전자상거래는 2019년 개정된 전자상거래법과 무역법에 의해 규율된다. 두 법 모두 전자상거래의 형태, 사업모델, 지불 및 제공 방식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세르비아 무역법이 세르비아 시장을 목표로 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에게 적용되는 반면, 전자상거래법은 세르비아 내 등록된 정보서비스 제공 기업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외국에 등록된 법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원격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무역법과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 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전자상거래 운영을 위해서는 세르비아 내 법인이나 대표사무소를 설치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상거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르비아 내의 전자상거래의 규모도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법안의 허점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¹⁶⁸⁾ 세르비아 정부는 2021년 7월 전자상거래 상 전자문서,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 서비스 구축에 관한 법(Law on Electronic Documents,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ed Services in Electronic Business)의 개정안을 도입하였다. 이 개정안은 전자서명 발급 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였던 전자신원 확인문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¹⁶⁹⁾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르비아 외부에서 국내로 물품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상품 가격	관세 및 부가가치세
50유로 이하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20% 추가
50유로~3,000유로 이하	관세 10%, 부가가치세 20% 추가
3,000유로 이상	관세법 규정 비율 의거해 관세 부여

기타 참고사항

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이 세르비아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세르비아기업법(Serbia Companies Act)”에 따라, 자회사(Subsidiary)나 지사 또는 지점(Branch),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등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회사는 유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 파트너십(Partnership 또는 Limited Partnership) 등으로

168)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erbia-report-2021_en

169)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erbia-report-2021_en

구분된다. 법적으로 자회사는 모회사와는 분리된 독립 법인으로 간주되며, 세르비아 국내기업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최소 기본 자본이 RSD100(약 1유로)로 초기 준비자금이 적고 등록 절차도 비교적 간소하여 가장 일반적인 법인 설립 유형에 해당된다.

지사나 지점의 경우, 설립절차는 자회사와 비슷하나, 법적으로 독립 법인이 아닌 모회사를 대리하는 별도 조직(an extended arm of founder company)로 간주된다. 따라서 거래 행위는 모회사를 대리하는 행위가 되며, 제3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모회사가 부담한다. 대표사무소의 경우, 법적 권한이 더욱 제한적이어서 마케팅, 계약 협상 등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만 가능하다. 설립 절차는 자회사와 유사하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세르비아 기업등록청(Serbian Business Registers Agency, SBRA)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해야 한다. 법인 소재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정관, 회사 설립 계약서 및 신청서에 대한 공증을 받고, 기업등록청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관할 세무서 및 산업재해청에 피고용인 사회보장세(연금 및 산업재해보험) 등 납세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2018년부터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 제정된 “최종수익권자 등록에 관한 법률(Law on Ultimate Beneficial Owners Central Registry)에 따라 법인 설립 후 15일 이내에 수익권자(beneficial owner)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법인설립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며, 통상 약 10~15일 이상 소요된다. 기업 등록과 관련된 상세 사항은 세르비아 기업등록청 홈페이지¹⁷⁰⁾를 참조하면 된다.

세르비아 기업등록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2008년 말부터 “기업등록 Business Process IT 사업”을 착수, 2010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법인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2019년 6월부터는 모든 기업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졌다.¹⁷¹⁾

170) <https://www.apr.gov.rs/registers/companies.1786.html>

171) 세르비아기업등록청,
<https://apr.gov.rs/services/eservices/e-registration-of-incorporation-of-a-single-member-ltd.4265.html>

출입국 및 비자

한국인은 무비자로 세르비아에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임시 또는 영구 체류허가 및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지에 법인(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고 고용주로서 영리활동 허가를 받으면, 세르비아 국민과 동일한 사용권과 노동권을 갖게 된다.

그 외에 세르비아 내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한국인은 임시거주비자를 받거나 체류기간 중 당국(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임시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시거주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하며, 1년을 상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단기 체류의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세르비아 내 임시거주지 도착 후 24시간 내에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거주지 변경에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호텔 등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숙박서비스 제공 당사자가 신고를 대행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세르비아에서 거주 허가증을 획득한 이후 관할 당국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위탁하고 세르비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 증명서, 대사관에서 공증한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2매, 수수료 지불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스위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스위스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경제성장

2015년 1월 15일 스위스의 유로화대 최저환율제 포기 이후, 스위스프랑(CHF)의 갑작스러운 평가절상으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인해 스위스 경제는 2018년에 정점을 찍고 2019년 들어 전년대비 위축세를 보였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및 유로존 경기 침체, 브렉시트 불안 요소 등으로 GDP 성장률이 1%에 그쳤다. 2022년 상반기, 엔데믹 발표로 경제는 회복 추세였으나, 하반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에너지 위기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9월, 연방경제청은 2022년, 2023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0%, 1.1%로 전망했다.

대외무역

2015년 환율하한제 중단 당시 수출 증가율은 -7%로 하락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2018년에 고점을 찍었다(3.96%).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의료용품, 귀금속, 유기화학품의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1.69%가 증가했다. 2021년 對미국 수출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였고 對중국, 對인도 수출 또한 증가하여 스위스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9.06%를 기록했다. 2022년 수출증가율은 4%, 수입증가율은 5.6%로 전망되며, 2023년 수출 2%, 수입 2.3%의 증가율이 예측된다. 단, 에너지 위기 영향이 광범위하지 않을 것이란 가정하에 예상된 수치이다(2022년 9월 연방경제청 발표 기준).

노동시장

연방경제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스위스의 실업률을 2020년 3.2%, 2021년 3.4%로 높게 예상하였으나, 예상 외로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2020년 3.1%, 2021년은 2.4%를 기록하였다(연방경제청, 2022년 1월 기준). 하지만, 2022년 다시 경기 침체 영향으로 고용성장 기세가 꺾이며 4분기에 실업률이 소폭 증가, 연실업률이 2.2%로 예상되며, 2023년 실업률은 2.3%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18년에는 석유 제품의 가격 인상과 주택임대의 증가로 인해 0.9% 상승했다. 2019년 스위스 물가는 0.4%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0.7%, 2021년 -0.1%로 전망하고, 2021년에는 -0.7%, 0.5%로 수정하였다(연방경제청, 2021년 11월 기준). 2022년 물가상승률은 예상했던 0.6%보다 높은 3%를 기록할 전망이며, 2023년은 2.3%로 전망하고 있다(연방경제청, 2022년 9월 기준).

한-스위스 통상·투자 현황

한-스위스 무역 동향

(1) 최근동향

한국의 對스위스 무역수지는 2018년 이후 적자폭이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 수출 112.29% 증가, 수입 16.54% 증가를 기록했다. 2022년 8월 누계 기준으로는 수출, 수입 각각 10.9%, -1.7%를 기록했다.

○ 우리나라의 對 스위스 무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수출(증감률)	497(1.8)	589(18.6)	716(21.6)	723(23.8)	566(10.9)
수입(증감률)	3,037(11.1)	2,980(-1.9)	2,749(-7.7)	2,731(24.3)	2,168(-1.7)
무역수지	-2,540	-2,391	-2,033	-2,008	-1,602

1) 2018년 전자자동차 수출 상승세: 2017년 900만 달러(전년대비 144.9% 증가) 기록 후 2018년 128.2% 증가

2) 2018년 수출 증가 사유: 품목들의 전반적인 수출 상승. 백금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이 1,400만 달러 이상을 기록

3) 2022년 8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2) 세부 수출현황

2021년 기준 총 수출 규모는 855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9.5%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의약품(166백만 달러, 총 수출의 19%), 승용차(150백만 달러 17%), 귀금속(90백만 달러, 10.5%) 등이다. 2021년 경기불안정으로 인한 안전자산 구매 증가로 귀금속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2022년 8월 누계 기준 총 수출 규모는 56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했다. 주요 품목은 의약품(128백만 달러, 총 수출의 22.6%), 귀금속(116백만 달러, 20.5%), 승용차(88백만 달러, 15.5%) 등이며 각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29.6%, 107.1%, -6.3%이다.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72.6%를 차지한다.

○ 우리나라의 對 스위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MTI 4 기준)	2021년		2022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855	19.5	668	10.9
1	의약품	166	-20.1	149	29.6
2	승용차	150	3	88	-6.3
3	귀금속	90	11.6	116	107.1
4	유기화학품	70	87.6	42	-1.4
5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68	8.9	32	-22.3
6	시계	66	121.6	22	-58.3
7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57	5967	4	-20.7

순위	품목명 (MTI 4 기준)	2021년		2022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8	전기기기과 그 부분품	45	32.7	37	36.5
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1	24.1	19	-11.5
10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25	9.5	15	-13.5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세부 수입현황

2021년 기준 총 수입 규모는 총 3,36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2.2% 증가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시계(874백만 달러, 26%), 의약품(581백만 달러, 17.3%), 원자로 및 기계류(469백만 달러, 14%) 등이며, 상위 3대 수입품이 전체 수입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8월 누계 기준 총 수입 규모는 2,16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 감소했다. 주요 품목은 시계(565백만 달러, 26.1%), 의약품(350백만 달러, 16.1%), 원자로 및 기계류(314백만 달러, 14.5%) 등이며, 상위 3대 수입품이 전체 수입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21년		2022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360	22.2	2,168	-1.7
1	시계	874	28.9	565	-0.7
2	의약품	581	21.4	350	-5.5
3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469	-1.4	314	0.2
4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345	11	244	6.2
5	귀금속	268	86.5	99	-24.5
6	전기기기과 그 부분품	161	1.5	158	44.3
7	커피, 마테, 차	130	42.7	78	-14
8	유기화합품	115	-0.7	67	-0.5
9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73	686.7	35	-48.2
10	플라스틱과 그 제품	52	22	39	18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스위스 투자동향

(1) 한국의 對스위스 투자

스위스는 내수 시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물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측에 속한다. 또한 EU회원국이 아니며, 언어적 장벽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현재까지 투자규모가 큰 수준은 아니다. 대부분의 한국기업(스타트업 포함)은 스위스 기업과의 R&D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은 스위스 대학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9	2020	2021	2022.2분기	누계*
신고건수	12	11	8	6	241
신고금액	120.9	278	54	4	1,195
투자금액	103.6	249	54	4	1,105

* 집계기간 '80년-'22년 2분기

자료: 수출입은행

(2)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고 해마다 등락이 반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는 2014년 7만 9천 292천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2015년 2천 607천 달러로 큰 감소를 보이고 이후부터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변화폭은 제조업보다 크다. 스위스의 주요 투자 기업은 센시리온(sensirion, 센서), ABB(엔지니어링), 네슬레(Nestle, 식품), 게이트고메(Gate Gourmet, 기내식), 미벨(Mibelle Group, 화장품) 등이다.

2022년 3분기 신고 기준 스위스의 對한 투자 규모는 총 누계 181백만 달러이다. 분야별 비중은 제조업(56.4%), 서비스업(43.6%) 순으로, 건당 투자금액은 제조업(5.8백만 달러)이 서비스업(2.4백만 달러)보다 크지만, 세부분

아 기준 건당 투자금액은 제조업의 화공 분야(79.3백만 달러)와 서비스업의 운수·창고 분야(69.7백만)가 가장 높다.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분기
총 신고건수	34	22	24	19
총 신고금액	184.7	86.6	100.3	181
제조업	152.8	77.6	23.4	102
서비스업	31.9	9	76.9	7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연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스위스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이에 따라 특혜협정 없이도 공산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농산물은 여기서 제외된다. 스위스 정부는 끊임없이 관세장벽을 낮추고 관세제도를 더욱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다. 그동안 스위스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던 분야는 진주 및 귀금속류(71류), 의류와 그 부속품(62류),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61류), 가죽제품(42류) 등으로 최근 동 분야의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산물 중 가공농산물의 경우는 자유교역대상으로 스위스 시장에서 100% 관세양허 대상이며 기본 농산물에 관하여는 한-스위스 간 별도의 양자 농산물협정을 체결, 스위스측은 한국 농산물 중 51%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양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사과 및 배에 대해서는 키퍼 및 계절관세의 적용을 통해 일부 양허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생산이 없는 스위스산 치즈 4품목에 대해 키퍼(5년간 45톤, 6년째부터 60톤) 설정 후 10년내 철폐, 포도주에 대해 10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한국과 스위스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 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상호신뢰 협정체결을 합의하고 2019년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의 발효로 양국 정부가 자국에서 승인, 발급한 GMP를 상대국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원산지 규정

외국으로부터 스위스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최종 판매가격의 60~80% 이내일 경우 스위스산 원산지 지위를 갖고 유럽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판매될 수 있다.

스위스의 원산지 규정은 일반, EU/EFTA, GSP, FTA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3월부터 GSP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06년 9월 한-EFTA FTA 발효에 따라 FTA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은 부속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 가격 결정기준은 공장도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EFTA FTA는 역외가공 조항을 두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역외가공 제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을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음은 물론, 향후 개성 이외 북한지역에서의 역외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동 조항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규제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스위스는 종전의 키퍼제를 관세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관세 할당량은 “e-quota”이라는 할당량 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할당량이 소진된 범위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덤핑, 상계관계 및 긴급 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조치에 관하여 한-EFTA FTA는 WTO 규범보다 엄격한 수준의 조건을 규정하였는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라도 “낮은 관세 원칙(lesser duty rule)”을 준수하고, 반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개시 이전에 해당국에 서면통보 및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WTO 규범 준수에 더하여 조치 개시 이전 당사국 간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EFTA FTA는 또한 양자 간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최초 발동 시 1년간 유효하며 최대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조치 종료 후 3년간은 조치대상 품목에 대해 어떠한 추가조치도 취할 수 없다. 물론 WTO 체제상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회원국의 고유 권한은 존중된다.

스위스 정부는 관련된 무역보호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이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여긴다. FTA 협정국과는 반덤핑 규제의 상호배제를 지향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기술규정 인증

스위스는 전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가입국에 적

용되는 유럽공동체 마크(CE: Communautés Européennes)나 일본 산업 표준(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한국표준(KS: Korean Standards)과 같이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테스트와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제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함으로써,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 이상이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CE) 마킹 관련 지침 중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2002년 6월부터 발효된 스위스와 EU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 자국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단 현재 주의할 점은 2021년 5월 26일부로 EU와 스위스 간의 MRA(상호인정협정)가 의료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CE인증 여부를 받았던 것과 무관하게 스위스 시장 내 유통을 위해서는 다시 스위스인증대행업체(Swiss Authorised Representative)를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시장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Electrosuisse)의 위탁을 받아 Eurofins AG에서 운영하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 인증이 있다(임의 테스트 및 인증).

스위스는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5년에 EU의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스위스의약품청(Swissmedic)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치료제의 경우, 2019년 12월 18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위스의약품청(Swissmedic)이 GMP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대국의 GMP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위생 관련 검사제도

위생 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 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상품 라벨링

2010년 7월부터 스위스는 Cassis de Dijon(까시스 드 디종) 원칙에 따라, 이전까지 EU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상품 중 스위스 시장을 위해 재포장, 재라벨링되었던 상품은 기술적 장벽없이 유통이 가능해졌다. 단, 식품류는 특별규정을 두어 최초 수입시 스위스 식품안전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연방보건국(FSVO)의 승인이 필요하다. 공익목적을 위해 이 원칙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은 네가티브 목록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 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유전자변형상품(GMO)에 대해서는 2003년 발효된 유전공학법(Gene Technology Act: GTA)이 적용되며, GM성분을 함유하는 모든 식품과 첨가물은 표기를 해야 하나, 예를 들어 비타민처럼 GM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제품은 표기 대상이 아니다. 가축용 사료의 경우 GM성분이 모든 단일 성분의 0.9 % (threshold value) 이상인 상품은 표기 대상이고, 종자도 GM 표기 대상이다(mandatory labelling). 아울러 2021년까지 GM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화학제품은 국제규정에 맞춘 위험성분에 관한 라벨링이 요구된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소비량 등을 라벨링해야 한다. 스위스의 식료품, 화학제품, 제조품의 라벨링에 관련한 규정은 EU 규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 도입

2000년 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상은 아니다.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리터당 무연가솔린은 73.1센트, 디젤은 75.9센트, 경난방유는 0.3센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임업, 전문 어업, 허가받은 교통 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엔진연료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제공된다.

또한, 2008년 연소물질(combustibles)에 대한 CO₂ 인센티브 세금(tax 형식이 아니라 동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도입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시 발생하는 CO₂ 1톤당 60프랑의 CO₂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CO₂ 1톤당 96프랑으로 인상되었다.

관세청은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CO₂세를 부과하나 유해한 CO₂를 발생시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CO₂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도 연방환경청이 담당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경우 세금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2010년부터 CO₂ 세금 수입의 3분의 1이 건물 외피의 개조 및 투자를 지원하는 연방 및 주 건축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연방에너지법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스위스의 승용차 수입딜러는 신규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말까지 평균 130g/km로 감축해야 했다. 자동차에 대한 CO2 배출기준은 점점 강화되어 스위스 연방각의는 2020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신규 등록 승용차량은 평균 95g/km로, 3.5톤까지의 소형 신규 등록 상용차량은 평균 147g/km로 감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수입딜러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승용차는 물론, 단위중량 1,600kg 이하 경상용차에 대해 차량가격의 4%에 해당하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 이와 별개로 스위스 주(칸톤)는 각 주에 등록된 차량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이는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환경오염에서 자유로운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 혹은 면제하기도 한다. 아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 중인 중형차에는 총중량, 배기가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HVF)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량, 화물운반용, 스위스 국내외에서 허가를 받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러는 동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엠블런스 등의 차량, 운전학습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상이다.

스위스의 전기 소비자는 재생 가능 전기를 지원하기 위해 kWh당 2.3센트의 잉여금을 지불해야 한다. 특정 조건에서 재생 가능한 전력(풍력, 태양열, 지열 및 바이오매스) 생산자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스위스 및 해외에 퇴적된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스위스에 버려지는 폐기물에 대한 요금은 5-16 CHF/t 이다. 지하 매립지에 퇴적된 폐기물에 대한 요금은 22CHF/t이다. 해외 매립지의 경우 스위스 내 매립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선처리 수수료는 유리, 음료수병, 배터리 등의 처리비용을 위해 제품의 구매 가격에 부과된다. 주로 도시 차원에서 부과되는 쓰레기부담금의 경우 각 도시마다 다르며, 대부분 쓰레기 봉투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외 수도세가 있다.

기타

1996년 1월 1일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연방환경청(BAFU)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드뮴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스위스 내 산업설비의 설치 및 운영 시 반드시 환경보호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연방 및 주(칸톤)정부가 환경 위해 요소를 통제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공기 및 수질오염, 소음 방지, 살충제 남용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공해 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정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공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당사국(1994년 비준)으로 연방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주정부(칸톤)의 조달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양허 하한선에 따라 외국인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994년 제정된 연방정부 조달법에 의거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상기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는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조달 및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은 23만 프랑, 건설 분야는 870만 프랑 그리고 물·에너지 및 교통 분야의 기관이 계약 당사자일 경우 서비스와 조달의 양허 하한선은 70만 프랑이다. 한편, 주정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우는 2019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약(IVöB)에 의하면, 건설은 870만 프랑, 조달 및 서비스는 각각 35만 프랑이 하한선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찰공고는 스위스 공공조달 포털사이트(www.simap.ch)에 게재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스위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국제기구 회원국이자 관련

협약 서명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상회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는 스위스의 연방지식재산연구소(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등록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 가능하며, 등록상표권자가 상표를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의장권은 최대 15년간 보호되고,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하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2013년 6월 21일 ‘스위스’라는 명칭(Swiss-made, Made in Switzerland)을 표시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Swissness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메이드인 스위스 제품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 Swiss-made로 간주하려면 공산품의 경우 생산 비용의 최소 6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한다. 2015년 9월 2일 스위스 정부는 법안 시행령을 고시하여 공산품, 농산품, 식품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포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 80% 원산지 원칙을 적용하며,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100%가 적용된다. ‘스위스십자 문장’ 및 ‘스위스’ 표기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표시의 무 사항은 아니다.

스위스 상표법은 개별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상품에 대한 스위스니스 표기 조건을 상세히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스위스 정부는 시계 및 화장품의 스위스니스 사용 요건을 강화한 스위스니스법 시계분야(2016년 6월 17일) 및 화장품분야(2016년 8월 29일) 시행령을 고시하였고 2017년 1월부터 발효시켰다.

서비스 장벽

한-EFTA FTA 당사국들은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GATS 수준에 더하여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단, 스위스가 타 유럽 국가들과 시행

중인 각종 협력사업, 즉 도로운송, 항공운송, 건설,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규정하였다(부속서 8).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분야별로 규제하고 있다. 특별 허가 하에 투자가 가능한 분야는 항공, 통신, 핵에너지, 방송 분야이다. 은행업은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관련 업종은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스위스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는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각의는 신흥경제국의 공격적인 스위스 기업 인수, 특히 2017년, 스위스 기업 Syngenta가 중국의 ChemChina에 43억 달러에 매각된 것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로부터 스위스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2022년 5월 18일 기업인수 목적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투자통제법(Investment Control Act) 초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

그동안 외국인의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으로 작용되었던 법 규정 즉, 외국인의 주식투자 제한과 현지진출 기업의 이사진 중 과반수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의무법(Code of Obligation)의 제한규정(제 711조)이 삭제되었다. 그 대신 2008년 1월 1일부터 이사회 멤버 중 적어도 한명이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고, 대표자 중 한명은 국적과는 상관없으나 스위스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제718조)는 규정이 적용되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Lex Koller법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영업용 부동산과 투자기업의 특정 주거용에 한하여 주(칸톤)정부의 허가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소득세 등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다.

법인세 개정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OECD 실행계획과 EU의 요구를 반영하여 스위스 연방정부는 2019년 5월 조세제도 개정 투표에서 66.4% 찬성으로 조세제도 개정을 추진하였고, 주요 변화 중 하나인 새로운 법인세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새로운 법인세는 외국기업과 스위스기업의 법인세율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 주정부(칸톤) 세 공제 및 감면, 인센티브를 주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특허상자(Patent Box)를 신설해 주정부 재량에 따라 R&D 지출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감면해주며,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공제해준다.

경쟁정책

국내 사업자의 독점 시도

스위스는 1996년 7월 발효한 신 경쟁법(Cartel Act)에 의거하여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나, 동 법이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을 저해하는 강성 카르텔은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 저해 정도가 미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위한 연성 카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Trade Boycotts, 가격차별, 불공정가격이나 조건부과, 생산제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경쟁’을 전적으로 제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인수합병(M&A)은 경쟁위원회 (ComCo: Competition Commission)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2002년 9월 27일 스위스 의회가 경쟁위원회에 벌금조치 제재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카르텔을 형성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카르텔 규제는 상기 Cartel Act를 통해 EU의 독과점 규제정책과 전반적인 조화를 모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독과점 규제 법률인 국내시장규율법(Internal Market Act)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아올러 칸톤 등 지방 차원의 독과점 근절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의 국내 물가는 EU보다 최고 4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스위스 정부는 이러한 고물가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EU 및 미국의 독과점 규제제도를 준용하여 기업 간 경쟁을 한층 강력히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6년 6월 28일 스위스 구강관련 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인 Gaba/Elmex사와 관련된 장기간의 소송에서 스위스 대법원은 카르텔법 5조와 관련, 특정 시장내 경쟁을 제한하거나, 질적·양적 경제적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경쟁 제한 계약을 맺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 결정 이후로 스위스 카르텔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거듭된 논의를 거쳐, 2021년 11월 24일 스위스 연방정부는 카르텔법 개정을 위한 예비 초안을 발표했다. 경성카르텔 협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EU집행위에 이미 통보된 합병은 스위스 연방경쟁위원회(ComCo)에 재통보할 의무를 없애는 것, SIEC 테스트 도입 등 합병관련 규제를 EU표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민사상 독점금지 청구 및 독점금지 행정절차를 더욱 용이하게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 발표 시점은 2024년 이후로 예상된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신 경쟁법 제2조에 의거 경쟁 저해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스위스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역외적용을 할 수 있다.

기타 장벽

전시회 참가 외국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 환불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였을 경우 전시장 임차료, 전기, 수도료 및 장치비 등 제반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양국 간 협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3개월 이내 체류 시는 비자취득이 필요 없으나 그 이상 체류 시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연방정부, 주(칸톤)정부 및 외사경찰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기존 상사주재원의 교체로 인한 신규부임주재원의 비자발급 시에도 동일한 절차와 시일 소요). 게다가 스위스는 체류허가 비자 발급 시 EU와 EFTA국가와 비교하여 이들 이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연간 할당(Quota)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업체와 주요 칸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연방정부는 EU/EFTA 회원국이 아닌 지역 국민에 대한 비자 쿼터 상한을 2020년 총 8.5천개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B형 비자는 4.5천개이고 L형 비자는 4천개를 허용하고 있다.

* B형 : 장기 노동비자, 1년 단위 갱신 가능, 기존 동일 고용주와 근무 가능·신규비자 발급 시 고용주 변경 불필요

* L형 : 단기 노동비자, 4~12개월 단위로 발급, 최대 24개월까지, 기존 동일 고용주와 근무 불가능·신규비자 발급 시 고용주 변경 필수

한편, 2019년 1월부터 스위스연방외국인국민통합법이 제정, 원칙적으로는 모든 비스위스 국적자는 공용어 구사가능 증빙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체결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국민방문 계기에 체결한 사회보장협정

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5년 6월 발효했다.

사회보장협정이 발효함에 따라 스위스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스위스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1인당 연간 최대 2,290만원의 스위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위스 시장 특성 (취리히무역관 분석)

고품질 시장

스위스는 인구 약 850만의 소규모 시장이나 1인당 GDP가 약 8만 달러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스위스 경제의 원동력이 수출과 민간 소비로 간주될 만큼 기업 및 일반 소비자의 수요 및 구매는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기업 및 일반 소비자는 구매력이 높은 만큼 고품질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추세는 롤렉스(Rolux), 이베체(IWC), 오메가(Omega) 등 명품 시계, 네스프레소(Nespresso), 스프링리(Sprüngli), 린트(Lindt) 등 고급 초콜렛이 세계적 명품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의약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수적인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품질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품질을 확신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위스나 선진국 시장에서 검증된 브랜드 제품이 아니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이러한 소비자의 보수성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가들과 미국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인지도가 있고 산업 및 기술수준이 유사하므로 품질의 우수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다문화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 및 바이어들은 제품 구입 시 고품질, 디자인의 세련성,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엄격히 점검하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하여 전자/전기 제품, 식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수준을 넘어선 보다 엄격한 기술, 안정, 위생규격이 요구되고 있다.

스위스는 이러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의 까다로움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3개 언어가 통용되는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유럽의 '테스트 마켓'으로 통하고 있다. 즉 스위스 시장에서의 높은 시장성은 기타 유럽 국가들에게서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스위스 내 거래선 확보는 유럽 전역 진출을 위한 홍보효과가 크다.

환경 및 윤리경영이 중요시 되는 시장

스위스는 친환경 및 윤리경영이 전 분야에 걸쳐 제품구매의 근본적인 고려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위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들은 환경 친화성 및 그린/윤리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유기농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쌌어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콤펙(Coop), 미그로(Migros)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 다투어 자체 유기농 제품을 생산 확대하고 있다. Bio Suisse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유기농 식품의 매출은 40억 스위스프랑 이상이었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10.9%를 차지했다.

2015년 9월 발생한 폭스바겐 사태에서 스위스 정부는 환경을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폭스바겐 디젤차 판매를 금지할 만큼 친환경 경영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수입업체가 전기차를 수입 시 세금을 면제시켜 주고 시민들의 도로세(Road tax)등을 감면*시켜 주는 등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늘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 칸톤(Canton)에 따라 차등이 있기는 함.

중소기업의 나라

스위스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이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파트너로 중소기업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기계, 화학, 시계 등의 분야에서 세계 틈새시장을 이끌어 가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혁신의 선두 주자

스위스 정부는 기업의 R&D투자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어서 여러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스위스는 세계 유수의 경쟁력 지표에서 선두 주자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평가하는 글로벌혁신지수에서 10년(2011~2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금융기관 진출 관련

은행시스템

스위스 은행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universal ban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스위스의 이러한 은행시스템은 상업적 금융업무와 투자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영어권 국가들이나 일본의 은행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스위스의 양대 은행인 UBS와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국내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은행그룹의 규모는 스위스 전체 은행 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UBS는 부유층 고객을 중심으로 한 개인고객의 자산관리와 투자금융 및 채권거래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크레딧 스위스는 국내는 물론 특히 해외의 개인·기업 고객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활동망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스위스에는 지방정부가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전형적인 연방국가답게 총 24개의 칸톤은행(Cantonal Banks)들이 있다. 칸톤은행은 국가의 지급보증 기반 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관반민적(semi-governmental)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 영업활동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의 금융산업은 자율적 규율(self-regulation)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스위스 은행들은 정부의 감독기관인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원(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발적인 내부 규율 원칙 아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규율은 스위스 은행가협회(SBA: Swiss Bankers Association)에서 발표하는 권고사항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다. 윤리적이고 적법한 금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종의 은행의 행동준칙이자 가이드라인인 CDB(Agreement on Due Dilig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시장감독원은 최소 규제기준으로 외부감사를 통해 이를 감시하며, 은행이 규율을 어길 시 금융시장감독원과 은행가협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

현재 스위스에는 1,000여 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관련 법률회사 및 대학연구소 등과 협업하여 소위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를 형성하고 있다. 2019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원(FINMA)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업체인 시그넵과 세바크립토를 은행으로 정식 허가했다. 2021년 8월 1일, 분산전자등록기술에 적용되는 연방법률인 분산원장기술법(DLT Law)이 발효되어,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

스위스는 〈농산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연방법〉 일명 〈초콜릿 법(Schoggigesetz)〉에 따라 농산물가공품 수출과 관련해 연간 약 95백만 스

위스프랑을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의 농산물 원재료 가격이 외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스위스 산 우유 및 곡물이 자국의 식품수출기업(초콜릿, 어린이 식품 및 과자류 제조업체)들에 의해 국제가격 수준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이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점진적 철폐에 합의함에 따라, 스위스도 2020년 말 <초콜릿 법>을 폐지하여 2021년부터 수출지향적 식품 가공 및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 WTO 수출보조금폐지 결정으로 스위스 정부는 <농산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연방법>을 전면개정(2017.12), <농산물 수입에 대한 연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2019.1 시행).

<초콜릿 법> 폐지의 후속 조치로 스위스 정부는 기존에 분담금을 받을 수 있었던 농산물의 수입가공거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유 및 곡물 생산자 중 신청자에 한해 직접보조금을 지급한다. 우유의 경우 kg당 5 Rappen이며 곡물에 대한 지불은 경작 중인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지원금은 이전 수출 기여금을 농업 예산으로 전환하여 조달되었다.

한편, 수출보조금 폐지로 식품제조사들의 외국산 원료 구매가 증가하여 식품생산에 외국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2017년 1월부터 시행중인 <상표 및 원산지에 대한 연방법: <상표보호법> 일명 <스위스니스법>에 따라 스위스 국기 이미지나 스위스산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사용 하지 못할 수 있다.

* 식품생산에 사용된 원료의 80%(유제품의 경우 100%)가 스위스산이어야 스위스니스 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스위스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

스위스의 전자상거래

스위스 온라인 쇼핑시장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인 쇼핑 및 통신판매사업의 구매량은 2020년 음식·음료 판매에 힘입어 27.2%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1년은 전년대비 12.6% 증가했다. 이 중 130억 스위스프랑을 스위스 온라인 상점에, 21억 스위스프랑을 해외 온라인 상점에서 지출했다. 이는 세계 전자상거래 순위 20위에 해당한다. 유럽 최대 리서치 포털 Statista에 따르면 스위스 온라인 쇼핑 시장은 향후 4년간 연간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위스의 지리적 특성상 스위스 소비자들은 온라인 배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국가의 제품 보관 대행업체에서 제품을 픽업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를 통한 구매 규모는 전체의 약 1/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1년 스위스 Top5 온라인 유통망(매출(백만달러))은 Digitec(1,251), Zalando(1,211), Galaxus(729), Brack(569), Amazon(530) 순이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주문 급증

2018년 스위스의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주문은 30%를 차지했다. 온라인 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은 모바일을 통해 구매한 것이다. 참고로 83%의 소비자들이 실제 상점을 방문하기 전과 후, 온라인상으로 가격 및 재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fK통계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소비자들의 80%는 온라인 구매 시 영수증(지로용지, 인보이스)을 통한 직접 지불 또는 송금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2019년 기준 약 30%가 페이팔(Paypal) 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상거래 관련 법규

스위스에는 불공정경쟁방지법(2012년 발효)과 가격공시 시행령(1979년 발효) 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으며 전자상거래는 통상적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채무법(Obligationenrecht)을 따른다. 채무법규에 따라 주문클릭 한번으로 구매계약이 체결되며(채무법 제197ff조) 문서형태 계약은 필요하지 않다. 유통사업자는 계약서상 채무법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계약체결시 그 내용에 동의한 이상 동 계약서는 채무법에 우선한다.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

스위스 연방 데이터 보호

스위스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중임. 디지털 무역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연방법(FADP),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연방법 조례(OFADP)*,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CA)** 관련 법률조항을 준수하며, 스위스 최대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EU의 데이터 보호규정(GDPR)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20153/index.html>)

*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연방법 조례 참조 :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30159/index.html>)

** 텔레커뮤니케이션법 : 개인 및 기업 커뮤니티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내 및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70160/index.html#a3>)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개정연방법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전, 생체인식 정보가 민감정보에 포함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 원칙(기술설계를 통한 데이터 보호)과 개인정보 기본원칙(특정 목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처리하며, 이를 데이터 처리 시작 전에 정해야 함)이 신설되는 점, 민간 정보 외에도 개인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관련자에게 사전통보를 해야한다는 점 등이다.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

개인 데이터의 타국 전송의 경우, 수신 국가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스위스나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수준과 적정 기준 이상으로 부합 경우에만 가능하며 △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는 법률이나 보조 장치가 있고 △ 주요 원칙을 존

중해야하며 △ 스위스 및 EU와 비슷한 수준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감독 기관이 있어야 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단, 연방정부나 공공기관의 법적인 의무가 있을 경우나 기업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목적일 경우 타국의 제3자에게 전송 가능하다.

※ 참고 : 쿠키 및 위치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는 서비스제공자들은 반드시 사용자들의 쿠키, IP 정보 및 위치 정보 수집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만 함. 동의 받은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 내용을 철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함.

인터넷 검열 및 차단

원칙적으로 스위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사용자들의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권한이 없으며, 소셜네트워크나 채팅앱과 같은 사적 공간을 검열한 사건 또한 없다.

단, 도박, 불법 판매, 불법 카피 및 무기와 같은 검열이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스위스 연방 대법원(Federal Supreme Court of Switzerland)에서 규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스위스는 특정 산업 대상 규제 또는 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을 추구한다.



슬로바키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동향

2018년 4.1%, 2019년 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슬로바키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여타국들과 마찬가지로 산업전반에 걸쳐 침체를 겪었다. 민간 소비 부진, 투자위축과 더불어 특히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경제는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경제 성장 전망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비상사태 선포, 국경통제 등 적극적인 조치 및 다양한 경제대책(State Aid) 등이 일정부분 효과를 발휘하면서 2020년 경제성장률이 EU 집행위,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슬로바키아 재무부 등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한 -4.4%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슬로바키아의 기간산업인 자동차 생산의 지속 및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생산 재개 등 내수경제의 점진적 회복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이후 2021년 여름에는 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했으나 2021년 7월부터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며 산업생산도 2021년 9월에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여름 이후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는 등 회복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 둔화의 주 요인으로 자동차산업의 반도체 부족현상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꼽고 있다. 2021년 11월 경제심리지수는 99.8포인트로 전년동기보다 긍정적이나 장기 평균수치(102.5포인트) 보다는 여전히 낮다. 2021년 10월 실업률은

6.79%를 기록했으며 심각한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 승인을 추진중인 슬로바키아 정부의 2022-2024년 국가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 공공적자는 GDP의 4.9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9월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2022년 슬로바키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함. 2022년 하반기에는 높은 에너지 가격이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무역에 있어서 경제의 역동성을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함. 2023년 초에도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소비자 물가가 2022년에 이어 두 자리 수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가계 소비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0.6%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슬로바키아 주요 경제지표

연 도	2017년	2018	2019	2020	2021
GDP 성장률(%)	3.4	4.1	2.4	-4.4	3.0
소비자물가상승률(%)	1.4	1.9	2.6	-1.9	2.8
실업률(%)	8.1	6.5	5.95	6.7	6.8
무역수지/GDP(%)	3.1	2.2	1.1	3.3	1.7
경상수지(10억유로)	-1.6	-2.4	-2.7	-0.3	-1.98
경상수지/GDP(%)	-2.1	-2.2	-2.9	-0.4	-2.5
재정적자/GDP(%)	-1.0	-1.1	-2.3	-5.5	6.15
정부부채/GDP(%)	51.3	49.4	48.0	59.7	62.19

출처: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세계은행, Eurostat, IMF, 슬로바키아 통계청, OECD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1년 4월 △녹색경제, △디지털화, △교육, △과학/연구/혁신 및 △보건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한 EU 회복기금 사용계획안을 제시했으며 2021년 7월 EU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EU 기금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슬로바키아가 EU로부터 받게 될 기금은 EU 회복기금 63억 유로(2023년까지 사용), EU 다년예산(2021-27) 129억 유로, 전기 EU 다년예산(2014-20) 불용액 91억 유로(2023년까지 사용) 등으로 동 기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2022년 이후에는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무역

슬로바키아의 2021년 수출 및 수입(상품기준, 이하 수출입 통계는 상품기준)은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며, 전년 대비 각각 16.4% 및 19.1%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GDP 대비 수출은 90.4%, 수입은 90.4%를 차지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수출·수입 모두 EU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2021년 기준 전체 수출·수입 중 EU 27개 회원국이 각각 80% 및 78%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21년 4.4%로 최근 3년 간 비슷한 추세(2019년 4.7%, 2020년 4.7%)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2021년 12%로 전년(10%)대비 소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수출입 품목으로는 자동차, 기계 장비, 금속, 광물, 화학제품이 등이 있다.

2021년 슬로바키아의 주요 수출국은 독일(21.9%)과 인근국인 체코(11.7%), 폴란드(8.4%), 헝가리(7.3%), 프랑스(7.3%) 순이다. 주요 수입국은 독일(18.8%), 체코(17.5%), 폴란드(8.0%), 오스트리아(7.7%), 헝가리(6.7%), 러시아(4.8%), 중국(4.1%), 한국(4.0%), 프랑스(3.9%), 이탈리아(3.8%) 순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시행된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러시아 수입 규모가 2021년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수출입(상품기준)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GDP 총액(억 유로)		849	902	941	915.6	970
수출	금액(억 유로)	747.6	791.4	803.3	761	886
	증감율(%)	6.7	5.9	1.5	-5.3	16.4
수입	금액(억 유로)	717.1	768.3	792.7	728	867
	증감율(%)	8.0	7.1	3.2	-8.2	19.1
무역수지(억 유로)		30.5	23.1	10.6	32	19

출처: 슬로바키아 통계청(수출입통계), EUROSTAT(GDP 총액)

슬로바키아의 경제 성장세에 따라 무역흑자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그 규모가 점차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며, 최근 5년간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를 상회할 정도로 수입이 증가해 무역 수지 흑자폭은 전년 대비 약 13억 유로 줄어들었다.

2021년 슬로바키아의 주요 무역 흑자국은 독일(약 32.10억유로), 미국(약 27.53억유로), 영국(27.19억유로), 프랑스(약 26.87억유로), 스위스(약 10.43억유로) 순이다. 한편, 주요 무역적자국은 체코(약 59.85억유로), 한국(약 38.81억유로), 러시아(33.69억유로), 오스트리아(약 22.36억유로), 중국(약 16.44억유로)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 현황

우리나라는 슬로바키아 교역상대국 가운데 체코에 이어 최대 적자(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이다. 슬로바키아의 대한국 수입(상품기준)은 2017년 및 2018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2019년 및 2020년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우리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대 슬로바키아 주요 수출 품목은 MTI 4단위 기준 자동차부품, 축전지, 의약품, 펌프, 원동기, 자동제어기, 기타산업기계 순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전동축 및 기어, 타이어, 펌프, 기타산업기계, 베어링 등이다.

한국의 對슬로바키아 연도별 수출입 동향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금액(백만 달러)	2,773	2,719	2,315	2,211	2,836
	증감율(%)	-5.2	-1.9	-14.9	-4.5	28.3
수입	금액(백만 달러)	177	187	500	871	664
	증감율(%)	-19.2	5.6	167.4	74.4	-23.8
무역수지(백만 달러)		2,596	2,532	1,815	1,340	2,172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002년 삼성전자, 2004년 기아자동차 및 현대 모비스의 진출로 슬로바키아는 한국의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유럽지역 수출에 있어 중요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업종의 경우 삼성전자가 위치한 갈란타(Galanta)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자동차 업종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위치해 있는 질리나(Zilina)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로 진출업종이 차별화되어 있다. 자동차 산업은 슬로바키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21년 전체 산업 생산의 48%, 국내 GDP의 12% 차지).

기아자동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333,000대, 344,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연 매출액이 약 56억 유로에 달하였으며 생산 및 매출액 규모에서 슬로바키아 2위 업체로 자리 잡고 있다. 슬로바키아 기아자동차 생산 공장은 2006년 12월부터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여 2020년 누적 생산대수 380만대를 돌파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22% 감소한 268,200대에 그쳤다. 그럼에도 기아자동차는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반도체 부품 부족 문제로 타 자동차회사가 생산에 차질을 빚자 2021년 10월 슬로바키아에서 판매된 승용차 중 Skoda 다음으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순으로 많이 판매되고 시장점유율이 13.5% 및 12%로 상승하기도 했다. 2021년 자동차 판매량은 코로나 19에서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며, 기아자동차 316,440대, 폭스바겐 309,990대, 스텔란티스(구PSA) 307,600대, 재규어랜드로버 66,000대를 생산했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약 7,000천만 유로를 투자해 2020년 6월 중순부터 2세대 엔진 생산을 위한 설비 확장을 개시했으며, 2021년 11월부터는 스포티지 5세대의 생산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2021년 및 2022년 1-7월간 대슬로바키아 투자 규모는 각각 약 1,500만 달러 및 1,200만 달러이며, 총 누계는 14억달러(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이르고, 슬로바키아에는 약 70여개 우리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투자환경으로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노동력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인건비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슬로바키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슬로바키아 최저임금 및 평균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최저임금(유로)	월 435	월 480	월 520	월 580	월 623
평균임금(유로)	월 954	월 1,013	월 1,092	월 1,133	월 1,212

2022년 월 최저임금은 646유로이며, 2023년 최저임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법정 기준치를 700유로로 정했다. 슬로바키아 노동법 상 2023년 최저임금 설정 최소 금액은 691유로(2021년 평균 임금의 57%)였다.

영업환경 개선정책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6월 1차 영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114개의 조치로 구성된 동 방안은 불필요한 관료적 조항 폐지, 복잡한 의무 조항 경감, 세제개선, 근로조건 개선, 기업 비용절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슬 기업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제부는 2021년 11월 2차 개선방안으로 207개 조치를 제시했으나,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2022년 7월 최종적으로 총 198개가 통과되었다. 이 중 161개는 법안, 나머지 37개는 정부 시행령(Decree) 형식으로 구성(정부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총 17개가 참여)되었으며,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여 신규 사업 개시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이를 통해 여타 주변국에 비해 기업 환경의 비교 우위를 점하고, 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여타 국가 대비 슬로바키아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부는 2022년 6월 3차 개선방안으로 총 285개 조치를 제시했으며 현재 관계부처간 검토가 진행 중이다. 동 조치의 장점은 추가적인 국가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임.

EU 회복기금 사용계획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1년 4월말 EU 회복기금 사용계획(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및 7월 EU 집행위 및 경제·재무이사회(ECOFIN)의 승인을 거쳐 10.1. 자금조달계약서에 헤게르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EU 회복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총 63.3억 유로(2021-2022년 46.4억 유로, 2023년 16.9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6년 9월말까지 지급 신청 가능하다.

사용계획은 △녹색경제, △디지털화, △교육, △과학/연구/혁신 및 △보건분야에 대한 66개 개혁과제 및 66개 투자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의 43%를 녹색경제 사업에, 21%를 디지털화 사업에 배정하였다. 분야별 상세는 아래와 같다.

- 가. 녹색경제: 재생 가능 에너지원 및 에너지 인프라 개선, 노후 보일러 교체 및 건물 재건설, 지속 가능한 운송, 산업분야 탈탄소화, 기후변화 적응 등
- 나. 디지털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사법개혁, 부패척결 및 자금세탁 방지, 국민의 안전 및 보호, 사이버 보안, 초고속 인터넷 제공, 디지털경제 등
- 다. 교육: 학교시설 현대화, 모든 학생들에게 품질높은 교육 제공, 커리큘럼 개혁, 대학교 개혁 등
- 라. 과학/연구/혁신: 효율적인 지원금 관리 및 강화, 인재 유출 방지, 우수 인재 관리 등
- 마. 보건분야: 의료서비스 현대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 정신건강 관리 개선화, 장기간 저렴한 사회·의료보험 추진 등

수입정책상의 장벽

슬로바키아는 WTO 가입(1995년 1월), OECD 가입(2000.12월)을 통해 기본적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가입국으로 유럽국가내에서 대부분의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경제지역(EEA) 내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EU 일반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가 유럽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세계은행은 2020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20(2019년 5월 기준)”에서 슬로바키아 기업환경을 190개 조사 대상국 중 45위로 평가했으며, 이는 주변 비셰그라드 국가와 비슷한 수준(폴란드 40위, 체코 41위, 헝가리 52위)이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국제교역(Trading across Borders) 부문이 다른 비셰그라드 국가들(폴란드, 체코, 헝가리)과 마찬가지로 1위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재산 등록의 편리성(registering property)도 8위로 높게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국제교역 부문 평가에 있어 수출 및 수입 관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서류 등을 평가요소로 하였다.

비관세 장벽

슬로바키아는 2004년 5월 EU에 가입함으로써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치와 같은 EU 공동의 무역정책을 따르고 있다. EU는 다소 자유로운 대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은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품목, 예를 들면 농산물은 공동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에 따라 일부 수입이 제한된다.

슬로바키아는 국내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고 수출입 허가는 슬로바키아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가 관할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인증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

e)를 거쳐야 한다. 슬로바키아 세관당국은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품목인증서를 사전에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a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라벨링과 마킹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1995년 국어법(State Language Law)에 따라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의 내용물, 제품 설명서(product manuals), 제품 보증과 여타 소비자 관련 정보를 슬로바키아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 소액 수입화물 부가가치세 부과

2021년 7월부터 22 EUR를 초과하지 않는 EU 회원국 외 제3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는 2020년 11월 슬로바키아 국회에서 승인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결과로 주로 항공을 이용한 소형화물 수출입 시 참고할 만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한다. 이사회와 집행위의 입장은 유사하나, 의회는 과도기 / 무상 할당 폐지 시기 / 배출 범위 관련 집행위와 입장 차가 있으며, 2022년 10월 삼자 협의의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삼자 협의를 통해 규정(안) 내용을 확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

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며 유럽의회는 유기화합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로 제안했다.

지식재산권

일반적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 서비스마크, 영업비밀과 반도체 칩 디자인 등은 슬로바키아 법률과 관행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개의 정부부서에서 지적재산권(IPR)을 관할하고 있다. 산업재산청(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특허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부(Ministry of Culture)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WTO, 유럽특허기구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가입국이다. 슬로바키아는 WTO TRIPS 협정을 국내법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베른협약 등 여타 주요한 지적재산권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며 상표는 10년간 보호되며 추가로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 디자인은 5년간 보호되며 최장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저작권은 작가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슬로바키아의 산업재산청에서 산업재산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은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접수(infocentrum@indprop.gov.sk 또는 www.patentovat.sk)가 가능하다.

2021년 기준 Property Rights Alliance 조사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지적재산권 보호인식, 특허, 저작권, 상표 보호 분야에서 5.999점으로 전세계 129개국 중 38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602점 하락한 점수다.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슬로바키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잠재적 또는 기존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부 산하 슬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SARIO)이 슬로바키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저개발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도 수혜대상이다.

지원 대상 및 투자지원 형태

2018년 개정된 투자지원법에 따르면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①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②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s), ③ 산업생산·기술센터 조합(combina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a technology center), ④ 공유 서비스 센터(shared service centers) 등 4개 분야이다. 농업 및 어업, 석탄산업, 조선, 운송, 생산·유통 및 에너지 인프라는 EU 규정에 의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지원 형태는 ①법인세 감면, ②유·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보조금, ③고용창출 기여금, ④저렴한 가격에 국유 부동산의 양도·대여 등이다.

투자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적격투자비용(eligible cost)에는 ①토지, 건물, 기계 및 기술 장비 형태의 유형자산과 특허, 라이선스, 노하우 및 비특허 기술지식 등 형태의 무형자산 취득 비용이 포함되는 투자비용(investment cost), ②신규 고용자들의 24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고용자 임금비용(wage cost), ③투자비용과 임금비용의 조합(combination of investment and wage costs)이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중 1개를 선택하여 적격투자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술한 보조금과 고용창출 기여금은 각각 투자비용과 임금비용에만 지원되므로, 투자비용과 임금비용의 조합(③)을 선택할 경우, 투자비용과 임금비용 두 종류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비용과 임금비용의 조합(③)은 투자비용(①)과 임금비용(②) 중 더 큰 쪽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투자지원 규모도 다른데, 슬로바키아는 중견기

업(medium-sized enterprises)·소기업(small enterprises)· 영세사업자(micro enterprises)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조건 1(종업원 수)와 조건 2(연매출 혹은 자산)를 충족시켜야 한다.

구분	조건 1	조건 2(택 1)	
	종업원	연매출	자산
중견기업	최대 250명	최대 50백만 유로	최대 43백만 유로
소기업	최대 50명	최대 10백만 유로	최대 10백만 유로
영세사업자	최대 10명	최대 2백만 유로	최대 2백만 유로

자료: SARIO

네 가지 투자지원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법인세 감면 혜택이다. 법인세 감면 혜택은 적격투자비용에 근거해 산출된다. 법인세 감면 혜택은 최장 10년 동안 주어져며, 법인 설립 직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최장 3년까지 혜택을 연기할 수 있다. 당해 연도의 감면 규모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공식을 따른다.

$$\text{※ } 21\% \times \text{영업이익} \times 0.5 \times \frac{\text{당해연도까지 지출한 누적 적격투자비용}}{\text{총 신고 적격투자비용}}$$

그러나 한 해의 법인세 감면액은 투자지원 신청 시 정하게 되는 총 법인세 감면 한도의 20%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대규모의 투자가 집행될 경우, 최대 투자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투자 인센티브 = R × (5천만유로 + 0.5B + 0.34C)”의 공식을 따른다(R=최대 투자지원율(%), B=적격 투자비용 2구간(5천만~1억유로) 투자액, C=적격 투자비용 3구간(1억유로 이상) 지출액). 예를 들어, 전체 적격 투자비용이 1.4억 유로이고 최대 투자지원율이 50%일 경우, 최대 투자 인센티브 규모는 0.5 × (5천만유로 + 0.5 × 5천만유로 + 0.34 × 4천만유로) = 3.75 천만 유로로 산출된다.

단, ① 최대 투자지원율이 30%일 때 투자 인센티브 규모가 22.5백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② 최대 투자지원율이 40%일 때 투자 인센티브 규모가 3천만 유

로를 초과할 경우, ③ 최대 투자 지원율이 50%일 때 투자 인센티브 규모가 3.75천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를 반드시 EU 집행위에 알려야 한다. 투자 지원에 대한 EU 집행위의 허가가 없을 경우 투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

인센티브 적용지역

슬로바키아는 8개 자치주(self-governing region)를 79개 행정구역(district)으로 세분화하여 수도가 속한 브라티슬라바 자치주(8개 행정구역)를 제외한 71개 행정구역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아울러 인센티브 대상지역을 전국 평균 실업률을 기준으로 4개 권역(A권역 : 100% 미만, B권역 : 100~135%, C권역 : 135 이상 및 D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D권역: 슬 경제부에서 지정한 최저개발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업률이 높은 권역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월 슬로바키아 경제부에서 지정한 최저개발지역은 Bardejov, Michalovce, Sobrance 등 중부 일부 및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중서부 트렌친 주의 Prievidza 및 Partizanske 지구는 2023년까지 최저개발지역 중 특수지로 분류된다. 투자 인센티브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지역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일에 최저개발지역은 슬로바키아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www.upsvr.gov.sk/statistik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지원을 집중하기 위하여,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낮은 행정구역에 투자할 경우, 고용 창출 기여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브라티슬라바 자치주를 제외한 지역을 서부(Trnava, Trenčin, Nitra), 중부(Zilina, Banská Bystrica), 동부 지역(Košice, Prešov)으로 구분하여 투자 지원 요건 및 투자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두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신청 기준

(1) 산업생산

투자 인센티브에 필요한 요건들은 특정지역의 실업률 및 개발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최소 투자금액 중 신규 생산 및 기술 장비의 금액 비중도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투자지원은 생산품목이 중점분야(priority areas) 혹은 기타분야에 속하는 지에 따라 차등이 있다. 2022년부터 산업 생산 분야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프로젝트는 모두 중점 분야로 간주한다.

(단위: 백만 유로)

지역 구분 (전국 평균 실업률 대비)	조건	자산취득 지원	소득세 감면	고용창출 기여금	국유부동산 대여·양도 혜택
A권역 (<100%)	최소투자금액(대기업)	20	3	-	3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10	1.5	-	1.5
	신규 생산 기술 장비 비중	60%	60%	-	6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	0
B권역 (100~135%)	최소투자금액(대기업)	10	1.5	1.5	1.5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5	0.75	0.75	0.75
	신규 생산 기술 장비 비중	50%	50%	50%	5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100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15	0
C권역 (135%~) * D권역 제외	최소투자금액(대기업)	5	0.75	0.75	0.75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2.5	0.375	0.375	0.375
	신규 생산 기술 장비 비중	40%	40%	40%	4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50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25	0
D권역 (슬 노동부 별도지정, LDD)	최소투자금액(대기업)	0.25	0.1	0.1	0.1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0.125	0.05	0.05	0.05
	신규 생산 기술 장비 비중	30%	30%	30%	3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10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5	0

자료: SARIO

지역별 산업생산 투자지원 형태 및 지원율

구분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
최대 투자지원율 (investment intensity)		30%	40%	50%
최대 현금지원		30%	40%	50%
최대 소득세 감면		30%	40%	50%
고용창 출 기여금	A권역	-	-	-
	B권역	-	40%	50%
	C권역	-	40%	50%
	D권역(LDD)	-	40%	50%
	특수지역 *	30%	-	-
국유지 이전		100%	100%	100%
국유지 대여		90%	90%	90%

자료: 슬로바키아 경제부

* Prievidza 및 Partizanske 지구는 2023.12.31.까지 최저개발지역 중 특수지로 분류됨

(2) 기술센터

기술센터는 고부가가치 상품 제조 혹은 제품생산 과정의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시설을 의미한다. 산업생산과 마찬가지로 중점 분야(식료품, 화학, 제약,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와 기타 분야에 주어지는 투자지원 규모가 다르며, 투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점 기술(산업용로봇 및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부품 3D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구분	자산취득 지원		기타 지원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최소투자금액(백만 유로)	0.1	0.2	0.05	0.1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5	10	5	10
해당지역 평균임금 대비 임금(배수)	2.0	1.7	2.0	1.7

자료: SARIO

○ 지역별 기술센터 투자지원 형태 및 지원율

구분	서부 지역	중부지역	동부 지역
최대 투자지원율 (investment intensity)	30%	40%	50%
최대 현금지원	30%	40%	50%
최대 소득세 감면	30%	40%	50%
고용창출 기여금	30%	40%	50%
국유지 이전	100%	100%	100%
국유지 대여	90%	90%	90%

자료: SARIO

(3) 산업생산·기술센터 조합

슬로바키아에서 연구개발과 산업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존 지원 분야였던 관광업을 폐지하고 산업생산·기술센터 조합 분야를 2018년 신설했다. 이는 단순 조립공정을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최대한 많은 연구개발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는 산업생산에 투입된 적격비용과 기술센터에 투입된 적격비용을 모두 반영해 투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각의 비용은 상기 투자지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래의 표는 A권역에서 ①산업생산으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 ②기술센터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 ③산업생산·기술센터 조합으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산업생산·기술센터 조합으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 산업생산의 최소투자금액은 기술센터의 최소투자금액 만큼 차감된다.

○ 투자지원 신청을 위한 산업생산·기술센터 조합의 예 (B권역 기타분야 가정)

구분	산업생산	기술센터	산업생산·기술센터 조합	
			산업생산	기술센터
최소투자금액(백만 유로)	10	0.2	9.8	0.2
신규 생산·기술 장비 비중	60%	-	60%	-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0	10	0	10
해당지역 평균임금 대비 임금(배수)	-	1.7	-	1.7

자료: 슬로바키아 경제부

(4) 서비스 센터

기업내 부서별 독립 운영되고 있는 비전략 지원부문을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통합된 단일 조직으로서, 슬로바키아에는 Amazon, AT&T, DELL, HP, IBM, Siemens 등의 서비스센터가 소재하고 있다. 경영, 금융, IT가 중점 분야로 분류되며, 서비스센터가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지식기반·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구 분	자산취득 지원		기타 지원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최소투자금액(백만 유로)	0.1	-	0	0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10	-	10	25
해당지역 평균임금 대비 임금(배수)	1.8	-	1.8	1.5

자료: 슬로바키아 경제부

◉ 지역별 서비스센터 투자지원 형태 및 지원율

구분	서부 지역		중부·동부 지역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최대 투자지원율 (investment intensity)	25%	25%	35%	35%
최대 현금지원	25%	-	35%	-
최대 소득세 감면	25%	25%	35%	35%
고용창출 기여금	25%	25%	35%	35%
국유지 이전	100%	100%	100%	100%
국유지 대여	90%	90%	90%	90%

자료: 슬로바키아 경제부

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Superdeduction for R&D)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지식기반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지원(State aid)과는 별도로 모든 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대규모 세금공제(Superdeduction)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재무부는 2018년 10월 이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채택하였다.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이러한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①매 과세기간 자동적으로 세금 환급 ②어떠한 적용절차나 정부당국의 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③어떠한 형태든 R&D 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 ④만약 공제신청 당해 과세기간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4연속 과세기간 까지 혜택 제공 시기 변경 가능 ⑤R&D 최종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공제혜택 제공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9년 R&D 투자에 대해 법인세의 150% 공제율을 채택하였으며, 2020년에는 이를 200%까지 확대하였다. 2020년에는 유럽투자는 행과 슬 재무부, 슬 투자지주회사(Slovak Investment Holding) 합작으로 4,000만유로를 투자하여 혁신기술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설립하고 3월부터 제공해 오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9년 3월 전기운송(electromobility) 발전 액션플랜을 채택하였다. 동 액션플랜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강화, △충전소 건설 행정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원, △전기자동차 전용차로 설치, △탄소 저배출 지역 설정 등 총 15개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9년 11월 정부보조금 지원법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15년 이상 사용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연료 이용 차량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지원자에게 최대 35%까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전기자동차 구입시 지원금은 최대 8,000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지원금은 최대 5,000유로였다. 현재는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후속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를 검토 중이다.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2020년 9월 및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는 설치비의 최대 95%(18만유로), 개인

사업자는 최대 50%(9천유로) 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2021년 10월 기준 슬로바키아 내 약 600개의 AC(교류) 일반충전소 및 200개의 DC(직류) 급속충전소가 있으며, 2022년 4월까지 198개의 AC 일반충전소 및 43개의 DC 급속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슬 전기운송수단협회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노력에 따라 10년 후에는 약 14만대의 전기자동차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운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소기술 진흥계획

슬로바키아 정부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하나로 수소경제에 주목하고 수소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경제부 장관은 2020년 8월 ① 수소 충전소 설립 ② 수소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 ③ 시범적 수소 버스 운행 ④ 일부 지역에 수소 열차 운행 ⑤ 수소자동차 생산 ⑥ 수소에너지 생산 ⑦ 각종 산업에 수소 경제 확산 ⑧ 수소기술 관련 특허 취득 절차 개선 ⑨ 국가수소연구센터 건립 ⑩ EU 펀드 활용 ⑪ EU 회복기금을 활용한 수소기술 개발 ⑫ 2021년 두바이 엑스포 참여(수소 버스, 비행기, 탐사차량 등 슬 수소 기술의 주요 성과물을 전시) ⑬ 수소 관련 법령 및 표준 제정 ⑭ 국가 수소전략 수립 등의 14개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슬로바키아 내각은 2021년 6월 슬로바키아 경제부가 제출한 국가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승인하였으며, 동 전략의 목표는 경제의 경쟁성 제고 및 기후변화 파리협정 탄소중립화 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전송, 유통, 저장 등 분야에 있어 수소 사용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현재 구체 행동계획서(action plan)를 준비 중이다.

또한 2021년 9월 슬로바키아 원자력공사(JESS)의 재생에너지와 수소생산을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이 승인되었으며, 동 공사는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높여 슬 정부의 국가기후에너지계획의 2030년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수소를 다양한 산업 및 보전기술에 활용하고 운송수단의 대체에너지 등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에서 슬로바키아는 최초로 생산된 수소 스포츠카 MH2 모델을 전시중이며, 스마트 온도 유지 장치를 통해 수소를 저장하는 특정기술을 사용하여 안전성 및 에너지 저장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다.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부터는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수소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기업 설립

슬로바키아에서 설립할 수 있는 기업형태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진다.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Spoločnosť s ručením obmedzeným, 약칭 s.r.o),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 Akciová Spoločnosť, 약칭 a.s),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Verejná obchodná Spoločnosť, 약칭 v.o.s),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Komanditná Spoločnosť) 등이며 유한회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형태이며 한국 투자기업들에게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1인(자연인이나 법인)이나 2인 이상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주주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영업지분(Business interest)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은 주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주주의 책임은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납입자본중에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액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기업은 의무위반에 대해서 기업의 총자산으로 책임을 분담한다.

최소 등록 자본금(registered capital)은 5,000유로이며 등기된 자본은 각 주주의 정해진 납입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지며 각주주의 최소 납입자본은 750유로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거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계좌에 3,000유로, 회사 계좌에 20,000유로 이상의 자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기업은 최초이익을 창출하는 시점에 법정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의 기관

이다. 회사의 법정기관은 주주총회에서 임명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표이사(오직 자연인만 가능)이다.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기업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정관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대표이사는 개별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각 주주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등록자본(registered capital)의 납입자본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

슬로바키아의 유한회사 설립 전 주요 절차를 다음과 같다(출처: SARIO)

① 경영진의 범죄 기록 관련 서류 준비 → ② 설립 회사명의 중복성 여부 확인 → ③ 정관 작성 → ④ 등록 사무소 확보 → ⑤ 등기자본의 납입 → ⑥ 등기소(Registry Court)에서 상업등기부(Commercial Register)에 법인 등록 ⑦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위한 과세당국에 등록 ⑧ 지역 사회보험사무소에 사회보험 등록 → ⑨ 건강보험회사에 건강보험 등록

조세 정책

슬로바키아 정부는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2012년 부가가치세에 대해 전자세금신고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에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기여금에 대해 전자 신고 및 납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납세 편의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토지평가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기업들의 납세 부담은 일부 증가된 측면이 있다. 슬로바키아의 조세행정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서 담당하고 있다.

근로 소득에 따른 개인의 총 조세 부담은 39.7%이며, 기업은 10.5%, 여타 조세 부담률은 1.4%로 2016년 기준 주재국의 조세부담률은 EU 및 EFTA국가 중 5위로 조세 부담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에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법인세율 인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 및 사회보장세율 인하 등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슬로바키아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의해 계산되며 법정세율은 21% (2017년부터 적용) 단일세율이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상 감가상각비, 처분된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 고용주가 지불한 사회보장보험 납입액, 종업원에 대한 건강 및 사회시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 광고비, 특정한 형태의 미지급 비용 및 충당금 등은 손금항목으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법인세(21%)는 주변국인 헝가리(9%), 체코·폴란드(19%)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2021년 1월부터 연매출 49,790유로 이하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2021년 11월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법인세율을 19%로 인하하는 세제개혁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11월에도 도입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가 마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하에서 기업들은 법인세의 1.0%를 비영리단체(NGO)에 직접 기부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자체 CS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함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

슬로바키아에 고용된 개인은 슬로바키아의 사회보장 및 건강관리 시스템의 적용대상이며,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 부담율은 월급여의 35.2%(최대 월 1,730.20유로 + 월급여의 10.8%), 종업원의 납부액은 월급여의 13.4%(최대 월 666.54유로+ 월급여의 4.0%)가 적용된다.

한국과 슬로바키아간 사회보장협정이 2010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상기 협정은 파견근로자 등의 양국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및 양국 연금가입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에 관한 혜택이 규정되어 있다. 즉,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슬로바키아 소재 회사(혹은 슬로바키아의 종속회사 포함)에 파

전하는 경우, 최초 60개월 동안 그 개인은 모국(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슬로바키아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4월 양국 사회보장기관 간 사회보험료 면제기간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사회보험료 면제기간은 최장 90개월로 연장되었다. 절차상으로 한국의 협정 가입증명서와 함께 예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슬로바키아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면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슬로바키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영업의 인보이스 가격에 부과되며 EU내의 상품 취득 및 EU밖으로부터 상품 수입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20%이다. 특정 식료품, 특정 약품이나 의료 관련 제품, 교육, 금융서비스, 문화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슬로바키아 국회는 2018년 10월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숙박업 적용 부가세를 20%에서 10%로 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소재지, 영업장소 및 고정 사업장이 슬로바키아에 있는 경우 직전 12개월 동안 총 매출이 49,790유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 납부는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직전 12개월 매출액이 10만 유로 미만인 경우 분기 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9월 EU 집행위의 발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부가가치세 미수거율이 가장 높은 회원국 중 하나로서, 이로 인해 연 16억 유로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2018년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미수거율 평균이 9.2%였으나 슬로바키아는 20%에 달했다.

2021년 7월부터 22유로 미만의 EU 회원국 외 제3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등 EU 역외국가로부터의 통신판매 등 전자 상거래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소득세

개인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과세소득이 38,533.01 유로(2022년 기준)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19%의 세율이,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퇴직보험, 주택구입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은 과세소득 산정에 있어 공제되는 항목이다.

슬로바키아의 주요 세목별 법정 세율

세목	법정세율	과세표준	비고
법인세	21%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온라인 신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 15%		
사회보장기여금	35.2%(고용인) 13.4%(피고용인)	총급여 (gross salaries)	
부가가치세	20%	인보이스 가격	온라인 신고
개인소득세	19%(37,163.36 유로 이하) 25%(37,163.36 유로 초과분)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이자소득 원천세율	19%	이자소득 (interest income)	개인은 분리과세 적용

세무조사

슬로바키아는 과거와 달리 세무조사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슬로바키아에서 세무조사는 1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특히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사용료 또는 로열티가 매출금액의 5% 또는 영업이익의 30%를 초과하는 거래, △경영자문료가 매출금액의 5% 또는 영업이익의 10%를 초과하는 거래, △모회사 지급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의 33%를 초과하는 거래가 주요 선정대상이 된다. 한국 기업의 경우 본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 이슈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세무당국에서 최종 처분통지를 내리는 경우 45일 이내 조세불복이 가능하다.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2020년 6월 영업 환경 개선 조치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완화된 조치를 제시하였다. 동 조치에는 조세당국에 대한 서류 제출 납부 시한을 기존 15일에서 한 달로 연장하였다.

세제개혁 방향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2021년 11월 세제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Flat rate tax)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단일세 도입시 복잡한 세제의 단순화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제거, 사업 환경 개선, 사회적 지출 감소, 공공지출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9%로 인하하는 것과 요식업계의 부가가치세율을 현해 20%에서 10%로 조건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기업들은 주변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 정권 교체에 따른 조세제도의 수시 변동 등 예측불가능성, 행정의 비효율성에 따른 과다한 비용 지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법인세가 인하된다면 이로 인한 수익 증대 및 잉여 수익의 일정부분을 사업 환경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세제 개혁 방향은 정부간 협의 초기단계이며 어떤 형태로 입법될 것인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규제

슬로바키아 노동법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노동법은 고용계약 체결, 해고, 노동시간, 연간 휴가일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

고용관계는 서면 고용계약서에 의해 체결된다. 양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통해 직무기술서, 작업장, 근로개시일, 임금 등에 대해 합의한다. 고용계약기간은 유한(definitive period)하게 체결하거나 제한기간 없이 (indefinite period)

체결될 수 있다. 고정된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동 2년의 기간 내에 최대 2회 연장 및 갱신될 수 있다. 고용계약 기간은 서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기한 계약기간으로 간주된다.

최저임금

슬로바키아의 2022년 월 최저임금은 646유로이며, 2023년 최저임금은 700유로로 책정되었다. 슬로바키아의 매년 월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슬로바키아의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것이 슬로바키아 경제를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매년 7월 15일까지 최저임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2년 전 평균임금의 60%로 정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9년 10월 슬로바키아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2021년부터 발효되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에서 노조대표측은 2020년 평균 임금의 60%인 679.80유로를 주장하였고 고용주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소폭 상승을 주장하였으며, 2021.8월 슬 노동장관은 노사간 합의 미도출로 인해 2022년 최저임금은 2020년 평균임금의 57%인 646유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월 최저임금(유로)	435	480	520	580	623	646	700

근로시간·휴가일수·추가수당

근로시간은 주당 최고 40시간이며, 2교대 근무(a two-shift) 근로자의 경우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a three-shift)의 경우에는 주당 37.5시간으로 제한된다. 초과 근무(over time) 지시는 연간 150시간까지 가능하며 피고용자와 합의에 의해 250시간을 가산할 수 있어 연간 최장 추가 근무시간은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년에 최소 휴가일수는 기본적으로 4주(20일)이며, 33세 이상의 근로자 또는 33세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 5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국경일의 경우 기본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급 휴가로 인정된다.

2018년 2월 슬로바키아 국회는 야간근무(일반직종, 위험직종),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에 지급하는 추가수당(시급)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5월과 2019년 5월 2차례에 걸쳐서 추가수당이 인상되었다.

추가근무 종류	추가수당(2019년 5월 1일 개정)	2021년*
야간근무	0.4 × 최저시급	시간당 1.43 유로
위험직종 야간근무	0.5 × 최저시급	시간당 1.79 유로
토요일 근무	0.5 × 최저시급	시간당 1.79 유로
일요일 근무	1 × 최저시급	시간당 3.58 유로

* 주 : 2020년 최저시급 : 3.580 유로

고용계약 종료

고용계약은 ①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② 종료 통지(notice on termination), ③ 즉시 종료(immediate termination), ④ 수습기간(probation period)의 종료에 의해 서면으로 종료될 수 있다. 고정된 근로계약의 만기 시에도 고용계약이 종료된다. 수습기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경영진의 경우 6개월)중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즉시 종료의 경우, 예를 들면 종업원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 법정형을 받거나 업무규칙의 심각한 위배가 있었던 경우 고용주는 그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한편 종료 통지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계약의 종료 사유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종료할 수 있으나, 고용주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업무효율성 제

고 또는 조직상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경우, 근로자의 장기간 지속되는 건강상 이유, 근로 조건의 위반 등의 경우에는 문서화된 통지에 의해서 종료할 수 있다.

노동법상 사전통지 기간은 최소 1개월이다. 그러나, 청산, 이전, 정리해고 및 건강상 이유로 장기적으로 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1년 이상 및 5년 이하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최장 2개월, 5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최장 3개월까지 증가된다. 통지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한다.

만일 고용관계가 고용주의 통지에 의해 청산, 이전, 정리해고 및 건강상 이유로 장기적으로 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유로 상호합의 또는 고용주의 통보로 종료될 경우 고용주는 근로년수에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의 통보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 2년 이상 및 5년 이하 근무 시 해당근로자의 1개월치 평균 월급, △ 5년 이상 및 10년 이하 근무 시 해당근로자의 2개월치 평균 월급, △ 10년 이상 및 20년 이하 근무 시 해당근로자의 3개월치 평균 월급 및 △ 20년 이상 근무 시 해당 근로자의 4개월치 평균 월급이 계약종료급여로 지급된다. 상호합의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그 외 각 경우는 1개월씩 추가되어 최장 5개월치 평균 월급이 계약종료급여로 지급된다.

공공조달시장

슬로바키아는 1999년 공공조달법을 제정, 2000년 중앙정부기관인 조달청(UVO)으로 하여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다. 슬로바키아는 2004년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다. 슬로바키아 조달청은 2020년 공공조달 계약 규모를 2019년과 유사한 약 46억 유로로 집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19년 회원국의 공공조달 시장 여건을 ① 단독 입찰자(One Bidder) 비율, ② 제한 입찰(No Call for Bids) 비율, ③ TED(Tenders Electronic Daily) 공고 비율, ④ 공공기관 구매자 공동구매(Cooperative procurement)

ent) 비율, ⑤가격요소 이외에 다른 낙찰 기준의 구비 여부(Award Criteria), ⑥구매자들의 의사결정 시간(Decision Speed), ⑦중소기업 계약자 비율, ⑧중소기업 입찰 비율, ⑨분할 조달 비율, ⑩계약자 불명(Missing Calls for Bids) 비율, ⑪판매자 등록번호 불명 비율, ⑫구매자 등록번호 불명 비율 총 12가지 지표로 평가하였다. 슬로바키아는 인근국인 헝가리, 폴란드와 함께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체코, 오스트리아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의 2019년 슬로바키아 공공조달 시장 여건 평가(전체 평가: 보통)						
지표	①	②	③	④	⑤	⑥
슬로바키아 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
지표	⑦	⑧	⑨	⑩	⑪	⑫
슬로바키아 평가	만족	보통	보통	불만족	만족	만족

EU 집행위는 2020년 슬로바키아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에서 슬로바키아의 공공조달 간소화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복잡하고 긴 검증절차가 EU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잠재 수혜자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령 해석 및 교육을 지원하는 공공조달청 지역사무소 신설,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슬로바키아 정부가 EU 회복 기금 사용계획의 개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조달법 개정안(Act No. 395/2021 Coll.)이 2021년 10월 국회 승인되어 2022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공공조달절차가 가속화되는 한편 조달청의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공직자 소유 회사와의 계약이 금지되는 등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 조항이 보완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구매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전문보증기관이 신설되며, 전자감사 등 전자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슬로바키아 정부는 EU 회복기금 사용계획의 투자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기관 구매자 교육·훈련을 위해 2.1백만 유로를 투입하는 등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외환 및 송금 관련 정책

미국 국무부의 2016년 슬로바키아 투자환경보고서(Slovakia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6)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2009년 1월 유로존 가입 국가이며 OECD 회원국으로 환전 및 이전정책에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외환법(Foreign Exchange Act)이 외환거래를 규율하고 있고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용이한 환전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환 및 외국환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도 없다. 슬로바키아 거주자들은 해외 계좌 개설이 허용되며 해외에서 획득한 금융자산을 슬로바키아내로 이전할 의무도 없다. 슬로바키아 기준 비거주자들도 슬로바키아 소재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비거주자(법인 및 개인)가 슬로바키아 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및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단순 계좌 개설은 자금세탁 등을 우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은행 및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상업은행과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들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제외하면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 감독

슬로바키아 은행시스템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규정 및 슬로바키아 은행법(Slovak Banking Act)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과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이 은행, 자본시장, 보험 및 연금 등 모든 금융시장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상업은행의 경우 투자은행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앙은행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외국계 은행들은 슬로바키아에 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사무소의 경우 수익 관련 활동을 할 수 없고 모 은행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 및 정보 제공으로 업무가 제한되지만, 지점 또는 현지법인 형태의 경우 인허가

권자인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이 허용한 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계 모 은행은 지점의 재무건전성을 효과적으로 보증해야 하며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또한 은행과 금융기관의 규제 비율과 관련하여 지점의 경우 자본금 규정은 모행의 자본비율 등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LCR, NSFR 등 유동성 비율 등은 지점 기준으로 규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장벽

근로목적 체류허가

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 이외의 외국인이 슬로바키아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임시(temporary) 또는 장기(permanent) 체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임시 체류허가는 사업(최대 3년), 근로(최대 5년), 학업(최대 6년), 연구 및 개발(최대 2년) 등 체류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비EU 국적의 외국인이 근로목적 체류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래 고용주가 해당 지방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Office of Labor, Social Affairs and Family)에 정해진 양식(채용 목적, 채용 예정인원, 요구되는 자격 요건, 외국인 채용 의향 명시)에 따라 결원 보고서를 체류허가 발급 신청 예정 20일(영업일) 이전까지 작성 제출해야 한다. 결원보고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는 실무적으로 결원인 자리에 국내 구직자로 충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한 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해당 인력의 면접 및 우선 채용 등을 추천하게 된다.

결원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0일(영업일)이 경과하면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국경 및 외국인 경찰서(Office of Border and Foreign Police)에 근로목적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국경 및 외국인 경찰서는 근로목적 체류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이 슬로바키아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일하거나 대표하고 동시에 OECD 회원국 국민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체류허가의 갱신은 체류허가 만료

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류는 공식적으로 슬로바키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국적별 외국인 노동자 분포를 고려하여 2018년부터는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노동자들은 자국어로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중요 외국인투자자(strategic investors)를 위해 일하는 경우, EU 회원국 소재 회사에 고용되어 슬로바키아에 파견되어 슬로바키아 고객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상사계약에 기초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배달, 설치 업무, 하자 보수 업무, 생산설비 시스템 설치 작업, 프로그램 작업, 직업 교육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90일까지 임시체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슬로바키아 내에 외국인의 체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체류허가 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사자는 관련서류를 충분히 구비하여 신속히 신청할 필요가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외국인의 체류허가 신청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9년 5월 경찰서 방문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노동허가

외국인이 계절 노동 또는 슬로바키아에 등록된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되기를 희망하거나, 가족 결합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발급받은 경우로 발급 시점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슬로바키아 체류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다른 EU 회원국에 대한 장기체류가 인정된 경우 등은 고용 전에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직접 방문, 우편 제출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해당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는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이 국내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허가 신청서를 심사하게 된다. 노동허가 발급에는 통상 1개월이 소요된다. 노동허가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7년 11월에 발효된 「한-슬로바키아 운전면허상호인정 교환각서」에 근거하여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소정의 신청양식에 따라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다. 단, 그 대상은 체류허가(비자)를 받은 사람에 한정된다. 우리국민에게 발급되는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 내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무역 장벽

슬로바키아 정부는 2002년 개인정보보호법(Act No. 428/2002)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2018년 5월 EU의 GDPR법의 시행에 따라 슬로바키아도 이를 기초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Act No. 18/2018 Coll.)을 새롭게 제정했다. 동 법에 따라 슬로바키아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한국 등 비 EU 국가로 이전할 때 EU 집행위의 적정성 결정이 있다는 경우에는 특별 승인이 불필요하나, 적정성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보호조치를 실시 등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슬로바키아 전자상거래법(Act No. 22/2004)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보건, 환경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벨기에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벨기에 경제부문별 동향

산업현황

벨기에는 2021년 기준 GDP가 5,437억 달러이며, 1인당 GDP(PPP)는 53,122달러에 이른다. 높은 임금 수준, 천연자원의 부재 등으로 2018년 기준 농림수산업(0.7%), 제조업(16.8%)의 비중은 낮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77.3%로 매우 높다.

벨기에는 2020년 기준 수출액이 4,193억 달러로 수출 10대국 중 홍콩을 제외하고 인구, 면적이 가장 작음에도 세계 수출 10위를 기록. 특히, 안트워프는 석유화학, 커피, 철강 등의 유럽 물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선물가격 결정 기준 시장이다. 또한, 벨기에는 인구 1,100만명이 조금 넘는 협소한 시장 규모로 인해 소비재는 자체적인 생산 대신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제조기업 중에는 중간재, 첨가물 등 가치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기업이 많은 편이며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의료바이오, 화학, 자동차, 물류 산업을 들 수 있다.

경제성장 및 향후전망

벨기에 경제는 지난해 경기침체(-5.7%)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백신 접종과 제한조치 완화에 힘입어 광범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금년과 내년중 성장률이 6.0% 및 2.6%로 큰 폭 반등할 전망이며, 소비는 가계의 소비패턴이 점차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면서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21년 5.1% → '22년 5.3% → '23년 2.4%)된다. 투자는 강한 기업심리, 우호적 금융여건, 회복 및 복원기금 집행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일 전망('21년 10.5% →

‘22년 2.0% → ‘23년 1.6%)이다. 순수출은 국내수요, 수출, 관광업 회복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GDP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 관계

개관

한국과 벨기에는 1901년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벨기에는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로서 승인한 국가 중 하나이며, 한국전쟁 당시 보병 1개 대대를 파병하여 우리와 함께 싸워준 전통적 우방이다.

오늘날 양국은 인권, 민주주의 등 국제사회 공동의 가치에 대한 유사입장국으로서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양국은 2021년 수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2014년 9월 벨기에 겐트대학교 송도캠퍼스 개교, 2016년 12월 벨기에 루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설치 등 인적교류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필립 벨기에 국왕이 한국을 국빈방문하고, 생명공학, 스마트시티, 중소기업,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더불어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는 한-벨기에간 경제협력의 가교로서 역할을 하여, FTA 발효 전 대비 2021년 10월기준 양국 교역규모가 두 배나 증가(2010년 3억 달러 → 2021년 10월 62억 달러)하는 등 경쟁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교역 현황

양국간 교역액은 한-EU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FTA 체결 전인 2010년 31억 달러에 비해 2021.10월 기준 62억 달러로 두 배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역액이 2019년에 비해 증

가하였으며, 벨기에는 한국에 있어서 EU27개국 내 6위 교역 대상국으로, 올해는 역대 최대 수출액과 수입액이 예상된다.

2021년 10월 기준 한국의 대벨기에 주요 수출 품목은 건설중장비(7.1억 달러), 합성수지(4.6억 달러), 승용차(3.8억 달러), 의약품(2.1억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의약품(11억 달러), 백금(4.7억 달러), 기타정밀화학 원료(0.6억 달러) 등이 있다. 수출입 품목역시 다변화 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벨기에는 기초 원료나 중간재를 수입하여 다단계 공정을 거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가공형 산업구조와 함께 높은 대외의존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EU 역내 교역 중심의 수출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위 3개 수출 국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도 모두 역내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 역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도 모두 역내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 현황

두 나라의 투자도 상호 호혜적으로 벨기에의 對한 투자는 '20년 기준 총 39.8억불(누적)로 벨기에는 한국의 EU국가 중 7위 투자국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화학, 특수소재, 의약품 등이다. 한국에 진출한 주요 벨기에 기업은 솔베이, 유미코아, UCB 등 화학 및 제약기업 등이 있다.

아울러, 한국의 對벨기에 투자는 '20년 기준 총 29.2억불(누적)로 EU국가 중 6위이다. 주요 벨기에 진출기업으로는 기아자동차, 길리안(롯데제과), 두산산업차량, 삼성전자, 아시아나,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등 기관 포함 17개사가 진출한 상황이다.

시장특성

소비자 특성

벨기에는 편리한 교통망과 통신망을 바탕으로 전세계 상품이 시장에 유입되어

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이에 수입 상품 간 경쟁이 심하고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내구 소비재(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TV 등) 구매 시, 상품의 품질과 기능이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소비자에게 브랜드명과 그와 연계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더불어, 벨기에는 총 소득에 비해 실질 가치분 소득이 낮아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충동구매를 피하고 제품 하나를 살 때도 여러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심사숙고 후 구매하는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 단체의 활동도 활발하여, 벨기에 소비자연맹은 월간지(Test-Achats)를 통해 상품의 품질/가격 비교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도와 위생을 심층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들도 이러한 소비자 단체의 평가에 민감한 편이다.

한국상품 인지도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과 자동차 품목들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삼성의 스마트 TV와 스마트폰이 각각 39%, 31%(2013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벨기에 유력 소비자 평가지인 ‘테스트 안콥(Test Aankoop)’이 삼성전자의 드럼세탁기와 전자레인지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2014년 현대자동차 IX35가 8,042대 판매되면서 판매량 순위 9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보였으며, 2015년 6월 17일, 일간지 L’Echo는 벨기에 시장 최초로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선보였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현대차가 벨기에 수소차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반면 화장품의 경우 벨기에 수입 제품의 70% 이상이 유럽 제품으로 한국상품은 품질력 대비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벨기에 화장품 시장은 지속 증가 증으로 2019년 매출규모 21.6억 유로를 기록, 2024년 매출액은 2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특성

오프라인 유통으로는 슈퍼마켓, 전문점, 창고형 매장(하이퍼마켓),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이 있고, 대형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 매장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소매상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벨기에 온라인 쇼핑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새로운 유통 채널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보다도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빠르고 쉽게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벨기에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도 벨기에 전자상거래 사용자 중 21%가 모바일을 이용해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벨기에 전체 인구의 13%), 주요 구매상품은 교통티켓, 의류, 콘서트 티켓, 숙박, 장난감, 도서 등이었다. 2016년 10월 15일, 벨기에 연방정부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 관련 업체들에 한해서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무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며, 벨기에 전자상거래 협회 Becommerce는 정부발표에 큰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향후 벨기에 온라인 쇼핑 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망상품

2019년 벨기에에서는 총 47만대의 자전거가 판매되었으며, 이 중 전기 자전거의 비율은 약 51%로 24만여대가 판매되어 지속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과거에 노년층의 여가활동을 위한 수요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통근용으로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전기자전거의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2,588유로이다.

전기자전거 시장은 저가형, 고급형으로 양분되어 프랑스의 Decathlon과 같이 중국산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저가제품, 벨기에 E-volt, Ahooga, 영국 Brompton과 같은 유럽산 고가 제품이 판매 강세를 보이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2020년 7월, 자동차 사용률을 감축하고 자전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2.5억 유로 규모의 자전거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 감염우려로 번잡한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제품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통관 및 운송

벨기에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다. 벨기에 수입 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외국 물품)은 벨기에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 이동될 수 있다.

EU 통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통관은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NS 제도는 벨기에를 비롯한 EU 내 물품 반입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다.

ENS의 신고기한은 해상, 항공, 육상 운송에 따라 다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운송	신고기한
해상	- 일반 물품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 벌크 물품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항공	- 장기 항공(비행 4시간 이상)은 EU 내 공항 도착 4시간 전 -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의 경우 출발 전
육상	- 도착 1시간전

ENS 신고 시 수출입 업체 정보, 비상연락처, 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코드, 위험품목일 경우에는 위험품목 코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물품 명세 기재 시에는 ‘일반 화물’, ‘공구’, ‘전자제품’ 등의 모호한 명칭의 사용은 금지되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편 보다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위해 역내 통관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EU의 수입물품 통제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EU는 그 동안 사전 전자신고제도,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동세관 등록번호(EORI) 등을 통해 공동 통관정책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역내 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Customs 2020 프로그램, 위험관리 향상 액션 플랜, 세관정보포털(ECIP)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투자환경

벨기에는 외국인이 거주하며 사업을 하기에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EU 본부가 위치해 있는 벨기에는 수도인 브뤼셀 지방만 해도 200여개가 넘는 외국기업이 존재하며 유럽항공안전기구(Eurocontrol), NATO 본부 등 국제 단체 및 로비스트들이 많아 전략적 국제도시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지리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영국과도 가까이 있어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고수준의 인력자원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제2대 항구인 안트워프 항구로 물류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철도, 공항, 도로, 통신망 등 인프라 구조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이 밖에, 벨기에 내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벨기에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존중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만한 작은 면적을 가진 벨기에에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공용어만 3개이며, 이 같은 언어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조화롭게 융합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벨기에인들은 다른 문화 및 언어를 배타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성향이 커 외국인들이 사업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벨기에 투자장려 정책

벨기에 정부는 투자 장려를 위해 투자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벨기에 소재 기업은 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우대 제도를 누릴 수 있다. 투자자의 국적이나 사업 유형과는 관계 없이 일반적인 투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투자는 직접적으로 신규 설비, 확장, 전환, 현대화 등과 관련 되어야 하며 국가 이익과도 부합해야 한다.

더불어 벨기에 내 외국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형태로 취급되기 때문에 외국기업 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는 없으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진의 일환으로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채용의 용이성을 위해 특수 비거주자 세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고용된 외국인 고급인력(매니저나 과학자 급)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벨기에 내에서만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하고 있다. 이들의 이사 비용, 주택 임대비용, 교육비 등 벨기에 내에서 일하는 도중 발생하는 수당 역시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요 투자 인센티브 제도

고용보조금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장애인, 노인,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시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기업의 사회 보장세를 감면하고 있다. 2016년부터 기업 설립 후 1~2번째 고용된 근로자들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3~6번째 고용된 근로자까지 그 혜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보조금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 지역(낙후 지역),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보조금의 형태는 현금 보조 또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 때 신규 환경 규정의 적용을 위한 기존 시설 대체 투자의 경우 투자 비용의 12% 지원, 기존 환경 규정 보다 더 강화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시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 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적용 대상은 오염 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 지역 정화, 환경 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부여된다. 현금 지원 대상은 토지, 건물 또는 신규 시 설비재(신규 사업자의 경우 중고 사무용 가구) 등 유형 고정자산 매입, 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무형 자산 매입 등이다.

혁신박스 제도(Patent Box)

벨기에 정부는 R&D 투자 유치를 위해 혁신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기존 특허수익공제법을 대체하는 제도로, 2017년 2월 의회에서 채택되어 2016년 7월 1일부로 소급적용 중이며, 동 제도에 따라 벨기에 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벨기에 지사는 총 납세대상 수입 중 혁신활동에 대한 수익 중 최대 85%까지 수익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 제도는 벨기에 재무부에서 관찰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출원이 접수 되는대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문제 사전 답변제도(Advance Tax Ruling)

2005년 도입된 벨기에 Tax Ruling 제도는 납세의무자와 세무당국간 향후 납세대상 소득과 그에 적용될 세제를 미리 협의하는 제도로, 해외 투자자들은 동 제도를 통해 투자전부터 투자 후 발생하는 비용 및 수익에 대한 미래의 납세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대규모 설비투자 혹은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시점 또는 향후 수익 발생시점에서의 세 부담 정도가 투자와 관련된 전략 결정에 주요변수가 되므로, 벨기에의 중요 투자 유치제도의 하나로 여겨진다.

기업은 자사가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당국과 사전 면담할 수 있고, 면담 후에 반드시 동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영화 등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 진흥을 위한 Tax Shelter 제도

동 제도는 영화 및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의 진흥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

로서, 동 제도를 통해 영상산업에 투자한 투자사는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대상 작품은 영화, 극장 및 TV용 애니메이션 등으로, 벨기에 기업 및 VAT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전체 작품 제작비용의 50%, 최대 투자한도 241,945 유로 내에서만 투자 가능하다.

스타트업 기업 인센티브

스타트업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벨기에 정부의 투자 지원 정책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Crowd funding을 이용한 투자와 Start-up 기업에서 신규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방식이 있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신생 Start-up 기업 내 투자로는 동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4년 이상 된 스타트업 기업이어야 한다.

최대 투자가능 금액은 100,000 유로로 제한되며 투자 시 초소형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45%를,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Crowd funding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분 투자의 경우 7,500 유로이며 대출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15,000 유로로 제한된다. 벨기에 정부는 동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1,000개 가량의 스타트업 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관련 규제내용

벨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통제하거나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는 없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 간 차별을 두지 않으며, 오히려 벨기에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투자 한도액, 투자 비율, 지분 소유 등에 대한 제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 및 보험, 에너지, 방송, 통신, 우편서비스와 관련한 산업에 대한 투자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관련 산업에 투자 시, 사전 통보 혹은 관계

당국에 의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벨기에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차별적인 투자 제한이나 금지는 없으나, 개인사업자로서 벨기에에 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벨기에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려면 영업 성격에 따라 현지 직업 자격증과 학력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와 동종의 직업 자격증이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벨기에 정부로부터 동격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만일, 동격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또는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실상 투자 진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조세제도

조세 종류에는 직접세(법인세, 개인소득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상품 및 서비스의 이전에 대한 조세, 각종 등록세) 이외에도 상속세, 증여세, 환경세, 주민세 등이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일부 등록세, 환경세는 연방정부 소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지방정부, 주민세는 구청 소관이다.

법인세

벨기에 법인은 영리사업체로 간주되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벨기에의 법인세는 벨기에 내에서 발생된 소득뿐 아니라 EU 및 비 EU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명목 법인세율은 외국인 기업이나 내국인 기업의 차별 없이 25%이며 이는 벨기에 기업의 경쟁력 확보, 안재 채용 확대 등을 위해 벨기에 정부가 법인세율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2021년도에는 25%까지 낮춘 결과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2018년 24.98% → 2019년(20.40%) → 2021년(20%)까지 인하하였다.

이 밖에도 벨기에 정부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최초 고용인 1명에 대해 사회보장세가 무기한 면제되며, 두 번째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음 5분기 동안 1,550 유로, 그 뒤 4분기 동안 1,050 유로, 이후 4분기에는 450 유로가 감면된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는 3~6번째로 고용된 근로자에게까지 혜택의 폭이 넓어져 처음 9분기에 1,050 유로를, 이후 4분기에는 450 유로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 투자기업 관련 조세제도(가상이자공제)

벨기에 정부는 투자 유치의 주요 무기로서 2007년부터 자기 자본의 투자를 장려기 위해 가상이자공제(Notional interest deduction; NID)라 일컫는 세계에서 유일한 혜택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기업의 고유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고유자본 투자 시, 가상 이자액을 과세 대상인 수익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가상이자라는 용어를 도입한 이유는 만약 고유자본 투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 받았다면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고유자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상적인 이자’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로 인해 법인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결국에는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벨기에가 외국투자유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외환관리

벨기에는 외환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히 외환의 송·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으며 외환 소유에 대한 규제 및 외환 자본, 대부, 기술헌정 및 이와 유사한 자본에 대한 등록 요건도 없다. 그리고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는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과거 공식 외환 시장(The official market)과 자유 외환 시장(The free market)의 2중 구조는 1990년 3월을 기해 폐지되고 하나로 통일되었다.

1961년 2월 15일에 IMF 제 8조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 수지상의 이유로 외환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1944년 설립된 벨기에 외환사무국(IBLC: L'institut Belgo-Luxembourgeois du Change)이 최고 외환 관리 기관으로 외환지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련 통계를 총괄 해왔으나, 2002년부터는 모니터링 업무에 중점을 두고 외환 관련 통계는 벨기에 중앙은행으로 위임하였다. 한편, 외환 지급 및 이전 업무 기능은 일반 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금조달

벨기에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은행의 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이 있다.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는 법적으로 국내 기업과 차이가 없으며, 거래실적,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조달할 수 있다.

벨기에에는 총 109개의 은행이 있는데, 이 중 벨기에 법인 은행이 47개, 외국 법인 은행이 62개다. 벨기에에는 국토 크기에 비해 비교적 많은 은행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경쟁이 심해 상대적으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벨기에 대출금리 역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벨기에 소재 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벨기에 소재 기업들의 은행대출 자금조달 규모는 총 1,340억 유로로 2017년 4분기 대비 2% 증가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2018년 5월 기준 은행의 기업 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1백만 유로 이하 1년 미만 단기 대출금리의 경우 1.61%, 1~5년 미만의 대출금리는 1.42%, 5년 이상의 장기대출의 경우에는 1.82%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출규모가 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1년 미만 단기대출에 대해서는 1.31%의 금리가 적용된다.

노무 관리

2016년 기준, 벨기에 노동인구 수를 살펴보면 총 492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

1,130만 명 중 43.57%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취업 인구 수는 총 454만 명, 구직자의 수는 3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제조업(12.4%), 건설업(5.9%), 농업(1.3%) 순으로 고용중에 있다.

벨기에는 근로 성격에 따라 생산직과 사무직이 있고, 근로서비스 양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며 무기한 고용 계약이 일반적이다. 또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만이 고용법에 의해 보호되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고용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계약

고용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감독하에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계약에는 4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 계약, 근로, 보수, 고용주 감독으로 이들 4대 요소는 고용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또한 고용계약은 양측이 동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의 변경은 양측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고용계약의 종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고용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의 핵심 요소를 변경할 경우, 고용계약의 종료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또한 고용계약의 모든 수정사항이 서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유로 필요 시, 고용계약 내 핵심적 요소를 크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재조정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벨기에는 고용계약의 문서화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후 증빙 등의 나중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의 방지를 위해 문서화된 계약서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 권리 및 의무는 양측 간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협약, 근로 규정, 관습 등으로도 규율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고용계약에는 업무 내용, 고용계약 기간, 보수 및 보수지급날짜, 출퇴근

시간, 근로시간, 고용계약 종료, 결근, 분쟁절차, 근로규칙, 보험, 식권(Ticket restaurant), 기타 인센티브 등이 문서로 기술되고 있으며 양측간 서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비자

90일 이상 벨기에 장기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비자는 크게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로 나뉘며, 학생비자신청자와 취업비자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발급되는 동반비자 그리고 관광과 단기 근로를 겸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비자가 있다.

한국-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한국-벨기에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2014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체결되어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만 18세~30세 이하인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자 숫자는 한 해 200명으로 제한된다. 비자는 12개월간 유효하며, 체류기간 도중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근로 혹은 학업을 부수적으로 취하는 것은 최장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동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양국 간 이해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나아가 협력 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및 경제동향

체코는 서유럽, 동유럽, 및 CIS 지역을 잇는 유럽의 정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유럽 전역이 비행거리 2시간 내에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육로 이동이 자유롭다. 또한 2004년 EU 가입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금융 위기 시기인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무역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다.

체코 경제는 2018년~2019년 지속적인 임금 상승에 따른 내수 성장, 낮은 국가 부채율 등으로 각각 3.2%, 3.0%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 타격으로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은 -5.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백신 보급 및 봉쇄 해제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 소비회복을 기반으로 3.5%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 러-우사태 발발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다시금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 내년도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체코 중앙은행, 재무부 등 주요 기관은 2022년 체코 경제성장률을 1.9~2.5%로 전망하고 있다. 체코 재무부는 '23년 경제성장률을 0.7%로 전망하였는데('22.11월), 고인플레이션 지속, 에너지 가격 부담 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소비 및 투자 위축)은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체코는 EU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21년 GDP 중 제조업 비중 23%, EU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2위)로, 연간 110~140만대를 생산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금속 가공업, 기계 제조업, 전자기기 제조업도 역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체코 주요경제지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백만명)	10.6	10.7	10.5	10.5
GDP(US\$십억)	252.5	246.0	281.8	295.6
1인당 GDP(US\$)	23,714	23,001	26,849	28,095
경제성장률(%)	3.0	-5.5	3.5	1.9
물가상승률(%)	2.8	3.2	3.8	16.2
실업률(%)	2.0	2.6	2.8	2.5
수출(US\$백만)	199,133	192,902	226,533	157,754*
수입(US\$백만)	179,044	171,093	211,943	154,928*
FDI 규모(US\$억)	101.08	94.17	58.05	-
대한수출(US\$백만)	446	510	533	353*
대한수입(US\$백만)	2,539	2,495	2,854	2,086*

주: 2022년은 추정치, 2022년 수출입 금액은 1월~8월 기준

출처: IMF, 체코통계청, 체코재무부, 체코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체코 제조업의 18%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은 체코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유럽 지역 자동차 생산량 3위를 기록(2021년 기준) 하며 CEE지역(중동부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승용차 생산업체는 SKODA Auto, 현대자동차, Toyota이며 주요 트럭 생산업체는 TATRA 주요 버스 생산업체는 IVECO BUS, SOR가 있다.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로는 Continental, Bosch, Denso, 성우하이텍 등이 있다. 2021년 기준 자동차(HS코드 8703)는 체코 전체 수출의 10.3%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며, 체코의 자동차 주요 수출국은 독일(24.5%), 영국(7.9%), 프랑스(7.3%), 스페인(5.1%) 순이다.

체코와 한국 간 교역은 현대자동차, 삼성, LG 등 대기업 위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슬로바키아의 기아자동차와 함께 현대자동차는 체코를 유럽 내 자동차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중 현대자동차 협력사들의 비중 역시 크며, 한국의 對체코 수출액 중 약 38%를 자동차

부품이 견인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력업체로는 성우하이텍,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을 들 수 있다. 2014년 벡센타이어는 유럽 진출을 위해 체코 내 생산공장 설립 및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이 외에도 삼성, LG,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등 다수의 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차 설비 수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역대 최대 교역규모(약 40억 달러) 및 무역수지(약 19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2022년(1~9월 기준)에도 對체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한 반면 수출은 6.9%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도 2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한국의 對 체코 수출입 동향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9
수출	금액(백만 달러)	2,452	2,114	2,694	2,954	2,352
	증감률(%)	10.8	-13.8	27.4	9.7	8.1
수입	금액(백만 달러)	864	852	944	1,094	759
	증감률(%)	20.7	-1.4	10.8	15.9	-6.9
무역수지(백만 달러)		1,588	1,262	1,750	1,860	1,593

출처: KITA

2021년 합성수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조명기기의 對체코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원동기 및 펌프, 계측제어분석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2년(1~9월)에는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수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건전지 및 축전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對체코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전자현미경*이다. 또한 각종 정밀기계, 고무 등 화학제품 수입도 많은 편이다. 2022년(1~9월)에는 합성고무, 반도체 등을 제외한 주요 수입품의 수입금액이 감소했다.

* 체코는 독일, 미국, 일본과 더불어 대표적인 전자 현미경 생산 국가로, 전자 현미경 세계 5위 기업인 테스칸(TESCAN)사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음

○ 한국의 對 체코 10대 수출 품목 (순위 2021년 기준, 품목 MTI 3단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21		2022 1-9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954	9.7	2,352	8.1
1	자동차 부품	1,131	29.9	814	-3.5
2	컴퓨터	267	17.0	245	26.4
3	산업용 전기기기	163	14.2	179	50.2
4	반도체	103	-11.9	83	23.7
5	기타철강금속제품	95	5.6	67	-5.6
6	조명기기	90	27.4	73	13.0
7	원동기및펌프	87	-30.1	78	36.8
8	계측제어분석기	86	-20.6	56	-14.6
9	합성수지	82	37.5	71	19.7
10	자동차	73	36.9	62	11.8

자료: KITA

○ 한국의 對 체코 10대 수입 품목(순위 2021년 기준, 품목 MTI 3단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21		2022 1-9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094	15.9	759	-6.9
1	자동차부품	159	11.0	90	-26.4
2	전자응용기기 (전자현미경)	155	30.0	102	-9.9
3	원동기및펌프	104	12.7	53	-29.6
4	계측제어분석기	92	3.4	62	-9.8
5	기계요소	55	23.5	33	-16.8
6	고무제품	48	2.7	26	-29.7
7	합성고무	40	98.3	30	15.0
8	기타산업기계	24	-9.5	17	-8.6
9	플라스틱제품	22	16.3	18	9.9
10	컴퓨터	20	84.2	10	-16.4

자료: KITA

체코는 1998년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해 법인세 감면, 고용창출 보조금, 직원 교육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누적기준 체코의 FDI(FDI stock)은 약 2,006억 달러로, GDP 대비 FDI 비중도 1990년대 초반 약 10%에서 2021년에는 71%까지 크게 증가했다. 체코 투자청의 자료(2022년 3월 기준)에 따르면 약 342억 유로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약 2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최대 투자 건은 2006년 현대자동차 투자(약 13.3억 유로)이며, 이어서 2002년 TPCA(도요타, PSA 그룹 합작회사, 약 9.1억 유로), 2014년 벡센타이어(약 8.8억유로) 투자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현대자동차 진출을 전후로 계열사 및 협력사, 유관품목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체코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체코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에 동등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프라하는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만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투자의 경우 체코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6개월 이내에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며 인센티브 신청 이전에 신규 고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할 경우 그 부분은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투자인센티브는 제조업, 첨단기술 제조업, 의료분야 및 보호장비 제조업, 기술(R&D)센터, 비즈니스 지원센터(소프트웨어, IT 개발, 데이터센터, 첨단수리 센터, 공유서비스 센터)의 신규 또는 확장 투자에 적용된다. 투자 인센티브는 국가 보조금에 속하며, 프라하를 제외한 지역(프라하는 0%)에서 국가 보조금의 최대 한도는 지역별로 대기업 기준 적격비용*의 20~40%이다. 대기업 기준에서 중기업은 10%, 소기업은 20%가 추가 적용된다.

* 적격비용이란 인센티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비용으로 1) 신규 기계 취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 고정자산(신규기계, 건물, 토지, 무형자산 등)과 2) 신규 채용 직원의 2년간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체코 투자청은 기업 규모 산출시 관계사와 해외지사 등 그룹 전체의 규모를 고려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업규모별 보조금 상한선(수혜한도) 및 구분 기준

구분	수혜한도	직원 수	매출(Turnover 또는 자산(Balance sheet total))
대기업	25%	250명 이상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초과
중기업	35%	250명 미만	매출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이하
소기업	45%	50명 미만	매출 1,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1,000만 유로 이하

주: 수혜한도는 적격비용에 대한 비중

출처: 체코투자청

2018년 이후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기업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기면서 체코 정부는 단순 제조업보다는 미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R&D, 혁신기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 9월 투자 인센티브법 개정 후 정부에서 모든 개별 외국인 투자가 향후 창출할 경제적 이점을 평가하여 승인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제조업 분야의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첨단기술 제조 분야도 조건 및 혜택 사항을 단순 제조업과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기업과 소기업도 차등)의 인센티브 조건이 보다 완화되고 혜택은 강화된 편이다.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 고부가가치 조건(제조업 투자),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 조건을 충족할 때 인센티브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투자유형은 일반투자와 전략적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 투자는 최소 투자금액이 2억~20 코루나에 달하고 최소 70~25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하며, 일반투자 인센티브에 자본 투자 보조금을 추가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첨단기술 제조업, 의료 제조업 분야의 경우도 자본 투자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투자 인센티브 지원조건

1) 제조업

항목	일반투자			전략적 투자
최소 투자금액*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최소 20억 코루나 투자, 최소 일자리 창출 250명
	8,000만 코루나	4,000만 코루나	2,000만 코루나	
고부가가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조건: 최소 80% 직원에게 투자지역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 선택조건:①~③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학학위 직원 비율 10% 및 적격비용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R&D기관과의 협력 ② R&D직원 비율 2% ③ R&D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에 10% 투자 <p>* 경제·사회적 취약지역 및 과거 군사지역은 고부가가치 조건 충족 의무 없음</p>			

2) 첨단기술 제조업 투자

항목	조건		
대상분야	제약,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항공기 및 항공엔진, 우주선 및 관련장비		
최소 투자금액*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8,000만 코루나	4,000만 코루나	2,000만 코루나
고부가가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조건: 최소 80% 직원에게 투자지역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 선택조건:①~③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학학위 직원 비율 10% 및 적격비용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R&D기관과의 협력 ② R&D직원 비율 2% ③ R&D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에 10% 투자 <p>*핵심기술을 사용한 연구개발 필수</p>		

3) 전략적 의료분야 제조업

항목	일반투자		
최소 투자금액*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8,000만 코루나	4,000만 코루나	2,000만 코루나

* 특수지역(경제·사회적 취약지역 및 과거 군사지역, 산업특구지역)은 각 최소 투자금액의 50%로 축소

4) 기술센터(R&D 센터)

항목	일반투자			전략적 투자
최소 투자금액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2억 코루나
	1,000만 코루나	500만 코루나	250만 코루나	
최소 일자리 창출	20명	10명	10명	70명

5)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항목	일반투자				전략적 투자
	구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최소 일자리 창출	SW/IT개발센터	20명	10명	10명	첨단수리센터 만 해당 최소 2억 코로나 투자, 최소 100명 일자리창출
	데이터센터	20명	10명	10명	
	첨단수리센터	50명	25명	25명	
	공동서비스센터	70명	35명	35명	

* 모든 최소 투자금액의 50%는 신규 기계구입에 투자되어야 함
출처 : 체코투자청

투자 인센티브 내용

구분	대상	내용
법인세 면제	모든 투자 분야 해당	최대 10년까지 법인세(현재 법인세 19%)가 국가보조금 한도 내에서 면제
고용창출 보조금	제조업, 전략적 의료, 첨단기술 제조업	•실업률이 7.5% 이상이며 동시에 체코 평균 실업률의 50%를 초과하는 지역만 해당 •신규 고용 창출 당 20만~30만 코로나 지역
	기술센터	신규 고용 창출 당 20만 코로나 지원
직원훈련 보조금	제조업, 전략적 의료, 첨단기술 제조업	•실업률이 7.5% 이상이며 동시에 체코 평균 실업률의 50%를 초과하는 지역만 해당 •대기업은 직원훈련 비용의 50%, 중기업은 60%, 소기업은 70% 지원
	기술센터	대기업은 직원훈련 비용의 50%, 중기업은 60%, 소기업은 70% 지원
자본 투자 보조금 (추가혜택)	제조업 전략적 투자, 전략적 의료, 첨단기술 제조업	적격비용(기준 투자금액)의 최대 10% 또는 20% (최대 15억 코로나 한도)
	기술센터, 첨단 수리센터의 전략적 투자	적격비용(기준 투자금액)의 최대 20% (최대 5억 코로나 한도)

출처 : 체코투자청

투자 인센티브 개정으로 정부가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 후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다. 기존에는 신청서를 받은 체코투자청에서 심사 후 관련 부처 심사를 거쳐 승인되고 전략적 투자(대규모 투자)만이 정부의 심사를 거쳤으나 개정 이후에는 모든 프로젝트가 정부(총리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이 결정된다. 체코 투자청에 따르면, 정부의 최종 승인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보다는 승인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

트로 투자지역과 체코 정부에 창출되는 이점(사회보장세 및 VAT 등 정부 예산 기여, 노동시장 기여, 인프라개발, R&D센터 및 연구기관 협력, 지역 협력, 체코 현지공급업체와의 협력 등에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신청 기업이 직접 산출해 작성해야 한다. 체코투자청에 따르면 체코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심사에서 투자창출 이점에 관한 제안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제안서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정책

체코의 조세제도는 1993년 1월에 시행된 소득세법(Income Taxes Act, Law 586/1992)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2004년 EU 가입 이래로 EU법과 일치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3개 분야인 직접세, 간접세, 기타세로 구분된다. 주요 조세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소비세 및 사회보장세 등이 있다.

세무 관련 기본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Income Tax) Act No. 586/1992 Coll.
-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No. 235/2004 Coll.
- 세법(Tax Code) Act No. 280/2009 Coll.

☞ 체코의 주요 세제 개요

세금종류	과세비율
법인세	19%(2010년부터 적용) 특별세: 투자자금 5%, 연금자금 0%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5%/15%/35% (유형에 따라 이중과세 협정에 따라 상이)
개인소득세	2단계 누진세율로, 한도(평균임금의 48배) 이하 소득은 15%, 한도 초과 소득은 23% * 2022년 한도: 연간 1,867,728코루나 (월 155,644코루나)

세금종류	과세비율
부가세	일반세율 21%: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경감세율 15%: 식품품, 특정 의약품, 특정 의료기기, 항공료 등 경감세율 10%: 요식업 서비스, 숙박 서비스, 미용 서비스, 영유아 식품, 특정 도서(전자 서적) 등
소비세	탄소연료와 윤활제, 알코올 및 주류, 맥주, 와인, 담배(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부과)
도로세	상업용도로 등록된 경우에 부과 승용차 1,200~4,200 코루나, 그 외 차량 1,800~37,800코루나
부동산세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동산의 종류, 지역, 용도 등에 따라 상이
에너지세	전기, 천연 및 기타 가스, 고형연료 공급자에게 과세됨

출처 : 체코투자청

①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19%

체코에 등록된 사업장 또는 실질적인 관리조직이 있는 기업은 거주자로 간주되며, 법인세 대상이 된다. 법인세는 체코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 및 비거주자의 체코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19%가 적용되며, 기본투자기금(Basic Investment Funds)에는 5%, 특정 연기금(Pension Funds)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②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15%

체코 거주자(체코에서 지난 12개월간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는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체코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활동 수입, 자본소득,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2021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 한도 이하 소득은 15%, 한도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3%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한도는 평균임금의 48배로 2022년 기준은 연간 1,867,728코루나(월 155,644코루나)가 적용된다. 23% 세율은 기존에 평균임금의 48배 초과소득에 적용됐던 연대세(Solidarity tax) 7%가 폐지되고 적용되는 것으로, 기

존 연대세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에만 적용됐으나 23% 세율은 임대소득, 자본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소득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고 과세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 1일까지)에 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요율은 고용주의 경우 총 33.8%, 근로자는 총 11%이다.

② 개인 소득에 대한 사회복지세 및 건강보험료

분담	고용주	피고용인
건강보험	9.0%	4.5%
연금	21.5%	6.5%
실업보험	1.2%	0.0%
질병보험	2.1%	0.0%
합계	33.8%	11.0%

출처 : 체코투자청

③ 부가가치세(VAT / DPH: Daň z přidané hodnoty): 10%~21%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체코 내에서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일반적인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체코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연간매출이 100만 코루나(약 4만 6,950달러)를 초과하는 업체는 VAT 납부자로 등록 후 VAT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2022년 VAT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VAT 의무 등록 기준이 전년도 매출 200만 코루나(약 8만22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세율은 21%이며, 품목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15%, 10%로 부가가치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15% 부가세 적용 품목은 식료품, 음료, 의료치료(Medical Treatments) 등이며, 10% 적용 품목은 영유아용 식품, 서적 등이다. 또한, 전자매출등록시스템 도입 및 코로나19 타격 업종에 대해서는 VAT 인하가 시행되어 숙박, 요식업, 미용 등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10% (요식업 서비스, 숙박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행사, 미용 서비스, 영유아 식품, 특정 도서(전자 서적) 등)
- 15% (기본 식료품, 특정 의약품, 특정 의료기기, 항공료 등)
- 21% (일반 상품 및 서비스)

기본 과세 보고기간은 1개월이며,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세 보고기간을 분기로 선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온라인 세금포털 (<https://adisspr.mfcr.cz/>)에서 가능하다.

④ 특별 소비세(Excise tax)

특별소비세(Excise tax)는 특정 상품의 가격을 규제하거나 주 예산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간접세 중 하나이다. 체코에서 생산되거나 체코로 수입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된다. 특별소비세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되며, 세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다. 특별 소비세는 2010년 인상 이후 9년 동안 동결됐으며, 체코 보건부 WHO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유해제품에 대한 소비규제를 위해 체코 재무부는 2020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를 인상했다.

○ 주요 특별소비세 적용 품목 및 세율

- 담배: 세율 30%, 1개당 1.61체코 코루나 부과 (최소 세금금액 1개당 최소 2.90체코 코루나)
- 주류: 40% 알코올 함유 제품의 경우 0.5리터당 64.5코루나

⑤ 도로세

사업목적으로 등록되고 운영되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엔진 배기량에 따라, 기타 상용 차량의 경우 차축 수와 중량에 따라 부과된다. 세금은 승용차의 경우 연간 1,200코루나(엔진 800cm³ 까지)~4,200코루나(엔진 3,000cm³ 이상), 트럭의 경우 연간 1,800코루나 ~37,800코루나

나(36톤 이상)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LPG, CNG, E85(바이오가솔린) 연료를 사용한 화물 차량(최대 12톤)은 도로세가 면제된다.

⑥ 부동산세(Real estate tax)

토지세와 건물세로 구성돼 있으며 크기와 지역, 사용 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연간 기준으로 지불하나 특정 경우 사용자 또는 임차인이 지불하기도 한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 까지 관련 세무서에 해당 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세금 신고서의 세금신고 관련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 금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 위치 및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⑦ 에너지세

2008년부터 전기, 가스 및 고체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를 신설했으며, 이는 에너지의 공급자 또는 (배전, 송전) 시스템 운영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전기: CZK 28.30/MWh
- 가스: 가스 종류에 따라 CZK 30.60/MWH-CZK 264.80/MWh
- 고체연료: CZK 8.50/GJ

고용노동정책

고용 계약

체코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주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근무 장소, 근무 시작일이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고용계약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 고용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월 급여 및 지급일, 휴가, 종업원의 의무, 경쟁회사 취업 금지 조항 및 수습기간, 근무시간, 담당 업무 등이며, 계약 기간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지속적인 효력을 지닌다. 기간이 고정된 고용계약의 경우 기간으로는 최대 3년까지 또는 횟수로는 첫 계약 후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첫 계약 포함 최대 3회)하다. 수습기간은 일반 직은 3개월이며, 관리직은 6개월까지이다.

근로시간

체코의 법정 근로시간(초과근무 제외)은 주당 40시간이다. 광산 등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7.5시간이며, 2교대 근무자는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자는 주당 37.5시간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일당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최소 6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최소 30분간의 식사 및 휴식 시간이 부여돼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연속 근로시간이 4.5시간이면 최소 30분의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다음 교대 시작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소 12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시간 외 근무는 고용자가 예외적으로 심각한 운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당 평균 8시간, 연간 15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종업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최소 2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만큼 근무일수에 휴가를 주거나,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야간이나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휴일과 휴가

노동법 상 연간 최소 4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종업원이 계약해

지 또는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 평균임금에 따른 휴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연간 5주의 휴가가 적용된다.

2021년 1월부터는 노동법 개정(No. 285/2020)으로 연차휴가가 기존의 근무일 기준에서 근무시간 기준으로 변경된다. 연간 최소 4주 연차휴가는 동일하나 근무일이 아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받게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60시간의 연차휴가가,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는 120시간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출산 휴가는 최근 2년 이내 근속일수 270일(약 1년) 이상자에 한해 28주(쌍둥이는 37주)이며, 육아휴가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명이(어머니의 경우 출산휴가가 끝난 후부터, 아버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육아휴가를 시행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어머니의 경우 출산휴가가 끝난 후부터, 아버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육아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병가의 경우 처음 14일에 대해서는 임금의 60%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15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질병보험을 통해 정부가 부담한다.

해고

노동법상 당사자 간의 서면 동의, 해지 통보(고용주에 의한 해고, 직원에 의한 사직), 노동법에 명시된 사유로 인한 즉시 해지, 수습기간 내의 해지, 기간제 고용계약의 만료, 직원의 사망으로 고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직원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허가 만료, 추방, 근로 비자(Work permit) 또는 근로를 위한 장기 비자 만료로 인해 고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근로자는 최소 2개월 이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도 사직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체코 노동법

52조에 명시된 사유로 제한된다. 해고 사유는 사업장 폐쇄 또는 이전, 구조 변경에 따른 근로자 수 감축,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인한 장기적인 업무 능력 상실, 근로자의 중대한 업무상 의무 위반, 근로자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고용주의 서면통지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고용주나 근로자는 최소 2개월 전(통지한 날짜의 다음 달 1일부터 최소 2개월 이상)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서면 통보가 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이 경우 철회 통지 및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급여

체코는 한국처럼 퇴직금 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퇴사하거나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

고용계약이 노동법 52조의 사유로 고용주에 의해 종료되거나, 혹은 같은 사유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해지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2개월분의 평균급여를, 2년 이상이면 3개월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디지털무역 장벽

2018년 5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인 GDPR(Regulation (EU) 2016/679) 시행에 따라, 체코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Act No. 101/2000)을 대체하는 개인정보처리법(Act No. 110/2019)을 2019년 4월부터 시행했다. 체코의 개인정보처리법에는 GDPR과 동일한 취지의 조항, GDPR이 유럽 각국에 자율성을 부여한 부문에 대한 재량입법, EU 형사사법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지침에 따른 체코 국내법 적용 내용 및 국방·안보 관련 개인정보처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체코 개인정보처리법에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

의 개인정보 이전 규정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체코 국내에서는 GDPR(제V장) 조항이 적용된다.

체코의 개인정보 관할기관인 체코 개인정보보호국(The Offic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UOOU)은 독립적인 감독기구이자 체코 중앙 행정기관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감독, 민원 처리, 조언 및 국제 업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개인정보 관련 UOOU의 행정처분 건수는 51건으로, 주요 사례로는 11개사 기업의 일반 시민 대상으로 원치 않는 우편 마케팅 메시지 발송, 방송사의 정보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불완전 이행, 은행의 필수적이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 사용, 게임 사이트의 부적절한 보안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건이 있다. 사례를 토대로 체코 진출기업은 특히 개인정보 처리 원칙,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정보 주체의 열람권, 개인정보 처리 보안등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 전세 및 전망

개관

아일랜드 경제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GDP가 250% 이상 증가하는 경기호황을 누렸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2010년 국가부채 비율이 110%를 기록하고, 2010년 11월 EU와 IMF에 85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으로 대내외 신뢰가 회복되고 수출 여건이 호전되면서 경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어, 2013년 12월 유로존 구제금융 프로그램 시행국가(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중 최초로 구제금융을 졸업하였다. 아일랜드는 2014년 이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고, 2013~18년 동안 연평균 4.5% 성장률을 보이며 매우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아일랜드 정부는 2018년 균형재정 및 2019년 11억 유로 흑자 재정을 달성하였고, 2010년 붕괴되었던 은행 시스템도 점차 회복되었다.

아일랜드는 경제성장과 고용이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기본적으로 외부 정치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취약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브렉시트 이행 개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아일랜드 경제는 2020년 이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국적 기업의 수출 호조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부정적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아일랜드 경제는 2020년 5.9%, 2021년 13.6% 성장을 기록하여 EU 회원국 중 매우 높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2022년 경제성장률도 국내 주요 경제기관별 차이는 다소 있으나 7~10%로 비교적 높게 전망되고 있다. 단, 2022년 하반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득 보전, 공중보건조치 등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정부재정은 각각 2020년 184억 유로, 2021년 81억 유로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22년 14억 유로 적자를 예상한다고 발표하였다. 2021년 정부부채는 누계 2,359억 유로, 2022년에는 2,332억 유로를 기록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GDP 대비 50%)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GDP 성장률(%)	2.0	8.9	9.0	4.9	5.9	13.6	6.8
명목GDP(10억유로)	286.1	311.7	339.8	356.5	377.4	426.3	499.2
1인당 GNI(미달러)*	51,810	53,350	59,350	63,300	65,750	74,520	-
수출(억유로)	2,544	2,846	3,290	3,827	4,169	4,589	-
증가율(%)	9.34	11.88	15.63	16.30	8.94	10.1	12.5
수입(억유로)	2,731	2,858	2,940	4,232	4,101	3,917	-
증가율(%)	19.75	4.66	2.85	43.95	-3.10	-4.5	9.0
실업률(%)	8.4	6.7	5.8	5.0	5.8	15.9	5.2

출처 : Central Statistics Office(2016~2021), 재정부(Budget 2023), ESRI(분기별 경제전망), World Bank*

대외 무역

아일랜드는 구조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일랜드 상품 수출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 여건하에서도 지속 상승하여 2021년에는 1,657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에 달했고, 수입 또한 국내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21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서 전년 대비 19.2% 증가한 1,038억 유로를 기록했다.

ㅇ 아일랜드의 상품무역현황

(단위 : 10억 유로,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122.8	140.6	152.5	162.1	165.7 (2.2)
수입	82.9	92.0	91.0	87.1	103.8 (19.2)
무역수지	39.8	48.7	61.5	75.0	61.9

출처 CSO (Central Statistics Office)

아일랜드의 주요 수출품은 의약품, 유기화학물, 의료기기, 화장품, 육류, 유제품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항공기 등 기타 운송장비, 의약품, 유기화학물, 산업 및 전자기기, 석유 및 석유 제품, 자동차 등이다.

ㅇ 아일랜드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2021)

(단위 : 10억 유로)

수출 품목	금액	수입 품목	금액
Medical / Pharmaceutical products	62.4	Other transport equipment (including Aircraft)	14.8
Organic chemicals	25.9	Medical / Pharmaceutical products	9.5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and appliances net and parts	12.0	Organic chemicals	10.4
Essential oils, perfumes, cosmetics, toiletries	8.3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 appliances net and parts	8.1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nes	8.1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nes	5.0
Professional, scientific and controlling apparatus nes	7.1	Office machines and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4.9
Meat and meat preparations	4.0	Road vehicles	4.0
Chemical materials and products nes	4.0	Petroleum, petroleum products and related materials	3.9
Office machines and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4.0	Articles of apparel; clothing accessories	2.6
Other transport equipment	3.3	General industrial machinery and parts, n.e.s	2.5

출처 : CSO

아일랜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EU(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순), 미국, 영국 등이다. 특히 수입 측면에서 브렉시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아일랜드의 대영국 교역 수준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미국 및 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행 1년 차인 2021년 아일랜드의 대영국 수출액은 144억 유로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155억 유로로 전년 대비 12.9% 감소하였다.

아일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아일랜드의 대영국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 급증하였으나,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에 따른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아일랜드의 정서 이행을 둘러싼 EU-영국 간 마찰이 지속되면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아일랜드의 대외무역에 계속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일랜드 주요 수출입 국가 현황 (2021)

(단위 : 10억 유로, %)

주요 수출국	금액	비중	주요 수입국	금액	비중
1. 미국	52.6	31.7	1. 미국	18.1	17.5
2. 독일	17.8	10.7	2. 영국	15.5	14.9
3. 영국	14.4	8.7	3. 프랑스	10.3	9.9
4. 벨기에	13.5	8.2	4. 중국	8.5	8.1
5. 중국	11.2	6.8	5. 독일	7.3	7.0
6. 네덜란드	9.4	5.7	6. 스위스	5.1	5.0
7. 프랑스	5.3	3.2	7. 네덜란드	4.5	4.3
8. 이탈리아	4.4	2.6	8. 북아일랜드	4.0	3.9
9. 북아일랜드	3.8	2.3	9. 이스라엘	2.4	2.3
10. 스위스	2.8	1.7	10. 벨기에	2.2	2.1

출처 : CSO (영국은 북아일랜드 제외한 수치)

투자 환경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

오늘날 아일랜드의 FDI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아일랜드 경제에 핵심 지표이다.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FDI의 기여는 광범위하며, 국가의 모든 민간 부문 고용의 20%가 직간접적으로 FDI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FDI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세수를 기여하고, 경제전반에 걸쳐 다른 상업 활동을 창출하며, 연구와 혁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아일랜드는 25만 명 이상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1,600개가 넘는 해외 기업들의 본거지다. 아일랜드는 ICT, 생명과학, 금융 서비스,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기업을 계속 유치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다수는 선진 제조 및 연구개발과 같은 전략적 활동을 아일랜드 내 설립한 자체 연구 센터 등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아일랜드가 FDI 분야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현지에 설립한 세계 유수의 기업 수¹⁷²⁾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아일랜드는 매력적인 투자처지만 국내에 있는 다국적 대기업의 활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FDI 유입의 유동성이 비교적 크다. 2015년 FDI 흐름에서 2,178억 달러를 유치하고 유럽 투자 유치 1위를 차지한 아일랜드의 투자 흐름이 2018년 총 마이너스 120억 달러로 돌아섰다. 이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18년에는 다시 유럽에서 가장 높은 1,494억 달러 유치로 돌아섰다.¹⁷³⁾

한편, 아일랜드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및 FDI 감소 예측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ICT 등 핵심 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및 고용이 증가하면서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2021년에는 팬데믹 이전 평균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⁷⁴⁾. 2021년 신규 FDI 투자는 249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고, 2022년 상반기에는 1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였다. 2021년 FDI로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16,826개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다.

172) ICT 분야 세계 상위 20위 중 17개사, 제약업계 상위 10개사, 의료기기 상위 15위 중 14개사, 산업자동화 산업 상위 10개 기업 중 8개사, 인터넷 관련 기업 상위 10개사, 금융서비스 상위 25개 기업 중 20개사 등이 더블린을 비롯한 아일랜드 주요 도시에 진출해 있음.

173)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174) IDA Ireland, Annual Report 2021.

정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조치

아일랜드가 FDI를 유치·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 동안 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정책 결정과 지리·환경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 세계 시장에 대한 개방성, 경쟁적인 세율 등 투자 인센티브,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EU의 회원국, 영어 사용 등의 장점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수년간 아일랜드 정부는 FDI를 적극 유치해 왔다. 아일랜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과세 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EU에서 가장 낮은 세율 중 하나(12.5%)를 가지고 있다. 이 전략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견실한 경제성장을 불러왔고, 최근에는 외국 투자를 한 기업들이 R&D 활동을 늘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아일랜드의 국제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수입이 7.5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 15% 법인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나, 동 법인세 인상이 FDI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망하고 있다.

IDA(아일랜드 투자진흥청)¹⁷⁵⁾은 아일랜드에서 외국인 투자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투자진흥기관으로서 외부 잠재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들과 제휴하여 그들이 아일랜드 내에서 사업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목적을 달성한다. 또한 고객사에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

2021년 IDA은 향후 4년간 800건의 신규 FDI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5만 개 이상을 창출하는 신 FDI 전략 2021-2024(Driving Recovery and Sustainable Growth)를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특히 교육·훈련,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술 및 녹색 혁신 등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175) <https://www.idaireland.com>

우리기업 아일랜드 진출시 고려 사항

아일랜드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점은 유럽시장으로의 접근성, 12.5%의 낮은 법인세율, EU 국가 중 영국을 제외한 유일한 영어 사용 국가, 유연한 고학력 인력, 영미법, 안정적인 시스템, 아일랜드 내 기존의 외국인 직접투자 성공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영국에 위치한 금융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대안 신생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는 유럽 거점 중 더블린이 금융회사 유치에 선두를 차지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일랜드가 유럽 경제 및 호혜적인 과세(법인세 12.5%)에 유인을 느껴 아일랜드로 진출한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아일랜드는 이런 기업들의 기업 전략 변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개방경제이자, 아직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 경제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은행 부문도 여전히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아울러, 높은 주택 비용 문제도 외국 기업 및 인력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일랜드 세제상 인센티브

□ 법인세

아일랜드 법인세 12.5%로 여타 주요 EU 회원국(프랑스 32%, 스페인 25%)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국내외 모든 기업(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낮은 법인세율은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고속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 R&D 세액 공제

아일랜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R&D를 위해 지출을 할 경우, 지출액의 12.5%

법인세 공제에 더불어, 동 지출액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또 공제해 주고 있다. 동 세액 공제 인센티브는 외국 투자 기업의 주재국내 R&D 분야투자를 촉진하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아일랜드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EU 또는 유로권 국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할 경우에도, 동 분야가 아일랜드내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고, 또한 동 기업이 외국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Knowledge Development Box 자격(2016년 1월 이후 회계상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된 발명 등 R&D 분야에서 소득 발생)에 속하는 기업은 법인 소득세를 반절인 6.25%까지 낮출 수 있다.

□ 지재산 세제혜택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발명/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6.25% (기본법인세율의 1/2)를 부과한다. 아일랜드에 설립된 외국 기업들이 특허권이 있는 경우, 특허 소득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던 관계없이 특허 소득세(Patent Income) 6.25%를 적용 받는다.

□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외국 투자 기업들은 지주 회사(Holding Company)를 EU내 제3국에 두고, 자회사(Subsidiaries)를 아일랜드에 설립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바, 아일랜드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자국에 지주 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주 회사 및 자회사가 한 양도소득세(CGT Group)에 묶여 있는 경우, 자회사 간, 혹은 지주회사로의 자회사 주식 매각에 따른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면제한다.

※ 혜택 조건: 지주 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5% 이상 보유 및 매각 전 최소 12개월간 보유 기간 필요

□ 배당 소득(Foreign Dividend Income)

아일랜드내 외국 투자기업이 제3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배당 소득을

취득할 경우, 동 소득에 대해 25%를 과세한다. 그러나 자회사가 제3국에서 동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면, 25%를 전부 과세하지 않고 적절히 삭감한다. 또한, 이러한 세제 혜택은 배당 이익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만 제공 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예상되는 배당 이익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자본 소득세 면제, 배당 소득세 삭감 등 유리한 세제 혜택은 외국 투자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

아일랜드는 한국 포함 76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73개국 발효) 동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은 아일랜드에서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복지세(USC), 자본이득세) 등에서 이중과세를 받지 않고 협정상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스타트업 기업 세금 감면 혜택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내의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 전 3년간 준비기간 대한 지출(Pre-Trading Expenses), 예컨대, 광고, 연구, 회계, 임대차 비용 등에 대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창업 후 최초 5년 소득에 대해서 소득 금액별 세금 전액 및 부분 감면을 주고 있다. (Three-Year Exemption for Start-Up Companies)

□ 부가가치세(VAT)

기본 부가가치세(VAT)는 23%(일부 품목 13.5%)이며, 아일랜드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관광 및 요식업계 지원을 위해 2020.11.1.부터 2023.2.28.까지 부가가치세 13.5%에서 9%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 관계

2021년 기준 한국과 아일랜드 간의 상품 무역액은 22.0억 달러이며, 한국의 아일랜드에 대한 수출입액은 각각 9.90억, 12.09억 달러, 무역수지는 2.2억 달

러 적자로 최근 의약품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1986년 이후 이어오던 만성적인 대 아일랜드 무역수지의 적자는 대체로 그 규모가 확대되는 중이다. 단, 2020년 및 2021년에는 연속 적자 폭이 감소하였다.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으로서 2011년 7월 1일 이후 한-EU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다.

한-아일랜드 연도별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16	'17	'18	'19	'20	'21
수 출	금액	565	693	650	650	924	990
	증가율	54.3	22.7	△6.3	0.1	42.2	7.1
수 입	금액	1,210	1,148	1,172	1,189	1,145	1,209
	증가율	20.3	△5.2	2.1	1.4	△3.6	5.6
무역규모		1,776	1,842	1,821	1,839	2,069	2,199
무역수지		△646	△455	△522	△539	△221	△219

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2021년 한-아일랜드 품목별 교역현황(MTI 4단위)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감율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감율
1	전산기록매체	415	97.7	의약품	519	0.0
2	집적회로반도체	141	22.0	의료용기기	184	21.2
3	승용차	106	92.1	안경	77	49.2
4	전기자동차	94	97.9	컴퓨터주변기기	43	18.7
5	기타정밀화학원료	62	3.4	의료용전자기기	38	21.6
6	합성수지	30	32.4	보조기억장치	33	△61.0
7	기타화학공업제품	27	12.9	음료	21	51.2
	합계	875		합계	915	

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한-아일랜드 투자 현황

아일랜드는 2020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13위 투자대상국(실투자금액 9.4억 달러)으로서 우리나라의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 누적액(실투자금액 기준)은 2022년 상반기 기준 약 7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과 2020년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투자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주요 투자진출 기업으로는 한국산업은행(KDB), 기아 자동차, 웹젠, SK 바이오텍(2018년 설립) 등이 있고, 2019년 5월 셀트리온헬스케어, 10월 한화에너지 법인 등이 설립되었다. 한국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 진출한 분야는 금융업, 부동산업, MRO 임대업 및 의약품 제조업, 에너지 분야 등이며, 아일랜드가 강점을 보유한 IT, 제약 바이오 등 생명과학 분야, 재생에너지, 금융업 및 기타 임대업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출 가능성을 모색중인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對아일랜드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누계
건수	2	4	1	7	11	19	35	25	20	198
금액	39	502	0	530	1,521	201	457	2,061	370	9,649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對아일랜드 투자 누계('85-'21)

반면, 아일랜드는 1990년부터 한국으로 투자 진출을 시작한바, 2022년 3분기 기준 투자 누적액은 총 약 65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일랜드의 한국 투자 건수와 금액은 변동성이 큰 편이다. 2021년 투자 신고액이 1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사업지원·임대업에 대한 투자이다. 아일랜드는 의료기기, 의약품, 헬스케어, 도소매 유통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금융보험, 첨단 농업 등 분야에서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다. 주요 한국에 대한 투자 기업으로는 한국오라클(S/W), 구글클라우드코리아(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스틱코리아 신성장동력 첨단융합 사모투자전문회사(기타 금융업) 등이 있다.

ㅇ 아일랜드⇨한국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누계
건 수	5	6	3	10	16	7	8	4	8	321
금 액	78	448	19	297	341	311	239	6	1,801	6,16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對韓 투자 누계 ('90~'21)

아일랜드 진출 유망 분야

테크놀로지

FDI 인텔리전스는 2018년, 2019년 FDI 유럽도시 및 지역 보고서에서 '더블린은 연구 대상의 모든 지역에서 1인당 최고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블린은 최근 몇 년 동안 다국적 거대 IT 기업인 페이스북과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들로부터 주요 투자를 받아 소프트웨어와 IT 허브로서의 명성을 확립했고, 현재 상위 10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중 8개사, 미국 상위 10개 테크놀로지 기업 중 9개사, 3대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 상위 5개 IT 서비스 기업 중 4개사가 진출해 있다. 정부와 IDA의 강력한 프로모션을 통해 더블린의 기술 입지 확대가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특히 유럽 전역의 젊은 인재들이 도시의 문화적 선호도와 매력에 이끌려 미국 기업으로 진출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진출하고 있다.¹⁷⁶⁾ 아일랜드는 사물인터넷(IoT), 클린 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ICT 및 소프트웨어 등 6개 기술 하위 섹터 관련 이미 글로벌 기반을 확보하였고, 아일랜드 기술 산업은 핀테크, 메디테크, 자동화 기술, 스포츠 테크, 인공지능, 나노테크놀로지를 포함한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더블린은 자금 관리, 항공기 임대, 보험 및 다양한 도매 은행업 활동의 주요

176) 2019 Tholons Service Globalizaion Index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세계화지수 순위는 세계 5위임.

글로벌 허브이다. 아일랜드는 EU에서 4번째로 큰 도매 금융 서비스 제공 국가로서 강력한 규제와 기술 기반, 투자와 세금 혜택에 이끌리는 광범위한 금융사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12.5%의 낮은 법인세와 76개국과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중과제방지협정의 조합은 세금분야의 효율성을 높여 아일랜드가 국제 금융 서비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이 아일랜드의 미래 국제금융서비스(IFS) 산업 발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2019.4월 「아일랜드 IFS 개발 전략 2025」를 발표하는데 이어, 2021.10월 새로운 국제 지속가능금융센터 설립 계획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아일랜드 금융 센터(IFSC)

IFSC가 더블린의 도시 경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 리피 강을 중심으로 금융 기관이 집중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IFSC는 1987년 정부가 은행, 펀드매니지먼트, 전문보험 등의 다양한 국제거래 금융 서비스를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설립했다. 그 이후 그것은 대규모로 확장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의 인접 항만 (Dockland) 지역은 IFSC 확장으로 발전하여 리피 강의 북쪽과 남쪽, 3아레나 강 동쪽까지 확장되었다. 세계 상위 50개 은행과 상위 20개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500여개 이상의 기업이 현재 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 항공 임대

이 분야는 더블린에서 특히 성공한 분야이다. 아일랜드는 전 세계 항공 리스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항공기의 절반 이상이 현재 아일랜드에서 소유 및 관리되고 있다.

▣ 금융서비스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2015년 이후 더블린 금융서비스에 대한 FDI 투자가 크게 늘었다. 다수의 영국

주재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브렉시트 전후에 대비하여 더블린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최근 더블린에 유럽본부를 설립했고 영국의 거대 은행인 바클레이스(Barclays)는 더블린에 주요 EU 은행 자회사를 설립했다. 씨티은행과 JP모건도 더블린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Y Ireland 조사(2021.3월)에 따르면, 브렉시트 관련 이유로 영국 소재 금융사 중 EU 내 가장 많은 32개 사가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옮겼거나 옮길 계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서비스

더블린에는 법률, 회계, 연구개발,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가 잘 구비되어 있다. 이 부문은 아일랜드 전체 고용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개발, 광고, 부동산, 법률, 금융, 마케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법률 서비스

아일랜드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The Qualified Lawyer Transfer(QLTT)”를 통과하거나, 아일랜드 법률 협회의 지침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EU 회원국, 뉴질랜드,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주, 호주 NSW주에서 개업한 변호사만이 QLTT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기타 국가 출신 변호사들은 정부가 정한 소정의 자격 인증 과정(Qualification Process)을 거쳐야 한다.

외국 법률 회사(law firm)는 아일랜드 법률 회사와 합작, 운영할 수 있으나, “Law Society”, “The Bar Council”, “King's Inns” 등의 법률 협회가 정한 규정 및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 법률 회사는 아일랜드 등록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수입료 및 이익금은 이들 변호사와 공유해야 한다.

생명과학

아일랜드는 생명과학의 세계적 중심지이다. 제약, 생명공학, 의료기기 및

진단학 등 모두 전국적 운영에 대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아일랜드는 의약품과 제약약품의 세계적인 수출국 중 하나이다. 글로벌 10대 제약사, 10대 메드테크 기업 중 9개, 세계 10대 진단사 중 7개사가 모두 아일랜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분야의 아일랜드 소유 기업 수도 크게 증가했다. 기업들은 아일랜드의 호혜적인 세금 환경, 규제 준수에 대한 국제적인 명성, 임상 및 학술 연구에서의 실적 등에 매력을 느낀다. 더블린에서는 업계와 대학 및 연구센터 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모범 사례 공유를 촉진하는 강력한 협력 클러스터가 있다. 최근 외국계 기업에 의한 투자는 Pfizer, Takeda, BMS, Mallinckrodt, SK 바이오텍, WuXi Biologics 등을 들 수 있다.

아일랜드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등에 걸친 총 생명과학 분야에서 연간 450억 유로 이상 수출, 5만명 이상 직접 고용, 아일랜드 진출한 7개 진단사 중 6개사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분야만 160개 기업, 24천명 이상 직접 고용, 60억 유로 초과하는 연간 매출 달성, 세계 10대 의료기기 업체 중 아보트(Abbott),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등 8개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수행중이다. 또한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메드테크 기업의 50% 이상이 자체 R&D 센터가 있고, 특히 전 세계 스텐트(혈관 폐색 등을 막기 위해 혈관에 주입하는 것)의 80%가 아일랜드에서 생산된다.

신재생에너지

아일랜드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¹⁷⁷⁾ 특히 국가 정책 마련이 미흡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성 등 정책 이행 및 실질적 투자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¹⁷⁸⁾.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2019년 초, EU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에서 2050년까지 400~500억 유로의 비용을 부담할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전기 목표량을 현재 30%에서 70%로

177) 아일랜드는 2021 기후변화 대응실적 지수(CCPi)에서 60개국 중 46위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이라는 EU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실패(7%만 감축)하였다.

178)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of Ireland 2021.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그리드 강화와 해상풍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19년 7월 아일랜드 정부는 전기 부문의 탈탄소화 및 재생가능 발전량 증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는 구체 기후행동 계획을 개시했다. 핵심 내용으로 일련의 신재생전기에너지 경매 관련 내용의 재생전기 지원계획(RESS: Renewable Electricity Support Scheme)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일랜드 정부는 2021.7월「기후행동 및 저탄소발전 개정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개정법에 따라 아일랜드 의회는 2022.4월 3개의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최종 승인하였는데, 2021-2025 기간 적용되는 탄소예산에서는 매년 4.8% 감축, 2026-2030 기간 적용되는 탄소예산에서는 매년 8.3% 감축, 2031-2035 기간 적용되는 탄소예산에서는 매년 3.5%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EU와 아일랜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신재생탄소와 저탄소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며, 투자자에게는 잠재력이 다대한바, 아일랜드의 전도유망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서, 해상풍력발전, 육상풍력발전, 태양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특히 강조된 아일랜드 해상풍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육상풍력보다 개발비용이 고가이나, 정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예상된다. 아일랜드의 미래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다대하고, 영국의 인터커넥터와 함께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상풍력발전은 2020년까지 총 전력 소비의 약 35%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 시간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균등화비용 때문에 육상풍력 발전용량은 2040년까지 약 50% 증가가 예상된다. 아일랜드지속가능에너지청(SEAI: Sustainable Energy Authority in Ireland)은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투자가 현재 2백만 유로에서 2040년에는 6백만~11백만 유로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양에너지패널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손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재생에너지원이며, 향후 10년동안 풍력에너지

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부분적 국가 지원 형태로 프로젝트 실행이 가능하다. 특히 SEAI는 ‘아일랜드 태양 가치 체인 기회(Ireland’s Solar Value Chain Opportunity)’ 보고서에서 아일랜드 기업들이 2030년까지 EU태양광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총 잠재적 시장 가치를 연간 42백만~2억16백만 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생성된 에너지의 초과분의 손실 방지 및 피크시간대 수요 보완 등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역할이 최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일랜드에서도 2017.6월~2018.7월 간 아일랜드 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위한 계획이 40건 신청된 바 있고, 2019년 9월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선두 주자인 한화에너지가 현지 Lumcloon Energy사와 합작하여 200MW 규모의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을 첫 착공하여 2021년 초 완공하였고, 2022.9월에는 65MW 규모의 2단계 건설사업을 착공하였다.

물류 및 스토리지

유럽 변방의 수출 주도 경제 및 글로벌 주자들을 위한 유럽 또는 EMEA 본사의 본거지로서 운송 및 물류 부문은 더블린에서 중요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온라인 소매업으로의 전환이 계속됨에 따라 물류와 스토리지는 향후 10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고용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승객 및 화물 운송, 저장 및 택배 서비스를 포함한 관련 활동에 대한 수요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동 분야는 현재 전체 고용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경영자, 운전기사, 발전소 운영자, 조종사 등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과 레크레이션

더블린은 오래 전부터 활기찬 예술과 레크리에이션 장면으로 유명하다. 이 부문은 수도권 전체 고용의 6%를 차지하며 2011년 이후 EU 평균보다 비교적 빠른 성장을 경험했다. 이러한 추세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특히 강한 성장을 촉진하면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 분야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은 크리에이티브 아일랜드(Creative Ireland), 예술 위원회

(the Arts Council), 문화 아일랜드(Culture Ireland) 같은 단체로부터 이용 가능하다.

아일랜드는 국내영화 상영 의무 일수를 강제하는 스크린쿼터제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외국영화 수입 쿼터 제한 등 자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하한 제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는 국내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 제작시 “아일랜드 영화협회(Irish Film Board)”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예술과 레크레이션에 관련된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The Arts Council
- Creative Ireland
- Culture Ireland
- Business to Arts
- Sport Ireland
- Department of Transport, Tourism and Sport
- Dublin City Council Cultural Company
- Dublin City Arts Office

Project Ireland 2040

아일랜드 장기 인프라 구축 계획인 Project Ireland 2040은 더욱 집중되고 있는 더블린의 경제적 독보적 위치를 줄이고, 국가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40년까지 아일랜드 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100만 명의 거류, 직업, 교육 등 생활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국가계획기본계획(National Planning Framework)은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더블린을 비롯한 코크(Cork), 골웨이(Galway),

리머릭(Limerick), 워터포드(Waterford) 등 주요 도시들의 성장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고, 이 계획 하에서 수도인 더블린은 상대적으로 좀 더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은 아일랜드 인구 증가를 예상하여 국가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10년 계획으로서 약 1,150억 유로가 투입될 계획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2021.10월 코로나 19 팬데믹과 블랙시트 환경을 고려, 주택, 기후 대응, 교통, 보건, 일자리 창출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1,65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국가개발계획(2021-2030)을 발표하였다.

Project Ireland 2040는 도로, 교통, 개발펀드, 주택, 교육, 문화 및 유산, 기후 변화, 건강 등으로 세분화되어 계획되어 있다.

- (도로) 지방도시 간 고속도로 및 순환도로 건설, 기존 고속도로 및 지방국도 개선사업 등
- (교통) 지상도시철도(Luas) 및 기차(Dart)와 더블린 공항을 잇는 더블린 메트로 건설(25억 유로), 기차(Dart) 구간 확장(20억 유로), 더블린 공항 제2활주로 건설(3.2억 유로), 더블린 항만 정박지 재개발 프로젝트(2.3억 유로) 등
- (개발기금) 국가개발계획 10년간 40억 유로 규모의 개발기금 4개를 운영 하여, △농촌 재생 촉진을 위한 10억 유로의 농촌재건 및 개발기금, △ 더블린, 코르크, 골웨이, 리머릭, 워터포드 등 5대 도시의 국가계획기본 계획의 개발 지원을 위한 20억 유로 규모의 도시재생발전기금, △통신 기후환경부 산하 기술혁신기금(5억 유로)와 기후행동기금(5억 유로) 등 기금 지원
- (주택) 2027년까지 11만 천 가구 신규 주택 공급에 116억 유로 투입, 지방 정부의 재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재건개발청(National Regeneration and Development Agency) 신설 등
- (교육) 남동지역에 지역 기술 대학 설립, 각각 주요 대학 대상 22억 유로 추가 투자, 조립식 건물 교체 지원을 위한 다년간 프로그램 1억 8천만 유로

배정 등

- (문화유산) 10년간 약 7억 25백만 유로 투입 예상(아일랜드 국립도서관, 국립문서관, 국립박물관, 크로포드 미술관 등) 등
- (기후변화) 정부는 218억 투자를 통해 2021년부터 연3만~4만5천가구의 에너지 등급 상향 조정 방안 제안, 공영버스를 전기버스로 단계적 교체, 리머릭(Limerick), 드로게다(Drogheda) 등 홍수 피해구제계획 및 홍수 위험관리에 총 9억 4천만 유로 투입 등
- (건강) 건강 프로젝트에 약 109억 유로 투입, 국가출산전략개발, 국가 암 전략 자본 개발, 전국 90개 지역사회 보건소 교체 등

아일랜드는 그간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 아일랜드 국민들의 인프라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우리 기업들이 아일랜드 및 여타 유럽 업체들과 공동으로 아일랜드 인프라 사업 참여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 동향

아일랜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 폭등을 겪었는데, 평균 중고 주택은 383% 올랐고, 새 주택은 284% 올랐다. 아일랜드의 10년 동안 지속된 주택 부동산 호황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장기적인 것 중 하나이다. 2008년 부동산 거품이 사라졌을 때 이 또한 유럽에서 가장 큰 부동산 붐피였다. 경기 침체는 2006~2007년에 시작되었는데 이 때 금리 인상으로 많은 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택 시장이 붐피되었다. 동 시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침체를 가중시켰다. 아일랜드 주택 가격은 OECD의 평균 23% 하락 비해 평균 53% 하락했다. 주택가격은 2008년 12.4% 급락했고, 2009년 18.6%, 2010년 10.5%, 2011년 16.7%, 2012년 4.5% 등의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 주택가격은 6.4% 상승하여 아일랜드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아일랜드 통계청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

준 주택가격이 2013년 1월 대비 123.1% 상승하였고, 2022년 3분기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7.7% 상승하였다.

2015년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은 은행업과 가계 부문의 탄력성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올리고 향후 은행 신용과 집값 상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고, 동 조치들은 매년 재검토되고 있다. 주거주택에 대한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80~90%로 제한하고, 임대목적구입 담보대출(Buy to Let Mortgages)을 위한 LTV 한도를 7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모기지 정책은 현재 은행과 대출자의 탄력성을 높이고 더 확대되는 금융 시스템이 미래의 경제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아일랜드 모기지 시장의 영구적 특징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다.

상기 주택담보대출 조치로 인해 아일랜드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2014년(40%) 이래 2018년 24%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위축하고 있는 반면, 유입인구가 많으나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임대료 지수가 폭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임대료 증가세가 주춤하였으나, 최근 다시 이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도 더블린 이의 지역에서의 상승폭이 큰 상황이다. 아일랜드 최대 부동산 사이트 Daft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전국 평균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11.7%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6년 말 이후 최대 상승폭에 해당된다. 아일랜드는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주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허가 건수도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주택 건설 시장이 침체하여 적정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임대료 인상 제재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한 2018년 아일랜드 개발계획(2018 Ireland Development Plan)을 발표하여 주택난 대응에 노력중이다. 또한 2021.9월 새로운 중장기 주택공급 대책인「Housing for All」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총 200억 유로 투자를 통해 매년 평균 3.3만호(사회 주택 1만호 포함) 이상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행동

아일랜드 소비자들은 주로 품질, 그 다음 가격과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다. 아일랜드의 10대들은 제품의 브랜드나 악평 등에 관심이 있는 반면, 성인들은 제품의 구매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제품의 브랜드와 품질에 초점을 맞춘다. 인구 중 40대 이상은 고품질 품목(의류) 구매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일반적으로 아일랜드 소비자들은 가치의식적 경향이 있다.

2006~2008년 60까지 하락했던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점수가 2015년부터 다시 100을 넘어서고 유럽에서 가장 낙관적인 소비자에 속하게 되면서 아일랜드 소비자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비관론을 떨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자신뢰지수는 2020년 40대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21년부터 경기회복 기대 심리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1.10월 현재 90에 근접하고 있다.

불황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 알디(Aldi), 리들(Lidl) 같은 할인점에서 쇼핑을 하는 등 아일랜드인들의 쇼핑 습관을 바꾸었다. 아일랜드 가구의 순자산(Household Net Worth)은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오고 있으며, 2022년 2분기에는 역대 최대치인 10,250억 유로(1인당 약 2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소비자 프로필과 구매 파워

아일랜드의 중간 연령인 38.2세는 EU 평균에 비해 젊다고 볼 수 없지만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는 나라(2020년 1.63)로 비교적 활기찬 소비시장을 자랑한다. 다만, 아일랜드의 평균 소비자는 여전히 많은 빚을 지고 있다(2021년 9월 기준 국민 1인당 25,568유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추세와 같이 점점 더 많은 아일랜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있다. 아일랜드 소비자들의 2021년도 온라인 평균 지출액은 약 503유로로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소비자 협회 관련기관은 아래와 같다.

- 경쟁 및 소비자보호위원회(CCPC,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ssion)
- 유럽 소비자센터 아일랜드(ECC Ireland, European Consumer Centre Ireland)
- 유럽 소비자기관(BEUC, European Bureau of "Consumers' Unions)



덴마크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 동향 일반

덴마크 주요경제지표 (2021~2023년은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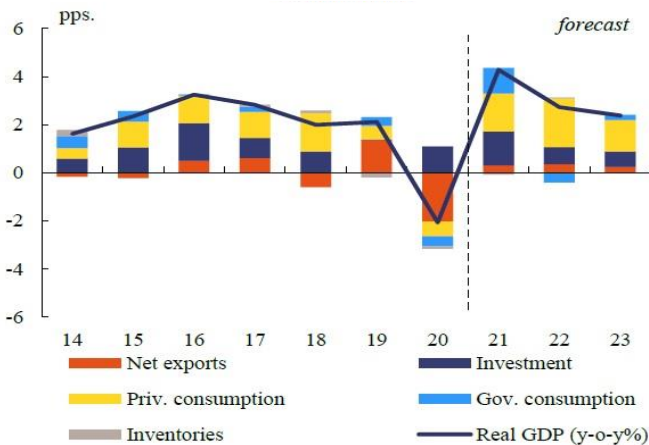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제성장률	2.0	2.1	-2.1	4.3	2.7	2.4
민간소비	3.5	1.2	-1.3	3.4	4.4	2.8
정부지출	0.0	1.5	-1.7	4.3	-1.6	0.9
국내총고정자본형성	4.2	0.1	5.1	6.3	3.1	2.8
수 출	3.4	5.0	-7.0	7.9	6.6	4.4
수 입	5.1	3.0	-4.1	8.4	6.7	4.4
경상수지	7.3	8.8	8.1	7.4	7.3	7.1
소비자물가지수 (HICP)	0.7	0.7	0.3	1.7	1.9	1.6
실업률	5.1	5.0	5.6	4.8	4.5	4.3
일반정부재정수지	0.8	4.1	-0.2	-0.9	1.3	1.4
총정부재정적자	34.0	33.6	42.1	41.0	38.8	38.0

출처 : EU 집행위 자료 (2021년 11월 발표)

GDP 성장률

덴마크 경제는 2020년에 2.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코로나19 관련 도전에 대해 여타국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대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덴마크 경제는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 해제와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 이후 신속하게 회복하였다. 덴마크의 GDP와 고용률은 2021년 2분기에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하였다. 가계의 소비 수요 증가, 기업들의 투자 재개 등은 지속적인 성장의 배경이 되고 있음. 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 4.3%, 2022년 2.7%, 2023년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실질 경제 성장 전망



출처 : EU 집행위 자료 (2021년 11월 발표)

소비

가계소비의 증가는 2021년 2분기 이후 공고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이는 가계의 지연된 소비 활동, GDP 1.8% 규모의 현금 이전(cash transfer) 등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소비는 향후에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출은 2021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4.3%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이러한 조치들의 폐지에 따라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건설 부분 투자는 경제성장의 주요인이었으며, 예년에 비해 2021년 약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투자 증가세는 향후 2년간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계 및 장비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고정자본형성은 2021년 6.3%, 2022년 3.1%, 2023년 2.8%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U 경기회복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의 지원을 받고 있는 투자는 중기적으로 성장을 견인하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

2021년 강력한 경기회복은 고용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급증은 관광, 문화, 요식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였다. 노동력 부족 압박은 여타 EU 회원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 정년 연령의 상승, 백신접종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인력 감소 등으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2021년 5.6%에서 2023년 4.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2021년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 인상, 담배세 인상 등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HCPI)는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하였으며, 핵심 물가(core inflation)는 1.4% 인상되었다. 국내수요의 확대는 향후에도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HCPI)는 2021년 1.7%, 2022년 1.9%, 2023년 1.6%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재정

2021년 정부재정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 등으로 GDP의 0.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가 재정적자 폭을 감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부터 정부재정수지는 계속된 경기호황, 정부 지출 및 투자 감축 등으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재정 흑자 규모는 2022년 GDP의 1.4%, 2023년 GDP의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 동향

2021년 덴마크 수출은 글로벌 제조업 호황 등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서비스 수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2022년부터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수입은 국내 투자 및 소비 급증에 따라 상당히 증가하였다. 경상수지는 2020년 8.1%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7.4%, 2022년 7.3%, 2023년 7.1% 등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품목별 덴마크 수출 추이 ('20~'21.8월) (백만 유로, %)

순위	품목	'20		'21.1~8월	
(HS 2 단위 기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94,872	-4.1	68,023	8.7
1	의약품	16,868	7.5	10,798	-5.7
2	기계류	12,652	-9.7	9,282	11.8
3	전자기기	7,598	-12.9	5,384	4.1
4	광물성연료	2,721	-41.6	2,687	58.6
5	광학의료기기	3,640	1.0	2,570	10.9
6	육류	3,610	6.4	2,491	3.3
7	가구	2,783	0.7	2,123	20.2
8	자동차 · 부품	2,704	-3.7	2,053	18.0
9	해산물	3,087	-3.2	1,996	0.0
10	플라스틱	2,389	1.4	1,745	9.2

자료원: KITA

◦ 국별 덴마크 수출 추이 ('20~'21.8월)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20		'21.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94,892	-4.1	68,023	8.7
1	독일	12,269	-9.0	8,909	11.8
2	Non-EU Suppression	13,199	10.3	8,625	-3.5
3	스웨덴	8,234	-14.3	6,308	18.4
4	노르웨이	5,189	-5.9	3,681	6.7
5	EU Suppression	5,746	8.0	3,630	-2.5
6	영국	4,437	-20.1	3,537	31.0
7	네덜란드	5,570	13.2	3,345	-18.1
8	미국	4,331	-5.4	3,050	1.3
9	중국	3,824	12.8	2,540	3.5
10	폴란드	3,281	7.8	2,310	5.6
22	한국	695	8.1	471	5.9

자료원: KITA

◦ 품목별 덴마크 수입 추이 ('20~'21.8월)

(백만 유로, %)

순위	품목	'20		'21.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HS 2 단위 기준)				
	총계	85,372	-2.0	65,090	17.8
1	기계류	11,526	4.4	8,104	5.7
2	전자기기	8,882	0.5	6,030	7.0
3	자동차·부품	7,103	-5.3	5,323	29.7
4	광물성연료	3,900	-32.6	4,573	83.6
5	의약품	4,717	16.7	3,539	15.2
6	플라스틱	3,433	-1.7	2,842	24.7
7	가구	2,349	4.9	1,895	31.0
8	철강제품	2,469	4.1	1,895	15.6
9	광학제품	2,629	2.7	1,832	8.3
10	수산물	2,567	-5.5	1,721	2.3

자료원: KITA

◦ 국별 덴마크 수입 추이 ('20~'21.8월)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20		'21.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85,372	-2.0	65,090	17.8
1	독일	18,544	-0.8	13,408	12.3
2	스웨덴	10,654	2.5	8,106	21.6
3	네덜란드	7,209	5.3	5,367	15.1
4	중국	6,409	5.9	4,794	13.1
5	폴란드	3,895	6.8	2,901	14.8
6	노르웨이	3,634	-22.5	2,897	21.6
7	미국	2,539	-13.1	2,323	27.8
8	이탈리아	2,858	1.4	2,241	22.6
9	벨기에	2,791	6.1	2,049	17.5
10	프랑스	2,624	0.8	1,961	17.1
26	한국	423	-17.4	450	52.1

자료원: KITA

한-덴마크 무역동향

한국의 대덴마크 수출 관련, 선박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으나 덴마크 해운사들은 수년간 한국 선박을 구매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 한국 조선업체가 덴마크 기업에게 선박 1척을 인도하여 전체 수출금액 증가하였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인 머스크(Maersk)가 2021년 한국 기업으로부터 친환경 메탄 추진 선박 8척 구매 계약을 체결한 만큼, 향후 대덴마크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약품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덴마크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출도 대폭 증가하였다.

한국은 의약품, 육류, 낙농품, 밸브, 펌프 등을 덴마크로부터, 주요 수입품목으로 꾸준히 수입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덴마크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우리 기업의 선박 인도, 의약품 수출 등으로 대덴마크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덴마크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對덴마크 수출 추이 ('20~'21.8월)

(단위 : US 천 달러)

순위	품목(MTI4 단위 기준)	'20		'21.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39,173	-1.9	637,369	72.1
1	선박	0	0.0	186,883	0.0
2	전기자동차	81,829	124.5	107,606	40.5
3	의약품	9,252	5,034.8	73,204	2,124.7
4	승용차	59,716	-55.3	62,355	34.5
5	선박용 엔진 및 부품	35,987	-8.2	25,282	-17.7
7	합성수지	27,758	-29.8	21,424	-12.3
6	철구조물	24,658	-8.3	15,518	-29.8
8	기타화학공업제품	2,457	477.8	9,697	298.7
9	대구	5,910	-45.8	9,076	80.5
10	인쇄회로	7,337	6.6	7,763	21.5

자료원: KITA

○ 우리나라 對덴마크 수입 추이 ('20~'21.8월)

(단위 : US 천 달러)

순위	품목(MTI 4 단위 기준)	'20		'21.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935,779	4.8	878,198	12.5
1	의약품	190,181	7.2	112,508	-32.8
2	가축육류	35,183	-10.0	101,800	301.2
3	기타섬유제품	40,130	3.3	40,077	23.9
4	밸브	35,190	-3.5	37,236	33.8
5	펌프	54,682	72.5	36,069	-24.7
6	낙농품	48,842	53.2	35,509	-12.0
7	나프타	0	0.0	34,747	0.0
8	꿀 · 로알제리	30,394	99.7	27,619	17.3
9	기타정밀화학제품	22,224	-26.0	22,755	19.7
10	단백질류	25,501	19.0	21,419	7.2

자료원: KITA

통상정책 및 통관절차

덴마크는 EU 회원국으로 기본적으로 EU 통상협정 및 정책에 따라 자국의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EU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를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덴마크 세관 당국(SKAT)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하는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한다.

일반적으로 통관절차는 수입 신고(입항 전 또는 직후 모두 가능) → 입항 → 하선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심사 → 물품 검사 → 세금 납부의 순이다. EU 국가 이외에서 제품이 수입되어 덴마크 국경에 도착할 경우 운송업자는 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제품, 원산지, 수량 등이 명기된 수입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련 서류를 문서상으로 처리했으나, EU 세관은 안전강화와 목표 서류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입물품 신고의 전자처리를 의무화했다. 개정된 통관지침에 따라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사실의 신고 및 통관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는 세관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숙지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상태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 세관(SKAT) 연락처

- 주소: Nykøbingvej 76 Bygning 45, 4990 Sakskøbing
- 전화: (+45) 7222 1212
- <https://www.skat.dk/skat.aspx?oid=2362&lang=us&x=2607>

투자 환경

투자환경

덴마크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2014년과 2015년에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에도 7위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21년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도 덴마크는 4위를 기록하였으며, 여타국과의 무역, 건설 허가 획득, 청산 절차, 세금 납부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투자유치제도

덴마크 외교부의 소속기관인 Invest in Denmark는 자국에 투자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요구에 맞춘 컨설팅 및 정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덴마크 내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덴마크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법적 지위, 권리, 의무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덴마크내 기업설립 등 투자진출 관련정보는 덴마크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nvest in Denmark 홈페이지 : <https://investindk.com/>

투자인센티브

덴마크의 투자 유치 정책은 자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막론하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나 특별한 우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덴마크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자국 기업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된다.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상 제한이 없으며 세제상으로도 동등하게 취급해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내국 기업과 동일한 법인 세율인 22%를 적용한다. 이는 EU 평균 법인세율(20.87%, 2020년 기준)에 비해서는 약간 높고, OECD(23.05%, 2020년 기준)나 글로벌(23.79%) 평균세율(2020년 기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자료원: OECD)

덴마크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역보조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 경우에만 한해서 이루어지며, 활동 보조는 주로 수출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산업 부문에 한해서 이루어진다. 안정된 경제 기반 위에서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대부분의 장려 정책은 저리의 대출 혹은 정부 보증과 같은 금융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 당국과 협의해 저가 토지를 제공받거나 신 공업 단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다.

한·덴마크 간 투자 현황

덴마크의 대한민국 투자는 2014~15년 동안 보합세를 보인 후 2016년 급증하면서 2017년 6,500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2018년에는 3,8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2019년에 들어 덴마크의 대한민국 투자는 7,1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9,3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덴마크의 대한민국 제조업 투자는 2019년까지 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하락하였고, 2021년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서비스업 및 도·소매 분야는 반대로 2020년 증가했다가 금년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덴마크 기업은 머스크(Maer나), 레고(Lego),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로알 코펜하겐(Royal Copenhagen) 등 약 50여개사이다.

덴마크의 대한민국 투자 현황('18~'21.3분기)

(단위 : 건, 천 달러)

분류	'18		'19		'20		'2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2	38,342	11	71,665	8	93,529	12	27,590
제조업	4	20,355	5	68,481	1	7,525	3	14,195
식품	1	10,000	0	0	0	0	0	0
섬유·직물·의류	1	100	0	0	0	0	0	0
화학	0	0	0	0	1	7,525	0	0
금속·금속가공제품	1	10,000	0	0	0	0	0	0
기계장비·의료정밀	0	0	4	55,515	0	0	2	14,000
운송용 기계	1	255	0	0	0	0	1	195
기타 제조	0	0	1	12,966	0	0	0	0
서비스업	7	17,897	5	1,310	5	67,121	5	406

분류	'18		'19		'20		'2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도·소매(유통)	4	11,999	1	86	4	66,753	3	225
운수·창고	1	871	0	0	0	0	0	0
정보통신	1	27	0	0	0	0	0	0
금융·보험	0	0	0	0	0	0	1	87
사업지원·임대	1	5,000	0	0	0	0	1	94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0	0	4	1,224	1	368	0	0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1	91	1	1,874	2	18,883	4	12,988
전기·가스	1	91	1	1,874	2	18,883	4	12,988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유치통계
주 : 투자신고금액기준

한편, 한국의 대덴마크 투자는 2021년까지의 누적금액이 1.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2013~17년 동안 한국 기업의 덴마크 기업 M&A가 증가하면서 투자금액이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덴마크 투자는 2018~19년 동안 감소하였다가 2020년에 증가하였다. 덴마크에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덴마크 리서치 센터, Cell Biotech, Contera Pharma, LS 케이블 시스템, 대한전선, Hi-Air Korea 등이다.

○ 한국의 대덴마크 투자 현황('11~'21, 실태투자금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투자금액	18	262	43,359	26,666	2,809	22,240	11,154	845	3,206	33,849	1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덴마크 주요 산업

나라는 비교적 작지만, 혁신적이며 세계적인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덴마크 경쟁력의 비밀은 장인정신으로 무장된 기업이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출발하여, 틈새시장을 노려 세계 최고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는 2020년 6월 기후법을 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명시한 기후 변화 대응 선도 국가로서 각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 덴마크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녹색 전환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스테드(Ørsted)는 덴마크 에너지 관련 공기업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세계 제1의 풍력발전 개발사로 부상하였으며, 베스타스(Vestas)는 풍력터빈 생산 관련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스테드와 베스타스 등 덴마크 기업들은 한국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머스크(Maersk)는 세계 1위 컨테이너 해운업체이며, 친환경 녹색 선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머스크는 2021.8월 한국의 조선업체로부터 친환경 선박 8척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코펜하겐과 인근 지역의 제약산업은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라고 불리며, 견고한 R&D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는 세계 인슐린 시장 1위 업체이며, 노보자임(Novozymes)은 세계 최고의 산업용 효소 바이오텍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세계 최고수준인 어린이 완구제조업체 레고(Lego), 오디오의 명품 뱅앤올룹슨(B&O), 열측정장비 제조사인 단포스(Danfoss), 세계 3위의 맥주회사 칼스버그(Carlsberg), 명품 신발기업 에코(Ecco) 및 여성 장신구의 대명사 판도라(Pandora) 등도 덴마크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덴마크 시장 특성

① 일반 공산품은 타서유럽에서 검증된 브랜드 위주로 도입(Late Adopter)하며, 혁신제품만은 북유럽 판권 선점 위해 조기 도입(Early Adopter)한다. 바이어 규모가 클수록 오랜 기간 테스트하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다(보통 1~2년 소요). 각종 인증에 대해 매우 예민하며, 제 3자 테스트 기관을 통해 인증 획득결과를 재테스트 하기도 한다.

- ② 소비재의 경우 단순히 ‘품질 + 적당히 저렴한 가격’(샌드위치 전략) 만으로는 바이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바이어를 설득시킬 수 있는 기업과 제품의 스토리 등을 요구하며, 대부분 싼 중국산에 익숙해져 있어 엄청난 가격 인하가 아닌 이상, 중국산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③ 발트해 무역을 장악한 바 있는 오랜 해상무역 역사를 지닌 덴마크는 기업인들이 비즈니스에 매우 능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등 기업인들과 비즈니스 시 꼼꼼한 준비와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덴마크 기업인들은 중소기업(전체기업 중 99%)이 주축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비즈니스 관계도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 ④ 시장이 작고, 보수적인 특성상 최초 오더 규모는 작은 편이고 시장의 반응을 살펴 오더를 차츰 늘려나가는 바이어가 대다수이다. 소량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덴마크 진출에 유리하다.
- ⑤ 인건비가 높아 일하는 사람 수가 적고,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다수 바이어에게 연락하기가 어려워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선 변경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며,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신규 제품을 받아들이는데 보수적이다. 반면, 일단 첫 거래를 성사시키면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하기도 하다. 덴마크 바이어들은 두루뭉실하고 전략이 없는 공급업체와는 상대하지 않으려는 특성, 다시 말해 ‘Meet & Greet(만나서 인사만 주고 받는)’ 목적의 미팅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 ⑥ 이전에 소개받은 업체에게 1~2년 뒤에 연락하여 거래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현재는 거래 가능성은 없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
- ⑦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상당수 바이어들은 스칸디나비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을 커버하는 독점판매계약 체결 선호한다.

⑧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애프터서비스(A/S)가 취약한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진출 초기 단계부터 현지 A/S 협력사를 선정하여 바이어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 내 창업절차

덴마크는 기업을 설립할 때 이사회 이사 및 경영자에 대해 거주요건이나 국적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온라인 기업 등록시 하루만에도 기업 설립이 가능하나 전통적인 서류 등록의 경우 최대 5주가 소요된다. 이사회 및 주주 총회도 온라인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덴마크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Public limited company”는 자본금 40만 크로네(약 7천2백만 원) 이상이며 이중 25%만 출자해도 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집행이사회 및 이사회 중 경영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22%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Private limited company”는 자본금 4만 크로네(약 720만원) 이상이며 집행이사회 단독 또는 집행이사회와 이사회 중 경영 조직 중 선택 가능하고, 22%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Branch”의 경우 별도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모기업에 대한 재정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Representative office”는 자본금 요건도 없고, 등록 의무도 없는 등 설립 요건이 매우 느슨하고 22% 법인세 납부 의무도 없으나 가능한 활동 범위가 건설계약, 주문수령, 상품 구매 등으로 매우 제한된다.

조세정책

국세와 지방세

덴마크는 중앙정부 외에 5개의 주(regions)와 98개의 읍면(municipaliti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금은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국세와 읍면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으며 주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그리고 국세는 소득세

(income tax)와 회사세(corporat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등이 있으며, 지방세는 소득세(income tax)와 재산세(property tax)가 있다.

소득세

덴마크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납부한다.

- 전체 소득(gross income)의 8%를 노동기여금으로 우선 납부하고, 노동기여금을 차감한 연소득에서 △50,542 DKK(914만원) 이하 면세, △50,543~544,799 DKK(914만원~9,854만원) 소득세율 12.16%, △531,000 DKK(9,6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율 15% 적용
- 지방세는 소득에 대해 평균 24.91% 부과(읍면별 상이)
- 또한, 교회세는 교회별로 다르나 평균적으로 소득에 대해 0.69% 부과

따라서 연소득이 50,543 ~ 544,799 DKK (841만원 ~ 9,600만원)사이인 소득자는 8%의 노동기여금 납부후 소득에 대해 평균적으로 37.76% (12.16+24.91+0.69)의 세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세 총합은 총 소득의 52.06%를 상한으로 하며, 개인이 주택구입대출 등 은행 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세무당국은 일정액을 세금에서 감면해 준다.

기타 세금

- 회사세(법인세) : 회사 이익의 22%
- 재산세 : 재산 가액의 1.6%~3.4%(읍면별로 상이)
- 양도소득세 : 없음
- 부가가치세 : 상품 가액의 25%
- 상속세 : 배우자 면제, 기본 상속세율 15%,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40%

노동시장 및 근로관계

덴마크 복지시스템은 소위 Flexicurity Model(Flexibility+Security)로 불리는 노동시장 모델과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덴마크의 Flexicurity

Model은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 기업은 해고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이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에서 자유롭게 구조조정을 하여 장기적으로는 더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증대에 기여
-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실업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훈련 및 재취업 노력 등을 거쳐 노동시장 복귀
- 이 모델을 통해 성공적으로 세계화 도전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을 확보

덴마크의 Flexicurity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① 신축적인 노동시장, ②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③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다.

- 신축적 노동시장 : 사용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사전 통보 기간 및 낮은 해고 수당으로 피고용자를 해고 가능
-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 일자리를 보호하는 대신 근로자의 소득(income)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대한 실업급여를 지급¹⁷⁹⁾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실업자 재취업 정부 지원프로그램으로 실업자의 구직 활동 및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¹⁸⁰⁾

덴마크의 복지 및 노동시장 모델은 수십 년간의 광범위한 토론과 정치적 컨센서스 및 지지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며, 지금도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복지비용의 증가 및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직면하여 복지 시스템의 개혁과 복지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덴마크 정부는 노동력 공급(양적 및 질적)을 증대시키고, 실업자의 취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다.

179) 실업보험에 가입하였던 비자발적 실업자는 실직 후 2년간 종전임금의 최대 90%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함. 만약 ①실직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재취업하지 못하고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②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직한 실업자는 기초생활보장금(실업급여액의 약 80% 수준)을 받음.

180) 실업자는 실업급여 및 기초생활보장금을 받는 대가로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기울일 의무(일종의 조건부 의무로 관대한 실업혜택으로 인한 구직활동 의욕 저하(부정적 인센티브)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



라트비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라트비아는 유럽연합(EU)(2004년 가입) 및 OECD(2016년 가입)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의 공통적인 통상정책 하에 관련 국내법규 등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동향 및 한-라 무역투자동향

라트비아는 인구 약 183만 명(2022년), GDP 388억 달러(2021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라트비아는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와 함께 발트3국 중 하나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 라트비아는 1990~93년 동안 실질 GDP의 약 50%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6~07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시작된 경제침체와 2009년 라트비아 자산 2위 규모 시중은행의 파산 등으로 다시 GDP의 14%가 감소하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라트비아 경제는 2011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8년 4.2%, 2019년 2.0%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GDP가 전년 대비 3.6% 하락하였으나, 이후 EU 기금의 대폭적인 유입, 소비심리 회복 및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2021년에 4.5%의 GDP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2년엔 2.5%의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2022.11월, IMF)되고 있다.

라트비아 주요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예상치)
명목 GDP(백만 달러)	34,333	34,553	39,654	38,334
1인당 GDP(달러)	23,024	23,036	24,981	27,245
실질 GDP 성장률(%)	2.5	-3.8	4.5	2.5
실업률(%)	6.3	8.1	7.6	7.4
정부부채(GDP대비%)	36.7	43.3	45.7	46.0
총수출(백만 달러)	14,284	15,387	19,120	21,349
총수입(백만 달러)	17,236	17,154	22,407	25,278
무역수지(백만 달러)	-2,952	-1,766	-3,288	-3,929
경상수지(백만 달러)	-227	964	-1,113	-1,337

자료 : IMF, 라트비아중앙은행, EIU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라트비아 양국 간 교역은 2020년 이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 한국의 대라트비아 연간 수출액은 2019년 대비 14% 감소(0.6억 달러)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제한조치 완화 등으로 수입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2억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라트비아 주요 수출품목은 고무제품(5.9%), 차량부속품(4%) 및 응용화학제품(3.1%)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목재·토탄(25.7%), 광물연료(3.5%) 및 유리제품(1.4%) 등이다.

한국의 對라트비아 무역 통계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62,704	66,341	66,461	70,077	59,941	74,902
수입	72,149	79,668	85,670	129,231	98,321	122,921
무역수지	-9,445	-13,328	-19,209	-59,154	-38,380	-48,019

자료 : 국가통계포털, 관세청

라트비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으로는 삼성전자(1999년 진출)와 LG전자(2005년 진출)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

라트비아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주권회복 이후, WTO(1998), EU(2004), Schengen Zone(2007), Euro Zone(2014), OECD(2016) 가입 등을 통해서 유럽 국가로의 편입을 가속화 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21년 말 기준 라트비아의 외국인 직접투자액(누계)은 209억 유로 상당이며, 이 중 80%(약 167.2억 유로)가 EU 회원국들의 투자이다. 대라트비아 주요 투자국은 스웨덴(35%), 에스토니아(14.9%), 리투아니아(8.9%) 순이며, 주요 투자부문은 금융 및 금융업(15%), 부동산업(14%), 도소매업(15%), 제조업(11%) 순이다.

투자지로서의 장단점

라트비아는 자국 노동가능인구의 약 74%가 고등교육 이수자이며, 인구의 54%가 2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트지역의 지리적 중심지로서의 높은 시장 접근성과 항구와 공항을 통한 교통물류중심지로의 이점이 있다. 다만 수도인 리가(Riga)에 구매력과 각종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편차가 크며, 높은 지하경제비중(GDP의 26.6%), 높은 임금인상률(연간 4~6%) 등은 투자지로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 및 비즈니스 장려정책

(1)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및 자유항 운영

라트비아는 리가 자유항(Riga Free Port), 벤츠필스 자유항(Ventspils Free

Port), 리에파야 경제특구(Liepaja SEZ), 레제크네 경제특구(Rezekne SEZ) 및 라트갈레 경제특구(Latgale SEZ) 등 2개의 자유항과 3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트비아의 경제특구 및 자유항 현황

구분	리가 자유항	벤츠필스 자유항	리에파야 경제특구	레제크네 경제특구	라트갈레 경제특구
지정연도	1997년	1997년	1997년	1997년	2016년
세금혜택 (동일)	법인세 및 재산세(Property tax) 80% 환급 - 환급한도 : 누적투자액 기준, 대형기업은 35%, 중형기업은 45%, 소형기업은 55% 범위 내 환급 - 기본 법인세 20%, 재산세 1.5%				
규모	항구 포함 6,348헥타르	항구 포함 3,151헥타르	항구 포함 3,979헥타르	1,155헥타르	최대 72,750 헥타르 (확장옵션)
참여기업	약 60여개 기업	-	43개 기업, 2017년 1,212만 유로 투자 유치	2019년 1,920만 유로 투자 유치	-
특이사항	연간 6,300만톤의 환적화물 처리가능	구역내 공항포함 (민간공항)	구역내 국제 공항 포함	-	-

(2) 노무비용 지원

가. 국가고용공단 프로그램

- 채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료 채용공고 지원, EU 채용데이터베이스(EURES) 활용 지원
- 고용주 요청에 따른 실업자 취업교육훈련 지원
- 프로그램에 따라 1인당 최소 355유로에서 최대 1,547유로 규모의 교육훈련비 지원 (교육후 최소 6개월간 의무고용)
- 고용 장려금 제도

- 취업계층 채용 시 최대 6개월간 보수의 50% 지원
- 법정 최저 월 보수(2022.11월 기준 500유로) 이상 지원 불가
- 장애인 채용 시, 최대 2년간 보수 지원 (국가기금)
- 법정 최저 월 보수의 100% 지원
- 장애인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 1회 지원
- 수화통역서비스, 작업치료사 등 부대 서비스비용 지원

나. 투자청(LIAA) 프로그램

- 15개 산업협회와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지원범위 :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프로그램 강사 급여, 교육기간 중 임금 (임금제외비용의 총액 미만 범위), 인쇄물 및 영상물 등 교육자료, 교육 관련 장소 및 장비 임차료 등

(3)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제도¹⁸¹⁾

라트비아 투자청은 수도인 리가에 혁신산업 인큐베이터를 설치한 뒤, 다우가브필스, 예카필스, 옐가바, 유르말라, 리에파야, 레제크네, 발미에라 및 벤츠필스 시에도 추가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큐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에서도 가상인큐베이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Pre-incubation 단계(최대 6개월)에서는 사업아이디어 및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모델개선에 대한 조언 및 사업기술 교육, 공동작업장 및 사무기기 제공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Incubation 단계(최대 4년)에서는 기술개발 및 운영서비스, 장비구매(최대 1만 유로), 라트비아 내 전시 비용 등에 대한 50% 범위의 협조융자(Co-financing) 지원을 한다.

181) 최근 3년간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가 대상 지원

(4) 신용보증제도

라트비아는 개발지원 특수은행인 ALTUM을 통하여, 기업당 최대 150만유로 이하의 금융지원액에 대해 최대 80%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해주고 있다.

조세정책

법인세

라트비아는 간주배당금 및 배당으로 취급되는 지급금 등의 분배된 수익(profits distributed)과 경제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의 분배로 간주되는 수익(deemed profit distributions)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재투자수익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어 기업의 배당금 지불이나 실수익의 배분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라트비아는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Law)에 따라 경제적 활동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통상 2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 특정 의약품 및 의료장비, 전문 이유식, 승객 및 수하물 정기운송서비스,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관광숙박서비스, 가정용 난방 목재 및 에너지비용 등에 대해서는 12%의 부가가치세를,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 중, 상품 및 서비스 공급량이 연간 4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일회성 공급자본이나 무형자산 제외),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하며, 납세자의 기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납부가능하다.

소득세

라트비아 거주 납세의무자는 국내외 모든 수입에 대해, 비거주자는 라트비아

에서의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배당금, 이자, 생명보험 및 개인 연금 수익금에 대해서는 10%의 소득세를, 자본자산(부동산, 주식, 채권 등) 처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 소득세 적용범위

과세범위(연간 소득기준)	적용 소득세
0 ~ 20,004유로미만	20%
20,004유로 ~ 62,800유로 미만	23%
62,800유로 초과	31.5%

기타 정보

라트비아는 관세법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유럽연합(EU)의 Union Customs Code 규제법령을 따르고 있으며, EU 법령에 의해 규제받지 않는 사안이나, EU가 각 회원국이 관리하도록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라트비아 정부의 관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주는 총 급여(Gross Salary)의 24.09%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비(State Social Insurance)를 부담해야한다. 참고로 고용인 부담 사회보장비는 11%이다.

2021년 라트비아의 평균 총 급여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1,207유로(순 임금 891유로)로, 발트 3국 중 에스토니아(1,473유로) 및 리투아니아(1,517유로)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핀란드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핀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1995년 가입) EU 공동통상정책을 준수하며,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EU가 제정한 관련 지침과 이를 반영한 관련 국내법규 및 정책에 의거한다.

시장 특성

시장규모 및 특성

2021년 핀란드의 인구는 555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주요 소비인구인 15~64세 인구는 전년 대비 0.1%p 감소한 61.6%인 반면, 65세 이상은 0.3%p 증가한 23%이다. 핀란드는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 국가로 출산률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핀란드 기업들은 작은 시장규모를 극복하기 위해 인근 북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목재, 펄프, 조선, 기계 등 산업재·중간재 위주의 수출산업이 발달했다. 연간 총 수출은 약 836억 달러, 수입은 약 801억 달러 수준(2021년 기준, 출처: EIU)이다. 2021년 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대 핀란드 수출은 5.3억 달러, 핀란드로부터의 수입은 8.8억 달러로 약 4억 달러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3국에서 생산되거나 독일·네덜란드 등의 중간도매상 또는 국내법인을 통해 핀란드로 수출되는 우리제품이 제외된 수치로 실제 대 핀란드 수출액은 통계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주요 핀란드 기업(각 기업의 2021년 실적보고 인용) : Nokia(통신, 연매출 222억 유로), Stora Enso(제지, 연매출 100억 유로), Outokumpu(철강, 연매출 89억 유로), Wärtsilä(선박엔진, 연매출 48억 유로), Cargotec(운송장비, 연매출 33억 유로)

소비자 특성

핀란드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 관심이 높으며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구매 결정 시 브랜드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원산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외양이나 치장에 크게 관심이 없는 성향으로 인해 고가 브랜드나 외모를 가꾸는 데 필요한 기타 제품의 시장은 작은 편이다. 어둡고 추운 겨울이 길고 드라이클리닝 비용이 높다는 점도 핀란드 사람들이 고가 의류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핀란드 소비자들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지출에는 비교적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 이들은 차가 비쌀수록 안전도와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고화질 TV나 AV 시스템 구매에 관심이 많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편으로 구매 차량 사용 연한이 유럽에서 가장 긴 편이다. 핀란드 자동차 정보센터(tieto.traficom.fi)에 따르면 2021년 핀란드 승용차의 평균 자동차연수는 12.6년이다.

100유로 이상의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문이나 잡지 등의 리뷰를 참고해 구매를 결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심사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전자제품, 가구와 같이 품질이 증시되는 제품은 꼼꼼한 검토를 거쳐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젊은 층은 IKEA, TIGER 등 중저가 매장을 이용하거나 Amazon, Ebay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 상품 인지도

핀란드인들은 한국의 IT산업, 자동차, 조선산업의 발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은 일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과 글로벌 브랜드 대비 낮은 브랜드 인지도, 원거리로 인한 긴 A/S 문제, 물류비용 증가 등은 국내기업들에 핀란드 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2010년 이후 한국 출장을 다녀오거나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핀란드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핀란드 내에서도 한국식품, 화장품 등에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거래 특성

핀란드 기업은 새로운 바이어 발굴에 보수적인 편이다. 거래를 트기까지 많은 시간과 공이 필요하지만, 한 번 거래를 시작하면 꾸준한 거래관계를 이어간다. 또한, EU내 수출이력이나 인증 등에 민감하고 AS망을 갖춘 공급업체를 선호한다. 따라서, 핀란드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목표로 오랜 시간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다. 어떤 일이든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된다. 비즈니스로 업체를 방문하거나 상담약속을 할 경우, 최소 3~4주 전에 미리 연락을 취해서 약속을 잡아야 한다. 상담 후 핀란드 바이어들이 제품을 검토한다고 하는 경우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바이어들을 재촉하지 않고 안부 연락을 통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약속에 늦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꼭 전화로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하지만, 핀란드 바이어들이 견적이나 제품상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바이어들이 다른 공급업체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이어에게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수이다. 메일을 발송한 다음에는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을 설명해줘야 한다. 이 메일을 발송할 때는 첨부파일이 10MB이하인 파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투자 환경

외국인 투자 정책

핀란드는 1989년 외국인의 대 핀란드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외국인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 모든 산업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별도 제도는 없지만, 법인세를 유럽에서 가장 낮은 20%로 유지함으로써 해외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핀란드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핀란드 정부 및 EU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Business Finland와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경제개발센터(ELY, Centers for Economic Development,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또한 외국 기업에게 기업교육이나 부지 선정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외국기업들에게 핀란드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ELY, Business Finland, Finnvera 등 지원금 운영 기관에 인센티브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각 기관들은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주요 지원 기관 홈페이지

- ELY Center: <https://www.ely-keskus.fi/en/web/ely-en/>
- Business Finland: <https://www.businessfinland.fi/en>
- Finnvera: <https://www.finnvera.fi/eng/>

핀란드는 1996년까지 서점, 보안서비스, 국내항공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투자제한이 있었으나, 2017년 6월 기준 대부분 개방됐다. 이전까지

법인세 등의 사유로 시 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던 기업 및 사무소 설치, 그리고 M&A 등의 경우에도 EEA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일 경우 핀란드 등기소(Finnish Trade Register)에서 One-stop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비 EEA 국민 또는 법인은 고용경제부의 사전허가만 있으면 등기소에서 One-stop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1993년 체결된 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에 따라, 종업원 1,000명 이상, 연 매출 2억 달러 이상인 핀란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공공 이익 및 국방, 공공질서 및 보건 등의 특별한 분야에 한해 핀란드 정부는 투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별장과 국경 근처의 자산은 일부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국영기업들의 주식매매는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정부 또는 주 정부 지분 5~1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가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안전문제 혹은 금융리스크가 동반되는 업종은 비 EEA 국민 혹은 법인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의 허가 혹은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핀란드는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산업지대도 한국과 같은 대형 공업단지는 조성하지 않으며 지역별로 소규모의 클러스터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1) 투자 통계

UNCTAD에 따르면, 외국인의 對핀란드 직접투자금액은 연도별로 편차가 크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은 2018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다.

핀란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는 2020년 기준 4,362개의 외국 기업이 민간부문의 18.1%에 해당하는 271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970억 유로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해외기업의 매출액은 핀란드 전체 기업에서 23.4%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은 전년 대비 38개가 줄어든 4,362개의 해외기업이 핀란드에서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1,126개사), 미국(705개사), 독일(383개사), 영국(350개사), 노르웨이(233개사)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124개사)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금액 (Inward FDI flows)

(단위 : 백만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2,864	-2,142	13,456	-1,427	9,393

출처 : UNCTAD

최근 5년간 핀란드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15년 큰 폭의 감소세를 제외하면 비교적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해외직접투자금액(Outward FDI flows)

(단위 : 백만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574	11,454	4,865	5,863	4,042

출처 : UNCTAD

(2) 핀란드 진출 한국기업: 총 3개사

현재 핀란드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한국기업(법인 및 지사)은 LG전자 연구소, 동화기업, 셀트리온 헬스케어 총 3개사(각각 전자, 화학, 의료바이오 분야)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2020년 국가별 사업환경(Doing business)에 관한 조사(직원 수 50명 이하 기업 창업시 수반되는 법적, 행정적 장애수준 평가)에서 핀란드는 20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회사 /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는 핀란드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로 1인 혹은 그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 가능하며, 신규 상법에 의해 주주의 거주지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대표자(Managing Director)는 반드시 유럽경제구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내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 반드시 1명 이상의 유럽경제구역내 거주자가 필요하다. 위의 조건은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핀란드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삭제했다. 하지만, 상장주식회사는 최소 80,00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핀란드 등기소(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에 상업등기를 하기 전에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

법인등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하거나,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공증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핀란드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Set-up Package를 이용하면 영문으로도 법인등록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서면 신청시 등록소요기간과 비용은 각각 14일과 380유로이다. 회사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만 제공된다. 온라인 등록 소요기간과 비용은 각각 3일과 2750유로이다.

상업등기를 할 때 △설립의향서 및 회사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핀란드 유한책임회사법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이사회 회원들의 동의서, △처리비용 영수증(서면 처리 시), △감사의 자본금 납입 확인서의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사정관은 작성 3개월 이내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 외에 제출해야 할 문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주식회사명에는 반드시 'osakeyhtiö(limited liability company)' 라는 단어를 넣어야만 하며 약자로는 'oy'로 표기한다. 스웨덴어로는 'aktiefbolag', 약자로는 'ab'를 넣어야 한다. 상장주식회사의 경우는 핀란드어로는 'julinen osakeyhtiö(Oyj)', 스웨덴어로는 'publikt aktiefbolag' (abp)로 표기해야 한다. 핀란드에 설립하는 법인은 1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정관

에서 지정한 수의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법인은 핀란드 회계기준에 의거한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감사를 지정해야 한다.

모든 주식회사는 핀란드 이외의 국가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포함한 순익을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경우 핀란드 회사와 동일하게 피고용인의 급여에서 원천세, 복지보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월별 세금 신고 및 연간 급여신고서를 해야 한다.

핀란드 내 법인설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핀란드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핀란드 특허·등록청(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 홈페이지 : www.prh.fi (영어, 핀란드어)
 - 상업등기관련 내용 : <https://www.prh.fi/en/kaupparekisteri.html>
 - 주소: Sörnäinen rantatie 13 C, 00091 Helsinki
 - 전화번호: +358 29 509 5030
 - 이메일: registry@prh.fi

합명회사 / General partnership

합명회사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두 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적어도 한 명은 EEA 국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인이 발기인이 될 경우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안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합명회사에는 금전적인 투자가 필히 요구되지는 않으며, 사업에 있어서 업무기여만으로도 충분하다. 합명회사의 등기비용은 240유로이다.

합자회사 /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는 회사 대표가 되는 파트너(general partner)와 최소 한 명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적어도 한 명은 무한책임사원이어야 한다. 파트너인 무한책임사원만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무한책임사원 중 한 명은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한책임사원이 법인일 경우 EEA 국가 안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합자회사의 등기비용은 240유로이다.

스타트업

핀란드는 해외 스타트업의 유치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핀란드 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비자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비즈니스 핀란드의 1차 심사서류(2달 이내 발급 원본)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급여 수준(한달 1,000유로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잔고증명, 재정보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수수료는 350유로(비자 연장 시 260유로)이고 우편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는 480유로(비자 연장 시 330유로)이다.

◦ 직업별 월 평균 보수(2021년, 세전)		(단위: 유로)
직업	보수	
전체 평균	3,734	
경영자(Chief executives, senior officials and legislators)	12,988	
IT 기술 관리자(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r)	8,500	
의사(Medical doctors)	7,881	
전문 사무직(Business and administration professionals)	4,826	
간호 서비스 종사자(Nursing and midwifery professionals)	3,959	
초등학교 교사(Primary school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3,302	
생산 및 조립 라인 숙련공(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3,282	
일반 사무직(Clerical support workers)	2,973	
일반 서비스 및 영업직(Service and sales workers)	2,737	

출처 : 핀란드 통계청(2022년 10월 확인)

조세정책 및 외환관리

법인세

2022년 핀란드의 법인세는 20%로 유럽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핀란드에 영구

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와 관련하여 기업의 핀란드 내 거주 및 활동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핀란드에 등록된 회사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개인소득세

핀란드에 거주하는 개인은 급여소득세, 자산소득세와 함께 주민세 (16.5~23.5%), 사회보장세(7.15%)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제로서 총 5등분 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세금 납부 격차가 매우 크다.

- 연소득 19,200~28,700유로 : 8%
- 연소득 28,700~47,300유로 : 17.25%
- 연소득 47,300~82,900유로 : 21.25%
- 연소득 82,900유로 이상 : 31.25%

자본소득세는 30,000유로 이하에는 30%, 그 이상 소득에는 34%의 세금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핀란드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4종류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21년 기본 부가가치세는 24%이다. 식료품(주류와 담배 제외)와 식당은 14%, 서적·숙박·영화·문화공연·스포츠·교통서비스는 등은 10%로 인하된 부가세가 적용된다. 의료·공공교육·금융보험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별소비세

핀란드는 주류 도수에 따른 알코올세,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탄소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품목별 특별소비세는 핀란드 국세청 홈페이지¹⁸²⁾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2) https://www.vero.fi/en/businesses-and-corporations/about-corporate-taxes/excise_taxes/

외국인 적용 세금

(1) 법인세, 부가가치세

핀란드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핀란드 기업과 동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는다. 외국 기업도 핀란드 기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등록이 된 기업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 개인소득세

핀란드에 6개월 이하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개인소득세는 35%가 적용된다. 특별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업무에서 월급여 5,800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는 외국인(Foreign Expert)은 최대 48개월까지 32%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업무 시작 전 5년 이내 핀란드에 거주했던 외국인은 핀란드인과 동일한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3) 기타

핀란드 국세청은 근로자 수, 사업 기간과 사업 형태 등을 고려해 고용주의 영구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핀란드 기업으로 간주되면, 고용주는 핀란드 사업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사회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외환관리

핀란드는 유로존의 일원으로서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환 관리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에서 감독한다. 이에 따라 외환노출 및 환위험을 ECB에서 총괄하며 핀란드 중앙은행은 금리 등 국내 자본만을 관할한다.

핀란드 국내 외환관리의 실제 업무는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며,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외환업무를 총괄, 감독한다. 외환매입은 수입에 따른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인보이스가 첨부되면 자유롭게 매입 가능하고, 국제외환시장에 상장된 통화로 대금결제 가능하다.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기업들의 해외자본 및 투자 이익, 모기업과 자회사간 거래, 수출입, 무역 거래, 종업원 임금, 포트폴리오 투자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다.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개인 및 기업)가 직접 핀란드 중앙은행에 외환거래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통계상의 목적이지만 별도의 규제를 하기 위함은 아니다.

핀란드에 직접적인 외환 규제는 없으나, 자금세탁방지법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에 따라 신용기관은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정기 고객뿐만 아니라 일시불 이체 (single payment transfer) 혹은 상호 지불 거래(interrelated payment transactions) 금액이 최소 15,000유로 이상일 시에는 반드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 특히 지불거래가 고객의 평소 은행 업무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금액이 적더라도 자금 출처(origin of funds)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연평균 환율(1USD=EUR) 동향

2018	2019	2020	2021
1,1810	1.1195	1.1422	1.1827

출처 : EUROStat(2022년 10월 확인)

근로관계

노동조합

핀란드의 노동조합들은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다. 일부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교사 등) 또는 규모가 큰 산업군의 경우 직군별로 노조가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다. 소속된 법인이 없는 대학생,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노동조합도 있다. 이 노동조합들은 매년 경영계와 노사협의를 하여 연봉인상률을 정하고 2~4년에 한 번씩 고용주단체와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상세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단체근로협약 (collective agreement)을 체결하여 공표한다.

이 외에도 노조는 노조가입자에게 실업보험 가입 및 소득대비 실업수당 보장, 변호사 상담, 채용 행사, 여행자 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노조는 주유비 할인, 여름 별장 할인권 등 일상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덕분에 핀란드의 성인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9%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단체협약서(Collective Agreement)

핀란드는 산업별로 단체협약서가 따로따로 법적효력을 가진다. 단체협약서들은 해당 산업/직군을 대변하는 노조와 경영계가 2-4년 마다 노사합의를 한 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이며 최저임금, 주당 법정근무시간, 휴가일수, 초과 근무, 성과급 지급, 권고사직 또는 해직 통보기한 등이 꼼꼼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핀란드 고용주들은 채용 시 어떤 단체협약서가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지를 별첨 자료로만 명시하고, 대체적인 근로계약을 “단체협약서에 근거하여” 또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라는 문구로 간단히 갈무리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때문에 핀란드의 근로 계약서는 대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편이다. 핀란드 현지 고용법상 단체협약서는 근로계약서 상위조항으로 인식되며, 근로계약서 상에 단체협약서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혹은 고용인이 채용 당시 단체협약서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는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각종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는 고용인의 노조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용계약

핀란드의 고용계약법 (Employment Contracts Act)은 핀란드 노동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고용관계에 적용된다.

(1) 계약 형태

고용 계약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을 허가할 경우 암묵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2) 고용 조건

고용계약 형태에 관한 조항 외에도, 고용주는 1개월 이상 고용계약, 무기한 고용계약, 동일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체결된 1개월 미만의 기한부 고용계약에 대한 서면정보를 피고용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고용기간이 1 개월 미만인 임시직도 요청에 따라 서면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첫 번째 급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늦어도 첫 번째 고용관계가 시작된 후 1 개월 이내에 하나 이상의 관련 문서, 관련법 참조,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는 근무 시작일, 고용 계약 기간 및 기한부 고용(fixed-term) 근거, 수습 기간(Trial period), 근무지, 직무 원칙, 급여 또는 기타 보수의 결정 근거·급여 기간, 정규 근무 시간, 연례 휴일 및 해고 통지 기간 결정 방법 및 단체 협약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근무 기간

고용계약은 기한부 고용계약(fixed-term)과 무기한 고용계약(valid indefinitely)으로 나뉜다. 합의된 기간은 고용관계가 끝날 때 중요하다. 기한부 고용의 계약기간은 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합의된 특정 작업이 끝난 후에 종료되며 특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무기한 고용계약은 타당한 법적근거와 절차를 통해서만 해지될 수 있다.

(4) 연속적인 기한부 고용계약 제한

동일한 업무에 대한 기한부 고용계약을 같은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각 기한부 고용계약은 정당한 사유와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고용주가 기한부 고용계약을 악용하여 직원이 무기한 고용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한부 고용계약이 빈번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는 영구적인 업무로 평가되어 무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 수습기간(Trial period)

수습기간을 통해 고용주는 직원이 적합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직원은 직무 및 근로조건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고용주 또는 직원이 수습기간을 통해 고용계약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지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4개월이며 기한부 근로계약의 기간이 8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고용기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고용주가 4개월 이상이 필요한 업무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6) 근로시간

핀란드 회사들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탄력적이다. 주 40시간(점심시간 2.5시간 포함)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근무하며, 일반적으로 오전 8~9시에서 오후 4~5시까지 근무를 한다. 초과근무나 주말근무는 예외적이며, 사측의 초과근무 요청 시 반드시 미리 일정을 알려줘야 한다. 전체 근무 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주 48시간 혹은 4개월 동안 주평균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근무 수당은 첫 2시간은 평일 시간당 임금의 1.5배로 산정하고, 그 이후는 평일 시간당 임금의 2배를 지급한다. 일요일 근무 수당은 평일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핀란드 근로시간법(Working Hours Act)에 따르면, 1일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7) 휴가

핀란드 연간 휴가법(Annual Holiday Act)에 따르면, 근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달 2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의 경우 매월 2.5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자는 연 5주(근무일 기준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핀란드인들은 통상 자녀의 방학기간에 맞춰 여름 4주, 겨울 1주의 휴가를 사용한다.

출산휴가는 근로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에 명시되어 있다. 출산휴가는 크게 임신휴가(MPregnancy leave), 특별임신휴가(Special pregnancy leave), 부모휴가(Parental Leave)로 나뉜다. 임산부는 임신휴가40일이 보장된다. 출산 이후 산모와 배우자는 각각 160일의 부모휴가를 받으며 그 중 63일은 배우자에 양도할 수 있다.

(8) 해고

직원 해고를 위해서는 회사가 파산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이유가 상실된 경우(감원 등)와 종업원의 비리, 근무태만 등의 사유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파산이나 직무상실로 인한 감원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은 해고의 사유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해고 분쟁 시 통상 고용주의 패소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고용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주는 통상 2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 분쟁에서 패소하는 경우 고용주가 최소 3개월에서 최고 24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 사회보장제도

1996년까지는 외교관을 제외한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했으나,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1996년 이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일체의 사회보장혜택을 철회했다. 1996년 이후부터는 핀란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핀란드인들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KEL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의 이민법은 타 유럽연합 국가와 대동소이한 편이나, 일부 세부절차와 심사기준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한국인을 포함해 유럽연합 외 국가의 국적자는 핀란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취업/노동의 권리가 보장된 거주증(Residence Permit)을 필히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거주증 없이 핀란드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핀란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 내 취업목적의 이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한국,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취업 이민 수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핀란드 비자심사제도는 여전히 낡은 시스템과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자발급 소요기간은 2~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기업이 주재원 파견시 적용할 수 있는 비자는 TTOL 또는 전문가 비자(Specialist Permit)이다.

TTOL비자는 영어,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며, 2022년 기준 1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단체협약에 명시된 급여 또는 월소득 1,283 유로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문가 비자는 대졸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요구되는 전문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 시 발급되는 비자이다. 비자 신청 시 영어,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3,000 유로 이상의 월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 장벽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핀란드의 데이터보호법(DPA)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EU 및 EEA의 GDPR의 역내 적용을 위해 핀란드는 별도의 Data Protection Act(DPA)를 제정 및 발효(2018년 12월 5일)했으며, GDPR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핀란드의 DPA가 GDPR의 범위 외에 추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동의연령(age of consent): GDPR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 연령을 16세로 설정했지만 핀란드의 경우 13세로 동의연령을 낮췄다. (DPA 제 5조, Age limit for offering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to a child)

- 보건 데이터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설정했다. (DPA 제6조 제1항 및 제4항, 제5항, 제6항) 제6조는 특수 범주에 들어가는 개인데이터의 처리(Processing of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로서,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GDPR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제1항, 보험사의 개인정보 처리 : 1) when an insurance institution processes data it has received in the course of insurance activities on an insured person's or claimant's state of health, illness or disability, or such data on the treatment or other comparable measures directed at the insured or the claimant that are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liability of the insurance institution;

제4항,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 : 4) when a healthcare service provider in the course of arranging or producing services processes data it has received in the context of these activities on the state of health or disability of a person or on the health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received by a person, or other data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the data subject;

제5항, 사회복지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 : when a social welfare service provider in the course of arranging or producing services or granting benefits processes data it has received or produced in the context of these activities on the state of health or disability of a person or on the health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received by a person, or other data necessary for granting a benefit or providing service to the data subject;

제6항, 보건 및 유전자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경우 : to the processing of data concerning health and of genetic data in the context of

anti-doping work and s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 far as the processing of these data is necessary to enable anti-doping work or s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long-term illness;

-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Codes)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했다. (DPA 제29조, Processing of personal identity codes) 개인식별번호는 법적 의무사항을 실행하거나 대상자 혹은 시행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현하기 위해, 혹은 과학이나 역사 연구, 통계 목적으로 요구할 때 처리가 될 수 있다.
- 개인 데이터 접근이 허용되는 비-공공 행위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DPA 제31조, Derogations and safeguards relating to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scientific and historical research purposes and statistical purposes) 과학이나 역사 연구,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행위자가 해당 행위가 적절해야 하며, 수집 대상자 혹은 그룹이 지정되어야 하고, 해당 목표만을 위해 수집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핀란드는 Data Protection Ombudsman을 설치했다. (DPA 제9조, Office of the Data Protection Ombudsman)
-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의 경우 데이터 접근에 대한 행정과징금을 면제했다. (DPA 제24조, Administrative fine) 해당 공공 및 정부기관은 아래와 같다.

중앙정부기관(central government authorities), 정부투자기업(state enterprises), 지자체(municipal authorities),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자치기구(autonomous institutions governed by public law), 국회 혹은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기관(operating under Parliament or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교회(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Finland 및 the Orthodox Church of Finland, 혹은 다른 종교기구와 단체 등).

- 공공 안전과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여러 목표를 위해 데이터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DPA 제34조, Restrictions concerning the right of access by data subject)

그 경우는 국가안보와 국방, 공공질서, 보안, 범죄 조사나 예방, 보건 관련 심각성, 핀란드나 EU의 중대한 경제적 혹은 금융 이해관계(an important economic or financial interest)에 필요한 경우로 지정되어 있다.

- 개인 데이터 처리는 언론, 학술, 예술 혹은 문학 관련 목표와 관련될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허용될 수 있다. (DPA 제27조,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journalistic purposes or the purposes of academic, artistic or literary expression)

표현 혹은 정보의 자유를 위해 해당 항목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는 GDPR이 적용되지 않는다.

DPA 외에, 핀란드는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지리정보 등의 국경간 이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에 대해 GDPR을 국내법으로 원용하고 있으며(GDPR은 EU 회원국들에게 법접구속력을 갖는다), 온라인콘텐츠의 검열이나 특정 암호화기술 사용 요구는 하고 있지 않다.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유럽 -

- ◆ 인 쇄 | 2022년 12월
- ◆ 발 행 | 2022년 12월
-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 인쇄처 | 나모기획 (044-998-6998)